발 간 등 록 번 호
32-9740029-001904-01

각국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외국사법제도연구(36)





법원행정처

발 간 등 록 번 호
32-9740029-001904-01

각국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외국사법제도연구(36)

법원행정처

머리말

우리 법원은 외국의 사법제도를 면밀히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사법 제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법제도연구반은 2006년 구성된 이래 주요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외국사법제도연구」 제36권은 제10기 외국사법제도연구반의 세 번째 연구 성과를 담은 책자입니다. 미국 · 영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스페인 6개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각 반은, '법원 청사 및 구성원의 보호 방안'을 주제로 외국 사법부가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과 법관 · 직원의 신변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연구하였습니다.

법원과 사법부 구성원을 물리적 ·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법원은 사법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가 안전한 재판 환경의 구축과 사법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형성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로 바쁜 가운데에도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제10기 외국사법제도연구반원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반 활동을 지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12.

법원행정처 차장 **배 형 원**

외국사법제도연구반 명단 (2025. 2. 24. 기준)

미국 사법제도연구반 (16명)

성명(직위)	소속	연수	출국	기수
홍준서	인천지방법원	Columbia University	2010	32기
김경선 (반장)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Florida State University	2018	35기
이금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American University	2013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UCLA, School of Law	2017	37기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7	
권경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in Virginia	2018	39기
양승우	울산지방법원	Columbia University	2018	
이혜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ornell University	2017	
이희경	창원지방법원	Georgetown University	2017	
권보원	특허법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19	40기
최윤영	서울중앙지방법원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21	
황윤철	인천지방법원	Duke University	2017	
서경민 (총무)	대법원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21	41기
이화연	사법정책연구원	Stanford University	2021	
김선화	서울가정법원	Stanford University	2022	42기
심용아	대구가정법원	–	–	44기

영국 사법제도연구반 (11명)

성명(직위)	소속	연수	출국	기수
조정현	부산지방법원	King's College London	2006	26기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10	31기
김윤종 (반장)	서울고등법원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11	32기
이의영	광주고등법원	University of Cambridge	2011	
김도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SOAS University of London	2013	33기
김민상	수원고등법원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4	
김희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16	37기
김재현	창원지방법원	University of Cambridge	2019	39기
한나라	창원지방법원	King's College London	2018	
강성영	인천지방법원	University of Oxford	2021	41기
이정아 (총무)	대법원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19	

독일 사법제도연구반 (10명)

성명(직위)	소속	연수	출국	기수
정성민 (반장)	대법원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2014	36기
김연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2017	37기
이홍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Universität Freiburg	2019	
진영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2018	
유형웅	광주지방법원	Universität Heidelberg	2019	39기
권혁재 (총무)	서울북부지방법원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2021	41기
류일건	사법연수원	Freie Universität Berlin	2023	
박혜영	서울중앙지방법원	Universität Freiburg	2022	
성기석	대법원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2023	
신성훈	대법원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2022	

프랑스 사법제도연구반 (6명)

성명(직위)	소속	연수	출국	기수
이종록	수원지방법원	Université Paris 2 Panthéon-Assas	2013	32기
빈태욱 (반장)	청주지방법원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2012	34기
박세영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Institut de hautes études internationales et du développement	2018	38기
손화정	서울동부지방법원	Université de Strasbourg	2021	40기
이상욱 (총무)	서울가정법원	Université Paris 10 Nanterre	2018	
김성은	서울남부지방법원	Université Paris 10 Nanterre	2022	42기

스페인 사법제도연구반 (8명)

성명(직위)	소속	연수	출국	기수
장한홍 (반장)	서울가정법원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2013	32기
김민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2017	37기
신동헌	부산가정법원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2016	
전경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Universitat de Barcelona	2017	38기
김보라	서울북부지방법원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2018	
이민구 (총무)	서울북부지방법원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2021	39기
방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2023	41기
이강호	대구고등법원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2023	변1

일본 사법제도연구반 (5명)

성명(직위)	소속	연수	출국	기수
백광균 (반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東京大学	2015	37기
안좌진	전주지방법원	東京大学	2016	38기
이정현 (총무)	사법정책연구원	東京大学	2022	40기
조진용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	42기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東京大学	2023	변2

외국사법제도연구 발간목록

연도	권	연구주제
2007	1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2	구술변론, 송달제도
2008	3	형사사건 기소절차
	4	이혼제도
2009	5	소년재판 제도
	6	집행유예 제도
2010	7	형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
	8	상고제한제도와 상고심 심리방식
2011	9	판결절차
	10	재판보조 시스템
2012	11	항소심 운영 모델
	12	민사1심 집중방안
2013	13	회복적 사법제도
	14	구속 및 보석 기준과 실무 운영 현황
2014	15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및 재판절차
	16	전문가 감정 및 증언 등의 운영실무
2015	17	법관의 공정성과 윤리성 제고 방안
2016	18	사법통계 조사 및 분석
	19	사건처리 효율화에 관한 연구
2017	20	합의재판부 구성 및 합의부의 재판방식에 관한 연구
	21	사법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2018	22	판사회의의 형태 및 역할에 관한 연구
	23	의무이행소송
2019	24	소송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25	법관임용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20	26	법관 업무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7	사법제도
2021	28	하급심 판결서
2022	29	법관의 다양한 직무 경험
	30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제도

연도	권	연구주제
2023	31	소송비용 제도
	32	전문재판부의 유형 및 운영방식
2024	33	집행정지 제도
2025	34	사법부 예산 결정 및 운용 실무
	35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방안
	36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Contents

미국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1

영국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153

독일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195

프랑스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351

스페인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401

일본의 재판소 청사 및 구성원 보호안 431

미국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필진_ 미국 사법제도연구반
책임필자_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박병민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김경선 / 울산지방법원 양승우 /
창원지방법원 이희경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혜미 /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서경민

Ⅰ. 서설 2

Ⅱ. 한국의 법원청사 보안 현황 3

1. 우리나라 법원청사 보안 관련 법규 3
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법률) 3
나.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4
다.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 예규) 6
라. 법원보안관리대 공통 매뉴얼 8
마. 법원청사 관리내규 (내규) 8
2. 우리나라 법원청사 보안체계의 연혁 10
가. 요약 10
나. 법원청사 보안 담당 조직의 근거법령이 없던 시기 (2005년 이전) 11
다. 법원경비관리대 (2005. 12. 23.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 제7730호) 11
라. 법원보안관리대 (2014. 1. 7.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 제12188호) 12
3. 법원보안관리대원 현황 12
4. 우리나라 법원청사 보안체계의 논의 경과 13
가. 「2016 안전한 근무환경 TFT」 13
나. 「2018~2019 안전한 법원을 위한 근무환경 등 개선 TFT」 13
다. 「2023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 14
라. 「2024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검토」 14
마. 「2025 사법부 보안 강화 방안 검토」 15
5. 우리나라 현행 법원청사 보안체계의 문제점 15
가. 법원청사 보안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 15
나. 법원보안관리대의 다원적 구성으로 인한 문제 16
다. 법원보안관리대 지휘체계상의 문제 16
라. 보안검색 장비 및 인력의 미비 16

Ⅲ. 미국 연방법원 17

1. 서설 17
2. 법원청사 및 법관이 공격받은 대표적 사례와 제도의 개선 18
가. 법원 청사 공격 사례 18
나. 법관이 공격당한 대표적 사례 20
다. Salas 사건과 제도의 개선 22
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26
3. 연방 사법부의 보안 관련 조직 27
가. 연방사법회의 법원보안위원회 (Judicial Conference, Committee on Court Security) 27
나. 법원행정처 사법보안국(Judiciary Security Division) 35
다. U.S. Marshals Services 42
라. FPS 및 GSA 58
마. 연방대법원 경찰 (U.S. Supreme Court Police) 60
4. 연방사법부의 보안 관련 예산 및 장비 내역 63
가. 예산 63
나. 보안 장비 내역 66
5. 참고: 사법부 위협 관리를 위한 10가지 황금규칙 66

Ⅳ. 주 법원 일반 68

1. 개요 68
2. 일반적인 주 법원 보안 담당 기관: 지역 보안관 사무소 (Sheriff's office) 69
가. 개요 69
나. 연혁 69
다. 업무 및 조직 69
라. 법원보안 관련 70
3. 법원청사 보안을 위한 최선의 실무 조치 70
4. 가정폭력 사건(Domestic Violence)과 법원보안 94
가. 개요 94
나. 보편적인(Universal) 법원보안 조치 95
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추가 · 특별 보안조치 96
라. 결론 101
5. 법원과 법원 직원을 위한 개인적 안전 요령 (Personal Safety Tips for judges an court staff) 101
6. 각 주의 법관 등 보호를 위한 최신 입법동향 등 107
가. 개요 107
나. 보호대상의 범위 107
다. 대상 기관의 범위 107
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108
마.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 절차 108
바. 제3자의 정보 게시 금지 여부 108
사. 물리적 보안 강화 입법 108
아. 텍사스 주: 판사 피습 사건 이후 강력한 입법 109
7. 전국 보안관 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법원보안 체크리스트 소개 110

Ⅴ. 뉴욕주, 캘리포니아 주의 법원보안 126

1. 뉴욕주 126
가. 뉴욕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공공안전국장과의 면담 126
나. 맨하튼 형사법원 등 현장 투어 139
2. 캘리포니아 주 143
가. 사법위원회 내 법원보안 자문위원회 143
나. 법원보안 예산 편성과 집행 144
다. 법원보안 업무의 실행 144
라. 캘리포니아 법원청사 표준 (California Trial Court Facilities Standards) 145

Ⅵ. 결론 146

1. 시사점의 정리 146
2. 마치며 147

참고자료 149

I. 서론

2015. 1. 19.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여 일어난 폭동 사태는 그 공격 대상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할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이라는 점에서 사법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의미와 논의, 그 해결과제 등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적어도 우리 법원 청사와 구성원의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모색할 계기를 제공한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 권력의 거버넌스는 미 군정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미국의 것을 많이 차용하였고, 현재 미국에서 보이는 선명한 양당 대결 구도와 이념 · 지역 · 세대 · 성별 사이의 정치적 대립은 한국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 이후 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 주장이 있었고(이로 인해 2021. 1. 6. 의회 폭동 사건이 발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방 또는 피고인으로 하는 여러 건의 민 · 형사 재판이 있었으며, 그 재판에 대한 찬반을 두고 법원 청사 앞에 대규모 시위대가 진을 치는 모습도 있었다.

더욱이 주지하듯, 미국은 총기 소지가 헌법으로 보장된 국가이고,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그 갈등의 복잡성, 수많은 국제 분쟁의 조정자 지위 등으로 인해 테러, 살해 등 여러 폭력적 위협의 정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미국, 즉 연방 및 주 법원이 법원 청사 및 법관 등 구성원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것을 돌아보게 하는 한편, 우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신선한 영감을 부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하 연방법원, 주 법원 일반, 뉴욕주를 중심으로 한 특정 주 법원의 현황 등을 살펴본다.

II. 한국의 법원청사 보안 현황[1)]

1. 우리나라 법원청사 보안 관련 법규

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법률)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청사 보안의 주된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법원보안관리대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

> 법원조직법
>
>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
>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
>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
>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부분은 양승우 부장판사(울산지법)가 집필하였다. 이하 내용은 법원보안관리대 조직 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국제교류추진단)(2025. 4.)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2) 이하 모든 법규 조문의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은 법원청사의 방호 등을 위하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다.[3] 제2항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법원청사 내 유형력 행사 또는 보안장비 사용, 제3항은 법원청사 출입자에 대한 검색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유형력 행사 또는 보안장비 사용 시 경고에 관한 절차조항이다.

나.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규칙인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이하 '법원보안관리대규칙')이 제정 · 시행되고 있다.

법원보안관리대규칙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법원청사 보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
> 제3조(구성)
>
>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
> 제4조(조직)
>
> ① 각급 기관에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팀장, 조장 등을 둘 수 있다.
>
> ② 법원보안관리대는 각급 기관의 규모 및 구성인원의 수에 따라 법정질서유지 부서와 청사방호 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
> ③ 법원보안관리대는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의 소속으로 하며,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
>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
>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규칙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임무에 관하여도 법원조직법의 규정보다 더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법원보안관리대규칙 제4조 제2항은 법원보안관리대를 '법정질서유지 부서'와 '청사방호 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청사 보안은 후자의 임무에 해당한다.

법원보안관리대규칙 제5조 제1호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 ①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행위에 대한 유형력 행사, 보안장비 사용 외에도, ②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 교부, ③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검색장비의 사용, ④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⑤ 법원청사 출입제한, 퇴거조치 또는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⑥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⑦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것보다 그 임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 예규)

법원보안관리대규칙 제10조에 따라 대법원 예규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이하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예규')가 제정 · 시행되고 있다.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예규는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인사, 제4장 임무, 제5장 근무, 제6장 교육, 제7장 복제 및 장비, 제8장 복무규율의 총 8장,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법원청사 보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
> **제2조(정의)**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법원청사"라 함은 법원이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부착된 공작물을 말한다.
> 2. "청사출입자"라 함은 당사자, 증인, 기타 사건관계인 등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출입의 장소나 목적, 출입자의 직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구별되지 아니한다.
> 3. "질서문란행위"라 함은 법원청사 안에서 발생하는 시위, 소란 기타 질서문란행위 또는 청사출입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말한다.
>
> **제7조(보직)**
>
> ① 법정보안팀의 팀장 및 이를 관장하는 담당관은 법원경위 중 법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청사방호팀의 팀장 및 이를 관장하는 담당관은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일반직, 비상계획담당자 중 법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보한다.
>
> ③ 조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 중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자로 보한다. 단, 사회복무요원만으로 편성된 조는 선임대원으로 보한다.
>
> ④ 복무분야가 '법정질서 유지 및 안내 보조'인 사회복무요원과 '행정지원'인 사회복무요

원은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청사출입에 대한 조치)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청사방호 및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청사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2. 총기, 흉기, 폭발물 또는 위험물, 기타 법정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휴대품을 소지한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그 반입을 금지하거나 따로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
3. 질서문란행위 등의 방법으로 재판결과 등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농성을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청사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4. 공무원증이나 출입증 등을 패용하지 아니한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공무원증 등을 패용하도록 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청사 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5. 잡상인, 청사배회자, 정당한 이유없이 법원직원 등에게 면회나 기부를 강요하거나 그 밖에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사람에 대하여 청사 밖으로 퇴거시키는 조치
6. 법원청사에서 유인물, 도화, 전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 등을 배포하거나 또는 배포하려고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그 배포행위를 금지하거나 청사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시간이외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의 청사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의 사유, 신분증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출입자의 출입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자에 대한 검색 등)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입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방문이 예약되거나 허락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시킨다.

② 방문이 예약된 자에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시키고, 그 밖의 방문자에 대해서는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방문예약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매일 정기적으로 청사 내·외곽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질서문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문란행위 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고한 후 법원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문란행위 등을 할 염려가 있는 청사출입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장비)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보안장비로 삼단봉 · 가스분사기 · 무전기 · 호각을 휴대할 수 있다.

② 삼단봉과 가스분사기는 신체적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장비사용일지에 그 사용상황과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검색장비)

① 청사 및 법정 보안검색을 위해 X-ray 소형화물투시기, 문형금속탐지기(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장비를 운용한다.

② 보안검색장비는 1일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

라. 법원보안관리대 공통 매뉴얼

위와 같은 법률, 대법원규칙, 예규 외에도 법원행정처가 2016. 7. 최초로 발간하여 2022. 12. 개정 · 시행 중인 법원보안관리대 공통 매뉴얼이 각급 법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 공통 매뉴얼은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법원청사 보안을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여기에서는 더 논하지 않는다.

마. 법원청사 관리내규 (내규)

법원청사 보안, 즉 방호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보안관리대에 관한 법률, 대법원규칙, 대법원 예규 등이 규율하고 있으나, 그 외의 법원청사 관리

에 관하여는 「법원청사 관리내규」가 제정 · 시행되고 있다. 참고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용한다.

법원청사 관리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원청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내규에서 "청사"라 함은 법원이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부착된 공작물을 말한다.

② 이 내규에서 "관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사의 보존과 환경미화를 위한 행위
2. 화재예방, 설비관리, 방범 등 청사의 안전을 위한 행위
3. 청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
4. 청사 내에서의 보안을 위한 행위

제3조(청사관리관)

① 청사의 관리책임자(이하 "청사관리관"이라 한다)는 대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에 있어서는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는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각급법원에 있어서는 법원장, 지방법원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장, 시 · 군법원에 있어서는 시 · 군법원판사(시 · 군법원과 등기소가 같은 청사를 사용할 때는 등기소장), 등기소에 있어서는 등기소장으로 한다.

② 동일청사를 2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상급기관의 청사관리관이 관리하며 동급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의장이 청사관리관을 지정한다.

③ 청사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실 관리자)

① 청사 내에서의 모든 사무실, 법정 기타 청사관리관이 정하는 단위구역(이하 "사무실 등"이라 한다)에는 실 관리자를 둔다.

② 실 관리자는 사무실 등의 장 또는 최상급자(비서직이 있는 사무실은 비서직중 최상급자)로 하되, 장 또는 최상급자가 없거나 이를 정하기 어려운 사무실 등에 대하여는 청사관리관이 이를 지명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청사관리책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청사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당직근무자의 청사관리에 관한 임무수행에 대하여는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2. 우리나라 법원청사 보안체계의 연혁

가. 요약[4)]

명칭	법원보안 규율 법령 無 (2005년 이전)	법원경비관리대 (2006년 ~ 2013년)	법원보안관리대 (2014년 이후)
목적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법원청사 방호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법원청사 방호
구성원	법정경위, 방호원, 청원경찰 개별적 관리 · 감독	법정경위, 방호원, 청원경찰 신규채용 중단 → 전문분야 별정직 공무원 채용(임기 10년)	전문분야 별정직공무원 폐지 (2013 국가공무원법 개정) → 임기제 공무원 선발 후 일반직 전환
권한	법정경위–법정방호 방호원, 청원경찰–청사방호	청사 내 긴급한 위해행위 발생 시 신체적 유형력 행사 · 보안장비 사용	청사 내 긴급한 위해행위 발생 시 신체적 유형력 행사 · 보안장비 사용
비고		법원보안관리 조직 신설 '법정경위' → '법원경위' 명칭 변경	명칭변경 외 법률상 권한 동일

4) 법원보안관리대 조직 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주 1), 8쪽.

나. 법원청사 보안 담당 조직의 근거법령이 없던 시기 (2005년 이전)

과거 법원조직법은 제64조에서 법정(법원)경위[5]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법정경위는 ①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의 집행(법원조직법 제64조 제2항), ② 소송서류의 송달(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③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감치재판의 집행(형사소송법 제151조), ④ 구속영장 집행의 보조 업무(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경위는 법원청사 보안보다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및 법정경찰권으로부터 유래한 임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법원청사 보안은 방호원(법원청사 출입통제, 법원구내 질서유지 등), 청원경찰(청사 내 · 외곽 경비초소 경비근무, 요인경호, 민원인 및 내방객 안내, 교통 단속 및 주차질서 유지 등, 지방법원 본원 이상 법원에 배치)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그 설치 및 직무범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출입문 검색대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보안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다. 법원경비관리대 (2005. 12. 23.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 제7730호)

현재 법원청사 보안의 주된 주체인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원조직법이 2005. 12. 23. 개정되면서 '법원경비관리대'에 관한 제5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그 입법이유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를 두어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인 2005. 12. 14. 법원조직법이 법률 제7725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법정경위'가 '법원경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소송서류 송달 등 법정 외에서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그 직명을 업무와 부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

5) 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정리'(廷吏)라는 명칭이었다가 위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경위'로 변경되었다. 이후 '법원경위'로 변경되었다(후술).

이때부터 기존의 법원경위, 방호원, 청원경찰의 신규채용이 중단되었고, 이들을 통합한 임기 10년의 전문분야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법원경비관리대원이 채용되기 시작하였다.

라. 법원보안관리대 (2014. 1. 7.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 제12188호)

법원조직법이 2014. 1. 7. 개정되면서 '경비'라는 용어보다 법정 내외의 모든 업무를 포섭할 수 있는 '보안'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기존의 법원경비관리대가 '법원보안관리대'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실질적인 관련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이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면서 '전문분야 계약직 공무원'('기능직 공무원', '별정직'이라고도 하였다) 제도가 폐지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원 선발 또한 전문분야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그에 기한 일반직 공무원 전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6)]

3. 법원보안관리대원 현황

2025. 4. 11. 기준 법원보안관리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직급 / 인원 / 직렬	5급		6급		7급		8급		9급 (9호/청경)		총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법원경위	7	8	40	67	34	51	144	0	7	0	232	126
보안 (구 '방호원')			0	1	1	55	2	0	95	0	98	56
보안관리					10	0	89	269	519	341	618	610
보안관리대원 (별정직)									0	3	0	3
일반임기제9호									0	241	0	241
청원경찰									89	40	89	40
총 계	7	8	40	68	45	106	235	269	710	625	1,037	1,076

6)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47쪽.

그러나 위 수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것으로, 2024. 12. 기준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법원보안관리대 총원 1,676명 중 사회복무요원은 565명으로서[7] 전체 인원 중 약 33.7%를 차지하고 있다.

4. 우리나라 법원청사 보안체계의 논의 경과

가. 「2016 안전한 근무환경 TFT」

○ 배경

2016. 6. 9. 인천지방법원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패소판결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망치를 휘둘러 참여관이 다치는 사건 발생

○ 결론

근무자와 민원인 간 직접접촉 차단 필요성 인지, 청사출입구 통제, 민원인과 근무자의 동선 분리 등 방안 마련(유리차단막 설치 등)

※ 2018. 8.까지 전국 법원 민원접수창구 27.2%에 유리차단막 설치. 이후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2023. 6.까지 전국 접수창구 2,740개소 중 2,646개소(약 96.6%)에 유리차단막 설치

나. 「2018~2019 안전한 법원을 위한 근무환경 등 개선 TFT」

○ 배경

2018. 11. 27.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 발생

○ 결론

1. 건물청사의 구조개선
 - 모든 출입구 통제, 민원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통합열람복사실 설치 전제), 민원부서 보안 강화, 청사 보안설비 보완
2. 법원보안관리대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 근무형태 개선, 직무역량, 강화, 통일 지침 마련,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3. 신변위협에 대한 대응 및 피해 직원 지원

7) 사법부 보안 강화 방안 검토(안), 법원행정처(안전관리관실)(2025. 2.).

4. 민원응대 매뉴얼 마련

다.「2023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

○ 배경

2023. 8. 14. 청주지방법원 실무관이 사무실(형사과)에서 근무 도중 민원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는 사건 발생

○ 결론

1. 청사 구조개선
- 모든 청사출입구의 통제 방안 마련, 민원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모델 소개, 청사 여건별 대응 건의안 마련, 시 · 군법원의 보안 강화 방안 별도 검토

2.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 법원공무원 특이상황별 민원응대 매뉴얼 개선, 법정 내 특이상황 대처 방안, 각급 법원 보안 장비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 제시

3.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
- 심신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법적 대응 지원 방안 검토

라.「2024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검토」

○ 배경

202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피습을 당하는 사건 발생

○ 결론

1. 검색 단계에서의 보안 강화
- 검색장비 개선, 보안관리대 인력의 효율적 운영, 검색강화 사실에 대한 홍보 확대

2. 법정 내 보안 강화
- 법정 구조개선, 법정 내 보안관리대원의 상황 대응능력 향상

3. 보안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마. 「2025 사법부 보안 강화 방안 검토」

○ 배경

202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규모 시위대 난입

○ 결론

1. 신속 추진과제

- "긴급 상황 대응반" 신설 · 운용 검토, 집회 · 시위 등 상황별 대응 매뉴얼 마련 · 전파, 법관 및 직원 신변보호 강화, 보안업무 현황 현장점검 실시, 보안관리대원 직무역량(교육) 강화

2. 중장기 추진과제

- 각급 법원 보안관리대원 증원 및 조직 개편, 법원행정처 법원보안 관련 조직 보강, 법원경찰권 도입

5. 우리나라 현행 법원청사 보안체계의 문제점

가. 법원청사 보안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

현행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는 '법원보안관리대' 조직의 설치 및 그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그 전제가 되는 법원청사 보안 권한 및 그 직무범위는 법정경찰권(재판장) 또는 청사관리권(기관장)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청사 보안의 내용 및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원보안관리대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법원청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예규 제2조 제3호('법원청사 안에서 발생하는')의 문언에서 나타나듯이, 현재의 법규는 법원청사 내의 사람 및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원청사 외부에서 법원청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원보안관리대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률상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법원청사 외부에서의 법원구성원의 보호(예: 대법원장 공관, 관용차량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법원청사 보안의 내용과 구체적인 범위(법원청사 외부를 포함), 그 수단으로서의 사법경찰권 및 유형력 행사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8)]

나. 법원보안관리대의 다원적 구성으로 인한 문제

법원보안관리대가 법원경위, 보안직, 보안관리직, 일반임기제9호, 별정직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등 다원화 · 파편화된 인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그 기능과 대우의 차이에 따른 괴리 및 긴장이 발생하고 통일적이고 안정적인 인사관리 및 사무분담의 어려움이 있다.

다. 법원보안관리대 지휘체계상의 문제

법원보안관리대가 각급 법원 사무국 또는 사무과 소속으로서(법원보안관리대규칙 제4조 제3항) 각급 법원의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보안관리대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청사 보안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실 및 대법원 보안관리대 또한 전국 법원의 보안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장기적으로 일관된 보안관리 정책을 수립 · 집행하는 기능이 미약하다.

라. 보안검색 장비 및 인력의 미비

법원청사 보안의 물적 측면에 관하여 보면, 2023년 조사 기준 전국 법원의 43%가 노후된 X-ray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2024. 9. 조사 결과 각급 법원에 다음과 같이 다수의 신규 검색장비 또는 수리 소요가 제기된 상황이다.[9)10)]

---

8) 1988년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법원구내 및 법정질서유지를 전담하고,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긴급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인 · 영장집행 등 소송절차상 필요한 임무를 법원 외부에서 수행하는 '법원경찰대' 설치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입법되지 아니하였다[전문식(주 6), 45쪽]. 또한 법원은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법원경찰제도의 창설을 검토하였으나 보류되었다.

9)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검토, 법원행정처(2024. 9.), 2쪽.

10) 다만 2025년 정부 예산에서 '안전한 법원'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2024년 대비 78억 6,500만 원 증액, 총 106억 3,000만 원), 이에 2025년부터 내용연수 도과 등으로 노후가 심하거나 고장이 잦은 X-ray 소형화물투시기를 업그레이드 된 모델로 교체하며 고성능 X-ray 화물투시기, AI 솔루션, 키오스크형 및 투시카메라형 바디스캐너, 디스플레이형 문형검색대, 법정 내 AI CCTV 등 신규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검토(주 9), 3쪽.

구분	X-ray 소형화물투시기	핸드스캐너	문형검색대
수리 필요	37	32	10
신규 필요	12	11	7
합계	**49**	**43**	**17**

법원청사 보안의 인적 측면에 관하여도 먼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다수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보안검색이 운용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교육훈련 또한 실제 상황 발생 시를 가정한 대응보다는 지나치게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11)]

III. 미국 연방법원

1. 서설

미국은 1789년 연방국가 설립 당시부터 법원조직법(Judiciary Act)에 의해 법무부 산하의 'U.S. Marshals Service'(연방보안관국)에서 법원보안 업무를 전담하였다. 법원 외부 기관에서 법원보안을 전담한다는 것에 특색이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경우 1935년 창설된 연방대법원 경찰(U.S. Supreme Court Police)이 대법원 청사 및 대법관 등에 대한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보안 정책은 안타깝게도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하 미 연방에서 법원청사 및 법관이 공격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그로 인한 제도의 변화, 그리고 현재 연방법원의 보안 조직 체계, 보안 현황, 실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1) 최민규, 대한민국 법원 보안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49-50쪽. 신소영 · 정영대, 법원보안관리대의 테러범죄 대응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3권 제2호(2023) 또한 테러 대응을 비롯한 법원청사 보안에 있어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실증조사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2. 법원청사 및 법관이 공격받은 대표적 사례와 제도의 개선

미국에서는 정치 ·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특정 판결에 불만이 표출될 때, 법원 청사나 판사 개인이 폭력과 위협의 표적이 되는 사건이 주기적으로 발생해왔다. 아래 사례들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 사법부가 판사 자택 보안, 법원 청사의 물리적 방호, 출입 통제, 감시 장비 구축, 보안요원 배치 확대 등 다층적 보호 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가. 법원 청사 공격 사례

①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폭동 사례 중 하나로 1884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법정 폭동이 있다. 살인 재판에서의 형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1만여 명에 달하는 폭도가 법원과 구치소를 습격해 방화를 저지르고 군대와 충돌하여 5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12)]

② 총기를 사용한 테러성 공격도 빈발하였다. 2010. 1. 4.,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소재 연방법원 청사에서 무장 괴한이 보안검색대를 급습해 연방 보안요원을 사살하고 여러 명을 부상케 했다.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13)]

2019년 6월에는 텍사스주 달라스 소재 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반자동 소총을 든 괴한이 총격을 가해 교전이 벌어졌고,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되었다.[14)]

③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이어졌는데,[15)] 이 가운데 오리건주 포틀랜드 소재 Mark O. Hatfield 연방법원 청사는 여러 차례 시위대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시위대는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고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화염병과 폭죽을 던지는 등 폭력적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특수 방호 펜스를 설치하고 연방 요원을 증파하여 방어에 나서야 했다.[16)]

---

12) Smithsonian Magazine, “The Deadly Cincinnati Courthouse Riot of 1884”.
13) Wikipedia, “Las Vegas Courthouse Shooting” (2010).
14) Wikipedia, “2019 Dallas Courthouse Shooting”.
15) 플로이드 사건은 2020년 5월 미국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흑인 피의자 플로이드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사건이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 채 플로이드를 9분간 바닥에 엎드려 눕혀 누름으로써 질식사하게 하였다. 위 사건으로 경찰폭력 및 인종차별에 대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촉발되었고, 연방법원 청사가 제도적 불의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다.
16)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Law Enforcement Response to Portland Riots” (2020).

④ 2020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Foley 연방법원 청사도 조지 플로이드 사건 항의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시위대는 법원 청사에 페인트를 투척하고 창문을 부순 뒤 방화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수십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여러 명이 연방 재산 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았다.[17]

⑤ 2021. 1. 6. 미 의회 의사당 공격사건(January 6 Capitol Riot)[18]은 연방의회, 연방정부의 청사 보안은 물론 연방법원 청사 보안의 중요성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9] 위 사건에 편승하여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의 법원청사가 피해[20]를 입었고, 법원 인근에서 보안요원 2명이 총격을 당해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연방법원행정처는 US Marshals Service, 연방보호국(FPS), 연방총무청(GSA)과 함께 **법원청사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다. 위 TF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청사 보안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

- 도보 접근이 가능한 창문 및 출입문을 강화 유리 또는 덮개로 보강
- 원격 조작이 가능한 자동 도어 잠금 장치 설치
- 임시 또는 영구적인 청사 외곽 장벽, 펜스 설치

이러한 조치는 신속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장기 개선 방안(예: 입구 재설계, 외곽 재건축, 공용 공간 개보수 등)도 따로 마련되었다.

사법부는 2022 회계연도(FY2022)에 청사 보안을 위해 1,500만 달러의 의회 예산을 지원받았고, 위 예산은 전국 법원청사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었다. 연방사법회의 보안위원회(Judicial Security Committee)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

17) Las Vegas Review-Journal, “Protests Turn Violent in Downtown Las Vegas”.

18) 당시 대통령이던 Donald Trump 지지자 수천 명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의사당에 무단 침하여 점거한 사건이다. 1월 6일은 미국 의회가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는 날이었다.

19) 이하 내용은 https://www.uscourts.gov/data-news/reports/annual-reports/directors-annual-report/annual-report-2022/facilities-and-security-annual-report-2022#judicial_security 참조.

20) 트럼트 지지 시위대가 법원 난입을 시도하거나 청사 유리창 파손, 화염병 투척 등의 행위를 하였다.

- 법원 청사 내 사법 활동 규모
- 최근 소요 사태 중 해당 청사 및 시설의 피해 정도
- 연방 법집행기관의 위협정보
- 기존 보안 설계 및 강화 요소
- 효율적인 비용으로 외곽 보안 개선의 가능성 유무

의회는 또한 2022. 9. 사법부 요청에 따라 청사 보안 개선을 위해 추가 예산 1억 1,250만 달러를 승인하기도 하였다.

나. 법관이 공격당한 대표적 사례

① 2005년 시카고 연방판사 Joan Lefkow의 남편과 어머니가 자택에서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Lefkow 판사는 2003년 백인우월주의 단체의 웹사이트 폐쇄를 명령한 적이 있는데, 그 단체 대표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온 사실이 있어 그가 범인으로 의심되었으나, 민사재판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았다는 Bart Allen Ross가 실제 범인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재판 관련 보복범죄 사례이다.[21]

그리고 같은 해 Atlanta 법원에서 피고인이 무기를 탈취하여 법정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22]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미국 법원보안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정된 것이 '2007 법원보안강화법'(Court 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07)[23]인데, 그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방법관 및 가족에 대한 보호 강화

U.S. Marshals Service(이하 'USMS'라고 한다)는 판사 및 그 가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신변 보호를 제공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였다. 특히 고위험 재판이나 위협이 실질화된 사건의 경우, USMS가 연방법관의 자택 및 출퇴근 동선에 대한 실질적인 경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 The New York Times, "Husband and Mother of Judge Are Found Slain," (2005).
2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dicial Security: Responsibilities and Current Issues, 2008, p.1.
23) Public Law No. 110-177 (H.R. 660), enacted January 7, 2008.

ⓑ 주 법원의 보안 개선 지원

연방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 법원의 보안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위 법률은 연방법무부 산하 범죄예방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이 주 법원에도 보안 강화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자금은 법원 청사의 장비 개선, 보안 인력 훈련, 위협 대응 계획 수립 등에 사용될 수 있다.

ⓒ 판사 및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

법관의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차량 등록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민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위협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위 법은 판사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민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사법부 요청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보복범죄 및 위협에 대한 처벌 강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나 검사, 법원직원에 대해 보복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법 차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이 법은 특히 판결을 내린 직후의 시점에서 위협이 가중된다고 판단되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안 정보 보고 및 연방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정비

USMS 및 연방법원행정처(AO)는 정기적으로 법원보안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연방과 주 사이,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협력체계를 법제화하여 보안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7 법원보안강화법'(Court 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07)[24]은 단순히 물리적 보안이나 경호 수준의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및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법원보안 체계'를 구축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은 법관 개인의 생명과 가족,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② 2020년 7월에는 뉴저지 연방판사 **에스더 살라스**(Esther Salas)의 자택에 Fedex 배달기사로 변장한 범인이 벨을 누른 후 문이 열리자 바로 총격을 가해 남편에게 중상을 입히

24) Public Law No. 110-177 (H.R. 660), enacted January 7, 2008.

고 20세 아들(Daniel)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극단적 여성 혐오 성향을 가진 변호사로, 여성징병 반대 소송을 담당했던 살라스 판사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25]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판사들의 신변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는데, 특히 판사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범인이 인터넷을 통해 판사의 집 주소, 자택 사진,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를 쉽게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위 사건 이후 **뉴저지 주**는 2020년 11월 판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른바 Daniel's Law)을 통과시켰는데, 그 주요 내용은 판사 등의 개인정보 공개 금지와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삭제요구권의 마련이다.

Salas 사건은 법관 보호 관련하여 미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건 이후 법률 제정, 보안조치 강화 등의 경과에 대해서는 항을 나누어 상세히 살펴본다.

다. Salas 사건과 제도의 개선

1) 연방대법원의 대응

Salas 사건 직후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책을 공지하였다.

> 「Judicial Conference Approves Measures to Increase Security for Federal Judges」
> 2020. 8. 14. 게시
>
> 연방판사의 보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의회의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일련의 권고안이 연방 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에서 승인되었다. 법원행정처장 James C. Duff는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에스더 살라스 판사의 참혹한 사건은 이 조치의 긴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사법회의가 승인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 ⓐ 판사의 개인 식별 정보(Pe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를 특히 인터넷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25) NPR, "Son of US Judge Killed, Husband Injured in Shooting at Their New Jersey Home," (2020).

ⓑ U.S. Marshals와 협력하여 판사의 개인 정보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로 인한 보안 취약점을 판사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부적절한 접촉을 관계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전담 자원(resource) 개발을 지원한다.

ⓒ 판사 자택 침입 탐지 시스템(Home Intrusion Detection Systems)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지원한다.

ⓓ U.S. Marshal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 이는 U.S. Marshals의 연례 예산 요청과 연계된다.

ⓔ 미국 연방청사 내 보안 카메라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주기적 유지보수를 위한 직접 예산을 연방보호국(Federal Protective Service, FPS)에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

에스더 살라스 판사는 이번 달 초 영상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한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 사법부 가족들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저 또한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국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연방판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해결책을 함께 찾을 때입니다."

살라스 판사의 가족에 대한 비극적인 공격 이후, 연방사법회의 산하 사법보안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연방판사의 물리적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고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위 5가지 보안 관련 권고안을 의결했고, 이틀 후 Executive Committee가 이를 승인하였다. 사법부는 위에서 승인된 입법 및 예산 지원 사항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대책을 공지한 후 1달 후 다음과 같이 대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입법하고, 예산에 반영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게시되었다.

「Congress Urged to Adopt Judicial Security Measures」

2020년 9월 9일 게시

연방사법부는 의회에 Salas 사건 이후 판사 자택 및 연방 법원청사의 보안을 강화할

일련의 안전조치를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9월 4일 사법보안위원회 위원장 David W. McKeague 판사와 법원행정처장 James C. Duff는 각각 별도의 서한을 하원 및 상원 세출위원회에 보냈다. 이 서한에서는 세 가지 보안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고,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원 및 상원 세출위원회에 요청된 주요 예산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판사 자택에 최신 주거 침입 방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U.S. Marshals Service에 대한 720만 달러의 일회성 예산과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연간 200만 달러의 지속적인 예산. 기존 경보시스템은 심각하게 노후화되었고, 판사 자택에 출입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 기능도 없음
- U.S. Marshal 1,000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한 USMS 예산 증액
- 전국 650개 연방 법원청사 및 사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방건물의 외곽 감시카메라를 교체 및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연방보호국(Federal Protective Service)에 대한 2억 6,700만 달러의 일회성 예산 편성

또한 상 · 원 사법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추가 안전조치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인터넷상에서 판사의 개인 식별 정보(PII)가 무단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 이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판사 정보 게시 또는 공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연방 판사가 재정공개 보고서(financial disclosure report)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편집)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흥미로운 것은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도 2020. 10. 27. 의회에 연방대법원이 추진하는 보안 강화조치를 지지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는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 미국 법원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ABA가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ABA의 지지는 입법,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 이하는 "Judicial Security Needs Improvement: Steps Congress Should Take Now",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미국변호사협회(ABA) 2020년 10월 27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연방 판사, 그 가족, 법원 직원 및 연방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입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ABA는 “에스더 살라스(Esther Salas)” 등과 같은 사건들은 모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며, 특히 독립된 사법부는 자유로운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방어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법부 보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ABA는 다음과 같은 3대 입법 원칙을 제시했다.

ⓐ 보안 장비 현대화 및 보안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을 신속히 배정해야 한다.

ⓑ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위협 증가에 대응해 기존 연방법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지 재검토해야 하고, 사법보안을 강화하되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는 침해하지 않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

ⓒ 법원행정처(AO)와 연방보안국(USMS)이 사법부의 진화하는 보안 수요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및 장래 보안 수요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ABA는 앞서 연방 사법회의가 의회에 제안한 보안강화 방안과 예산요청이 이 위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2) Daniel 법의 통과

앞서 본 것과 같이 Salas 사건 직후 **뉴저지** 주는 온라인 상에서 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연방 사법부도** 의회에 같은 취지의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을 독촉하였고, 그 논의 끝에[27] ‘Daniel Anderl Judicial Security and Privacy Act of 2022’가 의회를 통과하였다. 2022. 12. 23.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률로 확정되었다(2023. 4. 21. 시행).[28]

27) United States Congress, “Daniel Anderl Judicial Security and Privacy Act of 2021,” Bill Text and Legislative History.

28) www.uscourts.gov/data-news/reports/annual-reports/directors-annual-report/annual-report-2022/courts-and-congress-annual-report-2022 참조.

위 법은 먼저 ⓐ 연방법원 판사(퇴직자 포함)와 그 가족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차량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이하 'PII'라고 한다)의 **인터넷 공개**를 **금지**한다. 그리고 정보 중개업체(Data Broker)가 판사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판매,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언론 보도, 판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판사 또는 법원행정처(AO)가 요청하면 연방기관, 기업, 개인은 공개된 PII를 **7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법원 및 법원행정처는 판사에 대한 위협 모니터링과 인터넷 기반 위협 대응을 위한 훈련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TMB(Threat Management Branch)는 'DeleteMe' 등 민간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금지대상 PII를 자동 모니터링하고 삭제할 수 있다. PII 관리주체를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관으로 확대한 것에 특색이 있다.

ⓒ 연방정부는 판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는 주 · 지방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미국 내에는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는 점에 특색이 있고, 법원행정처가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삭제대상 정보의 탐색, 삭제요청,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1차 재임 기간(2017~2021년) 중 연방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그 중심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거나 무효화하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발이 뒤따랐다.

대표적인 갈등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무슬림 국가 출신 입국 금지령(Travel Ban)'에 대해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판사를 '소위 판사(so-called judge)'라고 조롱하며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29]

이외에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종료, 대선 불복 소송 등에서도 연방법원

이 트럼프 측 주장을 기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정치적이고 부패했다."라고 비판하며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공개적인 비난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 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실제로 트럼프 제1차 행정부 시기와 2025년 재취임이 이루어진 현재에 이르기까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지지자들에 의해 판사 개인 및 가족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James Boasberg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5. 3. 연방정부의 Alien Enemies Act에 근거한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명령의 일시정지를 명하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위 판사를 '극좌 미치광이(radical left lunatic)'라고 비난하며 법관탄핵까지 언급하였다.[30]

이에 Roberts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지난 두 세기 이상 탄핵은 사법부 결정에 관한 적절한 부동의 답변이 될 수 없음이 확립되어 왔다."[31]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32]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연방판사 중 최소 11명이 가족과 함께 협박, 괴롭힘 등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판사 집에는 익명으로 피자가 반복적으로 배달되어 협박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33]

3. 연방 사법부의 보안 관련 조직

가. 연방사법회의 법원보안위원회 (Judicial Conference, Committee on Court Security)

1) 개요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S.)는 연방 사법부의 최고 정책결정기구

29) The New York Times, "Trump Lashes Out at 'So-Called Judge' Who Blocked Immigration Order", Feb. 4, 2017.
30) www.theguardian.com/us-news/2025/mar/24/trump-deportation-venezuela.
31) For more than two centuries,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impeachment is not an appropriate response to disagreement concerning a judicial decision.
32) www.reuters.com/legal/us-chief-justice-roberts-calls-judges-impeachment-are-inappropriate-after-trump-2025-03-18/.
33) Reuters, "US judges warn of threats, ask Congress for more security funding", May 14, 2025.

로서, 사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회의 산하에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법원보안위원회**(Committee on Court Security)'는 연방법원과 판사, 직원, 시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조직이다.[34]

2) 임무와 구성

법원보안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연방법원의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계획을 마련하며, 예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 2회 정례회의를 통해 보안 관련 의제를 심의하고, 사법회의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13개의 항소구(Circuit) 소속 법관 13명과 국제무역법원(International Trade Court) 소속 법관 1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2024. 10. 기준 위원장으로 Richard Sullivan 제2항소구(2nd Circuit) 판사가 연임되었다. 법원행정처 보안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독립적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예산과 프로그램을 감독 ·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법부 보안 예산 항목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해 연방사법회의에 권고하는 것이 중요 임무 중 하나이다.[35]

위원들이 보안관련 법안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로비 등을 통해 입법, 예산을 조정, 확보하기도 한다.[36]

특히 최근 들어 판사와 가족에 대한 폭력적 위협과 테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는 US Marshals Service,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DHS) 등과 협력해 위협 평가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37]

3) 최근 활동

법원보안위원회는 2020년 연방판사 에스더 살라스(Esther Salas) 가족 살해 사건 이후

34) www.uscourts.gov/administration-policies/governance-judicial-conference.
35) www.usmarshals.gov/judicial-security.
36) 박병민, 미국사법제도 연구반 2025년 상반기 출장보고서(법원보안), 2025. 8.
37) www.uscourts.gov/administration-policies/governance-judicial-conference.

연방법원의 판사 주거지 보안 강화 프로그램을 긴급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 예산에서 약 1,500만 달러를 별도 배정해 판사 자택의 보안 카메라, 조명, 출입통제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38]

위원회는 법원 시설 내 대규모 폭력사태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상대응 훈련 표준을 수립해 연방법원 전 직원이 연 1회 이상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권고를 채택하였다.[39]

이 외에도 위원회는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2년부터 사법부 전용 이메일 · 데이터 시스템의 보안 업그레이드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해당 사업에 약 4천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판결문 유출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 인증 체계와 침해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마련되었다.[40]

4) 보안위원회 회의자료 소개

연방 법원행정처 Dan McElroy 사법보안운영과장으로부터 2025. 5. 28.- 29. 양일간 있었던 보안위원회 일정, 아젠다 자료를 제공받아[41] 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위원들이 담당 파트를 10-20분 내외로 간략히 발표하고, 주로 보안 예산,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흥미로운 점은 첫날에는 U.S Marshals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꼭지가 있고, 이튿날에는 FPS(Federal Protective Service) 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발표하는 꼭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외부 협력기관의 참여가 눈에 띈다.

38) www.uscourts.gov/statistics-reports/annual-reports-director.
39) U.S. Courts, "Judicial Security Improvements Following Tragedy, www.uscourts.gov.
40) U.S. Courts News,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Manual Update". www.uscourts.gov.
41) 박병민, 미국사법제도 연구반 2025년 상반기 출장보고서(법원보안), 2025. 8.; 2025. 7. 28. 현지 인터뷰에서 교부받음.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COMMITTEE ON JUDICIAL SECURITY

MAY 28 – 29, 2025

Thurgood Marshall Federal Judiciary Building
Room G-160

TIMED AGENDA

For members connecting remotely:
Microsoft Teams
Dial In: (202) 503-1666
Phone Conference ID: 299 292 51#

Wednesday, May 28, 2025
9:00 a.m. – 3:25 p.m. (EDT)

Continental breakfast will be served at 8:00 a.m.

Time	Min.	Item	Subject	Presenter
9:00 – 9:10 am	(10)	A	Welcoming Remarks and Administrative Matters	Judge Sullivan

1. First, I want to introduce you to Inspector **Joseph McDermott**, with the U.S. Marshals Service (USMS), who is leading our security detail for the meeting.

2. The Committee dinner will be held this evening at Mastro's Steakhouse, 600 13th St NW, Washington, DC 20005, with cocktails starting at 6:00 pm and dinner starting at 7:00 pm. If you have a guest(s) attending the Committee dinner, the cost of dinner is $103.00 per person; please be prepared to pay Boisseau Woltz cash for the meal. All alcoholic beverages should also be paid via cash or with credit card payment.

3. Later today, **Mark Pittella,** Deputy Director of the U.S. Marshals Service (USMS), will meet with the Committee. In addition, **Richard Kelly**, Associate Director of Operations, **Patrick Walsh**, Procurement Executive, and **James Kim**, Deputy Assistant Director from the Judicial Security Division, will be joining us at 10:35 am and staying with us through the end of the day.

4. Tomorrow, from the Federal Protective Service (FPS), Director **Faron K. Paramore**, **David Olson,** Principal Deputy Director, **Arnold Jackson,** Assistant Director, Field Operations West, and **David Sousa,** Division Director, Countermeasure Operations Division, will meet with the Committee in the morning. In addition, **Michael Effron,** the National Client Executive from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will be

Committee on Judicial Security May 28-29, 2025
Timed Agenda

joining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about the Courthouse Hardening Program and the Executive Branch Actions.

9:10 – 9:20 am	(10)	B	Legislative Update	Melanie Gilbert Kate Flynn
9:20 – 9:40 am	(20)	P	Judicial Security and Independence Task Force	Judge Sullivan Judge Beyer
9:40 – 10:05 am	(25)	U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s Security Services	Judge Sullivan Jack Cummins
10:05 – 10:15 am	(10)	C	Fiscal Year (FY) 2025, 2026 and 2027 Budget Update	Gene Park Diana Simpson
10:15 – 10:30 am	(15)		**BREAK; USMS JOINS MEETING**	
10:30 – 10:45 am	(15)	D	Court Security Budget Request for FY 2027	Judge Mehta Cheata Sieng
10:45 – 11:05 am	(20)	E	U.S. Marshals Service Contract Management	Judge Mehta Cheata Sieng
11:05 – 11:25 am	(20)	F	U.S. Marshals Service Security Systems and Equipment Funding	Geoffrey Deas Tom Garrity
11:25 – 12:00 pm	(35)	G	CSO Program Administration Requirements and Costs	Geoffrey Deas Tom Garrity
12:00 – 12:45 pm	(45)		**WORKING LUNCH**	
12:45 – 1:00 pm	(15)	L	Home Intrusion Detection Systems	Geoffrey Deas Gregg Bursey Cheata Sieng
1:00 – 2:00 pm	(60)	M	Presentation from U.S. Marshals Service	Acting Director Pittella
2:00 – 2:15 pm	(15)		**BREAK**	
2:15 – 2:35 pm	(20)	T	Executive Branch Update	Geoffrey Deas David Sousa Michael Effron
2:35 – 3:05 pm	(30)	J	Courthouse Hardening Program	Gregg Bursey Andrew Bywater David Sousa

Committee on Judicial Security May 28-29, 2025
Timed Agenda

3:05 – 3:25 pm	(20)	D	Court Security Budget Request for FY 2027	Judge Mehta Cheata Sieng

ADJOURN FOR THE DAY

Committee Dinner: **Mastro's Steakhouse**
600 13th St NW
Washington, DC 20005

6:00 pm **Cocktail reception (Cash/cc only)**

7:00 pm **Dinner**

3

Committee on Judicial Security May 28-29, 2025
Timed Agenda

Thursday, May 29, 2025
9:00 a.m. – 12:30 p.m. (EDT)

Thurgood Marshall Federal Judiciary Building
Room G-160

For members connecting remotely:
Microsoft Teams
Dial In: (202) 503-1666
Phone Conference ID: 565 256 289#

Continental breakfast will be served at 8:00 a.m.

9:00 – 10:00 am	(60)	O	Presentation by Federal Protective Service	Director Paramore David Olson Clifford Hughes
10:00 – 10:20 am	(20)	N	Federal Protective Service Technical Countermeasures Program	David Sousa Gregg Bursey
10:20 – 10:35 am	(15)		**BREAK**	
10:35 – 10:55 am	(20)	H	Efforts to Protect Judges' PII and Increase Protection at State Level	Kyle Yoder Kate Flynn Jonathan Wren
10:55 – 11:25 am	(30)	I	Judiciary Security Officer Program	Dan McElroy John Wilson Steve Caruso
11:25 – 11:35 am	(10)	L	Courts Emergency Management Program Update	Wayne Wylie
11:35 – 11:45 am	(10)	Q	Capital Security Program for Buildings with Security Deficiencies	Christina Parrish
11:45 – 11:55 am	(10)	R	Space and Security Advisory Council	Judge Pryor
11:55 – 12:05 pm	(10)	S	Judiciary Strategic Planning	Boisseau Woltz
12:05 – 12:10 pm	(5)		Subcommittee Chair Remarks	Judge Hornak
12:10 – 12:30 pm	(20)	V	Open Discussion & Closing Remarks	Judge Sullivan

MEETING ADJOURNS

4

Committee on Judicial Security May 28-29, 2025
Timed Agenda

Next Meeting: **January 7-8, 2026** (official travel dates are January 6 and January 9)
TBD

5

나. 법원행정처 사법보안국(Judiciary Security Division)

1) 개요

법원행정처 내 사법보안국(Judicial Security Division)이 있고, 그 산하에 ① 사법보안운영과(Judicial Security Operations Branch), ② 비상운영과(Emergency Management Branch), ③ 위협관리과(Threat Management Branch), ④ 물리적 보안과(Physical Security Branch) 등 4개의 과가 있다.

2020년 Salas 사건 이후 법원행정처는 2022년 전년도 연방 사법회의가 승인한 '취약성 관리 프로그램(Vulnerability Management Program)'을 시행하기 시작했다.[42] 이에 따라 사법보안국이 크게 확대되었고, 현재와 같이 4개의 과로 편성되었다. 위협관리과(TMB)가 신설되었고, 사법보안운영과의 경우 직원이 5명에서 34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신설된 위협관리과는 법관 등의 개인식별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감시하고 필요시 삭제조치를 하는데, 이는 'Delete Me'라는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2) 사법보안국의 구조



42) 이하 내용은 www.uscourts.gov/data-news/reports/annual-reports/directors-annual-report/annual-report-2022/facilities-and-security-annual-report-2022 참조.

사법보안국(Judiciary Security Division) 의 구조

1. 사법보안 운영과 (Judiciary Security Operations Branch)

○ **사명(Mission)**

사법부 전반의 보안 프로그램, 정책 조정, 개발, 관리를 통해 연방법원과 법관, 직원 및 방문객을 보호함

○ **비전(Vision)**

사법부 내 모든 법원 및 이해관계인이 안전하고 보호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 문화를 확립함

○ **주요 활동(Supporting Activities)**

- 보안 관련 정책, 지침, 표준 운영절차 개발
- 법원 보안 평가 수행 및 권고안 제시
- 법원 보안직원(Court Security Officers, CSOs) 프로그램 관리
- 보안 장비, 기술 및 서비스의 조달 · 배치 관리
- US Marshals, GSA 등 외부 기관과 협력
- 보안 교육 · 훈련 자료 개발 및 제공

2 . 비상운영과 (Emergency Management Branch) ※ 주로 화재, 태풍 등 자연재해 관련임

○ **사명(Mission)**

사법부 전반의 비상사태 대비 · 대응 · 복구를 지원함

○ **비전(Vision)**

연방법원이 모든 재난 및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비상관리 체계를 확립함

○ **주요 활동(Supporting Activities)**

- 법원 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점검
- 비상훈련 및 모의훈련 시행
- 재난 후 복구 절차 지원
- 연방 · 주 · 지방 비상관리 기관과의 협력
- 법원 내 비상통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 **위협관리과** (Threat Management Branch) ※ 주로 온라인에서 법관의 개인정보 보호

○ **사명**(Mission)

연방법관, 직원 및 법원을 대상으로 한 위협을 사전에 식별 · 평가 · 완화하여 사법부의 안전을 보장함

○ **비전**(Vision)

위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법부 전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위협관리 체계를 구축함

○ **주요 활동**(Supporting Activities)

- 위협 사건 조사 및 분석
- 잠재적 위협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
- US Marshals, FBI 등과 정보 공유
- 위협 대응 절차 및 지침 개발
- 위협 관련 통계 관리 및 보고

4. **물리적 보안과** (Physical Security Branch)

○ **사명**(Mission)

법관, 직원, 방문객 및 법원 시설을 보호하는 물리적 보안 조치를 개발 · 관리 · 유지함

○ **비전**(Vision)

물리적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여 모든 법원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함

○ **주요 활동**(Supporting Activities)

- 보안 장비 및 시스템(출입통제, 감시카메라, 경보장치 등) 설치 · 운영
- 보안 장비 유지보수 및 교체 계획 수립
- 법원 보안 설계 및 건축 기준 제공
- 물리적 보안 평가 및 개선 권고
- 연방 · 주 · 지방 정부와 보안 관련 협력

사법보안 운영과(JSOB)는 사법부를 위한 물리적 보안 및 비상 대책 프로그램의 시행을 조정한다. 직원들은 각 법원과 연방 국선변호인 사무소를 위한 보안 · 준비 프로그램

을 지원하고, 사법부와 행정부 소속 보안기관들[연방보안국(USMS), 연방보호국(Federal Protective Service, FPS), 연방총무청(General Sevices Administration, GSA) 등] 간의 의사소통을 조율한다.

위협관리과(TMB)는 앞서 본 Daniel 법 시행 전인 2022. 3.부터 판사들의 온라인 개인정보(PII) 삭제나 비공개 처리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해 11월까지 600명 이상의 판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위협관리과는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Lexis Nexis, Westlaw, 연례 재정공개 보고서 등 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다른 법원행정처 프로그램과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 소속 보안기관들과 사법부 간의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사법부를 겨냥한 위협을 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 부서는 부서장 1인과 보안 전문요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사법보안 운영과장과의 인터뷰[43)]



▲ 2025. 7. 28. 연방법원행정처 Dan McElroy 사법보안운영과장과 미팅

43) 박병민, 미국사법제도 연구반 2025년 상반기 출장보고서(법원보안), 2025. 8.

○ 주요 경력

- 연방법원 보안업무를 16년 정도 담당함. 그 이전에는 군인이었고 주로 펜타곤에서 근무하였음. 주한 미군으로 대구에 3년 근무한 경력이 있음

○ 보안 관련 주요 협력 기관

- U.S. Marshals가 법원보안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법원청사 방어는 FPS(Federal Protective Service)가 맡고 있음
- USMS는 'Walden Company' 라는 민간 보안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실무 보안인력(CSO, Court Security Offiecer)을 파견 받음
- 그 밖에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연방총무청)가 연방법원 청사의 건축, 임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므로, GSA와도 협력관계가 있음. GSA는 청사 신축, 리모델링시 보안 장비, 출입 통제, 감시 시스템 설치를 조달 · 관리함

○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노력

- 사법보안운영과장인 본인은 2주에 한번씩 U.S. 마샬, FPS, GSA 담당자들과 회의를 개최함. 위 기관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직 U.S. 마샬, FPS, GSA 직원을 채용하기도 함

○ 보안관련 예산

- 2024년 연방사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사법부 총 예산은 86억 달러이고, 그 중 보안 관련 예산으로 8억 3,200만 달러 정도가 사용되었음. 즉 전체 예산의 9.6% 수준임
- 2024년 보안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① 보안직원 인건비로 5억 3,000만 달러, ② 보안시스템, 장비 구입 1억 5,100만 달러, ③ FPS가 요청하는 장비구입으로 9,000만 달러, ④ 청사 보안강화 비용으로 5,400만 달러, ⑤ 법관 및 그 가족 보호 프로그램 비용으로 1,500만 달러를 사용하였음

○ 보안장비

- 연방사법부의 주요 보안장비로 Video Management System(VMS), Intrusion

Detection System(IDS), Physical Access Control System(PACS), Screening 장비(X-ray 스캐너) 등이 있음

○ 보안관련 최근 이슈
-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판사에 대한 위협, 협박 사례가 증가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협박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법원 보안 강화를 위한 법원 청사 신축, 리모델링 등에 있어 조달, 환경, 문화재 이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경우
- 법원행정처 사법보안국은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보안 기관과 협의를 진행함
- 청사 방호에 주된 책임이 있는 FPS가 U.S. Marshals, 지방 법집행기관(경찰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시위를 대비함

○ 연방법관 보호조치
-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관의 민감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조치 등을 취함
- 위협이 심각한 법관의 경우, U.S. Marshals에 의해 24시간 개인 신변보호 조치(Personal Protection Detail, PPD)가 이루어지기도 함

○ 보안 매뉴얼 공유 여부
- 보안 관련 매뉴얼은 공유가 제한되어 있음. 양해 바람

○ 법관 대상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 미국 연방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
- 먼저 18 U.S.C. §111는 연방법관, 연방검사, 연방 법집행관, 그 외 연방 정부의 특정 직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 중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폭행, 저항, 방해, 위협을 가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단순 폭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신체 접촉을 수반하거나 상해를 유발한 경우 8년 이하의 징역, 위험한 무기

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가한 때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18 U.S.C. §115는 연방법관, 연방검사, 법원 직원,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상해·살해 위협한 경우, 위협만으로도 6년 이하의 징역을,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18 U.S.C. §1114는 연방법관, 연방검사, 법원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살인 미수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8 U.S.C. §1361은 연방건물 손괴와 관련된 것인데, "연방 또는 그 부처나 기관의 재산 등을 고의로 훼손, 약탈하거나, 이를 시도한 자는 그 손해가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8 U.S.C. §844(f)는 화재 또는 폭발물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연방 소유 또는 임대 건물 등 연방재산을 훼손, 파괴하거나, 이를 시도한 자는 5~20년 사이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이 초래된 경우 7~40년 사이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 외부기관과의 협력 문제

- USMS, FPS, GSA 등 연방기관은 행정부에 속해 있고, 미국 전역에 토지 관할 업무 분배도 연방법원과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음
- 비상상황에서 협력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예산도 법원이 받아서 제공함. 요즘같이 대통령과 법원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연방기관 고위 담당자들이 법원보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함
- 사법부 자체적으로 보안을 담당하길 희망하지만, 이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서 쉽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갖고, 전직 USMS, FPS, GSA 직원을 사법보안국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함

다. U.S. Marshals Services[44)]

1) 개요

미국 연방보안관실(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Marshals)은 1789년 9월 24일 의회가 법원조직법(Judiciary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설립되었다. 미국 연방보안관국은 전국의 연방보안관들에게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969년에 설립되었다. 미국 연방보안관국은 법무부 산하의 국(bureau)이며, 미국 연방보안관국 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미국 연방보안관국의 임무는 연방법원 시설의 보안과 판사 및 기타 법원 직원의 안전 보장, 범죄자 체포, 연방 수감자들을 구금과 교정 시설로의 수송, 연방법원의 명령 집행, 불법 수단으로 획득한 자산 압류, 몰수된 자산의 구금 · 관리 · 처분, 위험에 처한 증인들과 그 가족의 안전 보장, 예산 징수와 배분 등 연방법을 집행하고, 연방 사법 시스템의 사실상 모든 요소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미국 연방보안관들은 94개의 각 연방법원 관할 구역의 활동을 지휘한다. 미국 연방보안관국은 약 3,892명의 공인된 연방 부보안관 및 형사 수사관들과, 1,596명의 공인된 행정 직원 및 구금 집행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기관의 중심을 이룬다.

미국 연방보안관국은 그 지향점(Vision)을 미국의 사법 체계를 보호하고, 방어하며, 집행하는 것,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것,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 모델이 되는 것, 공공과 우리의 협력 기관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두고 있다.

가치(Values)로서 정의(법의 공정한 집행), 청렴성(행동과 가치의 일관성), 봉사(미국 사법 체계를 위한 자원으로서의 역할), 통합(우리 사명에 사람들을 일치시키는 것), 효과적인 결정을 통한 역량 강화, 다양한 인력과 협력자를 보유함으로써 이루는 포용성 등을 들고 있다.

---

44) 이 부분은 이혜미 부장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가 작성하였다. 이하 내용 중 그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기관의 홈페이지(www.usmarshals.gov/)에 게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2) 조직 구성

미국 연방보안관국은 2024. 12. 19. 기준 아래 표[45]와 같이 국장(Director) 및 부국장(Deputy Director) 하에 사법 보안 담당 부국장(Associate Director, Judicial Security), 수사 담당 부국장(Associate Director, Investigations), 행정 담당 부국장(Associate Director, Administration), 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94개의 연방 관할 구역 연방보안관(94 U.S. Marshals)이 있다.

사법 보안 담당 부국장(Associate Director, Judicial Security) 하에 사법 보안부(Judicial Security Division), 사법수감자 수송시스템(Justice Prisoner Air Transportation System), 작전보조부(Operations Support Division), 수감자 운영부(Prisoner Operations Division), 증인 보호부(Witness Security Division) 등이, 수사 담당 부국장(Associate Director, Investigations) 하에 도주자 수사부(Fugitive Investigations Division), 수사 작전부(Investigative Operations Division), 정보실(Office of Intelligence)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사법부 보호와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는 사법 보안부(Judicial Security Division)는 보호 정보 작전, 사법 시설의 물리적 보호, 개인 보호, 그리고 기술적 보안 작전을 포함한 미국 연방보안관국의 연방 사법 보안 프로그램 전반을 총괄한다.

위 부는 연방 사법부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고, 혁신적인 보호 기법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모든 물리적 및 개인 보안 요구를 위한 최신 장비와 신기술을 제공하고, 긴급 상황에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보장하며, 일상적인 사법 보안 임무 중에는 감시나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과 전문 보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6]

45)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FY 2024 Annual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2025. 1.), 1쪽.

46)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Judicial Security Proces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Evaluation and Inspections Division(2007. 11.), 6쪽.

ORGANIZATIONAL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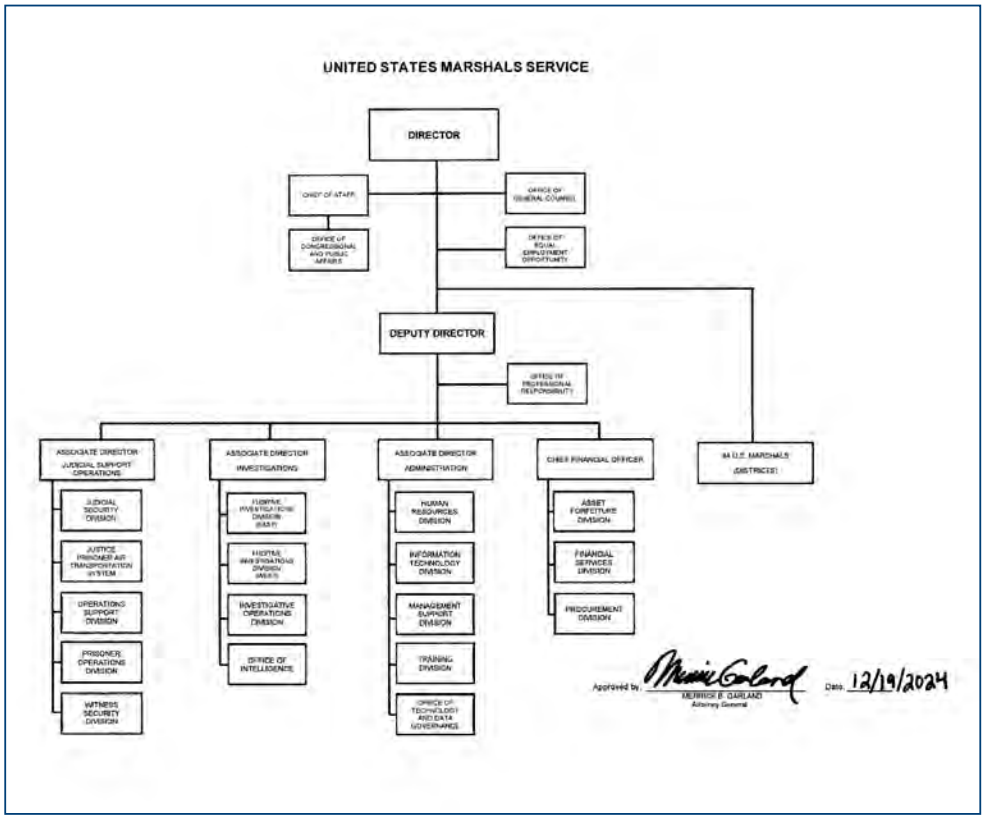

USMS Organizational chart signed by AG Merrick Garland on 12/19/2024.

3) 역할

연방보안관국은 연방 사법 체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보안관국은 연방법원의 집행 부서이며, 사실상 모든 연방 법 집행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연방보안관국의 임무에는 연방 사법부를 보호하고, 도주자를 체포하는 것, 범죄자들이 불법 행위로 획득한 압수 자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는 것, 연방 수감자를 수용하고 이송하는 것, 그리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되는바, 아래에서 사법부의 보호와 관련된 역할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살핀다.

가) 사법 보안(Judicial Security)

연방보안관국 산하의 사법보안부(Judicial Security Division)는 사법 절차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된 상태로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연방 판사, 배심원 및 기타 연방 사법부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등 사법 절차의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에 대한 위협을 예측하고 억제하며,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보호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석 조사관(Senior Inspectors), 연방 부보안관(Deputy Marshals), 그리고 법원 보안 요원(Court Security Officer, CSO)은 미국 전역의 94개 연방법원 관할 구역과 12개 연방 항소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연방법원 시설의 보안을 제공한다.

연방보안관국은 재직 중인 판사 2,700명 이상과 약 30,300명의 연방 검사 및 법원 관계자들을 보호하며, 전국의 연방법원을 방문하거나 근무하는 일반 국민들 역시 함께 보호한다. 또한 사법보안부는 5,300명 이상의 법원보안요원(Court Security Officers) 관련 계약을 관리하고, 판사들의 자택에 설치된 1,600개 이상의 주거용 보안 시스템을 유지 · 관리한다. 700곳 이상의 연방 시설에 물리적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연방보안관국은 각 법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과 검색 장비를 개발, 관리, 운영한다.

사법부, 연방 검사, 기타 법원 관계자에 대한 명시적 위협 및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그 위험 수준을 평가받는다. 2018 회계연도 기준, 미국 연방보안관국은 시설 관련 사건 5,038건에 대응하고, 보안 사건 1,756건을 평가했으며, 2,255건의 예비 위험 평가를 실시했다. 이러한 평가와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활동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 총 531건의 보호 목적 수사가 개시되었다.

연방보안관국의 사법보안요원은 재판 과정, 위협 상황, 사법 회의 등 모든 단계에서 최첨단 보호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은 물론, 일상적인 사법 보안 임무 수행 중에도 눈에 띄지 않는 감시와 보호를 보장한다. 테러 및 조직범죄로 인한 고위험 환경으로 인해 현재의 위협 양상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복잡한바, 연방보안관국의 사법보안 인력은 최첨단 보호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여 재판 절차, 위협 상황, 그리고 사법 회의의 모든 단계에서 전방위적인 안전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법원 보안(Court Security)과 관련하여서는, 연방보안관국은 시설 보안에 있어 가장 뛰어난 전문가 기관이다. 법원 보안 프로그램(Court Security Program)은 모든 연방법원 시설에서의 검색 및 보호를 통해 연방 사법 절차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을 포함하여 연방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안전을 보장한다.

연방보안관국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6,000명 이상의 계약직 법원 보안요원(Court Security Officer, CSO)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개발, 실행, 개선함으로써 이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법원 보안요원은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의 제3부(Third Branch)인 사법부의 내부 방어에 있어 최전선 역할을 한다. 2025년 7월 현재 미국 연방보안관국과 법원 보안요원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Walden Security, Paragon Systems, Centerra Group, APSI-Centerra 등 네 곳이다.

사법보안부의 국립 사법보안 센터(National Center for Judicial Security, NCJS)는 법원 보안, 사법 관계자 보호, 법치 수호와 관련된 전 세계적 노력에 대한 전문 지식, 교육, 개발을 제공한다. 국립 사법보안 센터는 국내외 법 집행 기관 및 사법부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시설 및 개인 보안, 연구 개발, 교육, 침입 탐지 등의 핵심 분야에서 지원한다.

국립 사법보안 센터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보안팀과 보호 대상자 모두를 지원한다. 국립 사법보안 센터는 사법보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 도시, 카운티, 주, 연방, 국제 관할에 광범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설 및 직장 보안, 개인 보안, 법정운영 절차 평가, 보호 업무, 총기 난사/적극적 위협 대응, 그리고 사법 절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한다. 국립 사법보안 센터의 노력은 전술, 기법,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전력 배가 효과를 제공하며 보다 강력하고 통합된 전세계적 법원 보안 전략에 기여한다.

나) 수감자 구금(Custody of Prisoners)

연방보안관국은 연방 수감자의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된 구금, 관리 및 이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법원의 구금 명령 시점부터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 후 형 집행을 위해 연방 교정국(Federal Bureau of Prisons)에 인계될 때까지 이어진다. 연방법원(U.S. District Court)이 구금을 명령하면, 미국 연방보안관국은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든 수감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다) 구금 피고인 및 수감자 관리(Defendants in Custody and Prisoner Management)

연방보안관국은 전국의 연방, 주, 지방, 민간 교정시설에 63,000명 이상의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고 전(pre-sentenced) 수감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연방보안관

국은 약 1,200개의 주 및 지방 정부와 계약을 맺어 구금 공간을 임차한다. 연방보안관국이 구금하고 있는 수감자의 75%는 주, 지방, 민간 시설에 구금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연방 교정국(Federal Bureau of Prisons, BOP)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연방보안관국은 구금 시설을 소유하거나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라) 도주자 수사(Fugitive Investigations)

연방보안관국은 타 연방 정부, 주, 지방 법 집행 기관의 도주자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움과 전문 지식을 제공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연방보안관국이 주도하는 도주자 검거 태스크포스는 연방, 주,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84,000명 이상의 도주자를 체포하였고, 약 100,000건에 달하는 영장을 집행했다.

마) 증인 보호 프로그램(Witness Security Program) 운영

연방보안관국은 정부 증인들과 그 직계 가족의 보안, 건강, 안전을 보호한다. 이는 마약 밀매업자, 테러리스트, 조직범죄 조직원 및 기타 중범죄자에 대한 증언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Witness Security Program)은 1970년 조직범죄 통제법(Organized Crime Control Act)에 의해 승인되었고, 1984년 종합범죄 통제법(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에 의해 개정되었다.

연방보안관국은 1971년 프로그램 시작 이래로 19,250명 이상의 증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재배치하며, 새로운 신원을 부여해왔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은 조직범죄 및 테러와의 싸움에 있어, 독특하고 귀중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연방보안관국은 변론 전 회합(pretrial conferences), 재판에서의 증언, 기타 법정 출석 등 고위험 환경에 있는 증인들에게 24시간 보호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지침을 준수한 증인 보호 프로그램 참가자 중에서 연방보안관국의 적극적인 보호 하에서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조직범죄, 마약 밀매, 테러, 기타 중범죄 조직과 싸우는 데 있어 중요한 효과적인 도구이다. 미국 연방보안관국의 증인 보호 담당 인력은 증인 보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주요 전문가이며, 전 세계 여러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침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바) 자산 몰수(Asset Forfeiture)

자산 몰수 프로그램(Asset Forfeiture Program)은 1984년 의회가 종합 범죄 통제법(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을 통과시켰을 때 만들어졌다. 이 법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응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방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필요한 법적 · 규제적 수단을 제공하였다.

연방보안관국은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자산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의해 압수 및 몰수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각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연방보안관국은 부동산, 상업용 사업체, 현금, 금융 상품, 차량, 보석,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자산을 관리한다.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은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보상, 다양한 법 집행 활동 지원에 사용된다. 연방보안관국은 범죄 피해자 및 기타 무고한 제3자에게 수익 배분 및 보상금을 관리하며, 이 모든 것은 범죄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사) 전술 작전(Tactical Operations)

전술작전부(Tactical Operations Division, TOD)는 21세기 연방보안관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전술작전부는 위기 대응, 조직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국이 직면한 법 집행 및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전술 작전을 선도하고자 한다. 전술작전부는 특수작전팀(Special Operations Group), 비상대응관리실(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자원관리실(Office of Resource Management), 전략 국가 비축물 보안작전(Strategic National Stockpile Security Operations), 위기대응서비스실(Office of Crisis Services), 보안프로그램실(Office of Security Programs), 전략기술실(Office of Strategic Technology), 업무통합센터(Business Integration Center) 등 연방보안관국 산하 부서들을 지휘, 조정, 관리 및 지원한다. 전술작전부는 연방보안관국 국장이 특별한 법 집행 임무 또는 보안 작전을 승인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전 관련 사안을 조율하고 실행한다.

아) 착용형 바디카메라 프로그램(Body Worn Camera Program)

착용형 바디카메라 프로그램 사무국(Body Worn Camera Program Office, BWCPO)

의 임무는 연방보안관국 전반에 걸쳐 착용형 바디카메라(BWC)를 도입하여 대중의 신뢰,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 피해자 · 증인 지원 프로그램(Victim Witness Assistance Program, VWAP)

연방보안관국의 피해자 · 증인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보안관국이 수사한 범죄의 피해자 및 증인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형사 사법 절차의 수사 단계 동안 사건 진행 상황, 자원,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피해자 · 증인 전문 담당자는 연방 범죄 피해자들이 서비스와 통지를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이는 연방법과 법무부장관의'피해자 및 증인 지원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다.

4) 사법부 보호와 관련한 미국 연방보안관국의 역할

가) 개관

연방보안국(U.S. Marshals Service)은 연방법원의 보안을 총괄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28 U.S.C. §566(e)(1)(A)는 "USMS는 연방 판사, 법원 직원, 배심원, 증인 및 기타 위협받는 자들을 보호하고, 이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범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USMS는 법관 등에 대한 위협 평가, 보호 조치 시행, 경호원 배치 등을 수행한다. 이하에서는 사법부 보호와 관련된 연방보안관국의 활동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히 살핀다.[47]

나) 연방보안관국의 사법부 보호

위협의 증가와 보안 수요의 확대는 사법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연방보안관국은 연방법원의 집행기관으로서, 800곳 이상의 사법 시설, 약 2,700명의 연방 판사, 그리고 약 33,300명의 연방검사 및 법원 관계자에게 보안을 제공한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방보안관국는 2022년 5월부터 대법관들의 자택을 주 7일, 하루 24시간 보안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 최근 수년간 연방 판사들을 향한 확인된 위협은 과거 평균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24 회계

47) 이하의 내용은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FY 2024 Annual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2025. 1.) 3쪽 ~ 8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연도에는 위협에 대한 조사 건수는 감소했지만, 보호 대상자 및 장소에 대한 우려되거나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전자 통신의 수와 강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매년 부보안관(Deputy U.S. Marshals)들은 수천 건의 통신을 조사하여 사법부를 보호하고 판사, 변호사, 배심원 및 법원 구성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보호 조치들은 대중에게 항상 보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 사법 체계의 안전과 안정성, 무결성, 그리고 미국 정부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증가하는 사법 보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보안관국은 핵심 자산과 기능을 재조정하여 사법 위협 부서(Judicial Threat Branch)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사법 위협 센터(Judicial Threat Center), 사법 위협 작전 센터(Judicial Threat Operations Center), 그리고 행동 분석 부서(Behavioral Analysis Unit)를 통합하여 사법 보안 문제에 대응한다. 사법 위협 부서의 인력은 각 지역의 위협 수사를 지원하며, 필요한 곳에 수사 역량이 전국적으로 배분되도록 보장한다.

사법 위협 부서는 보호 수사, 고위험 인물 및 장소 관련 사건, 국제 재판 출장, 고위험 재판, 최고 수준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 및 행사, 보호 정보 분석 등에 있어 전문 지식과 조언,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 위협 작전 센터는 사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위협 활동, 중대한 사건, 수사 작전,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고 지휘한다.

연방보안관국 산하 보안유지실(Office of Security Maintenance)은 사법 시설의 보안 시스템 무결성을 책임지고 있다. 보안유지실은 전자 보안 시스템(electronic security systems) 지원을 강화하고, 사법부와 연방보안관국 시설 전반에 걸친 전자 보안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사법 임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보안관국은 연방 집행관(Federal Enforcement Officer)을 창설하여 법원 보안, 구치소 운영, 수감자 수송 및 기타 법 집행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법관 자택 보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보안관국은 보호 작전 지휘센터(Protective Operations Command Center)를 활용하고 있는데, 연방보안관국은 전 세계 미국 연방보안관국 보호 작전에 대한 정보 수집, 통합, 분석 및 전파를 위한 원스톱 지휘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보안관국의 사법 보호 활동의 예로,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3월 23일까지,

하와이 관할에서 진행된 고위험 재판 전후로 보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사 노력을 총괄했다. 크레센트 실드(Crescent Shield) 작전이라 명명된 이 임무는, 갈취, 살인, 유괴, 강도, 방화 등의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관련한 판사와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청부살인 음모로부터 시작되었다. 연방보안관국은 FBI 및 타 법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 수사를 지원하고 지침을 제공했다. 현장 분석관들은 핵심 정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부보안관들은 24시간 경호를 실시했으며, FBI 수사관들과 다음 단계 수사 및 완화 전략을 조율하여 위험을 완화시켰고, 해당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였다.

다른 예로,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판사 에일린 캐넌(Aileen Cannon)과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판사 타냐 처트칸(Tanya Chutkan)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된 판결을 내렸고, 이러한 판결로 인해 판사들을 향한 위협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방보안관국의 보호 임무 배치를 필요로 했다. 연방보안관국은 캐넌 판사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처트칸 판사에 대해서는 2023년 8월부터 보호 임무를 시작하여 보호 활동을 2024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보호 임무를 수행하면서 연방보안관국은 보호 대상자가 가는 곳엔 언제나 부보안관도 따라가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어느 한 보호 임무에서는 보호 대상자가 사이클과 러닝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사람이었는데, 2024 회계연도 동안 해당 보호팀은 자전거로 13,000마일 이상, 달리기로 450마일 이상을 동행하며 모든 운동 루틴을 함께 수행하고, 대상자와 함께 단거리 철인 3종 경기, 5km 마라톤, 자전거 경주 등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고도 변화 8,500피트 이상이 포함된 126.4마일의 혹독한 자전거 코스도 완주하였고, 워싱턴 D.C.에서 메릴랜드 커벌랜드까지 약 185마일을 자전거로 이동하는 대장정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다) 자택 보안 시스템 운영[48)]

2005년 6월 14일 연방 법원행정처는 모든 연방판사에게 자택에 경보 시스템 설치를 원하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2,200명의 판사 중 약 1,600명이 경보 시스템 설치를 요청했다.

2005년 12월, 연방보안관국는 자택 경보 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시범 설치를

48) 이하의 내용은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FY 2024 Annual Report, vii쪽 ~ viii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거친 뒤, 2006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계약업체는 1,531명의 판사 자택에 경보 장치를 설치했다. 현재는 경보가 울릴 경우, 계약업체가 판사의 긴급 연락망을 사용하여 대응한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계약업체는 지역 경찰에 통보한다.

연방보안관국은 2024 회계연도에 이르러 침입 감지 및 비상경보 시스템의 중앙 모니터링 기능을 민간 업체에서 연방 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시작하였다.[49] 또한 이 조치는 5년마다 새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문제를 없애고, 계약 변경 시 발생하는 대규모 서비스 중단 위험을 방지할 것이다.[50]

5) 기타 참고 사항[51]

가) 법관신변 보호(Personal Protective Details, PPD) 소개

앞서 본 것과 같이 연방보안국은 필요한 경우 법관신변 보호 서비스(PPD)를 제공하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소개한다.

연방법관과 직원에 대한 PPD는 여러 형태로 제공된다.[52] 대표적으로 판사 개인에 대한 무장 경호원의 동행 경호, 재판 중, 출장 중 이동 경로의 사전 점검 및 안전 확보, 자택에 CCTV와 경보 장치 등 주거 보안 인프라 설치, 법원 건물 출입 통제 및 금속 탐지기 · X-ray 검사 등의 보안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협박 서신, 전화, 온라인 위협 등이 접수될 경우, 위협의 신뢰성과 긴급도를 평가하여 단기 또는 장기 경호 조치를 시행한다.[53]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보호 결정은 기관마다 기준이 상이하다. 명백하고 구체적인 협박이나 폭력 가능성이 입증될 때, 재판의 민감도나 판사의 대중적 노출도, 피고인의 범죄 경력이나 정신질환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호 여부와 수준이 결정된다.[54] 그러나 이 과정은 표준화된 공개 매뉴얼 없이 개별 사건별로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어

49)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FY 2024 Annual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2025. 1.), 49쪽.
50)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FY 2024 Annual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2025. 1.), 49쪽.
51) 이 부분은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가 추가하였다.
52)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Security Protection: Standardization Issues Regarding Protection of Executive Branch Officials, GAO/GGD/OSI-00-139, July 2000.
53) U.S. Marshals Service, Hunters and Howlers: Threats and Violence Against Federal Judicial Officials in the United States, 1789-1993, February 1998.
5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ho Protects Whom? Federal Official and Judicial Security and Personal Protective Details, R47731, July 16, 2024.

보호 수준과 방식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55]

연방법원 판사 보호 활동 예산은 미국 법무부(DOJ)의 운영 예산과 사법부 보안 프로그램 예산(Judiciary Facility Security Program, JFSP) 등에서 분담된다.[56] 최근 의회에서 판사 신변보호와 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및 법제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보호 대상과 예산의 구체적 배분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57]

나) 최근 예산 증액 요청

U.S. Marshals Service는 2025회계연도에 총 3,81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예산을 추가로 의회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810만 달러는 'Office of Protective Services'라는 새로운 조직 신설 및 53명 규모의 전문 인력 채용에 투입될 예정이고, 나머지 1,000만 달러는 판사 개인정보 보호 보조금으로 활용된다. 이 보조금은 연방법관의 주거정보 노출로 인한 위협을 줄이기 위한 앞서 본 Daniel Anderl Judicial Security and Privacy Act에 근거한다.[58]

다) 보안 책임 이전 논의

예산 부족과 법관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연방판사와 의회 관계자들은 U.S. Marshals Service의 보안책임을 사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 산하 조직이 아닌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보안 체계를 관리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판사들의 안전과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적 움직임의 일환이다.[59]

참고로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2015년 보고서[60]는 연방보안국과 연방법원행정처 사이에 보안 관련 정보 · 분석이 제대로 공유되지

55) GAO, Security Protection: Costs of Services Provided for Selected Cabinet Officials, GAO/GGD-95-50, December 1994.
56) U.S. Department of Justice, FY2024 Budget Request, Judiciary Facility Security Program.
5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ho Protects Whom? Federal Official and Judicial Security and Personal Protective Details, R47731, July 16, 2024.
58) "Justice Department Fiscal Year 2025 Funding Request", U.S. Department of Justice, justice.gov.
59) "Judges weigh taking control of their own security amid threats", Wall Street Journal.
60) GAO, "Federal Courthouses: Progress Made on Security, but Improve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Needed", GAO-17-215.

않는 점, '위협'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상이한 점, 연방법원의 보안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협력 부족으로 인한 이행 지연이 발생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통합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강화가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기도 하였다.

6) Ralph Rosado U.S. Marshal 수석조사관(Senior Inspector), Kiyo Matsumoto 연방판사와의 인터뷰[61]

2025. 7. 25.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근무하는 U.S. Marshals 소속 Rosado 수석조사관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다. 위 법원에 근무하는 Matsumoto 판사의 소개로 Rosado와 미팅할 수 있었다.

Rosado가 법정 내 구속피고인 수용실, 통로, 법원 내 마련된 U.S. Marshals 사무소, 영상분석실 등을 견학시켜 주었으나, 보안 문제로 사진을 촬영하지는 못하였다. U.S. Marshals 오피스 공간은 거의 한 층을 다 사용할 정도로 그 공간이 상당했고, 내부 가구나 인테리어 등이 상당히 고급스러웠다.



▲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 청사 정문



▲ 마츠모토 판사의 법정, 5대의 CCTV, 법대 및 참여관 책상 아래에 비상벨 등이 설치되어 있음. 법대는 방탄이라고 함. 원격으로 법관 출입문을 열어 비상탈출이 가능하다고 함

61) 박병민, 미국사법제도 연구반 2025년 상반기 출장보고서(법원보안), 2025. 8.



▲ 연방법원 청사 내 별도로 마련된 US Marshals 사무실 입구



▲ Marshal인 Ralph Rosado와 기념촬영



▲ 원로 연방판사(Senior U.S. Judge) Kiyo Matsumoto 집무실에서 기념촬영

가) Ralph Rosado (Senior Inspector) 인터뷰 주요 내용

○ [현황]

-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은 50여명의 법관이 있는데, 마샬은 4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음
- 'Walden Securiy'[62]라는 민간 보안업체를 통해 보안인력(Court Security Officer,

62) 미국 테너시주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의 민간 보안업체 중 하나로서 직원이 8,700명 정도이다. 연방법원 보안직원 파견 업체로 유명하다.

CSO)을 파견 받는데, 뉴욕동부 연방법원에는 약 110여명의 CSO가 근무 중임

※ 마샬은 흰 셔츠를 입고, 개인장비를 다 착용하지 않은 반면, CSO는 남색 유니폼에 개인장구(방탄조끼, 총기, 최루액 스프레이, 수갑, 진압봉, 무전기 등)를 완전히 착용하고 근무 중이었음

- 법원장, 사무국장 등과 협의하여 법원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법원 내에 보안위원회를 두고 있지는 않음

○ [교육 여부, 정도]

- 본부에 Marshal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채용 시, 그리고 6개월마다 refresh 프로그램이 운영됨
- U.S. Marshals에서 CSO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CSO에 대한 교육책임은 원칙적으로 용역업체(Walden Security)에 있음. 교육 강사는 대부분은 은퇴한 뉴욕경찰(NYPD)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보안장비]

- X-ray 탐지기는 Smiths Detection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IP카메라, 영상감시 장치, 출입통제장치 등은 Bosch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보안장비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널리 쓰이는 제품들이고 특별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음. 보안문제로 사진 촬영은 어려움

○ [보안관련 최근 이슈]

- 과거에 비해 온라인, SNS 등을 이용한 법관에 대한 협박 사례가 많아짐
- 정치적인 사건 등으로 인해 법원 청사 앞에 대규모 시위도 많아졌고, 마약이나 총기 등 고위험 사건에 대한 대처도 중요한 보안 이슈임

○ [대규모 시위 대응]

- 연방 뉴욕동부법원의 인력만 가지고 대규모 시위에 대응하기 어려움. 대규모 시위가 예상될 경우, 본부에서 'Threat Assessment and Contingency Planning' 절차를 가동함
- 뉴욕경찰(NYPD), FPS(Federal Protective Service), FBI 공동테러 대응팀 등 다른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외곽통제, 비상대응을 준비함. 필요한 경우, 법원청사 접근로 폐쇄, 보안 검색 강화, 추가 인력 배치 등 조치를 함

ㅇ [법관 보호 사례, 방법]

- 본부에서 법관 위협 사례를 조사, 평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함.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관 위협이 일상이 된 것으로 느껴짐. 특히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위협이 크게 증가함
- 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호조치 발동 여부가 결정됨. 예를 들어 홈리스의 위협과 컬럼비아 마약 카르텔 범죄자의 위협이 다르게 평가될 수 밖에 없음
- 보호조치로 주거지 보호 프로그램(Residential Security Program)과 신병경호(Personal Protection Detail)가 운용됨. 필요한 경우 24시간 무장 경호가 보장됨
- 마샬은 다른 연방요원과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며,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짐

ㅇ [보안매뉴얼 공유 여부]

- 대외비 자료이므로 공유가 어려움. 양해 바람

ㅇ [외부기관이 보안책임을 담당하는 문제]

- 법원의 보안을 법무부 산하 Marshal이 담당하는 것이 이상하기는 함(Weird). 법관은 우리의 Boss가 아니고, 통제할 수 없으며(no control), 그저 요구할 수 있을 뿐임(just ask). 매우 흥미로운 관계임
- 법원 자체적으로 보안을 담당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됨

나) Kiyo Matsumoto 판사[63]와의 보안 관련 인터뷰 주요 내용

ㅇ [법원에서 안전함을 느끼는지]

- 법원에 보안카메라가 많고, 법정이나 집무실에 알람 등이 잘 배치되어 있으며, 출

63) 3세대 일본계 미국인(만 69세), UC 버클리 졸업, 조지타운 로스쿨 졸업, 변호사, 연방검사를 거쳐 2004년 뉴욕동부 연방지법 Magistrate Judge 임명, 2008년 연방판사 임명. 현재는 Senior Judge임.

입통제가 잘 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느끼는 편임. 마샬이 법원보안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함
- 10여년 전에 재판당사자로부터 스토킹 당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보안직원(CSO)의 도움을 받아 스토킹 범인을 체포하여 기소할 수 있었음

○ [법관 위협의 정도]
-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한 위협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느껴짐
- 남미 마약 카르텔 범죄 사건이 제법 있는데, 이러한 고위험 사건을 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 법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재판 진행에도 신경을 많이 씀. 마약 카르텔 사건의 경우 공동피고인 사이에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재판 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함

○ [외부기관이 보안을 담당하는 문제]
- 개인적으로는 마샬이 잘 훈련되어 있고 전문성도 있으므로, 마샬이 법원보안을 책임지는 것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다만 사법부 조직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함
-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법원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아 연방정부에 속하는 U.S. Marshals에서 법원보안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염려가 들기는 함.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법원 외부 기관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법원보안이 갖는 의미]
- 법원에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감. 법원에 오는 모든 참여자가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어야 헌법이 정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음

라. FPS 및 GSA

1) 연방보호국(Federal Protective Service, FPS)[64]

FPS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기관으로 연방정부

64) 이하 내용은 www.dhs.gov/federal-protective-service 참조.

가 소유 · 임차 · 관리하는 연방 건물과 그 내 · 외부의 직원 · 방문객을 보호하는 연방 사법집행 기관이다.

연방법원이 단독건물이 아니라 연방청사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FPS도 연방법원 청사 보안과 관련한 중요한 외부 협력기관이다.

연방법원 보안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연방법원 내부(사법부 점유 구역)와 법정 보안 · 법관 보호는 연방보안국(USMS)이 책임을 진다. 이는 양 기관 사이의 양해각서(MOU) 및 관련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GSA(연방총무청)가 관리하는 연방 종합청사, 공용구역 · 외곽 등에서는 FPS가 보안 · 법 집행을 수행하거나, 계약직 보안요원을 통해 출입통제 · 검색 · 공용 구역 순찰 등을 담당할 수 있다. 때문에 일부 법원청사에서는 FPS와 USMS가 각각 구역을 나누어 물리적 보안을 제공해 왔고, 이러한 구조적 복합성은 GAO(감사원) 보고서[65]에서 개선 과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연방법원 청사가 연방 종합청사 내에 위치하거나 공용 출입구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출입구의 1차 검색은 FPS가 담당하고, 법정 구역 내부와 재판 관련 구역 보안은 USMS가 맡는다.

법원 사건과 관련된 대규모 시위가 연방재산 경계 내 · 인접 지역에서 발생할 때, FPS는 '연방재산 보호' 규정과 관련 법령 · 규칙을 집행하고(타 부처 · 경찰과 공조), 질서유지 · 출입 안전을 보장한다.

2) 연방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66]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연방총무청)는 연방정부의 행정 ·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949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연방 건물 · 부동산 관리, 물품 · 서비스 조달, IT 솔루션 제공 등을 담당한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 '정부의 소유주(the government's landlord)'로 불린다.

GSA는 연방법원 청사를 포함한 모든 연방청사의 물리적 인프라를 관리한다. 청사 신축 · 개축 시 보안 강화를 위한 건축 설계(출입구 배치, 방탄 유리, 차량 저지 장치, 안전

65) GAO, "Actions Needed to Enhance Capital Security Program and Improve Collaboration", GAO-17-215.

66) 이하 내용은 홈페이지(www.gsa.gov/) 주로 참조.

한 피난 동선 등)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연방법원행정처, 연방보안국, FPS와 협력하여 보안 요구 사항을 건물 설계 · 시공 단계부터 반영한다. 연방법원이 요청한 보안 강화 요구 사항도 GSA가 실제 공사와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앞서 본 것과 같이 FPS는 연방청사의 외곽 · 공용부 보안을 담당하는데, 그 인력배치, 보안 검색 장비 설치 위치, 출입구 운영 방식 등은 건물 운영 주체인 GS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청사 보안은 'U.S. Marshlas(**법원 내부**)–FPS(**청사 외곽**)–GSA(**건물 관리**)' 3자 협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마. 연방대법원 경찰 (U.S. Supreme Court Police)[67]

1) 개요

연방대법원 경찰은 연방 법 집행 기관으로, 대법원과 대법관, 직원, 내빈, 방문객을 보호함으로써 대법원의 헌법적 사명이 온전히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이며 연방 사법부를 이끌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한 회기 동안 약 7,000 ~ 8,000건의 새로운 사건이 심사를 위해 접수되고, 매년 전 세계에서 약 50만 명의 방문객이 연방대법원을 찾는다. 연방대법원 경찰은 현재 198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2) 역사

1932년,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 소속의 소수 인원이 새로 건설 중인 연방대법원 건물의 공사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선발되었다. 건설 전까지 연방대법원은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내에 위치해 있었다.

대법원 건물이 완공된 후, 의회는 독립된 연방대법원 경찰 조직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1935년에 창설된 연방대법원 경찰은 새로 완공된 대법원 건물과 대법관, 직원, 내빈, 방문객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초기 대법원 경찰은 국회의사당 경찰에서 선발된 33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었다.

대법원 외부에서도 법 집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경찰관들은 컬럼비아 특별구

67) 이 부분은 이혜미 부장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가 작성하였다. 이하 내용 중 그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기관의 홈페이지(www.scuspd.gov/department/)에 게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District of Columbia)로부터 특별 경찰관(Special Police Officers)으로 임명을 받았으며, 임명과 함께 체포 권한도 부여되었다. 1935년 당시, 경찰관의 직책은 경비원(guard)이었다. 경비원은 대법원 보안관(Marshal)이 채용하고 미국 대법원장이 승인했다.

정확한 시점은 미상이나, 그 후 1935년과 1941년 사이에 이 조직은 연방대법원 경찰(Supreme Court Police)로 불리기 시작했다. 1949년 6월 6일 대법원장의 지시 하에 대법원 보안관(Marshal)이 직원을 특별 경찰관(Special Policemen)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연방대법원 경찰이 대법원 건물 및 부지 내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었다. 이 법은 1946년 국회의사당 경찰(Capitol Police Force) 창설을 허용한 법률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다.

1955년에도 경찰 인원은 여전히 33명이었지만, 총기 훈련, 응급처치, 민방위 훈련, 법 집행 관련 법률 강의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1982년, 워렌 E. 버거 대법원장(Warren E. Burger)은 연방대법원 경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의회에 요청했고, 1982년, 연방대법원 경찰을 연방 법 집행관(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으로 정식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3) 연방대법원 청사 보안 관련 규정

미국 연방법전(U.S.C.) 제40편 §6102조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연방대법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규정을 대법원 보안관(Marshal)이 제정하고 미국 대법원장이 승인하였다. 그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워싱턴 D.C. 제1가 북동 1번지(1 First Street, N.E., Washington, D.C. 20543)에 위치한 대법원 건물은 연방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그 외의 시간에는 건물이 폐쇄되나, 정당한 업무가 있는 경우 관련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될 수 있다.

② 대법원 보안관(Marshal of the Supreme Court)은 건물 및 부지, 그 안의 인원 및 재산 보호, 혹은 적절한 질서와 예절 유지를 위해, 40 U.S.C. 6102에 명시된 책임에 따라 언제든지 대법원 건물 및 부지 또는 그 일부를 일반에 폐쇄할 수 있다. 건물이나 부지, 또는 그 일부가 폐쇄되었음을 통보받고도 경위의 허가 없이 진입하거나, 퇴거 요청

을 받고도 떠나지 않는 자는 체포 및 40 U.S.C. §6137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 대법원 보안관(Marshal of the Supreme Court)의 허가 없이, 대법원 건물 안이나 부지 내에서 총기, 폭발물 또는 화염 장치, 대법원 재산이나 대법관, 직원, 방문객, 일반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타 물질, 자재, 물품을 소지하거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지니는 것은 불법이다. 대법원 경찰(Officers of the Supreme Court police)은 위 사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거시킬 권한을 가진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40 U.S.C. §6137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④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라 함)은 목줄 길이가 4피트(약 1.2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줄로 묶여 있지 않는 한, 개를 대법원 부지 내에 출입시키면 안 된다. 소유자는 개가 대법원 부지 내에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하거나, 조각상, 의자, 벽, 분수, 기타 구조물, 또는 나무, 관목, 식물, 잔디를 훼손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개가 대법원 부지 내에서 배변했을 경우, 소유자는 즉시 배설물을 치워야 한다. 소유자가 장애인으로서 보조견이 필요한 경우 또는 법 집행관으로서 훈련되고 허가된 경찰견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를 대법원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40 U.S.C. §6137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⑤ 어떠한 사람도 대법원 부지 내에서 소음 공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서 '소음 공해'란 (1) D.C. 규정 제20편 2799.1항에 정의된 소음이거나, (2) 대법원의 질서와 예절 또는 대법원이 승인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소리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40 U.S.C. §6137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⑥ 대법원 부지의 외곽 보도에서의 표지물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규제된다. 골판지(cardboard), 포스터지(posterboard), 또는 천으로 만들어진 표지물만 허용된다. 지지대는 전부 나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하고 속이 비어 있지 않아야 하며, 가장 두꺼운 부분이 1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무 지지대에는 못, 나사, 볼트형 고정 장치 등이 튀어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 손으로 들고 있는 표지물은 크기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손에 들지 않는 표지물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허용된다. 크기는 최대 4피트 길이, 4피트 너비, 1/4인치 두께를 넘지 않아야 하며(지지대를 제외함),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피트를 넘지 않아야 하고, 양 쪽 이상의 면을 둘러싸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항상 가까이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3피트 이내), 결합된 표지물로 규정 크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 사람이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 손에 들지 않는

표지물은 최대 두 개까지이다. 누구든 보행자 통행, 대법원 건물 또는 광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표지물을 설치하거나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40 U.S.C.§6137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⑦ 누구든 대법원 건물 및 부지 내에서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시위"란 시위, 피켓 시위, 연설, 행진, 철야 기도, 종교 행사를 포함한 모든 유사한 행위를 말하며,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의견이나 불만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로, 사람들이 모이거나 주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우연히 하는, 군중을 유도할 가능성이 없는 일반적인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대법원 부지의 외곽 보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식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이 규정의 예외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40 U.S.C. §6137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4) 참고사진



▲ 청사 외곽 근무 중인 연방대법원 경찰국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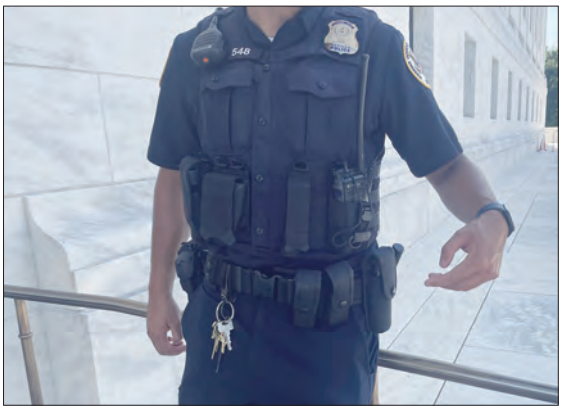

▲ 개인장비로 방탄조끼, 무전기, 총기, 탄창, 수갑, 최루액 스프레이, 진압봉 착용

4. 연방사법부의 보안 관련 예산 및 장비 내역

가. 예산

1) 최근 예산변동 추이

미국 연방법원은 판사, 직원 및 청사에 대한 물리적 ·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약 6억 6,400만 달러 규모의 보안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9% 증가한 수치이다.[68] 이후 법원에 대한 위협이 급증하면서 연방대법원은 2023년 총 8억 2,200만 달러를 요청하였으나, 실제 운영 예산은 약 7억 5,000만 달러 수준으로 동결되었다.[69]

한편 의회는 2024년 12월에 연방대법관들의 주택 보안을 위해 1,200만 달러, 대법원 경찰국(Supreme Court Police) 예산으로 1,360만 달러를 별도로 승인하였다.[70]

2025년에도 예산이 동결되어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은 2026 회계연도에 약 19% 증액된 8억 9,2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였다.[71] 이는 연방법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위협 및 협박 사건이 1년에 300건 이상 보고되고, 법관에 대한 신변 보호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데에 따른 조치이다.[72] 특히 2024년 기준 연방법원에서 약 1,000건 이상의 위협 사건이 발생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 50건은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73]

보안 강화의 필요성은 사법부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미국 내 정치 ·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판사 개인에 대한 표적화, 협박, 스토킹 사례가 늘어났고, 일부 법원은 자체 무장 경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74] 이에 따라 연방 사법부는 의회에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고, 2026년 예산이 승인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보안 예산이 확보될 전망이다.[75]

연방법원은 급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대, 조직 신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 예산 규모로는 보호 역량의 지속적인 확장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76]

---

6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diciary Appropriations, IF11534.
69) www.uscourts.gov/data-news/reports/annual-reports/directors-annual-report/annual-report-2023.
70) “Security for U.S. Supreme Court justices' homes gets funding boost”, Reuters, 2024-12-18.
71) Roll Call, Federal Judge Stresses Need for More Court Security Funding, 2025.
72) Reuters, US Judges Warn of Threats, Request More Funding, 2025.
73) Business Insider, Federal Judges' Safety at Risk Amid Threats, 2025.
74) Reuters, US Judges Warn of Threats, Request More Funding, 2025; Business Insider, Federal Judges' Safety at Risk Amid Threats, 2025.
75) Roll Call, Federal Judge Stresses Need for More Court Security Funding, 2025.
76) Business Insider, “Congress' budget has put judge safety at risk when threats are already up”, 2025-04.

2) 예산 요구의 실제

연방사법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Amy St. Eve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Robert Conrad 판사[77]와 함께 미 하원 '재무 및 일반정부 소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에 출석하여 사법부 전체 예산을 2026 회계연도에 9.3% 증가한 94억 달러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78]

그 중 법원보안 예산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19% 증가한 8억 9,200만 달러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증액을 통해 '사법부는 점차 증가하는 법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판사들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8억 9,200만 달러의 보안 예산 증액은 지난 2년간 동결된 예산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보안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법원 보안 요원 배치, 검색 장비, 기타 보안 장비 도입, 그리고 현재 현직 판사의 77%가 등록 중인 프로그램(자택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삭제해주는 서비스)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출석한 Robert Conrad 판사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 "보복이나 위협은 법의 지배를 침식시킵니다. 판결을 이유로 법관이 위협이나 탄핵 압박을 받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우리 헌법 체계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정의를 집행하겠다.'고 선서한 판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3) 보안예산 내역

2025년 현재 약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법원보안 예산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① 법정 보안요원(Court Security Officers) 운영에 약 4억 9,4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연방보안관국(U.S. Marshals Service)이 보안요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배치하는데, 미 전역에 6,000명 이상이 근무 중이다.[79]

---

77) 두 법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이다.
78) 이하 Reuters, "US judges warn of threats, ask Congress for more security funding", May 14, 2025.
79) www.usmarshals.gov/what-we-do/judicial-security.

② 보안 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1억 7,000만 달러 내외가 사용된다. 이 예산으로 금속탐지기, X선 스캐너, CCTV, 비상 통신시스템과 같은 물리적 장치를 유지 · 교체하고, 강화유리 · 보강문 설치 등 법원청사 물리보강 사업이 진행된다.[80]

③ 사이버 보안 및 취약점 관리에 약 1,000만 달러가 배정된다. 위 예산으로 전자문서 시스템 보호, 정보보안 진단 및 대응이 이루어진다.[81]

④ 마지막으로 연방보호국(Federal Protective Service, FPS)과의 연계 업무에 약 8,700만 달러가 소요된다.[82]

나. 보안 장비 내역

연방법원 보안 장비의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법원청사 입구에 금속탐지기와 X선 소지품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요 공간에는 고해상도 CCTV 카메라와 비상 경보장치가 배치된다.

모든 법원 출입을 위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건물 외부에는 롤다운 셔터(roll-down shutter)와 강화유리 창문이 설치된다.[83] 아울러 재난 상황에 대비해 긴급통신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체계도 보강 중이다.[84]

5. 참고: 사법부 위협 관리를 위한 10가지 황금규칙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2006년에 발간한 “Protecting Judicial Officials: Implementing an Effective Threat Management Process”라는 보고서에 ‘사법부 위협 관리를 위한 10가지 황금규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안 관련 원칙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여 참고로 그 내용을 소개한다.

80) www.uscourts.gov/data-news/reports/annual-reports/directors-annual-report/annual-report-2024/facilities-and-security-annual-report-2024.
81) U.S. Courts, Judiciary Cybersecurity Initiatives.
82) www.uscourts.gov/data-news/reports/annual-reports/directors-annual-report/annual-report-2023.
83) www.uscourts.gov/data-news/reports/annual-reports/directors-annual-report/annual-report-2024/facilities-and-security-annual-report-2024.
84) U.S. Courts, Judiciary Cybersecurity Initiatives.

1. 위협 관리 체계의 필요성 인식

사법부는 판결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 피고인, 일반 대중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위협은 단순한 언어적 위협에서부터 신체적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최근 그 수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위협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훈련된 전문가에게 사건 관리 책임 부여

위협 사건의 대응은 일반적인 보안 인력이 아닌, 특별히 훈련된 위협 관리 담당자에게 맡겨야 한다. 담당자는 위협의 식별, 평가,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3. 법관 및 법원 직원에 대한 교육과 소통 체계 수립

판사, 재판연구원, 법정 경위 등 법원 구성원 모두가 위협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부적절한 연락과 접촉(IC&C, Inappropriate Communications and Contacts)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법적 ·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사건 추적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모든 위협 사건은 잘 문서화되어야 하고, 사건 발생 일시, 대상자, 위협 유형, 행동 패턴 등의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사건 간의 연관성 분석, 재범 가능성 예측,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5.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

US Marshals Service, FBI, 지역 경찰 등 외부 보안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는 필수적이다. 다기관 협력 체계는 사건의 범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협의 심각도에 따라 신속한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6. 일관되고 검증된 위협 평가 기법 활용

위협을 평가할 때는 단순한 직관이나 경험이 아닌, 학문적으로 검증된 평가 도구와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행동 특성, 심리 상태, 이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7. 철저한 사실 조사

모든 위협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건 당사자의 진술, CCTV 영상, 통신 내역, 진료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협의 실제성과 시급성을 판단해야 한다.

8. 유연하고 지능적인 대응 전략 적용

위협의 성격과 위험도에 따라 단순한 모니터링부터 물리적 격리, 경호 배치, 심리 치료 연계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대응은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사건의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9. 보호 대상자와의 신뢰감 있는 소통

위협에 직면한 법관이나 직원은 정서적 불안과 직무수행의 위축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안 담당자는 위협 대응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보호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적 안정도 지원해야 한다.

10. 위협 사건의 분류 및 지속적 관리

모든 위협 사건은 활동 중(active), 비활동 중(inactive), 만성(chronic), 장기(long-term) 등으로 분류되고, 그 상태에 따라 주기적인 재평가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일부 사건은 수년간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과 자원의 지속적 배분이 중요하다.

IV. 주 법원 일반

1. 개요

연방법원과는 달리 미국 내 개별 주 법원은 법원행정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잘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주 법원의 재판이나 사법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NCSC(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가 있는데, 이 단체는 재판지원, 사법행정 관련 여러 보고서를 발행하고, 여기에는 법원보안(Court Security) 관련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NCSC 자료를 중심으로 주 법원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원보안 관련 정책, 조치 등을 검토한다.

2. 일반적인 주 법원 보안 담당 기관: 지역 보안관 사무소(Sheriff's office)

가. 개요

연방 사법부의 법원보안 책임을 법무부 산하 외부기관인 U.S. Marshals가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 법원의 보안은 전통적으로 각 County별로 보안을 담당하는 Sheriff's Office(보안관 사무실)가 맡아왔다. 이하 Sheriff의 연혁, 업무 일반, 법원보안 관련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나. 연혁

Sheriff는 미국 내 치안기관 중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 역사적으로 카운티(County) 단위에서 법 집행과 치안을 담당해 왔다. 이 제도는 영국 중세시대의 "shire reeve"에서 유래하였고, 미국 식민지 시대부터 각 카운티에서는 보안관을 선출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였다.[85]

오늘날 대부분의 주에서 Sheriff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달리 지역사회에 대한 정치적 · 민주적 책임을 강조한다.[86]

다. 업무 및 조직

Sheriff's Office의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① 치안 유지 및 법 집행으로 카운티 내 순찰, 범죄 수사, 체포 등을 담당한다. ② 교정시설 운영으로 미결수 및 단기 수형자를 수용하는 카운티 교도소를 관리한다. ③ 법원 기능 지원으로 법원 보안, 증인과 배심원 보호, 피고인 호송, 법원명령 집행 등을 수행한다.[87] ④ 민사 업무 집행으로 압류, 퇴거 명령, 법원 문서 송달 등을 맡는다.[88]

---

85) 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History of the Office of Sheriff.
86)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heriffs' Offices in the United States.
87) 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Sheriffs.

조직은 선출된 보안관(Sheriff)을 정점으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보안관(Deputy Sheriffs), 교도소 관리 인력, 행정 · 기록 관리 부서, 특수부대(SWAT, 마약수사팀, K-9 팀 등)로 구성된다.[89]

라. 법원보안 관련[90]

Sheriff's Office는 주 법원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원 출입구에서 금속 탐지기 및 가방 검색을 통한 출입통제와 물리적 보안, ② 재판 중 판사 · 배심원 · 증인 보호와 피고인 호송을 통한 재판 안전 확보, ③ 법관 위협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가택 보호 강화와 같은 위협 대응 활동, ④ 교도소 수감자를 법정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교정 · 법원 연계 업무를 수행한다.

물론 주마다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뉴욕 주에서는 대부분의 법원보안을 Sheriff가 아닌 자체 보안조직이 담당하지만,[91] 여전히 대다수의 주 카운티에서는 Sheriff's Office가 법원 보안을 직접 담당한다.[92]

Sheriff's Office는 주 경찰(State Police), 지방 경찰(Local Police), 각 주의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법원보안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앞서 본 Salas 판사 사건 이후에는 Sheriff's Office가 법관 주거지 보안 점검과 순찰 강화 등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기도 하였다.[93]

3. 법원청사 보안을 위한 최선의 실무 조치[94]

미국 내 각 주 법원을 지원하는 NCSC(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는 정기적으로 "STEPS TO BEST PRACTICES for COURT BUILDING SECURITY"라는 법원청사 보안 관련 권고 매뉴얼을 발간하는데, 가장 최근 발행된 2022년 개정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대부분의 주 법원에서 NCSC의 위 자료를 참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

88)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Civil Process and Sheriff's Duties.
8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Sheriff's Office Organizational Structures.
90) American Bar Association, Court Security Handbook.
91) 뉴욕주는 법원행정처 산하에 공공안전국에서 주 법원 대부분의 보안을 담당하는 일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92)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Court Officers and Security Operations.
93) CNN, "Judge Esther Salas case prompts renewed calls for judicial security," 2020.
94) 이 부분은 이희경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가 작성하였다. 이 부분은 "STEPS TO BEST PRACTICES for COURT BUILDING SECURITY", NCSC(2022)를 번역한 것이다.

[카테고리 A: 기본 사항(Fundamental)]

주제 A-1 보안위원회(Security Committee)

법원 청사 보안위원회가 정기적 회의를 통해 법원 건물 내 보안 관련 문제를 감독하고 법원 건물과 관련된 문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법원과 그 이해당사자들이 법원과 이해관계자가 직면한 무수한 보안 문제를 제대로 평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주제 A-2 정책 및 절차(Policies and Procedures)

법원 건물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철저하고 일관된 보안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응집력 있고 포괄적인 보안 정책 및 절차가 필요하다. 정책 및 절차의 개발은 상호작용적인 과정으로, 의미 있고 효과적인 정책 및 절차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향후 과정에 이번 실무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포함한 참고가 필요하다.

주제 A-3 위협 및 사고 보고(Threat and Incident Reporting)

위협 및 사고 보고는 판사, 법원 직원 및 법원 건물을 방문하는 공중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데, 위협 및 사고 보고 시스템을 제정하면 이해관계자는 잠재적인 부정적 사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개발하며 최고의 실무 단계를 강화할 수 있다.

주제 A-4 보안교육(Security Training)

법원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계속적으로 위험과 위협에 주의를 기울이는 눈과 귀가 됨으로써 자신의 업무 환경의 안전과 보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안 정책 및 관련 절차에 관해 잘 훈련된 판사와 법원 직원은 최고의 눈과 귀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잘 훈련된 법원 보안 담당 간부는 안전한 법원 건물 유지에 필수적이다.

주제 A-1 보안위원회(Security Committee)

1단계

1. 법원 건물 보안을 위해 법원 청사 보안위원회를 설립하고, 판사가 (회의 주재자로서) 의장을 맡고 최소한 주요 보안 요원과 예산을 제공하는 단체나 카운티의 의원에게

도 회원이 되게 한다. 이 위원회는 본 실무자료에 요약된 모범 방안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주제 A1부터 A4까지 설시된 기초적 요소들을 달성하는 주요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법원 청사 보안위원회는 “누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고,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의 행동 계획 과정에 대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처음에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법원 건물에 직면한 보안 문제를 식별하고 논의하며 이러한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고안하고 구현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보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려면 적어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3. 법원 청사 보안위원회의 대표로서 의장인 판사 또는 법원 대표자는 보안에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 보안요원 및 법 집행 기관과 이에 대한 보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법원 건물의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단계

4. 법원 건물 보안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관련자를 보안위원회 구성원으로 추가한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는 카운티 시설 관리 담당자, 검사, 국선 변호인, 변호사, 보호관찰소(probation department), 법원 건물의 기타 임차인을 포함한다.

3단계

5. 법원 건물 내 보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평가는 NCSC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최고 단계

6. 필요에 따라 보안위원회 후원 하에 추가 연구 및 정보 수집 능력을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운영할 수 있다.

7. 법원 청사 보안위원회의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은 법원 시설 설계, 건설 및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8. 법원 건물의 외부 및 내부에 대한 보안 조치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독립적인 전문 조직을 참여시킨다.

주제 A-2 정책 및 절차(Policies and Procedures)

1단계

1. 법원 청사 보안위원회의 후원 하에 법원 관리자, 카운티(또는 기타 예산 지원 기관) 및 법 집행기관은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법원 보안 정책 및 절차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 판사들이 법정 보안의 최전선에 서서 보안 정책 및 절차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2. 법원 청사 보안위원회의 후원 하에 적절한 법 집행 기관의 협력으로 응집력 있고 포괄적인 법원 건물 보안 자료, 정책 및 절차, 운영 매뉴얼, 교육 매뉴얼, 비상 계획, 사고보고 및 위험, 프로토콜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2단계

3. 아래와 같은 보안 사항의 피드백 및 개정과 관련하여 법원 직원 및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 법원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형식의 정기 보고
- 법원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공식적인 피드백을 요청
- 법원 직원 및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필요한 경우 법원 건물 보안 사항을 개정

4. 공식적으로 법원 건물 보안 사항을 채택하고 적절한 법원 명령을 발령한다. 법원의 명령은 보안 정책에 정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제공한다.

5. 법원 건물 보안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다.

3단계

6. 정책과 절차를 테스트하기 위해 훈련 및 연습을 수행하고 훈련 결과를 평가한다. 실제 부정적인 사건 및 사건에 대한 응답 결과를 평가한다. 훈련 및 실제 사고 결과의 평가에 따라 보강된 법원 건물 보안 사항을 개정한다.

7. SWAT 부대를 포함한 최초 대응자를 초대하여 법원 건물과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

최고단계

8. 주요 사건이나 건물 리모델링 후 그리고 적어도 2년마다 정책과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한다.

9. 앞서 2, 3 4단계에서 채택한 활동들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주제 A-3 위협 및 사고 보고(Threat and Incident Reporting)

1단계

1. 위협과 사고는 늦어도 당일 이내에 적절한 법률 집행 기관과 법원 행정 부서에 가능한 빨리 보고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2. 모든 위협과 사고를 철저히 평가하고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법집행기관과 협력한다.

3. 법원 보안 담당자(Court Sesurity Officers), 판사 및 법원 직원에 대해 위협과 사고의 인식 및 위협과 사고의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는 방법을 연습하도록 한다.

4. 위협 및 사고보고 양식을 개발 및 사용하고 월별로 전자적 문서로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 해당 보고서는 법원 청사 보안위원회에도 사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5. 주 및 지역 수준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위협 및 사고에 관한 정보를 조율한다.

2단계

6. 위협 및 사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법 집행 기관 및 법원 청사 보안위원회 의장(및 위원회의 사건 보고 TF 포함)과 함께 보고서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관행을 구현한다.

7. 위협 및 사건에 대해 직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특히 이를 보고한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최고단계

8. 주 또는 대도시 융합 센터[95]와 위협 및 사건 정보 공유를 확립한다.

95)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융합 센터는 주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센터로, 주 및 주요 도시 지역에서 위협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공유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주, 지방, 부족 및 영토(SLTT), 연방,

9. 보안직원 또는 적절한 직원으로 하여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하도록 한다.

10. 자료의 빠른 검토 및 배포를 가능하게 하고, 법 집행 기관 및 승인된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및 분석 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위협 및 사건을 보고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지역 및 주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주제 A-4 보안교육(Security Training)

1단계

1. 새로 임명된(부임한) 판사와 법원 직원은 총기 난사 및 인질 상황, 비상 절차(예: 화재, 날씨, 의료 비상 상황), 건물 대피 경로, 직장 및 가정에서의 개인 안전 절차와 같은 주제를 포함하는 초기 법원 보안 오리엔테이션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

2. 판사와 법원 직원은 집이나 법원 건물에서 받은 위협 및 사건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받아야 한다.

3. 법원보안직원은 기본적인 법원 보안 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원보안직원은 법정 보안 기술, 판사 및 직원 보호, 보안 검색 활동, 총기 작동, 위협 완화 기술, 안전 및 무기 인증에 대한 초기 교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법원보안직원은 비상 대응, 응급 처치, 방어 전술, 수갑 채우기, 법정 보안, 인질 상황, 총기 난사 사건 및 판사 보호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지휘 센터 직원은 중요한 사건 지휘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간단해야 한다.

2단계

6. 판사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장 내 폭력 및 개인 안전 기술, 법정 보안 및 보호, 그리고 근무 중 및 외부에서의 개인 안전에 대해 다룬다.

7. 응급 구조대, 특히 SWAT 팀을 초대하여 법원 건물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민간 부문 파트너가 포함된다. 더 많은 정보는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dhs.gov/fusion-centers.

다. SWAT 팀이 자신의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원 건물을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3단계

8. 판사와 법원 직원을 위한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보안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위 프로그램에는 초기 보안 오리엔테이션 브리핑에서 다룬 주제와 더불어, 어려운 당사자 다루기, 분노 관리, 가정 안전 기술, 법원 건물 내부 및 외부의 안전 관행, 인질 사건, 법원 건물에서의 비상 대피 등을 포함한 주제를 포함시킨다

9. 총기 및 중간무기(intermediate weapons)의 연례 자격 과정 외에도, 법원보안직원을 위한 정기적으로 예정된 의무 고급 보강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위 교육 과정에 비상 대응, 응급 처치, 방어 전술, 수갑 채우기, 법정 보안, 인질 상황, 총기 난사 사건 및 판사 보호와 같은 주제를 포함시킨다.

최고단계

10. 판사와 법원 직원을 위한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보안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위험 재판, 가정 안전 기술, 여행 안전 팁, 의심스러운 소포, 폭탄 및 기타 위협, 법원 건물에서의 비상 대피 등을 교육한다. 판사와 법원 직원에게 자기 방어 방법, 위협 완화 기술, 인질 상황에서의 개인 안전/보안 고려 사항에 대해 교육한다.

11. 보안직원을 위한 고급 법원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정을 수립하여 위협 완화, 보안 평가, 판사 보호,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보안, 사건 대응, 위험한 개인, 정신 건강 문제 및 고위험 절차와 같은 주제를 교육한다. 모든 보안직원은 매년 최소 24시간의 의무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한다.

[카테고리 B]

[주제 B-1 보안 지휘 센터(Command Center)]

1단계

1. 적절한 전용 지휘 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보안 시스템의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센터로 프런트 입구 검색소 근처에 보안 데스크 또는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한다.

2. 보안 데스크에 전담 보안직원을 최소 한명 이상 배정한다(자원이 제한된 경우, 이는 주 공용 출입구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맡은 동일한 사람일 수 있다).

3. 지휘 센터에서 긴급 경고 알람과 보안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4. 지휘 센터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시된 경고 패널 또는 도면을 제공한다.

5. 보안 데스크와 법원 건물의 잠재적으로 취약한 지역(예: 법정 및 판사실) 간에 전화/무전 통신 지점을 설정한다.

6. 보안 데스크와 지역 법 집행 기관 및/또는 긴급 배치 기관 간에 전화/무전 통신을 설정한다.

2단계

7. 법원 건물 내에 전용 지휘 센터를 구축한다. 지휘 센터에 대한 접근이 신중하게 제한되도록 한다.

8. 전용 지휘 센터에 보안직원을 배정한다. 배정된 지휘 센터의 보안직원이 반드시 총기를 휴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9. 보안 감시 카메라, 긴급 경고 알람, 화재 경고 또는 알림, 침입 탐지 시스템, 전화 및 무전 통신 및 배치를 위한 제어 패널과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제어 패널은 법원 건물 내의 위치를 명확하게 식별해야 하며, 비상 대응을 돕기 위해 방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야 한다.

10. 지휘 센터 직원은 법원 건물에 설치된 대량 알림 시스템(예: 공공 주소 시스템, 전화 알림 시스템, 이메일, 문자, 소셜 미디어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건물 거주자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은 대량 알림 프로토콜 및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1. 지휘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지휘 센터에서 벗어나 위기 현장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게 하면, 비상 대응자와 직원에게 상황 인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를 잃을 수 있다. 지휘 센터가 제공하는 상황 인식은 대응자가 최선의 전술적 결정을 내리고 직원이 대피할지 또는 대기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12. 법원 건물이 개방되는 동안 지휘 센터에는 항상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최고단계

13. 카메라는 긴급 경고 및 출입 통제(문) 알람과 통합되어야 한다. 긴급 경고 또는 출입 통제 알람이 활성화되면, 해당 카메라의 이미지가 지휘 센터의 모니터에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휘 센터 직원은 모니터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람을 활성화한 직원과 오디오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14. 엘리베이터, 기계 시스템, 비상 발전기/발전기 연료 수준 등 법원 건물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15. 지휘 센터 활동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추가 보안 인력을 배치한다.

16. 지휘 센터가 취약 지역(예: 외부를 향한 창문이 있는 주요 출입구/로비 지역)에 위치하고 위협 평가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지휘 센터의 문, 창문 및 기타 공격에 노출된 지역에 대해 방탄 보호를 제공한다.

17. 근무 시간 외에 침입 알람 및 카메라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 연결 및 지역 법 집행 기관 및/또는 긴급 배치 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제 B-2 구속 피고인

1단계

1. 구속 피고인이 법원 건물의 모든 비보안 구역을 통과할 때 최소 한 명의 보안직원 또는 이송 직원이 동행하고, 공중에 앞서 통행로를 미리 확보하도록 한다.

2. 구속 피고인이 법정에 있는 동안 항상 한 명의 보안직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

3. 보안 구역이 없는 법원 건물(순환 구역에 대한 논의는 주제 B-7 참조)에서는 구속 피고인이 대중이 최소한으로 존재하는 시간에 공공 구역을 통과하도록 일정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대중이 복도의 가장 먼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구속 피고인이 호송되기 전에 대중을 복도의 한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4. 구속 피고인을 공공 엘리베이터로 호송할 때는,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모든 대중을 나가도록 한다.

5. 구속 피고인은 호송되는 동안 수갑, 발목 제어 장치 및 배꼽 체인을 사용하여 적절

하게 제지되어야 한다(앞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야 한다).

6. 구속 피고인은 호송 중이나 법원에 있을 때 대중, 가족 또는 친구와 어떤 형태의 접촉(신체적 또는 언어적)도 해서는 안 된다.

7. 법원 절차로 인해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기 전에 항상 보류 사항(holds)과 유효한 체포 영장을 확인해야 한다.

2단계

8. 구속 피고인이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holding cells)을 하나 이상 설립한다.

9. 법원 건물 내 모든 대기실은 적절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직원이 배치되며, 각 사용 전후에 검색되어야 한다.

10. 보안 구역 내에서 서로 다른 피구금자(예: 남성, 여성, 청소년)의 시각적 및 청각적 분리를 필요에 따라 제공한다. 이러한 구역의 설계는 대중의 무단 접근과 구속 피고인의 탈출을 금지하도록 한다.

11. 대기실에 보안 카메라(변조 방지 하우징 포함)를 설치한다.

12. 구속 피고인의 호송 경로 전체(준비 구역, 복도 및 엘리베이터 포함)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한다.

13. 구속 피고인이 호송될 수 있는 순환 구역(즉, 준비 구역, 복도 및 엘리베이터)에 긴급 경고 알람을 설치한다.

14. 법원 건물에 들어가는 구속 피고인을 위한 안전한 출입구(Sally port)를 설립한다. 샐리 포트에는 보안 카메라와 긴급 경고 알람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15. 구속 피고인을 호송하고 경로를 정리하기 위해 이차 보안직원 또는 이송 직원을 배정한다. 구속 피고인과 가장 가까운 이송 직원은 중간 무기(예: 테이저기 또는 화학 스프레이)를 소지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직원은 삼중 retention holster 사용하여 총기를 소지해야 한다.

16. 법원과 구금 센터 간의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위해 원격 비디오 및 오디오 링크(및 지원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는 구금 센터에 법정을 설립하여 고지/소환 및 기타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보안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조치 모두 구속 피고인을 법원에 데려오는 횟수를 최소화하며, 특히 기소인부절차와 비증거 심리(non-evidentiary hearings)의 경우 구속 피고인을 법원 건물로 오가게 하는 것보다 선호되는 해결책이다.

최고단계

17. 구속 피고인의 이송 및 수용을 관리하기 위한 제어실을 설립한다. 제어 센터는 안전한 구속 피고인 순환 구역 내의 모든 문, 엘리베이터, 카메라 및 알람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주제 B-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법원 건물에서는 이 기능이 건물 보안 지휘 센터와 함께 위치하고 관리될 수 있다.

18. 구속 피고인이 법원 건물에 있는 동안 제어실에는 항상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19. 구속 피고인의 이송에 사용되는 구역과 법원 건물의 다른 모든 구역 간에 완전한 분리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송 차량에서부터 샐리 포트를 지나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통해 대기실, 법정으로 이동하는 동안 판사, 배심원, 직원 또는 대중의 경로를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순환이 포함된다.

주제 B-3 법정

1단계

1. 법정이 하나 이상 있는 각 층에 최소 한 명의 보안직원을 배정하여 “로버(rover)” 역할을 하도록 한다(지역 또는 주 규칙이 추가적인 커버리지를 요구하지 않는 한).

2. 구속 피고인이 관련된 경우, 전체 법정 절차 동안 최소 한 명의 보안직원이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3. 법정 내에 긴급 경고 알람을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판사 법대 표면 위 또는 아래, 명확하게 표시된 곳
   - 법원직원 스테이션

4. 판사와 직원에게 긴급 경고 알람의 기능과 사용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긴급 경고 알람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한다(최소 월 1회).

6. 휴정 중이거나 법정이 사용되지 않을 때 법정을 비우고 잠가야 한다. 내부에서 모든 법정 문을 쉽게 잠글 수 있어야 한다. 휴정 중에 개인이 법정에 남아 있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법정에 남아 있는 보안직원을 배정해야 한다.

7. 법정 내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예: 가위, 스테이플러, 금속 물병, 물컵)을 확보하거나 제거한다. 이러한 물품 대신 스티로폼 또는 종이 제품을 사용한다. 구속

피고인을 위해 스냅 노즈 가위, 구부릴 수 있는 펜, 더 작은 스테이플러를 사용한다. 원고 또는 피고의 테이블에는 서랍이 없어야 한다. 이동 가능한 가구를 모두 제거하거나 고정한다.

8. 법정 내에서 비상 조명 및 화재 장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테스트한다.

9. 주 및 판사의 승인을 받아 구속 피고인에게 적절하고 허용된 보호 장구를 사용한다. 구속 피고인은 배심원 재판 중이거나 법률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 발목 제어 장치 및 배꼽 체인의 보호 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판사가 법정에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문 스코프(즉, 피프홀[96])를 설치한다.

11. 법정에 전시되는 무기가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탄약은 항상 총기와 분리된 밀폐된 증거 가방에 보관해야 한다. 승인된 모든 증거는 법원이 휴정 중이거나 세션이 아닐 때 변조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12. 법정 사건을 주재하는 판사는 모든 절차의 시작에서 질서유지명령(decorum orders)을 발령하고, 법정 내에서 활동을 관찰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항상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13. 판사, 보안직원 및 법원 직원은 모든 법정 절차 동안 법정 질서 및 가능한 보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두 및 비구두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14. 고위험 재판 및 기타 필요에 따라, 법정 좌석의 앞줄을 비워 두거나 원고 또는 검사의 가족 및 친구와 피고의 가족 및 친구를 분리하는 등의 추가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5. 피고인이 진술 및 선고 중에 앉아 있도록 유지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한다.

16. 프레젠테이션 테이블과 연단을 판사 벤치에서 안전한 거리로 유지한다.

17. 모든 법정에 대해 검색을 실시한다. 검색은 법정이 열리기 전과 하루가 끝날 때마다 수행해야 한다. 보안직원이 없는 경우, 법원 직원이 법정 검색을 수행하도록 교육받고 지시받을 수 있다. 검색 로그를 작성하여 검색 중 발견된 항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2단계

18. 보안직원은 법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서 있어야 하며, 잠재적인 보안 사건에

96) 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된 렌즈가 설치된 작은 구멍을 말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치해야 한다.

19. 법정 내 보안직원은 법정 외부의 공공 구역에서 보안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면 출입문을 수동으로 잠가야 한다.

20. 모든 법정에 최소 한 대의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주요 보안 카메라는 판사 벤치 뒤쪽 벽에 설치되어 소송 구역과 법정 좌석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21. 판사와 법원 직원, 배심원, 구속 피고인을 위한 법정 접근 경로와 적절한 출입 통제를 설정해야 한다. 변호사, 증인 및 일반 대중은 반드시 주요 공공 출입문을 통해서만 법정에 들어가야 한다.

22. 판사 벤치에 가장 가까운 법정 문은 긴급 상황이나 보안 사건 발생 시 판사가 법정을 신속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잠재적인 공격자의 추적을 저지하기 위해 판사가 나간 후 잠겨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공공 출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지역 건축 규정에 따라 지연 탈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3. 구속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건을 다루는 법정 근처에 보관 셀을 제공해야 한다. 법정용 보관 셀은 적절하게 건설되어야 하며, 구속 피고인이 안전하고 탈출이 불가능해야 한다.

24. 법정 내부의 판사 벤치와 법대를 방탄으로 해야 한다.

3단계

25. 모든 유형의 법정 절차에 대해 두 번째 보안직원을 배정해야 하며, 보안위원회에서 보안 사건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유형의 절차는 제외된다. 보안위원회의 이러한 판단과 관계없이, 판사가 위험을 판단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서든 두 번째 보안직원을 배정해야 한다. 주의: 이 보안직원은 해당 절차에 관련된 구속 피고인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안직원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

26. 판사는 법원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법정 보안과 관련된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보안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브리핑이 있어야 한다.

27. 법원과 구금 센터 간의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허용하기 위해 원격 비디오 및 오디오 연결(및 지원 인프라)을 제공해야 한다.

최고단계

28. 고위험 또는 중요 사건(high-visibility) 절차[97]의 경우, 구속 피고인이 없는 경우 최소 두 명 이상의 보안직원을 법정에 배치해야 한다. 구속 피고인이 있는 경우 최소 세 명 이상의 보안직원을 법정에 배치해야 한다.

29. 고위험 또는 중요 사건 재판의 경우, 법 집행 기관 및 정보 기관(예: 융합 센터)과 협력하여 법원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나 시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감시해야 한다.

30. 고위험 또는 중요 사건 재판의 경우,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총기, 폭발물 재료 및 기타 폭발성 밀수품을 감지할 수 있도록 훈련된 개를 활용해야 한다. 개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무작위 간격으로 법정을 수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1. 모든 법정에 두 대의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한 대는 판사 벤치 뒤쪽 벽에 설치되어 소송 구역과 대중 좌석을 바라보도록 하며, 이전 단계에서 설명한 대로 설치되어야 한다. 두 번째 카메라는 대중 좌석 구역의 뒤쪽에 설치되어 소송 구역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32. 법정의 공공 출입구에 자동 전자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법정 외부의 공공 구역에서 보안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야 한다.

주제 B-4 판사실

1단계

1. 판사와 법원 직원에게 개인 보안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2. 판사 책상과 법원 비서실 접수 구역에 긴급 경고 알람을 설치한다.

3. 긴급 경고 알람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한다(최소 월 1회). 판사와 법원 직원에게 긴급 경고 알람을 어떻게, 언제 사용하는지 교육한다.

4. 판사가 요청할 경우, 판사와 법정 사이를 안내할 보안직원을 제공한다. 특히 비서실 복도가 안전하지 않거나 판사가 공공 복도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97) 고위험 또는 중요 사건 절차는 개인의 부상, 재산 피해 또는 법정 절차의 중단 가능성이 있는 절차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있는 절차, 여러 피해자 또는 여러 가해자가 있는 사건; 가중 가정 폭력 사건; 중요한 언론 보도, 시위 또는 항의가 있는 사건; 그리고 기타 중요한 공적 관심이 있는 사건.

5. 모든 비서실에 내부 창문 커버로 수직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외부에서 비서실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항상 블라인드를 위치시킨다.

6. 매일 아침과 업무 종료 시 비서실을 점검한다.

7. 비서실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한다. 판사가 없는 동안 개별 비서실의 문을 잠그고, 특히 밤에는 항상 잠그도록 한다.

8. 구속 피고인이 비서실 복도로 안내되는 동안 판사가 비서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전 통지를 제공한다.

9. 비서실의 가구를 보안을 염두에 두고 배치한다. 예를 들어, 판사의 출구 접근이 방문자 의자에 의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판사의 의자는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의 직접적인 시선을 피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2단계

10. 비서실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비디오 인터콤 및 원격 제어 자석 도어 스트라이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11. 비서실 지역의 비상 상황에 대한 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12. 구속 피고인을 위한 전용 통로가 없는 지역에서는 최소 두 명의 보안직원 또는 운송 보조원을 배정하여 구속 피고인을 비서실 및 직원 복도로 안내하도록 한다. 한 명은 앞쪽 경로를 정리하고, 구속 피고인과 직접 접촉하는 운송 담당자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테이저나 화학 스프레이와 같은 중간 무기를 소지해야 하며, 다른 직원은 삼중 유지 홀스터에 총기를 소지해야 한다.

13. 비서실 근처 복도에 소리 및 빛(예: 스트로브) 시스템을 설치하여 구속 피고인이 복도를 통과할 때 판사와 직원에게 경고한다.

14. 청소팀은 언제든지 판사 비서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며, 법원에 책임이 있는 누군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청소팀은 법원 직원이 있는 시간에 비서실을 청소하도록 하고, 밤에 청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쓰레기통을 잠긴 비서실 출입문 밖에 두도록 한다. 참고: 청소팀 및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 제어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추가 권장 사항은 주제 B-6을 참조하라.

15. 비서실 회의실에 긴급 경고 알람을 설치한다.

최고단계

16. 비서실 지역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한다.

17. 판사가 비서실에서 법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수평 및 수직)를 설정한다. 위 주제 B-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속 피고인이 비서실 복도를 통과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안내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한 경로도 설정해야 한다.

18. 비서실 창문의 외부에 반사 유리 또는 반사 필름을 설치하여 대중이 이 지역을 볼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창문의 내부에는 보안 필름을 설치한다. 참고: 반사 유리 및 필름은 야간에 내부 공간을 보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며, 창문 커버가 필요함을 배제하지 않는다. 보안 필름은 총기 방호 등급이 없지만, 공격 시 큰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9. 특정한 심각한 위협이나 취약성이 있는 지역(예: 판사 및/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지상 사무실 창문, 인근 구조물, 사무실 위치와 관련된 취약한 지리적 특징)에 방탄 창문 설치를 고려한다.

주제 B-5 공중의 법원 청사 출입(보안 검사)

1단계

1. 공중이 법원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요 출입구를 하나만 설정한다.

2. 주요 출입구에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대중에게 법원 건물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예: 총기, 칼, 페퍼 스프레이, 가위 등)과 모든 사람이 보안 직원에 의해 검색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또한, 표지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a. 시행 중인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b. 보안 카메라가 작동 중이며 법원 건물 전역에서 활동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림.

3. 모든 외부 출입문은 업무 시간 포함 모든 시간 동안 잠금 상태로 유지한다(외부 출입문에 대한 보안 카메라 권장 사항은 주제 B-9 참조).

4. 모든 외부 출구 문에는 비상 출구 크래시 바를 설치해야 한다. 모든 출구 문에는 알람이 설치되어야 하며, 지역 규정에 따라 10초의 지연 시간이 있어야 한다. “출구 전용”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알람은 관제 센터와 출구 문 근처에서

울려야 한다.

5. 법원 건물이 공중에게 개방되기 전 아침과 모든 구역이 공중에게 폐쇄된 후 저녁에 법원 건물의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6. 법원 건물의 주요 공공 출입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임시 검색소를 운영하기 위해 최소 한 명의 전담 보안직원 직위를 할당한다.

7. 영구적인 검색소가 설치될 때까지 임시 테이블 및 기타 물리적 구조물(예: 스탠션 로프, 분리대 등)을 설정하여 검색소 역할을 한다.

8. 검색소와 건물 출입구/출구 간의 시선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적절한 시각적 평가 및 보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9. 공공 출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손목 검사기로 무기를 검색한다. 보안 검색 요원은 아래 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 손목 검사기 및 신체 검색 기술에 대한 교육
- 무전기를 통해 관제 센터에 연락할 수 있는 능력
- 무기 식별 차트
- 금지 품목 목록
- 무기 또는 금지 품목이 발견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토콜
- 일일 법원 활동 목록
- 고위험 또는 고가시성 절차와 관련된 특별 지침
- 판사, 법정 경비원 및 기타 법원 직원의 전화번호 목록

10. 모든 1단계 작업에 대해 보안직원을 교육한다.

11. 법 집행 기관과 법원 간의 직통 통신 경로를 설정하여 보안 직원이 법원 건물에 들어오려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

12. 법원 건물의 주요 출입구(공공 출입구)에 자기 탐지기를 설치한다.

13. 장비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라 자기 탐지기의 일일 테스트 및 점검을 실시한다.

14. 2단계에서 추가된 모든 작업에 대해 보안직원을 교육하고 판사, 직원, 배심원 및 기타 인원에 대한 추가 보안 교육을 제공한다.

15. 법원 건물의 주요 출입구(공공 출입구)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한다.

16. 하루 중 혼잡한 시간대에 주요 출입구에서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 보안직원 또는 계약 보안 요원을 배치한다. 일과시간 동안 두 번째 보안직원은는 가끔 내부 및 외부 순찰을 실시하고 법정 보안 및 판사 및 승인된 직원 출입구의 보안 모니터링을 지원해야 한다.

17. 검색소에 긴급 알람, 전화기 및 총기 보관함을 추가한다.

18, 법원 보안 책임이 있는 법 집행관이나 공식적인 자격으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만이 건물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한다.

19. 검색소에서 압수된 금지 품목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3단계

20. 공공 출입구 검색소에 X-ray 이미징 시스템을 설치한다.

21. 16단계에서 언급된 두 번째 보안직원 또는 계약 보안 요원은 공공 검색소를 운영하기 위해 정규직, 상근 보안직원 또는 계약 보안 요원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22. 보안직원 및 계약 보안 요원에게 모든 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판사 및 직원에 대한 보안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제공한다.

23. 검색 직원에게 방탄 조끼를 제공하고 직원이 항상 조끼를 착용하도록 요구한다.

24. 검색소에 방탄 방벽을 설치하여 검색 직원을 보호한다.

25. 3단계 운영을 위한 추가 정책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 X-ray 이미징 시스템에 대한 연간 점검 및 인증을 실시한다. 이 장비는 주 보건 및 안전 기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 현대적인 검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단계별 매뉴얼,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최고단계

26. 공공 검색소에 세 번째 보안 요원을 배정한다: 한 명은 방문객이 검색소에 들어올 때 안내하고 지원하며, 한 명은 X-ray 이미징 시스템을 운영하고, 한 명은 자기 탐지기를 운영한다. 사람이 적은 시간에는 세 번째 보안요원은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이상적으로 모든 보안요원은 무장해야 하지만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무장해야 한다 (무장 보안요원은 삼중 고정 홀스터를 착용해야 한다). 모든 검색 직원은 비살상 방어 장비

(예: 방탄 조끼)로 교육받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검색 직원은 바디 카메라와 무선 통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7. 보안 검색 영역 설계에 다음 전략을 구현한다:

- 법원 건물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에 따라 적절한 수의 검색소를 제공한다.
- 검색소를 설계하여 검색 직원이 법원 건물에 들어오는 대중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출입구, 검색 구역 및 로비 전역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 혼잡과 밀집을 피하기 위해 대기 구역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 방문객이 검색을 마친 후 개인 물품과 소지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재정리 테이블을 제공한다. 이 테이블은 다른 방문객의 검색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검색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 법원 건물의 출구 차선이 명확하고 분리되도록 설정한다. 이는 검색/대기 구역과 유리 파티션으로 분리될 수 있어 보안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28. 두 개 이상의 공공 검색소가 운영되는 경우, 운영을 감독할 추가 보안직원을 배정한다.

29. 대중이 앞쪽 출입구 검색 구역을 볼 수 없도록 반사 유리 또는 필름을 설치하되, 검색소 직원은 외부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법원 건물의 주요 출입 및 퇴장 문 안쪽에 보안 필름을 설치한다. 이 필름은 방탄 등급은 아니지만, 공격 시 큰 유리 조각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주제 B-6 법원 청사 내 보안 구역의 출입

1단계

1. 법원 건물에 직원이 출입하는 프로토콜을 수립한다(통제된 출입).

- 직원이 주요 공공 출입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건물의 외부 문 중 하나를 지정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는 제한된 출입구로 지정한다(가능하면 무장하고 자격을 갖춘 보안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출입은 출입 카드나 키로 통제되어야 한다. 변호사와 배심원은 이 문을 사용할 수 없고, 공공 출입구를 통해 들어와야 한다.
- 직원이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와 같은 다른 사람을 안전한 문을 통해 데려오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한다. "테일게이팅"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맥락에서 테일게이팅은 개인이 출입 카드나 키를 사용하여 적절히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따라 법원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원 건물 내에서 가능한 경우, 공공 구역, 제한 구역 및 보안 구역 및 경로 간의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순환 구역(circulation zones) 개념을 수립한다. 필요에 따라 순환 구역 간의 분리는 수직(층 간) 및 수평(같은 층 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순환 구역은 다음과 같다:

- 공공 구역: 공공 순환 시스템은 주요 출입구에서 법원 건물의 모든 공공 접근 가능 지역으로의 접근을 제공한다. 대중이 접근해야 하는 모든 지역은 공공 순환 구역 내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제한 구역: 제한된 순환 통로, 엘리베이터 및 계단은 법원 직원, 판사, 배심원 및 보안 인원이 법정, 판사실, 사무실 및 배심원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판사와 법원 직원은 공공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도 개인 통로와 개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업무 구역이나 법정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안 구역: 이 구역은 건물 전체의 구금 피고인 수송 및 대기 구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역의 구성은 대중의 무단 접근과 구금된 피고인의 탈출을 금지해야 한다 (주제 B-2도 참조).

3. 법원 건물 순환 구역 개념에 따라 잠금이 필요한 모든 문은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은 절대 열어두거나 잠금을 해제한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4. 법원 건물의 모든 보안 구역에 대한 접근은 오직 키 또는 전자 접근 장치를 통해 허용되어야 한다. 키와 전자 접근 장치는 법원 건물 보안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포괄적인 책임 시스템에 따라 발급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금속 키, 특히 마스터 키와 그랜드 마스터 키는 항상 밀접하게 감독되어야 한다. 민감한 구역의 금속 키 분실 시에는 즉시 영향을 받는 자물쇠를 점검해야 한다. 이 키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 키의 복사본을 가진 사람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5. 키 또는 전자 접근 장치를 어떤 개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배경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배경 조사는 고용 또는 계약 체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근무 시간 외 접근은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한다.

6. 고용이 종료될 때 전자 접근 장치를 비활성화하고, 키는 법원 건물에 마지막으로

출입하는 날에 반납하도록 요구하며, 최종 급여 지급 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대중이 근무 시간 외에 건물에 있어야 하는 활동을 문서화하고 모니터링한다. 근무 시간 외에 무단 인원이 건물에 들어오지 않도록 정책 및 절차를 설정해야 한다.

8. 청소 팀 및 모든 공급업체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한다.

- 청소 팀 및 근무 시간 외에 건물에 접근이 허가된 공급업체에 대해 연간 배경 조사를 실시한다.
- 청소 팀과 공급업체는 법원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항상 감독되어야 한다.
- 가능한 한 법정과 판사실은 근무 시간 중에 청소 팀/공급업체에 의해 청소되며, 근무 시간 외에는 무단 접근이 없어야 한다.
- 계약이 종료될 때, 접근 장치는 즉시 비활성화되어야 하며, 장치나 키 소지자가 법원 건물에 마지막으로 출입하는 날에 키를 반납해야 한다. 최종 급여 또는 계약 지급 전에 장치 비활성화 및 키 수거를 기록하고 확인해야 한다.

2단계

9. 판사와 직원이 사진과 식별 정보를 포함한 배지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하도록 요구하여 보안 담당자가 배지를 소지한 개인이 실제로 적절한 권한을 가진 소지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접근 수준에 따라 배지를 코드화하는 것을 고려한다. 공공이 판사를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배지에 직함을 표시하지 않는다.

10. 금속 키를 없애고 전자 접근 장치로 전환한다. 유지보수 직원과 응급 대응자만 키를 보유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키가 필요한 경우, 비상 상황이나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이중 절단된 비복제 키를 발급한다.

11. 전기 공급, 지붕, 데이터 센터, 유지보수 구역/작업장, 수도 시설 및 기타 건물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방과 구역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한다. 중요한 구역의 접근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이들 중요한 방과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 전자 접근 장치와 키패드의 고유 코드를 사용하는 이중 인증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12. 무기, 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체와 물질이 포함된 안전 저장 구역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한다. 위험한 물체와 물질이 법원 건물에 보관될 경우, 접근이 제한된 안전한 구역에 저장해야 한다. 안전한 저장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온도 조절 및 화재 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13. 해당되는 경우, 허가된 방문자가 안전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디오 인터콤 및 원격 작동 자기 도어 스트라이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고단계

14. 이 주제의 2단계에서 설명한 대로 건물 내 다양한 순환 구역 간의 완전한 분리를 설정하고 유지한다.

15. 보편적인 검색 정책을 수립한다. 보편적인 검색이란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검색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단, 판사를 위한 별도의 출입구와 검색소가 없다면, 판사는 공용 출입구에서 검색 대기줄에 서지 않아야 한다.)

16. 판사/직원 출입구에 금속 탐지기, X선 이미징 시스템, 긴급 경고 알람 및 보안 카메라를 설치한다. 배심원이 이 출입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17. 판사/직원 출입구에 최소 한 명의 보안직원을 배치한다. 판사/직원 출입구에는 인원 수에 따라 두 명 이상의 보안직원을 배치하며, 이 중 최소 한 명은 보안요원이어야 한다(예: 대규모 법원 시설의 경우 피크 시간대 또는 모든 정상 근무 시간 동안).

18. 근무 시간 외에는, 정규 근무 시간 이후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을 기록하는 보안요원 또는 계약 보안 요원이 안전하게 지키는 단일 출입 지점을 생성한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보안요원은 법원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주기적으로 순찰해야 한다.

19. 화재 또는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공공 구역에서 안전 구역으로 통하는 모든 문에 지연 출입 장치를 설치한다. 지연 시간은 보안 인원이 접근 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건축 코드 담당자가 요구하는 대로 15초에서 30초로 설정해야 한다. 이 장치는 명령 센터와 안전 구역 내부의 즉각적인 지역에서 경고음을 울려야 한다.

주제 B-7 법원 직원이 대중을 상대하는 사무실 및 업무 공간

1단계

1. 직원이 대중을 상대하는 각 작업 구역에 긴급 경고 알람을 하나 이상 설치한다. 직원에게 긴급 경고 알람의 기능과 사용 프로토콜에 대해 교육한다.

2. 작업 구역의 창문 커버(예: 커튼, 블라인드)를 내려 외부에서의 관찰을 제한한다.

3. 현금이 처리되는 카운터에는 Plexiglas™ 유형의 인클로저를 설치한다.

4. 모든 공공 거래 카운터는 점프하거나 넘으려는 시도를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깊이로 설계되어야 한다.

5. 법원 도장이나 인장과 같은 민감한 물품이 공공 거래 카운터에 서 있는 대중의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보관되도록 한다.

6. 업무 시간 중과 업무 시간 외 모두 내부 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요원 순찰을 요구한다.

2단계

7. 모든 공공 카운터 위에 폴리카보네이트(예: Plexiglas™) 방벽을 설치한다. 법원 건물에 무기 검색이 없거나 검색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경우, 공공 카운터에 방탄 등급의 방벽을 제공한다. 방탄 등급의 방벽은 카운터 아래와 위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

8. 카운터 뒤의 사무실 구역에 긴급 경고 알람을 전략적으로 설치한다.

9. 직원이 대중과 만나는 모든 인터뷰 및 회의실(예: 중재실 및 평가 인터뷰실)에 긴급 경고 알람을 설치한다. 이러한 방의 가구 배치는 안전을 염두에 두고 배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출구 접근이 방문객의 의자에 의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모든 전화 수화기가 발신자 ID를 허용하는지 확인하고, 비상 상황이나 보안 사건 발생 시 수화기 사용 기능 및 프로토콜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한다.

11. 가능한 경우, 직원이 활동 중인 총격범이나 기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사무실 구역을 탈출할 수 있는 대체 안전 경로를 설정한다. 직원이 이용 가능한 모든 출구 경로를 알고 있도록 한다.

12. 법원 건물 내에서 판사와 직원이 부정적인 사건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방을 설정한다. 안정방 문에 잠금 장치를 개조하여 내부에서 잠글 수 있고 열 수 있도록 한다. 문틀을 보강하여 문이 발로 차여 열리지 않도록 한다. 안전방에 긴급 경고 알람을 설치한다. 해당 방에는 적절한 환기, 통신 장비 및 식량, 물과 같은 비품이 있어 합리적인 체류 기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13. 폭력의 잠재력이 있는 사람(예: 보호 관찰 중인 사람)이나 소변 샘플을 채취하는 것과 같은 민감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원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설정한다.

14. 사무실 공간 외부에서 대중과 접촉할 필요가 있는 직원에게 이동식 긴급 경고 알람을 제공한다(예: 공용 회의실, 대중과 공유하는 화장실 등). 이동식 긴급 경고 알람은

위치 추적 기술을 갖추어 명령 센터 직원이나 기타 응급 구조자가 알람의 위치를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 모든 중재 및 회의실에 유리창과 측면 창이 있는 문을 설치한다.

3단계

16. 모든 공공 카운터 뒤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여 카운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의 얼굴을 촬영한다.

17. 피해자와 증인, 보호 명령 청구인 및 피청구인, 그리고 공격 위험이 있는 기타 법원 방문객을 위한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대기 구역을 제공한다.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갈등의 잠재성이 있는 모든 대기 구역을 모니터링하고 순찰할 보안요원을 배치한다.

18. 긴급 알림 기능이 포함된 인터넷 전화(VoIP) 수화기를 설치하여 긴급 경고 알람을 보완한다(예: 버튼을 눌러 긴급 알림, 보안 직원과의 양방향 핸즈프리 통신, 그리고 가청 공공 주소 알림 기능).

최고단계

19. 직원이 폭력의 잠재력이 있는 대중이나 고객(예: 보호 관찰 중인 사람)과 만나는 전용 인터뷰 구역을 만든다. 직원의 사무실 공간에서 이러한 고객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회의실/인터뷰 부스를 포함한 인터뷰 구역을 마련해야 하며, 이 구역은 공공 및 직원 구역과 별도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회의실/부스에는 긴급 경고 알람을 제공하고, 인터뷰 구역은 보안 카메라로 장비되어 보안요원이 모니터링하고 순찰해야 한다.

20. 소변 샘플을 제공해야 하는 고객을 위한 별도의 안전한 약물 검사 구역을 만든다. 공공 화장실이나 직원 화장실은 이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각 약물 검사실에는 긴급 경고 알람을 설치한다.

21. 1층 사무실 창문과 특정 직원에게 더 높은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사무실에 반사 유리 또는 필름을 설치하여 대중이 이러한 사무실 구역을 볼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창문 내부에 보안 필름을 설치한다. 특히 높은 위협에 노출된 지역에는 방탄 등급의 유리 설치를 고려한다. 주의: 반사 유리와 필름은 야간에 내부 공간이 보이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며, 창문 커버의 필요성을 없애지 않는다. 보안 필름은 방탄 등급은 아니지만, 공격 시 큰 유리 조각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22. 특정한 심각한 위협이나 취약성이 있는 지역(예: 판사 및/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1층 사무실 창문, 인근 구조물, 및/또는 사무실 위치와 관련된 취약한 지리적 특징)에 방탄 저항 창문 설치를 고려한다.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추천되는 방탄 저항 재료는 UL 표준 752, IV 등급(고성능 소총용으로 설계됨)을 충족해야 한다.

4. 가정폭력 사건(Domestic Violence)과 법원보안[98]

법원은 구체적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므로, 개별 사건은 법원보안 체계가 작동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개별사건 중에서도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불화가 깊고 상호 적대감도 크므로 법원에 대한 불만이 폭력형태로 발생하거나 법원 내에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폭력을 가할 개연성도 크다.

이에 NCSC는 개별 사건, 특히 가정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한 법원보안 권고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99] 이하 그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하 내용은 가정폭력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가정법원이나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 개요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 사건(Domestic Violence Cases, 이하'DV 사건'이라고 한다)을 처리하는 법원에서 필요한 보안조치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DV 사건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가정폭력 관련 보호명령, 성범죄 또는 스토킹 사건,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아동학대, 청소년 데이트 폭력 사건 등을 포함한다. DV 사건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증인, 변호인, 지원인력, 법원 직원 등 모두에게 위협이나 폭력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즉 법정 안팎에서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특별한 보안 조치가 요구된다.

98) 이 부분은 김경선 고법판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작성하였다. 이 부분은 주로 Nathan Hall, "Reommended Court Security Measures for Cases Involving Domestic Violence" NCSC(2020)를 참조함.

99) 보고서 작성의 주요 자료는 다음 3가지이다. ① 확립된 법원보안 모범 실무례, ② NCSC 전문가들이 300개 이상 법원에 대한 보안을 평가한 경험, ③ 판사, 사법행정 담당자, 보안 관리자 등 포커스 그룹에 대한 전화인터뷰.

나. 보편적인(Universal) 법원보안 조치

1) 기본적인 보안요소

• 보안위원회(Security Committee) 구성
- 법원장, 사법행정 담당자, 보안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많은 주에서 외부인사로서 주 법원 보안을 담당하는 셰리프(Sherriff), 법 집행 기관, 주 또는 카운티 정부 담당자가 참여함
- 법원 및 주요 사법 이해관계자들이 보안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함

• 정책 및 절차(Policies and Procedures)
- 보안정책은 문서화되어야 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고민한 결과여야 하며, 모범 실무례를 반영해야 하고, 비상상황 대비 계획과 보안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들은 단지 문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법원의 전 직원이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체계”여야 함

• 위협 및 사건보고(Threat and Incident Reporting)
- 위협 및 사건 보고체계는 잠재적인 안전 위협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위원회가 사건 보고서를 분석하여 정책, 절차, 보안 인프라 개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안 교육
- 정기적인 비상대피, 법관 및 전 직원 대상 보안정책 숙지, 위험상황 판단 및 신고 능력 배양

2) 필수 보안요소

• 지위센터 설치
- 감시카메라, 비상경보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중앙통제실

• 구속 피고인 관리
- 법원 내에서 구속 피고인을 이동시키거나 재판에 출석시킬 때, 숙련된 보안요원이 동행해야 함
- 다만 피고인의 인권이 고려되어야 함

- 법정 보안
  -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최소 1명의 무장요원 배치(고위험 사건은 2명 이상 권장)
- 판사실 보안
  - 비상벨, 외부시야 차단장치, 무단출입의 철저한 통제
- 출입구 통제
  - 출입자 전원 검색, 출입구 수 최소화 및 통제, 야간출입은 허가된 사람에게만 제한적 허용
- 민원창구 및 공공 서비스 구역
  - 60~90cm 높이의 투명 보호막 (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감시카메라, 비상벨
  - 법원직원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비상벨을 사용해야 하는지 훈련받아야 함
- 법관 전용주차장
  - 외부에서 시선이 차단되고, 안전하게 내부로 연결되어야 하며, 차량의 손상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 외곽 경계 보안 (Perimeter Issues)
  - 건물 외부에서의 침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함
  - 쓰레기통, 유틸리티, 통풍구 등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함
- 비상 장비
  - 화재 경보 및 진압장비, 비상발전기, 제세동기, 응급처치 키트
- 침입 감지 시스템
  - 건물 폐쇄 시 모든 외부 출입문 및 창문에 침입 감지 장치 설치
  - 업무 시간 중 잠긴 출입문이 열릴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
- 내부 접근 통제
  - 일반 방문객이 법원 직원 전용 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된 동선 설계 필요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Public Hallways, Stairwells, Elevators)
  - 감시카메라로 관찰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순찰이 필요함

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추가 · 특별 보안조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미국 내 법원 폭력 사건 185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

력 가해자가 가장 흔한 위협 주체로 확인되었다.[100] 가정폭력은 권력과 통제의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떠나는 상황에 그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다. 이혼, 보호명령, 양육권 사건 등은 이러한 '분리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 살인 등 중대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101] 가해자는 법원을 이용해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의 심리는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1) 기초적인 보안 고려사항

- 보안위원회의 DV 사건 특화 운영
  - 보안위원회는 가정폭력 사건 관련 위험요소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고, 사건 특유의 보안 문제(예: 스토킹, 감정 폭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함
  - working group 구성을 권장함. 구성원으로 법원장, 사법행정 관리자, 검사, 피해자 지원 단체(검찰 소속 또는 지역 비영리단체), 국선변호인, 보건복지부 담당자, 지역 경찰/보호관찰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working group 업무 절차: working group 구성 및 의장 임명 ⇨ 가정폭력 사건 보안 문제 식별 ⇨ 해결방안 및 개선사항 도출 ⇨실행계획 수립(예산 및 우선순위 고려) ⇨ 보안위원회에 실행계획 제출 및 승인
- 정책 및 절차
  - 가정폭력 사건을 위한 맞춤형 보안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음과 같은 주제가 포함되어야 함
    - ‣ 사건별 위험도 평가 체계 구축
    - ‣ 피해자, 판사, 직원 보호를 위한 보안요원 동행 제도

100) Timothy Fautsko, Steven V. Berson, & Steven K. Swensen, "Status of Court Security in State Courts: A National Perspective", NCSC(June 2013).

101) Petrosky E, Blair JM, Betz CJ, Fowler KA, Jack SP, Lyons BH.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Homicides of Adult Women and the Rol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 United States, 2003–2014." MMWR Morb Mortal Wkly Rep 2017;66:741–746.

‣ 피고인-피해자의 출입시간 분리(예: 피해자가 먼저 출석하고, 가해자는 재판 종료 후 먼저 나가도록 함)

‣ 대기실 분리 또는 별도 회의실 배정

‣ 영상재판의 활용 (단, 영상재판만의 보안 우려도 존재함, 이하 상술)

• 가정폭력 위협 및 사건보고

- 보안팀, 접수팀, 사법행정 담당자 사이의 정기적인 소통 체계 구축
- 변호인이나 피해자 지원단체가 비공식적으로 고위험 인물 정보를 법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다만 공정한 재판에 영향 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가정폭력 사건 전용 위협평가 양식 개발. 예시 양식으로 Idaho Risk Assessment Dangerousness[102]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7개의 요소가 포함됨; ⓐ 과거 폭력 전력, ⓑ 상해 또는 살해 위협, ⓒ 자살 위협, ⓓ 최근 퇴사 및 실직 여부, ⓔ 강압적, 통제적 행동, ⓕ 사전경찰 접촉 이력, ⓖ 약물 또는 음주

• 가정폭력 사건 교육(Training)

- 판사, 보안요원, 법원 직원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함. 특히 가정폭력 사건에 내재된 트라우마[103]를 다루는 교육이 중요함
- 법관 및 법원 직원 대상

‣ 고조된 감정 상태의 당사자 대응법

‣ 법정에서의 행동관리: 재판장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104]

‣ 고위험 절차 관리

‣ 트라우마 인식 기반 사건관리 기법

‣ 이차 외상(vicarious trauma) 예방 및 자기돌봄

---

102) Idaho Risk Assessment of Dangerousness Tool은 안전 계획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장래의 피해 위험과 치사율 지표를 알리기 위해 개발되었다. www.idvsa.org/towards-thriving-83117/참조.

103) 최근 NCSC 보고서는 트라우마가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트라우마는 법정에 출석하는 피해자, 증인 및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판사 및 법원 직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법원공무원이나 법원에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끔찍한 사건에 대한 생생한 사진, 비디오 또는 증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또는 다른 사람의 외상 경험에 대한 생생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판사, 법원 직원 또는 배심원은 위험에 처해 있고, 치료 옵션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주 법원 시스템에서 인정되고 있다." Smith, Deborah, "Trauma and State Courts", Trends in State Courts, NCSC(June 2018).

104) 한 포커스 그룹 참가자의 사례: "법정 내 질서 유지에 관한 메시지는 재판 시작 전에 판사로부터 전달되어야 하고, 환영 인사와 절차 설명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 보안요원 대상[105]
  - ‣ 피해자 친화적 대응법, 피해자 감수성[106]
  - ‣ 분노 조절 및 갈등 중재 기술
  - ‣ 군중 통제 및 법정 내 위협 식별
  - ‣ 다만 피해자가 '무장 요원' 앞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히 비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가정폭력 관련 핵심 및 필수 보안 고려사항

• 법정 내 보안

- 모든 가정폭력 사건(특히 보호명령 사건) 재판 시 무장 보안요원 1-2인 이상 배치
- 보안요원이 법정 인근 대기실에도 상주하도록 배치
- 법정 내 운영 권장사항
  - ‣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
  - ‣ 재판 종료 후 피해자가 먼저 법원을 떠날 수 있도록 유도
  - ‣ 영상재판[107] 이용 시, 피해자의 위치 및 개인정보 노출 차단(배경화면 조정, 사적 채팅 금지 등)

• 법정 및 건물 설계

- ‣ DV 전담 법정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이어야 하고,[108] 1층 또는 저층에 위치함으로써 엘리베이터 · 계단 내 마주침 위험을 방지해야 함
- ‣ 대기실 분리 또는 피해자를 위한 비공개 입장 통로 제공
- ‣ 변호인 접견실은 유리창 설치, 잠금장치 제거, CCTV 설치 등

105) 판사 및 법원 직원도 보안요원과 동일한 교육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공동교육을 통해 역할 간 협력이 가능해진다.

106) 한 포커스 그룹 참가자의 사례: "때로는 보안요원이 가정폭력 법정에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107) 한 포커스 그룹 참가자의 의견: "법원은 피해자가 원격으로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08) 한 포커스 그룹 참가자의 의견: "비좁은 법정에서는 폭력적 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더 긴장하는 것 같다. 피해자들은 더 불안해하고, 피고인들은 밀접한 거리로 인해 좀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법정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 트라우마 인식 설계(Trauma-informed Design) 도입 권장, 다음 요소가 포함됨. ⓐ 자연 채광 및 자연/식물 View 제공, ⓑ 차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 마감재로 earth-tone 사용, 반사율 낮은 소재 사용, ⓒ 부드러운 조명, 소음 최소화, 방음 설계, ⓓ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표지 시스템,[109] ⓔ 가시성이 좋고 개방적인 내부환경 조성, 복도에 사각지대나 은신처를 만들지 않기, 놀이방 등

• 민원 응대 공간 보안
- 민원 대면 접촉 최소화: 원격 접수/ 상담시스템 활용
- 피해자가 쉼터 또는 외부 안전장소에서 법원직원을 만날 수 있는 체계 도입
- 비접촉 인터뷰 부스 설치 (소란이 발생할 경우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 창 설치, 직원은 내부에서 접근 가능)
- 민감한 인터뷰, 학대 관련 사진 증거 제출 등을 위한 사적이고 안전한 회의실
- '가정폭력 사건 안내직원'을 두어 안전한 동선 유도

• 건물 외부 및 출입구 보안
- 법원 외부, 주차장 주변 순찰 강화
- 판사, 법원직원,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사전 보안요원 동행
- 일반 출입구 사용이 불안하거나 위험한 경우, 대체 출입구 이용 허용[110](보안위원회 승인 필요)
- 주차장에 보안 조명, CCTV, 긴급호출 장치
- 소송당사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법원과 가까운 정류장 위치 확보 및 이동 동선 보안

109) 법원 길 찾기 및 표지판에 관한 전략은 NCSC 보고서 "Wayfinding and Signage Strategies for Language Access in the California Courts" 참조. www.courts. ca.gov/documents/LAP-Wayfinding-andSignage-Strategies-Language-Access-in-the-CACourts.pdf

110) 한 포커스 그룹 참가자의 의견: "단일 출입구 이동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겪은 경험 중 가장 최악은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 것이 아니라 보안 출입구를 통과하는 것이었다고 말한 경우가 있었다."

라. 결론

법원 운영은 본질적으로 도전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법원을 방문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은 법 제도와의 접촉을 원하지 않기도 하며, 일부는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가장 큰 위험은 종종 가정폭력 사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법원보안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

법원 보안은 한 번의 성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진지한 목표이고, 끊임없는 경계심을 필요로 한다.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하루하루 실천되어야 한다. 법원 운영에 수반되는 위험은 크고 다양하며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주의와 관리를 통해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5. 법원과 법원 직원을 위한 개인적 안전 요령(Personal Safety Tips for judges an court staff)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직장 및 가정 내에서의 안전 요령 관련 NCSC 발간한 자료(2023. 10. 개정판)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1. 일반 안전 요령

- 법원 안팎 어디서든 방심하지 마십시오. 직장, 가정, 여행 중에 올바른 안전 기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 무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할 경우 반드시 정상 작동 상태인지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재판부 권한이나 직함을 이용해 법원 외부에서 치안 유지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법집행기관의 역할입니다. 대신 좋은 목격자가 되십시오.
-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스스로 말하지 마십시오. 법관임을 밝히지 마시고, 필요시 변호사나 정부 직원 등으로 신분을 설명하십시오.
- 비상상황에 대비해 개인 및 가족 정보서를 해당 관할 지역의 경찰에 보관하십시오.

2. 법정 내 안전

- 법원 보안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나 심리를 진행하지 마십시오.
- 법정을 통제하고, 참여자들이 적절한 예의와 존중을 보이도록 요구하십시오. 이는 화상심리에도 적용됩니다.

– “법정 예절 규칙”을 법정 입구나 화상 대기실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하십시오.
– 높게 설치되거나 보호되지 않은 재판석에 앉지 마십시오.
– 판사와 법원서기가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 버튼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 법집행관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특히 가정사건), 무기를 소지한 채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 판사 허가 없이는 누구도 재판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판결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반감에 따른 것이라는 인상을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퇴정시킬 수 있으면 남겨 두지 마십시오. (화상심리에도 적용)
– 고위험 재판이나 인물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추가 보안을 요청하십시오.
– 법정에서는 반드시 법복을 착용하십시오. 법복은 존중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법복을 벗었을 때 판사를 일반인과 구별하기 어렵게 해줍니다.
– 법정이 과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영상 장비를 활용해 다른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법정 내 재판석 위에 방치된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 무겁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재판석이나 법정 책상에 두지 마십시오.
–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부드러운 고무 재질의 “교도소용 펜”을 사용하십시오.
–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법정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 가리개를 설치하고 조정하십시오.
– 과거에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화상심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법원 공식 문장(Seal)이 포함된 가상 배경을 사용해 개인 사진이나 소품이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3. 판사실 안전

–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비상 버튼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 보안 문제가 감지되면 지체 없이 법원 보안요원을 호출하십시오.
– 판사실 창문에 커튼 등을 설치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 방문객이 가족사진을 보지 못하도록 책상에서는 사진을 판사 쪽으로 향하게 두고, 화상회의 배경에서도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 가능하면 공용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사용을 피하십시오.
– 경찰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을 판사실이나 자택으로 데려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반드시 법정이나 경찰서에서 만나십시오.
– 판사 부재 시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귀중품이나 민감한 문서를 책상 위에 놓아두지 말고, 자리를 비울 때는 잠그십시오.
– 민감한 문서를 가정이나 사무실 쓰레기통에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버리지 마십시오.
– 직원이 낯선 사람에게 판사의 위치나 일정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십시오.

4. 법원청사 안전

– 민원 접수 창구에는 비상경보기, 보호 장벽, CCTV를 설치하십시오.
– 비상경보 장치가 정상 작동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 총격 상황(예: “도망, 은폐, 대항”) 등 비상훈련에 참여하십시오.
– 민감 구역에는 대중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출입통제 시스템을 유지하십시오.
– 술에 취한 사람이 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 폭력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예정되어 있으면 미리 보고하십시오.
– 모든 보안요원, 직원, 계약직원 채용 시 및 주기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십시오.
–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 마십시오.
–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직접 제압하거나 추격하지 마십시오.
– 배운 보안 지식을 직원과 가족에게 반드시 교육하십시오.

5. 주차장 안전

– “판사” 또는 이름이 적힌 주차 표지판으로 자리를 예약하지 마십시오.
– “JUDGE”라고 적힌 맞춤형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법원에서 나갈 때, 법원과 관련된 사람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고 느끼면 차량으로 가지 말고 기다리거나 보안요원의 동행을 요청하십시오.
– 외딴 곳이나 조명이 어두운 장소를 피하고, 관목 근처는 공격자가 숨을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 운전 중이나 주차 중에는 항상 차량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으십시오. 차량에 열쇠를 두지 마십시오.
– 차량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마십시오.
– 주차 위치를 명확히 기억하여 불필요하게 오래 걸어 다니지 않도록 하십시오.

– 차량으로 걸어갈 때는 당당한 태도로 보이고, 자신감 있는 몸짓으로 걸으십시오. 이는 공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짐을 한 번에 들지 마십시오. 이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 핸드백은 몸 가까이, 되도록 앞쪽에 두십시오.
– 탈출을 방해하지 않는 신발과 옷차림을 착용하십시오.
–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차 열쇠를 손에 쥐고 즉시 차량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차량에 접근할 때는 차량 아래와 주변을 살피고, 탑승 전 뒷좌석과 바닥을 확인하십시오.
– 집과 법원 간 이동 시 항상 같은 경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지 마십시오.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외출 시 반드시 누군가에게 비밀리에 행선지와 귀환 시간을 알려두십시오.
– 누군가 자신을 응시하거나 뒤따른다고 느끼면 의식하십시오.
–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으면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십시오. 연료는 생명보다 값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가능하면 어두울 때 법원을 출입하지 말고, 의심이 들면 보안요원의 동행을 요청하십시오.
– 차량 내에 법복을 걸어두지 말고 반드시 덮거나 좌석이나 트렁크에 두어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 항상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배터리를 충전해 두십시오. 보조 배터리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에 비상용품(예: 예비 타이어와 공구, 점퍼 케이블, 손전등과 배터리, 구급상자, 비상식량과 물)을 구비 하십시오.
– 휴대전화에 긴급연락처 및 의료정보를 저장해 두어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이로 된 사본도 차량에 비치하십시오.
– 항상 연료탱크를 절반 이상 채워 두십시오.

6. 출퇴근 안전

– 항상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 출퇴근 경로와 시간을 다양하게 하십시오.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사람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 출퇴근 시 반복적인 습관을 피하여 예상 가능한 행동 패턴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7. 가정에서의 안전

- 가정 보안 점검(Home Security Audit)을 실시하십시오. NCSC는 가정 보안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가이드북을 제공합니다.
- 침입경보기, 보안 카메라, 초인종 카메라, 차고문 센서 등을 포함한 가정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십시오.
- 외부 조명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지나치게 무성한 조경을 제거하십시오.
- 문 잠금 장치를 보강하고, 외부문 경첩과 나사를 교체하십시오.
- 문을 열기 전 반드시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초인종 카메라, 웹캠, 들여다보기 구멍을 사용하십시오.
- 음성사서함 인사말에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남기지 마십시오. 익명의 발신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사적인 전화로 사무실 전화를 회신하지 마십시오.
- 가정과 사무실 모두에서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십시오.
- 개인 우편 반송 주소로 실제 거주지를 사용하지 말고, 직장 주소나 우체국 사서함을 이용하십시오.
- 잡지를 법원에 가져올 때는 반드시 이름과 주소가 적힌 라벨을 제거하십시오.
- 수상한 봉투나 발신자가 없는 소포는 열지 마십시오. 특히 예상하지 않은 경우는 더욱 주의하십시오.
- “혐오 편지(hate mail)”는 버리지 말고 법원 보안 담당자 및 경찰에 보고하십시오.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 식당 예약이나 음식 주문 시 별명 또는 기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 화장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식당에서는 창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 개인 수표, 신용카드, 항공권 등에 “판사(Judge)”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판사임을 알 수 있는 티셔츠나 모자를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마십시오.
-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가 되지 마십시오.
- 보안 및 군중 통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마십시오.

9. 온라인에서의 안전

– 법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 규정을 숙지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거주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SNS에 게시할 때는 주의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한 번 공개된 정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 출장이나 휴가 등 외출 계획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 SNS에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활용하십시오.
– 법원과 관련된 사람과 온라인이나 SNS에서 교류하지 마십시오.
– 온라인 비밀번호는 자주 변경하고, 계정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십시오.
– 가능하면 계정 로그인 시 2단계 인증을 사용하십시오.
– 공용 와이파이로 은행, 이메일, SNS에 로그인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개인 VPN을 사용하십시오.
– 중요 자료는 클라우드나 다른 물리적 장소에 백업하십시오. 랜섬웨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방화벽을 켜 두고, 운영체제와 백신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 이메일 및 SNS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 가족과 가까운 동료만 아는 인터넷 “안전 단어”를 정해두어 악의적 행위자가 사칭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0. 언론 관련 안전

– 자신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위험에 처했다고 발언하지 마십시오. 이는 공격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 언론에 법원 보안 시스템이나 취약점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 언론이나 정부에 제공한 사진을 갱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언론에 가족이나 자택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언론에 자녀의 이름, 나이, 학교 정보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11. 선거운동 안전

– 선거 홍보물에 자택 주소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는 반드시 보안이 마련된 상태에서만 참석하십시오. 초청장을 통한 입장 통제나 티켓 제한 판매를 고려하십시오.

– 선거 홍보물 부착이나 철거를 직접 하지 마십시오.
– 혼자서 방문 유세를 하지 마십시오.
– 자택이나 차량에 지나치게 많은 선거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마십시오.

6. 각 주의 법관 등 보호를 위한 최신 입법동향 등[111)]

가. 개요

지난 3년 동안 미국 내 여러 주에서는 판사 및 법원 공무원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법관 등의 보호대상에 신체 등 물리적인 위협 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21개 주에서 60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 중 10건은 2024년 4월 현재 이미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주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 보호대상의 범위

보호대상을 일부 주에서는 주 법원 판사로 제한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연방판사와 그 가족, 검사까지 보호 범위를 넓혔다. 예컨대 델라웨어는 2021년 제정된 법률(H.B. 230)을 통해 현직, 전직, 은퇴한 주 법관 및 가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미주리는 Judicial Privacy Act를 제정해 연방판사와 검사까지 포함하였다. 플로리다는 기존 판사 보호법을 개정해 법원 직원까지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다. 대상 기관의 범위

법관 등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주마다 대상 기관의 범위에 차이점이 있는데, 가령 네브래스카는 카운티(County) 등기소와 같은 특정 기관에서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다. 한편 아이다호의 경우 2023년 법

111) 이하 내용은 주로 William Raftery, “States Move to Protect Judges’ Safety”, Judicature, NCSC, 2024 참조.

안을 통해 '공공기관'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여 사실상 주 및 지방정부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였다.

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대부분의 법안은 판사 및 그 가족의 주거지 주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법안은 전화번호, 가족 정보 등 추가 항목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

마.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 절차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해당 정부 기관에 개인정보 비공개 서면 요청을 해야 한다. 가령 미주리 주의 경우 보호 대상자가 직접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하거나 주 대법원 행정담당자를 통한 간접적인 요청 또는 사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요청 등 세 가지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바. 제3자의 정보 게시 금지 여부

여러 주에서 제3자가 인터넷 등에 법관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 ·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클라호마 주는 보호 대상자가 서면 요청을 한 경우 제3자가 72시간 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를 위반하면 4,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메릴랜드 주의 경우, 2023년 판사 피살 사건 이후 형사처벌 규정을 포함하는 법률(Wilkinson Judicial Security Act)[112]을 제정하였는데, 개인정보 게시로 인한 심각하고 긴급한 위협이 발생하여 폭행 · 괴롭힘 · 침입 등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물리적 보안 강화 입법

개인정보 보호와 병행하여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는 입법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본

112) Andrew Wilinson 판사가 2023년 그가 담당한 이혼사건의 당사자에게 집에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 법률은 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다.

메릴랜드의 Wilkinson Judicial Security Act는 법원 보안 TF를 구성해 주 전역의 법원 보안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2025년 1월까지 개선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테네시 주는 사법 절차에 참여 중인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중범죄(Class E felony)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버지니아는 치안판사(Magistrates) 보안 기준을 마련해 별도 출입구와 주차장, 물리적 보안시설, 비상 호출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워싱턴 주는 대법원 bailiff(한국의 법정 경위와 유사함)가 판사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범죄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스콘신 주는 판사 주거지에서 사법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경우 처벌 조항을 마련하였다. 와이오밍 주도 기존의 배심원 · 증인 위협죄를 판사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아. 텍사스 주: 판사 피습 사건 이후 강력한 입법[113]

2015년 Julie Kocurek 텍사스 주 판사가 자택 앞에서 총격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텍사스 주는 2017년 'Judge Julie Kocurek Judicial and Courthouse Security Act'를 제정하였다. 이 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안사고 보고 절차 개선

기존에는 local administrative judge가 담당하던 보안사고 보고를 Sheriff 등 보안책임 기관이 3영업일 이내에 법원행정처(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② 법원 보안위원회 설치 의무화

텍사스 주의 모든 법원에서 보안위원회(court security committee)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회에는 판사, 법원보안을 책임지는 법집행 기관 대표, 시/카운티 대표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법원보안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 및 예산 사용 방안을 지방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나, 실행 권한은 없다.

③ 보안 교육 및 인증

법원 보안요원(court security officer)은 Texa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113) 이 부분은 주로 "Securing Judges and Courts", Judicature, July 2020 참조.

(TCOLE)가 승인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안비용 수수료 (Filing Fee)의 도입

민사 사건 등의 소송 접수 시에는 추가로 $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는 법관 및 법원 직원의 보안 교육비용으로 사용된다.

⑤ 법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판사 및 배우자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공 기록에서 비공개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⑥ 법원 보안 전담 부서 신설

법원행정처 내에 법원보안 부서(Court Security Division)를 설립하고, 보안 감독을 위한 Court Security Director를 신설하였다.

⑦ 법관 개인 보호 지원

텍사스 주 정부의 공공안전부(Department of Public Safety)는 법관이 위협받거나 공격당한 경우, 사적인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보호는 해당 판사의 관할구역을 넘어서도 적용 가능하다.

7. 전국 보안관 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법원보안 체크리스트[114] 소개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주 법원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Sheriff들의 전국 연합단체가 작성, 배포하는 법원보안 체크리스트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114) ncjfcj.org/wp-content/uploads/2022/03/national-sheriffs-association-physical-security-checklist.pdf

Physical Security Checklist

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외부 공간 (Exterior)

경계 (예: 울타리 및 출입문)

항목	예	아니오
1. 법원 부지의 경계가 울타리, 담, 기타 물리적 장벽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	□
2. 장벽과 그 상태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	□
3. 이 장벽이 차량이나 보행자의 법원 접근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가?	□	□
4. 출입문이 견고하고 수리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가?	□	□
5. 출입문이 적절하게 잠겨 있는가?	□	□
6. 출입문 경첩이 견고한가?		

조명

항목	예	아니오
1. 전체 경계가 조명되어 있는가?	□	□
2. 야간 내내 조명이 켜져 있는가?	□	□
3. 조명 기구가 외부용(즉, 방수 및 방탄)으로 적합한가?	□	□
4. 조명 및 전기 배선이 정기적으로 점검되는가?	□	□
5. 조명 제어 방식: 자동 □ / 수동 □		
6. 제어 스위치가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
7. 외부 또는 경계 조명이 보조 전원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	□

건물 부지 조명 상태 (주차장 제외):

- 전면 조명: □
- 부분 조명: □
- 미조명: □

항목	예	아니오
8. 외벽(특히 출입구)이 불법 침입이나 폭발물 설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명되는가?	□	□
9. 공용구역(주차장 및 보행로 포함)이 공격을 방지할 만큼 충분히 조명되는가?	□	□

주차장(Parking Areas)

항목	예	아니오
1. 주차장 출입이 다음 중 어느 방식으로 통제되는가?		
가. 경비원	□	□
나. 전자식 출입문	□	□
다. 기타 (기재)		
2.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3. 경비가 제공되는 시간은? _____		
4. 주차장 감시에 CCTV가 사용되는가?	□	□
5. CCTV가 없는 경우, 주차장 및 차량에 대해 빈번한 점검이 이루어지는가?	□	□

건물

출입문, 창문 및 기타 개구부

1. 모든 외부 출입문은 최소 1¾인치 두께의 솔리드 코어 목재, 금속 피복 또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2. 모든 외부 출입문에는 실린더 잠금장치, 데드볼트, 또는 고급 패드락과 걸쇠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습니까?
3. 유리가 있는 문에는 이중 실린더 잠금장치 또는 고급 패드락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4. 모든 외부 출입문에는 침입 경보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5. 경첩 핀이 내부에 위치해 있거나, 용접되어 있거나,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습니까?
6. 비상용 하드웨어가 있는 문에는 침입 방지용 바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7. 비상용 잠금장치가 있는 문에는 비업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잠금장치가 있습니까?
8. 외부 잠금장치는 문틀을 벌려 침입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거나 외부 문틀이 강화되어 있습니까?
9. 외부 잠금장치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억지로 떼어낼 수 없습니까?
10. 외부 출입문 볼트는 절단이 어렵도록 보호되었거나 특별히 제작되었습니까?
11. 문이 열려 있을 때 외부 패드락이 여전히 부착되어 있습니까?
12. 외부 패드락 걸쇠는 나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13. 외부 문용 패드락 걸쇠는 절단이 어려운 등급의 강철로 만들어졌습니까?
14. 사용하지 않는 모든 출입문은 영구적으로 잠겨 있습니까?

15. 출입용으로 사용 가능한 창문에는 다음 중 어떤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잠금장치
    - 철제 막대
    - 철망
    - 침입 경보 장치
    - 기타 (기재)
16. 창문용 철제 막대와 철망은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까?
17. 1층 창문은 강화유리나 방탄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습니까?
18. 환기 목적이 아닌 모든 창문은 영구적으로 봉인되었거나 잠겨 있습니까?
19. 지붕으로 통하는 출입구(문, 천창 등)는 내부에서 단단히 잠겨 있습니까?
20. 실내에서 지붕으로의 접근이 통제되어 있습니까?

지붕 접근 여부

21. 지붕에 접근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a. 비상계단 ____ ____
    b. 인접 건물 ____ ____
    c. 기둥 또는 나무 ____ ____
    d. 기타 (명시) _____
22. 지붕 출입구에 침입 경보 장치가 있습니까? ____ ____

건물로 통하는 기타 개구부

23. 건물로 통하는 개구부(예: 터널, 유틸리티 및 하수구 맨홀, 수로, 서비스 포트)가 적절하게 보안 조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열쇠 관리 시스템

24. 열쇠 관리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____ ____
25. 열쇠 관리 시스템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_____
26. 건물 출입 열쇠는 제한적으로 배포됩니까? ____ ____
27. 마스터 키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엄격히 통제된 방식으로만 배포됩니까? ____ ____
28. 열쇠 관리 담당자가 재량으로 자물쇠와 열쇠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____ ____
29. 열쇠 복제는 열쇠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____ ____

출입문 수 및 법관 전용 출입구

30. 사용 중인 출입문 수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까? ____ ____

31.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출입구가 있습니까? ____ ____

천장과 벽

1. 모든 벽이 천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2. 법원청사 내에 드롭 천장 또는 탈착 가능한 천장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____ ____
3. 사용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_____

비상 전원 시스템

1. 주 전원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____ ____
2. 비상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전원이 있습니까? ____ ____

경보 시스템

1. 법원 건물에 침입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까? ____ ____
2. 해당 시스템은 UL(Underwriters' Laboratories) 기준을 충족합니까? ____ ____
3.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점검됩니까? ____ ____
4. 점검 주기는 얼마입니까? _____
5. 서비스 및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6. 계약이 없다면, 누가 서비스 및 유지보수를 담당합니까?
7. 경보 시스템은 제대로 설치되었습니까? ____ ____
8. 경보 시스템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a. 쉐리프 사무실 ____ ____
   b. 지역 경찰청 ____ ____
   c. 민간 통제 센터 ____ ____
   d. 기타 (명시) _____
9. 모든 경보에 대해 비상 전원 공급원이 있습니까? ____ ____
10. 비상 전원은 자동으로 작동합니까? ____ ____
11. 모든 경보 신호(예: 시간, 날짜, 위치, 원인, 조치 내역)에 대한 기록이 유지됩니까?
    ____ ____
12. 누가 해당 기록을 보관합니까? _____
13. 대응 능력(시간 및 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_____
    인력: _____
14. 현재 경보 시스템의 약점이나 결함은 무엇입니까?

금고 및 보관실

1. 금고나 보관실에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2. 설치된 경보 시스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_____

화재 보호

1. 법원청사가 지역 소방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____ ____
2. 소방안전관이 법원청사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____ ____
3.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이 법원을 점검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4. 소방안전관이 건물에 대해 승인하였습니까? ____ ____
   승인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5.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6.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7.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8.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9. 비상 소방 호스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10. 충분한 수압의 수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11. 스탠드파이프(소화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유틸리티 제어 지점

1. 유틸리티 및 배관 점검구, 출입문은 사용하지 않을 때 잠기거나 봉인됩니까? ____ ____

지하실, 다락, 통로, 냉난방 덕트

1. 지하실 출입문에 침입 경보 장치가 있습니까? ____ ____
2. 지하실 출입문은 사용하지 않을 때 단단히 잠기거나 고정됩니까? ____ ___
3. 지하실, 유틸리티룸, 보일러실, 통로, 다락방 출입문은 사용하지 않을 때 잠겨 있습니까?
   ____ ____
4. 통로는 무단 침입이 불가능하도록 확보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5. 공공구역 내 냉난방 환기구 입구는 외부 조작이 어렵도록 보안이 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엘리베이터

1. 판사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____ ____
2. 수감자 수송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____ ____
3. 수감자용 엘리베이터는 “일반인 사용 금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4. 수감자용 엘리베이터는 열쇠로만 조작됩니까? ____ ____
5. 해당 엘리베이터는 특정 층을 우회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까? ____ ____
6. 엘리베이터 내에 수감자와 호송자 사이를 차단하는 금속격자나 철창이 있습니까? ____ ____
7. 수감자용 엘리베이터에는 다음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a. 경보 장치 ____ ____
   b. 전화기 ____ ____
   c. CCTV ____ ____
   d. 기타 (명시) _____

무기 및 위험 물질 보관 구역

1. 법원청사 내에 어떤 위험 물질이 보관되고 있습니까?
   a. 무기 ____ ____
   b. 탄약 ____ ____
   c. 최루탄 ____ ____
   d. 기타 (명시) _____
2. 위험 물질은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보관되고 있습니까? ____ ____
3. 위험 물질은 안전한 방에 보관되고 있습니까? ____ ____
4. 해당 보관 구역에 침입 경보 장치가 있습니까? ____ ____
5. 출입문은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6. 경첩 핀은 제거되지 않도록 숨겨져 있거나 용접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7. 해당 문에 적절한 실린더 자물쇠가 있습니까? ____ ____
8. 적절한 걸쇠 자물쇠가 있습니까? ____ ____
9. 해당 구역의 창문에는 철창이나 메시, 또는 영구 봉인이 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10. 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11. 화재 감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12.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통신

1. 통신 수단이 충분합니까? ____ ____
2. 불충분하다면, 어떤 통신 수단이 필요합니까? _____
3. 법원청사 내 이용 가능한 통신 수단은 무엇입니까?
   a. 전화 ____ ____

b. 무전기 ____ ____
c. 전신 ____ ____
d. 텔레타이프 ____ ____
e. 안내 방송 시스템 ____ ____
f. 기타 (명시) _____

4. 보안 요원 전용 통신 시스템이 두 개 이상 있습니까? ____ ____
5. 보안 목적 전용 통신 시스템이 두 개 이상 있습니까? ____ ____
6. 안내 방송 시스템은 누가 운영합니까?
7. 법원 내 무전 시스템은 다음으로 구성됩니까?
   a. 쉐리프 본부 무전기 ____ ____
   b. 보안실 또는 법정 경위 사무실 무전기 ____ ____
   c. 법정 경위용 휴대용 무전기 ____ ____
   d. 보안 요원용 휴대용 무전기 ____ ____
   e. 기타 (명시) _____
8. 무전기는 다음과 연결됩니까?
   a. 지역 경찰 ____ ____
   b. 주 경찰 ____ ____
   c. 타 카운티 쉐리프 부서 ____ ____
   d. 기타 (명시) _____
9. 무전 장비 유지보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____ ____
10. 무전기 본체는 보조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까? ____ ____
11. 비상 코드 신호가 있습니까? ____ ____
12. 모든 전화는 건물의 교환기를 통해 연결됩니까? ____ ____
13. 교환기는 보안 기능이 있습니까? ____ ____
14. 텔레타이프는 외부 보안기관과 통신이 가능합니까? ____ ____
15. 통신 가능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_____

기록 보관소

1. 기록 보관소에 화재 감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2.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3. 업무 시간 외에 현재 기록은 잠긴 방이나 서랍에 보관됩니까? ____ ____
4. 보관 구역은 무단 접근이 불가능합니까? ____ ____
5. 모든 기록에 대해 체크아웃 절차가 있습니까? ____ ____
6. 공공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기 사무실 인근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공공구역 (대기 공간, 화장실, 복도)

1. 대기실은 정기적으로 수색합니까? ____ ____
2. 대기실은 법정 옆에 있습니까? ____ ____
3. 대기실에 드롭 천장 또는 탈착식 천장이 있습니까? ____ ____
4. 공중 화장실은 정기적으로 수색합니까? ____ ____
5. 화장실은 법정 근처에 있습니까? ____ ____
6. 화장실에 드롭 천장 또는 탈착식 천장이 있습니까? ____ ____
7. 쓰레기통에 밀반입 물품이 쉽게 숨겨질 수 있습니까? ____ ____
8. 공공구역에 안내표지(건물 배치도 및 층별 안내 포함)가 명확히 게시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현금 취급 사무실

1. 현금 창구에 보안 장치가 있습니까? ____ ____
2. 야간 또는 주말에 다량의 현금이 사무실에 남겨집니까? ____ ____
3. 적절한 금고, 보관함, 혹은 철제 상자가 있습니까? ____ ____
4. 해당 금고는 UL(미국 보험협회)의 인증을 받았습니까? ____ ____
5. 750파운드 미만의 금고는 벽이나 바닥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6. 직원 퇴사 시 금고 비밀번호는 변경됩니까? ____ ____
7. 비밀번호는 마지막으로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____ ____
8. 금고 또는 보관실은 침입 경보 장치로 보호되고 있습니까? ____ ____
9. 침입 경보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10. 경보 발생 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시간: _____
    - 인력: _____
11. 이 사무실에 비상 경보(듀레스 알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12. 비상 경보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13. 은행에 현금을 운반하는 직원은 누구의 호위를 받습니까?
    a. 쉐리프 ____ ____
    b. 지역 경찰 ____ ____
    c. 주 경찰 ____ ____
    d. 기타 (명시) _____
    e. 없음 ____ ____

법원 보안 절차

1. 법원청사에 보안 절차 매뉴얼이 있습니까? ____ ____
2. 모든 정보가 최신이며 정확합니까? ____ ____
3. 비상 계획이 최신입니까? ____ ____
4. 비상 상황 선언의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5. 비상 계획 내 지휘 체계와 권한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6. 비상 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갱신됩니까? ____ ____
7. 일반 시민이 연루된 의료 비상 사태 처리 절차가 있습니까? ____ ____
8. 법원 곳곳에 산소 포함 응급처치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9. 해당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시험됩니까? ____ ____
10. 법원청사의 지정 보안 책임자가 있습니까? ____ ____
11. 정상 근무 시간이 지난 후 보안 경비가 배치됩니까? ____ ____
12. 있다면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3. 법원청사를 매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____ ____
14. 입주자들에게 각종 비상 절차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____ ____
15.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계획은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비공식적입니까? ____ ____
16. 화재 및 대피 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까? ____ ____

보안 회의 및 통합

17. 다음 대상들과 정기적인 보안 회의가 열립니까?
    a. 판사 ____ ____
    b. 변호사 ____ ____
    c. 입주자 ____ ____
    d. 감독 책임자 ____ ____
    e. 청소 · 관리 인력 ____ ____
18. 보안 계획은 지역, 주, 연방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19. 일반 시민, 직원, 수감자 등의 동선이 분리되고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20. 법원으로 반입되는 택배나 물품에 대해 일상적인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____ ____

법정 및 관련 공간

법정 위치

1. 법정 위 · 아래 · 양옆 공간이 보안상 위험을 초래합니까? ____ ____

법정 출입문, 창문 및 기타 개구부

1. 사용하지 않는 문은 잠겨 있습니까? ____ ____
2. 모든 출입문 열쇠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까? ____ ____
3. 법정 내 출입문은 다음을 위한 별도 출입구가 있습니까?
   a. 판사 ____ ____
   b. 구속된 피고인 ____ ____
   c. 방청객 ____ ____
4. 피고인의 출입문은 방청석과 거리가 충분히 있어 물품 전달을 방지합니까? ____ ____
5. 창문에는 외부에서 (특히 판사석을) 볼 수 없도록 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법정 조명

1. 비상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2. 조명은 열쇠로 조작됩니까? ____ ____

법정 가구

1. 피고석과 방청석 사이에는 구획을 나누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____ ____
2. 판사석은 양쪽 끝이 막혀 있어 외부 접근을 제한합니까? ____ ____
3. 피고인 및 증인용 의자는 구속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4. 방청객 의자는 튼튼하며 바닥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5. 물컵, 물병, 재떨이 등 무기가 될 수 있는 물품은 피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까? ____ ____

법정 보안 장비

1. 다음 항목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집니까?
   a. 경보 장치 ____ ____
   b. 비상 조명 ____ ____
   c. 금속 탐지기 ____ ____
2. 금속 탐지기는 사용 가능합니까? ____ ____

3. 판사석은 방탄 기능이 있도록 강화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4.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어 있습니까?
5. 법정에 듀레스 알람(비상 경보)이 있습니까? ____ ____
6. 다음 위치에 듀레스 알람 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a. 판사석 ____ ____
   b. 서기석 ____ ____
   c. 경위석 ____ ____
   d. 판사실 ____ ____
   e. 판사 비서 자리 ____ ____
   f. 기타 (명시) _____
7. 이 알람은 오디오 모니터링 기능이 있습니까? ____ ____
8. 법정 내 듀레스 알람에 대해 적절한 대응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____ ____
9. 법정에 전화가 있습니까? ____ ____
10. 법정에 안내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까? ____ ____
11. 법정에 무선 송신기가 있습니까? ____ ____
12. 법정 경위가 휴대용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____ ____
13. 해당 무전기는 다음과 연결됩니까?
    a. 쉐리프 본부 ____ ____
    b. 보안 사무실 ____ ____
    c. 기타 (명시) _____
14. 법정 내에 추가 구속 장치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법정 보안 절차

1. 다음 인원이 법정 내에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a. 법정 경위 ____ ____
   b. 법 집행기관 소속 증인 ____ ____
   c. 법 집행기관 소속 방청객 ____ ____
   d. 기타 (명시) _____
2. 법정 경위는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____ ____
3. 법정 경위는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____ ____
4. 피고인은 법정 밖에서는 항상 구속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5. 다음 인원을 법정에서 긴급히 대피시킬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a. 피고인 ____ ____

b. 판사 ____ ____
c. 배심원 ____ ____

6. 법정 경위는 피고인을 긴급히 대피시키는 절차를 숙지하고 있습니까? ____ ____
7. 법정 입장을 위한 검색 및 스크리닝 절차가 있습니까? ____ ____

판사실 및 관련 사무실

1. 판사실은 법정 경위 또는 비서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색됩니까? ____ ____
2. 방문객 출입은 서기, 경위 또는 비서에 의해 통제됩니까? ____ ____
3. 누가 통제합니까? _____
4. 의심스러운 소포나 편지는 판사에게 전달되기 전에 확인됩니까? ____ ____
5. 판사실에는 출입구가 하나 이상 있습니까? ____ ____
6. 출입문은 자동 폐쇄 및 잠금 장치가 있습니까? ____ ____
7. 판사가 부재 중일 때 판사실은 잠겨 있습니까? ____ ____
8. 판사가 판사실에 있을 때 문은 보통
   a. 열려 있습니까? ____ ____
   b. 닫혀 있습니까? ____ ____
   c. 잠겨 있습니까? ____ ____
9. 외부에서 판사 책상이 보이는 경우, 시야가 차단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10. 판사는 법원 출입구, 판사실, 법정을 오갈 때 정기적으로 호위를 받습니까? ____ ____
11. 고위험 또는 민감한 재판 중에도 호위가 제공됩니까? ____ ____
12. 판사실에 듀레스 알람이 있습니까? ____ ____
13. 해당 알람에 대한 대응 체계는 적절합니까? ____ ____
14. 판사 중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____ ____
15. 판사 중 판사실에 총기를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____ ____
16. 판사 중 법정 내에 총기를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____ ____

증인 대기실

1. 증인 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2. 검찰과 피고 측 증인을 구분하여 대기시킬 수 있습니까? ____ ____
3. 대기실에 대한 공공 접근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4. 조명 스위치가 대기실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변호인-의뢰인 접견실

1. 법원 내에 변호인과 의뢰인이 접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____ ____
2. 해당 공간은 보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3. 드롭 천장 또는 탈착식 천장이 있습니까? ____ ____
4. 접견실은 잠글 수 있습니까? ____ ____
5. 사용 전후로 밀반입 물품 수색이 이루어집니까? ____ ____
6. 접견 상황은 항상 시각적으로 감시되고 있습니까? ____ ____

배심원 평의실

1. 배심원 평의실은 법정 옆 또는 통제된 통로로 접근 가능합니까? ____ ____
2. 창문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3. 평의실 내부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4. 방음이 충분히 되어 외부인이 엿들을 수 없습니까? ____ ____
5. 사용 전 평의실은 밀반입 물품 수색이 이루어집니까? ____ ____
6. 평의실은 사용하지 않을 때 잠겨 있습니까? ____ ____

수감자 접견 구역

1. 수감자는 교도소에서 법원 접견 구역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이동합니까?
   a. 엘리베이터 ____ ____
   b. 계단 ____ ____
   c. 터널 ____ ____
   d. 다리 ____ ____
   e. 차량 ____ ____
   f. 도보 ____ ____
2. 외부에서 이송된 수감자는 다음을 통해 건물에 진입합니까?
   a. 공공 출입구 ____ ____
   b. 전용 출입구 ____ ____
   c. 셀리 포트(Sally port) ____ ____
3. 이 구역은 대중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4. 차량이 두 방향 이상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까? ____ ____
5. 게이트는 원격 제어됩니까? ____ ____
6. 외부 게이트가 닫혀 잠긴 후 내부 문이 열리는 인터록 시스템이 사용됩니까? ____ ____
7. 이 구역은 CCTV로 모니터링됩니까? ____ ____

8. 이 구역은 수감자 이동만을 위해 사용됩니까? ____ ____
9. 수감자 출입구는 공공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____ ____

제한 및 보안 통로

1. 수감자가 임시 구금실에서 법정으로 이동할 때 공공 구역을 지나갑니까? ____ ____
2. 제한 구역 통로를 판사나 법원 직원도 이용합니까? ____ ____
3. 제한 또는 보안 통로는 CCTV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까? ____ ____
4. 법 집행관은 제한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총기를 잠금 캐비닛에 보관해야 합니까? ____ ____
5. 제한 구역 출입문은 일반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열쇠로 잠금됩니까? ____ ____
6. 보안 통로 열쇠는 쉐리프 부서 이외의 사람에게도 지급됩니까? ____ ____
7. 보안 요원은 해당 열쇠를 건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8. 수감자 이동에 사용되는 계단은 충분히 조명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9. 계단 및 계단통은 보호용 금속 그릴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____ ____
10. 계단은 CCTV로 모니터링됩니까? ____ ____

임시 구금 구역

1. 법원청사 내부에 임시 구금 시설이 있습니까? ____ ____
2. 없다면, 수감자는 어디에서 대기합니까?
3. 임시 구금실은 몇 개입니까?
4. 수감자는 접견 구역에서 다음 경로로 임시 구금 구역으로 이동합니까?
   a. 보안 엘리베이터 ____ ____
   b. 계단 ____ ____
   c. 터널 ____ ____
   d. 다리 ____ ____
5. 임시 구금실은 다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까?
   a. 법정 ____ ____
   b. 제한 구역 통로 ____ ____
6. 수감자용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7. 조명은 외부에서 제어됩니까? ____ ____
8. 비상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9. 구금실 문에 관찰창이 있습니까? ____ ____
10. 최소한 한 개의 구금실은 법정 절차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 중계가 가능합니까? ____ ____

11. 구금실 문은 어떻게 잠깁니까?
    a. 전자식 ____ ____
    b. 수동식 ____ ____
12. 구금실 문은 어디서 제어됩니까?
    a. 원격 제어 센터 ____ ____
    b. 현장에서 직접 ____ ____
    c. 둘 다 ____ ____
13. 쉐리프 부서 외 인원에게 구금실 열쇠가 지급됩니까? ____ ____
14. 구금실 열쇠는 상업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됩니까? ____ ____
15. 구금실 및 수감자 사용 공간은 사용 전후에 밀반입 물품 수색이 이루어집니까? ____ ____
16. 구금실은 견고하며, 수감자의 자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17. 법 집행관은 구금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총기를 잠금 캐비닛에 보관합니까? ____ ____
18. 수감자는 구금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까? ____ ____
19. 추가 구속 장치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20.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21. 미성년 수감자는 다른 수감자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22. 여성 수감자는 다른 수감자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23. 수감자 식사 제공 절차 중 탈출 위험이 있습니까? ____ ____
24. 임시 구금 구역에 대한 비상 대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25. 보안 및 수송 직원은 비상 상황에서 수감자 대피 절차를 숙지하고 있습니까? ____ ____

보안 장비 보관 구역

1. 총기 보관함은 충분한 수량이 있습니까? ____ ____
2. 보관 구역은 상업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열쇠로 잠금됩니까? ____ ____

수감자 절차

1. 수감자의 의료 비상 상황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____ ____

추가 의견 요청

법원청사의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 의견이나 제안이 있다면 추가 페이지를 사용해 작성해 주십시오.

V. 뉴욕주, 캘리포니아 주의 법원보안

1. 뉴욕주

뉴욕주 법원보안의 체계, 예산, 장비 등 전반은 2025. 7. 24. 뉴욕주 법원행정처, 뉴욕시 법원의 현장 조사, 담장자 인터뷰 등 결과로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그 출장결과[115]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문언 조사 결과를 덧붙여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가. 뉴욕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공공안전국장과의 면담[116]

○ 일시, 장소: 2025. 7. 25. AM9:30-11:00, 뉴욕주 법원행정처[117]
(25 Beaver St., New York, NY)

○ 대상자: Justin Barry 기조실장,[118] Michael Magliano 공공안전국장[119]



◀ 뉴욕주 정부 청사 건물, 법원행정처는 위 건물의 5개 층을 사용함

115) 박병민, 미국사법제도 연구반 2025년 상반기 출장보고서(법원보안), 2025. 8.
116) 업무 관련 면담 전 30분 정도 Joseph Zayas 뉴욕주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117) 뉴욕주 대법원은 뉴욕시에서 차로 4-5시간 떨어진 Albany(뉴욕주 주도)에 있고, 법원행정처는 맨하튼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체 건물 중 5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118) Justin Barry의 직함은 'Executive Director'인데 예산, 청사보안 등 업무를 총괄하고, 처장, 차장 다음인 3번째 서열이다. 한국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대응되는 지위로 보인다.
119) Chief, Department of Public Safety, 법원보안 분야에 40여년 가까이 근무하였다고 한다.



▲ [공공안전국장 집무실]
(가운데) Justin Baryy 기조실장
(맨우측) 공공안전국장 Michael Magliano



▲ 법원행정처 건물 8층에 위치한 공공안전국



▲ Magliano 국장이 공공안전국 IP 카메라
상황실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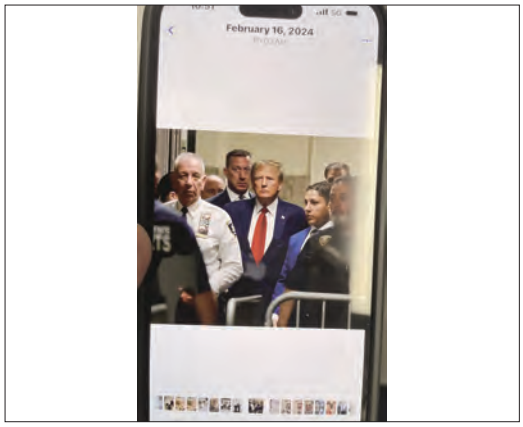

▲ Magliano 국장의 핸드폰에 저장된
2024. 2.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법원 재판출석 사진

[인터뷰 내용]

○ **[보안 조직체계 등] 뉴욕주 법원 보안 조직(의사결정, 집행),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 법원행정처(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OCA) 산하에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이 뉴욕주 전체의 법원보안을 총괄함. 뉴욕주 내에 약 300여개의

법원청사 및 그곳에서 근무하는 법관 및 직원들의 안전을 담당함

- 법원행정처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고, 실무상 기조실장에게의 보고, 협의를 통해 보안 관련 주요 정책 등을 결정, 집행함
-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 조직은 다음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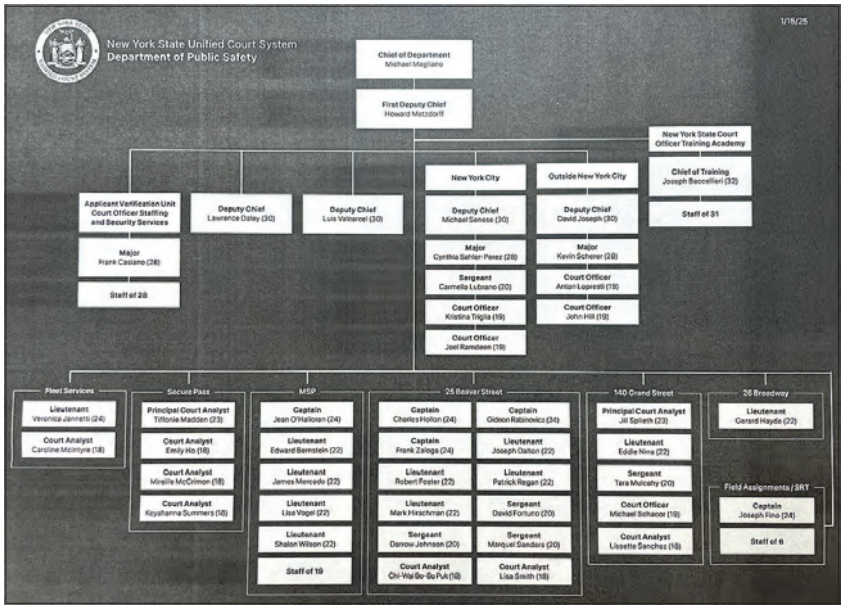

- 뉴욕주 전체 법원보안 직원은 총 4,253명인데, 그 중 218명이 간부급 직원임
- 하급 직원인 CSO(Court Security Officer)[120]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6-7 주 정도의 연수를 마치면 간부급 직원이 될 수 있는데, 간부급 직원은 Sergeant ⇨ Lieutenant ⇨ Captain ⇨ Major ⇨ Chief 순으로 승진할 수 있음
- 신규 채용직원은 **아카데미**(NYS Court Officer Academy)에서 약 4개월 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아카데미는 뉴욕주 전역에 2개가 있고, 교관으로 전직 뉴욕경찰(NYPD) 등을 채용함
- **공공안전국의 미션, 이슈와 우선순위, 목표, 계획** 등에 대한 자료[121]를 제공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20) CSO와 간부급 직원은 복장이 다름. CSO는 남색 유니폼을 입고 그 위에 방탄조끼를 입는데, 간부급 직원은 흰색 셔츠를 입고 그 안에 방탄조끼를 착용함.

121) 공공안전국이 2025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 내부 보고서임.

A. 임무 구성요소 (Mission Components)

- 보안, 안전 정책 및 절차 수립
- 법원보안 아카데미 감독
- 주정부 소속 보안인력과 계약직 보안 인력의 운영, 감독
- 비상 대응 프로토콜 개발, 시행
-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해 연방, 주, 지방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 시설 건설, 개보수 프로젝트 관련 보안 문제 자문
- 주 전역 사법보호 프로그램(Judicial Protection Program) 감독
- 제복 근무 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착수, 모니터링
- 판사 및 공공 안전을 위한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 개발
- 모든 보안 직위에 대한 선발 과정 참여
- 보안 직위 선발을 위한 시험 개발 자문
- 고위험 사건 관련 보안 작전 감시 및 지휘
- 보안 및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해 일선 법원 사법행정담당자들 자문
- 모든 법원 공간의 물리적 보안 평가
- 주 전역 보안 장비의 구매 및 배포 승인 및 조정
- 주 법원 및 지역 법원에 대한 보안 평가 조정 – 태스크포스 보고서 및 실행 계획에 따름
- 주 법원 및 지역 법원에 대한 시설 보안 및 공공 보호 계획 조정
- 연방 규제 요구 사항에 따른 공공 안전 무선 통신 감독
- 자동제세동기(AED) 프로그램 감독
- Peace Officer Registry 데이터베이스 감독
- IP 카메라 이니셔티브 감독
- 출입 통제(물리적 보안) 시스템 감독
- 주 전역 Secure Pass 프로그램 감독
- 차량 서비스(EZ Pass, 연료, 수리, DMV 등) 감독
- UCS 주차 패스(Placards) 감독

B. 문제 및 우선순위 (Issues and Priorities)

- 공공안전국은 전자 보안 기술을 활용하여 21세기로 나아가고 있음. 우리는 법원과 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비상 대응 프로토콜 및 제복 근무자 훈련 체계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 여기에는 다양한 보안 장비 구매가 포함되고, 예를 들어 내·외부 비상 대응 기관과의 상호 운용이 가능한 휴대용 장비, 손전등, 비상 랜턴 등이 있음. 또한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원의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 전역 법원에 물리적 및 전자적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법원 주변의 보안 순찰이 강화되었고, 이동형 보안 순찰이 도입되었음. 사법부 위협 조사와 그에 따른 사법부 보호 세부 작전은 여전히 우리 운영의 핵심 요소임. 공공안전국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법관에게 다양한 전략을 제공하고, 보안 필요성에 따라 전자 장비의 배치를 포함한 유연한 대응도 가능하게 함. 모든 법원에서 제복 인력을 위한 비상 대응 프로토콜에 중점을 둔 표준화된 훈련 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C. 목표 및 목적 (Goals and Objectives)
• 지역 법원에 공공안전국 직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상 대응 계획 확대 추진 • 재무 부서와 협력하여 예산 조달, 배분, 관리 • 주 전역의 물리적 보안 체계 지속 모니터링 • 공공 안전 무선 통신 능력 지속 향상 • IP 카메라 개선 계획 지속 • 출입 통제 개선 계획 지속 • 제복 근무자 대상 훈련 기회 확대 – 특히 비상 대응 주제 중심 • 보안 직위 채용 문제 해결 • 신축, 개보수 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안 체계 설계 및 개선 계획 지속 • TF 보고서에 따른 무선 비상 경보 시스템 설치/교체 지속 • 팬데믹 및 허리케인 대비 비상 장비 유지 지속 • 전반적 법원보안 운영 촉진을 위한 기술 검토, 설계, 구현 지속
D. 주요 변경 및 개선사항 논의 (Discussions of Major Changes and Initiatives)
- 공공안전국은 비공개 인프라, 모바일 통신,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해 법 집행기관과의 무선 통신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신규 훈련 프로그램, 표준화된 보안 장비, IP카메라 및 출입 통제 시스템의 확장을 추진 중이고, 뉴욕시 법원 등에 이동형 보안 순찰 배치도 진행하였음 - 공공안전국은 뉴욕 경찰, 맨해튼 다운타운 보안 개선계획 등과 협력하고 있고, 이를 지속할 예정임 - 공공안전국은 24시간 운영되는 통합 지휘센터(Command Center)를 통해 법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 이 센터는 뉴욕시 60 Lafayette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 전역의 IP 카메라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통신 플랫폼을 조정함. 또한 모바일 보안 순찰 프로그램의 본부 역할을 하고, 다양한 비상 대응 기관과의 통합 대응을 위한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음. 또한 이 센터는 뉴욕주 국토안보청, 뉴욕시 비상관리국, 공동테러 TF 조직 등과 직접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정보 전송 허브 역할도 수행함 - 공공안전국은 특수 대응팀(Special Response Team, SRT) 확대를 지속하고 있음. 이 팀은 대중 통제, 고위험 수감자 취급, 구금 해제, 고위험 재판에 필요한 추가 보안 수요 충족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이 팀에는 전문화된 훈련 및 장비가 필요함 - 공공안전국은 지역 법원(Town and Village Court)을 위한 실행 계획에 기반한 시설 보안 및 공공 보호 개선개획 구성 요소를 시행할 임무를 부여받았음. 이 개선계획의 한 요소는 보안 평가임. 특별히 지정된 팀이 뉴욕 전역을 순회하며 시설 보안 문제를 문서함. 이 팀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 장비, 그리고 출장 경비가 요구됨 - 공공안전국의 법 집행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대외 홍보 활동을 지속할 것임

○ 법원보안 아카데미(NYS COURT OFFICERS ACADEMY)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자, 법원보안 아카데미의 Mission Statement 자료를 받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원보안 아카데미(COA)는 제복 근무자와 'Peace Officers'로 지정된 비제복 직원

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아카데미 강사들은 교육 커리큘럼, 수업 계획, 훈련 매뉴얼, 시청각 자료를 제작 및 검토하고, 주 전역의 5,000명 이상의 Peace Officers에 대한 훈련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 아카데미 직원은 지역 법원(Town and Village Court)의 보안 훈련을 조정 및 수행하고, 뉴욕주 법원보안대원 후보자에 대한 신체 능력 평가도 진행함
- 아카데미는 뉴욕시와 캐슬턴온허드슨(Castleton-on-Hudson) 시설에서 신규 채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수업 규모는 각 법원의 운영 필요에 따라 조정됨. 현재의 신입 교육 프로그램은 16주 과정임
- 아카데미는 뉴욕주 법원 의장대(Ceremonial Unit) 활동을 감독하고 승인된 모든 행사를 지휘함
- Captain 이상[122]의 직급을 가진 제복 근무 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문성 개발 세미나도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공함
- 아카데미는 베테랑 제복 근무자를 위해 매년 3일간의 의무연수를 시행함.
- Sergeant, Lieutenant 직급을 위한 2일간의 전문성 개발 훈련 프로그램도 뉴욕시, 캐슬턴온허드슨 또는 필요한 경우 외부 장소에서 실시됨
- 비제복 Peace Officers를 위한 형사재판 기본 과정 의무 교육(175시간)은 아카데미에서 실시되고, 5주차(week) 과정으로 나뉘어 시행됨
- 주법(State Law)에 따라 아카데미는 매년 230~240회에 걸쳐 제복 경찰관, Peace Officers의 사격 훈련을 뉴욕시 및 외부 시설에서 실시함. 총기 소지 자격이 부여된 모든 인력이 그 대상임
- 전문화된 훈련은 특수대응팀(Special Response Team), 의장대, 수감자 운송 요원 및 기타 특수 부대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특수 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지속적으로 발전, 확장되고 있음

- 총기 난사 대응 훈련 (Responding to an Active Shooter)
- 고급 사격술 (Advanced Firearms)
- 수감자 이송/격리 (Cell Extraction)
- 고위 인사(Judicial/Executive) 보호

122) 앞서 본 것처럼, 하위직급인 CSO(Court Security Officer) 위로 간부급 직원이 있는데, Sergeant ⇨ Lieutenant ⇨ Captain ⇨ Major ⇨ Chief 순으로 계급이 높아진다.

- 건물 대피 훈련 (Building Evacuation)
- 법정 탈출 (Courtroom Extraction)
- 조직폭력범 인식 (Gang Awareness)
- 응급 처치 및 인명 구조(First Responder/First Aid)
- 고급 군중 통제 (Advanced Crowd Control)

- 아카데미는 지역 경찰, 지역 보안관에 고용된 계약직 보안 인력을 대상으로 시스템 프로토콜(특히 자기장 탐지기, 엑스레이 검색)에 맞춰 보안업무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 지원 및 지침을 제공함
- 아카데미에서 시행하는 전문성 개발 과정의 외부 강사로는 경찰 총기 강사, 경찰 방어 전술 강사, 경찰 정신건강 강사, 경찰 일반 주제 강사 등이 있고, CPR/응급처치 및 가정폭력/신체 단련 전문가도 외부강사로 활동함
- 그 외 아카데미는 총기 소지 권한을 회복한 Peace Officers를 위한 재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묵시적 편견/전술 인식 훈련(Implicit Bias/Tactical Perception)', 지역사회 홍보 프로그램도 개발 · 운영함



▲ 뉴욕주 법원보안 아카데미 수료식 사진(구글 이미지 검색)

○ **[예산, 지출내역 등] 뉴욕주 법원 전체 예산과 그 중 보안관련 예산, 그리고 보안예산 지출 내역?**

- 2025년 뉴욕주 사법부 전체 예산은 약 27억 달러이고,[123] 그 중 법원보안관련 예산은 약 4억 3,600만 달러로서 약 16% 정도임
- 사실 사법부 예산의 90% 정도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이는 법원보안 분야도 마찬가지임
- 법원보안 예산 4억 3,600만 달러 중 인건비가 4억 600만 달러이고, 나머지는 지역 보안관, 지역 경찰과의 계약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비용, 사격장 임대료, 장비 구입 · 유지 비용 등임[124]
- 유니폼, 무전기는 5년마다 교체하는 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듦

○ **[보안장비] 현재 사용 중인 보안 장비, 제조업체 등?**

- X-ray 탐지기는 'Smiths Detection'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보안요원마다 착용하고 있는 무전 라디오(워키토키)는 모토롤라 제품이며, 방탄조끼 등 신체 보호장비(Body Armor)는 'Atlantic Tactical'사의 제품을 사용함. 총기는 'Glock USA'사의 제품을 공급받음

○ **[최근 이슈] 뉴욕주 법원의 최근 보안 관련 이슈는?**

- 코비드19 이후 신규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원자가 많지 않음.[125]
- 급여, 복지, 연금 등 근무조건은 좋은 편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시절 온라인 근무를 많이 경험한 탓인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 직종에 잘 지원하지 않는 것 같음

○ **[대규모 시위 대응] 판결에 불만을 품은 대규모 시위대가 법원을 공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청사 보호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

123) www.budget.ny.gov/pubs/archive/fy25/ex/agencies/appropdata/Judiciary.html 확인.

124) www.nycourts.gov/LegacyPDFS/admin/financialops/FPCM-PDFs/V2_jdbgt/FY2025_FINAL-JudiciaryBudget.pdf 확인.

125) 현재 뉴욕시 법원보안 직원 결원이 35%에 이르고, 지원자 수도 최근 10년간 70% 감소했다고 함. nypost.com/2025/06/15/us-news/nyc-courts-facing-bleak-staffing-crisis-which-union-warns-could-spark-powder-keg-of-violence/ 확인.

- 2024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2025년 재 취임전)의 민 · 형사 재판이 맨하튼 법원에서 있었음.[126]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 반대 정치인, 대중들이 법원청사 앞에서 큰 규모의 시위를 벌였음



-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거물급 정치인이 관여된 사건에서 큰 규모의 시위가 예상되는 경우, 뉴욕경찰(NYPD), 연방비밀경호국(U.S. Secret Services[127]) 등과 협력하여 법원 주변 도로 통제 등 보안계획을 세움
- 법원청사 내부 방호는 법원이, 청사 외부는 뉴욕경찰 등 외부 법집행 기관이 책임짐
- 트럼트 대통령 관련 재판은 뉴욕주 전체 법원보안 총책임자인 Magliano가 직접 맡아 보안 직원 전원이 총력을 기울여 별다른 사고 없이 선고까지 이루어짐. 잘 끝나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함

126) 민사재판(NY v. Trump)은 뉴욕주 정부가 트럼프 회사가 자산가치를 부풀려 대출 등에서 이익을 보았다는 사기행위 관련하여 2022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2023. 10.부터 2024. 1.까지 재판이 진행되어 2024. 2. 16.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Decision & Order (Index No. 452564/2022, 2024.02.16) - New York Supreme Court, Civil Division].
형사재판은 일명 'Hush Money' case라고 하는데, 트럼트 대통령이 성인영화 배우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분식회계 등을 하였음을 내용으로 한다. 2024. 5. 30. 배심원 유죄평결이 있었고, 판사는 2025. 1. 10. 유죄를 인정하되 처벌을 하지 않는 판결(형면제 판결)을 내렸다[AP News, Court gives Trump unconditional discharge in hush money case (2025.01.10.)].

127) 전, 현직 대통령과 같은 주요 인사들의 경호를 책임지는 기관임.

○ [법관 보호] 최근 법관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은지? 그런 경우 어떤 보호조치가 취해지는지?

- 과거에는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나 협박편지 배송 등이 많았고,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을 통한 협박이 많이 일어남
-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이 보고되는 경우, 개별 법관에 대한 보호조치(법관 에스코트, 경찰에 우선보호 요청 등)를 취하고, 사전에 안전 매뉴얼 등을 법관들에게 지급함

○ [보안매뉴얼] 뉴욕주 법원보안 매뉴얼 공유가 가능한지?

- 대외비이므로 공유는 어렵지만, 매뉴얼 목차는 제공할 수 있음
- 가장 최근 버전인 'Court Officers Rules and Procedures Manual- Effective August 2024' 목차는 다음과 같음

Part 1 – 임무, 조직, 책임

Section 1.10 – 공공안전국의 사명, 비전 및 가치
Section 1.20 – 조직도: 1심 법원
Section 1.21 – 조직도: 항소 법원
Section 1.30 – 공공안전국장: 직무 및 책임
Section 1.31 – 공공안전 제1부국장: 직무 및 책임
Section 1.32 – 공공안전 부국장: 직무 및 책임
Section 1.33 – 교육 담당 부국장: 직무 및 책임
Section 1.34 – 보조국장 (뉴욕시 외 항소부): 직무 및 책임
Section 1.35 – Major: 직무 및 책임
Section 1.36 – Captain: 직무 및 책임
Section 1.37 – Lieutenant: 직무 및 책임
Section 1.38 – Sergeant: 직무 및 책임
Section 1.39 – 법원보안 직원: 직무
Section 1.40 – 법원보안 훈련생: 직무
Section 1.41 – 교육 담당 책임자: 직무 및 책임
Section 1.50 – 비번 근무 (Off Duty Employment)

Part 2 – 법정 보안 및 검색 절차

Section 2.10 – 법정 내 절차
Section 2.11 – 전자기기 정책
Section 2.20 – 보안 규정
Section 2.30 – 의심스러운 우편물 처리
Section 2.40 – 중대한 사건
Section 2.50 – 무전기 통신
Section 2.60 – 주 전역 검색 프로그램 규정
Section 2.70 – 금속 탐지기 프로그램
Section 2.71 – 캐비닛 X-레이 시스템
Section 2.80 – 흡연 및 약물 금지 규정 집행
Section 2.90 – Secure Pass 신분증
Section 2.91 – 전자 이동 장치

Part 3 – 수감자 관련 절차

Section 3.10 – 수감자 일반 정책
Section 3.20 – 수감자 인도 절차
Section 3.30 – 법정 방문
Section 3.40 – 구금 수감자
Section 3.50 – 특별 관심 수감자
Section 3.60 – 유치 구역
Section 3.70 – 무죄 판결 후 석방 절차

Part 4 – 일반 규정: 제복 및 장비

Section 4.10 – 일반 규정: 제복 및 장비
Section 4.20 – 표장 및 신분증
Section 4.30 – 지정 제복
Section 4.31 – 근속장 및 표창장
Section 4.32 – 방탄복
Section 4.40 – 장비
Section 4.50 – Sergeant 제복 규격
Section 4.60 – 고위직 제복 규격 (Chief, Major, Captain, Lieutenant)

Part 5 - 배심원 감독

Section 5.10 - 배심원 감독
Section 5.20 - 배심원 이동
Section 5.30 - 범죄 현장 검증
Section 5.40 - 심의 중 또는 격리된 배심원

Part 6 - 총기

Section 6.10 - 총기: 일반 규정
Section 6.20 - 총기 훈련
Section 6.30 - 총기 취득, 보호, 처분
Section 6.40 - 총기 분실, 도난, 파손
Section 6.50 - 총기 회수 및 복구
Section 6.60 - 가정폭력 및 보호명령 관련 사건의 총기

Part 7 - 물리력 사용

Section 7.10 - 물리력 사용
Section 7.20 - 경찰봉(Baton)
Section 7.30 - 최루액(OC, Oleoresin Capsicum) 분사 장비

Part 8 - 비상 대응

Section 8.10 - 사건 지휘 체계
Section 8.20 - 건물 대피 절차
Section 8.21 - 법원 폐쇄 계획
Section 8.22 - 무선 비상 경보 시스템: 주간 점검
Section 8.30 - 환자 보조
Section 8.40 - 화재
Section 8.50 - 폭탄 위협/방치된 장비: 의심 또는 신고된 폭발물
Section 8.60 - 인질 상황
Section 8.70 - 군중 통제
Section 8.80 - 위험 물질
Section 8.90 - 자동 심장충격기(AED)
Section 8.91 - 마약 길항제(Naloxone) 정책
Section 8.92 - 펜타닐 포함 문서

Part 9 – 체포
Section 9.10 – 체포: 일반
Section 9.20 – 비번 중 체포
Section 9.30 – 체포 관련 법적 이슈
Section 9.40 – 외부 법집행기관의 법원 내 활동 지침

Part 10 – 표준 보고서 및 양식
Section 10.10 – 이상 상황 보고서
Section 10.20 – 압수 물품 송장
Section 10.30 – 전염병 관련 보고서
Section 10.40 – 승인된 약어 목록
Section 10.50 – 기록 열람 요청서

Part 11 – 용어 해설
Section 11 – 용어 해설 (Glossary)

○ **[법관대상 범죄 조항] 뉴욕주 법에 판사 대상 범죄 규정이 있는지?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지?**

-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 판사 대상 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하 내용은 필자가 조사한 결과임

  • 舊 뉴욕주 형법(Penal Law) §120.09(Assault on a Judge)[128]는 "판사가 공식적인 사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해당 판사에게 '중대한 신체적 손상(serious physical injury)'을 야기한 경우 C급 중범죄(Class C felony)로 규정하였음

  • 2024. 7. 19. 개정 · 시행된 §120.09a(Aggravated Assault on a Judge)는 같은 행위를 가중하여 B급 중범죄(Class B felony)[129]가 되는 것으로 함

128) A person is guilty of assault on a judge when, with intent to prevent a judge from performing official judicial duties, such person causes serious physical injury to such judg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judge shall mean a judge of a court of record or a justice court. Assault on a judge is a class C felony (NYSenate.gov).
129) 구 조문의 'C' 부분을 'B'로 개정함.

○ **[외부 보안기관과의 관계] 주법원의 주된 보안 책임자는 지역 보안관(Sheriff)으로 알고 있음. 법원 외부 기관이 법원보안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함**

- 과거 뉴욕주 법원의 경우 쉐리프가 법원 보안을 담당했던 때가 있었음. 그러나 현재는 뉴욕주 12개 District(지방법원 관할) 중 1곳 외에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안을 담당하고, 쉐리프가 책임자로 되어 있지 않음. 나머지 1곳도 조만간 쉐리프가 아닌 법원이 보안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됨
- 법원 외부 법집행기관이 법원보안 책임을 맡는 것에 대한 장점이 분명 있겠지만,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 있는 문제, 관할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 협력이 어려워 질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법원 내부적으로 보안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원 보안위원회 존부] 연방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법원보안위원회(Committee) 형태로 보안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던데, 뉴욕주는 어떤가요?**

-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뉴욕주는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음. 법원행정처 내 공공안전국이 의사결정, 집행을 전담함
- 이런 조직구성이 체계적이고, 법원보안과 관련된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나. 맨하튼 형사법원 등 현장 투어

앞서 본 면담을 마치고 인근 맨하튼 형사법원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인근에는 민사고액법원(항소부 포함),[130] 가정법원 등 법원 청사 4개가 모여 있음. 위 4개 법원을 포함한 뉴욕시(New York City) 법원 전체의 청사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Michael Senese,[131] 형사법원 건물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Jack[132]이 청사 앞에 마중 나와 있어 이들과 함께 보안 현황을 둘러봄

130) 뉴욕주에서는 민사고액 법원을 Supreme Court라고 부르는데, 미 연방이 건립되기 전부터 뉴욕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300년이 넘게 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법원임.
131) Chief 직급임으로 35년 정도 근무했다고 함.
132) Major 직급임.



▲ (왼쪽)뉴욕시 형사법원 청사 보안책임자 Jack
(가운데) 뉴욕시 법원청사 전체 보안책임자 **Michael Senese**

○ 보안요원 착용장비

총기 외에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이했음. 간부급 직원들은 방탄조끼를 셔츠 밖이 아닌 셔츠 안에 입는다고 함



▲ 방탄조끼, 무전기, 총기, 최루액, 수갑, 진압봉 착용



▲ 좌측부터 총기, 최루액, 탄창



▲ 최루액 스프레이



▲ 수갑, 무전기 착용



▲ 진압봉(Baton)



▲ 방탄조끼 등

○ 주요 장비 등



▲ X-ray 탐지기(Smiths Detection 제품)



▲ 법원 청사 내 영상분석실, 상주직원이 법원 청사 외부까지 IP카메라로 감시하고 있음



▲ 법원 청사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Beeper)



▲ 유혈사태 등에 대비한 Bleeding Control Kit



▲ 고액 민사법원(NY Supreme Court) 출입구에서 검문, 검색이 이루어지는 모습. 공항 검색에 준함

○ 조사 내용

- 출입 검문, 검색은 공항에서 하는 것과 유사함
- 변협을 통해 미리 법원에 보고된 변호사들의 경우, 간이검색을 함. 다만 테러 등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격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고 함
- 청사 내 소란을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체포나 수색이 허용되나, 직접 조사 등 수사는 할 수 없고, 경찰에 바로 인계한다고 함. 이 부분은 경찰과 협조가 잘 되어 있다고 함
- 모든 보안직원들은 무전기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무전기 채널 중 뉴욕경찰(NYPD)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있다고 함
- 평소 뉴욕 경찰과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함. 청사 내에 피고인 호송 등을 위해 많은 뉴욕경찰이 있었는데, 이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음
- 개인장비로는 방탄조끼, 총기, 탄창 2개, 최루액 스프레이, 수갑, 무전기, 진압봉을 착용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의 장비를 연방법원 보안요원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 보안요원 표준장비인 것으로 보임
- 청사 내외부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중앙통제실 상주직원이 2명 정도 근무함
- 최소 연1회 아카데미에 가서 총기 교육, 사격 연습, CPR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는다고 함
- 법정에서 잠시 휴정 중인 법관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 물어보니, 법원보안과 관련하여 때로는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안전한 느낌을 갖는다고 이야기함

2. 캘리포니아 주

가. 사법위원회 내 법원보안 자문위원회[133)]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미국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형태, 구체적으로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가 사법행정과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사법위원회는 2013년 10월 25일 그 산하에 법원보안 자문위원회(Court Security Advisory Committee)를 설치하였다.

법원보안 자문위원회는 법원보안을 강화하고, 특히 법관과 직원의 안전 및 비상 대응

133) 이하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원 홈페이지(courts.ca.gov) 중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부분 주로 참조.

계획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법위원회에 자문과 권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보안 자문위원회는 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항소심 및 1심 법관과 법원행정 책임자 등으로 구성되고(현재 11명), 구성원의 임기는 3년이며, 3분의 1씩 교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 현재 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subcommittee) 없이 운영되고, 정기적으로 원격 화상 회의를 통해 활동을 이어간다.

나. 법원보안 예산 편성과 집행

캘리포니아 법원 운영비용 부담이 1997년 개별 County에서 주 정부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예산을 확보하여 각 County(캘리포니아에는 58개의 카운티가 있음)에 보안 계약(Security Contract) 형태로 배분하게 되었다.[134] 즉 보안예산은 주 사법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그 집행은 각 Counrty Sheriff가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 법원보안 업무의 실행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보안은 각 카운티의 Sheriff's Office가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Sheriff's Office 내 법원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Sheriff's Deputy가 법원 출입통제, 판사 · 배심원 · 방청객 보호, 피고인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135]

Sheriff's Deputy는 보안 계약(Security Contract)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원 출입구에서 금속탐지기 및 X-ray 장비를 이용한 출입통제와 무기 반입 차단, ② 법정 내에서 판사, 배심원, 증인 보호와 질서 유지, ③, 카운티 교도소에서 법정으로 피고인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호송 임무, ④, 법관에 대한 위협 사건 발생 시 신변 경호 및 가택 보안 강화, ⑤ 테러 · 조직범죄 · 정치적 사건 등 고위험 재판에서의 추가 인력과 특수 장비 배치 등이다.[136]

실제 사례를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LA County에서는 Sheriff's Department 내 Court Services Division이 법원 보안을 전담하고, 2023-24 회계연도에 법원 보안에

134) California Government Code §§ 69920 - 69927, Court Security Services Contracts (특히 §69922는 법원이 Sheriff와 계약을 맺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35) www.courts.ca.gov/programs-courtsecurity.htm.
136) California Government Code §69921, Judicial Council Security Standards.

약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었다.[137] San Francisco County 또한 Sheriff's Office 내 Court Services가 모든 법원 출입구 검색, 호송, 법정 보안을 담당한다.[138]

한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California Highway Patrol, CHP)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고속도로 등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인데,[139] 1995년 캘리포니아 주 **경찰 조직을 흡수**하면서, 교통업무 외 주 대법원을 포함한 주 정부 청사, 기관 등의 보안업무를 맡게 되었다.[140]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법원** 청사, 대법관 등의 보호 업무는 Sheriff가 아닌 CHP가 담당한다.

라. 캘리포니아 법원청사 표준[141] (California Trial Court Facilities Standards)

캘리포니아 각 카운티 소재 법원이 보안을 위해 법원의 설계, 신축, 물적 설비 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표준은 다음과 같다. 법정, 심문실, 판사실, 법정 출입구 등은 방탄유리의 적용이 가능하고, 총기 위협에 대비하여 일정 등급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다만 자재 선정 시 각 카운티의 위협 수준별로 등급 조절이 가능하다.).

각 카운티 법원은 카드 접근 통제, 감시카메라, 비상호출 시스템, 침입 탐지 장치를 포함하여 '통합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보안시스템은 법원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야 하며, 감시 영상은 자동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또한 카드 접근 제어 시스템은 각 구역별 보안 등급에 따라 접근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로비 및 주요 출입구에 X-Ray 검색기,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스크리닝 구역은 탄성 흡수형 방탄 패널로 마감하여 고위험 상황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탐지 경로와 우회경로를 갖추어야 한다.

137) lasd.org/court-services-division/; LA County FY2023-24.
138) www.sfsheriff.com/court-services.
139) chp.ca.gov.
140) chp.ca.gov/html/merger.html 그리고 캘리포니아 형법 제76조(b)는 법집행기관이 주 헌법기관, 즉 의원, 법관 등에 대한 위협을 알게 된 경우 이를 CHP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1)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alifornia Trial Court Facilities Standards(2023 Edition).

VI. 결론

1. 시사점의 정리

미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외부 기관이 보안을 전담하고 있는 것에 가장 큰 특색이 있다. 연방법원의 경우, U.S. Marshals Service(주로 법원 청사 내부) 및 Federal Protective Service(청사 방호)가,[142] 주 법원의 경우 Sheriff가 보안을 전담한다.

보안정책 설계, 기획 등은 대법원 산하 보안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예외가 뉴욕 주인데, 뉴욕 주는 법원행정처 산하 공공안전국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그 집행도 법원 내부 보안직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외부 기관이 보안을 전담하는 경우, 전문성이 담보되고 수사까지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효율적 측면이 있지만,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정부와 법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보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단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뉴욕 주 법원은 Sheriff에서 벗어나 자체 인력으로 하여금 보안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143] 아무튼 미국법원은 연방이든 주 법원이든 지역 경찰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과 관련하여 경찰력을 가지고 있는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은 대규모 시위 등을 대비함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뉴저지 연방법원의 에스더 살라스 판사 가족 살인 사건은 미국 법원 보안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많은 제도 개선을 불러일으켰다. 위 사건으로 인터넷에서의 판사의 개인정보(특히 주소) 보호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관련 법률이 연방과 주 모두 통과되었다.

위 사건으로 연방법원행정처 사법보안국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새로 신설된 '위협관리과'에서 주로 온라인에서의 법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게 되었고, 크게 확대된 '사법보안 운영과'는 보안 유관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142)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연방대법원에는 '연방대법원 경찰'이라는 자치 보안조직이 있다.
143) 최근 한국에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독립적인 국회경비대 논의가 활발한데, 거기에 더해 독립적인 법원경비대 설립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위협보고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선되어 위협보고 시 이를 평가하고 데이터화하여 관련 기관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는데, 위협 사례를 체계화하는 이러한 시도는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만하다. 아울러 위협의 정도가 높은 법관에게는 개인 신변조치(Personal Protection Detail)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뉴욕 주 법원의 보안체계는 전통적인 미국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받아 공공안전국장을 정점으로 마치 군부대나 경찰과 같은 일사 분란한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 직원의 경우 간부급 직원, 일반 보안직원으로 직급이 나뉘고, 시험 등을 통해 간부급 직원이 될 수 있으며, 간부직원도 군인과 같이 5개 직급으로 구분된다. 신규 보안직원과 기존 직원에 대한 유지보수 교육을 위해 뉴욕 주 내에 2개의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있고, 전직 경찰 등을 교관으로 채용해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차와 같은 모양의 자체 업무 차량도 보유하고 있고, 공공안전국의 주요 인물, 역사와 관련한 전시물도 게시하고 있으며, 자체 기념품도 제작, 보유하고 있는 등 조직 구성원의 자부심을 함양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위원회 형태를 취하지 않고 법원 내부 직원이 보안을 책임지는 우리 법원의 보안체계가 뉴욕 주의 것과 유사해 데가 있어 뉴욕 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마치며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립적 양당 구도, 세대 · 지역 · 인종 · 성별 사이의 극심한 갈등, 대통령과 정부 정책 관련 재판의 진행 등 미국 법원의 상황은 한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 법원청사에 대한 공격이나 법관에 대한 위협은 전에 없이 높아 보이므로, 미국의 보안 현황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법원 청사는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이 소송이나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열린 공간이지만, 그 자유로운 접근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위협과 공포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법원보안은 시민의 법원에 대한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향유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 이 자료가 한국의 법원보안 실무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 고 자 료

【미국 논문, 보고서】

American Bar Association, Court Security Handbook.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diciary Appropriations, IF1153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dicial Security: Responsibilities and Current Issues, 200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ho Protects Whom? Federal Official and Judicial Security and Personal Protective Details, R47731, July 16, 2024.

GAO, "Actions Needed to Enhance Capital Security Program and Improve Collaboration", GAO-17-215.

GAO, "Federal Courthouses: Progress Made on Security, but Improve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Needed", GAO-17-215.

GAO, Security Protection: Costs of Services Provided for Selected Cabinet Officials, GAO/GGD-95-50, December 199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Civil Process and Sheriff's Dut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Sheriff's Office Organizational Structures.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alifornia Trial Court Facilities Standards(2023 Edition).

Nathan Hall, "Reommended Court Security Measures for Cases Involving Domestic Violence" NCSC(2020).

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History of the Office of Sheriff.

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Sheriffs.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Court Officers and Security Operations.

Personal Safety Tips for judges an court staff, NCSC(2023. 10.).

Petrosky E, Blair JM, Betz CJ, Fowler KA, Jack SP, Lyons BH.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Homicides of Adult Women and the Rol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 United States, 2003-2014." MMWR Morb Mortal Wkly Rep 2017;66: 741-746.

"Securing Judges and Courts", Judicature, July 2020.

Smith, Deborah, "Trauma and State Courts", Trends in State Courts, NCSC(June 2018).

"STEPS TO BEST PRACTICES for COURT BUILDING SECURITY", NCSC(2022).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Judicial Security Proces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Evaluation and Inspections Division(2007. 11.).

Timothy Fautsko, Steven V. Berson, & Steven K. Swensen, "Status of Court Security in State Courts: A National Perspective", NCSC(June 2013).

U.S. Congress, "Daniel Anderl Judicial Security and Privacy Act of 2021," Bill Text and Legislative History.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heriffs' Offices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Justice, FY2024 Budget Request, Judiciary Facility Security Program.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Law Enforcement Response to Portland Riots" (2020).

U.S. Department of Justice, "Justice Department Fiscal Year 2025 Funding Request", 2025.

U.S. Department of Justice,"Protecting Judicial Officials: Implementing an Effective Threat Management Process", 2006.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Security Protection: Standardization Issues Regarding Protection of Executive Branch Officials, GAO/GGD/OSI-00-139, July 2000.

U.S. Marshals Service, Hunters and Howlers: Threats and Violence Against Federal Judicial Officials in the United States, 1789-1993, February 1998.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FY 2024 Annual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2025. 1.).

William Raftery, "States Move to Protect Judges' Safety", Judicature, NCSC, 2024.

【미국 뉴스, 언론 자료】

AP News, Court gives Trump unconditional discharge in hush money case (2025.01.10.).

Business Insider, Federal Judges' Safety at Risk Amid Threats, 2025.

Business Insider, "Congress' budget has put judge safety at risk when threats are already up", 2025-04.

CNN, "Judge Esther Salas case prompts renewed calls for judicial security", 2020.

Las Vegas Review-Journal, "Protests Turn Violent in Downtown Las Vegas".

NPR, "Son of US Judge Killed, Husband Injured in Shooting at Their New Jersey Home", (2020).

Reuters, "US judges warn of threats, ask Congress for more security funding", May 14, 2025.

Roll Call, Federal Judge Stresses Need for More Court Security Funding, 2025.

"Security for U.S. Supreme Court justices' homes gets funding boost", Reuters, 2024-12-18.

Smithsonian Magazine, "The Deadly Cincinnati Courthouse Riot of 1884".

The New York Times, "Husband and Mother of Judge Are Found Slain", (2005).

The New York Times, "Trump Lashes Out at 'So-Called Judge' Who Blocked Immigration Order", Feb. 4, 2017.

Wall Street Journal, "Judges weigh taking control of their own security amid threats".

【인터넷 자료】

chp.ca.gov

lasd.org/court-services-division

ncjfcj.org/wp-content/uploads/2022/03/national-sheriffs-association-physical-security-checklist.pdf

nypost.com/2025/06/15/us-news/nyc-courts-facing-bleak-staffing-crisis-which-union-warns-could-spark-powder-keg-of-violence/

Wikipedia, "Las Vegas Courthouse Shooting" (2010)

Wikipedia, "2019 Dallas Courthouse Shooting"

www.budget.ny.gov/pubs/archive/fy25/ex/agencies/appropdata/Judiciary.html

www.courts.ca.gov

www.dhs.gov/federal-protective-service

www.gsa.gov

www.idvsa.org/towards-thriving-83117

www.nycourts.gov/LegacyPDFS/admin/financialops/FPCM-PDFs/V2_jdbgt/FY2025_FINAL-JudiciaryBudget.pdf

www.reuters.com/legal/us-chief-justice-roberts-calls-judges-impeachment-are-inappropriate-after-trump-2025-03-18/

www.scuspd.gov/department/

www.sfsheriff.com/court-services

www.theguardian.com/us-news/2025/mar/24/trump-deportation-venezuela

www.uscourts.gov/administration-policies/governance-judicial-conference

www.uscourts.gov/data-news/reports/annual-reports/directors-annual-report/annual-report-2022/facilities-and-security-annual-report-2022

www.uscourts.gov/data-news/reports/annual-reports/directors-annual-report/annual-report-2023

www.uscourts.gov/data-news/reports/annual-reports/directors-annual-report/annual-report-2024/facilities-and-security-annual-report-2024

www.uscourts.gov/statistics-reports/annual-reports-director
www.usmarshals.gov
www.usmarshals.gov/what-we-do/judicial-security

【국내 논문, 연구보고서】

신소영 · 정영대, 법원보안관리대의 테러범죄 대응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3권 제2호 (2023)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최민규, 대한민국 법원 보안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법원 내부 보고서】

박병민, 미국사법제도 연구반 2025년 상반기 출장보고서(법원보안)(2025. 8.)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검토, 법원행정처(2024. 9.)
법원보안관리대 조직 개선과 국민을 위한 안전한 법원청사 조성 방안, 법원행정처(2025. 4.)
사법부 보안 강화 방안 검토(안), 법원행정처(안전관리관실)(2025. 2.)

영국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필진_ 영국 사법제도연구반
책임필자_ 창원지방법원 김재현

Ⅰ. 서론
– 법정모욕죄(contempt of court)의 기원국 154

Ⅱ. 영국의 사법제도 및 심급 구조 개관 155

Ⅲ. 영국에서의 안전 위협 사례 및 법관들의 인식 156
1. 물리적 위협 사례 156
가. 1981년 오픈쇼(Openshaw) 판사 살해 사건 156
나. 2001년 런던 중앙형사법원 유리물병 투척 사건 157
다. 2013년 입스위치 형사법원 판사 폭행 사건 158
라. 2023년 밀턴 케인즈 가정법원 판사 폭행 사건 159
2. 인격적 위협 사례 – 2016년 '국민의 적' 사건 160
3. 영국 법관들의 인식과 사법부의 대응 162
가. 법관들의 사법부 안전에 대한 인식 162
나. 사법부의 대응 162
다. 출장 인터뷰 결과 163

Ⅳ. 물리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방안 166
1. 법정 내부 보안 166
가. 법정의 구조 166
나. 보안 관련 인적 구성 167
다. 비상호출벨(panic alarm) 167
라. CCTV 감시카메라 및 침입경보 시스템 168
마. 출입구 및 동선의 철저한 분리 169
바. 형사법정에서의 피고인석 dock 170
2. 청사 보안 173
가. 출입구 및 공간의 철저한 분리 173
나. 법원 직원 사무공간의 분리 176
다. 공용 출입구의 보안 검색 178
3. 보안 직원 181
4. 영상심문의 활용 183
5. PVP 프로토콜 183
가. 의의 183
나. 적용대상 184
다. PVP 식별 및 위험 평가 184
라. 위험이 식별된 경우의 절차 185
마. 관련 판례 – A Local Authority v D and others [2024] EWFC 61 186
6. 경찰과의 연계 187
7. 법원모욕죄 188
가. 연혁 188
나. 유형 188
다. 1981년 법원모욕죄법의 제정 189

Ⅴ. 인격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방안 189
1. 법관 인적사항의 비공개 189
2. 공보 업무의 강화 190
3. 참고 판례 – Tickle and Summers v BBC & Ors [2025] EWCA Civ 42 191

Ⅵ. 결론 – 시사점 192

I. 서론 – 법정모욕죄(contempt of court)의 기원국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 법원 구성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흉기를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 국선변호인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방청객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목을 숨겨온 과도로 찔렀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윤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담장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청사 내부로 침입하여 판사실, CCTV 관제실 등의 시설을 훼손하기에 이르러 법원 구성원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길이 없었다. 이에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 체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법원 구성원을 위협하는 방식은 단지 물리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SNS와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한 법관 개개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사실관계 왜곡, 신상 공개, 조롱성 콘텐츠의 유포 등 인격적 · 비물리적 위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관의 인사와 판결 내용에 대하여 정치적, 선정적 프레임이 반복적으로 씌워지면서 법관의 독립성 · 중립성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물리적 · 인격적 위협은 단지 법관 개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내의 제도 개선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 특히 법정모욕죄(contempt of court)가 유래된 영국의 사법부 보호 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은 모든 법원의 보안 업무를 민간 경비업체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2023년 11월 밀턴 케인스 가정법원(Milton Keynes Family Court)의 페루스코 판사(Judge Perusko)가 재판 중 법정 내에서 당사자로부터 기습적으로 공격받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교적 최근에 내부 보안 관련 프로토콜의 개정, 법관 대상 보안 교육 강화 등 개선 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영국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체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관련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영국의 법원조직에 대하여 간단히 개관하고, 영국에서 법원 청사 및 구성원의 보호 관점에서 문제되었던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사례들을 확인해 본 다음, 법정 내부와 청사의 보안 등 물리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방안과 SNS나 인터넷 언론 등의 인격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방안으로 나누어 그 시스템적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의 법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영국의 사법제도 및 심급 구조 개관

영국은 한 개의 단일국가가 아닌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으로 구성된 연합왕국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하나의 법제를,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는 각각 그와 다른 법제를 갖고 있음에 따라서 사법제도 각 지역에 따라 특색이 있고 다양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 본 발표문에서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의미한다.

사법체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3심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항소 또는 상고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건이 2심으로 종결되는 특징이 있다. 최종심에 관하여는 연혁적으로 2005년 이전에는 영국 상원이 이를 담당하였으나, 2005년 헌법개혁법의 시행으로 2009. 10. 1. 영국 대법원이 별도로 설립되었다.

영국은 법원의 종류가 다양하다. 영국의 법원 조직은 간략히 ①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the Supreme Court), 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의 형사부(Criminal Division)와 민사부(Civil Division), ③ 중요 민사사건의 1심 재판과 일부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고급법원(the High Court)의 왕좌부(King's Bench Division), 가사부(Family Division), 형평부(Chancery Division), ④ 중요 형사사건의 1심 재판과 경미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법원(Crown Court), ⑤ 경미한 민사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구역법원(County Court), ⑥ 경미한 가사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가정법원(Family Court), ⑦ 경미한 형사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치안법원

(Magistrates' Court), ⑧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심판하는 각급 심판소(Tribunal)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영국의 사법행정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oJ), 법원사무청(His Majesty's Courts and Tribunals Service, HMCTS), 그리고 잉글랜드 · 웨일스 사법청(Judicial Office)의 상호 분업적 구조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사법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전체 사법제도의 방향을 결정하며, 장관은 내각 구성원인 정치인이다. 법원사무청(HMCTS)는 법무부(MoJ) 산하의 실무 행정기관으로, 법원 운영, 사건관리, 접수 및 인프라 관리 등 법원의 물리적 ·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지만, 재판 내용이나 법관의 판단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한편, 사법청(Judicial Office)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관의 윤리, 교육, 대외 대응 및 신변 보호 등을 담당하며, 사법부 수장(Lord/Lady Chief Justice)의 지휘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삼중 구조는 정책과 예산(MoJ), 실무 행정(HMCTS), 법관 지원과 독립 보호(Judicial Office)라는 역할을 분명히 나눔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영국 사법제도의 특징을 보여준다.

III. 영국에서의 안전 위협 사례 및 법관들의 인식

1. 물리적 위협 사례

가. 1981년 오픈쇼(Openshaw) 판사 살해 사건[1)]

1981년 5월 11일 영국 프레스턴(Preston) 지역의 판사였던 윌리엄 오픈쇼(William Harrison Openshaw) 판사가 피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68세였던 오픈쇼 판사는 평소처럼 자택을 나서던 중, 자택 차고에서 잠복 중이던 남성에게 습격을 당해 칼에 찔려 사망했다. 범인은 31세의 존 스미스(John Smith)로, 과거 1968년 청소년 시절에 오픈쇼 판사에게 절도죄로 18개월간 교정시설에 보내진 이력이 있었는데 그는

1) https://www.lep.co.uk/news/crime/murdered-in-cold-blood-prestons-judge-william-openshaw-was-killed-by-a-man-he-sent-to-prison-231773

수년 동안 판사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고, 사건 발생 13년 만에 보복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 범행 전날 스미스는 프레스턴행 기차를 타고 와 판사의 이름과 주소가 공개된 전화번호부를 확인해 자택에 잠입하여 차고 내부에 숨어 있다가 판사가 차고에 들어오자 판사의 머리, 목, 등 부위를 12차례 이상 칼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하였다. 오픈쇼 판사는 현장에서 아내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스미스는 범행 후 다른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스코틀랜드로 도주했으나 곧 체포되어 살인과 유괴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스미스는 과거 자신에게 형을 내렸던 것에 대해 복수심으로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드러냈고, 법정에서 "내일 다시 기회가 와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사법부 구성원이 과거의 판결을 이유로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로, 법관 개인의 신변 보호 필요성과 법원 외부 공간의 보안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오픈쇼 판사의 아들이자 이후 고등법원 판사가 된 피터 오픈쇼(Peter Openshaw) 판사도 2008년 또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2] 세대를 이어 반복되는 사법 위협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나. 2001년 런던 중앙형사법원 유리물병 투척 사건[3]

2001년 1월, 런던의 중범죄 전담 법원인 중앙형사법원(London Central Criminal Court, 일명 The Old Bailey)에서 전례 없는 법정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배우자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한 피고인은 보안 직원이 5명이나 있는 상황임에도 재판이 일시 정지된 틈을 타 도크(dock)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배심원석 옆에 놓여 있던 유리 물병(carafe)을 집어 들고 판사를 향해 힘껏 던졌다. 유리병은 판사석 근처 벽에 부딪혀 깨졌고, 피고인은 이어서 판사에게 다가가 5~6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공격을 받은 판사

2) https://www.standard.co.uk/hp/front/judge-jails-career-criminal-who-threatens-to-kill-him-in-chilling-echo-of-his-own-fathers-murder-6933128.html
3) https://www.theguardian.com/uk/2001/jan/08/2?CMP=share_btn_url
https://www.theguardian.com/uk/2001/jan/09/stevenmorris1?CMP=share_btn_url

는 Ann Goddard QC로, 왼쪽 관자놀이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특히 문제의 피고인은 런던의 최고보안시설인 벨마쉬(Belmarsh)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인물로, 이전에도 법정 내 폭력적 언동을 보인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당시에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은 법정 내 보안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피고인의 신체 구속 여부에 대한 법적 · 인권적 기준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해당 폭행 행위로 인해 살인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법정모욕죄(contempt of court) 및 폭행죄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이후 영국 법무부와 사법 당국은 법정 보안 강화와 고위험 피고인에 대한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법관의 신체적 안전과 법정 권위 유지를 위한 사법 보호의 중요성이 공론화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다. 2013년 입스위치 형사법원 판사 폭행 사건[4)]

2013년 6월, 영국 잉글랜드 서포크(Suffolk)주에 위치한 입스위치 형사법원(Ipswich Crown Court)에서 드보 판사(Judge John Devaux)가 법정 내에서 방청석에 있던 남성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판사가 그의 형제를 위험운전 사망죄(causing death by dangerous driving)로 30개월 징역을 선고한 직후, 피고인의 동생인 폴 그래햄(Paul Graham, 당시 27세)이 관중석에서 벗어나 법정 울타리를 넘고 판사석 뒤로 달려가 가운과 법관 가발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의 가발이 벗겨지고 안경이 벗겨졌으며, 목격자들은 “매우 끔찍한(extremely horrific)”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다행히 판사는 크게 다치지 않아 사건 직후 그대로 법정에 복귀해 진행을 이어갔다.

후속절차에서 그래햄은 법정모욕죄(contempt of court)를 인정했으며, 판사와 공권력에 대한 위협과 혼란을 초래한 행위로 인해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이와

4) https://www.theguardian.com/law/2013/jun/03/judge-assaulted-during-hearing-suffolk?CMP=share_btn_url

같은 폭행 행위를 “사법에 대한 공격”(attack on justice)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attack on the rule of law)으로 규정하면서, “법은 공개되어 있지만, 어떤 폭력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법정 내에서 일어난 판사 대상 직접 폭행 사례로서, 보안 체계의 허점, 방청객 통제의 필요성, 법관의 신변 보호 절차, 법정 질서 유지 장치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라. 2023년 밀턴 케인즈 가정법원 판사 폭행 사건[5)]

2023년 11월, 영국 잉글랜드의 밀턴 케인즈 가정법원(Milton Keynes Family Court)에서는 재판 중 한 피고인이 판사를 폭행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가정법원을 담당하던 패트릭 페루스코(Patrick Perusko) 판사로, 당시 그는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가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가해자인 그렉 헤이즐딘(Greg Hazledine)은 이전 재판에서 이미 다른 판사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거칠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던 인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예상되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재판 중 돌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 당일, 헤이즐딘은 법정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판사를 향해 위협적인 언사를 퍼부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용 전기 라디에이터와 노트북을 집어 던지며 재판장석으로 돌진했다. 해당 판사는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가 판사실 및 인근 회의실로 도망쳤으나 헤이즐딘이 재판장석을 넘어 판사를 뒤쫓아 복도와 사무실까지 따라가 판사를 벽으로 몰아붙인 뒤 무릎으로 눌러 고정한 채,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페루스코 판사는 머리와 얼굴에 타박상과 출혈을 입었으며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헤이즐딘은 이후 체포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판사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정모욕죄(contempt of court)가 인정되어 추가로 5개월의 형이 부과되었다.

이 사건은 법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 보안 체계의 허점과, 격한 감정이 쉽게 표출되는 가정법원 등에서의 잠재적 위험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 이후,

5) https://www.lawgazette.co.uk/news/three-years-in-prison-for-man-who-threw-radiator-at-judge/5119915.article

영국 사법당국은 밀턴 케인즈(Milton Keynes) 법원을 포함한 가정법원 전반에 대해 고위험군 피고인에 대한 사전 경고 시스템(Potentially Violent Persons Protocol), 법정 내 물리적 구조 점검, 보안요원 배치 강화, 그리고 법관 보호 프로토콜 개선 등의 조치를 도입하며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사법부 구성원이 재판 중 언제든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법정의 물리적 · 제도적 보호 장치가 사법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2. 인격적 위협 사례 – 2016년 '국민의 적' 사건[6)]

국민의 적(Enemies of the People) 사건은 영국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의 경계에 대해 심각한 논쟁을 촉발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당시 테레사 메이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EU 탈퇴(브렉시트)를 위한 통보 절차(리스본 조약 제50조 발동)를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개시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인 지나 밀러(Gina Miller)와 몇몇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11월 3일,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해당 정부 조치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위헌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브렉시트 추진에 있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이었다.

이 판결 직후, 영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타블로이드인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문제의 고급법원 판사 세 명의 얼굴 사진을 실으며 신문 1면 전체를 통째로 사용해 "Enemies of the People(국민의 적)"이라는 강렬한 문구를 헤드라인으로 게재했다. 특히 이들 판사 중 한 명이 동성혼을 한 사실을 강조하며 성적 지향까지 기사에 포함시키는 등 판결의 법적 논거보다는 개인적 배경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6) https://www.independent.co.uk/news/media/daily-mail-nazi-propaganda-front-page-ipso-complaints-brexit-eu-enemies-of-the-people-a7409836.html



▲ 당시 문제가 된 데일리메일 신문 1면 사진

이러한 보도는 즉각적으로 법조계, 그리고 다수의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영국 사법부 수장(Lord Chief Justice)과 변호사 협회(Bar Council), 사법청(Judicial Office) 등은 공식 성명을 통해 언론의 비판은 자유롭지만, 특정 판사를 조롱하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보도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판사들은 해당 보도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호 강화 및 온라인 공격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관여하게 될 때, 언론이 법적 판단의 정당성보다 감정적 분노를 자극해 판사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브렉시트 논의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법권의 독립, 판사의 개인적 보호, 언론 보도의 윤리적 책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오늘날까지도 비교법적 · 사회적 논의의 중요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3. 영국 법관들의 인식과 사법부의 대응

가. 법관들의 사법부 안전에 대한 인식

Enemies of the People 사건 이후 실시된 2016년 법관 상대 설문조사(UK Judicial Attitude Survey)에서 법관 중 51%가 법정 내에서, 37%가 법정 밖에서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고[7], 2024년 실시된 설문조사[8]에서는 법관 중 39%가 법정 내에서, 26%가 법정 밖에서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2024년에 우려를 느꼈던 법관 비중이 2016년 대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년 전인 2022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법관 중 27%가 법정 내에서, 19%가 법원 밖에서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변한 것보다 증가한 것으로 이는 앞서 본 2023년 밀턴 케인즈 가정법원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4년에 안전에 대해 가장 우려를 많이 표명한 법관은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의 지역법관(district judges)으로 58% 이상이었다.

나. 사법부의 대응

영국 사법부의 수장 Lady Chief Justice Baroness Carr은 2025년 1월 법관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사법부를 향한 법정 안팎에서의 물리적 위협, 온라인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안 관련 TF를 구축하여 법원의 물리적 보안 조치(physical security measures in courts)와 온라인 위협에 따른 위험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례를 통해 학습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외부 보안 전문가로부터의 조언도 구할 예정이고, 민사 · 가정법원 및 심판소(tribunal) 소속 법관 등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형식의 위험 사례, 보안 관련 각각의 역할에 대해 안내하는 HMCTS 제공 동영상, 언어적, 비언어적 위협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표지에 대한 경찰의 안내 정보를 포함하여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 관련 교육(training)이 개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9]

---

7) https://www.bbc.com/news/uk-39096860

8) https://chroniclelaw.co.uk/blogs/2025/03/06/uk-judges-raise-alarm-over-rising-safety-concerns-amid-strains-of-workload-and-stress/
https://www.lawgazette.co.uk/news/four-in-10-judges-fear-for-their-safety/5122454.article

9)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개될 경우 신변에 위협이 야기될 수도 있는 판사의 이름을 언론보도에서 익명화할 것을 명령한 원심을 항소심에서 파기하여 해당 판사들의 이름이 공개되자 사법부의 수장이 전체 법관들에게 이러한 서한을 발송하였다.

아울러 2023년 11월 밀턴 케인즈 가정법원 사건 이후 법원의 보안 프로토콜이 업데이트되고 있고, 고위험군 당사자들에게는 영상재판으로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과 구치감(cell)과 충분한 보안 직원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법정모욕죄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온라인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법관들에게 SNS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법관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게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10]

런던의 주요 가정법원에서는 법정 내에서 좀더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시범적으로 법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나, 가정법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들에 따른 불안감의 증대로 다시 법복을 착용하기로 했다.

한편, 어느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4~2015 회계연도에 한 판사의 자택 안전조치에 약 20,900파운드, 그 다음 해에는 세 명의 판사의 자택 안전조치에 추가로 약 3,394파운드, 합계 약 25,000파운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11] 법관 개개인의 법정 밖 안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안 위협이나 필요에 따라 예산이 개별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출장[12] 인터뷰 결과

런던 우드그린 형사법원(Wood Green Crown Court)과 그림스비 치안법원(Grimsby Magistrates' Court)의 법관들의 경우, 대체로 앞서 언급한 물리적 위협 사례들은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일들로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보안과 관련된 조치는 민간 경비업체 소속 보안 직원이나 법원사무청(HMCTS), 사법청(Judicial Office) 등 사법행정기관에서 대응해야 할 일일뿐 자신들은 재판 업무로 바빠서 특별히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10) https://www.scottishlegal.com/articles/england-judges-warned-about-social-media-use
11) https://www.bbc.com/news/uk-39096860
12) 필자는 연구주제 자료 수집을 위해 2025. 6. 28.~2025. 7. 6. 일정으로 영국 런던, 케임브리지(Cambridge), 그림스비(Grimsby)를 방문하였다.

법정변호사(barrister)를 겸임하고 있는 런던정경대학(LSE) 인권법 교수 코너 기어티(Conor Gearty) 또한 영국은 역사적으로 법관에 대한 심각한 위협 사례가 많지 않았고 심지어 브렉시트 당시 찬성파들의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비난을 받았던 2016년 고급법원(High Court)의 판결 직후에도 당시 사법부의 수장인 Lady Hale 조차도 아무 경호 없이 밖을 걸어 다닐 정도였다고 답변하면서도, 최근 일반 대중 중 극단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있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것은 영국 또한 마찬가지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영국 법관들과 법정변호사(barrister)가 착용하는 가발과 가운이 변장의 측면이 있어 법정 밖에서 일상복을 입고 돌아다닐 때 더욱 안전하게 느낀다는 것이 여러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실제로 출장에 앞서 영국 법관들에게 보낸 사전질문지를 통해 Lady Chief Justice가 언급한 조치들, 즉 보안 프로토콜의 업데이트, 법관 대상 보안 교육,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대체로 잘 알지 못하여 유의미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우드그린 형사법원의 멘사 판사(His Honour Judge Barbara Mensah)는 평상시 소속 법원의 비상탈출 훈련을 종종 하기 때문에 그 경로를 잘 알고 있고, 영상심문(remote hearings)은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고위험군 당사자의 경우 영상심문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그림스비 치안법원의 커티스 판사(Judge Daniel Curtis)는 매년 한 차례 정도 법관연수를 가는데 그곳에서 인터넷 보안전문가가 어느 판사의 이름만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그에 대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지득할 수 있는지 시연해본 다음 SNS에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말 것을 교육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격적 위협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법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멘사 판사는 법정 내 영상촬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촬영한 사람을 법정모욕죄로 5일간 구류 결정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법원의 과잉조치라는 취지로 보도되었고 이때 자신이 흑인 여성임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등 각종 인격모욕적인 댓글에 시달렸다고 한다. 당시 처음에는 경찰이 댓글 내용을 삭제

해 주기도 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뎌져 스스로 댓글을 안 보게 되었고, 사법청(Judicial Office)에서 경력이 오래된 법관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조치를 한 것이었음을 성명으로 발표해 주었다고 한다.

사실 영국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물리적 위협, 인격적 위협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사무청(HMCTS)나 사법청(Judicial Office)을 통해 그들의 계획과 구상은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면 더욱 유의미한 출장이 되었을 것이나 연구주제가 보안상 민감한 문제(matters of sensitive operational security detail)라는 이유로[13] 협조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개인적으로 섭외한 법관, 법학교수, 법률저널리스트를 통해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래에서는, 이번 출장에서 방문한 법원들을 출입하며 직접 경험한 내용, 법관 등 법률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 법원사무청(HMCTS)의 법원 및 심판소 디자인 가이드(Court and Tribunal Design Guide, 이하 '디자인 가이드'라고 한다)[14][15]를 비롯한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국 사법부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방안과 인격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방안에 대하여 각각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3) 심지어 법무부(MoJ) 담당자는 해당 연구방문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영국 국내 정보국(UK Security Service, 일명 MI5)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언급까지 하였다.

14)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6be1e1ac909b91981323ee8/Court_and_Tribunal_Design_Guide_v3..pdf

15) 위 디자인 가이드에는 향후 법원 내지 심판소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지향해야 할 요소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필자가 출장을 통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기존 법원 건물에 이미 갖추어진 요소들도 많은 것으로 보여 아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V. 물리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방안

1. 법정 내부 보안

가. 법정의 구조

1) 형사 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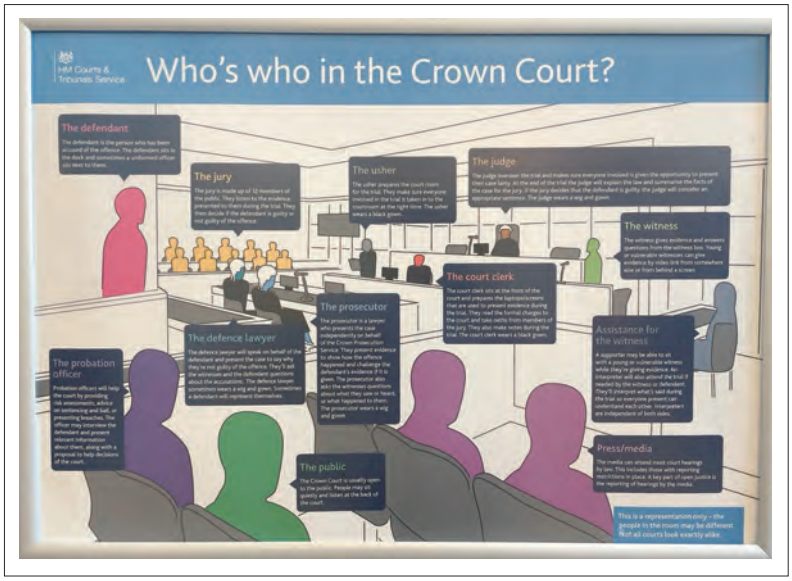

▲ 영국 케임브리지 형사법원에서 촬영한 형사 법정 구조 도안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대 중앙에 앉은 재판장을 기준으로 바로 앞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참여관(court clerk)이 있고, 그 앞에 마주보고 있는 검사 및 변호인석이 있으며 그 뒤로 피고인석(dock), 측면에는 배심원석이 각각 있다. 다만 이는 배심재판이 이루어지는 형사법원(crown court) 기준이고 경미한 형사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은 대체로 비슷하나 배심원석이 없다는 것이 차이다.

2) 민사 · 가사 법정

민사나 가사 법정은 아래 사진과 같이 앞서 본 형사법정과 대체로 유사하나, 배심원석이 없다는 점, 분리된 공간의 피고인석(dock)이 없다는 점이 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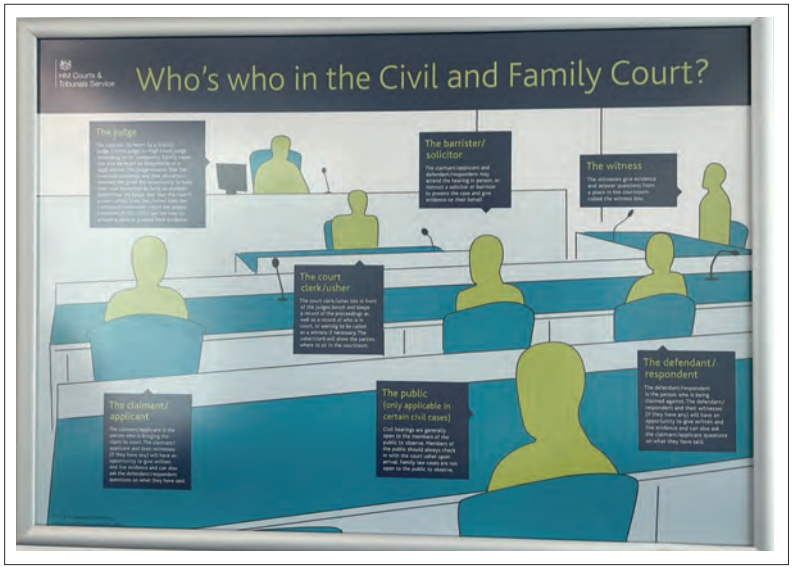

▲ 영국 케임브리지 구역법원에서 촬영한 민사·가사 법정 구조 도안

나. 보안 관련 인적 구성

우리나라 법정 안에는 보안과 재판 진행 보조를 모두 담당하는 법정경위가 있는 반면, 영국은 민사, 가사, 형사 구분 없이 모두 법정 안에는 보안과 관련된 인적 자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관(court clerk)은 자리에 착석한 상태로 우리의 주무관, 참여관 역할을 겸임하는 역할이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보조하는 역할의 법정경위(court usher)가 있을 뿐이다. 출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정경위는 주로 젊은 여성 또는 연로한 남성이었다. 결국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청사 출입구에서 외부 용역직원 담당의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나면 법원 내부에서 더 이상 보안 직원과 대면할 일이 없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는 비상호출벨(panic alarm)의 설치, CCTV 감시 시스템, 일반인 출입 공간과 법원 구성원 출입 공간의 철저한 분리 등이 있다.

다. 비상호출벨(panic alarm)

영국 사법부에서는 법정의 법대, 참여관과 경위의 책상, 법관의 사무실 책상 등 아래에 비상호출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상호출벨은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개의 손가락으로 동시에 눌러야만 작동되는 구조여야 하고, 비상호출벨이 설치된

곳에는 그 사용에 관한 표식이 있어야 하며, 비상호출벨을 눌렀을 경우 보안관리실에 경고음이 울려야 하나 위험이 발생한 곳 자체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16]

비상호출벨이 작동된 경우 청사 출입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무전으로 어느 곳으로 출동하라는 내용이 전달되고 그 즉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드그린 형사법원 멘사 판사는 실수로 이를 눌렀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에도 보안 직원들이 매우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다만 앞서 본 2023년 밀턴 케인즈 가정법원 사건의 법정에서도 비상호출벨이 있었을 것이나 법정 내에 보안 직원이 전혀 없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페루스코 판사가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 사법부는 모든 경우에 법정 내에 보안 직원을 배치하려고 하지는 않고, 고위험군 당사자 사건에 한하여 보안 직원을 법정에 배치하려고 하는 바, 잠재적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프로토콜이 Potentially Violent Person's Protocol이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라. CCTV 감시카메라 및 침입경보 시스템

법정 내부는 물론 건물의 내 · 외부에 CCTV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일과시간 외의 시간대에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침입경보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는데, 디자인 가이드에는 CCTV가 기술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까지 세세히 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를 살펴보면, 운영자가 외부 건물 외곽, 주차장, 모든 출입구, 공용 공간(화장실 제외), 구금 구역 동선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원에서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화질과 형식으로 영상 기록이 가능해야 하며, 감시시스템은 실시간 영상과 녹화 영상을 모두 제공해야 하는데 일반 모니터 화면에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 화면 세로 크기의 5% 크기로 인물이 움직이는 것을 모니터링 가능
> ► 인물이 화면 세로 크기의 10% 크기로 감지 가능

16) 디자인 가이드 136면

► 화면 세로 크기의 50% 크기로 알려진 인물 인식 가능

► 화면 세로 크기의 120% 이상 크기로 미상 인물을 합리적 의심 없이 식별 가능

마. 출입구 및 동선의 철저한 분리[17]

아래 그림[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 법정에는 법관 사무실로 연결되는 법대 뒤의 법관 전용 출입문, 배심원 대기 공간으로 연결되는 배심원 전용 출입문, 피고인석(dock)에서 지하 구치감(cell)으로 연결되는 구속피고인 전용 출입문, 그 밖의 나머지 사람들이 출입하는 일반 출입문이 구분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증인 전용 출입문도 별도로 있다. 법관 전용 출입문의 경우, 필자가 출장을 통해 방문한 우드그린 형사법원과 그림스비 치안법원 모두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고, 위 출입문 중 형사피고인석(dock)의 구조가 매우 특징적인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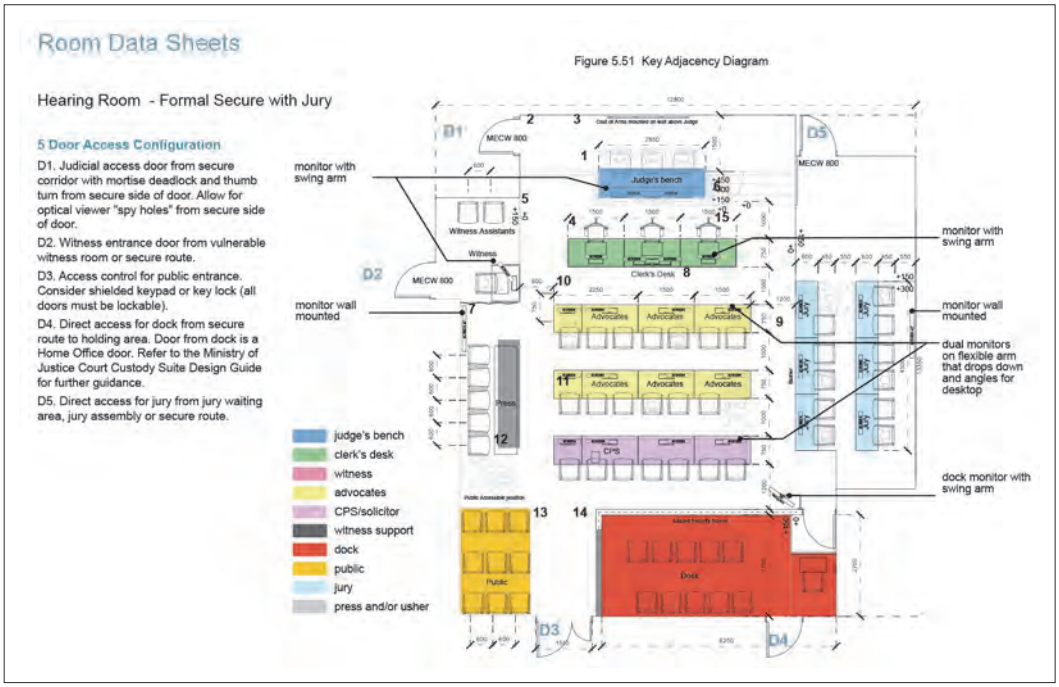

▲ 배심원석이 있는 형사법정의 도면(디자인 가이드 186면)

17) 법정 내부의 보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법정 안에서의 공간 분리에 대해 설명하고, 청사 전체적인 일반인과 법원 구성원의 공간 분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18) 디자인 가이드 186면

바. 형사법정에서의 피고인석 dock

1) 개요

필자가 이번 출장을 통해 만난 법관들은 모두 형사 법관이었고, 그들은 특별히 법정 보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최근 법정 보안 관련 사건들이 모두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과 대비해 보면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이 위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법대에서 가장 먼 쪽에 별도로 격리된 공간인 도크(dock)에 위치하고 구속피고인의 경우 지하 구치감과의 연결통로를 통해 도크로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2) 유형

① 비격리형(wooden dock, open dock)

나무 목재 패널로 구성된 전통적인 형태의 도크(dock)로 피고인을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 가두진 않지만 시각적으로 구획된 위치에 세우는 형식이다. 아래 두 개의 그림과 같다.



▲ 디자인 가이드(184면)에서 확인 가능한 비격리형 도크(우측)



▲ 런던 중앙형사법원(The Old Bailey) 1호 법정 도크에서 법대를 바라본 모습

이러한 dock의 사용은 역사적으로는 14~18세기 영국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망치거나 군중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난간이나 울타리로 둘러싼 공간에 피고인을 세웠던 것에 기인하고, 영국 법정에서 도크의 사용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시기는 1970년대 이후이다.[19]

② **격리형**(glass dock, secure dock)

위 비격리형 도크 구조를 기초로 그 위 공간을 모두 강화유리로 둘러싸 피고인을 완전히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유형의 도크이다. 그 안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 재판장과 상호 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유형으로, 현재는 이 같은 격리형 도크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9) JUSTICE, in the Dock, 2015, 영국 JUSTICE 단체 보고서
https://files.justice.org.uk/wp-content/uploads/2015/07/06170833/JUSTICE-In-the-Dock.pdf



▲ 통상적인 치안법원 법정 내 격리형 도크(우측)

3) 사용례

영국 형사(형사법원, 치안법원 모두) 법정에서는 현재도 비격리형, 격리형 도크가 모두 사용되고 있고,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도 법정 내 질서유지, 피고인과 배심원, 증인 간 직접 접촉 금지 차원에서 일반 출입문으로 법정으로 들어와 자기 사건 진행순서가 되면 도크에 들어가 재판을 받는다. 하나의 법원에서도 법정마다 비격리형, 격리형 도크가 혼재하여 있고, 피고인의 위험성에 따라 폭력성이나 도주의 우려가 강한 피고인, 중범죄를 범한 피고인 등에게는 격리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사 내지 가정법원의 법정에는 도크가 없는데, 런던 우드그린 형사법원 멘사 판사에 의하면 만일 법정 안에서의 난동 등으로 법정모욕죄로 재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의 법정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4) 비판

영국의 법령이나 어떠한 공식 지침에도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은 도크에 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번 출장을 통해 필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영국의 법률전문가들은 모두 도크의 기원과 연혁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형사 법정에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배심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LSE 인권법 교수 코너 기어티(Conor Gearty)는 피고인이 도크에 가두어져 있는 모습을 배심원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의 동료교수였다가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법률학 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린다 멀카히(Linda Mulcahy) 교수는 피고인을 격리된 공간에 두는 설계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법정참여권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며 이 자체가 피고인을 위험한 인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2004년 판례(S.C. v. United Kingdom)에서도 격리형 도크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영국 변호사 협회(Bar Council) 및 인권단체에서는 도크의 폐지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일부 법원 내지 법정에서는 불구속 피고인이 변호사 옆에 앉아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출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재정상황을 재판장이 질문하였을 때 변호인이 뒤쪽에 있는 도크로 이동하여 그것을 묻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재판장에게 답변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싶을 때에는 결국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손을 들어 표시하면 피고인을 등지고 있는 변호인 대신 재판장이 그것을 변호인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저해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2. 청사 보안

가. 출입구 및 공간의 철저한 분리

디자인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국 법원 보안의 기본 철학 및 정책은, 법원 건물은 법관, 직원, 방청객 등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법원사무청(HMCTS)은 위험 평가를 통해 내 · 외부의 고의 내지 우발적 위협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안대책을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철저한 조사 및 기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기초가 출입구 및 공간의 철저한 분리이다.

즉, 법원 구성원과 취약 증인 등만 출입할 수 있는 제한 출입구(private entrance, restricted entrance)와 나머지가 출입하는 공용 출입구(public entrance)를 구분하고, 법원 구성원, 배심원, 사건당사자 및 변호인 등의 동선과 공간을 아래 그림과 같이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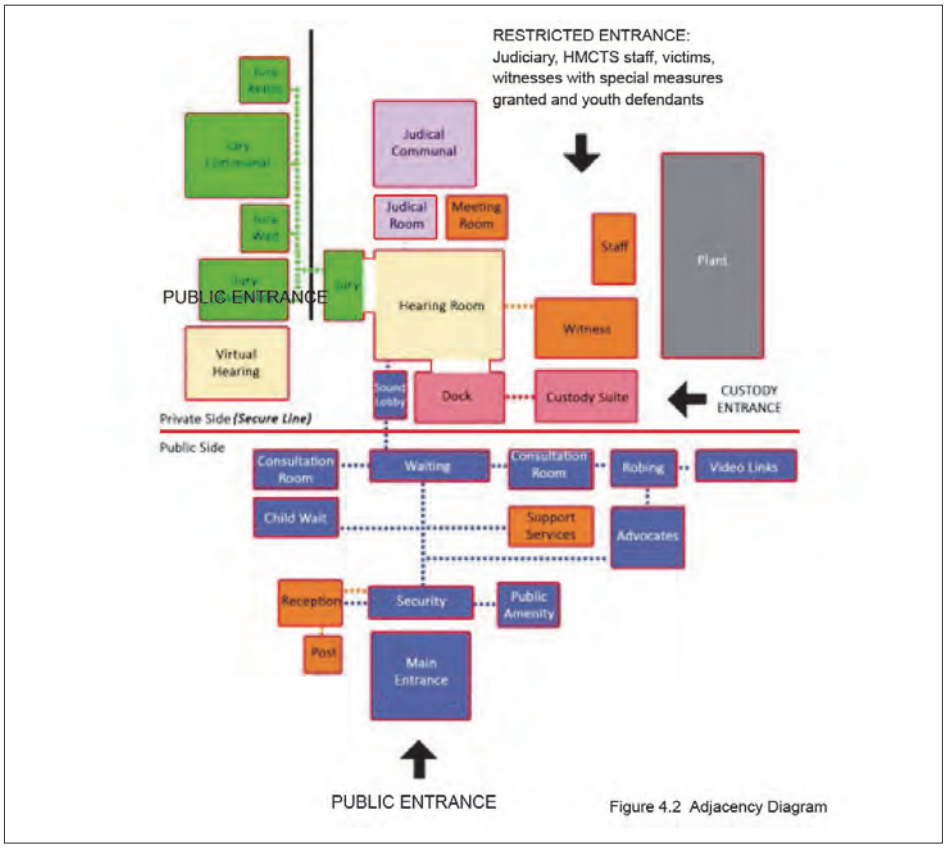

▲ 디자인 가이드(70면)에서 확인 가능한 법원 청사 구조 도면

아울러, 통제 출입구는 카드 내지 생체이용 방식을 이용한 엄격한 제어가 필요하고 법원 구성원은 공용 구역을 통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드그린 형사법원의 경우에도 아래 사진과 같이 출입구를 구분하고 있었다(건물 좌측 보안 검색 안내판 있는 출입구가 공용이고 건물 우측 끝 CCTV 카메라 있는 곳에 제한 출입구 있음).



▲ 런던 우드그린 형사법원 청사 출입문 모습

한편 살인, 테러 등 중범죄만을 다루는 런던 중앙형사법원(London Central Criminal Court, 일명 'The Old Bailey')의 경우에는 방청객(public gallery)용 출입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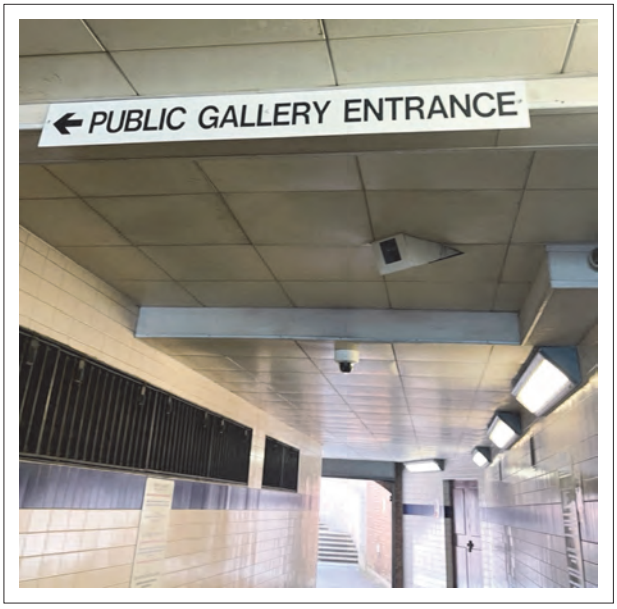

▲ 런던 중앙형사법원 방청객 출입통로 안내표시

나. 법원 직원 사무공간의 분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의 사무공간에도 사건당사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출입이 완전히 제한된다. 민원인의 동선과 법원 직원의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법원 직원을 대면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마치 교도소의 면회 창구와 같은 모습의 민원 창구 하나가 전부이다. 필자가 방문한 케임브리지 형사법원, 우드그린 형사법원, 그림스비 치안법원 모두 아래 사진[20]과 같은 모습의 창구를 목격할 수 있었다.



▲ 영국 법원 민원 창구의 모습과 유사한 사진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케임브리지 형사법원의 경우 민원인이 위 창구에서 호출 버튼을 눌러야 법원 직원이 민원인을 응대하러 나오는 방식이었는데, 창구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바쁜 시간대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보안 직원에게 문의하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림스비 치안법원의 경우 그러한 창구마저 코로나19 이후로는 폐쇄된 상태여서 보안 직원이 아래 사진과 같은 전화번호 안내문만 전달하고 있었다.[21][22]

20) 영국은 법원 청사 내에 모든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실제 모습을 촬영할 수 없었으므로 유사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첨부하였다.
21) 익명을 요청한 영국의 법정변호사와의 화상인터뷰에 따르면 변호인으로서 법원에 업무적으로 연락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주로 이메일을 사용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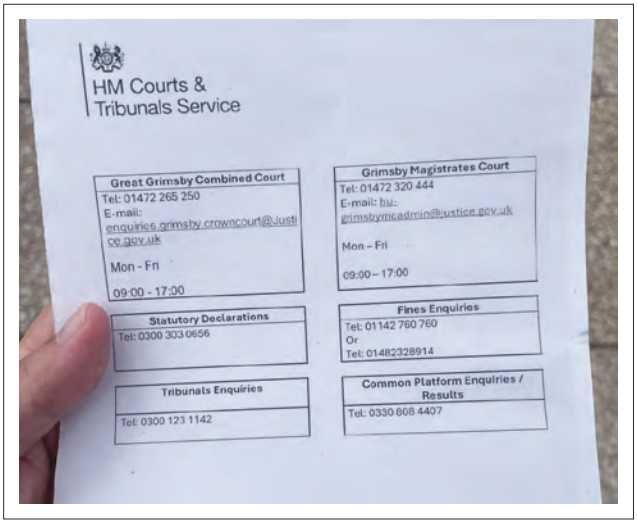

▲ 그림스비 치안법원 전화번호 안내문

그 밖에도 법원 구성원을 위협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경찰에 신고될 수 있고, 불출석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거나, 감치될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법원 내 곳곳에 부착되어 있었다.



▲ 법원 청사 내 부착된 경고 포스터

22) 케임브리지 형사법원의 court office가 폐쇄적이었던 것을 보고 필자가 LSE 기어티 교수에게 영국인들은 그에 불만이 별로 없냐는 질문을 하자, 아마도 영국 국민들은 그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운명론(fatalism)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는 태도(complaining resignation)인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다. 공용 출입구의 보안 검색

공용 출입구를 통해 일반인, 사건당사자, 배심원, 변호인 등이 모두 출입하고, 통상 공항에서의 보안검색과 같은 절차, 즉 소지품 및 외투에 대한 X-ray 투과 검사 실시, 문형 금속탐지기 통과 실시, 신체 검색(휴대용 금속 탐지기 사용) 실시, 가방 등 소지품 수색 등이 이루어진다.



▲ 디자인 가이드(161면)에서 확인되는 공용출입구 모습

영국 법원 홈페이지[23] 중 아래 내용을 통해서도 법원을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항과 유사한 보안 검색을 실시함을 알 수 있다.

◈ Going through security

You'll go through a security check, like you would at an airport. This may include:

- emptying your pockets into a tray
- taking off your shoes, coat, gloves or hat
- being asked to take off or open your belt
- walking through an archway detector
- being checked by hand or with a handheld scanner

23) https://www.gov.uk/entering-court-or-tribunal-building

다만 위 홈페이지에서 각 내용을 필수적인 것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may include")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과, 보안 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는 각 법원마다의 리스크 관리(risk assessment)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법원에 동일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정변호사 등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보안 검색을 실시하다보니 피크 타임에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져 변호사들의 불편함이 컸는데, 법원 출입이 잦은 변호사 등 법조직역종사자(legal professionals)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Professional User's Court and Tribunal Access Scheme)가 2018년 9월부터 5개 법원을 시범대상으로 실시되어 2020년경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 내용은, 법조직역종사자가가 별도 등록절차를 거친 이후 법원 공용 출입구 출입 시 미리 등록한 QR코드를 제시하면 보안 검색을 받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으나,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 중 약 10%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보안 검색 실시한다. 무작위 보안 검색 대상 선정 방법은, 보안 직원이 버튼을 누르면 초록불과 빨간불 중 하나가 점등되는 작은 기계를 가지고 있고, 변호사가 QR코드를 제시했을 때 보안 직원이 기계 버튼을 누른 뒤 초록불이면 보안 검색 면제, 빨간불이면 보안 검색 실시하는 식이다. 보통은 변호사를 위한 별도의 줄이 없었으나 런던 중앙형사법원에는 아래와 같이 대기줄부터 구분이 되어 있었다.



▲ 런던 중앙형사법원 법정이용자 대기줄 안내문

필자가 방문했던 여러 법원의 공용 출입구 보안 검색 절차는 대체로 비슷했으나 그 중 우드그린 형사법원은 소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직원이 가방 속을 30cm 자로 뒤적거리며 확인한 점, 액체류의 경우 보안 직원 앞에서 한 모금 마셔보아야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 런던 우드그린 형사법원 공용출입구 안내판

앞서 언급한 런던 중앙형사법원의 경우에는 일반 방청객으로 입장하였는데 소지품 엑스레이 검사를 캐비넷형 엑스레이 검색기에 넣어 검색하는 것이 특이했고, 문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면서 탐지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신체 수색(pat-down search)을 엄격히 진행하였다.



▲ 런던 중앙형사법원의 캐비넷형 엑스레이 검색기와 유사한 모습의 사진

3. 보안 직원

위와 같은 공용 출입구의 보안 검색, CCTV 감시카메라 통제실 운영 등을 담당하는 보안 직원은 영국 사법부 소속 직원이 아니라 민간 경비업체의 소속이다. 법원사무청(HMCTS)은 2020년 4월경부터 영국의 유명 경비업체인 OCS와 9년 계약을 체결[시설관리는 ENGIE라는 회사와 계약 체결하였고, 두 계약 합하여 11억 파운드(한화 약 1조 9,400억 원) 상당 규모][24]하여 위 회사 소속 인력들이 법원 출입 시의 보안검색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정시설의 민영화[25]가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24)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contracts-will-improve-condition-and-security-of-courts
25) Criminal Justice Act 1991 section 84~88에서 교도소 민영화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었다.

법원 경비도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주로 비용절감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LSE 기어티 교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가 민영화되면서 책임의 부재(less responsibility)가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즉 민간업체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책임만 부담하므로 실제 서비스의 질 저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민간 경비업체 직원들의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해 보안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한편 민간 경비업체 직원은 대부분 Security Industry Authority(SIA)[26]에서 발급하는 경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고 지정된 SIA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3년마다 직무교육(refresher)을 다시 받아 자격증 갱신을 해야 한다. 출입 보안 요원의 경우 물리적 제압(physical intervention), 수색절차(conducting searches), 취약자 보호, 테러 위협 인식(terror threat awareness)를 포함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27]

법원 보안 직원(court security officer)의 권한과 관련된 법령으로 Courts Act 2003 중 Section 51~57[28] 이 있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 건물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수색 권한 부여, 법원 내 질서 및 안전 유지에 위험이 되는 물건에 대한 압수 권한 부여, 수색을 거부하는 사람을 법원 건물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외투, 모자, 장갑, 신발의 탈의 요구 가능하나, 그 밖의 의류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형사법원의 지하 구치감 관리 및 구속 피고인들의 호송(escort)은 SERCO라는 민간 업체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의 구치감은 구속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법정에 들어오기 전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장소에 불과하다면, 필자가 우드그린 형사

26) 영국의 사설 보안 산업의 규제기관으로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되었고, 특정 사설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의 면허 발급을 규제하고, 보안 업체의 운영 및 성과를 평가하며, 보안 산업의 훈련 기준 및 윤리 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이다.

27)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security-industry-authority

28)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39/section/51

법원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구치감은 거의 교도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인별 수용 가능한 독방이 최소 10곳 이상이 있었고, 식사도 인스턴트 식품으로 제공되므로 1일 이상 수용 가능하였다. 교도소와 법원 사이의 호송 차량 또한 구속 피고인 인원 기준으로 3인승, 6인승 등이 있었는데 각 피고인별로 분리된 공간에 탑승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4. 영상심문의 활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상심문(remote hearing)도 고위험군 당사자들로 하여금 애초에 법원에 방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고, 실제로 영국 사법부는 2023년 밀턴 케인스 가정법원 사건 이후 영상심문을 위와 같이 활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출장 중 인터뷰한 영국의 저명한 법률저널리스트 조슈아 로젠버그(Joshua Rozenberg)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루시 코널리(Lucy Connolly) 사건 즉, 아동살해 사건에 분노해 이민자들이 머무는 호텔을 불태우자는 내용의 극단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글을 X(구 트위터)에 게시하여 인종적 증오 선동(inciting racial hatred)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0. 버밍엄 형사법원에서 징역 31개월을 선고한 사건에서도 영상심문이 활용된 바 있다.

관건은 고위험군 당사자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 요건과 절차라고 할 것인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아래에서 살펴볼 잠재적 위험 당사자 프로토콜(Potentially Violent Persons Protocol, 이하 'PVP 프로토콜'이라고 한다)이다.

5. PVP 프로토콜

가. 의의

잠재적 위험성 있는 당사자를 어떻게 식별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 같은 정보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정한 프로토콜로서,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 있어 보다 일관된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통합 프로토콜이다. 아래에서 볼 A Local Authority v D and others [2024] EWFC 61 판결에서 Mr Justice Peel이 언급한 것처럼, PVP 프로

토콜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전부터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지역과 상황에 따라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다가 2023년 11월 밀턴 케인즈 가정법원 사건 이후 업데이트되었다.

이 프로토콜의 목적은 법원에 있는 동안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를 식별하는 것이다. 그 폭력에 의한 위험이란 다른 당사자들,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 방청객, 법원 직원, 법관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대부분은 그 위험이 낮은 편이겠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 평가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위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폭력(violence)이라 함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 또는 다른 집단을 상대로 신체적 힘의 실제 이용이나 그 위협으로 고통(distress), 상해(injury), 사망(death), 정신적 손해(psychological harm)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나. 적용대상

PVP 프로토콜은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 적용되고, 형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형사법원에는 피고인 도크가 있어 위협적인 상황이 자주 연출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로 2023년 밀턴 케인즈 가정법원 폭행 사건도 가정법원의 법정에서 발생된 사례였다.

다. PVP 식별 및 위험 평가

각급 법원 HMCTS 현장책임자(Senior Person on Site, 이하 'SPoS'라고 한다)는 SPoS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잠재적 위험당사자(PVP) 사건이 효과적으로 식별되고 위험성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양식에 따라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법원 내지 심판소가 잠재적 위험당사자(PVP)를 식별하고 그 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를 참고하고, 유관기관 사이의 회의와 포럼을 통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유지 · 개발하여 언제 서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소송이 시작될 때 제출되는 법원 서류에 기재된 정보
- ► 당사자 또는 관련 당사자의 법률 대리인이 제공한 정보
- ► 가사 사건에서의 Cafcass(Children and Family Court Advisory and Support Service)를 비롯한 모든 전문유관기관
- ► SSCS(Social Security and Child Support) Tribunal의 경우 복지부(DWP)가 UCB(Unacceptable Customer Behavior) 상자에 표시한 정보
- ► 직원이 제공한 정보
- ► 법관 또는 법원 직원이 종전 사건에서 발생했던 사고나 우려에 대해 사건기록에 메모해둔 정보
- ►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 PVP 사건임을 표시
- ► 기타

라. 위험이 식별된 경우의 절차

위험이 식별된 경우 현장책임자(SPoS)는 다음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① 법원 직원이 어느 당사자가 PVP임을 인지하였을 때 곧바로 현장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는 긴급 절차가 확보되어야 하고, 현장책임자는 그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여 종전에 법관, 직원, 법원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야기한 이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② 위험에 노출된 법원 건물 안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Bailiff)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관련 법원 직원과 보안직원 등은 누가 위협을 야기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식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지받아야 한다.

⑤ 행동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PVP는 5단계로 나누어 구분되어야 한다.

PVP Level 1	추가 보안 직원이나 경찰 불필요
PVP Level 2	추가 보안 직원 필요
PVP Level 3	추가 보안 직원 및 경찰 필요
PVP Level 4	영상심문 필요
PVP Level 5	도크(dock)가 있는 장소로 기일 지정

⑦ 현장책임자는 부속서류 A 양식이 작성, 보존됨을 확인해야 한다.
⑧ 종이 사건기록에는 사건표지 우측 상단에 빨간 싸인펜으로 빨간 별 표시를 해야 한다(스티커는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금지).
⑨ 전자 사건기록에는 해당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법원마다의 방식을 정해야 한다.
⑩ 만일 PVP 위험 관련 정보가 심리 하루 전에서야 수신된 경우, 현장책임자는 심리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당 법원의 수석판사(leadership judge)에게 정보 공유하여야 한다. 만일 보안 조치를 적용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⑪ 현장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공공기관이 전과나 다른 폭력 이슈 정보 유무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⑫ 현장책임자는 부속서류 A 양식이 사건기록에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법정경위, 참여관, 법관, 보안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
⑬ 대부분의 경우 PVP에 관한 정보는 뒤늦게 수신된다. 계약에 따라 민간 경비업체 OCS에게는 최소 24시간 전에 추가 보안 직원을 요청해야 한다. 만일 충분한 위험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 심리가 진행되어선 안 된다.
⑭ 만일 위험 정보가 당일 수신된 경우, 현장책임자는 신속히 위험 평가를 완료하여 법관, 보안 팀과 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조치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책임자는 지역 보안 요원이나 경찰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
⑮ 현장책임자는 해당 사건이 종료된 경우 전산상 그 내용을 반영하고, 보안 팀은 배치된 보안직원 수와 심리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기록해야 하며, 현장책임자 등은 이를 리뷰하여 만일 위협의 대상이 법관이어서 그 수준이 매우 높았다면 법관도 함께 리뷰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만일 법관이 직접 참석할 수 없다면 법관의 의견을 별도의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
⑯ 당해 프로토콜의 운영은 매년 현장책임자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

마. 관련 판례 – A Local Authority v D and others [2024] EWFC 61

1) 사건의 배경

네 자녀의 보호 및 양육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중이던 M은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M은 2024년 1월 재판이 없는 날 법원 건물에 들어가 화장실 이용 후 3인치 칼을 보안 데스크에 자진 제출했다. 이후 PVP 프로토콜에 따른 위험 평가가 실시되어 M은 법원 출입을 금지당하고 영상심문으로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M은 칼의 반입이 법원의 허술한 보안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법정출석권(재판참여권)의 회복을 신청하였다.

2) 법원의 판단

M은 변호사 사무실,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에서도 영상심문 참석이 제한되고 거주지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실질적 재판참여권과 모든 법원 이용자(법관, 직원, 변호사, 방청객 등)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므로, M의 법원 출입 자체는 허용하되 항상 변호사와 동행하고, 휴대폰 압수 및 법정 내 보안인력 2명 상시 배치, 안전조치 미이행시 즉시 출입불허 등 일정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아울러 당사자에 대한 위험평가 문서는 외부,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 결과와 이유의 핵심 내용 일부는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어야 하고, PVP 프로토콜에 따른 위험평가와 안전조치는 HMCTS 직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법관은 구체적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만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3) 시사점

사건당사자에게 잠재적 폭력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더라도 안전조치를 엄격히 병행한다면 당사자의 실질적 재판참여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PVP 프로토콜과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 사이의 이익형량이 문제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경찰과의 연계

법원 청사 내부에 연락 담당 경찰관(liaison police)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PVP 프로토콜에 따라 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PVP Level 3)에는 사건에 따라 각 법원의 담당자가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관이 법정 밖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긴급전화번호인

999로 전화를 걸어 법관임을 밝히면[29] 고위 경찰관(senior police officer)에 의한 최우선적인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고, 경찰에 자신의 주소를 등록해 둘 수도 있다.

7. 법원모욕죄

영국 사법부는 법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법원모욕죄의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30]

가. 연혁

영국에서는 1154년 즉위한 헨리 2세가 정치권력의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면서 사법개혁에 착수하였고 가톨릭교회의 종교재판권 일부를 박탈하면서 국왕이 임명한 판사들이(royal justice) 영국 각지를 순회하며 재판하는 순회재판 제도를 만들었다. 이들은 왕국 전체에 공통적으로(common) 적용되는 판례법을 형성하였고, 순회재판소는 점차 전문적이고 권위를 가진 재판으로 명성을 얻으면서 존경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국왕을 대신하여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구조 속에서 법원에 대한 반항도 국왕에 대한 불경스러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고 이에 영국은 보통법 전통 (Common Law) 속에서 법원모욕을 폭넓게 제재해왔다.

보통법에 기원을 둔 영국의 법원모욕죄는 법정 내의 소란행위 등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수호하기 위해 '누군가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칠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제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 유형

제재의 목적에 따라 형사모욕과 민사모욕이 구별되고, 직접적인 법원 면전 모욕(contempt in the face of the court)과 간접목욕으로도 구별되는데, 법원의 보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완료된 법원모욕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모욕, 그리고 법정 안이나 그 부근

29) 법관임을 즉각 소명하기 위해 일종의 암구호("operation *******")를 말하면 된다.
30)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고유강), 법관에 대한 부당한 외부적 부담의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방안(2025) 참조

에서 발생하거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절차에서의 부정행위로서 사법집행에 대한 의도적인 불복종 행위인 법원 면전 모욕이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법정에서 변론 중 상대 변호인 또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행한 모욕행위, 법관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의심하여 법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출판하는 행위 등이 법원모욕죄에 해당한다.

다. 1981년 법원모욕죄법의 제정

영국에서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보통법에 의한 법원모욕 규율이 계속되고 있지만, 더욱 명시적인 법률로 사법신뢰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1981년 법원모욕죄법(Contempt of Court Act 1981)이 제정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1979년 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영국의 법원모욕 관련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제12조는 치안법원이 법관, 증인, 공무원, 변호사 등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 의도적인 법원의 절차진행 방해 등에 대한 관할을 가진다는 점을 규정하면서, 감치권한, 1개월 이하의 구금, 500 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 제1항은 형사법원(crown court)과 같은 상급법원(superior court)에 의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고 하급법원(inferior court)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제14조 제2항은 하급법원이 2,500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 인격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방안

1. 법관 인적사항의 비공개

조슈아 로젠버그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관의 프로필에 생년월일이 공개되어 있었으나 2023년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이름, 재직법원, 임명 연도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고, 생년월일, 상세 경력, 연락처 등은 홈페이지에서 삭제 또는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신문사의 한국법조인대관을 통해 법관들의 생년월일, 출신지역, 출신학교, 경력 등이 모두 공개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2. 공보 업무의 강화

최근 일반 대중 중 극단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있거나 분노에 가득찬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영국에서 주로 대중 사이에 논란이 되는 사건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국가 보안(national security)과 관련된 것이 많은바, 예컨대, 입국거부, 추방, 시민권박탈 등에 대한 항소법원인 SIAC(특별이민항소위원회, Special Immigration Appeals Commission), 정보기관, 경찰,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통신감청, 정보수집 등 각종 '조사 · 감시 권한' 행사와 관련한 이의신청 및 인권 침해 의혹 사건을 주요하게 다루는 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그 범주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여러 보안 관련 사건들이 형사재판에서 발생하였으나, 영국은 주로 가사 사건에서 보안 관련 이슈가 발생하였는데, 가사사건은 친권, 양육권 박탈 등 사건당사자에게 판사가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정의 구조상 형사에 비해 보안이 취약하며 비공개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 사법부는 위와 같은 사건들에서 판결의 결론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 어떠한 판결을 하더라도 어느 일방에서는 그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받아들일 것임을 예상하고 있어 대중들이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영국 사법부는 사법부 공보실(Judicial Press Office[31])을 별도로 두고 대중과 언론에 판결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판결문 제공, 법관 인터뷰 및 언론문의 등 사법행위에 직접 연관된 업무를 수행한다.

우드그린 형사법원의 멘사 판사는 법정 내 영상촬영을 금지하였음에도 촬영한 사람을

31) https://www.judiciary.uk/about-the-judiciary/training-support/judicial-office/press-and-communications/press-office/

법정모욕죄로 5일간 구류 결정한 것에 대해 언론의 비난과 인격모욕적인 댓글에 시달린 적이 있는데, 이때 Judicial Press Office에서 당시 상황을 대중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3. 참고 판례

– Tickle and Summers v BBC & Ors [2025] EWCA Civ 42

최근 영국에서 가정법원(Family Court)의 한 판사(Mr. Justice Williams)가 과거 Sara Sharif 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의 이름(Judge Alison Raeside,[32] Peter Nathan, Sally Williams)을, 공개될 경우 판사 본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위험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재판 관련 언론보도에서 익명화(비공개)하도록 명령했고, 이에 언론인 및 여러 언론사가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2025. 1. 24. 해당 익명화 명령은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사가 언론보도에서 판사 이름을 익명화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공개 재판 및 사법 투명성의 원칙(open justice)상 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매우 예외적이고 구체적 위협(예: 신변 위협)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익명화가 검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로, 해당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판사 신변 보호를 위해, 판사 이름 공개 전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필요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앞서 언급했던 영국 사법부 수장(Lady Chief Justice)이 법관들에게 사법부의 안전과 관련한 서한을 발송한 계기가 되었다.

32) Judge Raeside는 2013년 Sara Sharif와 형제자매를 부모의 양육 하에 두되 사회복지국의 감독을 받는 감독명령을 승인했고 2019년까지 Sara와 형제자매에 대한 복지 관련 가족법 사건의 대부분을 심리를 담당하였는데, Sara가 2023년 영국에서 아버지와 계모에 의해 살해된 후 과거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판사와 사회복지기관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일어났다.

VI. 결론 – 시사점

영국의 법원 보안 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과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법원 경비 인력을 법원 자체 고용이 아닌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은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곧바로 우리 제도에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영국은 재판 보조를 담당하는 법정경위와 안전 유지를 전담하는 보안 인력을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점은 경계가 모호한 우리 제도 개선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또한 법원 건물의 공간 배치 역시 인상적이다. 일반인에게 개방된 구역과 비공개 구역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법관과 직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원인이 직원 사무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공간 설계와 출입 통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법정으로 가는 법관 전용 통로가 없는 노후 법원은 조속한 시설 보강이 요구된다.

영국 보안 체계의 핵심은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이며, 그 중심에는 PVP 프로토콜이 있다. 위험 인물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경찰 병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영상 심문을 활용하는 등 상황별 맞춤 대응을 실시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법관 개인에 대한 신변 위협 시 경찰에 특별 암구호를 제공하는 제도 또한 법원 외부 안전 확보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주목할 점은, 영국에서는 법원모욕죄(Contempt of Court)를 통해 법관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법정 질서와 법관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입법적 참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영국 사법부(Judicial Office)가 법관 보호를 위한 리플렛 제작 · 배포 등 지속적인 안내와 경각심 고취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은 구성원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영국의 사례는 물리적 공간 설계, 역할 구분, 위험 평가 기반 대응 체계, 그리고 법관 개인 보호 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법원 보안 · 보호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필진_ 독일 사법제도연구반
책임필자_ 사법연수원 교수 류일건

Ⅰ. 서론 19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
가. 연구의 배경 196
나. 연구의 목적 198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99

Ⅱ 독일의 법원청사 및 구성원 보호 체계 199
1. 독일 법원의 보안 및 질서유지 권한의 이원적 구조 199
가. 재판장의 법정경찰권(Sitzungspolizei)과 법원장의 주거권(Hausrecht) 199
나. 법적 근거 200
다. 기능 200
2. 재판장의 법정경찰권(Sitzungspolizei) 201
가. 법정경찰권(Sitzungspolizei) 201
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Maßnahmen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219
다. 법정모독에 대한 질서제재수단 (Ordnungsmittel wegen Ungebühr) 226
라. 질서제재수단의 집행 (Vollstreckung der Ordnungsmittel) 237
마. 법정 밖에서의 권한 (Befugnisse außerhalb der Sitzung) 241
바. 질서제재수단에 대한 항고 (Beschwerde gegen Ordnungsmittel) 242
사. 재판 중의 범죄(Straftaten in der Sitzung) 247
3. 법원장의 주거권(Hausrecht) 251
가. 주거권(Hausrecht) 251
나. 공공건물에 대한 주거권 253
다. 법원청사에서의 주거권 258
라. 베를린주 및 니더작센주의 주거권 관련 규정 263
마. 주거권 행사에 대한 법적 보호 276
바. 전망 277

Ⅲ. 독일 법원의 보안 및 질서유지 실무 278
1. 인적 자원 활용 실무 278
가. 사법경위직(Justizwachtmeisterdienst)에 대한 법적 규율 278
나. 사법경위의 채용과 직업교육(Ausbildung) 308
2. 물적 자원 활용 실무 336
가. 출입통제 및 위험한 물건 수색 등을 위한 장비 336
나. 사법경위의 직접강제력 행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338
3. 경찰과의 협력관계 342

Ⅳ. 결론 및 시사점 343
1. 법원청사 및 구성원의 보호 필요성 증가 343
2. 독일의 법원청사 및 구성원 보호 방안 344
가. 재판장의 법정경찰권과 법원장의 주거권 344
나. 인적 · 물적 자원의 활용 및 경찰과의 협력 344
3. 시사점 344
가. 전제 – 독일의 특수성 고려 필요 344
나.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시사점 345
4. 마치며 347

참고문헌 348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1) 법원청사 및 구성원의 보호 필요성

우리 헌법은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명시하여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삼권분립의 이념에 따라 법원에 사법권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상 법관 및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사법의 기능 보호와 법관 및 재판의 독립 보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법정을 포함한 법원청사의 보호와 법관을 비롯한 법원구성원의 보호가 필수불가결하다.

2) 우리나라의 현황

먼저 인적 자원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으로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를 규정한다. 나아가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물적 자원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3항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원경위로 하여금 법정 방청인의 소지품 등을 검사하게 하고 있는바, 실제로 X-ray 소형화물투시기, 문형검색대, 핸드스캐너 등의 장비가 이용되고 있다.[1] 이와 더불어 법원조직

1)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50.

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②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바, 실제로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개별적으로 가스분사기, 무전기, 삼단봉 등 보안장비를 휴대하고 있고, 법정마다 채증을 위해 1대씩 비치된 캠코더를 이용하고 있다.[2)]

3) 개선 필요성

그러나 위와 같은 우리나라 법원의 법원청사 및 법원구성원의 보호를 위한 인적 · 물적 자원 체계는, 최근 발생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 없는 다중에 의한 법원청사 테러사건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법정을 비롯한 법원청사 내 흉기 난동 사건들로 인해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① 2006년 현 법원보안관리대의 전신인 법원경비관리대 창설 당시 법정, 법원청사 내 및 법원청사 외 보안구역 별로 구분되어 있던 법원경위, 방호원, 청원경찰의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임기 10년의 별정직공무원(2013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전문분야 별정직 공무원 폐지로 인해 현재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대체)으로 선발하고 있는 현행 다원화된 인적 자원 체계, ② 이러한 법원보안관리대원이 가지는 협소한 업무 권한—가령 실무상 청사 출입구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하지 못하고 법정동 출입구 위주의 제한적 통제에 그치고 있다—, ③ 불충분한 휴대 보안장비 및 노후화된 검색 장비 등은 법원청사 등의 방호업무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바, 현행 인적 · 물적 자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나아가 법원청사 및 법원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테러사건의 발생 시 외부 경찰과의 협업관계에 대하여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문식(주1), 51.

4) 독일의 현황

독일의 경우, 재판장(Vorsitzende)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Sitzung)에서 법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정경찰권[3]과 유사한 법정경찰권(Sitzungspolizei)을 행사하고, 법원장(Gerichtspräsident)은 법원청사(Gerichtsgebäude)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거권(Hausrecht[4])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는데, 위 각 권한들의 실질적인 집행은 우리나라의 법정경위 및 법원보안관리대원과 유사한 업무를 관할하는 사법경위(Justizwachtmeister)가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현행법상 사법경위는 문건 송달 등 사법행정 임무와 법원의 안전 및 질서유지 임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 보안업무가 지속적으로 전문화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법경위에 대한 직업교육에서도 보안 관련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

한편 독일의 사법부 체계는 연방주(Bundesland) 별로 일반법원(ordentlich Gericht),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 노동법원(Arbeitsgericht), 사회법원(Sozialgericht), 재정법원(Finanzgericht) 등 다섯 계열의 전문법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각각의 계열별 연방최고법원이 별도로 존재하여 다원화되어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Verfassungsgericht) 역시 연방과 연방주 별로 각각 존재하고 있기에, 계열 법원별 또는 연방과 각 연방주별로 각급 법원마다 사법경위직(Justizwachtmeisterdienst)을 별도로 채용 · 관리하고 있다.[6]

나. 연구의 목적

이처럼 법원청사 및 구성원 보호와 관련하여,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제도를 두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바,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독일의 법원청사 및 구성원 보호 방안이 어떻게 개선 · 운용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

---

3)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배제 · 제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지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법정질서유지권이라고도 한다; 성낙인, 헌법학(제22판), 법문사(2022), 744.

4) '가택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 대상이 공공청사일 때에는 '건물관리권' 또는 '청사관리권'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Hausrecht는 독일에서 주택(Haus) 보유자의 사적 재산권에 기초하여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 온 권리인바, 그러한 권리의 본질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거권'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주거권'으로 번역한다.

5) 최정명 · 장인호, "현행 법원보안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원보안국의 설치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2권 4호(2021. 12.), 223.

6) 최정명 · 장인호(주5), 223.

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먼저 독일 법원의 보안 및 질서유지 권한의 이원적 구조 체계를 개괄한 다음, 독일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법원청사 및 구성원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적 자원의 활용과 법원의 방호를 위한 각종 물적 자원의 활용을 살펴보고, 사법경위직의 선발 · 운영 · 교육 방식 및 외부 경찰과의 협업관계 또한 실증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최근 독일에서도 법원과 검찰청을 포함한 사법부(또는 법무부)의 보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당 분야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독일의 최근 법원 보안 강화 움직임에 대하여도 본 연구보고서의 주제 범위 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독일의 법원청사 및 구성원 보호 체계

1. 독일 법원의 보안 및 질서유지 권한의 이원적 구조

가. 재판장의 법정경찰권(Sitzungspolizei)과 법원장의 주거권(Hausrecht)

독일 법원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치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법적 권한을 근거로 한다. 재판장의 법정경찰권과 법원장의 주거권이 바로 그것이다. 언뜻 두 가지 법적 권한은 권한 주체와 권한이 작용하는 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권한의 본질과 기능에 있다. 법원이 아닌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제40조 제2항[7] 제1문은 경찰권과 주거권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7) 기본법 제40조
② 의장은 연방의회의 청사 내에서 주거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연방의회의 영역 내에서는 의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색이나 압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법적 근거

1) 재판장의 법정경찰권(Sitzungspolizei)

법정경찰권은 기본법상 법관이 위임받은 사법권(richterliche Gewalt)에서 유래한다.[8]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GVG)」은 제176조 내지 제183조에서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을 직접 다루고 있는데, 그중 제17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법원장의 주거권(Hausrecht)

반면에 주거권은 사법상 소유권 개념에서 유래하고 재산적 성격을 가진다.[9]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 BGB)」 제903조[10]에 의하면,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에의 출입 또는 접근권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도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의 관점에서 공공청사의 주거권 행사라는 개념은 상당히 생소하지만, 독일의 경우 공공청사의 방호 · 보안에 있어서 이러한 해당 기관장이 행사하는 주거권은 매우 중요하다.

법원장의 주거권은 주로 법원청사에 대한 접근 및 법원청사 내에서의 행동을 규제한다. 그러나 법원청사의 토지와 건물은 사법적 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 및 주거권의 행사 역시 법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1]

다. 기능

한편 경찰권과 주거권이 법원청사의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

8) BGH NJW 1962, 1260; BGH NJW 1977, 437.

9) Ramm, Die Polizeigewalt des Bundestagspräsidenten Die Polizei beim Deutschen Bundestag und ihre Ermächtigungsgrundlage, NVwZ(2010, Heft 13), S. 1463.

10) 민법전 제903조(소유권자의 권한)
물건의 소유자는,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물을 자신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고 타인의 일체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동물의 소유자는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Ramm, a.a.O., S. 1463.

에, 법정경찰권은 법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사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즉 법정경찰권은 법정 내부에서 사법적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가령 재판진행 방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이다.[12]

아래에서 법정경찰권과 주거권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살펴보겠다.

2. 재판장의 법정경찰권(Sitzungspolizei)

가. 법정경찰권(Sitzungspolizei)

> 법원조직법 제176조
> ①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 ② 절차관계인은 심리 중에 얼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려서는 아니 된다. 얼굴의 공개가 신원확인이나 증거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은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1) 규범의 목적

법원조직법 제176조 제1항은 법정경찰권에 대한 기본규정이다. 이는 법정에서 소송쟁점(Streitgegenstand)에 대한 평온하고 엄숙하며 객관적인 검토 및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판진행(Verhandlungsverlaufe)의 외적 질서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3] 질서 있는 재판을 보장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제6조 제1항[14] 제1문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도 요구된다. 법원조직법 제176조는 같은 법 제175조,[15] 제177조[16] 및 제178조[17]와 함께

12) Ramm, a.a.O., S. 1463.
13) Rauscher/Krüger, Münchener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mit Gerichtsverfassungsgesetz und Nebengesetzen(6. Aufl.), C.H.BECK München(2022), GVG § 176, Rn. 1.
14) 유럽인권협약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①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 형사상의 죄의 확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의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도기관 또는 공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15) 법원조직법 제175조
① 미성년자와 법원의 권위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자는 공개재판의 방청이 불허될 수

법원에 재판절차를 감독할 포괄적인 법정경찰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원의 존엄성(Würde)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정경찰권의 행사는 기본법 제20조 제2항[18]에서 규정하는 사법권의 일부인데,[19] 법정경찰권자는 이를 행사할 권리뿐만 아니라 행사할 의무도 가진다. 법원조직법 제176조 제1항은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Vorsitzende)[20]에게 법정의 질서유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176조 제2항은 2019. 12. 13.에 신설된 조항으로,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얼굴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가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개별사건에서 재판의 진행과 증거조사 과정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상의 이유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이나 진술 태도 평가에 있어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의 금지조치가 불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21]

있다.

② 비공개재판의 경우, 법원은 특정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는 피해자의 방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관계인에 대한 청문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③ 직무감독을 수행하는 법무행정청(Justizverwaltung)의 공무원은 수소법원의 비공개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16) 법원조직법 제177조
소송당사자, 피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절차비관계인이 법정의 질서유지와 관련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정에서의 퇴정, 감치를 위해 연행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 구금을 당할 수 있다. 절차비관계인에 대한 제1문의 조치는 재판장이 결정하며 그 밖의 경우는 재판부(Gericht)가 결정한다.

17) 법원조직법 제178조
① 소송당사자, 피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절차비관계인이 법정모독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소추의 유보를 조건으로 최대 1,000유로의 과태료(Ordnungsgeld) 또는 최대 1주일간의 감치(Ordnungshaft)에 처해질 수 있고 즉시 집행된다. 액수를 확정하는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대체할 감치일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절차비관계인에 대한 질서제재수단(Ordnungsmittel)은 재판장이 결정하며 그 밖의 경우는 재판부(Gericht)가 결정한다.

③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추후 형벌(Strafe)이 선고되는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는 형벌에 산입된다.

18) 기본법 제20조
②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19) BGH NJW 1962, 1260; BGH NJW 1977, 437.

20)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ZPO) 제136조(재판장의 소송지휘)
① 재판장은 재판을 개시하고 주재한다.

21) BT-Drucksache 19/14747, 17.

2) 법정경찰권의 주체 – 원칙: 재판장 / 예외: 재판부, 개별 판사, 사법보좌관

원칙적으로 법정경찰권은 재판장에게 부여된다. 일부 예외가 존재하는데, ① 법원조직법 제177조 제2문 및 제178조 제2항에 의하면, 절차비관계인에 대한 특정한 제재조치는 재판부(Gericht, Kollegium)의 권한에 해당하고, ② 법정 밖에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180조는 개별 판사, 특히 수명법관(beauftragter Richter) 또는 수탁판사(ersuchter Richter)의 제재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재판장을 대신하여 재판부가 내린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는 유효하다.[22] 반면에 재판장은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개별 판사 역시 재판장 또는 재판부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지방법원(Landgericht, LG),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OLG) 및 연방일반법원(Bundesgerichtshof, BGH)의 합의재판부(Spruchkörper[23])에서는 법원장과 부장판사(Vorsitzender Richter)가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주재한다(법원조직법 제21f조 제1항). 나아가 구법원(Amtsgericht, AG)의 단독판사(Einzelrichter)와 민사소송법 제348조,[24] 제348a조,[25] 제526조,[26] 제527조[27]에 따른 단독판사는 합의재판부의 재판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한편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은 「사법보좌관법(Rechtspflegergesetz, RPflG)」 제4조[28] 제1항에 따라 구두 심문절차(가령 소송구조절차에서의 심문) 또는 구두 심리절차

22) BGH NStZ 2004, 220 Rn. 9.
23) 보통 지방법원에서는 'Kammer', 고등법원과 연방최고법원에서는 'Senat'라 불린다.
24) 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내 '고유 단독판사(Originärer Einzelrichter)' 관할에 관한 규정이다.
25) 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위임하는 '의무적 단독판사(Obligatorischer Einzelrichter)' 관할에 관한 규정이다.
26) 항소법원(Berufungsgericht) 재판부가 위임하는 '결정 담당 단독판사(Entscheidender Einzelrichter)' 관할에 관한 규정이다.
27) 항소법원 재판부가 지정하는 '준비 담당 단독판사(Vorbereitender Einzelrichter)'의 재판진행에 관한 규정이다.
28) 사법보좌관법 제4조(위임의 범위)
① 사법보좌관은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행할 권한이 없다.
1. 선서를 명하거나 선서를 받는 일,
2. 다음 각 목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아닌 기타의 자유박탈적 조치를 명한다고 경고하거나, 이를 명하는 일.
a) 「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 StPO)」 제457조의 자유형 또는 「민사소송법」 제890조의 감치,
b) 「형사소송법」 제463조의 개선 및 보안 처분,

(가령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정경찰권을 포함한 재판을 주재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자유박탈적 조치(freiheitsentziehender Maßnahmen)를 명할 수는 없다(사법보좌관법 제4조 제2항 제2호).

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가) 인적 적용범위

법정경찰권에 기한 명령의 수범자에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방청객 및 법적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절차관계인과 법원직원(Justizbedienstete)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참심원(Schöffe),[29] 상사법관(Handelsrichter)[30]과 같은 합의재판부의 다른 구성원도 포함된다.[31] 그중 소송절차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절차관계인(Beteiligte), 특히 소송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들의 절차적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공간적 적용범위

법정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소, 즉 재판이 진행되는 공간적 영역 및 가령 합의실(Beratungszimmer)과 같은 법정(Sitzungssaal)에 부속된 공간에만 적용된다. 그 밖에 법정에 바로 인접한 대기실(Vorraum)과 입구(Zugang)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으나, 다만 이러한 공간에서 발생한 방해행위가 재판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32]

한편, 예컨대 현장검증(Lokaltermin)과 같이 법정 밖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법정경찰권은 적용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28a조[33]와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

---

c)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질서위반법)[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Ordnungswidrigkeitengesetz), OWiG] 제97조의 납부강제구금.

③ 사법보좌관이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조치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은 그에 관한 결정을 위해 사건을 법관에게 제출한다.

29) 형사재판권(Strafgerichtsbarkeit)에서 사용되는 명예법관(ehrenamtlicher Richter)의 명칭이다[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제45a조].

30) 상사사건의 합의재판부(Kammer für Handelssachen)에서 사용되는 명예법관의 명칭이다(독일 법관법 제45a조).

31) Rauscher/Krüger, a.a.O., GVG § 176, Rn. 5.

32) BVerfG NJW 1996, 310; BGH NJW 1998, 1420.

33) 민사소송법 제128a조(영상 및 음성의 전송방법에 의한 변론)

차법(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die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FamFG)」 제32조 제3항[34]에 따라 영상회의(Videokonferenz)의 방법으로 외부의 공간이 연결되는 경우, 법정경찰권은 그 외부의 공간에도 미친다.[35]

다) 시간적 적용범위

법정경찰권은 재판(Sitzung) 진행시간 내내 존속한다. 재판은 심리(Verhandlung)보다 넓은 개념이다.[36] 심리의 전후로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항이 처리되고 있는 시간(가령 법정에서의 증거자료 제출 준비, 통신장비 설치 등)과 소송당사자와 방청객이 통상적으로 법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도 재판 진행시간에 속한다.[37]

일반적으로 재판은 법정이 개방되고 소송당사자가 맨 처음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합의실(Beratungszimmer)에서의 재판부 사전합의(Vorberatung) 또한 재판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짧은 휴정 중에도 법정경찰권은 유지된다.[38] 심지어 재판의 개념에는 재판부 합의와 이유(Gründe) 낭독을 비롯한 판결의 선고도 포함된다. 재판은 재판장에 의해 절차가 끝나고 재판부를 포함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법정을 떠난 후에 비로소 종료된다.[39]

이처럼 법정경찰권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질서유지 조치는 오직

---

①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과 소송보조인에게 변론하는 동안 다른 장소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절차행위를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변론은 영상과 음성으로 그 장소와 법정으로 동시에 전송된다.

② 법원은 신청에 따라 증인, 감정인 또는 당사자 일방이 신문하는 동안 다른 장소에서 머무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신문은 영상과 음성으로 그 장소와 법정으로 동시에 전송된다.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소송보조인에게 제1항 1문에 따라 다른 장소에 머무는 것이 허가된 경우에는, 신문은 그 장소로도 전송된다.

③ 전항의 전송은 녹화하지 않는다. 제1항 제1문 및 제2항 제1문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4)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 제32조(기일)

③ 적절한 경우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8a조를 준용하여 영상 및 음성 전송을 통하여 사건에 관하여 관계인과 의논하여야 한다.

35) Rauscher/Krüger, a.a.O., GVG § 176, Rn. 6.

36) KG JW 1925, 810.

37) Rauscher/Krüger, a.a.O., GVG § 176, Rn. 7.

38) OLG München OLGE 27, 6.

39) OLG Köln MDR 1993, 906; OLG Hamm NJW 1956, 1452.

법원조직법 제180조[40]에 기초한 개별 판사의 법정 밖에서의 직무수행범위 또는 주거권자(Hausrechtsinhaber)의 주거권 행사 측면에서만 고려될 뿐이다.

라) 관할 절차별 적용범위

그 적용범위는 「법원조직법시행법(Einführungsgesetz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EGGVG」 제2조[41]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13조[42]에 규정된 일반재판권에 미친다. 이는 또한 노동법원, 행정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에서의 절차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의 절차에서도 준용되는 방법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25조 이하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부절차(Schiedsgerichtsverfahren)의 경우, 민간 자율적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는 국가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176조 소정의 법정경찰권이 적용되지 않는다.[43] 따라서 중재판정부절차에서 방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중단하고 이례적으로 중재합의를 최종 해지시키는 선택권만을 가진다.

4) 법정경찰권의 내용

가) 명령(Anordnung)의 요건 및 한계

(1) 명령의 요건

(가) 재판 진행 외적 질서의 방해 또는 방해 우려의 객관적 존재

법원조직법 제176조에 따른 명령이 발령되려면, 재판진행의 외적 질서가 실제로 방해받았거나, 방해받을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법정경찰권 조치 명령에 기본권 제한적인 성격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가령 방청객으로 하여금 대화를 하지 말라거나, 휴대전화와 녹음기의 전원을 끄라거나, 흡연하지 말라

40) 법원조직법 제180조
개별 판사가 법정 밖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176조부터 제179조까지에 명시된 권한을 가진다.
41) 법원조직법시행법 제2조
「법원조직법」의 규정은 일반재판권(ordentliche Gerichtsbarkeit)과 그 행사에 적용된다.
42) 법원조직법 제13조
일반법원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연방법에 따라 특수법원의 관할로 지정되지 아니한 민사사건, 가사사건, 비송사건 및 형사사건을 재판한다.
43) Rauscher/Krüger, a.a.O., GVG § 176, Rn. 8.

거나, 휴정시간 동안에 퇴정하게 하는 조치 명령들의 경우에는 그 요건으로서 방해의 실제 또는 잠재적 우려의 정도가 낮게 요구된다. 같은 맥락에서 재판장은 법원조직법 제169조[44] 제1항 소정의 금지범위를 넘어서도 사진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45]

반면에 무기 소지 여부에 대한 신체 수색이나 공개방청을 제한하는 조치 등과 같이 기본권 제한적인 성격이 강한 조치 명령의 경우, 그 요건으로서 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해 또는 방해받을 객관적인 우려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재판장은 증인 보호를 위해 참석한 경찰관이 무기를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휴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46]

(나) 명령의 요건에 대한 재량판단과 한계

재판진행의 방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정경찰권자가 직무상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법정경찰권에 따른 명령과 조치를 선택하고 행사할 때 유의해야 할 재량한계가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판장'은 절차관계인(Beteiligte)에 대하여 '재판부(Gericht)'의 권한으로 유보된 조치(법원조직법 제177조, 제178조에 따른 퇴정, 감치 및

---

44) 법원조직법 제169조
① 판결과 결정의 선고를 포함한 수소법원의 재판은 공개로 진행한다. 내용의 공개 상영 또는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 녹음, 텔레비전 방송 촬영, 녹음 및 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그 밖의 미디어를 위해 보고하는 사람을 위하여 작업실로 음향을 전송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관계인이나 제3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하거나 절차의 적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음향 전송을 일부 금지할 수 있다. 그 밖에는 작업실로 전송된 음향에 대하여 제2문을 준용한다.
② 독일연방공화국에 매우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지니는 절차인 경우, 법원은 판결과 결정의 선고를 포함한 재판의 학술적 · 역사적 목적을 위한 녹음을 허가할 수 있다. 절차관계인이나 제3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하거나 절차의 적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녹음을 일부 금지할 수 있다. 녹음은 소송기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양도하거나 녹음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를 위하여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없다. 절차의 완료 후 법원은 관할 연방 · 주기록보관소(Bundes- oder Landesarchiv)에 녹음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방 · 주기록보관소는 「연방기록물관리법(Bundesarchivgesetz)」 또는 주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녹음이 영구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방기록보관소 또는 주기록보관소에서 녹음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녹음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문과 달리 법원은 특별한 경우에 연방일반법원의 재판 선고에 대하여 내용의 공개 상영 또는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 녹음, 텔레비전 방송 촬영, 녹음 및 영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절차관계인이나 제3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하거나 절차의 적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녹음이나 전송을 일부 금지하거나 부대조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45) BVerfG NJW 2015, 2175; OLG Düsseldorf StV 2013, 200; KG NJW-RR 2010, 1417.

46) KG NStZ 2011, 120.

과태료 부과)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다('재판부'가 결정한다).[47] 또한 재판장은 절차관계인에 대하여 법정경찰권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 소송당사자와 제3자의 '법적 청문권(rechtliche Gehör, 기본법 제103조 제1항[48])'을 보장하여야 한다. 반면에 재판장이 절차비관계인(Nichtbeteiligte)에 대하여 법정경찰권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 '공개재판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질서 있는 재판의 진행보다 이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49]

(2) 명령의 한계

일반적으로 재판장은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상 내재적 제한(verfassungsimmanente Schranke)으로서 비례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에 기속된다.[50] 비례의 원칙은 법정질서가 방해받은 때 재판장으로 하여금 법원조직법 제177조, 제178조에 따른 질서제재수단(퇴정, 감치, 과태료 등)을 취하기에 앞서 '보다 온건한' 법원조직법 제176조에 따른 조치를 통해 법정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요구한다.

비례의 원칙상 강압적인 조치의 직접적인 사용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재판진행 중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법정 내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의 재량권이 "0"으로 축소(Ermessensreduzierung auf Null)되어 재판장은 특히 개인 신원확인 등에 의한 출입통제와 같은 명령을 반드시 내려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51] 또한 재판 방해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진실발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개입의무가 적극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52]

나) 허용되는 조치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재판장이 법원조직법 제176조에 따른 질서유지권에 기하여 내릴 수 있는 '명령'과 ② 법원조직법 제177조에 따라 위 명령이 무시될 때 부과하는 '질서제재수단(퇴정, 감치)' 또는 법원조직법 제178

47) BVerfG NJW 1998, 297.
48) 기본법 제103조
① 누구든지 법정에서 법적 청문권을 가진다.
49) BGH MDR 1981, 770; BGH NJW 1977, 157 (158); BGH NJW 1971, 715.
50) BVerfG NJW 1978, 1048.
51) OLG Köln NJW-RR 1998, 1141.
52) BGH NJW 1962, 260 (261).

조에 따라 법정모독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질서제재수단(과태료, 감치)'이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176조에 따라 선택 가능한 명령의 유형은 법정경찰권자의 직무상 재량에 달려 있지만,[53] 법원조직법 제177조 및 제178조에 따라 허용되는 질서제재수단의 유형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법원조직법 제176조는 언제, 어떻게 법정경찰권에 기한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법정경찰권에 기한 명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허용되는 명령들로는, 질서유지 경고, 좌석 배치 지정, 발언권 박탈, '퇴정 요청', 법정 배치 등에 관한 도면 작성 금지, 사진 촬영 금지 및 영상물 압수[54] 등이 있다.

나아가 법정에서의 노트북 사용은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상 녹화 및 음성 녹음이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될 수 있다.[55] 그러나 최근에 특별 전자 변호인사서함(Besonderes elektronisches Anwaltspostfach)과 전자소송기록(Elektronische Gerichtsakte)의 도입이 점점 의무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정 내 노트북 사용 제한 조치의 경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취해져야 할 것이다.[56]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57]에 따르면, 기본법 제5조[58] 제1항 제2문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보도이익에 관하여, 언론은 본안 심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최소한 한 시점(재판시작 시점이든 휴정 또는 재판종료 시점이든)에서 적어도 모든 절차관계인들이 참석한 상태의 법정 내부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조치로서 재판의 취소, 연기 또는 일시 중단도 가능하다.[59]

---

53) BVerfG NJW 1996, 310.
54) BGH NJW 1998, 1420.
55) BVerfG NJW 2009, 352.
56) Rauscher/Krüger, a.a.O., GVG §176, Rn. 12.
57) BVerfG NJW 2009, 2117.
58) 기본법 제5조
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 · 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출판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이 권리들은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③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충실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59) RGZ 32, 390.

다) 허용되지 않는 조치

예컨대 부정적인 보도가 예상되고 그로 인해 불안한 분위기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보도 기자의 방청을 배제하거나,[60] 소음을 유발하지 않고 조용히 필기를 하고 있는 변호사보조원(Rechtsanwaltsgehilfe)이나 방청객을 퇴정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61] 또한 무슬림 여성이 종교적 이유로 법정에서 '히잡(Kopftuch)'을 착용한 경우, 그 착용 자체만을 이유로 법정에서 퇴정시킬 수는 없다.[62]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개재판에서 이해관계 있는 방청객이 법률문서를 지참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한편 변호사가 법복(Robe)[63]을 착용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조치는 그동안 변호사 직업지침(Standesrichtlinien) 및 관습법(Gewohnheitsrecht)을 근거로 판례에 의해 긍정되어 왔다.[64] 그러나 현행 법원조직법 제177조가 명시적으로 소송대리인(Prozessvertreter)을 퇴정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가 단순히 실수로 법복을 착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를 퇴정시키는 조치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65] 그러나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도발 목적으로 일부러 법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정 조치의 대상이 된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변호사에게 넥타이를 준비하라고 명령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퇴정시키겠다는 내용의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를 내려서는 아니 된다.[66]

라) 법정경찰권과 주거권의 관계

(1) 법정경찰권과 주거권의 구별

법정경찰권과 주거권은 기본적으로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법정경찰권이 사법권의 일환으로서 재판장 등에 의해 행사되는 반면에, 주거권의 행

60) BVerfG NJW 1979, 1400.
61) BGH NJW 1963, 599.
62) BVerfG NJW 2007, 56.
63) 독일에서는 변호사도 법정에서 법복을 착용한다.
64) BVerfG NJW 1970, 851 (853); BGH NJW 1977, 398 (Ls.); OLG Braunschweig NJW 1995, 2113; OLG München NJW 2006, 3079.
65) LAG Nds BeckRS 2008, 57012.
66) LG Mannheim NJW 2009, 1094.

사는 법원청사에 관한 사법행정 또는 행정고권(Verwaltungshoheit)의 일환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원장의 책무에 속한다.[67] 이는 법원청사의 모든 구역 즉, 원칙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는 한' 법정까지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법원장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 법정 앞 계단 등의 공간에서의 사진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68]

(2) 주거권에 대한 법정경찰권의 우위

그런데 법정경찰권은 그 적용범위 내에서는 주거권보다 우선한다.[69] 주거권을 보유한 법원장은 별도로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에 기한 명령에 의해 법정 출입이 금지되지 않는 한, 일반 청중의 방청을 거부할 수 없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장의 의사에 반하여 법정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 이는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이 사법권 독립의 보호영역에 속하는바, 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70] 따라서 가령 법원장이 사법경위 등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모든 재판을 오후 4시에 종료하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는 없다.[71]

다시 말해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거권자가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거권에 기한 조치[가령 특정 사건 재판의 방청객에 대한 청사 출입금지(Hausverbot) 또는 출입 제한, 법정 내 특정한 행동지침 부여 등]를 통해 특정 사건의 재판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법원청사 전체 및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반적인 통제는 법원장의 주거권에 속한다.[72]

(3) 법정경찰권과 주거권 행사의 협의·조율 및 위임

그런데 법정경찰권과 주거권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나 그 적용범위 구분에 의문이 있는 경우, 법원장은 주거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법정경찰권을 보유한 재판장과 협의·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67) BVerfG NJW-RR 2007, 1053; OVG Berlin-Brandenburg NJW 2011, 1093.
68) BVerfG NJW-RR 2007, 1053.
69) BGH NJW 1982, 947; BGH NJW 1972, 1144 (1145).
70) BGH NJW 1982, 947.
71) BGH NStZ 2007, 281.
72) OVG Berlin-Brandenburg NJW 2011, 1093.

한편 재판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장으로부터 주거권 행사의 대행을 위임받았다면, 법정경찰권과 주거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73]

(4) 주거권과 공개재판의 원칙 간 관계

(가) 원칙

법원장에게는, 법원이 법원조직법 제169조에 따른 공개재판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청객의 출입과 관련된 재판장의 명령을 단지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적극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는 주거권과 법정경찰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주거권과 공개재판의 원칙의 관계에서도 재판절차의 공개성이 일반적으로 주거권에 우선함을 의미한다.

비록 공개재판의 원칙이 헌법적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74] 재판절차의 공개성은 법치국가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주거권은 재판절차의 공개성을 보장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판절차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정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법정 출입에 대한 방해는, 법원조직법 제169조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주거권자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75]

(나) 예외

다만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공개재판 원칙의 특성상, 보안을 위한 필수적 조치와 같이 공개성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은 공개재판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76]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가능한 한 가장 온건한 수단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

73) Rauscher/Krüger, a.a.O., GVG § 176, Rn. 14.
74) BVerfGE 4, 74 (94).
75) BVerfG NJW 2011, 2530 Rn. 8.
76) OLG Koblenz NJW 1975, 1333; BVerfG NJW 2012, 1863. 특정 오토바이클럽("Hells Angels")의 구성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처럼, 피고인들과의 소속감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한 사람들의 법원청사 출입은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재판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로서 금지될 수 있다.

(5) 주거권과 법적 청문권 간 관계

어떠한 경우에도 주거권은 가령 절차관계인의 법원청사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처럼 절차관계인의 법적 청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즉 법적 청문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이 주거권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따라서 예컨대 심하게 술에 취한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청사 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이는 오직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장이 이를 명령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결론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법적 청문권을 주장할 수 없는 다른 절차관계인(증인, 감정인, 변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판사의 사법작용 즉, 법 발견(Rechtsfindung)이 일반적인 주거권보다 우선하므로, 재판장만이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뿐, 법원장은 주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재판진행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없다.[77]

5) 얼굴가림(Gesichtsverhüllung) 행위의 금지

가) 개정(Reform)

법원조직법이 1879. 10. 1. 최초 제정 · 시행된 이래 2019. 12. 13. 개정 전까지 제176조는 현재 개정법 제1항 내용의 단일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구법이 적용될 때에는 법정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재판장은 법정경찰권의 범위 내에서 사법작용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얼굴의 일부만을 가리게 하거나 얼굴 전부를 가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었다.[78]

입법자는 법정에서의 얼굴가림 행위에 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2019. 12. 13.부터 법정에서 전면적 또는 부분적 얼굴가림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헌법상의 이유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조항, 즉 허용유보(Erlaubnisvorbehalt)도 열어두었다.

77) BGH NJW 1982, 947.
78) BT-Drucks. 19/14747, 43.

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176조 제2항은 법정경찰권이 적용되는 시간 동안 적용된다.[79]

인적 적용범위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176조 제2항은 모든 절차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바, 즉 소송당사자, 대리인과 보조인(Beistand), 증인과 감정인(Sachverständige)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방청객이나 보안 목적을 위해 배치된 경찰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80]

사물관할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재판부의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180조에 따라 법정 밖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개별 판사의 절차에서도 적용되는바, 특히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민사소송법 제361조,[81] 제362조[82]) 및 집행판사(Vollstreckungsrichter, 민사소송법 제764조[83])의 면전에서 수행되는 절차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 금지사항

(1) 얼굴가림(Gesichtsverhüllung) 행위

법원조직법 제176조 제2항 제1문은 법정에서 얼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입법이유서(Gesetzesbegründung)에 따르면, 위 금지사항은 종교적인 동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얼굴가림 행위에 적용된다.

여기서 '얼굴가림(Gesichtsverhüllung)'이란 섬유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하여 얼굴

79) Rauscher/Krüger, a.a.O., GVG § 176, Rn. 16.
80) BT-Drucks. 19/14747, 43.
81) 민사소송법 제361조(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① 수소법원의 구성원 중 1인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재판장은 증거결정을 할 때에 수명법관을 지명하고 증거조사기일을 지정한다.
②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수명법관이 이를 지정한다. 수명법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재판장은 다른 구성원을 지명한다.
82) 민사소송법 제362조(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① 다른 법원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재판장은 그 촉탁서를 발부한다.
②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변론조서 원본을 수소법원의 사무국(Geschäftsstelle)에 송부한다.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그것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 준다.
83) 민사소송법 제764조[Vollstreckungsgericht(집행법원)]
① 법원이 담당하는 집행행위의 명령과 집행행위에 있어서 협력은 집행법원으로서 구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률에서 특별히 다른 구법원을 지정하지 않는 한,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실시한 구법원을 집행법원으로 본다.
③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마스크, 부르카(Burka), 선글라스, 복면(Sturmhaube), 오토바이 헬멧 또는 심지어 물리적 상처 치료를 위해 얼굴에 착용하는 붕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해당된다.

(2) 얼굴가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자연적인 수염, 작은 반창고, 투명 렌즈로 된 안경, 오로지 머리카락이나 목 부위만을 가릴 뿐 이마와 턱 사이의 얼굴 부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는 얼굴가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판장 등의 임무 및 권한

얼굴가림 금지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재판장의 임무이다.[84] 이를 집행하기 위해 재판장은 법원조직법 제176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경찰권에 기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재판장 또는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177조에 따른 질서제재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라) 허용유보(Erlaubnisvorbehalt)

(1) 의의

법원조직법 제176조 제2항 제2문은 법정경찰권을 보유하는 재판장에게 얼굴가림 금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허용은 재판장의 직무상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사법작용의 기능 보장,[85] 법치국가 원칙(Rechtsstaatsprinzip, 기본법 제20조 제3항[86])—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2) 허용유보의 재량권 행사 시 유의사항

재판장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사자 개인의 기본권, 특히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84) BT-Drucks. 19/14747, 43.
85) BT-Drucks. 19/14747, 43.
86) 기본법 제20조
③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과 권리에 구속된다.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2조[87] 제1항),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4조[88]) 및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2조 제2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기본권과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붕대를 착용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89]

종교적 또는 의학적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아래에서 볼 허용유보의 배제 요건 즉, 얼굴의 공개가 신원확인이나 증거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전제하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90] 다만 당사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희망하는 얼굴가림의 방법과 그 동기에 대한 정보를 재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재판장은 당사자의 재판상 지위와 재판의 진행상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91]

(3) 허용유보의 배제

신원확인 또는 증거평가에 얼굴의 식별이 필요할 경우 허용유보가 배제된다. 이는 재판장의 허용유보에 관한 재량권을 "0"으로 축소시킨다.

절차관계인의 신원확인은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통 재판참가자들이 서로를 알고 있거나 법원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와 재판장의 시각적 비교 · 대조 또는 재판관계인의 얼굴에 대한 재판장의 단순한 육안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92]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원칙적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증거평가의 일환으로, 절차관계인의 얼굴 표정을 고려하여 그의 진술을 평가하고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역시 얼굴이 드러나 있어야만 가능하다. 인물의 신뢰성과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얼굴이 가려져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어렵다.

---

87) 기본법 제2조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적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 권리들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88) 기본법 제4조
①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 ·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② 종교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③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89) BT-Drucks. 19/14747, 44.

90) BT-Drucks. 19/14747, 44.

91) Rauscher/Krüger, a.a.O., GVG § 176, Rn. 18.

92) BT-Drucks. 19/14747, 43 f.

개방적 · 비언어적인 소통은 법원의 심리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93]

그러나 얼굴 식별이 신원확인 또는 증거평가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 및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는 각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부분적인 얼굴가림 상태에서도 신원확인 또는 증거평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허용유보의 배제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재판장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의학적으로 필요한 얼굴 붕대 착용의 경우, 이를 허용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마) 의무로서 얼굴가림에 대한 명령의 불가

앞에서 본 것처럼 법원조직법 제176조 제2항은 단지 허용유보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예외적으로 얼굴가림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반면에 입법자는 얼굴가림의 금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얼굴가림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가령 법정에서 감염병 확진을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이는 재판장이 법정경찰권에 기한 명령으로서 절차관계인 등에게 얼굴가림을 의무로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가능성을 박탈한다.

이러한 방식의 2019. 12. 13. 자 법률 개정은, 입법자가 과거 구법이 적용되던 당시에도 이미 경험했던 팬데믹 상황("스페인 독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입법자는 최근에 발생했던 새로운 감염병들(가령 2002~2003년의 "사스-코로나바이러스", 2012년의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감염병보호법(Infektionsschutzgesetz, IfSG)」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구법 하에서 재판장이 직무상 재량권에 따라 모든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얼굴가림에 관해 어떤 방향으로든 조치할 수 있었던 법정경찰권한을 완전히 폐기하였다. 이러한 입법자의 개정의지는 절차관계인 등이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권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만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법정에서

93) BT-Drucks. 19/14747, 44.
94) BT-Drucks. 14/2530 S. 1.

‘얼굴가림 없는 공개재판’을 특별한 가치로 강조하는 입법자의 개정의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재판장이 절차관계인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명령함으로써 그 취지를 정반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95]

법원의 재판에서 ‘비언어적 소통방식’은 소송당사자나 절차관계인이 자신의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재판진행을 방해하지도 않는데, 만일 얼굴이 가려지면 입 모양이나 얼굴 표정, 제스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법정의 재판절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으로의 이동 조치, 절차관계인들 사이에 거리 유지 명령 또는 투명 아크릴 가림막 등을 이용한 구조적 분리 조치 등과 같은 다른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그 밖에 재판장이 마스크 착용을 ‘권유 · 요청’하는 등으로 절차관계인의 얼굴가림을 허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96]

6) 법적 구제수단(Rechtsmittel): 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과 항소

지배적 견해(herrschenden Meinung, hM)[97]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제176조에 따른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sitzungspolizeiliche Maßnahmen)에 대하여는 항고(Beschwerde)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법원조직법 제181조[98]의 반대해석을 통해 도출된다.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이 가능하다.[99]

만일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에 의해 공개재판의 원칙이 침해되었다면, 가령 변호사 사무실 직원[100] 또는 언론사 직원[101]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정당한 경우, 혹은 소송당

95) Rauscher/Krüger, a.a.O., GVG § 176, Rn. 21.
96) Rauscher/Krüger, a.a.O., GVG § 176, Rn. 21.
97) BGH NJW 2015, 3671; BGH BeckRS 2016, 10557; KG NStZ 2011, 120; OLG Koblenz NJW-RR 1987, 509.
98) 법원조직법 제181조
① 제178조 및 제180조의 경우 질서제재수단(Ordnungsmittel)을 확정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을 고지한 후 1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 연방일반법원 또는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이 내린 질서제재수단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고는 제178조의 경우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고, 제180조의 경우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③ 항고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이 결정한다.
99) BVerfG NJW 2015, 2175(모자이크 처리 조치); BVerfG NJW 2009, 2117(언론보도의 제한 조치).
100) BGH NJW 1963, 599.

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부당하게 퇴장 당했거나, 발언권이 부당하게 박탈되었거나, 당사자의 진술이 방해받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여 소송당사자의 '법적 청문권'이 침해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102]

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Maßnahmen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 **법원조직법 제177조**
>
> 소송당사자, 피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절차관계인이 법정의 질서유지와 관련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정에서의 퇴정, 감치를 위해 연행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 구금을 당할 수 있다. 절차비관계인에 대한 제1문의 조치는 재판장이 결정하며, 그 밖의 경우는 재판부(Gericht)가 결정한다.

1) 규범의 목적

법원조직법 제177조는,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법정경찰권에 기한 명령이 무시되었을 경우 질서를 방해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제거(Entfernung)함으로써 재판의 외적 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판장 또는 재판부에게 강제수단(Zwangsmittel)을 부여한다. 나아가 재판장의 명령이 의도적으로 무시되었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제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존엄 역시 간접적으로 보호된다.

본 규정은 강제수단으로서 관련 당사자에 대한 퇴정(Entfernung aus Sitzungszimmer)과 감치(Ordnungshaft)만을 허용한다. 반면에 본 규정은 방해자에 의하여 무시당한 그 명령 자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유일한 예외가 무시당한 명령이 '퇴정 요구'인 경우인바, 퇴정 조치로 강제집행 된다).

101) BVerfG NJW 1979, 1400.
102) Rauscher/Krüger, a.a.O., GVG § 176, Rn. 24.

2) 적용범위

가) 인적 적용범위

(1) 일반론

법원조직법 제177조에 따른 퇴정 또는 감치 결정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같은 법 제176조의 인적 적용범위—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좁다. 강제조치는 소송당사자와 절차관계인, 이들의 변호사가 아닌 법정대리인[103] 및 임의대리인, 보조인, 증인 및 감정인, 절차비관계인 특히 방청객에 대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

한편 통상적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 일부 즉, 재판부 구성원, 법원서기(Protokollführer) 및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생(Referendar) 또는 사법경위와 같은 기타 사법부 직원은 강제조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때 이들이 자신의 임무 수행으로 법정에 참석한 경우에 한한다. 반면에 이들이 특정한 임무 수행 없이 단순히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차비관계인으로 분류되어 법원조직법 제177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2) 변호사 등의 경우

(가) 원칙

원칙적으로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법원조직법 제177조 소정의 강제조치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는 주로 소송당사자의 소송대리인(Parteianwalt)에게 적용된다.[104] 이는 또한 다른 역할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 가령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 제138조,[105] 「노동법원법(Arbeitsgerichtsgesetz, ArbGG)」 제11a조,[106] 「특허법(Patentgesetz, PatG)」 제133조[107]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 통신변호사

---

103) OLG Dresden NStZ 2010, 472.

104) BGH NJW 1977, 437.

105)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 제138조(변호사의 선임)
① 이혼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해 보이면 이혼사건 및 부대사건인 친생자관계사건의 제1심에서 피신청인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8c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선임 전에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때 가사사건을 이혼사건과 함께 심리 및 재판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선임된 변호사는 보조인의 지위를 가진다.

106) 노동법원법 제11a조(변호사의 선임, 절차비용 보조)
① 소송비용구조 및 지침 제2003/8/EC호에 따른 유럽연합 내 국제 소송비용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제6문을 제외하고 노동사건을 위한 법원의 절차에 준

(Verkehrsanwalt)[108]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들은 모두 '사법작용의 기관(Organ der Rechtspflege)'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09]

그런데 법정에 앉아 다음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변호사는 절차비관계인으로 분류되어 법원조직법 제177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110]

반면에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Pfleger,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 제12조)은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지만, 변호사의 하위위임(Untervollmacht)을 받은 사법연수생은 그렇지 않다.[111]

(나) 예외

극단적인 예로서, 판례는 재판에 참여 중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가령 의도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키려는 행위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퇴정 조치의 가능성을 인정한다.[112]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퇴정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판단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에서는 퇴정 조치 대신에 차라리 휴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113]

용한다. 허가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제3문에 따른 논의기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제50a조가 준용된다.

② 연방노동사회부는 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받은 법규명령으로 개인적 · 경제적 상황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을 위한 서식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07) 특허법 제133조
절차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대리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상반된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변리사(Patentanwalt), 변호사, 또는 허가증소지인(Erlaubnisscheininhaber)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구조가 승인된 당사자에게는, 그가 선택하여 대리의 준비가 된 변리사 또는 변호사 또는 명백한 요구가 있는 경우 허가증소지인이 청구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21조 제4항 및 제5항이 준용된다.

108) 고객과의 의사소통, 즉 서신을 주고 받는 변호이기 때문에 '서신변호사(Korrespondenzanwalt)'라 불리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통신변호사는 고객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할 때 근거리에 있는 고객과 현지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하는 변호사 사이에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109) OLG Köln NJW 1968, 307.

110) KG JW 1925, 810.

111) OLG Düsseldorf MDR 1994, 297.

112) BGH NJW 1977, 437 (438).

113) Rauscher/Krüger, a.a.O., GVG § 177, Rn. 4.

나) 공간적 · 시간적 적용범위

법원조직법 제176조의 공간적 · 시간적 적용범위와 동일하다.

한편 법정경찰권에 기한 강제조치가, 법원조직법 제180조 소정의 개별 판사(수명법관, 수탁판사 등) 또는 재판부가 현장검증절차에서 검증장소에의 접근이 거부되고 있을 때 그들이 강제로 검증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않는다.[114]

3) 명령의 관할

결정권한은 이원적으로 나뉘어 있다.

① 절차비관계인에 대한 조치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절차관계인에 대한 조치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재판부가 재판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재판장이 재판부의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 다만, 예를 들어 긴급한 경우 재판장이 재판부의 권한을 단독으로 한 결정은 사후에 재판부가 추인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115]

4) 허용되는 조치

가) 강제수단

법원조직법 제177조는 명시적으로 열거한 강제수단, 즉 퇴정과 감치만을 허용한다. 그 외의 다른 질서유지 조치(가령 카메라 압수)는 법원조직법 제177조에 따른 강제수단으로서 명령 될 수 없다.

나) 귀책(Verschulden) 불문

강제조치는 법정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의 법원조직법 제176조에 따른 명령을 인식하고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귀책 있는 의도적 위반행위가 많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질서유지 조치이기 때문에 귀책은 필수요건이 아니다.[116]

114) NJW 1988, 1006 (1008 f.).
115) BGH NStZ 1988, 85.

다) 절차

그러나 수단의 비례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사전 경고(Abmahnung)가 실패로 돌아가고 방해행위가 계속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법원조직법 제177조에 따른 강제수단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방해자에 대한 청문 절차는 필수적이지 않다. 기본법 제103조 제1항 및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을 고려하여, 특히 절차관계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청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경고나 반복된 주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문이 필요하지 않다.[117]

라) 퇴정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방해자가 퇴정당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제177조에서 허용된 강제수단 중 비교적 온건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176조에 따라 퇴정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라, 사법경위 등의 도움을 받아 그 명령을 강제로 집행하는 조치이다.

한편 방해자를 법정이 아닌 법원청사 전체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법원장의 주거권의 효력에 근거하지만,[118] 이 권한은 재판장에게 재판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위임될 수 있다.

보통 퇴정 조치는 개별 인물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전체 방청객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방청객이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청객 중에서 구체적인 방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119]

만일 법원조직법 제172조[120]에 따른 비공개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재판의 원칙상 퇴정 조치 시 기타 재판에 관심 있는 방청객의 입장을 막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116) Rauscher/Krüger, a.a.O., GVG § 177, Rn. 8.
117) BGH NJW 1993, 1343.
118) BGH NJW 1972, 1144.
119) Rauscher/Krüger, a.a.O., GVG § 177, Rn. 9.
120) 법원조직법 제172조
다음과 각호의 경우에 법원은 심리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1a. 증인이나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2. 공개 논의 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중요한 영업 · 발명 · 조세비밀이 언급되는 경우,
3. 무단 공개 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적 비밀이 논의되는 경우,
4. 18세 미만의 사람을 심문하는 경우.

퇴정당한 방해자에 대하여 그 퇴정기간을 제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일 퇴정 당한 방해자가 다시 법정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이는 감치 사유가 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형법전(Strafgesetzbuch, StGB)」 제123조[121] 소정의 주거침입죄(Hausfriedensbruch)에 해당할 수 있다.[122]

마) 감치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단순한 퇴정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감치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감치결정 전에 항상 온건한 수단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감치보다 온건한 수단이 방해를 영구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적합해 보이는 경우에만 먼저 시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문의 문언상 감치는 재판시간과 상관없이 최대 24시간까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재판시간과 무관하게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수단의 필요성 관점에서 보면, 감치 또는 기타 형태의 구금기간은 원칙적으로 재판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123] 이때 감치의 기간은 감치결정과 함께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재판이 다음 날에도 계속되고 감치를 당했던 사람이 다시 방해행위를 할 경우, 또다시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124]

감치결정의 후속 절차에 대한 영향은 민사소송법 제158조[125]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치된 경우를 포함하여) 퇴정당한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궐석판결(Versäumnisurteil)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 실익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 궐석판결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감치된 소송당사자에게 새로운 기일을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337조[126]).

---

121) 형법전 제123조(주거침입)
① 다른 사람의 주거, 사무실, 울타리가 쳐진 토지 또는 공적인 업무나 거래를 위하여 정해진 폐쇄된 공간에 불법 침입한 자나 무단으로 그 장소에 체류하는 자로서 권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이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

122) BGH NJW 1982, 947.

123) Rauscher/Krüger, a.a.O., GVG § 177, Rn. 10.

124) Rauscher/Krüger, a.a.O., GVG § 177, Rn. 10.

125) 민사소송법 제158조[소송지휘명령에 따른 퇴정(Entfernung infolge Prozessleitungsanordnung)] 질서유지를 위하여 변론에 관여한 사람을 강제로 퇴정시킨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그가 스스로 퇴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182조[127]에 따라, 같은 법 제177조에 따른 모든 강제조치는 절차비관계인의 퇴정을 제외하고 반드시 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기간, 그리고 강제조치의 원인이 된 방해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불복수단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에 대한 항고절차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181조는 오로지 같은 법 제178조 및 제180조에 따른 조치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자체로는 같은 법 제177조에 따른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181조의 '유추적용'이 가능한데, 이때 감치와 단순한 퇴정 조치를 구별하여 살펴야 한다.

먼저 단순한 퇴정 조치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128] 퇴정당한 당사자에게는 종국판결에 대한 구제수단, 가령 제1심 궐석판결에 대한 이의(Einspuch, 민사소송법 제338조[129]) 또는 법적 청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항소(Berufung) · 항고(Beschwerde) 또는 상고(Revision) · 법률항고(Rechtsbeschwerde)의 제기, 또는 재판절차상 법적 청문권 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등이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130]

반면에 감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항고가 허용된다.[131] 감치라는 강제수단 자체를 취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종국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수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직 즉각적인 항고만이 적절한 구제수단이고, 모든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132]

---

126) 민사소송법 제337조[직권에 의한 연기(Vertagung von Amts wegen)]
법원은 재판장이 정한 응소기간 또는 기일통지기간이 너무 짧거나, 당사자가 귀책사유 없이 출석하는 데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궐석판결의 신청 또는 기록에 따른 재판의 신청에 관한 변론을 연기한다. 불출석한 당사자에 대하여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27) 법원조직법 제182조
법정모독에 따른 질서제재수단이 확정되거나 감치 또는 절차관계인이 퇴정당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 및 그 이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28) Rauscher/Krüger, a.a.O., GVG § 177, Rn. 13.

129) 민사소송법 제338조(이의)
궐석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판결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130) Rauscher/Krüger, a.a.O., GVG § 177, Rn. 13.

131) Rauscher/Krüger, a.a.O., GVG § 177, Rn. 13.

132) Rauscher/Krüger, a.a.O., GVG § 177, Rn. 13.

다. 법정모독에 대한 질서제재수단(Ordnungsmittel wegen Ungebühr)

> 법원조직법 제178조
>
> ① 소송당사자, 피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자가 법정모독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소추의 유보 하에 최대 1,000유로의 과태료(Ordnungsgeld) 또는 최대 1주일간의 감치(Ordnungshaft)에 처해질 수 있고 즉시 집행된다. 액수를 확정하는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대체할 감치일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
> ② 절차비관계인에 대한 질서제재수단(Ordnungsmittel)은 재판장이 결정하며, 그 밖의 경우는 재판부(Gericht)가 결정한다.
>
> ③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추후 형벌(Strafe)이 선고되는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는 형벌에 산입된다.

1) 규범의 목적

법원조직법 제178조는 법정모독(Ungebühr) 행위에 대한 징벌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점에서 처벌적 성격을 지닌다.[133] 더욱이 이를 통해 재판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된다. 본 규정은 법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 밖의 행위에 적용된다.[134] 본 규정의 실제 규범목적은 사회공동체의 제도로서 법원이 지니는 명예(Ansehen)를 보호하는 데 있다.

반면에 법원조직법 제178조는 개별 판사의 존엄성 보호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법정모독 행위를 당한 판사가 직접 해당 사건에서 법원조직법 제178조에 따른 질서제재수단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자기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178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도 없다.[135]

2) 적용범위

가) 인적 적용범위

법원조직법 제178조의 적용대상은 인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같은 법 제177조와 동일하다.

---

133) Rauscher/Krüger, a.a.O., GVG § 178, Rn. 1.
134) OLG Rostock NJOZ 2019, 389 Rn. 20.
135) Rauscher/Krüger, a.a.O., GVG § 178, Rn. 1.

나) 공간적 · 시간적 적용범위

법원조직법 제178조의 공간적 · 시간적 적용범위 역시 같은 법 제177조의 그것과 동일하며, 이는 동시에 같은 법 제176조 소정의 법정경찰권의 그것과도 일치한다.

이에 사무국(Geschäftsstelle)에서의 모독적 행위[136] 또는 법정에서 낭독한 경우가 아닌 한 단지 법률서면상의 모독적 표현[137]만으로는 「법원조직법」 제178조가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직 법원청사에 대한 주거권에 기한 조치—전자의 경우— 또는 형법전 제185조[138] 소정의 모욕죄(Beleidigung) 또는 제186조[139] 소정의 명예훼손죄(Üble Nachrede)— 후자의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가령 현장검증 시 해당 장소의 주거권자가 재판부 및 절차관계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178조의 규정 범위 내의 '법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때에도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그 주거권자를 처벌할 수도 없고, 강제로 해당 장소에 접근할 수도 없다.[140]

3) 명령의 관할

법원조직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절차비관계인에 대한 질서유지 조치의 부과의 관할은 재판장에게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에 있다(관할 분리). 재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재판부가 행사한 경우, 재판장이 해당 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는 기본법 제101조[141] 제1항 제2문의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하는 절차상 위법이 없다.[142]

---

136) OLG Schleswig SchlHA 1967, 152.
137) OLG Düsseldorf MDR 1993, 462.
138) 형법전 제185조(모욕)
모욕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폭력행위를 수단으로 모욕을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39) 형법전 제186조(명예훼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에 적합하거나 여론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이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공공연하게 또는 저작물(제11조 제3항)의 유포를 통하여 이 행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40) OLG Düsseldorf MDR 1969, 689.
141) 기본법 제101조
① 특별법원(Ausnahmegericht)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 사안 분야를 관할하는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다.

4) 법정모독(Ungebühr)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재판진행의 방해 또는 법원 기능 수행에 대한 경멸 · 폄훼

객관적인 측면에서 법정모독 행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법정에서 법적 논쟁이 없는 상황에서의 평온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하나의 국가 제도로서 또는 그 제도적 기능 수행 자체를 경멸하거나 폄훼하는 것이어야 한다.[143]

또한 가령 법원을 향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등을 돌리는 행동 등이 법원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무례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수동적인 행위 역시 법정모독에 해당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원 자체를 향한 행위일 필요도 없다. 다른 절차관계인, 가령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향한 무례하고 경멸적인 행동 혹은 특정 대상자 없이 재판절차 전체를 경멸하는 태도 등도 충분히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조직법 제177조와는 달리 사전에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법정경찰권에 기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러한 명령 위반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144]

(2) 행위의 중대성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주관적인 감정이나 민감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치관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양식이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기준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145]

어떤 행동이 반복 지속성 또는 소음 등의 강력한 외적 강도로 인해 재판에서 청각적으로 실질적인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명백한 언어적 모욕, 대기 중인 변호사의 무례한 말[146] 등 불손한 발언, 의도적인 도발,

142) OLG Koblenz MDR 1978, 693.
143) OLG Dresden BeckRS 2020, 17807 Rn. 8.
144) Rauscher/Krüger, a.a.O., GVG § 178, Rn. 4.
145) BVerfG NJW 2007, 2839.

노골적이거나 은밀하지만 심각한 적대감 표현과 같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반드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이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히 소송당사자들 간의 격한 논쟁이나 큰소리의 주장이 절차 내에서 실질적 토론을 촉진하는 내용이라면, 너무 성급하게 이를 중단시켜서는 아니 된다.[147]

나) 주관적 구성요건 – 귀책(Verschulden) 필요

주관적인 측면에서 법정모독 행위는 귀책을 요구한다.[148] 이는 법원조직법 제178조 소정의 강제조치가 처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귀책이 요구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다수설에 따르면 과실(Fahrlässigkeit)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149] 반면에 다른 견해는 고의(Vorsatz)가 필요하다고 본다.[150]

다) 개별 행위 유형

(1) 언어적 법정모독 행위(Verbale Ungebühr)

원칙적으로 경멸적인 발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바, 그 대상이 법원이든, 소송당사자이든, 증인이든 혹은 특정한 상대방 없이 일반적으로 발언된 것이든 관계없다. 따라서 판사나 절차관계인에 대한 폄하적인 발언,[151] 모욕 또는 언어적 위협,[152] 징계절차를 개시하겠다는 협박,[153]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행위,[154] 법원을 향한 도발적인 발언, 판사에 대한 도발적인 호칭,[155] 판결 선고 중 방청인의 야유 또는 발언 중 끼어들기,[156] 경고에도 불구하고 욕설하거나 말대꾸하는 행위[157]는

146) München NVwZ 2003, 883.
147) Rauscher/Krüger, a.a.O., GVG § 178, Rn. 5.
148) OLG Düsseldorf NJW 1986, 1505.
149) OLG Hamm Rpfleger 1951, 135.
150) OLG Hamburg BeckRS 2019, 33619 Rn. 27.
151) Schl.-holLSG MDR 1984, 260.
152) BVerfG NJW 2007, 2839; "이 재판은 희극입니다."라는 발언이 문제 된 경우.
153) OLG Hamm NJW 1969, 856.
154) OLG Hamm NJW 1963, 1791 (1792).
155) OLG Nürnberg JZ 1969, 150 (151).
156) OLG Koblenz VRS 1961, 356.

모두 법정모독 행위로서 제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판결에 대하여 “이딴 헛소리는 처음 듣는다(Ich habe selten so einen Scheiß gehört).”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한다.[158]

한편 소송상대방을 “부랑자(Strolch)”라고 부른 경우, 이미 긴장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발언이고 즉시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법정모독 행위로 보지 않는다.[159] 소송당사자가 증인의 증언에 대해 “멍청한 증언을 하고 있다(dummes Zeug zu reden).”라는 식으로 한 과격한 반응은, 사실에 대한 별도의 진술로서 ‘자기변호’로 볼 수 있으나 훈계나 경고의 대상이 된다.[160]

(2) 외적 모습(Äußeres Erscheinungsbild)

복장이나 외모와 관련된 사항은 의도적인 도발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법정모독 행위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된다.[161] 이는 법원이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의 생활관 또는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162]

과거에는 법원의 존엄성에 걸맞은 복장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으나,[163] 오늘날에는 의도적인 도발을 목적으로 한 복장, 가령 수영복을 입고 출석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 등에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법정모독 행위 해당 범위가 축소되었다.[164]

작업복,[165] 일반적인 평상복,[166] 특히 반바지와 티셔츠[167] 등을 입고 법정에 나타난 경우는, 특히 지나치게 무성의하거나 의도적인 무시 또는 도발을 목적으로 한 경우[168]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법정모독 행위로 보지 않는다.

반면에 술에 취했거나 술기운이 있는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 특히 기일을 인지하

157) OLG Colmar OLGE 23, 316.
158) OLG Celle NStZ 2011, 45.
159) OLG Köln NJW 1986, 2515.
160) OLG Koblenz MDR 1980, 76.
161) OLG Düsseldorf NJW 1986, 1505.
162) OLG München NJW 1966, 135.
163) BVerfG DRiZ 1966, 356; 넥타이 착용 없이 스포츠셔츠를 입은 경우.
164) OLG Hamm JMBlNRW 1976, 21.
165) OLG Hamm NJW 1969, 1919.
166) OLG Düsseldorf JMBlNRW 1981, 215.
167) OLG Koblenz NJW 1995, 977.
168) OLG Düsseldorf NJW 1986, 1506; 지나치게 짧고 더러운 반바지를 입고 온 경우.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했거나 술기운이 있는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법원에 대한 모욕적 태도로 보아 법정모독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169] 모자 벗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170]

(3) 기타 행위

(가)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무관하게 '의도적인 도발행위'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한 법정모독 행위로 평가된다. 이러한 예로는 재판진행 중 법정에서 일부러 신문을 읽거나 음식을 먹거나 흡연하는 행위,[171] 문을 쾅 닫는 행위,[172] 일부러 등을 돌리고 앉는 행위,[173] 판결 선고나 선서 시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행위[174] 등이 있다.

몰래 음성녹음을 하는 행위[175]와 법정을 떠나며 무례한 몸짓을 하는 행위[176]도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 또는 소송당사자가 제멋대로 법정을 나가는 행위는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177]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접촉 또한 법정모독 행위이다.[178]

주로 법원조직법 제176조, 제177조에 따라 법정경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판진행의 방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라면, 법정모독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가령 반복적인 박수, 야유 등의 의사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그러나 개인적이고 충동적인 진술,[179] 지속적인 소음 발생,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 반복적인 말 끼어들기,[180] 손짓이나 플래카드 등의 사용,[181] 금지된 상태에서 휴대전

169) OLG Hamburg MDR 1979, 160.
170) OLG Stuttgart BeckRS 2007, 9557.
171) OLG Karlsruhe JR 1977, 392.
172) OLG Hamm JMBlNRW 1975, 106.
173) OLG Köln NJW 1985, 446.
174) KG BeckRS 2010, 02523; OLG Brandenburg BeckRS 2013, 18230.
175) OLG Schleswig SchlHA 1962, 84.
176) OLG Saarbrücken JMBl. Saar 1960, 54.
177) OLG München MDR 1956, 503 (504).
178) OLG Hamm VRS 108, 3429.
179) OLG Saarbrücken NJW 1961, 890.

화 사용,[182] 껌을 씹는 행위 등은 법정모독 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한편 방청객이 재판부에 메모로 증인의 긴장된 심리 상태 등을 알리는 행위,[183] 감기에 걸린 증인이 기침사탕(Hustenbonbon)을 빨아먹는 행위[184] 또한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허용되는 조치

가) 과태료, 감치 및 이들의 다중 부과

법원조직법 제178조는 법정경찰권에 기한 가장 강력한 조치, 즉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치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

과태료의 하한은 5유로[형법시행법(Einführungsgesetz zum Strafgesetzbuch, EGStGB) 제6조[185] 제1항]이고, 감치의 하한은 1일(같은 법 제6조 제2항)이다. 나아가 과태료의 상한은 1,000유로이고 감치의 상한은 1주인데, 이는 법원조직법 제178조 제1항 제1문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1회의 법정모독 행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동일한 법정에서 법정모독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질서제재수단 체계의 다중 부과가 정당화된다.[186] 이때는 형법전 제53조[187] 및 제54조 제2항[188]이 다중 부과 시 상한의 한계로서 유추적용 된다.[189]

---

180) OLG Stuttgart BeckRS 2007, 9557.
181) OVG Koblenz AS 19, 297.
182) OLG Brandenburg NJW 2004, 451.
183) BGH NJW 1962, 1260.
184) OLG Schleswig NStZ 1994, 199.
185) 형법시행법 제6조[질서제재수단 및 강제수단의 최소 및 최대 한도(Mindest- und Höchstmaß von Ordnungs- und Zwangsmitteln)]
① 연방법이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그 최소 또는 최대 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최소 금액은 5유로, 최대 금액은 1,000유로로 정한다. 주(州)법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② 법률이 감치를 부과할 때, 그 최소 또는 최대 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최소 기간은 1일, 최대 기간은 6주로 정한다. 이 경우 감치는 일수로 계산된다.
186) OLG Bremen NJW 1956, 113 (114); 1953, 598.
187) 형법전 제53조[경합범(Tatmehrheit)]
① 동시에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개의 자유형이나 여러 개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한 개의 병합형을 선고한다.
② 벌칙형과 함께 자유형이 경합되는 경우 한 개의 병합형을 선고한다. 다만, 법원은 벌금형을 따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러 개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여러 개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한 개의 병합벌금형을 선고한다.

감치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대체하여 부과될 수 있다(대체집행 감치). 그러나 감치는 즉시 집행된다. 과태료 미납 시 부과되는 대체집행 감치의 환산비율(Umrechnungsschlüssel)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감치기간과 비슷한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부과되는 구금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190]

나) 비례의 원칙

법원이 법정모독 행위에 대하여 질서제재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178조는 앞서 본 조치를 가능하게 할 뿐, 이를 반드시 강제하지는 않는다.

법정모독 행위에 대하여도 법원조직법 제176조, 제177조에 따른 보다 온건한 조치가 언제든지 허용되고, 질서제재수단과 동등한 적합성이 있을 때는 우선 권장된다.[191] 법원조직법 제176조, 제177조 및 제178조에 따른 조치들 종류 간 및 같은 법 제178조 내의 조치들 종류 간에는 각각 단계적 관계(Stufenverhältnis)에 있는데, 이에 따라 동등한 적합성이 있을 때는 온건한 조치가 강력한 조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온건한 수단은 법원조직법 제176조에 따른 명령이고, 최후의 수단은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감치이다.

평온한 재판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 및 비례적 관점에서, 감치기간은 법원조직법 제177조에 따라 24시간의 한도 내에서 재판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재판부를 직접 겨냥한 법정모독 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178조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자칫 재판부 기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정황, 즉 불공정성 징후(Befangenheitsindizien)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192]

---

③ 제52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188) 형법전 제54조(병합형의 형성)
② 병합형은 단일형의 합에 도달해서는 아니 된다. 병합형은 유기자유형의 경우 15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벌금형의 경우 720일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89) Rauscher/Krüger, a.a.O., GVG § 178, Rn. 10.

190) OLG Hamm BeckRS 2020, 19143 Rn. 15.

191) BVerfG NJW 2007, 2839.

192) OLG Neustadt NJW 1961, 2320 (2321).

다) 형사소추의 가능성

질서제재수단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법원조직법 제178조 제1항 제1문). 만일 해당 법정모독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래에서 살펴볼 법원조직법 제183조[193]에 따른 법원에 의한 수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법원조직법 제178조에 따른 질서제재수단이 내려진 동일한 행위에 대해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이미 부과된 과태료 또는 감치는 형에 산입되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178조 제3항).

6) 절차

가) 사전 청문

질서제재수단 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청문 절차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청문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을 보장해야 한다.[194] 다만, 청문이 명백히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추가적인 법정모독 행위로 이어질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다.[195] 또한 법정모독 행위를 한 당사자가 스스로 법정을 떠난 경우, 그가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196]

이미 사전 경고(vorherige Androhung)가 있었더라도, 질서제재수단을 실제로 부과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떤 사안은 청문을 통해서만 법정모독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주관적으로 충분히 귀책 있는 행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절차관계인에 대하여는 기본법 제10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법적 청문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청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또는 청문이 생략되었다면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한다.[197]

---

193) 법원조직법 제183조
법정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범죄구성요건을 확정하고 그에 관하여 기록한 조서(Protokoll)를 관할기관에 송부한다. 법원은 적절한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임시체포(vorläufige Festnahme)를 명령하여야 한다.

194) BVerfG NJW 2007, 2839.

195) OLG Hamburg BeckRS 2019, 33619 Rn. 20.

196) OLG Hamm MDR 1978, 780.

197) Rauscher/Krüger, a.a.O., GVG § 178, Rn. 13.

강제조치에 대한 사전 경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귀책 유무 또는 그 정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경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재판장의 명령, 법원의 결정

(1) 재판의 형식과 시기

법원조직법 제178조에 따른 질서제재수단은, ① 절차비관계인에 대하여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② 같은 조 제1항에 명시된 소송당사자 등 절차관계인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부과된다. 단독판사는 법원(단독재판부)이므로 결정의 방식으로 질서제재수단을 정하고, 개별 판사 즉,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명령의 방식으로 정하는데(민사소송법 제329조[198]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절차적 구별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질서제재수단 조치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법정경찰권의 시간적 · 공간적 효력 범위 내에서(가령 휴정이 끝난 후) 내려지고 고지되어야 한다. 재판이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질서제재수단 조치를 결정하거나 고지할 수 없다.[199] 재판이 수일에 걸쳐 진행될 때 다른 긴급한 사안이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법정모독 행위가 있은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재판일에 결정 및 고지를 할 수 있다.[200]

(2) 재판의 이유

명령 또는 결정의 이유에 질서제재수단이 부과되는 요건사실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는 정도의 단순한 언급 또는 법 조문의 단순한 인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198) 민사소송법 제329조(결정과 명령)
① 변론에 기초하여 한 법원의 결정은 선고되어야 한다. 제309조, 제310조 제1항과 제311조 제4항의 규정은 법원의 결정에, 제312조와 제317조 제2항 1문, 2문,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법원의 결정, 재판장 및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명령에 준용한다.
② 선고되지 않은 법원의 결정과 선고되지 않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명령은 당사자들에게 방식의 제한 없이 통지한다. 재판이 기일의 지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기간을 진행시키는 경우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집행권원이 되는 재판 또는 즉시항고 또는 제573조 제1항에 따른 이의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송달되어야 한다.

199) OLG Nürnberg NStZ-RR 2006, 308.

200) OLG Schleswig MDR 1980, 76.

또한 명령 또는 결정의 이유에 부과되는 질서제재수단 종류, 과태료의 경우 그 금액, 감치의 경우 그 기간, 심지어 과태료가 강제집행 되지 않을 시 대체집행 할 감치의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178조 제1항 제2문). 그러나 법원은 대체집행 감치 결정을 추후 보완하여 내릴 수 있는데(형법시행법 제8조 제1항[201]), 그 경우 다시 한번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202]

(3) 고지

명령 또는 결정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329조 제3항 또는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 제41조[203]에 따라 정식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이때 불복수단(법원조직법 제181조)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232조[204] 또는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 제39조[205]).

---

201) 형법시행법 제8조
[감치에 대한 추후보완 결정(Nachträgliche Entscheidungen über die Ordnungshaft)]
① 과태료를 집행할 수 없고 대체 감치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추후에 과태료를 감치로 전환한다. 법원은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징수할 수 없는 과태료를 대신하여 정해진 감치의 집행이 당사자에게 부당한 고통을 초래할 경우, 그 감치의 집행을 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202) OLG Celle MDR 1998, 679.

203)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 제41조(결정의 고지)
① 결정을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은 결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관계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② 출석자에게는 결정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이를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이유를 지체 없이 추가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1문의 경우에 결정을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승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정은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고지되어야 한다.

204) 민사소송법 제232조(법적 구제의 고지)
불복할 수 있는 법원의 모든 재판에는 허용되는 상소, 이의제기, 이의신청 또는 재고신청을 제출할 법원, 그 법원의 소재지 및 지켜야 할 방식과 기간에 관한 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소송절차에서는 이의제기,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 또는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비약상고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205)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 제39조(법적 구제의 고지)
모든 결정서에는 적법한 상소, 이의제기, 이의신청 또는 재고신청에 관한 고지 및 이러한 불복신청을 제기할 법원, 법원의 소재지 또는 준수할 형식과 기간에 관한 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비약항고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다) 공개재판의 원칙 미적용

청문 절차, 결정 및 고지에 대하여는 공개재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유럽 인권협약 제6조 제1항에서도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만일 질서제재수단 부과에 대한 절차의 공개를 의무화하면, 본안 심리의 중단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본안 심리의 지연을 목적으로 의도된 법정모독 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206]

7) 불복수단

질서제재수단이 부과된 경우에 법원조직법 제181조에 따라 항고가 가능하다. 반면에 질서제제수단 조치가 거부된 경우에 질서제재수단을 요청한 사람을 위한 별도의 항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라. 질서제재수단의 집행(Vollstreckung der Ordnungsmittel)

> 법원조직법 제179조
> 재판장은 앞서 명시한 질서제재수단의 집행을 곧바로 명령하여야 한다.

1) 규범의 목적

부과된 질서제재수단의 집행을 직접 '지시'할 의무는, 질서제재수단이 재판장에 의해 직접 부과되었는지 또는 재판부에 의해 부과되었는지 상관없이 항상 재판장에게 있다.

재판장의 집행 지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단순히 이행하는 절차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집행의 정당성을 위해 다시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재판장은 집행을 지시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직접 스스로 집행할 의무는 없다.[207]

2) 적용범위

법원조직법 제179조는 같은 법 제177조, 제178조에 따른 질서제재수단—퇴정, 감치 및

206) Rauscher/Krüger, a.a.O., GVG § 178, Rn. 19.
207) Rauscher/Krüger, a.a.O., GVG § 179, Rn. 1.

과태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176조에 따른 법정경찰권에 기한 명령은 본 규정의 집행 대상이 아니다.[208] 예를 들어 재판장이 사법경위에게 법정의 출입문을 닫게 하거나 입장권을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제179조의 의미 내에서 집행의 개시(Einleitung einer Vollstreckung)가 아니라, 단순히 명령을 수행(Ausführung)하도록 요청(Aufforderung)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집행

가) 관할

원칙적으로 사법보좌관은 (가령 과태료의) 집행의 수행(Durchführung der Vollstreckung)을 위한 책임을 부담한다(사법보좌관법 제31조[209] 제3항 본문). 그러나 재판장은 개별사건

208) Rauscher/Krüger, a.a.O., GVG § 179, Rn. 2.

209) 사법보좌관법 제31조(형사절차 및 과태료 절차에서 검찰의 사무, 형사사건 및 과태료 부과사건에서 집행 사무, 그리고 질서제재수단 및 강제수단의 집행 사무)
① 형사절차에서 검찰의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한다:
1. 압수의 집행에 관한 사무(「형사소송법」 제111c조 제3항 제1문 및 제4항 제2문과 제3문),
2. 강제집행절차 및 가압류절차에서 해당 사무가 사법보좌관에게 위임된 경우에 있어서, 압수의 집행 및 재산가압류의 집행에 관한 사무, 긴급매각명령 및 그 집행에 있어서 기타의 명령(「형사소송법」 제111k조, 제111l조 및 제111p조),
3. 도산절차와 관련된 사무(「형사소송법」 제111i조),
4. 압수물 또는 압류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형사소송법」 제111m조) 및
5. 압수물의 반환에 관한 사무(「형사소송법」 제111c조 제1항, 제111n조).
과태료 절차에서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제1문이 준용된다.
② 형사사건 및 과태료 부과사건에서 집행기관이 해야 할 사무는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한다.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 제114조에 관한 재판은 제외한다. 제1문은 질서제재수단 및 강제수단이 검찰에 의하여 집행되는 경우에 준용된다.
(2a)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법보좌관은 제2항 제1문에 따라 자신에게 위임된 사건을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법보좌관이 자신에게 통지된 검사의 의견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2. 위임된 사무와 검사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 간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 또는
3. 질서제재수단 및 강제수단이 검사에 의해 부과되었고 검사가 그 제출을 자신에게 하도록 전부 또는 일부 유보한 경우.
(2b)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2항 제1문에 따라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또는
2. 공동피고인이 상고를 통해 불복한 판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경우.
(2c)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검사는 제출된 사건을 처리한다. 검사는 사건을 사법보좌관에게 환송할 수 있다. 사건을 환송할 때 사법보좌관에게 통지된 법적 견해 또는 부과된 지시는 사법보좌관을 구속한다.

에서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에게 유보할 수 있는데(사법보좌관법 제31조 제3항 단서), 이는 특히 재판질서의 방해로 인해 즉각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고려될 수 있다.[210]

나) 집행의 수행(Durchführung der Vollstreckung)

집행의 수행에는 다양한 규정이 적용된다.

(1) 퇴정(법원조직법 제177조 제1문)

퇴정은 사법경위 또는 경찰관을 통해 집행되는데, 이때 재판장도 스스로 이들을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211]

(2) 과태료(법원조직법 제178조 제1항 제1문)

과태료의 집행은 「청구 및 징수규칙(Einforderungs- und Beitreibungsanordnung, EBAO)」과 연결된 「사법징수법(Justizbeitreibungsgesetz, JBeitrG)」 제1조 제1항 제3호[212]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시 집행이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담이 되는 경우, 형법시행법 제7조[213]에 따른 납부완화(Zahlungserleichterungen)가 허용된다.

---

③ 법관이 개별사건에서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에게 유보하지 않는 한, 법원의 질서제재수단 및 강제수단의 집행은 사법보좌관에게 위임된다.
④ (삭제)
⑤ 소년형사절차에서 집행의 지휘는 법관에게 유보한다. 법관의 집행명령 또는 집행의 지휘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 행정규정을 실행하는 집행사무는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한다. 소년판사(Jugendrichter)에 의한 집행의 지휘가 방해받지 않는 경우 또는 법률상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교육적인 이유에서 또는 통일적인 법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사무를 집행지휘관에게 유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방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소년형사절차의 집행영역에서 법관의 사무가 아닌 것을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할 권한이 있다. 법관은 위임된 집행사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⑥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 절차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법적 구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구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였던 법관 또는 검사가 이의에 관하여 결정한다. 「법원조직법」 제145조, 제146조에 따른 기관장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행정강제절차에서 재산형의 집행을 규정하는 연방법 및 주법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10) Rauscher/Krüger, a.a.O., GVG § 179, Rn. 3.
211) Rauscher/Krüger, a.a.O., GVG § 179, Rn. 4.
212) 사법징수법 제1조
① 이 법에 따라, 다음의 청구권이 연방 사법기관에 의해 징수된다:
3.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Zwangsgeld);

(3) 감치(법원조직법 제177조 제1문 및 제178조 제1항)

감치의 집행은 「자유형 및 자유를 박탈하는 개선과 보안 조치의 집행에 관한 법률(형집행법)[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Strafvollzugsgesetz), StVollzG]」 제171조[214]에 따라 이루어진다.[215]

당해 법정모독 행위가 더 이상 향후의 재판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감치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지만 당사자는 최소한 즉시 법정에서 퇴장되어야 한다.

한편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어 대체집행으로 부과된 감치가 당사자에게 부당한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형법시행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4) 불복수단

사법보좌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Erinnerung, 사법보좌관법 제11조[216])

---

213) 형법시행법 제7조(과태료의 납부완화)
①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즉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부여하거나, 일정 금액으로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분할 납부 중 일부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분할 납부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명시할 수 있다.
② 과태료가 확정된 이후에는 그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납부완화를 결정한다. 이 기관은 기존의 납부완화 결정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제1항 제2문에 따라 분할 납부 이익이 상실된 경우, 이는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에게 다시 납부완화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집행을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를 확정한 기관이 결정한다.

214) 형집행법 제171조(총칙)
법원이 명령한 감치, 보안구금, 강제구금에 대하여는 구금의 본질과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아래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5항과 제6항 및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Vorschriften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제3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121b조)이 준용된다.

215) Rauscher/Krüger, a.a.O., GVG § 179, Rn. 6.

216) 사법보좌관법 제11조(법적 구제)
①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절차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상소가 인정된다.
②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일반적인 절차법 규정에 따라 상소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하며, 이는 2주의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한 자가 자신의 과실 없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자가 장애가 제거된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면서 원상회복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신청으로 그 자에게 원상회복을 보장한다. 법적 구제에 관한 고지가

이 허용되지 않는다(사법보좌관법 제32조,[217] 제31조). 하지만 그 집행 조치에 대해 이의(Einwendung)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사법보좌관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218]

마. 법정 밖에서의 권한(Befugnisse außerhalb der Sitzung)

> 법원조직법 제180조
> 개별 판사가 법정 밖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176조부터 제179조까지에 명시된 권한을 가진다.

본 규정은 판결법원(erkennendes Gericht)이 아닌 법정 밖에서 사법적 직무행위(richterliche Amtshandlungen)를 수행하는 개별 판사에게도 법정경찰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 판사는 수명법관과 수탁판사, 그리고 집행판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법원의 예심판사와 지방법원의 단독판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본안사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판결법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법원조직법 제176조 이하가 직접 적용된다.[219]

법정 밖에서 판사의 모든 행위가 법원조직법 제180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히 사법적 성격을 가진 직무행위, 즉 판사가 절차적 규정에 따라 법률에 의해 부여받

불이행되었거나 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과실이 없다고 추정한다. 원상회복은 해태된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를 신청할 수 없다. 사법보좌관은 이의가 신청된 사안을 경정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이 이의가 신청된 사안을 경정하지 않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은 재판을 위하여 이를 법관에게 제출한다. 그밖에 이의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③ 「토지등기법(Grundbuchordnung, GBO)」, 「선박등록법(Schiffsregisterordnung, SchRegO)」,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되었고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법원의 처분, 결정 또는 증명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하여 불복할 수 없다.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694조, 제700조의 사안 및 의결권의 승인에 관한 재판(「파산법(Insolvenzordnung)」 제77조)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절차에 대해서는 법원비용이 면제된다.

217) 사법보좌관법 제32조(적용 배제 규정)
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해 사법보좌관에게 위임된 사무에 관해서는 제5조 내지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18) OLG Celle NStZ-RR 2016, 294.

219) Rauscher/Krüger, a.a.O., GVG § 180, Rn. 1.

은 사법작용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220] 여기에 법정 밖에서 1인 또는 수인의 절차관계인과 진행하는 논의(Besprechung)는 포함되지 않는다.[221] 법원조직법 제180조에 따른 직무행위가 성립할 경우, 법정경찰권은 오직 그 직무의 수행기간 동안에만 인정된다.

개별 판사의 질서유지 조치에 대하여는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는 항고를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181조 제2항).

바. 질서제재수단에 대한 항고(Beschwerde gegen Ordnungsmittel)

> **법원조직법 제181조**
>
> ① 제178조 및 제180조의 경우 질서제재수단(Ordnungsmittel)을 확정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을 고지한 후 1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 연방일반법원 또는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이 내린 질서제재수단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항고는 제178조의 경우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고, 제180조의 경우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
> ③ 항고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이 결정한다.

1) 규범의 목적

질서제재수단인 과태료 및 감치는 각각 당사자의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수반한다. 따라서 법원조직법 제181조는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항고를 규정하고 있다.

질서제재수단은 종종 사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판사에 의해 내려지므로, 이에 관여하지 않은 기관에 의한 검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규정에 의한 항고제도가 정당화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제181조는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질서유지

220) Rauscher/Krüger, a.a.O., GVG § 180, Rn. 2.
221) Rauscher/Krüger, a.a.O., GVG § 180, Rn. 2.

조치(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치)에만 항고를 허용한다. 또한 개별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180조에 의해 법정 밖에서 내리는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질서유지 조치(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치)에도 확장된다.[222] 왜냐하면 법정 내부와 외부에서의 각 질서유지 조치는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등법원 및 연방일반법원이 한 질서제재수단에 대하여는 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법원조직법 제181조 제1항 단서). 다른 전문법원 관할권 영역에서도 2심 및 최종심 결정에 대하여는 마찬가지고,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린 질서벌 결정(Ordnungsstrafbeschluss)에 대해서도 항고는 인정되지 않는다.[223] 이 경우 결정을 내린 법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구제가 이루어진다. 나아가 이 경우에는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헌법소원이 허용된다.[224]

3) 허용요건

가) 항고적격(Beschwerdeberechtigt)

질서제재수단 결정의 당사자, 즉 그 질서제재수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만이 항고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자, 예컨대 당사자의 배우자는 항고적격이 없고, 보다 더 강한 질서제재수단의 부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도 항고적격이 없다.[225]

행위능력(Geschäftsfähigkeit) 또는 소송능력(Prozessfähigkeit, 민사소송법 제51조[226])은 항고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연령(Strafmündigkeit)에 이른 청소년은 법정

222) Rauscher/Krüger, a.a.O., GVG § 181, Rn. 2.
223) Rauscher/Krüger, a.a.O., GVG § 181, Rn. 4.
224) Rauscher/Krüger, a.a.O., GVG § 181, Rn. 4.
225) Rauscher/Krüger, a.a.O., GVG § 181, Rn. 5.
226) 민사소송법 제51조(소송능력, 법정대리, 소송수행)
① 법원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다른 사람(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및 소송수행을 위한 특별한 수권의 필요성은 다음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법전」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과실은 당사자의 과실과 동일하다.
③ 성년의 자연인으로서 소송능력이 없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다른 자연인에게 그의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그 사람은 법정대리인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단, 그 대리권의 수여가 「민법전」 제1814조 제3항 제2문 제1호에 따라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리인 없이도, 자신에게 불이익한 질서제재수단에 대하여 스스로 항고할 수 있다.[227]

한편 형사책임연령 미만자에게는 처벌적 성격을 가진 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질서제재수단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고적격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

나) 항고의 제기(Einlegung der Beschwerde)

항고는 질서제재수단 결정을 내린 법원(iudex a quo) 또는 항고법원(iudex ad quem)에 선택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항고는 본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술로 표명하여 사무국의 조서(Protokoll der Geschäftsstelle)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다. 가령 법정모독 행위로 부과된 과태료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단순한 의견 제출이나 항의(Gegenvorstellung)가 아니라 정식 항고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제척기간 준수 의무가 수반된다.[228]

다) 항고기간(Beschwerdefrist)

항고기간은 1주일이다.

기간의 시작 시점은 당사자에게 질서제재수단 결정이 고지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한 상태에서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시점이다. 당사자가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결정의 송달시점이 기준이 되고, 이는 당사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유로 인하여 결정에 대한 인지 또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29]

기간의 종료는 민사소송법 제222조[230] 제1항, 제2항 및 민법전 제187조[231] 제1항, 제

227) OLG Neustadt NJW 1961, 885.
228) OLG Düsseldorf MDR 1977, 413.
229) OLG Nürnberg BayJMBl. 1963, 344.
230) 민사소송법 제222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는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기간은 그다음의 평일이 지남으로써 종료한다.
③ 시간으로 정해진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일요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31) 민법전 제187조(기간의 시작)
① 기간의 시작이 어떠한 사건이나 하루 중에 발생한 특정 시점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시점이 속한 당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만일 하루의 시작 시점이 기간의 시작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산입한다. 이는 연령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생일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188조[232] 제2항에 따라 계산된다. 이에 따르면, 고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그다음 주의 동일한 요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질서제재수단이 즉시 집행된 이후에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항고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유효하다.[233]

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현재는 거의 일치된 견해에 따라 '원상회복(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청구—우리나라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응된다—가 가능하다.[234] 단,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의 과실이 아니어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과실은 개인 형벌적 성격을 지닌 결정의 특성상 당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235] 민사소송법 제232조 또는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 제39조에 따라 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데, 항고기간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경우, 원상회복 사유가 성립될 수 있다.[236] 고지가 있었으나 부정확했던 경우도 마찬가지다.[237]

4) 항고의 효력

본안사건의 법원이 내린 질서제재수단 결정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반면에, 개별 판사, 특히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정 밖에서 질서제재수단을 부과한 경우 이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는다(법원조직법 제181조 제2항).

5) 항고에 대한 결정

가) 관할 법원

일반법원 관할의 사건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181조 제3항에 따라 고등법원이 항고사

232) 민법전 제188조(기간의 종료)
① 일 단위로 정해진 기간은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 경과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② 주, 월 또는 여러 개월 단위—1년, 반년, 분기—로 정해진 기간은, 제187조 제1항의 경우에는 마지막 주나 마지막 달의, 사건이 발생한 날과 같은 이름이나 숫자를 가진 날이 경과하는 시점에 종료되고, 제187조 제2항의 경우에는 마지막 주나 마지막 달의, 시작일과 같은 이름이나 숫자를 가진 날의 전날이 경과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③ 월 단위로 정해진 기간에서 마지막 달에 그에 해당하는 날짜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은 그달의 마지막 날이 경과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233) OLG Koblenz VRS 68 (1985), 48.
234) BVerfG NJW 1991, 2277.
235) OLG Frankfurt NJW 1967, 1281.
236) BVerfG NJW 1991, 2277.
237) OLG Nürnberg MDR 1961, 62.

건을 관할하는데, 이는 질서제재수단이 구법원,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법정 밖에서 개별 판사(법원조직법 제180조)에 의해 부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38]

다른 전문법원 관할에서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법원 관할의 항소심 법원이 항고사건을 관할한다.

토지관할은 해당 결정을 내린 법원이 속한 지역의 상급법원(übergeordnete Gericht)에 있다. 또한, 수탁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판결법원(erkennendes Gericht)[239]의 상급법원이 아니라 수탁판사의 상급법원이 관할한다.[240]

나) 재도의 고안

결정을 내린 법원은, 항고가 제기된 이후에도 민사소송법 제572조 제1항[241] 또는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 제68조 제1항[242]에 따라 스스로 기존 결정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243] 이는 사후적으로 드러난 사정으로 인해 해당 질서제재수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절하다.

다) 구두 심리의 생략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구두 심리 없이 원심의 재판조서를 기반으로 결정하지만,[244]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자료를 인용하는 것도 허용된다.[245]

당사자는 항고절차에서 자신의 요청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법적 청문권을 갖는다(기본법 제103조 제1항).

---

238) Rauscher/Krüger, a.a.O., GVG § 181, Rn. 10.
239) 여기서는 수탁판사에게 사무를 위탁한 수소법원을 가리킨다.
240) OLG Schleswig SchlHA 1962, 84.
241) 민사소송법 제572조(항고절차)
① 불복된 결정을 한 법원 또는 재판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고를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8조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42)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법」 제68조(항고절차의 진행)
① 불복된 결정을 한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고를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가사사건의 종국결정에 대한 항고인 경우, 법원은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43) Rauscher/Krüger, a.a.O., GVG § 181, Rn. 11.
244) KG MDR 1982, 329 (330).
245) OLG Hamm JMBlNRW 1955, 139.

항고법원은 독자적으로 재량판단을 하고,[246] 질서제재수단의 정도를 경감할 수도 있다.[247]

라) 최종적 성격(Endgültigkeit)

항고법원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추가적인 항고나 법률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248] 항고법원이 질서제재수단 결정을 취소할 경우, 이 결정 또한 최종적이다. 새로운 결정을 위하여 원심법원으로의 환송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원심법원이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정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249]

한편 항고인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reformatio in peius)'에 의해 보호된다.[250]

사. 재판 중의 범죄(Straftaten in der Sitzung)

> **법원조직법 제183조**
> 법정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Tatbestand)을 확정하고 그에 관하여 기록한 조서(Protokoll)를 관할기관에 송부한다. 법원은 적절한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임시체포(vorläufige Festnahme)를 명령하여야 한다.

1) 규범의 목적

법원조직법 제183조는 검사의 수사절차(Ermittlungsverfahren)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 일정한 수사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일정 범위에서 범죄수사당국(Strafermittlungsbehörde)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251]

통상적으로 법원은 자신이 인지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본 규정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이는 재판 중의 범죄행위가 법원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246) OLG Köln NJW 1986, 2515 (2516).
247) OLG Karlsruhe NJW-RR 1998, 144.
248) RGZ 2, 385.
249) OLG Köln MDR 1993, 906.
250) OLG Hamm NJW 1960, 2305 (2306).
251) Rauscher/Krüger, a.a.O., GVG § 183, Rn. 1.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본 규정은 협의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본 규정으로부터 법원의 일반적인 범죄신고의무가 도출될 수는 없다.[252] 그럼에도 법원은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신고할 일반적인 권리를 가진다.

2) 적용범위

가) 형법전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의미 내에서의 범죄

> 형법전 제11조(인적 개념 및 물적 개념)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위법행위(rechtswidrige Tat)"란 형법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의 범죄사실 확정 및 통보 의무는 형법전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의미 내에서의 범죄 즉, 재판 중에 고의로 저질러진 '위법행위(rechtswidrige Tat)'에 적용된다. 법원조직법 제183조는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상정할 수 있는 범죄의 예로는 상해죄(Körperverletzung), 모욕죄(Beleidigung), 재물손괴죄(Sachbeschädigung), 주거침입죄(Hausfriedensbruch), 위증죄(Aussagedelikte)를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순한 질서위반(Ordnungswidrigkeiten)은 법원조직법 제18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253]

형식적으로는 사인소추범죄(Privatklagedelikte)[254] 역시 법원의 범죄사실 확정 및 통보 의무에 포함된다.[255] 그러나 해당 행위가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 확정 및 통보를 생략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183조는 법원이 범죄의 가해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판사가 소송당사자나 변호사를 모욕한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18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256]

---

252) BayObLG NJW 1968, 56.
253) Rauscher/Krüger, a.a.O., GVG § 183, Rn. 2.
254) 국가기관의 소추 없이 피해자가 직접 소추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의미한다.
255) Rauscher/Krüger, a.a.O., GVG § 183, Rn. 2.
256) LG Regensburg NJW 2008, 1094; 재판장이 이마를 두 번 톡톡 두드렸는데, 이는 "너 제정신 아니구나(Du hast wohl einen Vogel)."를 뜻하는 사안.

나) '재판' 중의 범죄

범죄는 반드시 재판 중에 저질러진 것이어야 한다.

범죄가 재판의 시간적 · 공간적 범위 밖에서 발생하였지만 단지 법원이 재판 중에 인지한 것에 불과하면, 이는 범죄사실 확정 및 통보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가진다.

재판의 시간적 · 공간적 범위는 법원조직법 제176조가 적용되는 시간적 · 공간적 범위와 동일하다. 여기에는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 앞에서의 심리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183조의 문언상 같은 법 제180조의 경우—개별 판사가 법정 밖에서 사법적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원은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257]

재판부 구성원 전원 또는 일부가 범죄를 직접 인지하지 않아도 무방한데, 왜냐하면 법원조직법 제183조는 단지 재판 중에 저질러진 범죄의 객관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제공된 모든 단서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258]

3) 범죄사실의 확정

범죄사실의 확정은 실질적인 핵심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에만 국한된다. 이러한 범죄사실은 직권으로 재판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259]

원칙적으로는 범죄 인지가 있는 직후 즉시 범죄사실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범죄사실의 확정을 재판 종료 후 등 절차상 법원에 더 유리한 시점으로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판 중에 저질러진 범죄가 나중에야 비로소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범죄사실의 확정 의무가 존재한다.

범죄사실의 확정 절차에서 절차관계인의 의견 청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권장된다.

범죄사실의 확정 결과는 수사기관 즉, 통상적으로는 검찰(법원조직법 제142조,[260] 형

257) Rauscher/Krüger, a.a.O., GVG § 183, Rn. 3.
258) Rauscher/Krüger, a.a.O., GVG § 183, Rn. 4.
259) Rauscher/Krüger, a.a.O., GVG § 183, Rn. 6.
260) 법원조직법 제142조
① 검찰의 직무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한다:

사소송법 제152조[261]), 긴급한 경우에는 구법원(형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262] 제165조[263])에 통보되어야 한다.[264] 이때 (공판조서 또는 변론조서의) 조서등본을 송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265]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모든 신고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4) 임시체포(Vorläufige Festnahme)

법원조직법 제183조 제2문은 (사법경위가 집행하는) 재판 중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임시체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재량적 판단권한 또한 부여한다.

임시체포는 재판 중의 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127조[266] 제1항), 지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임시체포

---

1. 연방일반법원에서는 연방검찰총장과 1명 이상의 연방검사;
2.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는 1명 이상의 검사;
3. 구법원에서는 1명 이상의 검사 또는 구검사.

② 구검사는 다른 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에서 구법원 판사의 공판준비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사법연수생은 구검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개별사건에서 검사의 감독 하에 검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261) 형사소송법 제152조(기소당국; 법정주의)
① 공소의 제기는 검찰의 직무이다.
②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검찰은 소추할 수 있는 모든 범행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있는 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62) 형사소송법 제163조(수사절차에서의 경찰의 임무)
② 경찰당국과 경찰공무원은 수사내용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부한다. 신속한 판사의 심리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송부를 구법원으로 직접 할 수 있다.

263) 형사소송법 제165조(지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법관의 심리행위)
지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때, 판사는 검찰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없이도 필요한 심리행위를 할 수 있다.

264) Rauscher/Krüger, a.a.O., GVG § 183, Rn. 7.

265) 형사소송법 제160조(사실관계의 규명 의무)
① 검찰은 신고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범행의 혐의를 알게 된 즉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266) 형사소송법 제127조(임시체포)
① 어떤 사람이 현행범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현행범행으로 추적당하면, 그가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그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누구든지 판사의 명령 없이도 그를 임시체포를 할 수 있다. 검찰 또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신원 확인은 제163b조 제1항을 따른다.
② 검찰 또는 경찰공무원은 구속명령 또는 수용명령의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지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체포를 할 수 있다.
③ 고소가 있어야만 범죄를 소추할 수 있으면, 임시체포는 아직 고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

의 사유(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 또한 법원에 적용될 수 있다.

재판 중의 범죄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정모독 행위(법원조직법 제178조)로도 평가되므로, 이미 감치 사유가 성립될 수 있다. 동시에 법원조직법 제177조에 따른 퇴정 조치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 중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를 인지한 재판부가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25조[267]에 따라 '구속명령 발령 관할 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신청은 임시체포에 대한 신청으로 간주할 수는 있으나,[268]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269]

3. 법원장의 주거권(Hausrecht)

가. 주거권(Hausrecht)

1) 주거권에 대한 판례법의 발전

주거권이라는 개념은 이미 과거 독일제국 시절 제국법원(Reichsgericht)의 판결[270]에서도 등장하며, 오늘날에도 모든 법원 관할권 분야에서 꾸준히 판례법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반법원은 형법전 제123조(주거침입죄),[271] 특수한 질서위반죄 구성요건[272] 또는 임대차법 및 손해배상법[273]의 틀 내에서 주거권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재정법원 역시 때때로 주거권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한다.[274] 나아가 행정법원[275]과 사회법원[276]은

된다. 허가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범죄를 소추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④ 검찰 또는 경찰공무원의 임시체포에는 제114a조 내지 제114c조를 준용한다.

267) 형사소송법 제125조[구속명령 발령(Erlass des Haftbefehls)의 관할]
① 공소제기 전에는 재판적이 있는 지역 또는 피의자가 체류하는 지역의 구법원 판사가 검찰의 신청에 따라 또는 검사에게 연락할 수 없고 지체하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구속명령을 발령한다.
② 공소제기 후에는 본안법원이,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불복 대상 판결을 한 법원이 구속명령을 발령한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도 구속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268) RG JW 1927, 2009.

269) Rauscher/Krüger, a.a.O., GVG § 183, Rn. 8.

270) RG, Urt. v. 19. 5. 1893 - 3417/92; 여관 겸 식당(Gaststätte)에서 집회 관리자(Leiter einer Versammlung)에 의한 주거권 행사 권한에 대한 사안.

271) 가령 OLG Hamburg, Beschl. v. 2. 3. 2006 - III-3/06, NJW 2006, 2131.

272) 가령 KG, Beschl. v. 1. 2. 2016 - 3 Ws (B) 29/16-162 Ss 137/15, BeckRS 2016, 03877.

273) 가령 OLG Hamm, Urt. v. 22. 1. 2016 - 11 U 67/15, NJW 2016, 1454.

274) 가령 BFH, Beschl. v. 22. 12. 2006 - VII B 121/06, DStRE 2007, 510; 세무조사관이 임차인의

공공건물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주거권의 요건 및 범위와 관련된 분쟁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주거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매우 간략하거나 아예 생략되고, 주거권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다는 점이다.[277] 이러한 경향은 주거권의 법적 근거,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가 대체로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278]

2) 주거권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

법률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견해는 주거권의 법적 근거가 해당 장소의 소유자가 가지는 민법상 청구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주거권이라는 독립된 법적 제도가 존재하는지, 혹은 이는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권리를 단지 개념적으로 묶은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주거권이라는 독자적인 개념이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독일의 민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279]

이와 마찬가지로, 주거권을 민법상 어느 청구권(점유권 기반인지 또는 소유권 기반인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누가 구체적으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직접점유자/간접점유자, 적법점유자/불법점유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여전히 다툼이 존재한다.[280]

공공건물이나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한 주거권의 경우,[281] 적합한 민법상 법적 근거의 도출 외에도 이 권리가 공공재산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행정법원의 판례는 공공재산을 대상으로 한 주거권도 지금까지 인정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재산을 대상으로 한 주거권을 근거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주거지를 방문 · 점검하려 할 때, 임대인이 주거권자로서 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

275) 가령 OVG Berlin-Brandenburg, Beschl. v. 20. 12. 2010 - 10 S 51/10, NJW 2011, 1093; 법원장의 주거권에 대한 사안.

276) BSG, Beschl. v. 21. 7. 2014 - B 14 SF 1/14 R, NZS 2014, 918.

277) 가령 VGH Mannheim, Beschl. v. 17. 5. 2017 - 1 S 893/17, BeckRS 2017, 111938.

278) Peters/Lux, Öffentliche Gebäude und Hausrecht: Inhalt und Rechtsgrundlagen, LKV(2018, Heft 01), S 17.

279) Peters/Lux, a.a.O., S. 17.

280) Peters/Lux, a.a.O., S. 17.

281) 가령 BVerfG, Urt. v. 22. 2. 2011 - 1 BvR 699/06, NJW 2011, 1201.

학설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Bestimmtheitsgebot) 및 법률유보 원칙(allgemeiner Gesetzesvorbehalt)의 요구와 긴장관계에 있다고 지적한다.[282]

위와 같은 주거권에 있어서 민법 및 공법상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최근 몇몇 연방주에서의 주거권에 대한 입법화를 촉진하기도 하였다.

나. 공공건물에 대한 주거권

1) 기초론

여기서 공공건물이란,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건물 또는 행정청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반면에 단순히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이 금융자산으로서 소유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 물건은 공공건물로 보지 않는다.[283] 따라서 이러한 국유재산은 본질적으로 사적 소유물과 동일하므로, 민법상 소유권 및 사용권 규정에 근거한 '사적 주거권(Private Hausrecht)'이 적용된다. 즉, 공공 목적에 직접 봉사하지 않는 공공자산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특별한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는다.[284]

공공기관의 공공건물에 대한 주거권은, 해당 기관의 장이 부여받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행정업무를 질서 있게 원활히 운영할 책임으로부터 도출된다.[285] 이러한 '공적 주거권(öffentliche Hausrecht)'은 공공기관과 그 기관장의 사무처리권한(Sachkompetenz)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속권한(Annexbefugnisse)'이다.[286] 여기에는 지정된 사용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건물 내의 질서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적인 조치를 취할 기관장의 권한이 포함된다.[287]

2) 공적 주거권에 대한 일부 특별법상 규정

공적 주거권에 대하여는 일부 특별법상 규정이 존재한다. 이 규정들의 입법형태는 매

282) Peters/Lux, a.a.O., S. 17.
283) Peters/Lux, a.a.O., S. 18.
284) VG Berlin, Beschl. v. 22. 5. 2015 - VG 1 L 107/15.
285) OVG Berlin-Brandenburg, Urt. v. 26. 10. 2010 - OVG 10 B 2.10, juris Rn. 56 f.
286) OVG Münster, Urt. v. 5. 5. 2017 - 15 A 3048/15, juris.
287) VG Berlin, Urt. v. 26. 9. 2011 - VG 1 K 680.09, juris.

우 다양하다.

먼저 예를 들어, 의회 의장에게 주거권을 부여하는 여러 헌법 규정들[기본법 제40조 제2항 제1문, 베를린주 헌법(Verfassung von Berlin, BLNVerf) 제41조 제4항[288] 제1문 등]과 같이 단순히 주거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특정 인물에게 부여만 할 뿐 그로부터 파생되는 구체적인 권한을 자세히 규정하지 않는 입법이 있다.

반면에 가령 구「베를린주의 대학에 관한 법률(베를린주 대학법)[Gesetz über die Hochschulen im Land Berlin(Berliner Hochschulgesetz), BerlHG]」제56조 제2항[289]과 같은 일부 연방주의 대학법(Hochschulgesetz)에서는 대학 총장이 주거권자일 뿐 아니라 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권한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조항 형태의 권한 규정을 근거로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컨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니더작센주 사법법(Niedersächsisches Justizgesetz, NJG)」제16조 또는「베를린주의 사법에 관한 법률(베를린주 사법법)[Gesetz über die Justiz im Land Berlin(Justizgesetz Berlin), JustG Bln]」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이 주거권에 대하여 일반조항 형태의 권한 조항 외에도 특정한 표준적 조치를 위한 구체적 권한까지 규정한 입법도 존재한다. 이처럼 입법자가 주거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권의 법적 근거에 있어서 관습법이나 부속권한(Annexbefugnisse)에 의존할 여지가 없다.

3) 건물출입금지 조치(Hausverbot)

가) 요건

건물출입금지 조치는 행정행위(Verwaltungsakt)의 형태로 발령될 수 있다. 그 법적 근거는 앞서 언급한 해당 기관장의 주거권에서 비롯된다. 건물출입금지 조치는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데, ① 과거에 공공질서나 기관의 평온을 해친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해야 하고, ② 향후에도 유사한 방해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③ 이를 방지하

288)「베를린주 헌법」제41조
④ 의장은 의회건물 내에서 주거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회건물에서는 의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색이나 압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89) 구「베를린주 대학법」제56조(대학의 운영의 임무)
② 대학 총장은 대학에서 주거권자이다. 대학 총장은 대학의 질서 있는 운영을 책임지고, 질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한다.

기 위해 건물출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나) 재량판단 시 고려사항

이때 재량권 행사가 요구되는데, 해당 기관의 임무 수행에 중대한 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건물출입금지 조치가 정당화된다. 따라서 해당 기관은 시민들의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이유로 건물출입금지 조치를 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임무 수행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공무원이 모욕을 당하거나 시민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그러한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출입금지 조치는 합법적이다.[290]

건물출입금지 조치의 사유로서 반드시 형법상 범죄행위(예컨대 협박, 모욕, 폭행 등)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주거규칙(Hausordnung) 위반 또는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로서 향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충분하다. 이는 특히 방문자가 많은 행정기관의 경우 중요하다.[291]

반면에 건물출입금지 조치의 결과로서 출입을 금지당한 사람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재량판단 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은 건물출입금지 조치가 있더라도 자신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 경비보안요원(Mitarbeiter des Wachschutzes) 등의 직원 동행 하에 행정기관 건물에 출입하여 필요한 상담이나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때 방문자가 경비보안요원과 동행해야만 건물에 출입하고 내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은 정당하다.[292]

4) 주거권에 기한 기타 조치

주거권에 근거하여 해당 공공건물의 지정 목적 달성 및 임무 수행에 대한 방해 예방을 위한 기타 질서유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293] 이에 따라 공공건물 내부 출입과 체류에 관한 규정도 정할 수 있다.[294]

290) OVG Koblenz, Beschl. v. 7. 3. 2005 – 7 B 10104/05.
291) VG Berlin, Beschl. v. 22. 12. 2015 – VG 1 L 323.15.
292) VG Berlin, Urt. v. 26. 1. 2017 – VG 1 K 272/16.
293) OVG Lüneburg, Urt. v. 29. 9. 2014 – 11 LC 114/13, NJW 2015, 502 (505); 주거권에 기한 건물의 영상감시(Videoüberwachung) 자료 보호에 관한 조치 사안, VG Gelsenkirchen, Beschl. v. 4. 10. 2011 – 12 L 925/11, BeckRS 2011, 55409; 법원청사의 영상감시에 관한 조치 사안.

이러한 기타 질서유지 조치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이 포함된다.[295] 출입통제 관련 조치의 구체적인 형태는 주거권자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보안통제시스템이 공공건물 내 직원 및 방문자를 위협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임무 수행에 대한 방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는 위험한 물건이나 무기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건물출입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여전히 보장하므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직원이라고 해서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 또는 단순한 신분확인만으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296]

5) 형식적 요건

가) 청문절차의 필요성

행정행위(Verwaltungsakt)로서 건물출입금지 조치를 발령하기 전에, 원칙적으로「행정절차법(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제28조[297] 제1항에 따른 사전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개별 사안에서 긴급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청문 절차가 생략된 경우에도, 당사자의 법적 청문권은 행정절차법 제45조[298] 제1항

294) OVG Berlin-Brandenburg, Beschl. v. 6. 10. 2010 - OVG 10 B 2/10, juris.
295) BVerwG, Beschl. v. 17. 5. 2011 - 7 B 17.11, NJW 2011, 2530.
296) OVG Münster, Beschl. v. 2. 10. 2001 - 1 B 1254/01, NVwZ 2002, 103.
297) 행정절차법 제28조[절차관계인의 청문(Anhörung Beteiligter)]
① 절차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가 발령되기 전에 그에게 결정을 위하여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특히 다음 각호와 같이 개별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않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체하면 위태롭거나 공익을 위해서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청문으로 인하여 결정에 기준이 되는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의문이 될 수도 있는 경우;
3. 신청서나 의사표명에서 이루어진 절차관계인의 실제적인 진술이 달라지게 되어 그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4. 관청이 일반처분이나 많은 수의 동일한 종류의 행정행위 또는 행정행위를 자동 시설의 도움으로 발령하려고 하는 경우;
5. 행정집행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경우.
③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98) 행정절차법 제45조(절차 및 형식상 하자의 치유)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행위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절차규정 및 형식규정의 위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한다.
1. 행정행위의 발령에 필요한 신청이 사후에 제출된 경우;

제3호,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사후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

나) 즉시집행(sofortige Vollziehung)의 명령

건물출입금지 조치나 기타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행정법원법 제80조[299] 제2항 제1문 제4호에 따른 즉시집행 명령이 함께 내려진다. 건물출입금

2. 필요한 근거가 사후에 제시된 경우;
3. 필수적인 절차관계인의 의견청취가 사후에 보완된 경우;
4. 행정행위의 발령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위원회의 의결이 사후에 이루어진 경우;
5. 필요한 다른 관청의 협력이 사후에 이루어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는 행정법원 절차의 최종 사실심급의 종결시까지 만회될 수 있다.

③ 행정행위에 필요한 근거가 빠져 있거나 행정행위 발령 전에 필요한 절차관계인의 청문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행정행위에 대한 적시의 이의제기가 지체되었다면, 법적 구제절차 기한의 지연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2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기준이 되는 사실은 중단된 절차행위가 만회된 시점에 발생한다.

299) 행정법원법 제80조

① 이의제기와 취소소송은 정지적 효력을 갖는다. 이는 법 형성적 · 확정적 행정행위 및 이중효력을 지닌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제80a조).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지적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공공요금 및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2. 연기할 수 없는 명령과 경찰 집행관의 조치,
3. 특히 투자 또는 일자리 폐지와 관련된 행정행위를 상대로 한 제3자의 행정심판과 소에 대해 다른 연방법 또는 주(州)의 권리에 있어서는 주법을 통해 규정된 경우,

3a. 연방 교통인프라 사업 및 이동통신망 구축과 관련되고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이의제기 및 소송,

4. 공공의 이익 또는 한 당사자의 대부분의 이익을 위해 그 행정행위를 하거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하여야 하는 행정청에 의해 즉시집행 명령이 내려진 경우.

각 주는 연방법에 따라 불복신청이 연방법에 따른 주의 행정집행조치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정지적 효력을 갖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1문 제4호의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즉시집행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서면으로 이유제시를 할 수 있다. 행정청이 지체 시 위험이 있는 경우, 특히 생명, 건강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임박한 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이 지정된 긴급조치를 취할 때는 특별한 이유 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행위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결정한 행정청은 제2항의 경우에 연방법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공공요금 및 비용 요청의 경우 그 행정청은 안전에 반하더라도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불복 대상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진지한 의혹이 있을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 또는 비용의무자에게 공공요금 및 비용에 대한 집행을 통해 부당한 어려움이나 과도한 공공이익을 통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그 공공요금 및 비용의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⑤ 본안법원은 신청에 따라 제2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3a호의 경우에는 정지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부여할 수 있고, 제2항 제1문 제4호의 경우에는 정지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회복시킬 수 있다. 이 신청은 취소소송 제기 이전에도 허용된다. 행정행위가 결정 시점에 이미 집행된 경우, 법원은 집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정지효과의 회복은 담보 제공이나 기타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할 수 있다. 또한 정지효과는 기간을 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지 조치는 발령과 동시에 실제로 집행 가능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즉시집행 명령은 행정법원법 제80조 제3항 제1문에 따라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이유 제시'가 필요하다. 서면 이유 제시는 당해 기관이 즉시집행을 명령하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한 집행이익과 함께, 당해 기관의 재량판단을 근거로 즉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300] 단순히 법조문을 반복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사유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301]

다. 법원청사에서의 주거권

1) 특수성 – 권리 행사에 대한 장애 발생 염려

법원청사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 건물에 비해 주거권에 기한 조치들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권리 행사에 더욱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건물출입금지 조치의 형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건물출입금지 조치는, 가령 법원청사에서의 구두변론 재판 출석이나 기록 열람 등의 기회를 차단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기본법 제19조 제4항에 의해 보장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의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주거권에 기한 조치의 요건을 특별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주거권에 기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절차법상 재판 출석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주거권을 근거로 법원청사 출입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302]

---

⑥ 제2항 제1문 제1호의 경우 제5항에 따른 청구는 행정청이 집행정지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행정청이 그 청구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적절한 기한 내에 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2. 집행이 임박한 경우.

⑦ 본안법원은 제5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변경된 상황 또는 원래의 소송절차에서 귀책사유 없이 주장되지 못한 상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⑧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다.

300) Peters/Lux, a.a.O., S. 19.
301) OVG Münster, Beschl. v. 11. 2. 2014 – 15 B 69/14, juris.
302) Peters/Lux, a.a.O., S. 20.

2) 공개재판의 원칙 유지 필요성

한편, 법원청사의 경우 그 주거권에 기한 조치들이 조치 대상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제3자, 특히 소송당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재판의 원칙(법원조직법 제169조 제1문)이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법원청사의 출입 절차가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전체 일반 대중 또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경우, 이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303] 물론 이러한 공개의 제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권에 기한 조치가 그 대상자에게 항상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304] 그러나 공개재판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판결의 절대적 상고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장은 해당 조치를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305]

3) 재판장의 법정경찰권과의 구별 문제

가) 원칙적 구별

이러한 특수성 외에 법원청사 내에서 주거권에 기한 조치와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법정경찰권 사이의 구별 문제도 제기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은 연방법인 법원조직법 제176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행정법원법 제55조,[306] 사회법원법 제61조 제1항,[307] 노동법원법 제9조 제2항[308] 제1문, 재정법원법 제52조 제1항[309]을 통해 각급 전문법원에도 적

303) BVerfG, Beschl. v. 14. 3. 2012 – 2 BvR 2405/11, NJW 2012, 1863 (1864 f.).
304) Peters/Lux, a.a.O., S. 20.
305) VG Wiesbaden, Beschl. v. 20. 1. 2010 – 6 K 1063/09, NJW 2010, 1220; 법원청사에 대한 상시적인 영상감시가 감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재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법원 방문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공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고 본 사안.
306) 행정법원법 제55조
공개, 법정경찰, 법정언어, 합의 및 평결에 대한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171a조 내지 제198조를 준용한다.
307) 사회법원법 제61조
① 공개, 법정경찰, 법정언어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171b조 내지 제191a조를 준용한다.
308) 노동법원법 제9조 일반 절차규정 및 장기간 재판절차 시의 법적 보호
② 송달 및 집행 공무원, 법정경찰, 법정언어, 사법연수생의 판사업무 수행, 합의 및 평결 등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규정은 각 심급에서 준용된다. 제1문에도 불구하고,

용되고,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연방헌법재판소법)[Gesetz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제17조[310]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도 적용된다. 법정경찰권은 주거권과 달리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이므로,[311]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312]

예를 들어 구두 재판절차에서의 소란, 절차관계인에 대한 위협, 허가되지 않은 녹음 등은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주거권에 기한 조치도 정당화될 수 있으나,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법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정경찰권이 우선하게 된다.[313] 따라서 법원장 등이 보유하는 주거권은 시간적 · 공간적 · 인적 · 물적 범위에서 구두 재판절차와 무관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다.[314]

이러한 법원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만, 각 연방주는 연방법—주로 법원조직법—에 우선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거권과 그에 따른 권한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나) 예외적 병존

이에 따라 법원장은 법원청사에 대한 일반적인 출입통제시스템을 주거권에 근거하여 도입하거나, 구두 재판절차와 관련 없는 소란 행위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면에 재판장은 구두 재판절차 중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담당해야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법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

1. 「법원조직법」 제185조 제1a항은, 법원은 통역인에게 재판, 청문 또는 신문에 화상 및 음성 전송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용되고;
2. 「법원조직법」 제193조 제1항은, 구두변론을 거친 판결에서 명예판사들과의 최초 공동 합의 및 평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17장의 규정은, 고등법원이 주 노동법원(Landesarbeitsgericht)으로, 연방일반법원이 연방노동법원으로, 「민사소송법」이 노동법원법으로 대체되는 조건으로 준용된다.

309) 재정법원법 제52조
① 공개, 법정경찰, 법정언어, 합의 및 평결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169조, 171b조 내지 제197조를 준용한다.

310)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7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의 공개, 법정경찰, 법정언어, 합의 및 평결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14편 내지 제16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311) Peters/Lux, a.a.O., S. 20.

312) BVerfG, Beschl. v. 6. 2. 2007 – 1 BvR 218/07, NJW-RR 2007, 1053 (1054).

313) BVerwG, Beschl. v. 17. 5. 2011 – 7 B 17.11, NJW 2011, 2530 (2531).

314) BVerfG, Beschl. v. 14. 3. 2012 – 2 BvR 2405/11, NJW 2012, 1863 (1864).

다만, 예외적으로 구두 재판절차 중의 소란에 대하여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뿐만 아니라 주거권에 기한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 가령 재판장이 법정에서 퇴장을 명령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장 또한 법원청사 전반에 대한 건물출입금지 조치(Hausverbot)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당 인물이 법원청사 내 법정 외부 공간에서 다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315]

또한 주거권에 기한 조치와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는 상호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적인 출입통제나 전체 방문자에 대한 보안검색이 시행된다면, 법정 안에서 법정경찰권을 근거로 개입할 필요가 줄어들게 된다.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무기, 소음기구, 깃발 등)이나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미 주거권에 기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316]

4) 각 연방주의 주거권 관련 규정

일부 주 의회들도 이미 법원청사 내의 보안 문제를 다룬 바 있다.[317]

앞에서 본 것처럼, 가령「니더작센주 사법법」제16조 또는「베를린주 사법법」제26조 및 제27조는 주거권 및 이에 근거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출입통제, 신체 및 물품에 대한 수색, 압수, 신원확인, 건물퇴거 명령 및 특히 건물출입금지 조치 등이 가능하다.

반면에 작센주의「작센주 사법법(Sächsisches Justizgesetz, SächsJG)」제42조,[318] 바

315) Peters/Lux, a.a.O., S. 20.
316) OVG Berlin-Brandenburg, Beschl. v. 10. 7. 2017 - OVG 10 N 46.14, juris.
317) Peters/Lux, a.a.O., S. 20.
318)「작센주 사법법」제42조(사법경위의 권한)
① 사법경위 직원은 법정 업무 또는 구인 업무, 피구금자(Gefangener) 감시, 사법청사 및 그 인접 지역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 및 판사 또는 검사 명령의 집행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1976. 3. 16. 제정되고 2015. 8. 31. 최종개정된「형집행법」제88조, 제94조 내지 제98조 및 제178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수감자에 대한 직접강제력 행사 권한 및
2.「작센주 경찰집행직무법(Sächsisches Polizeivollzugsdienstgesetz, SächsPVDG)」에 따라 총기 사용을 제외하고 직접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경찰관이 기타 인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한.
② 사법경위 직원은 제1항에 명시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안전의 침해를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피구금자는 판사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에른주의 「사법부공무원의 안전 및 질서법상 권한에 관한 법률(바이에른주 사법안전 및 질서법상 권한법)[Gesetz über die sicherheits- und ordnungsrechtlichen Befugnisse der Justizbediensteten(Justiz-Sicherheits- und Ordnungsrechts-Befugnissegesetz), BayJSOG]」,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사법경위의 권한에 관한 법률(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사법경위권한법)[Gesetz über die Befugnisse des Justizwachtmeisterdienstes (Justizwachtmeisterbefugnissegesetz), BWJWBG]」과 같이, 다른 연방주들은 사법경위를 비롯한 사법부 직원의 권한에 대한 규정만을 입법하고 있다.

아울러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사법경위권한법」 제1조[319] 제2항은 법원청사 내에서의 주거권자의 권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부여된 사법부 직원의 권한이 본법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작센주 및 바이에른주의 관련 법률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작센주 및 바이에른주에서는 주거권자와 사법경위 간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5) 명확한 입법 필요성

법원청사 내에서의 보안 관련 권한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통상적인 실무에서 필요한 업무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권한 위임의 가능성 등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장은 일반적으로 또는 개별 사안에서 사법경위 또는 재판장에게 주거권의 행사를 위임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320]

---

④ 다른 규정에 따른 직접강제력 행사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경찰 및 형집행관의 임무와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319)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사법경위권한법」 제1조(적용범위)
① 사법경위는 피고인 인도, 수감자 감시, 법원 및 검찰청 내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 법원 또는 검찰의 명령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다.
② 청사에서의 주거권자의 권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부여된 사법부 직원의 권한은 이 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정경찰권에 따른 조치 집행에는 연방법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 법이 적용된다.
③ 경찰 및 교정공무원의 업무와 권한은 이 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320) Peters/Lux, a.a.O., S. 21.

라. 베를린주 및 니더작센주의 주거권 관련 규정

1) 베를린주 –「베를린주 사법법(JustG Bln)」

가) 주거권(Hausrecht, 제26조)

「베를린주 사법법」 제26조

① 사법 및 노동을 관할하는 주 행정부(Senatsverwaltung), 법원 및 검찰청의 각 장(Leitung)은 해당 기관이 사용하는 청사(Dienstgebäude) 내에서 주거권을 가진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청사의 경우, 관할 주 행정부는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을 통해 누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주거권을 갖는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서 말하는 청사란 각 정부청사 또는 법원청사 및 이에 속하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옥외구역을 포함한다.

③ 사법 및 노동을 관할하는 주 행정부의 장과 법원 및 검찰청의 장은 주거권의 행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개별적 사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1) 일반론

(가) 규범의 목적

베를린주의 법원 및 검찰청에서는 지금까지 안전 및 질서에 관한 권한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연방 차원에서는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에 한하여 법원조직법 제176조 이하 규정이 있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55조, 노동법원법 제9조 제2항 제1문, 사회법원법 제61조 제1항을 통해 여러 전문법원 관할권에서도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재판장의 법정경찰권만 규율하는 데 그쳤고, 법원장 또는 검찰청장의 주거권은 지금까지 '관습법적'으로만 인정되어 왔다.

「베를린주 사법법」 제26조 이하의 조항을 통해, 베를린주에서 주거권이 처음으로 법률상 규율되었다.

(나) 법원장의 주거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법원장의 주거권은 법원의 공무 수행과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청사에의 출입 및 체류에 대한 규정을 정할 권한을 법원장에게 부여한다. 특히 법원

청사 내 특정 공간에서의 체류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이에 속한다. 이로 인해 법원청사에의 출입 또는 체류를 원하는 사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기본법 제2조 제1항)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조치가 주거권의 범위 내에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321]

이는 표현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1문)에 대한 제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법원청사의 보안 조치 및 출입통제는 특정한 의견 내용의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견 표현의 형식(가령 플래카드나 선전물 게시, 법원청사나 그 시설에 정치적 구호나 상징을 표시하거나 낙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개인메모용 도구로 부적절한 영구적 마커(Permanent-Filzstifte)를 사용하여 법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표현의 자유 역시 일반 법률의 조항(여기서는 법원장의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한계에 의해 제한된다(기본법 제5조 제2항). 나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공집회 개최는 기본법 제8조[322] 제1항이 보장하는 내용이나, 이러한 활동은 법원청사 및 부지의 지정된 용도(Widmungszweck)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을 뿐이다.

(다) 법원장의 주거권 행사에 대한 한계

법원장의 주거권 행사에 대한 한계는 특히 공개재판의 원칙(법원조직법 제169조 제1문)에서 도출된다. 법원장의 주거권에 기한 조치는 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323] 그런데 공개재판의 원칙은 명시적인 법률 규정 외에도, 사법행정의 불가피한 필요성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바, 여기에는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재판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포함된다. 재판절차가 이루어지는 법정에의 접근을 경미하게 제한하고, 특정한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방청객의 선별 없이 이루어지는 질서유지 조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주거권 행사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법원장의 공무상 재량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 과정에서 비례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즉, 질서유지 조치로 인한 제한의 강도, 보호 대상의 가치, 침해 위험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321) OVG Berlin-Brandenburg Beschl. v. 10.7.2017 - 10 N 46.14, BeckRS 2017, 146909.
322) 기본법 제8조
①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적으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회를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옥외집회의 경우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323) OVG Berlin-Brandenburg, Beschl. v. 10.7.2017 - 10 N 46.14, BeckRS 2017, 146909.

대상자의 이해관계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한편「베를린주 사법법」제26조에 따른 주거권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176조 이하에서 정한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바,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권은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내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324] 다시 말해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역시 법원장의 주거권 행사에 대한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2) 주거권자(Hausrechtsinhaber, 제1항)

「베를린주 사법법」제26조 제1항 제1문은 사법 및 노동을 관할하는 주 행정부(Senatsverwaltung)의 장과 법원 및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각각 사용하는 청사에 대한 주거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고, 이는 특히 아래에서 살펴볼 제27조에 규정된 주거권에 기한 조치 권한의 근거로 작용한다.

「베를린주 사법법」제26조 제1항 제2문은 관할권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법원 또는 검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이용 청사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되는 청사의 경우, 관할 주 행정부가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en)을 통해 어느 기관의 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주거권을 보유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청사(Dienstgebäude, 제2항)

「베를린주 사법법」제26조 제2항은 청사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사건물은 물론 그에 속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옥외구역—가령 내부 중정, 울타리가 설치된 앞마당 등—도 청사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반면에 청사건물 및 그 부속 옥외구역의 범위를 벗어난 장소, 예컨대 법원 청사건물 부지가 일부 포함되지만 울타리로 구획되지 않은 공원 지역 안이나 옥외구역 인근 일반도로 상에서의 조치는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할 수 없다.[325]

324) AbghBln-Drs. 18/2863.
325) AbghBln-Drs. 18/2863, 67.

(4) 주거권의 위임(Delegation des Hausrechts, 제3항)

「베를린주 사법법」 제26조 제3항은 각 기관의 장에게 주거권 행사 권한을 일반적으로 또는 개별 사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법원장은 출입구 보안검색 등의 필요성에 따라 주거권 행사 권한을 사법경위에게 일반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이지만, 예를 들어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이 법원장으로부터 특정 개인에 대하여 건물출입금지 조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와 같이, 개별 사안에 대한 주거권의 위임도 허용된다.[326]

나) 주거권자의 권한
(Befugnisse der Inhaberinnen und Inhaber des Hausrechts, 제27조 제1항)

「베를린주 사법법」 제27조

① 주거권자는 안전 및 질서의 유지, 무엇보다도 원활한 업무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술적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이때 신원 확인, 신체 및 소지품의 수색에 있어서는 2006. 10. 11. 공포되고 2020. 12. 17.자 법률 제1조로 최종 개정된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21조 제3항 제1문 내지 제3문, 제34조 제4항, 제35조 제3항을 준용하며,

2. 청사 및 인접한 옥외구역은 광학전자 장치(영상감시)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영상감시 구역의 표시, 개인정보의 다른 목적을 위한 처리 및 즉시 삭제에 대해서는 2018. 6. 13. 제정되고 2020. 10. 12. 최종 개정된 「베를린주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327] 제2항, 제3항

326) Graf, BeckOK GVG(26. Edition), C.H.BECK.München(2024), JustG Bln § 26, Rn. 7.

327) 「베를린주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영상감시(Videoüberwachung)
①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광학전자 장치(영상감시 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고, 당사자의 보호할 만한 이익이 우선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된다.
② 영상으로 감시되는 구역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감시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사실, 책임자의 이름 및 연락처에 대해 사전 안내되어야 한다.
③ 수집된 데이터의 다른 목적에의 활용은 공공 안전상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형사범죄를 수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공공 대중교통 구역에서의 감시 영상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제3항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다른 목적으로의 처리는 형사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2. 이 목적을 위한 영상 자료의 전달은 오직 베를린 경찰 및 형사 사법기관에 한정된다.

및 제5항을 준용하며,

3. 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 외의 상황에서도 신원 확인 및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4. 청사 내 중대한 방해행위 발생 시 해당 인물을 퇴거시키며, 건물출입금지 조치(Hausverbot)의 방법으로 그가 청사에 재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5. 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 외의 상황에서도 신체 및 소지품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며, 이때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34조 제4항, 제35조 제3항을 준용하고,

6. 안전 또는 질서, 특히 업무 운영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은 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압수된 물건이 압수 당일 반환되지 않는 한 즉시 경찰에 인계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는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39조에 따라 보관되며,

7.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항에 따라, 사람을 유치(Gewahrsam)할 수 있고, 이때 유치된 사람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는 한 즉시 경찰에 인치되어야 한다.

(1) 법제화의 필요성

지금까지 청사 내 안전 및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오직 관습법상 인정된 주거권(Hausrecht)에만 근거하여 취해질 수 있었다. 주거권은 질서유지 조치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개입 근거로 작용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주거권의 행사는 공개재판의 원칙(법원조직법 제169조) 및 재판장의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176조)에 의한 한계점을 갖는다.

나아가 과거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고등행정법원(OVG Berlin-Brandenburg)의 판례[328]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법원의 장이 보유한 주거권에서 파생되는 권한 역시 명시적인 법률 규정 없이도 인정되어 왔다. 이는 해당 정부기관이나 법원이 부여받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에 수반되는 고유권한(Sachkompetenz)의 필수적인 '부속권한(Annex)'에서 도출된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이

이와 관련하여 책임자는 베를린주 경찰과 협의한 보안개념(Security-Konzept)을 통해 위에서 명시한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감시 자료가 최대 48시간 이내에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른 삭제 의무 외에도, 정보주체의 보호할 이익이 계속 저장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

328) OVG Berlin-Brandenburg Urt. v. 26.10.2010 - OVG 10 B 2.10, BeckRS 2010, 56081.

러한 주거권에 파생된 세부적인 권한 역시 질서유지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기본권에 대한 법적 제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확한 법적 현실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베를린주 입법자는 법제화를 통해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규정과 별도로 사법기관의 청사 내 안전과 질서를 위한 별도의 성문화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329]

(2) 권한

(가) 일반조항

「베를린주 사법법」 제27조 제1항 제1문은 관습법적으로 인정된 주거권에 관한 판례법리[330]를 반영한 일반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권자는 자신의 직무상 재량 범위 내에서 청사 내 안전 및 질서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331]

○ 주거권자(Inhaber des Hausrechts)

법원장 또는 기관장은 직접 조치를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바, 앞에서 본 것처럼 직원, 특히 사법경위에게 이러한 임무의 수행 및 조치의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주거권자'에는 「베를린주 사법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본래 해당 권한을 보유한 사람(법원장 또는 검찰청장)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 위임받은 사람(가령 사법경위)도 포함된다.[332]

○ 안전 및 질서의 유지(Aufrechterhaltung der Sicherheit und Ordnung)

모든 권한의 공통된 전제는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조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과 '질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17조 제1항의 안전과 질서의 개념과 동일하다.[333] 그중 '안전'은 생명, 건강, 자유, 명

329) AbghBln-Drs. 18/2863, 66 f.
330) BVerwG NJW 2011, 2530 Rn. 8; Vorinstanz: OVG Berlin-Brandenburg Urt. v. 26.10.2010 - OVG 10 B 2.10, BeckRS 2010, 56081.
331) Graf, a.a.O., JustG Bln § 27, Rn. 7.
332) AbghBln-Drs. 18/2863, 68.

예, 재산 및 개인의 소유권과 같은 중요한 법익의 보호뿐 아니라, 법질서 및 국가기관의 온전함까지 포함한다.[334] 따라서 국가기관으로서 법원과 검찰청의 기능 수행 자체가 보호대상이 된다.[335] 대체로 이러한 보호법익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의한 침해가 임박했을 때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336]

○ 정상적인 업무 운영의 보장(Gewährleistung eines ordnungsgemäßen Dienstbetriebs)

법률은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의 보장 또한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예를 들어 법원 방문자가 야기한 심각한 소음 방해의 정도가 비록 신체 건강을 해칠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업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베를린주 사법법」 제27조에 따라 제지될 수 있다.[337]

(나) 개별 조치 권한(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베를린주 사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는 일반조항을 구체화하면서, 주거권의 행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권한들을 전형적인 예시로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insbesondere)'라는 문언에 비추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조치 권한들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조치 권한들도 추가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338]

○ 출입통제(Einlasskontrollen, 제1항 제1호)

제1호는 이미 다수의 공공청사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원 및 검찰청 청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입통제의 실행을 규정한다. 과거 기존 판례에 의하면, 법원장은 관습법적으로 인정된 주거권을 근거로 소송관계인과 일반 방문자들에 대하여 폭넓은 통제 및 수색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339]

333) Graf, a.a.O., JustG Bln § 27, Rn. 9.
334) BVerwG NJW 2009, 98, 99.
335) AbghBln-Drs. 18/2863, 68.
336) BVerfGE 69, 315 (352).
337) AbghBln-Drs. 18/2863, 68.
338) Graf, a.a.O., JustG Bln § 27, Rn. 11.
339) Graf, a.a.O., JustG Bln § 27, Rn. 12.

이러한 출입통제의 경우,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추상적인 위험조차 존재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 허용된다. 판례는 이를 위해 '이해할 만한 계기(ein verständlicher Anlass)'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340]

베를린주 입법자는 이러한 무차별적인 출입통제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과거 수년간의 출입통제 과정에서 상당수의 무기 및 위험물이 발견된 사례들을 들고 있다.[341]

출입통제에는 신체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소지품의 검사도 포함된다. 이때 신원확인 및 물건 수색이 수반되며, 관련 세부 요건들은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원확인의 경우,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21조 제3항 제1문에 따르면, 사람을 멈춰 세우고 이름 ·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21조 제3항 제3문에 따라,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후수단으로 '일시적 감치'도 가능하다.[342]

신체 수색의 경우,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성(同性)의 직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소지품 수색의 경우,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35조 제3항 제1문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실질 점유자가 수색 과정에 입회하여야 한다. 또한, 가령 금속탐지기(Metalldetektor), 폭발물탐지기(Sprengstoffdetektor), 수하물 스캐너(Gepäckscanner) 등과 같은 기술적 장비를 안전 및 질서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343]

ㅇ 영상감시(Videoüberwachung, 제1항 제2호)

제2호는 주 사법행정청 및 법원의 청사 내 영상감시 및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특별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조항은 「베를린주 사법법」 제27조의 다른 조항들과 달리, 청사의 외부 영역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감시 대상은 청사 건물 외

340) OVG Schleswig Beschl. v. 17.12.2012 - 4 LA 58/12, BeckRS 2013, 53619; vgl. auch BVerfG NJW 2012, 1863.
341) AbghBln-Drs. 18/11289.
342) AbghBln-Drs. 18/2863, 68.
343) AbghBln-Drs. 18/2863, 68.

벽에 인접한 외부 공간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청사 앞 인도'도 영상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외부 공격 등의 위협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344]

영상감시 및 관련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은 「베를린 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 신원확인(Identitätsfeststellung, 제1항 제3호)

제3호는 청사 출입통제 외의 상황에서도 주거권자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에는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본 조항은 질서 방해자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아 청사 출입통제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원확인은 아래에서 볼 제4호에 따라 건물출입금지 조치(Hausverbot)를 내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하다.[345]

○ 청사에서의 퇴거(Verweis aus dem Dienstgebäude, 제1항 제4호)

제4호는 개인을 청사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 조치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경미한 방해 정도를 넘어서는 상당한 수준의 질서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본 조항은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29조 제1항과 유사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소퇴거 조치 및 출입금지 조치를 '단기적인' 조치로 규정하는 「경찰법(Polizeigesetz, PolG)」과 달리, 여기에서는 '장기적인' 법원 건물출입금지 조치(Hausverbot)로 이어질 수도 있다.[346]

그러나 건물출입금지 조치가 개인의 법률적 권리 행사에 관한 기본권(법적 보호 접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원청사의 경우, 완전한 출입금지 조치보다는 완화된 방식의 대안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법률적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출입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위의 동행 조건으로 출입하

344) AbghBln-Drs. 18/2863, 69.
345) BlnAbgh.-Drs. 18/2863, 69.
346) BlnAbgh.-Drs. 18/2863, 69.

는 방식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신청사무실(Rechtsantragstelle)—우리나라 법원에 비유하자면 종합민원실—만을 이용하게 하고, 그 외의 사무실로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347]

건물출입금지 조치는 그 범위나 기간에 있어서 반드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례성 검토에서는 유사행위가 반복될 가능성과 기왕의 질서 방해행위의 정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348]

ㅇ 수색(Durchsuchung, 제1항 제5호)

제5호는 청사 출입통제 외의 상황에서도 신체 및 물건에 대한 수색을 허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의 관련 규정들이 준용된다.

베를린주의 입법자는 신원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청사 출입통제 과정을 이미 통과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신체 및 물건의 수색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출입 시에는 무해한 것처럼 보였던 물건이 나중에 위험한 도구로 사용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한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수색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349]

ㅇ 물건의 압수(Sicherstellung von Gegenständen, 제1항 제6호)

물건의 수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제6호는 물건의 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압수 요건은 해당 물건이 추상적으로라도 해당 청사 내 안전이나 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적합성을 지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특히 위험한 물건의 경우 그 휴대 자체만으로도 충족된다. 본 조항에서는 명확하게, 법원 등의 업무 운영에 중대한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역시 압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법원이나 검찰청 청사에 '드럼(Drum)'을 들여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압수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350]

또한 가령 스마트폰, 카메라, 녹음기, 목발 등 일반적으로는 청사 내 안전이나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질서 방해의 용도로 사용되

347) BlnAbgh.-Drs. 18/2863, 69.
348) Graf, a.a.O., JustG Bln § 27, Rn. 27.
349) BlnAbgh.-Drs. 18/2863, 69.
350) Graf, a.a.O., JustG Bln § 27, Rn. 31.

었거나 그런 의도가 명백한 경우 압수가 가능하다.[351] 입법이유서(Gesetzesbegründung)는 그 예시로, 최근 2022년에 발생한 소위 "제국시민(Reichsbürger)" 사건[352] 관련 재판에서 모든 종류의 녹음 장비를 압수하는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1항 제2문의 위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압수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압수 당일, 가능하면 청사 퇴거 시점에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령 해당 물건이 범죄나 질서위반 행위의 수단이 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마약, 무기, 위헌조직의 상징물 등), 해당 물건은 즉시 경찰에 인계되어야 한다.[353]

○ 유치(Ingewahrsamnahme, 제1항 제7호)

제7호는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따라 개인의 유치를 허용한다.

유치는 청사에서의 퇴거 조치 또는 건물출입금지 조치(Hausverbot)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된다.

실제로 유치 조치는 해당 인물을 유치된 건물에서 석방시키는 것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유치 석방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인물은 즉시 경찰에 인치되어야 하고, 이후 경찰이 「베를린주 일반안전 및 질서법」 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하며, 특히 필요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354]

2) 니더작센주 – 「니더작센주 사법법(NJG)」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6조(주거권, Hausrecht)

① 법원과 검찰청의 장 또는 그가 위임한 직원은 청사 내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특히

351) BlnAbgh.–Drs. 18/2863, 69 f.
352) 2022. 12. 7. 독일의 11개 연방주 130여 곳에서 국가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일종의 왕정복고를 도모한 '제국시민(Reichsbürger) 운동' 단체의 극우 활동가 조직원 25명이 체포된 사건.
353) BlnAbgh.–Drs. 18/2863, 70.
354) BlnAbgh.–Drs. 18/2863, 70.

1. 출입통제 – 공공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의 탐지를 위해 기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으며,

2. 특정 정황상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와 소지품을 제17조에 따라 수색할 수 있고,

3. 무기, 위험한 물건 또는 보안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타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며,

4. 신원확인을 할 수 있고,

5. 중대한 방해행위 발생 시 해당자를 부지(Grundstück)에서 퇴거시키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조치의 집행은 사법경위와 경위직렬에 있는 사법부 직원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제1문 제3호에 따라 물건이 압수된 사람은 압수 사유 및 압수 물건이 명시된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압수된 물건은 보관되어야 하고, 압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반환되어야 한다. 제1문에 따른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② 사법경위와 경위직렬에 있는 사법부 직원은 제18조 내지 제21조에 따른 직접강제력을 통해 제1항 제1문에 따른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이 법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니더작센주 경찰 및 질서당국 법률」의 제6장에 따라 집행된다.

가) 일반조항(제1항 제1문 전단)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6조 제1항 제1문 전단은 관습법상 인정된 주거권(Hausrecht)에 관한 일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직무상 재량에 따라, 업무 운영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고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개별조치(Einzelmaßnahmen, 제1항 제1문 후단 각호)

문구 "특히(inbesondere)"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출입통제, 수색, 무기 또는 위험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건의 압수, 신원확인 및 건물출입금지 조치(Hausverbot)]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고, 전형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출입통제(제1호)는 금속탐지기, 에어락 문(Schleuse) 및 X-ray 장비 등과 같은 기술적 장비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7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되는 사람 및 물건에 대한 수색(제2호)은, 제3호에 따라 압수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존재한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에 허용된다. 가령 위 제1호에서 사용된 금속탐지기의 감지장치(Sensor)가 반응하는 경우가 그러한 정황에 해당한다.[355]

무기 및 기타 물건의 압수 기간과 관련하여,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6조 제1항 제3문과 제4문은 피압수자가 사법기관의 관할구역을 떠날 때 압수된 물건이 피압수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형사소송법상 압수 규정과 같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속 보관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한다.[356]

다) 집행주체(Handelnde, 제1항 제2문)

공권력의 행사로서 개별 조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를 위해 훈련된 사법경위와 경위직렬에 있는 사법부 직원의 책임이다.

예외적인 경우, 다른 직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 입법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논의된 특별한 예외사례로서, 소규모의 법원에서는 사법경위 또는 경위직렬에 있지 않은 다른 직원의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가령 여성 방문자를 수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적합하게 훈련된 여성 전문 인력이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 사법경위 또는 경위직렬에 있지 않은 여성 직원이 일시적으로 수색을 담당할 수 있다.[357]

라) 집행정지 효력의 부존재(Keine aufschiebende Wirkung, 제1항 제5문)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6조 제1항 제5문은, 개별 조치의 즉시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불복수단이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마) 직접강제력(Unmittelbarer Zwang, 제2항)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강도 때문에, 직접강제력의 행사 권한은 주 의회의 '법률 및 헌법 현안을 위한 위원회(Ausschusses für Rechts- und Verfassungsfragen)'의 권고에

355) LT-Drs. 17/2507, 5.
356) Graf, a.a.O., NJG § 16, Rn. 5.
357) LT-Drs. 17/2507, 5.

따라 사법경위와 경위직렬에 있는 사법부 직원에게만 부여된다.[358]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6조 제2항 제2문은, 주거권에 기한 행정행위의 집행이 원칙적으로 제18조 내지 제21조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한다. 만일 「니더작센주 사법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니더작센주 경찰 및 질서당국 법률」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특히 사전 행정행위(vorausgehenden Verwaltungsakt) 없이도 곧바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즉 직접집행(unmittelbare Ausführung)이 「니더작센주 경찰 및 질서당국 법률」 제64조 제2항[359]에 따라 가능해졌다.[360]

마. 주거권 행사에 대한 법적 보호

1) 행정법원에 대한 소송절차 원칙

공공건물에서의 출입 또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건물출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법원법 제40조 제1항[361] 제1문에 따라 행정법원 관할권이 인정된다. 해당 분쟁이 비교적 헌법적 성격이 없는 공법상의 분쟁이고, 연방법상 다른 전문법원 관할권 분야에 명시적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362]

다만 사회법적 법률관계에 따라 공공건물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사회법원법 제51조 제1항 제6a호[363]에 따라 사회법원 관할권 분

358) LT-Drs. 17/2507, 5.

359) 「니더작센주 경찰 및 질서당국 법률」 제64조(강제력의 허용성, 관할, 불복수단의 효력)
② 강제수단(Zwangsmittel)은 사전 행정행위 없이도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행정당국 또는 경찰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1. 특히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조치가 당사자에게 불가능하거나 제때 이뤄질 수 없거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2. 집행 책임이 행정당국이나 경찰에 있는, 법원이 명령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자에게는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문 제1호의 경우, 대체집행(Ersatzvornahme)의 강제수단은 제7조에 따라 책임 있는 공법상의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해당 법인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360) Graf, a.a.O., NJG § 16, Rn. 9.

361) 행정법원법 제40조
① 행정소송은 헌법적 성격이 없는 공법상 분쟁에 대하여 인정되고, 이러한 분쟁이 연방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른 법원 관할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공법상 분쟁이 주법(Landesrecht)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법률(Landesgesetz)에 따라 다른 법원 관할에 배정될 수 있다.

362) Peters/Lux, a.a.O., S. 21.

363) 사회법원법 제51조
① 사회법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공법상 분쟁에 대해 결정한다.
6a. 특히 「사회법전」 제9권 제2편 및 「비호신청자급부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 AsylbLG)」

야의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364] 그러나 건물출입금지 조치가 사회기관 외의 다른 시설이 포함된 전체 건물에 대하여 내려진 경우, 사회법적 법률관계의 배타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법원 관할권이 성립된다.[365]

2) 본안소송(Klage in der Hauptsache)

행정행위로서 내려진 건물출입금지 조치나 기타 제한조치에 대하여, 그 당사자는 취소소송(Anfechtungsklage)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법원법 제42조 제1항[366]).

3) 긴급 법적 보호(Eilrechtsschutz)

건물출입금지 조치(또는 기타 조치)가 즉시집행 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행정법원법 제80조 제5항)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청의 인용 여부는 주로 공익 즉, 건물출입금지 조치의 즉시집행 필요성과 사익 즉,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판결 전까지 건물출입금지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을 이익 사이의 이익형량(Interessenabwägung)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이익형량은 해당 조치가 명백히 합법적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367]

바. 전망

공공건물에서의 주거권 문제는 법학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제이다. 예컨대, 앞에서 본 "제국시민(Reichsbürger)" 사건과 같은 새로운 동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정치권이 최근 들어 공공청사 내 안전 및 질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368] 이와 관련된

에 따른 사안을 포함한 사회복지에 관한 사안.

364) BSG, Beschl. v. 21. 7. 2014 - B 14 SF 1/14 R, SozR 4-1500.

365) VG Berlin, Beschl. v. 22. 12. 2015 - VG 1 L 323.15.

366) 행정법원법 제42조
① 소를 제기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취소(취소소송, Anfechtungsklage) 및 거부되었거나 이행되지 않은 행정행위의 발령을 명하는 판결(의무부과소송, Verpflichtungsklage)을 청구할 수 있다.

367) Peters/Lux, a.a.O., S. 21.

368) 예를 들어, 현재 베를린주 사법부에서는 안전프레임워크 개념(Sicherheitsrahmenkonzept)이 마련되고 있다; Berliner Morgenpost Website,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12624

실무적인 노력[369]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률적 차원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주거권에 대한 법제화 노력을 통해 주거권 개념과 그에 기한 공권력적 권한들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II. 독일 법원의 보안 및 질서유지 실무

1. 인적 자원 활용 실무

가. 사법경위직(Justizwachtmeisterdienst)에 대한 법적 규율

1) 사법경위직과 법적 명확성 문제

가) 의의와 문제점

법원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핵심과제이나, 그동안 독일에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다. 현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개념들이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법경위직(Justizwachtmeisterdienst)이다.

사법경위의 임무 영역은 법원 내 보안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만, 법적 틀은 이러한 변화를 아직 부분적으로만 반영하고 있다.[370] 아직까지 독일의 사법영역에서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통일된 연방법이 존재하지 않은 까닭에, 법원청사 관련 각종 위험방지 조치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연방주마다 매우 다양한 법적 근거에 의존하여야 하고, 종종 조치의 정당성이 의심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조치 대상자의 관점에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371]

811/Berlins-Gerichte-ruesten-auf.html. (2025. 7. 17. 확인).

369) 특히 충분한 인력 배치, 현대적인 보안장비의 적절한 제공, 공공건물의 안전을 위한 구조적 조치, 보안 및 비상 계획의 마련 등.

370) Kees, Sicherheit in der Justiz: Der normative Rahmen und die Aufgaben des Gesetzgebers, NJW(2013), S. 1929.

371) BVerfGE 110, 33 (53 f.) = NJW 2004, 2213.

나) 사법경위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일반적 법적 근거 규정 결여

특히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이나 법원장의 주거권에 기한 각종 명령 또는 조치들의 실질 집행은 일반적으로 사법경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본권에 대하여 중대한 개입을 하게 되는 사법경위의 권한이나 임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법경위는 일반적으로 재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법정경찰권 또는 주거권의 위임 또는 지시를 받아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행정법적 '일반조항'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다.[372] 경찰관에게 독자적인 명령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연방 또는 연방주의 경찰법의 경우, 특별한 법률 규정 없이는 사법경위에 대하여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법경위가 독자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개입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면, 특별한 법률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373]

다) 법적 근거의 확대 추세

현재 독일에서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대체로 연방법—주로 법원조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법원장의 주거권의 경우, 여전히 실질적으로 관습법에 의존하고 있지만 점차 주법으로 입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재판장의 법정경찰권과 법원장의 주거권 각각에 대한 사법경위의 실무 집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연방의 입법권에 속하는 연방법원 건물 및 연방법무부 건물 등을 제외하고는 각 연방주가 주법으로 각기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374]

2) 사법경위직에 대한 연방법상 규율

가) 연방 행정집행 관련 법률의 사법경위직에 대한 규정

연방 차원에서, 행정행위의 집행(Durchsetzung eines Verwaltungsakts) 및 즉시집행(Sofortvollzug)의 강제집행 즉, 행정강제(Verwaltungszwang) 관하여 「행정집행법

372) Kees, a.a.O., S. 1931.
373) Kees, a.a.O., S. 1931.
374) Kees, a.a.O., S. 1930.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VwVG)」 제6조[375]가 적용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강제수단(Zwangsmittel)으로는 ① 대집행(Ersatzvornahme), ② 강제금(Zwangsgeld) 및 ③ 직접강제력(unmittelbarer Zwang)이 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행정집행법과 더불어, 「연방집행관의 공권력 행사 시 직접강제력에 관한 법률(직접강제력-법률)[Gesetz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bei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urch Vollzugsbeamte des Bundes(Unmittelbarer Zwang-Gesetz), UZwG]」에서는 '연방집행관(Vollzugsbeamte des Bundes)'의 직접강제력 사용에 관한 일부 구체적인 사항들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위 연방집행관의 개념에 '연방법원 및 연방법무부 소속의 사법경위'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다(같은 법 제6조[376] 제7호). 여기서 '직접강제력'이란 ① 물리적 폭력, ② 물리적 폭력의 보조수단 및 ③ 무기를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직접강제력-법률」 제2조[377]

---

375) 행정집행법 제6조[행정강제의 허용(Zulässigkeit des Verwaltungszwanges)]
① 물건의 인도 또는 작위, 부작위, 수인의 집행을 부과하는 행정행위는, 그것이 다툴 수 없는 것인 경우, 그것의 즉시집행이 명하여진 경우 또는 쟁송에 정지적 효과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제9조에 의한 강제수단에 의하여 집행이 행해질 수 있다.
② 행정강제는, 형벌의 구성요건 또는 과태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행정관청이 이 경우에 그 법률상의 기한 안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선행하는 행정행위 없이도 허용될 수 있다.

376) 「직접강제력-법률」 제6조(연방집행관)
이 법에 따른 연방집행관은 다음과 같다.
1. 연방집행경찰관[1960년 7월 19일 연방경찰관법(연방법률관보 제I부 569면) 제1조];
2. 관세국경청(국경감시대와 국경통관국), 세관검사청, 경비대와 호위대의 공무원 및 연방세무관청에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삭제)
4. 연방해운항만청의 내수 · 해양경찰 공무원;
5. (삭제)
6. 「화물운송법(Güterkraftverkehrsgesetz)」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연방물류이동청의 담당관;
7. 연방법원 및 연방법무부에서 집행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 관할 연방관청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 밖의 사람;
9. 연방관청에 소속된 사람이 관련 활동 수행 시 집행직에 종사하는 경우 형사소추 또는 「질서위반법」에서 의미하는 질서위반행위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77) 「직접강제력-법률」 제2조(정의)
① 직접강제력이란 물리적 폭력, 물리적 폭력의 보조수단 및 무기를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물리적 폭력이란 신체나 물건에 직접 가해지는 모든 물리적 영향력을 말한다.
③ 물리적 폭력의 보조수단이란 특히 사슬, 물대포, 기술적 차단장치, 공무수행견, 공무수행마 및 공무수행차를 말한다.
④ 무기란 직무상 허용된 타격무기와 총기, 최루제 및 폭발물을 말한다.

제1항). 나아가 「직접강제력-법률」 제8조,[378] 제9조[379]에 따라 연방법원 및 연방법무부 소속 사법경위는 구금 중인 사람을 결박할 수 있고, 나아가 직접강제력의 행사 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사법경위의 독자적 명령 권한 부존재

그러나 이러한 권한 역시 즉시집행을 제외하고는 기본명령(hypothetische Grundverfügung)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직접강제력-법률」 제8조는 피구금자에 대한 결박을 허용하지만, 구금(Ingewahrsamnahme) 자체에 대한 권한을 직접 부여하지는 않는바, 해당 구금 조치는 이미 법적으로 정당화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방법상 사법경위가 자체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다.

다) 사법경위의 고유 임무와 권한에 대한 연방법상 규정 부존재

또한 「직접강제력-법률」은 사법경위에게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과 그중 일부 권한(결박 또는 총기 사용)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직접강제력-법률」은 사법경위가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강제력을 사용하게 되는지, 즉 '사법경위 등의 고유 임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

378) 「직접강제력-법률」 제8조[사람의 결박(Fesselung von Personen)]
다음 각호의 경우, 집행관은 피구금자를 결박할 수 있다.
1. 해당인이 집행관이나 제3자를 공격하거나 저항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해당인이 도주를 시도한 경우 또는 특히 해당인의 신상 및 도주에 반하는 정황을 포함한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인이 구금 상태에서 탈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379) 「직접강제력-법률」 제9조[총기사용권자(Zum Gebrauch von Schußwaffen Berechtigte)]
직접강제력의 행사 시 총기 사용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만 허용한다.
1. 연방집행경찰관[1960년 7월 19일 「연방경찰관법」(연방법률관보 제I부 569면) 제1조];
2. 국경감시대 공무원, 국경감시대 업무를 수행하는 국경통관국 공무원 및 세관검사청, 경비대 및 호위대 공무원;
3. (삭제)
4. 연방교통 · 디지털기반시설부의 세부 지시에 따른 내수 · 해양경찰권을 가진 연방해운항만청 공무원;
5. (삭제)
6. 연방법원 및 연방법무부에서 집행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관할 연방관청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된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 밖의 사람;
8. 연방관청에 소속된 사람이 관련 활동의 수행 시 집행직에 종사하는 경우 형사소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와 관련하여「직접강제력-법률」제1조 제1항[380]은 직접강제력의 실행을 규율하고 있지만, 그 적법성은 별도로 충족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즉, 위 규정은 직접강제력의 실행 조치 자체에 대한 권한 부여(Ermächtigung)가 아니라, 단지 집행방식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직접강제력은 다른 법령에서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3) 사법경위직에 대한 주법상 규율

앞에서 본「직접강제력-법률」과 비슷하게 사법경위에게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의 부여와 그 권한의 세부 내용만을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주가 있는 반면에, 사법경위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권한 자체를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주도 있다. 후자의 법률은 사법경위에게 제3자에 대한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해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행권한을 부여하며, 그 내용을 구체화한다. 물론 이러한 법률도 사법경위가 자체적으로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법상으로도 사법경위가 자체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다.[381]

아래에서는 독일의 연방주 중 베를린주, 니더작센주, 작센주, 바이에른주 및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등 5개 연방주의 주법상 규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베를린주 -「베를린주 사법법(JustG Bln)」

(1) 사법경위의 임무(Aufgaben des Justizwachtmeisterdienstes, 제25조)

> 「베를린주 사법법」 제25조
>
> 사법경위직의 직원(Bedienstete des Justizwachtmeisterdienstes)은 특히 구인업무(Vorführdienst), 피구금자(Gefangene)에 대한 감시, 청사 내 보안 및 질서의 유지, 법원 또는 검찰의 명령 집행의 임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법 및 노동을 관할하는 주 행정부가 각자의 관할범위 내에서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en)으로 정할 수 있다.

380)「직접강제력-법률」제1조(법적 근거)
① 연방집행관은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접강제를 적법하게 행사할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81) Kees, a.a.O., S. 1933.

사법경위직의 직원은 임무 수행을 위해 이 법률 제5장, 특히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명시된 권한을 가진다.

「베를린주 사법법」 제25조는 베를린주에서 그동안 법률로 완전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분인 사법경위의 임무를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한 조항이다. 이전까지는 행정명령인 「사법경위직의 공무원을 위한 복무규정(Dienstordnung für die Beamten des Justizwachtmeisterdienstes)」)에서 사법경위의 임무가 정해졌었다.[382]

「베를린주 사법법」 제25조 제1문에 따르면, 사법경위는 특히 다음과 같은 임무, 즉 구인업무, 피구금자 감시, 청사 내 안전 및 질서의 유지, 법원 또는 검찰의 명령 집행을 수행한다. 여기서 "특히(insbesondere)"라는 표현을 통해, 추가적인 임무 부여의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383]

「베를린주 사법법」 제25조 제2문은 사법 및 노동을 관할하는 주 행정부가 행정규칙을 통해 각자의 관할범위 내에서 사법경위의 구체적 임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베를린주 사법법」 제25조 제3문은 사법경위의 임무(Aufgabe)와 권한(Befugnis)을 구별하는 동시에 권한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사법경위는 앞에서 언급된 임무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베를린주 사법법」 제5장, 특히 아래에서 살펴볼 제27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384]

(2) 사법경위직의 권한(Befugnisse des Justizwachtmeisterdienstes, 제27조 제2항)

「베를린주 사법법」 제27조

② 연방법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사법경위직은 「법원조직법」 제176조 이하에 따라 내려진 명령을 집행하도록 위임받을 수 있다. 사법경위직의 직원은 법원 또는 검찰의 명령이나 형집행시설(Justizvollzugsanstalt)의 요청에 근거하여 사람을 공적으로 유치할 권한을 가진다.

382) Graf, a.a.O., JustG Bln § 25, Rn. 1.
383) AbghBln-Drs. 18/2863, 66.
384) AbghBln-Drs. 18/2863, 66.

(가) 법제화의 필요성

베를린주 입법자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법원조직법상 주거권자의 권한과 별도로 사법경위직의 권한에 관한 별도의 성문화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385]

(나) 사법경위직(Justizwachtmeisterdienst)

「베를린주 사법법」 제27조 제2항은 사법경위의 특별권한을 규정한다.

제1문은 법정경찰권에 기한 명령(sitzungspolizeiliche Anordnungen)과 관련하여 연방법인 법원조직법을 보완하는 베를린주 차원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정경찰권에 기한 권한(sitzungspolizeiliche Befugnisse)은 원칙적으로 연방법인 법원조직법 제176조 이하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연방법 규정이 미비한 경우, 각 연방주는 입법권을 가진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특히 법원이나 검찰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있어서 존재한다. 법원조직법에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에 기한 명령의 집행에 있어서 사법경위의 개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바, 본 조항은 주법으로 이를 명확히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386]

제2문은 구인업무(Vorführdienst)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한다.

지금까지 베를린주에서 구인업무의 적용범위는 오직 「사법경위 공무원을 위한 복무규정」 제2조에서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본 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경위는 자신에게 부여된 구인업무의 범위 안에서 법원과 검찰의 청사 내에 사람을 공적으로 유치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명령'에는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의 재판업무 관련 명령이 포함되나, 법원장의 사법행정 관련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예로 법원집행관(Gerichtsvollzieher)이 집행하는 구인명령(Vorführbefehl)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사법경위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원집행관이 법원청사까지 인치한 사람을 인수하여 법원청사 내에서 호송할 권한을 가진다.[387]

385) AbghBln-Drs. 18/2863, 66 f.
386) Graf, a.a.O., JustG Bln § 27, Rn. 41.
387) Graf, a.a.O., JustG Bln § 27, Rn. 43.

(3) 피구금자 및 피수용자에 대한 권한 (Befugnisse gegenüber Gefangenen sowie Untergebrachten, 제28조)

> 「베를린주 사법법」 제28조
>
> 형벌(Straf), 심리구속(Untersuchungshaft) 또는 청소년형벌(Jugendstraf)에 따른 피구금자(Gefangene) 및 피수용자(Untergebrachte)에 대하여, 사법경위 및 일반 사법부 공무원(Beamten des allgemeinen Justizdienstes) 중 보안 임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
> 1. 2016. 4. 4. 최종 개정된 「베를린주 형집행법(StVollzG Bln)」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지품 및 유치장(Vorführzellen)에 대한 수색 및 신체수색 권한(Recht auf Absuchung und Durchsuchung),
> 2. 「베를린주 형집행법」 제85조에 따른 체포권한(Festnahmerecht) 및
> 3. 「베를린주 형집행법」 제86조 내지 제87조에 따른 특별 보안조치 명령 권한(Recht auf Anordnung besonderer Sicherungsmaßnahmen).
>
> 형벌, 심리구속 또는 청소년형벌에 따른 피구금자 및 피수용자가 제26조 제2항에 따른 청사 내에서 도주하거나 그곳에서 탈출하도록 조력을 받는 경우, 해당 도주자가 청사 내에서 여전히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한, 제27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조치는 제3자에 대하여도 취해질 수 있다.

(가) 일반론

「베를린주 사법법」 제28조는 자유가 이미 제한된 사람들이 사법경위 또는 보안 임무를 부여받은 일반 사법부 공무원에게 인치된 이후, 그들의 법원청사 내 구금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법경위 또는 보안 임무를 부여받은 일반 사법부 공무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388]

또한 본 규정은 법원 밖에서 의학적 치료 등 피구금자의 긴급한 단기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법경위 및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389]

형벌 피구금자(이른바 '기결수')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형집행관(Justizvollzugdienst)

388) AbghBln-Drs. 18/2863, 71.
389) AbghBln-Drs. 18/2863, 71.

으로부터 사법경위에게 인치되는 경우, 해당 활동은 형집행(Justizvollzug)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형집행법의 규정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구금자가 형집행관으로부터 사법경위에게 인치되었다고 해서 그 구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경위의 권한이 형집행관의 권한보다 열등하여서는 안 된다.[390]

형집행시설(Justizvollzugsanstalte)에서 이미 발령된 보안 조치는 본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나) 규정내용

○ 피구금자에 대한 권한(Befugnisse gegenüber Gefangenen, 제1문)

제1문에 의하면, 사법경위 및 보안 임무를 위임받은 일반 사법부 공무원은 형벌, 심리구속, 청소년법원법에 따른 피구금자 및 피수용자에 대하여, 신체, 소지품 및 유치장에 대한 수색 권한(제1호), 체포 권한(제2호) 및 특별 보안조치 명령 권한(제3호)을 가진다.

○ 피구금자의 도주 상황에서의 권한(Befugnisse im Fall von Flucht der Gefangenen, 제2문)

제2문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가 도주하거나 탈출 조력을 받는 경우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신설 규정에 의해 해당 인물을 다시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주 또는 탈출과 관련 없는 제3자—주로 일반 방문자—를 법원청사 내에 일시적으로 유치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입법이유서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인물이 아직 법원청사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안에는 출입구를 폐쇄하고, 법원청사를 나가려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한다.[391]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다수의 무관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특히 고도의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야 하고, 상황이 해결되는 즉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392]

390) AbghBln-Drs. 18/2863, 71; SH-LT-Drs. 19/365, 113.
391) AbghBln-Drs. 18/2863, 71.
392) Graf, a.a.O., JustG Bln § 28, Rn. 8.

(4) 직접강제력의 사용(Anwendung unmittelbaren Zwangs, 제29조)

> 「베를린주 사법법」 제29조
>
> 사법경위 및 일반 사법부 공무원 중 보안 임무를 위임받은 자는, 1970. 6. 22. 제정되고 2021. 1. 22. 최종 개정된 「베를린주의 집행공무원에 의한 공권력 행사 시 직접강제력의 사용에 관한 법률(베를린주 집행공무원-강제력사용법)[Gesetz über die Anwendung unmittelbaren Zwanges bei der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urch Vollzugsbeamte des Landes Berlin(Vollzugsbeamten-Zwangsanwendungsgesetz), UZwG Bln]」의 규정에 따라 직접강제력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베를린주 사법법」 제29조에 따르면, 사법경위 및 보안 임무를 부여받은 일반 사법부 공무원은 집행의 일환으로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베를린주 사법법」 제27조, 제28조에서 규정된 권한들의 집행은 행정절차법상 조치에 해당하므로, 「베를린주 행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베를린주 행정절차법)[Gesetz über das Verfahren der Berliner Verwaltung(Verwaltungsverfahrensgesetz Berlin), BlnVwVfG]」 제8조 제1항[393]에 따라 이루어지나, 결국 본질적으로는 연방법인 행정집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베를린주 사법법」 제29조는 사법경위 및 보안 임무를 위임받은 일반 사법부 공무원이 같은 법 제27조, 제28조의 집행과정에서 직접강제력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직접강제력 사용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베를린주 집행공무원-강제력사용법」 제1조[394]를 참조하여야 한다.

---

393) 「베를린주 행정절차법」 제8조
① 베를린주 당국의 집행절차에는 2014. 11. 25. 법률 제1조로 최종 개정된 「행정집행법」이 적용된다. 「행정집행법」 제11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의 최고 금액이 5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적용된다. 「행정집행법」 제7조는 베를린주 경찰, 베를린주 각 구역청(Bezirksämter) 및 베를린주 교통공사(BVG)도 도로교통 관련 집행 조치에 대해서는 집행당국(Vollzugsbehörden)으로 간주된다는 조건으로 적용된다. 「행정집행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집행법」 제10조에 따른 집행 조치와 관련된 공무 수행에 대하여 1957. 5. 22. 제정되고 2009. 11. 18. 최종 개정된 「수수료 및 분담금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Gebühren und Beiträge)」에 따라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조건으로 적용된다.

394) 「베를린주 집행공무원-강제력사용법」 제1조 직접강제력 사용의 허용성
① 베를린주의 집행공무원은 그들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강제력을 사용할

직접강제력의 정의는 「베를린주 집행공무원-강제력사용법」 제2조를 참조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직접강제력은 물리적 폭력(körperliche Gewalt), 물리적 폭력 보조수단(Hilfsmittel der körperlichen Gewalt) 및 무기(Waffen)를 통해 사람이나 물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기서 ① '물리적 폭력'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작용을 의미한다(「베를린주 집행공무원-강제력사용법」 제2조 제2항). ② '물리적 폭력 보조수단'에는 특히 사슬(Fesseln), 최루제 및 마취제(Reiz- und Betäubungsstoffe), 공무수행견(犬)(Diensthunde), 공무수행마(馬)(Dienstpferde), 공무수행차(車)(Dienstfahrzeuge), 물대포(Wasserwerfer), 기술적 차단장치(technische Sperren), 그리고 폭파를 목적으로 하는 폭발성 물질(폭발물, Sprengmittel)이 포함된다(「베를린주 집행공무원-강제력사용법」 제2조 제3항). ③ '무기'는 허가된 총기[Schußwaffen; 권총(Pistolen), 리볼버(Revolver), 소총(Gewehre), 기관단총(Maschinenpistolen)], 타격 무기[Hiebwaffen; 곤봉(Schlagstöcke)] 및 원거리 전기충격기(Distanzelektroimpulsgeräte)이다(「베를린주 집행공무원-강제력사용법」 제2조 제4항).

집행공무원의 정의는 「베를린주 집행공무원-강제력사용법」 제3조 제3호를 참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베를린주의 집행공무원에는 사법경위 및 보안임무를 위임받은 일반 사법부 공무원도 포함된다.

(5) 비례성, 적용 가능한 규정, 기본권의 제한(Verhältnismäßigkeit, anwendbare Vorschriften,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제30조)

「베를린주 사법법」 제30조

① 여러 가지 가능하고 적절한 조치 중에서 개인 또는 개인과 일반 대중에게 예상되는 피해가 가장 적은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조치는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명백히 불균형한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조치는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질

수 있고, 이러한 강제력의 사용은 법률, 특히 2016. 4. 21. 최종 개정된 「베를린주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

② 직접강제력 사용의 방식과 절차는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

③ 다른 법률에 직접강제력의 사용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 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까지만 허용된다.

② 「법원조직법」 제176조 이하의 규정, 다른 규정에 근거한 사법경위의 권한 및 경찰과 형집행관의 임무와 권한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 및 인신의 자유(「기본법」 제2조 제2항 제2문)는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해 제한된다.

(가)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 제1항)

「베를린주 사법법」 제30조 제1항은 일반적인 헌법상 비례 원칙의 특별한 표현으로, 기본권에 대한 개입 시 이러한 비례성 요건 검토의 특별한 중요성을 분명히 한다. 또한 본 규정은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있어서 비례성 요건 검토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목적도 가진다.[395]

(나) 적용 가능한 규정(Anwendbare Vorschriften, 제2항)

「베를린주 사법법」 제30조 제2항은, ① 연방법인 법원조직법 제176조 이하의 규정, ② 다른 규정에 근거한 사법경위의 권한 및 ③ 경찰 및 형집행관(Justizvollzugdienst)의 임무와 권한이 앞서 본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396]이다. 특히 연방법상의 규정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규정들 사이에 중복 적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에 대응하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법경위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가령 형법전 제32조[397]에 따른 정당방위 및 긴급구조 권리(Notwehr- bzw. Nothilferecht)와 형사소송법 제127조에 따른 임시체포에 관한 권리(Recht zur vorläufigen Festnahme)를 직접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398]

395) AbghBln-Drs. 18/2863, 72.
396)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사법법」 제13조 제3항, 「작센주 사법법」 제18조 제5항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397) 형법전 제32조[정당방위(Notwehr)]
① 정당방위로 인하여 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피하는 데 필요한 방위행위이다.
398) AbghBln-Drs. 18/2863, 72.

(다) 기본권의 제한(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제3항)

「베를린주 사법법」 제30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통해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기본권과 인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예컨대, 직접강제력의 행사나 유치(Ingewahrsamnahme) 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399]

(6) 집행정지 효력의 배제(Wegfall der aufschiebenden Wirkung, 제31조)

「베를린주 사법법」 제31조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명령 및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본 규정은 행정법원법 제80조 제2항 제1문 제3호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의 배제를 명시하고 있다. 본 규정은 사법기관 청사 내의 안전 구역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다.

어차피 「베를린주 사법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명령 및 조치는 일반적으로 긴급성을 요하고 즉시 집행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행정법원법 제80조 제3항 제1문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서면상' 근거제시가 요구되는 '즉시집행 명령'을 병행하여 발령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경찰공무원이 내리는 긴급 명령 및 조치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원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연기할 수 없는 명령과 경찰 집행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집행정지 효력이 배제된다.[400]

특히 건물출입금지 조치를 제외한 「베를린주 사법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모든 상황은, 본질적으로 매우 긴급하여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즉 즉시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401] 한편 건물출입금지 조치의 경우에도, 실무상으로는 즉시집행 명령을 함께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불복수단의 제기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베를린주 사법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명령 및 조치 중 실무적으로 어

399) AbghBln-Drs. 18/2863, 72.
400) Graf, a.a.O., JustG Bln § 31, Rn. 2.
401) AbghBln-Drs. 18/2863, 73.

차피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행정법원법상 집행정지 효력이 배제되기는 하나, 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특히 사법경위로 하여금 매번 '이 조치가 즉시 집행되어야 하는 사안인지', 혹은 '별도로 서면에 의한 즉시집행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다.[402]

나) 니더작센주 – 「니더작센주 사법법(NJG)」

(1) 규율범위, 기본권의 제한 (Regelungsbereich,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제12조)

>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2조
>
> ① 이 장은 법원 및 검찰청의 사법경위 및 경위직렬(Wachtmeisterdienst)에 있는 사법부 직원(Justizangestellte)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는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의 집행, 유치의 확보(Gewahrsamssicherung), 주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
> ② 이 장은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 및 제2문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기본권 및 인신의 자유)을 제한한다.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4장(법원 및 검찰청 직원의 보안 및 질서유지 권한)의 제12조 내지 제21조는 사법기관 청사 내 보안의 유지 조치를 위한 사법부 직원들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가) 규율의 필요성

입법설명서에 따르면, "투명하고 시민 친화적이며 공공에 대한 원칙을 중시하는 사법제도는 […] 법원의 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을 해치려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수반한다".[403]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한 및 그 행사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402) Graf, a.a.O., JustG Bln § 31, Rn. 4.
403) LT-Drs. 17/1585, 75.

(나) 규율범위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2조 제1항은 인적 및 물적 적용범위를 규정하는데, 오직 법원과 검찰청의 사법경위 및 경위직렬에 있는 사법부 직원들에게만 보안 및 질서유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초안에서는 제12조 제1항에 "법원 및 검찰청의 직원"이라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인원을 포함하고 있었으나,[404] 이후 입법절차에서 주 의회의 '법률 및 헌법 현안을 위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405] 공권력의 행사는 이를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채택되었다.[406]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4장에 규정된 각종 권한은 법정 근무업무, 구인업무, 사법행정의 주거권이 적용되는 청사부지 내의 보안과 질서유지 및 법원 또는 검찰의 명령 집행 등의 임무 수행에 이용될 수 있다.[407]

이는 형집행당국이나 경찰당국의 관할 범위와 구분되는데, 그 구분 경계는 조치 대상자가 사법부 직원에게 인치되거나 사법부의 주거권이 미치는 청사부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조치 대상자의 인치 이후에도 형집행관이나 경찰관의 행정협조(Amtshilfe) 제공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408]

(2) 정의(Begriffsbestimmungen, 제13조)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3조

이 장의 의미 내에서

1. 직접강제력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물리적 폭력, 그 보조수단 및 접이식곤봉(Teleskopschlagstöcke)을 통한 영향력을 뜻하고,

2. 물리적 폭력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가해지는 모든 직접적인 신체적 작용을 뜻하며,

3. 물리적 폭력 보조수단이란 특히 사슬(Fesseln) 및 공식적으로 승인된 최루제 및 마취제(Reiz- und Betäubungsstoffe)를 뜻한다.

404) LT-Drs. 17/1585, 11, 76.
405) LT-Drs. 17/2507, 3.
406) LT-Drs. 17/1585, 76.
407) LT-Drs. 17/1585, 76.
408) Graf, a.a.O., NJG § 12, Rn. 3.

본 규정은「니더작센주 사법법」제4장의 법률상 정의 규정이다.

법률 초안에서는「니더작센주 사법법」제13조 제2호 말미에 '무기(Waffen)'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 의회의 '법률 및 헌법 현안을 위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409] 보다 구체적인 표현인 '접이식곤봉(Teleskopschlagstöcke)'으로 대체되었다.

「니더작센주 사법법」제13조 제3호는 물리적 폭력 보조수단으로, 사슬 및 허가된 최루제 외에도「니더작센주 형집행법(Niedersächsisches Justizvollzugsgesetz, NJVollzG)」제88조[410]를 참고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된 마취제도 포함하였다. 따라서 마취제는 사전 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만 사용할 수 있고, 투여량은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 원칙은 아래에서 살펴볼「니더작센주 사법법」제18조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411]

(3)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의 집행 (Vollstreckung sitzungspolizeilicher Maßnahmen, 제14조)

> 「니더작센주 사법법」제14조
>
> 연방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법원 및 검찰청의 사법경위와 경위직렬에 있는 사법부 직원은「법원조직법」제176조, 제177조 및 제180조에 따라 발령된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법원 및 검찰청의 사법경위와 경위직렬에 있는 사법부 직원은 그 과정에서 제18조 내지 제21조에 따라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가) 규율의 필요성

법정경찰권은 연방 입법자에 의해 법원조직법 제176조 이하에 규정되었다. 따라서 각 연방주는 법정경찰권에 대하여 나머지 입법 공백에 대해서만 입법권을 갖는다.

---

409) LT-Drs. 17/2457, 14; LT-Drs. 17/2507, 3.

410)「니더작센주 형집행법」제88조(정의)
① 직접강제력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물리적 폭력, 그 보조수단 또는 무기(Waffen)를 통한 영향력을 뜻한다.
② 물리적 폭력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모든 직접적인 신체적 작용을 뜻한다.
③ 물리적 폭력 보조수단은 특히 사슬, 공무수행견 및 최루제 및 마취제를 뜻한다.
④ 무기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타격무기 및 총기(Hieb- und Schußwaffen)를 뜻한다.

411) Graf, a.a.O., NJG § 13, Rn. 2.

(나) 규율영역

니더작센주 입법자는 재판장 또는 법원장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있어 연방법상의 규정이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즉 지금까지는 대체로 별다른 법률상 근거 없이, 관련 집행이 사법경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았다.[412] 그러나 이러한 집행에 수반되는 기본권 제한 조치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수적이지만, 연방법인 법원조직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413]

(4) 유치의 확보(Sicherung des Gewahrsams, 제15조)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5조

① 법원 및 검찰청의 사법경위와 경위직렬에 있는 사법부 직원은 판사 또는 검사의 명령이나 형집행시설의 요청에 따라 사람을 공적으로 유치할 권한을 가진다. 이때 법원 및 검찰청의 사법경위와 경위직렬에 있는 사법부 직원은 유치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특히 제18조 내지 제21조에 따라서 직접강제력을 이용할 수 있다. 제2문에 따른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검찰청의 유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경우, 결박될 수 있다.

1. 타인을 공격하거나, 저항하거나, 물건을 파손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도주하거나, 탈출 조력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3. 자해하거나 자살할 위험이 있는 경우.

피구금자를 구인(Vorführung) 또는 호송할 때 단순한 감독만으로 도주를 막기에 불충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결박은 허용된다. 「니더작센주 형집행법」 제83조를 준용한다.

③ 법원 및 검찰청의 사법경위와 경위직렬에 있는 사법부 직원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안전의 확보를 위해, 법원의 유치장(Haftraum)을 영상 전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감시 대상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영상 전송을 통한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412) LT-Drs. 17/2507, 3; 법률이 아닌 「형사절차 및 과태료절차를 위한 지침(Richtlinien für das Strafverfahren und das Bußgeldverfahren Richterdienstordnung, RiStBV)」 제128조 제3항 제1문("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공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법경위의 지원을 받는다.")이 단적인 예이다.

413) Graf, a.a.O., NJG § 14, Rn. 2.

(가) 구인(Vorführung, 제1항)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5조 제1항 제1문에서는 판사 또는 검사의 구인명령에 따른 구인업무(Vorführdienst)의 적용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니더작센주 형집행법」 제14조 제3항[414] 제3문에 따라 피구금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형집행시설에 있으나, 개별 사안에서는 사법경위가 행정협조(Amtshilfe)의 형태로 요청을 받는다.[415]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5조 제1항 제2문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경위와 경위직렬에 있는 사법부 직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히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1조에 따른 직접강제력의 행사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행정행위(Justizverwaltungsakte)에 해당하므로,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5조 제1항 제3문에서는 베를린주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불복수단이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나) 결박(Fesselung, 제2항)

피구금자가 자신, 타인 또는 물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결박이 허용된다. 이는 도주위험(Fluchtgefahr)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호송 중이거나 구인되는 경우, 도주위험이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해당인에 대한 단순한 감시만으로는 도주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에도 결박이 허용된다.[416]

결박의 실제 집행방식에는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5조 제2항 제3문에 따라 「니더작센주 형집행법」 제83조[417]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결박은 원칙적으로 손 또는 발에 한정되지만, 피구금자의 이익을 고려해 다른 방식의 결박이 명령 될 수도 있다.

414) 「니더작센주 형집행법」 제14조(중요한 사유로 인한 외출, 휴가 및 석방)
③ 피구금자가 법원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외출이나 휴가를 신청한 경우, 출석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외출이나 휴가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구금자의 동의가 있는 한 동행하여 외부로 인치할 수 있다. 법원 또는 검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구금자를 인치하여 출석시켜야 한다.

415) Graf, a.a.O., NJG § 15, Rn. 1.

416) Graf, a.a.O., NJG § 15, Rn. 3.

417) 「니더작센주 형집행법」 제83조(결박)
제8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박은 손 또는 발에만 시행되어야 한다. 손 또는 발 외의 방식으로 결박하는 것은, 그 방식이 피구금자에게 덜 부담이 되는 경우이거나, 제81조 제2항 제1문 또는 제4항에 명시된 위험을 다른 방법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결박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다) 영상감시(Videoüberwachung, 제3항)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5조 제3항은 법원의 유치장(Haftraum)에서 피감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의 영상감시—공개된 감시—를 통한 데이터 수집을 허용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감시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또는 법원 유치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피구금자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감시는 피구금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감시를 통해 경련이나 실신 같은 급성 건강 문제, 약물 중독자의 금단 증상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빠른 개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범죄예방(가령 재물손괴) 측면에서도 감시카메라는 사람 육안에 의한 정기적인 시각적 통제보다 더 억제 효과가 크다.[418]

그러나 전송된 영상의 저장(녹화)은 허용되지 않는다.[419] 마찬가지로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5조 제3항 제2문에 따르면, 피감시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 감시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보호이익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420]으로부터 도출되는 피의자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구두로 접견교통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421]

(5) 수색(Durchsuchung, 제17조)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7조
남성에 대한 수색은 남성만이, 여성에 대한 수색은 여성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기술 장비를 사용하여 수색하거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수치심은 존중되어야 한다.

본 조항은 수색의 집행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한다.

418) LT-Drs. 17/1585, 79.
419) '법률 및 헌법 현안을 위한 위원회'; LT-Drs. 17/2507, 4.
420) 형사소송법 제148조(피의자와 변호인의 소통)
① 피의자는 구금 중에도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허용된다.
421) Graf, a.a.O., NJG § 15, Rn. 7.

본 조항은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수색을 이성(異性)의 직원이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수치심을 배려해야 한다.

(6)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 제18조)

>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8조
> ① 직접강제력은 의도된 목적이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 ②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당사자 및 일반 대중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접이식곤봉(Teleskopschlagstock)은 물리적 폭력이나 그 보조수단이 효과가 없거나 애초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직접강제력의 행사는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명백히 불균형한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직접강제력은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만 허용된다.

본 규정은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4조 이하 조항들에 따른 조치의 집행과 관련하여, 직접강제력의 행사에 적용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가) 일반조항(제1항)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8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르면, 직접강제력은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만 행사될 수 있다.

(나) 수단의 선택(Auswahl der Mittel, 제2항)

조치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경미한 수단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례의 원칙의 핵심 요소이다.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3조 제1호에서 이미 규정된 바와 같이, 사법부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는 오직 '접이식곤봉'만이 허용되며, 다른 종류의 곤봉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422]

422) Graf, a.a.O., NJG § 18, Rn. 3.

(다) 기한(Zeitgrenze, 제3항)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직접강제력은 의도된 목적이 아직 달성 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즉 직접강제력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달성될 수 없는 경우, 그 직접강제력의 사용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7) 경고(Androhung, 제19조)

>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9조
>
> 직접강제력의 사용은 사전에 경고되어야 한다. 상황상 허락되지 않는 경우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를 방지하거나 현존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직접강제력을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경고가 생략될 수 있다. 직접강제력의 경고에 대한 불복수단은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본 조항은 직접강제력 사용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다룬다.

직접강제력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9조 제3문은 직접강제력의 경고에 대한 불복수단이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8) 명령에 따른 행위(Handeln auf Anordnung, 제20조)

>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20조
>
> ① 직접강제력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법원 및 검찰청의 직원은 명령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명령에 따라 직접강제력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이는 그 명령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무상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 ② 만일 명령을 따르는 것이 범죄행위를 구성하게 되면, 그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직원이 명령을 따랐을 경우, 그 명령으로 인해 범죄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그가 인식했거나 또는 그에게 알려진 정황상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 ③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은 상황이 허락되는 한 명령자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④ 「공무원지위법(Beamtenstatusgesetz, BeamtStG)」 제36조[423]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명령구속성(Weisungsgebundenheit)을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항을 명시한다.

(가) 명령구속성(Weisungsgebundenheit, 제1항 제1문)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20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직접강제력의 사용권한이 있는 직원은 명령권한(Anordnungsbefugnis)을 가진 자가 내린 직접강제력 사용 명령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사용권한을 가진 직원의 범위는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2조 제1항에서 법원 및 검찰청의 사법경위와 사법보조원(Justizhelfer)으로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각 개별 조항에서도 해당 권한이 어떻게 규율되는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들은 누가 명령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나) 예외사항(Ausnahmen, 제1항 제2문 및 제2항)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20조 제1항 제2문에 따르면, 명령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무상 목적이 아닌 동기에서 내려졌을 경우, 해당 명령에는 복종의무가 없다. 후자는 예를 들어 사적인 목적이 추구될 때를 의미한다.[424]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20조 제2항 제1문은 만일 명령을 따르는 것이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비록 정당화되지 않는 범죄행위라도, 직원이 그 범죄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시의 상황상 그 범죄성이

423) 「공무원지위법」 제36조 적법성에 대한 책임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전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의 적법성에 의구심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명령이 유지되더라도 의구심이 계속되는 경우, 다음 상급자에게 이를 다시 보고해야 한다. 명령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은 그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자신의 책임에서 면제된다. 다만 그 행위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질서위반에 해당하며, 그리고 그러한 위법성이 공무원에게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명령의 확정은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명령의 즉시이행이 요구되고, 상급자의 판단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제2항 제3문 및 제4문을 준용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요청하면, 명령자는 해당 명령을 사후에 서면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24) Graf, a.a.O., NJG § 20, Rn. 2.

명백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면책된다(「니더작센주 사법법」 제20조 제2항 제2문).

본 조항—제4항에 의하여 그 적용이 명시적으로 배제된 「공무원지위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과 달리—은 경범죄(Ordnungswidrigkeiten)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명령을 따르는 것이 경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복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425]

만일 위법하나 구속력 있는 명령을 따른 경우, 해당 명령에 구속되는 집행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 공무행위 자체로서 이루어진 국가의 강제조치는 여전히 위법일 수 있다. 즉, 불법적인 명령은 해당 강제조치의 적법성 요건을 면제시킬 수 없다.[426]

(다) 항의(Remonstration, 제3항)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직원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을 경우 이를 명령권자에게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명령권자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20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명령은 이행되어야 한다.

상황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명령은 즉시 구속력을 갖는다.

(라) 적용 배제(Anwendungsausschluss, 제4항)

공무원지위법 제36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이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9) 구조조치(Hilfeleistung, 제21조)

「니더작센주 사법법」 제21조
직접강제력의 사용으로 인해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 필요하고 상황이 허락되는 한 조력을 제공하고 의료적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본 규정은 직접강제력의 사용으로 인해 사람이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425) Graf, a.a.O., NJG § 20, Rn. 4.
426) Graf, a.a.O., NJG § 20, Rn. 5.

직원에게 구조조치를 제공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본법 제34조[427] 및 민법전 제839조[428]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형법전 제340조[429] 및 제13조[430]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431]

구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황이 허락되는 한 제공되어야 한다. 구조의 필요성은 부상의 정도와 구조의 가능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구조상황이 허락된다고 함은, 인명 보호와 같은 더 중대한 이익(가령 구조조치 의무가 있는 사람 본인의 생명 보호 등)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한편 증거 확보의무 및 보고 의무는 구조의무보다 후순위이다.[432]

427) 기본법 제34조
위임받은 공무의 수행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그가 근무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유보된다. 손해배상의 청구권과 구상권에 대하여 법적 수단(Rechtsweg)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428) 민법전 제839조(공무위반에 대한 책임)
①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직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무원에게 과실책임만 있는 경우, 피해자는 다른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판단을 내릴 때 직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직무 위반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적 수단(Rechtsmittel)을 통해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429) 형법전 제340조[공무 중 상해(Körperverletzung im Amt)]
①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가하도록 한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중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24조 내지 제229조는 제1항 제1문에 따른 범죄행위에 준용된다.

430) 형법전 제13조[부작위범(Begehen durch Unterlassen)]
①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사람은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법적 책임이 있고 부작위가 작위로 인한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② 형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431) Graf, a.a.O., NJG § 21, Rn. 1.

432) Graf, a.a.O., NJG § 21, Rn. 2.

다) 작센주 –「작센주 사법법(SächsJG)」

(1) 사법경위의 권한(Befugnisse der Justizwachtmeister, 제42조)

「작센주 사법법」 제42조

① 사법경위 직원은 법정 근무업무 또는 구인업무, 피구금자(Gefangener) 감시, 사법청사 및 그 인접 지역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 및 판사 또는 검사 명령의 집행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1976. 3. 16. 제정되고 2015. 8. 31. 최종개정된「형집행법」제88조, 제94조 내지 제98조 및 제178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수감자에 대한 직접강제력 행사 권한 및

2.「작센주 경찰집행직무법(Sächsisches Polizeivollzugsdienstgesetz, SächsPVDG)」에 따라 총기 사용을 제외하고 직접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경찰관이 기타 인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한.

② 사법경위 직원은 제1항에 명시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안전의 침해를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피구금자는 판사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④ 다른 규정에 따른 직접강제력 행사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경찰 및 형집행관의 임무와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 법원 및 검찰청에서의 법정 근무업무 및 구인업무는 주로 사법경위에 의해 수행된다.

(가) 사법경위의 권한(Befugnisse der Justizwachtmeister)

「작센주 사법법」 제42조 제1항은 사법경위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법정 근무업무 및 구인업무(Sitzungs- und Vorführdienst)

본안재판이나 기타 기일에서의 임무 수행 시와 사법기관 청사 내에서의 피구금자 구

인 및 감독 시, 사법경위는 ① 피구금자에 대해서는 형집행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제1호), ② 기타 인물에 대해서는 「작센주 경찰집행직무법」에 따라 '총기 사용을 제외하고' 경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제2호).

ㅇ 피구금자 감시(Bewachung von Gefangenen)

사법경위는 피구금자를 감시할 때, 「작센주 사법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피구금자에 대해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ㅇ 사법기관 청사 및 그 인접 지역의 안전과 질서유지(Aufrechterhaltung der Sicherheit und Ordnung in Justizgebäuden und deren unmittelbarem räumlichen Umfeld)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법경위는 피구금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예컨대 사법기관 청사 방문자의 소란 행위나 청사 내·외부에서의 기물파손 행위에 대하여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적인 인접 구역'에는 특히 사법기관 청사의 출입구, 안뜰 및 그에 인접한 외부 구역이 포함된다.

비록 기물파손 행위는 사법경위의 근무시간이 아닐 때 청사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주로 야간에 청사 밖에서 출입문에 돌을 던지거나 둔기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는 경우—가 많지만, 본 규정은 사법경위가 근무 중일 때에는 청사의 외부 구역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433]

그러나 입법자는 본 규정을 통해 사법경위를 시설경비 업무에 더 많이 투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434]

ㅇ 판사 또는 검사의 명령의 집행

(Vollziehung richterlicher oder staatsanwaltschaftlicher Anordnungen)

사법경위는 앞에서 언급된 임무 범위 외에도 판사 또는 검사의 명령을 집행해야 할

433) Graf, a.a.O., SächsJG § 42, Rn. 8.

434) Entwurf der Staatsregierung zum Gesetz zur Änderung des Sächsischen Justizgesetzes und des Richtergesetzes des Freistaates Sachsen vom 13.6.2016, Drs. 6/5387.

경우, 피구금자뿐만 아니라 기타 인물에 대해서도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해당 명령의 집행을 위해 직접강제력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예로는 법정 밖에서의 질서유지 조치(법원조직법 제180조, 제177조), 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질서제재수단 집행(법원조직법 제178조)과 판사 또는 검사의 구인명령(형사소송법 제134조,[435] 제163a조 제3항[436] 제2문) 및 방해행위자(Störer)에 대한 체포명령(형사소송법 제164조[437]) 등이 있다.[438]

(나) 권한의 제한(Beschränkung der Befugnisse)

사법경위의 직접강제력 사용권한은 각각의 임무 목적에 의해 제한되므로, 구체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직접강제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439]

「작센주 사법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그 권한의 내용은 형집행법 및 「작센주 경찰집행직무법」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총기 사용 권한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다) 금지된 물건의 압수 권한(Befugnis zur Beschlagnahme verbotener Gegenstände)

「작센주 사법법」 제42조 제2항은 2016. 12. 13.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경위는 법률상 금지된 물건을 압수할 명시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사법경위가 다른

435) 형사소송법 제134조[구인(Vorführung)]
① 피의자의 즉시 구인은 구속명령의 발령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구인명령에서는 피의자를 정확히 표시하고 그에게 책임이 지워진 범행과 구인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436) 형사소송법 제163a조(피의자의 신문)
③ 피의자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133조 내지 제136a조 및 제168c조 제1항, 제5항을 준용한다. 구인의 적법성은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제162조에 따른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6조 내지 제309조, 제311a조와 제473a조를 준용한다. 법원의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

437) 형사소송법 제164조(방해행위자의 체포)
현장에서의 직무집행 시, 직무를 지휘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공적인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를 체포하고, 자신의 직무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다만 그다음 날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금할 권한이 있다.

438) Graf, a.a.O., SächsJG § 42, Rn. 10.

439) Graf, a.a.O., SächsJG § 42, Rn. 11.

임무의 수행 중에 해당 물건을 인지한 경우에 적용된다.[440]

이 권한은 사법청사 및 그 외부 인접 영역을 벗어난 방문자로부터 금지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법경위는 사법청사 및 그 주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압수한 금지 물건을 해당 피압수자가 청사를 떠난다고 해서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441]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해당 피압수자가 법원청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베를린주, 니더작센주의 해당 규정과 차별화된다.

(라) 직접강제력에 관한 다른 규정

「작센주 사법법」 제42조 제4항은 사법경위가 본 규정 이외의 다른 법 규정에 따라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작센주 사법법」 제42조 제5항에 따르면, 사법경위에게 부여된 직접강제력 사용 권한과 별개로 형집행관과 경찰관의 권한은 유지된다. 이를 통해 경찰관과 형집행관 또한 사법청사 내 · 외부에서 행정협조(Amtshilfe)의 방식 등으로 직접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장된다.

라) 바이에른주 – 「바이에른주 사법안전 및 질서법상 권한법(BayJSOG)」

「바이에른주 사법안전 및 질서법상 권한법」

제1조

① 사법부 직원(Justizbedienstete)은 「바이에른주 형집행법(Bayerisches Strafvollzugsgesetz, BayStVollzG)」 또는 「형집행법」에 따라 이미 직접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법정업무 또는 피구금자 구인업무 시,

피구금자의 감시업무 시,

공공청사(Amtsgebäude)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 시,

판사 또는 검사의 명령의 집행업무 시.

440) Graf, a.a.O., SächsJG § 42, Rn. 13.

441) Entwurf der Staatsregierung zum Gesetz zur Änderung des Sächsischen Justizgesetzes und des Richtergesetzes des Freistaates Sachsen v. 13.6.2016, Drs. 6/5387, Begründung zu Artikel 1 Nr. 20.

이때 구체적인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구금자에 대해서는「바이에른주 형집행법」제101조 내지 제108조, 제122조 또는「형집행법」제94조 내지 제101조 및 제178조에 따른 직접강제력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2. 기타 일반인에 대해서는「바이에른주 경찰임무법(Polizeiaufgabengesetz)」에 따라 직접강제력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언급하는 피구금자는 판사 또는 이에 적합한 권한을 지닌 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공적 구금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③ 다른 규정에 근거한 직접강제력에 관한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조

이 법에 근거하여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기본권, 인신의 자유 및 주거의 불가침성에 관한 기본권(「기본법」제2조 제2항 제1문, 제2문, 제13조,「바이에른주 헌법(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BV)」제102조 제1항, 제106조 제3항)이 제한될 수 있다.

제3조

① 이 법은 1977. 5. 1.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마)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사법경위권한법(BWJWBG)」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사법경위권한법」

제1조 적용범위(Anwendungsbereich)

① 사법경위는 피구금자의 구인, 피구금자 감시, 법원 및 검찰청의 안전과 질서유지, 판사 또는 검사의 명령 집행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다.

② 공공청사(Amtsgebäude)에서의 주거권자(Hausrechtsinhaber)의 권한 및 다른 규정에 따른 사법부 직원(Justizbedienstete)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정경찰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연방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

③ 경찰 및 형집행관의 임무 및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조 일반적 권한(Allgemeine Befugnisse)

사법경위는 개별 사안에서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상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법」의 적용(Anwendung des Polizeigesetzes)

① (제1문 생략) 보관 또는 압수된 물건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이루어진 날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경찰에 인계되어야 한다.

②「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법」제33조를 준용하되, 유치된 자는 석방이 바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경찰에 인계되어야 한다.

제4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형집행법전」의 적용(Anwendung des Justizvollzugsgesetzbuches)

(생략)

제5조 당사자(Betroffene)

달리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조치는「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법」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명시된 자에 대하여 취해질 수 있다.「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법」제8조, 제10조, 제100조 내지 제103조가 준용된다.

제6조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의 배제; 이의신청결정(Wegfall der aufschiebenden Wirkung von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Widerspruchsbescheid)

① 사법경위의 지연될 수 없는 명령과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Widerspruch) 및 취소소송(Anfechtungsklage)은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 사법경위의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Widerspruch)은 해당 행정행위를 발령한 기관이 결정한다.

제7조 집행(Vollstreckung)

달리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조치의 집행은「바덴-뷔르템베르크주 행정집행법(Landes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LVwVG)」에 따른다.

제8조 강제수단(Zwangsmittel)

사법경위는 대체집행(Ersatzvornahme) 및 직접강제력의 강제수단을 사용한다.

제9조 직접강제력(Unmittelbarer Zwang)

① 직접강제력(「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경찰법」제64조 제1항)은 해당 임무를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경찰법」제66조 제1항 제2문 내지 제4문,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② 물리적 폭력의 보조수단로서, 특히 사슬(Fesseln)과 기술적 차단장치(technische

Sperren)가 승인된다. 무기(Waffen)로서, 최루제(Reizstoffe) 및 타격무기(Hiebwaffen)가 승인된다. 법무부(Justizministerium)는 물리적 폭력의 보조수단과 무기의 승인에 관하여 무기사용을 위한 특별교육도 미리 대비한 행정지침(Verwaltungsvorschrift)을 통해 결정한다.

제10조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

가능하고 적절한 여러 조치들 가운데에서는, 개인과 일반 대중에게 가장 적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만일 그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명백하게 불균형할 경우, 해당 조치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기본권의 제한(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이 법에 근거하여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기본권과 인신의 자유(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 및 제2문)가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 효력발생(Inkrafttreten)

이 법은 2013. 6. 1.부터 발효된다.

나. 사법경위의 채용과 직업교육(Ausbildung)

1) 서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법경위제도의 법적 규율이 주로 연방주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위의 채용과 직업교육의 실무도 각 연방주법에 근거하여 연방주별로 행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연방주들 간 사법경위의 채용과 직업교육의 전체적인 체계는 대동소이한바, ① 공고 및 지원 → ② 예비직(Vorbereitungsdienst)으로서 조건부 임용 → ③ 예비직 기간 동안 '사법경위직 후보자'로서 실무(실습)적 직업교육 및 시험 등 평가 → ④ 이론적 직업교육 및 시험 등 평가 → ⑤ 성적에 따라 사법경위직 경력 자격의 취득을 위한 합격/불합격 → ⑥ 불합격시 재교육 가능성 등의 순서로 개관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독일의 연방주에서 사법경위의 채용과 직업교육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입법화한 베를린주, 헤센주 및 브란덴부르크주의 각 행정명령(Verordnung)을 항목별로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① 베를린주의 경우, 「베를린주 사법경위직 및 일반 사법부 직원의 경력분야를 위한 자격에 관한 행정명령(사법자격행정명령)[Verordnung über die Qualifizierung

für die Laufbahnzweige des Justizwachtmeisterdienstes und des allgemeinen Justiz dienstes-Qualifizierungsverordnung Justiz(Qualifizierungsverordnung Justiz), QVO-Just)], ② 헤센주의 경우, 「헤센주 사법경위직의 경력을 위한 직업교육명령(사법경위-직업교육명령)[Ausbildungsordnung für die Laufbahn des Justizwachtmeisterdienstes (Justizwachtmeister-Ausbildungsordnung), JWAO], ③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직의 경력을 위한 직업교육 및 시험에 관한 행정명령(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직 직업교육 및 시험명령)[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und Prüfung für die Laufbahn des Justizwachtmeisterdienstes im Land Brandenburg(Ausbildungs- und Prüfungsordnung Justizwachtmeisterdienst Brandenburg), APOJWDBbg]이 각각 사법경위의 채용과 직업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2) 공고 및 지원, 예비직(Vorbereitungsdienst)으로서 조건부 임용

「베를린주 사법자격행정명령」

제1조 예비직의 목적, 자격의 취득(Ziel des Vorbereitungsdienstes, Erwerb der Befähigung)

③ 사법경위의 경력분야를 위한 자격은 「베를린주 공무원경력법(Laufbahngesetz- LfbG)」 제7조 제1항 제2호 b목에 따른 예비직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다.

제2조 허가요건(Zulassungsvoraussetzungen)

예비직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것,
2. 「베를린주 학교법(Schulgesetz-SchulG)」 제21조[442] 제1항 제2문 제1호에 따른 최소

442) 「베를린주 학교법」 제21조(일반규정)
① 1차 중등교육(Sekundarstufe I)은 졸업자격(Abschluss)으로 끝난다. 졸업자격에는 다음 각호가 있다;
1. 직업교육자격(Berufsbildungsreife),
2. 확대된 직업교육자격(erweiterte Berufsbildungsreife) 및
3. 중등학교 졸업자격(mittlerer Schulabschluss)
② 확대된 직업교육자격과 중등학교 졸업자격은 졸업절차(Abschlussverfahren)를 통해 취득한다. 이 자격들은 10학년(Jahrgangsstufe)의 학업평가와 최소한 독일어(Deutsch), 수학(Mathematik), 제1외국어(erste Fremdsprache) 과목에서의 시험으로 구성된다.
③ 제2항과 달리, 김나지움(Gymnasium)에서는 10학년이 끝날 때 확장된 직업교육자격(Erweiterte Berufsbildungsreife)과 중등학교 졸업자격(Mittlerer Schulabschluss)이 오직 10학년의 학업

한의 직업교육자격(Berufsbildungsreife) 또는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보유할 것 및

3. 사법경위에 요구되는 특별한 건강 요건 및 인격적 적합성을 갖출 것.

제3조 임용 및 고용 관계(Einstellung und Dienstverhältnis)

① 베를린고등법원(Kammergericht, 임용 및 직업교육 당국)의 장은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자의 임용에 대하여 선발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임용당국은 선발된 지원자를 조건부 공무원 관계(Beamtenverhältnis auf Widerruf)로 임용하여 사법수석경위후보자(Justizhauptwachtmeisteranwärter)로 임명한다. 사법수석경위후보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후보자급여(Anwärterbezüge)를 지급받는다.

② 지원자는 건강 적합성 확인을 위해 임용당국이 지정한 의료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헤센주 사법경위-직업교육명령」

제2조 임용요건(Einstellungsvoraussetzungen)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법경위의 경력을 위한 예비직에 임용될 수 있다.

1. 공무원관계에서의 임명을 위한 공무원법상 요건을 충족할 것,

2. 중등학교(Hauptschule)를 성공적으로 졸업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사법경위직에 필요한 건강상의 적격성을 갖추었거나,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으로서 사법경위 공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 적격성을 보유할 것 및

4.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나이 또는 2009. 9. 16. 제정되고 2012. 3. 15. 최종개정된 「군인원호법(Soldatenversorgungsgesetz)」 제7조 제6항[443]에 따른 예외가 적용될 것.

제3조 공고, 지원(Ausschreibung, Bewerbungen)

① 지원자는 채용공고(Stellenausschreibung)를 통해 모집된다.

평가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443) 군인원호법 제7조[기간제군인(Soldat auf Zeit)의 학업 및 직업 교육 지원
⑥ 제5항에 따른 지원기간(Förderungsdauer)은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단축된다. 복무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기간제군인의 경우, 제7항 내지 제9항에 따른 단축 범위가 50퍼센트 감소된다. 제5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전역 직후 바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역 후 7년 이내에도 사용할 수 있고, 복무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기간제군인의 경우 전역 후 8년 이내에도 이용 가능하다.

② 지원서는 해당 직책을 공고한, 사법당국의 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③ 지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이력서(Lebenlauf),

2. 제2조 제2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서류,

3. 학교졸업(Schulentlassung) 이후의 재직에 관한 증명서,

4. 지원자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와 가지고 있다면, 채무의 종류 및 금액을 명시한 진술서 및

5. 지원자에게 형사소송절차나 검찰의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명시한 진술서.

또한, 임용이 예정된 지원자는 요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2008. 7. 17. 제정되고 2009. 2. 5. 최종개정된「공무원지위법」제7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국적(Staatsangehörigkeit)의 증명서,

2. 출생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증명서 및 자녀의 출생증명서,

3. 공무원의사의 건강진단서(Gesundheitszeugnis) 및

4. 관청 제출용으로 발급된 신원조회서(Führungszeugnis).

제1문 제2호 및 제3호, 제2문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증된 사본 제출로 충분하다.

④ 이미 사법부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지원자는 공식 경로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가 인사기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참조할 수 있다.

제4조 임용(Einstellung)

고등법원장은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사법당국의 장을 통해 제출된 지원 서류를 바탕으로 임용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6조 임명(Ernennung)

선발된 지원자는 "사법고등경위후보자(Justizoberwachtmeisteranwärter)"로 임명되며, 조건부 공무원관계(Beamtenverhältnis auf Widerruf)로 임용된다.

「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직 직업교육 및 시험명령」

제1조 경력자격의 취득(Erwerb der Laufbahnbefähigung)

사법경위직의 경력을 위한 자격은 예비직(Vorbereitungsdienst)을 마치고 사법경위직의 경력을 위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2019. 10. 1. 제정되고 2024. 3. 5. 법률 제95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경력행정명령(Laufbahnverordnung)」의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2조 승인요건(Zulassungsvoraussetzungen)

① 예비직에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무원관계에서의 임명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브란덴부르크주 공무원법(Landesbeamtengesetz)」제10조 제2항 제1호[444]에 따른 최소한의 학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 인격적, 정신적, 건강적으로 사법경위직에 적합한 사람 및

4. 사법경위직를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 적합성을 갖춘 사람.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신체적 적합성은 운동시험(Sporttest)의 합격으로써 증명된다.

제3조 지원 및 임명(Bewerbungen und Einstellung)

① 지원서는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지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이력서(Lebenlauf),

2. 제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서류의 공증 사본(beglaubigte Abschriften) 또는 복사본(Ablichtungen),

3. 학교졸업(Schulentlassung) 이후의 재직에 관한 증명서의 공증 사본 또는 복사본,

4.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③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의 장이 임용에 관하여 결정한다. 그는 제2조 제2항에 따른 운동시험을 조직하며, 지원자의 개인 면접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임용이 예정된 지원자는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다음 각호를 요구받는다.

1. 본인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한 진술,

   a) 전과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형사소송절차나 검찰의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b) 채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

444)「브란덴부르크주 공무원법」제10조[경력에의 진입요건(Zugangsvoraussetzungen zu den Laufbahnen)]
② 중급직(mittlerer Dienst)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최소한 충족해야 한다:
1. 학력 요건으로,
a) 전문고등학교 졸업자격(Fachoberschulreife), 실업계 중등학교(Realschule) 졸업자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 경우 또는
b) 직업교육자격(Berufsbildungsreife), 중등학교(Hauptschule) 졸업자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동등한 학력과 업무에 유리한 정규 직업교육 과정 수료 또는 공법상 직업교육관계(öffentlich-rechtlichen Ausbildungsverhältnis) 내에서의 직업교육과정 수료.

2. 관할 등록당국(Meldebehörde)에 임용당국 제출용 신원조회서(Führungszeugnis)의 신청.

동시에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은 「브란덴부르크주 공무원법」 제18조 제3항의 의미 내에서 의학적 검진(ärztliche Untersuchung)을 지시한다.

⑤ 공무원관계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등록부의 공증 사본, 기혼자의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혼인등록부의 공증 사본, 생활동반자의 경우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공증 사본, 필요한 경우 현재의 성명사용(Namensführung)에 관한 증명서 및 「브란덴부르크주 공무원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의사의 감정서(Gutachten)가 제출되어야 한다.

제4조 고용관계 및 시간제(Dienstverhältnis und Teilzeit)

① 임용이 승인된 지원자는 조건부 공무원관계(Beamtenverhältnis auf Widerruf)로 임명되고, 예비직 동안 "사법수석경위후보자(Justizhauptwachtmeisteranwärter)"라는 직명(Dienstbezeichnung)을 사용한다.

② 돌봄시간(Pflegezeit) 또는 가족 사유로 인한 시간제고용(Teilzeitbeschäftigung)의 신청은 전문실무 직업교육부분의 기간에만 허용되고, 전문이론 직업교육부분의 기간 및 시험절차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규 노동시간의 75%의 범위에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

③ 조건부 공무원관계는 「브란덴부르크주 공무원법」 제32조의 조건에 따라 종료된다.

④ 인격적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직업교육 또는 임용 대상 직위에 부적합한 경우사람은 예비직에서 해고되어야 한다. 해고 통보는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의 결정(Bescheid)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법경위로 정식 임용되려면, 일정기간 동안 해고 가능한 '조건부 공무원'으로서 '예비직(Vorbereitungsdienst)'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사법경위직 지원자는 조건부 공무원의 법적 임용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력 요건 및 사법경위직을 위한 신체적 · 정신적 · 인성적 적합성도 갖추어야 한다.

학력 요건의 경우 베를린주, 헤센주 및 브란덴부르크주 모두 최소한의 자격으로서, 통상 중등학교(Hauptschule) 졸업 시 취득하는 직업교육자격(Berufsbildungsreife)을 요구하고 있다.

3) 직업교육 담당 조직 · 기관

「베를린주 사법자격행정명령」

제4조 직업교육의 관리(Leitung der Ausbildung)

① 직업교육당국은 동시에 후보자의 고용당국이다. 직업교육당국은 전체 직업교육을 총괄하고, 교과과정관리자(Lehrgangsleitung)를 임명하며, 직업교육의 내용 및 방법적 형성에 관한 지시를 내린다.

② 베를린주 티어가르텐 구법원(Amtsgericht Tiergarten)의 장이 중앙 직업교육법원(Ausbildungsgericht)이다.

③ 직업교육당국은 중앙 직업교육법원과 협의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교과 및 수업 계획을 수립하며, 교사진(Lehrkräfte)을 임명한다. 직업교육당국은 직업교육을 감독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

④ 직업교육당국은 실무 직업교육을 위해 후보자를 중앙 직업교육법원에 배정하여 공동 교육을 실시한다.

「헤센주 사법경위-직업교육명령」

제8조 직업교육당국, 직업교육관리(Ausbildungsbehörde, Ausbildungsleitung)

① 고등법원장은 직업교육을 감독하고, 후보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법원 또는 —검찰총장(Generalstaatsanwalt)과 협의하여— 검찰청을 지정하며(직업교육당국), 전문교과과정(제7조 제1항 제2호)를 설치하고, 교과과정관리자(Lehrgangsleitung)를 임명한다.

② 직업교육당국은 직업교육관리자(Ausbildungsleiter)를 임명한다.

「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직 직업교육 및 시험명령」

제8조 직업교육의 관리(Leitung der Ausbildung)

① 예비직의 조직 및 직업교육부분의 시간적 배치 결정은 브란덴부르크주 사법아카데미(Justizakademie) 교장(Leiter)과의 협의를 거쳐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이 담당한다.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은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법원,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형집행기관 및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친 검찰청을 각 결정한다.

② 고용한 법원 또는 고용한 관청의 관리자가 전문실무적 직업교육을 위한 책임을 진다. 그들은 후보자의 직업교육을 맡을 직원을 결정한다.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인격적으로도 적합한 직원만이 직원교육을 위임받을 수 있다. 그들은 후보자가 가능한 한 다양한 작업에서 근무하고 포괄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베를린주, 헤센주 및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사법경위직의 예비직에 대한 직업교육을 관리하는 당국은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이다. 즉 고등법원장이 직업교육의 관리자로서 각 사법경위후보자들을 직업교육이 실제 행해질 법원 등에 배치한다.

특이한 점은, 도시주인 베를린주의 경우 직업교육이 행해질 법원을 베를린주 티어가르텐 구법원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직업교육 관리자인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이 예비직의 조직 및 시간적 배분 등에 대하여는 브란덴부르크주 사법아카데미 교장과, 직업교육이 행해질 기관에 대하여는 주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과 협의 하에 정한다는 것이다.

4) 예비직의 기간 및 구성 등

「베를린주 사법자격행정명령」

제5조 예비직의 기간 및 구성(Dauer und Gliederung des Vorbereitungsdienstes)

① 예비직의 기간은 6개월이다. 예비직은 실무 및 이론 직업교육으로 구성된다. 만일 후보자가 요구되는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비직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②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기간은 원칙적으로 총 10 근무일(Arbeitsta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예비직의 기간에 포함된다. 휴가기간은 제외된다. 결석일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성취 수준을 근거로 필요성이 없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초과한 결석기간 만큼 예비직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 결정은 직업교육당국이 내린다.

제6조 일의 종류 및 범위(Art und Umfang der Beschäftigung)

직업교육의 목적이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임무의 종류와 범위를 전적으로 결정한다.

「헤센주 사법경위-직업교육명령」

제7조 예비직의 기간 및 구성(Dauer und Gliederung des Vorbereitungsdienstes)

① 예비직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실무 직업교육 및
2. 최소 6주간의 전문교과과정(Fachlehrgang).

② 고등법원의 장은 예비직에 유익한 활동의 인정 여부 및 예비직의 연장 여부에 대하여 「헤센주 경력행정명령(Hessische Laufbahnverordnung)」에 따라 결정한다.

「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직 직업교육 및 시험명령」

제6조 기간(Dauer)

① 예비직은 18개월 동안 지속된다. 단체협약에 기한 사법경위직에서의 이전 근무 기간은, 그 임무를 적어도 1년 간 수행하였을 때 최대 2개월의 기간까지 인정될 수 있다.

② 연차휴가(Erholungsurlaub)는 일반적으로 제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법원 및 지방법원에서의 직업교육부분 동안에만 부여된다. 기타 직업교육부분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다. 전문이론 직업교육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산입 하에 휴강일(unterrichtsfrei Tag)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질병 또는 기타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직의 목표달성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계획의 변경이 결정될 수 있다. 사전에 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구성(Gliederung)

① 예비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전문실무적 입문교과과정(fachpraktischer Einführungslehrgang)

직원의 주근무지(Stammdienststelle)의 기본적인 절차 및 작업방식에 대한 2개월 지시,

2. 전문이론 I

2개월 전문이론 직업교육,

3. 전문실습 I

제3항에 따른 2개의 직업교육장에서 6개월 직업교육,

4. 전문이론 II

1개월 전문이론 직업교육,

5. 전문실습 II

제3항에 따른 2개의 직업교육장에서 6개월 직업교육,

6. 전문이론 III

1개월 전문이론 직업교육 및 필기시험.

② 제6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기간은 제1항 제1호 소정의 입문교과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전문실습은 다음 각호의 직업교육장을 포함한다:

1. 지방법원에서의 5개월,

2. 구법원에서의 5개월,
3. 형집행기관(Justizvollzugsanstalt)에서의 1개월 및
4. 검찰청(Staatsanwaltschaft)에서의 1개월.

전문실습 I 및 II 부분에서는 각각 상기 법원 중 한 곳에서 5개월씩, 상기 다른 관청 중 한 곳에서 1개월씩 이수해야 한다.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은 개별 사안에서 제1문 제1호에 따른 지방법원 또는 제1문 제2호에 따른 구법원에서의 실습의 수행 대신에, 최대 1개월까지 전문법원(Fachgericht)에서의 실습의 수행을 허가할 수도 있다.

사법경위직의 예비직 기간은 연방주별로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베를린주와 헤센주의 예비직 기간이 각 6개월인 반면에, 브란덴부르크주의 예비직 기간은 18개월에 이른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예비직 기간의 구성을 상세하게 입법하였는데, 실무적 직업교육 기간 12개월, 이론적 직업교육 기간 6개월로 구성되고, 다시 실무적 직업교육 기간은 지방법원에서의 5개월, 구법원에서의 5개월, 형집행기관에서의 1개월, 검찰청에서의 1개월로 구성된다.

5) 직업교육의 목적과 원칙

「베를린주 사법자격행정명령」

제1조 예비직의 목적, 자격의 취득(Ziel des Vorbereitungsdienstes, Erwerb der Befähigung)

① 예비직(Vorbereitungsdienst) 기간 중 이루어지는 실습 중심 직업교육(Ausbildung)은 사법경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 능력 및 방법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목표는 인격적 자질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회적 이해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법경위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헤센주 사법경위-직업교육명령」

제5조 직업교육의 목적과 원칙(Ziel und Grundsätze der Ausbildung)

① 직업교육의 목적은, 인격적으로나 일반적 및 전문적 지식 면에서 사법경위의 임무를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② 사법경위를 위한 직업교육은 실습 중심적 요소와 이론적 전문이론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직 직업교육 및 시험명령」

제5조 직업교육의 목적과 원칙(Ziel und Grundsätze der Ausbildung)

① 직업교육의 목적은, 인격적으로나 전문적 및 일반적 지식, 그리고 기술 면에서 법원과 검찰청에서 사법경위의 임무를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② 후보자는 사법경위 경력의 모든 임무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받아야 한다. 나아가 후보자는 법률적, 경제적 및 사회적 맥락 및 시민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여야 한다. 동시에 후보자의 사회적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근무현장 간 및 직군 간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베를린주, 헤센주, 브란덴부르크주 모두 사법경위직을 위한 직업교육의 목적과 원칙을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 연방주 모두 사법경위의 자율적 ·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기술적 능력 외에 인격적 자질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베를린주는 사법경위직을 위한 사회적 이해 증진을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고, 브란덴부르크주는 심지어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과 시민(국민)들 및 다른 직군 간의 소통능력의 함양까지 강조하고 있다.

6) 실무(실습)적 직업교육 및 시험 등 평가

「베를린주 사법자격행정명령」

제7조 실무 직업교육(Praktische Ausbildung)

① 실무 직업교육은 중앙 직업교육법원에서 전문적 및 인격적으로 적합한 실습 직업교관(Ausbilder)의 지도하에 실시된다. 후보자는 사법경위직에 적용되는 근무규정(Dienstordnung)에 따라 모든 직무상의 일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후보자에게 민사법원(Zivilgericht) 또는 검찰청에서의 업무를 경험할 기회와 형집행기관에서의 참관실습(Hospitation)을 수행할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② 실무 직업교육의 종료 시 중앙 직업교육법원에서 종일 실습시험(ganztägiger Praxistest)

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는 감독 하에 독자적으로 직무상의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업무수행증명서(Beschäftigungsnachweis)를 보고노트(Berichtsheft)의 형태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매월 담당 실습 직업교관의 서명을 받은 후 교과과정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헤센주 사법경위-직업교육명령」

제9조 실무 직업교육(Praktische Ausbildung)

① 실무 직업교육(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후보자는 사법경위의 모든 임무에 대하여 익숙해져야 한다.

② 후보자는 사법경위의 상시적인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지만, 가능한 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촉진하는 임무만을 부여받아야 한다. 후보자에 의한 단독 피구금자의 구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실무 직업교육 동안에 매월 2개의 필기시험(schriftlich Arbeit)이 완료되어야 한다. 주제는 사법경위의 임무영역에서 선정된다. 시험은 직업교육관리자에 의해 출제되고, 평가되며, 후보자와 함께 논평되고, 별도의 임무노트(Aufgabenheft)에 보관된다. 중증장애인은 그 장애에 적절한 합리적 배려를 제공받아야 한다(「헤센주 경력행정명령」 제6조 제2항).

④ 실무 직업교육 동안에, 후보자는 특별한 임무와 요구사항과 함께 법정업무, 구인업무, 보안 및 질서유지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 2주간 대규모 지방법원(großen Landgericht)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이미 대규모 지방법원이 직업교육당국인 경우, 해당 참관(Hospitation)은 생략된다. 고등법원장은 개별사안에서 추가적인 예외사항을 결정하며, 참관의 내용과 기한을 규정한다. 참관기간 동안 후보자에 대한 평가서(Beurteilung)는 고등법원장에 의해 제공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후보자에게 알리고 후보자와 함께 논평된 후, 직업교육당국의 관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⑤ 후보자는 —참관기간을 포함하여— 고등법원장에 의해 제공된 양식에 따른 업무수행증명서(Beschäftigungsnachweis)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매월 직업교육관리자에게, 직업교육의 종료 시에는 직업교육당국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직 직업교육 및 시험명령」

제9조 전문실무적 직업교육의 설계(Gestaltung der fachpraktischen Ausbildung)

① 전문실무적 직업교육은 수하물 X-ray 검사(Gepäckröntgen) 분야의 지도 및 전자 전문응용프로그램 사용 분야의 지도를 비롯하여 「사법경위직을 위한 근무행정명령(Dienstordnung

für den Justizwachtmeisterdienst)」에 따른 모든 주요 업무활동을 포함한다. 전문실무적 교육은 입문교과과정(Einführungslehrgang)과 전문실습 I 및 II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입문교과과정은 사법경위직의 활동영역과 업무절차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한다.

③ 법원 및 검찰청에서의 직업교육은 「사법경위직을 위한 근무행정명령」에 따른 모든 임무영역과 현대 데이터처리기술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습득을 포함한다. 후보자는 전문이론 직업교육 동안에 습득한 지식을 심화시키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에게 업무 절차 및 과제를 자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형집행기관에서의 직업교육 동안에 후보자는 일반 집행직(Vollzugsdienst)의 임무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후보자는 가능하다면 참관실습(Hospitation)의 형태로 경찰집행직(Polizeivollzugsdienst)의 활동에 대한 견문 기회를 가진다.

제11조 성적증명서(Zeugnisse)

①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입문교과과정을 제외한 각 전문실무적 직업교육장(fachpraktische Ausbildungsstation)에서의 종료 시, 고용한 법원 또는 고용한 관청의 관리자에 의한 평가,

사법경위직을 위한 직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실무(실습)적 직업교육이다. 예비직 기간 동안 사법경위후보자는 법원, 검찰청 및 형집행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실무적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적 직업교육은 다양한 사법경위의 임무를 골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하지만, 헤센주는 사법경위후보자가 피구금자의 구인업무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브란덴부르크주는 전자 전문응용프로그램, 데이터처리기술의 습득도 강조하고 있다.

사법경위후보자는 실무적 직업교육 과정에서 시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베를린주는 실습시험, 헤센주는 매월 2개의 필기시험 및 참관실습에서의 평가, 브란덴부르크주는 관리자 평가 및 아래에서 살펴볼 구술시험(실무적 직업교육과 이론적 직업교육을 모두 포괄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각 연방주별로 실무적 직업교육에 대한 시험 평가의 방식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7) 이론적 직업교육 및 시험 등 평가

「베를린주 사법자격행정명령」

제8조 이론 직업교육(Theoretische Ausbildung)

① 실무 직업교육은 최소 130개의 2교시(Doppelstunde[445])로 구성된 교과과정으로 보완된다. 이론 직업교육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주제가 다루어진다.

1. 국가법(Staatsrecht)과 공직법(Recht des öffentlichen Dienstes)에 관한 개관,
2. 사법당국의 구조, 조직 및 업무 운영,
3.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의 특징,
4. 민사법 및 민사절차법의 특징,
5. 사법경위의 임무(법정, 구인, 보안 및 질서유지 업무),
6. 직접강제력의 행사 및 한계,
7. 송달제도 및 우편물의 처리,
8. 사법경위 공무원을 위한 근무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9. 자기 보호 및 타인 보호(Eigen- und Fremdsicherung),
10. 대중 및 절차관계인 대응(갈등 관련 의사소통기법, 긴장 완화 방법),
11. 다문화 역량(Interkulturelle Kompetenzen),
12. 정보기술(IT) 기초 및 응용 프로그램 안내,
13. 응급처치 기본 지식.

② 후보자는 교과과정 동안 감독하에 각 90분씩의 2회 필기시험(schriftlich Arbeit)을 완료한다. 시험 주제는 제1항 제2문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교과영역에서 출제된다. 시험은 담당 교사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후보자와 함께 논평되어야 하며, 교육과정관리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학습목표 점검이 실시될 수 있다.

③ 강의는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성적평가(Leistungsbewertung)로 마무리된다. 강의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성적평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정은 교육과정관리자가 내린다.

445) 휴식시간 없이 연속 두 번의 수업을 의미하는바, 보통 1교시 수업시간이 45분이므로 결국 '휴식시간 없는 90분간 수업'을 의미함.

「헤센주 사법경위-직업교육명령」

제10조 이론 직업교육(전문교과과정)[Theoretische Ausbildung(Fachlehrgang)]

① 전문교과과정(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별지목록(Anlage)에 명시된 교과소재(Lehrstoff)의 내용이 전수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의 장은 필요시, 개별 교과영역에 대한 상세한 교과 및 내용 계획서(Lehr- und Stoffpläne)를 발표할 수 있다. 전문교과과정 동안에 각 90분 시험시간 분량의 2개의 필기감독시험(schriftlich Aufsichtsarbeit)이 실시되어야 하고, 평가되며, 후보자와 함께 논평되어야 한다. 교과과정관리자는 90분 시험시간 분량의 감독시험 1개 대신에 45분 시험시간 분량의 감독시험 2개가 실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제3항 제4문이 준용된다.

② 전문교과과정의 종료 후, 교과과정관리자는 각 후보자에 대하여 교과과정평가서(Lehrgangsbeurteilung)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과과정평가서는 후보자에게 알리고, 후보자에 의해 완료된 필기감독시험과 함께 2부씩 고등법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장은 교과과정평가서 중 1부를 직업교육당국에 송부한다.

별지목록 전문교과과정을 위한 직업교육소재(Anlage Ausbildungsstoff für den Fachlehrgang) (제10조 제1항 제1문 관련)

1. 사법행정의 기능과 임무,
2. 법정 업무, 구인 업무, 보안 및 질서유지 업무, 직접강제력의 수단 및 적용, 비례의 원칙,
3. 피구인자 및 민원인과의 소통에 대한 심리적 교육, 갈등회피전략, 근무 내 협업(갈등 상황의 공동 해결, 의사소통, 협력),
4. 국내 및 국외 우편, 문서 및 화물 서비스의 주요 규정, 현금 및 귀중품 운송(가능하다면 독일 연방은행 지점 방문 포함), 우편배달, 우편 수취, 등기우편, 인계물품 및 유실물의 처리,
5. 문서 송달, 등록업무의 특징 및 기록 분류,
6. 내근업무의 임무,
7. 형집행기관의 일반 형집행 업무, 자유박탈 및 단기체포의 집행, 기타 사법당국에서의 집행업무,
8. 특수업무의 위임 가능성에 대한 개요,
9. 기본법 및 헤센주 헌법의 주요 규정 입문, 연방주 및 지방자치 행정의 구조와 임무,
10. 공무원법[「헤센주 공무원법」, 「헤센주 보조행정명령(Hessische Beihilfenverordnung)」,

「헤센주 여비법(Hessisches Reisekostengesetz)」, 「헤센주 이사비행정명령(Hessische Trennungsgeldverordnung)]의 주요 규정 개요,

11. 법원 및 검찰의 구조와 임무(분쟁성 및 비분쟁성 법원관할), 사법당국에서의 사무처리 절차,
12. 형집행업무 개요, 피구금자와의 소통, 수색, 통제 및 기타 보안조치, 사법경위의 후추스프레이(Pfefferspray)의 사용,
13. 비무장 자기방어 및 타격무기의 사용법, 결박 기술의 전수,
14.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응급처치 시험 포함) 및
15. 건강상의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 및 예방 조치.

「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직 직업교육 및 시험명령」

제10조 전문이론적 직업교육의 설계(Gestaltung der fachtheoretischen Ausbildung)

① 전문이론적 실무교육은 전문이론 Ⅰ, Ⅱ 및 Ⅲ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부분에서는 후보자에게 필요한 이론적 지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브란덴부르크주 사법아카데미 교장은 전문이론적 직업교육부분의 조직과 실행을 책임진다. 그는 교과계획의 수립, 수업자료 및 제16조에 따른 시험(Prüfungsklausur)의 출제도 담당한다. 브란덴부르크주 사법아카데미 교장에 의한 교과계획의 승인에는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브란덴부르크주 사법아카데미 교장은 교과과정의 관리를 담당한다. 그는 교과과정관리의 임무를 교사진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브란덴부르크주 사법아카데미 교장은 교과계획의 준수를 책임진다. 교과계획은 사법경위의 활동을 위한 모든 중요 영역을 포함한다. 적어도 각 45분씩 총 446개의 수업시수(Unterrichtsstunde)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때 특히 다음 각호의 주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1. 사법경위의 임무 및 법적 근거,
2. 사법경위의 임무영역을 위해 필요한, 민사사건, 가사사건, 형사사건 및 비송사건, 국가법, 행정업무를 포함한 사법부조직(Justizorganisation), 공무원법 및 단체협약법(Tarifrecht) 등의 기초지식,
3. 송달 및 기록보관 업무,
4. 사법부청사 내의 보안,
5. 직접강제력의 사용,
6. 피구금자 및 방청객 대응,

7. 갈등 완화를 위한 의사소통 및 심리학의 기초,
8. 무기 및 마약 규정,
9. 문서학(Dokumentenkunde),
10. 사법부 투입 훈련(Justizeinsatztraining),
11. 응급처치,
12. 화재안전요원 자격,
13. 정보기술 및 IT 보안의 기초,
14. 개인정보보호의 기초.

④ 수업은 실습 사례를 통해 현실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수업은 내용과 방법 모두에서 사회적 · 의사소통 능력, 자율성, 팀워크 및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시간표(Stundenplan)는 교과자료를 처리하고 자율학습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시간이 확보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⑤ 전문이론 I 및 II 부분 동안에 감독하에 필기시험이 완료되고, 기타 성적증명(Leistungsnachweis)도 제출되어야 한다. 필기시험 완료와 기타 성적증명 제출은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시험은 담당 교사진에 의해 제12조에 따른 점수(Punktzahl) 및 성적등급(Note)으로 평가되고, 논평되며, 전달되어야 한다. 결과의 개요는 즉시 교과과정관리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11조 성적증명서(Zeugnisse)

①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각 전문이론적 직업교육 부분의 종료 시, 브란덴부르크 주 사법아카데미 교장 또는 제10조 제2항 제5문에 따라 그가 위임한 교사진에 의한 평가.

베를린주, 헤센주 및 브란덴부르크주 모두 이론적 직업교육의 수업시간, 교육주제, 시험 평가 방식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주제'의 경우, 연방주 간에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기본법, 주 헌법, 민사법, 형사법, 절차법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한 수업이 선행되고, 이어서 사법경위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법적 근거, 직접강제력의 행사 권한 및 비례의 원칙, 부수적 임무인 문서송달, 우편물 처리, 응급처치 방법, 무기사용법과 체포 및 압수수색 업무 등 사법경위직의 핵심 지식에 대한 수업이 행해지며, 심지어 대중과의 소통 및 갈등 완화, 개인정보보호

주제, IT 정보기술 주제, 다문화(다민족, 다인종) 관련 주제, 심리학에 대한 수업 또한 필수적이다.

이론적 직업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완료 후에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아래에서 살펴볼 점수 및 성적등급 규정에 따라 성적평가가 이루어진다.

8) 시험절차 –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직 직업교육 및 시험명령」

제13조 경력시험(Laufbahnprüfung)

① 경력시험은 제5조에 따른 직업교육목적이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후보자가 성과, 지식, 능력, 인성과 성격 측면에서 사법경위직에서의 활동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② 경력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은 구술시험에 선행한다.

③ 수험생(Prüfling)은 구술시험 직전 일주일 동안 직무에서 면제된다.

제14조 시험위원회(Prüfungsausschuss)

① 경력시험은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 소속의 시험위원회 앞에서 실시된다. 이를 "사법경위직을 위한 시험위원회"로 지칭한다. 복수의 위원회의 구성이 허용된다.

② 시험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명의 위원은 최소한 일반 고위직(allgemeinen höheren), 고위 법무직(höherer Justizdienst) 또는 고위 비기술적 행정직(gehobener nichttechnischer Verwaltungsdienst) 소속이어야 하고, 다른 1명의 위원은 중간직(mittlerer Dienst) 소속이어야 하며, 세 번째 위원은 사법경위직(Justizwachtmeisterdienst) 소속이어야 한다. 동등한 직급의 단체협약에 따른 직원도 각각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각각의 위원을 위해 최소한 1명의 대리인(Stellvertreter)이 지정되어야 한다.

③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위원장(Vorsitzende)과 다른 위원들 및 필요한 대리인들을 5년 임기의 철회 가능한 형태로 임명한다. 심사인(Prüfer)은 자신의 심사활동에 있어 독립적이다. 심사인은 자신의 임무를 최선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심사인은 임명 시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시험위원회는 그 외의 부분에서는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의 직무감독을 받는다. 시험위원회의 회의(Sitzung)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제15조 시험절차(Prüfungsverfahren)

① 필기시험은 전문이론 Ⅲ 부분의 마지막에 실시되어야 한다. 구술시험은 필기시험 이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된다.

②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이 시험절차를 관리한다.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은 심사인의 배정과 복수의 시험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시험위원회별 수험생들의 할당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나아가 아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은 제18조에 따른 불합격(Nichtbestehen)의 확정을 포함하여 구술시험을 제외한 모든 기타 결정을 내린다.

③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은 브란덴부르크주 사법아카데미 교장과 협의하여 필기시험을 위한 장소와 일정을 정하고, 이 일정으로 소집한다. 수험생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정규시험 일정 외에 추가적인 감독시험을 위한 일정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일정은 고등법원장이 시험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란덴부르크주 사법아카데미 교장과 협의하여 구술시험의 장소와 일정을 결정하고, 이 일정으로의 소집을 조치한다.

제16조 필기시험(Schriftliche Prüfung)

① 필기시험은 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시험문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국가법, 헌법, 법원조직 및 공적복무법(öffentliches Dienstrecht),
2. 절차법, 송달법 및 기록문서규정(Aktenordnung),
3. 「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권한법(Justizwachtmeisterbefugnissegesetz, JWMBG)」, 복무규정(Dienstordnung) 및 무기법(Waffenrecht).

② 브란덴부르크주 사법아카데미 교장은 작성시간의 표시와 더불어 해답안, 평가안 및 필요한 보조도구(Hilfsmittel)를 포함한 필기시험문제를 출제한다.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은 필기시험문제를 위한 계획안을 선정한다.

③ 하루에 한 문제 이상을 작성할 수 없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간은 문제의 분량과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고,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수험생은 늦어도 작성시간 만료 시에 시험문제지를 감독관(Aufsichtskraft)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의 시작 전에 수험생은 브란덴부르크주 사법아카데미 교장으로부터 식별번호(Kennziffer)를 배정받는다. 시험문제는 성명 대신에 이 식별번호로 배부되어야 한다.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수험생 개인의 성명 및 기타 정보는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심사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 심사인이 사전에 시험절차의 행정업무 수행 때의 활동 또는 시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수험생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지득한 경우, 참여가 배제되지 않는다.

⑤ 감독관은 기만행위(Täuschungshandlung) 또는 기타 시험 진행의 방해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수험생의 시험자리는 언제든지 통제될 수 있고; 수험생은 통제에 협조하고, 요청에 따라 소지하는 보조도구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험생이 규칙을 위반하고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를 줄 경우, 그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감독관에 의해 시험문제지의 작성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⑥ 감독관은 기록문서(Niederschrift)를 작성하고, 그 안에 모든 불규칙사항(Unregelmäßigkeit)을 기록한다. 감독관은 기록문서에 작성시간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한다. 기록문서는 전자적 형식으로도 작성될 수 있다.

⑦ 필기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 출제된 해답안, 평가안, 수험생의 시험문제지, 식별번호 목록, 시험기록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사법아카데미 교장에 의해 봉인된 봉투에 넣어져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과의 합의 하에, 시험문제, 해답안 및 평가안은 시험위원회 위원에게 직접 송부될 수 있다.

제17조 필기시험지의 평가(Bewertung der schriftlichen Prüfungsaufgaben)

①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위원회의 두 위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심사한다.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평가의 심사인 및 순서를 정한다. 평가는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평점이 서로 다를 경우, 우선 심사인들 간의 합의를 시도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평균값(Mittelwert)이 적용된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에 대한 심사 및 평가의 완료 후, 결과는 제16조 제4항 제2문에 따라 부여된 식별번호를 통해 시험을 마친 해당 수험생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평가는 구술시험 전에 이루어지고, 이후의 시험절차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③ 필기시험지의 평가는 수험생에게 적어도 구술시험의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된다.

제18조 구술시험 전 불합격(Nichtbestehen vor der mündlichen Prüfung)

수험생의 필기시험문제 중 두 문제 이상이 "미흡한(mangelhaft)" 또는 "불충분한(ungenügend)"으로 평가된 경우, 수험생은 구술시험에서 제외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제19조 구술시험(Mündliche Prüfung)

① 구술시험에서 5명을 초과하는 수험생이 동시에 시험을 치를 수 없다.

② 시험 전에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수험생과 면담을 나누어야 한다. 다른 시험위원회의 위원들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술시험의 총 시간은 수험생 당 약 30분이다. 시험은 적절한 휴식시간에 의해 중단되어야 한다.

④ 구술시험은 주로 이해력시험(Verständnisprüfung)이다. 구술시험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 전체 직업교육 영역을 포괄하고, X-ray 영상 판독, 민원인 응대, 자기방어, 출입통제, 응급처치를 포함한 진압봉(Einsatzstöcke)의 사용 등 실무적 과제가 포함될 수 있다. 사소한 세부사항이나 관련 없는 지식분야에 대한 질문은 삼가야 한다.

⑤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적 이해관계가 증명된 사법부 소속자를 구술시험에서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최소한 1명의 수험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최종결정의 발표는 방청인의 배제 하에 진행한다.

⑥「브란덴부르크주 직원대표법(Landespersonalvertretungsgesetz)」제60조 제4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0조 표결, 최종결정의 준비(Abstimmungen, Vorbereitungen der abschließenden Entscheidung)

① 시험위원회는 다수결(Stimmenmehrheit)로 구술시험의 성적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린다. 기권(Stimmenthaltung)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구술시험의 시작 전에 수험생의 인성 및 기존 성적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예비협의(Vorberatung)이 개최된다.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전면담에 대하여 다른 심사인들에게 보고한다.

제22조 시험과정에 대한 기록문서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Niederschrift über den Prüfungshergang und Erteilung des Zeugnisses)

① 기록문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술시험의 시험과정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시험 장소와 일정,
2. 시험위원회의 구성,
3. 수험생의 성명과 출석,
4. 필기시험지의 평가,
5. 구술시험의 과목(Gegenstand) 및 결과,
6. 전체성적등급을 위해 산출된 점수,
7. 제21조 제5항에 따른 전체성적등급을 위한 점수값의 변경 및 그 변경조치의 사유,
8. 시험위원회의 기타 모든 결정, 특히 제24조에 따른 결정,
9. 시험위원회의 최종결정 및
10. 시험위원회의 결정 발표.

②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시험위원회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 예비직의 내용도 기록문서에 명시된다.

③ 기록문서는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고, 기타 시험과정 및 인사기록과 함께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기록문서와 서명은 전자적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④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은 시험에 합격한 모든 수험생에게 시험의 결과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3조 시험일의 불출석, 시험지의 미제출(Versäumung von Prüfungsterminen, Nichtablieferung von Prüfungsaufgaben)

① 수험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1. 필기 또는 구술 시험에의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 없이 시험을 포기한 경우 또는

2. 두 개 이상의 시험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수험생이 충분한 변명 없이 시험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험문제는 "불충분한(Ungenügend)" 표시로 6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평가된다.

③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이 수험생의 필기시험 불출석, 시험문제지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이 면책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필기시험문제는 새로운 일정에 다시 치러져야 한다.

④ 수험생이 질병 또는 다른 중대한 사유로 구술시험에 출석하지 못하고,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불출석이 면책된다고 인정한 경우, 구술시험은 새로운 일정에 실시되어야 한다.

⑤ 변명사유(Entschuldigungsgrund)는 반드시 즉시 제출되어야만 고려된다.

제24조 시험규정 위반(Verstöße gegen die Prüfungsbestimmungen)

① 특히 기만행위 시도 또는 허용되지 않은 보조도구의 소지 및 사용 등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시험규정 위반을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 수험생에게 일부 또는 복수의 시험성적에 대하여 재응시를 부과하는 것,

2. 위반과 관련된 시험성적에 대하여 "불충분한(Ungenügend)" 표시로 6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평가하는 것 또는,

3. 시험을 불합격 판정하고, 특히 중대한 경우에는 수험생을 재시험에서 배제하는 것.

② 구술시험 동안에는 시험위원회가, 그 외의 경우에는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이 결정한다.

③ 구술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최종결정 이후에 발견된 경우, 해당 수험생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다면, 시험위원회가 제1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수험생이 합격하였다면,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및 필기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이 결정한다.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은 구술시험일로부터 5년의 기간 안에서만 사후적으로 시험을 불합격 판정할 수 있다.

제26조 시험문제지의 열람(Einsicht in die Prüfungsaufgaben)

「2016. 4. 27. 자 개인 관련 데이터의 보호 및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관한 자연인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446] 2016/679[Verordnung (EU) 2016/679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7. April 2016 zum Schutz natürlicher Personen bei de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zum freien Datenverkehr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5/46/EG]」 제15조에 따른 정보열람(Aufkunst)에 관한 수험생의 권리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지의 평가의 통지 시점부터 여백주석(Randbemerkung)과 평가를 포함한 필기시험문제지의 열람에 관한 권리도 포함한다. 열람 동안에 수험생은 사본을 제작하는 것이 허용된다.

베를린주나 헤센주와 달리 브란덴부르크주는 사법경위의 직업교육에 대한 시험의 절차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시험절차는 이론적 직업교육까지 마무리된 후 개시되고, 필기시험–구술시험의 2단계 구조를 가진다. 주목할 점은 필기시험의 3문제 중 2문제 이상에서 "미흡한(mangelhaft)" 또는 "불충분한(Ungenügend)"의 성적등급을 받는 경우, 그대로 불합격 처리가 되어 구술시험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또한 필기시험은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이 관리하는 데 반하여 구술시험은 별도로 구성되는 '시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리한다. 물론 양 시험의 평가는 모두 시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담당한다. 이때 시험위원회는 임기 5년의 3명의 위원들(1명의 위원장 포함, 고위직, 중간직 및 사법경위직 각 1명씩)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은 브란덴부르크주 사법아카데미 교장이 출제한 3문제로 구성되는데, ① 국가법, 헌법, 법원조직 및 공적복무법(öffentliches Dienstrecht), ② 절차법, 송달법 및 기록문서규정(Aktenordnung), ③「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권한법」, 복무규정(Dienst-

446)「유럽 정보보호일반규정(Europäische Datenschutz–Grundverordnung, EU–DSGVO)」.

ordnung) 및 무기법(Waffenrecht) 등 세 주제 분야에서 1문제씩 출제된다.

구술시험은 주로 이해력시험(Verständnisprüfung)으로서, 전체 직업교육 영역을 포괄하고, X-ray 영상 판독, 민원인 응대, 자기방어, 출입통제, 응급처치를 포함한 지휘봉(Einsatzstock)의 사용 등 실무적 과제가 포함될 수 있다. 복수의 사법경위후보자가 동시에 치르게 되는데, 1명당 30분 동안 진행된다.

9) 성적의 평가방법

「베를린주 사법자격행정명령」

제9조 성적의 평가(Bewertung der Leistungen)

① 예비직의 실무 및 이론 직업교육에서의 성적은「베를린주 공무원경력법」제28조 제1문[447]에 규정된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성적에서 미흡한 부분은, 성적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후보자와 함께 적시에 논평되어야 한다.

③ 실습 직업교육에 참여한 직업교관은 상세한 성적평가에서 후보자의 인성, 적성, 전문능력, 지식, 실무 성적 및 품행(Führung)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적평가 또는 성적증명서는 교과과정 또는 실습지도 종료 시 후보자에게 공개하고 후보자와 함께 논평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성적평가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해당 평가서(Beurteilung)에 첨부되어야 한다.

「헤센주 사법경위-직업교육명령」

제11조 성적의 평가(Bewertung der Leistungen)

447)「베를린주 공무원경력법」제28조 직업교육 및 시험 성적의 평가(Bewertungen von Ausbildungs- und Prüfungsleistungen)
다른 연방주 간의 규정이나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직업교육 및 시험 성적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등급(Note)이 준비되어야 한다:

매우 좋은(sehr gut, 1)	= 요구사항을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충족한 경우,
좋은(gut, 2)	=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한 경우,
만족스러운(befriedigend, 3)	= 요구사항을 일반적으로 충족한 경우,
충분한(ausreichend, 4)	= 결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미흡한(mangelhaft, 5)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기초지식은 갖추고 있고 결점이 단기간 내에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불충분한(ungenügend, 6)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초지식조차 매우 부족하여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

예비직 기간 동안의 성적은 다음의 점수(Punktzahl) 및 그에 따른 성적등급(Note)으로 평가된다:

15~14점(Punkte) = 매우 좋은(sehr gut) = 요구사항을 탁월하게 충족하는 성적,

13~11점 = 좋은(gut) =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는 성적,

10~8점 = 만족스러운(befriedigend) =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충족하는 성적,

7~5점 = 충분한(ausreichend) =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성적,

4~2점 = 미흡한(mangelhaft)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기본지식이 있고, 결점이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적,

1~0점 = 불충분한(ungenügend)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본지식조차 매우 부족하여 단기간 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성적.

「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직 직업교육 및 시험명령」

제11조 성적증명서(Zeugnisse)

② 성적증명서(Zeugnis)에는 전문적 및 일반적 지식 및 능력, 실무 자질(praktisches Geschick), 직업교육의 수준(Stand der Ausbildung) 및 인성 상태의 전반적 소견(Gesamtbild der Persönlichkeit Stellung)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적증명서는 제12조에 따른 점수 및 성적등급의 평가로 완성된다.

③ 모든 성적증명서는 후보자에게 열람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후보자에게 논평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성적증명서는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반론을 첨부하여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에게 송부되고, 인사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12조 성적등급(Noten)

① 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

1. 요구사항을 특별히 뛰어나게 충족하여 "매우 좋은(Sehr gut)" 표시(Bezeichnung)로 1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위하여 15, 14, 13점,

2.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여 "좋은(Gut)" 표시로 2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위하여 12, 11, 10점,

3.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충족하여 "만족스러운(Befriedigend)" 표시로 3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위하여 9, 8, 7점,

4. 비록 일부 결점은 있지만 요구사항을 여전히 전체적으로 충족하여 "충분한(Ausreichend)"

표시로 4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위하여 6, 5, 4점,

5.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기초지식은 존재하고, 단기간 내 결점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어 "미흡한(Mangelhaft)" 표시로 5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위하여 3, 2, 1점,

6.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초지식조차 심각하게 부족하여 단기간 내 결점을 보완할 가능성이 없어 "불충분한(Ungenügend)" 표시로 6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위하여 0점.

② 부분성적(Teilleistung)으로부터 종합성적등급(Gesamtnote)을 산출할 때는 모든 부분성적을 위한 점수를 합산한 뒤 부분성적의 수로 나눈다.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되고, 소수점이 0.50부터는 높은 점수로, 0.49까지는 낮은 점수로 정리한다.[448]

사법경위직의 직업교육에 대한 성적평가의 경우, 베를린주, 헤센주 및 브란덴부르크주마다 점수(Punktzahl) 산정 방식 및 성적등급별 점수구간은 서로 다르지만, 부여되는 성적등급 종류는 동일하다. 성적등급은 높은 성적등급에서부터, ① "매우 좋은(sehr gut, 요구사항을 탁월하게 충족하는 성적)" – ② "좋은(gut,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는 성적)" – ③ "만족스러운(befriedigend,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충족하는 성적)" – ④ "충분한(ausreichend,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성적)" – ⑤ "미흡한(mangelhaft,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기본지식이 있고, 결점이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적)" – ⑥ "불충분한(ungenügend,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본지식조차 매우 부족하여 단기간 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성적)" 등 6개 구간으로 구별된다.

10) 성적에 따른 사법경위직 경력 자격의 취득 결정, 예비직 종료 및 재교육 등

「베를린주 사법자격행정명령」

제10조 자격확정(Befähigungsfeststellung)

① 예비직의 종료 3주 전에 중앙직업교육법원은 실무 직업교육이 성공적으로 이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서를 첨부하여 직업교육당국에 보고한다.

② 직업교육당국은 중앙직업교육법원의 자격보고서(Befähigungsbericht)와 더불어 제8조 제2항에 따른 이론 직업교육 과정 중 작성된 필기시험 및 기타 성적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448) 반올림 방식.

후보자가 사법경위직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실무 직업교육과 제8조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 모두에서 "충분한(ausreichend)"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예비직의 목표가 달성된다.

③ 직업교육당국이 후보자가 아직 사법경위직무를 위하여 충분히 교육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직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구성과 기간을 정한다(제5조 제1항 제3문).

제11조 예비직의 종료(Beendigung des Vorbereitungsdienstes)

① 후보자가 예비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는, 기타 공무원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보 공무원관계(Beamtenverhältnis auf Probe)로 임용된다.

② 후보자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인격적 측면에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성적만을 보이는 경우, 해당 후보자는 「공무원지위법」 제23조 제4항[449]에 따라 예비직에서 해고(Entlassung)될 수 있다.

「헤센주 사법경위-직업교육명령」

제12조 종합평가서, 수습직의 종료(Gesamtbeurteilung, Abschluss des Vorbereitungsdienstes)

① 예비직의 종료 시, 직업교육당국은 고등법원장에 의해 제공된 양식에 따라 종합평가서(Gesamtbeurteilung)를 작성하고, 이는 실무 직업교육(제9조) 및 전문교과과정(제10조)을 모두 포함하고, 제11조에 따른 종합성적등급(Gesamtnote)으로 마무리된다. 종합평가서는 후보자에게 알리고, 후보자와 함께 논평되어야 한다. 종합평가서는 인사기록(Personalakte), 임무노트(제9조 제3항), 업무수행증명서(제9조 제5항)와 함께 즉시 고등법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종합성적등급의 점수가 5.00 이상일 경우[450], 후보자는 사법경위의 경력을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③ 종합점수가 5.00 미만일 경우, 최대 6개월의 추가 예비직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추가 직업교육에서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는 예비직에서 해고(Entlassung)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고등법원장이 내린다.

제13조 특별한 경우에 자격의 취득(Erwerb der Befähigung in besonderen Fällen)

449) 공무원지위법 제23조 행정행위에 의한 해임
④ 시보공무원은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예비직을 마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450) 앞에서 본 것처럼 헤센주에서는 4, 5, 6점에 해당하는 성적등급이 "충분한(ausreichend)"에 해당하므로, 대략적으로 "충분한" 성적등급 범위 중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등법원장은 이전근무경력(Vordienstzeiten) 6개월 전부가 예비직으로 근무하거나 예비직으로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헤센주 공무원법(Hessisches Beamtengesetz, HBG)」 제24조 제2항, 「헤센주 경력행정명령」 제8조 제4항 및 제5항), 그 직원이 전문교과과정(제7조 제1항 제2호, 제10조)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경우, 사법경위의 경력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제4항이 준용된다.

「브란덴부르크주 사법경위직 직업교육 및 시험명령」

제21조 최종결정(Schlussentscheidung)

① 구술시험 직후에 시험위원회는 시험의 결과를 심의한다. 필기시험의 성적과 구술시험의 성적이 결정의 근거를 구성한다.

② 시험위원회는 구술시험에서의 성적을 평가하고, 제12조에 따른 점수와 성적등급을 확정한다.

③ 시험의 전체결과(Gesamtergebnis)는 3개의 필기시험문제의 점수에다가 구술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후, 이를 4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험생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시험은 제12조에 따라 "충분한(ausreichend)", "만족스러운(befriedigend)", "좋은(gut)" 또는 "매우 좋은(sehr gut)"으로 합격 판정된다. 성적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험은 불합격 판정된다.

⑤ 시험위원회는 시험의 전체결과에 대한 결정 시, 이것이 종합적인 인상(Gesamteindruck)에 비추어 볼 때 수험생의 수준을 더 잘 나타내는 경우, 계산된 전체성적등급(Gesamtnote)을 위하여 수학적으로 계산된 점수에 1점을 추가할 수 있다.

⑥ 전체성적등급을 위한 성적등급 표기와 그 산출과정의 오류는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에 의해 직권으로 정정될 수 있다. 정정사항과 이에 의한 성적등급의 변경은 시험기록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부정확한 성적증명서는 회수되어 정확한 성적증명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⑦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수험생에게 구두로 통보한다.

제25조 시험의 재응시(Wiederholung der Prüfung)

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1회 재응시 하는 것이 허용된다. 시험은 전체적으로 다시 치러져야 한다. 개별 시험성적이 면제될 수는 없다. 제18조가 적용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재응시 때, 예비직은 지속되어야 한다. 추가 예비직은 최소 6개월에 달한다. 브란덴부르크 고등법원장은 구체적인 종류와 기간을 정한다. 이때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회의 제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직업교육당국은 사법경위후보자들의 종합성적과 다른 정성적 평가자료를 토대로 정식의 사법경위직의 합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베를린주의 경우, 합격한 사법경위후보자는 예비직을 종료하고 '시보 공무원관계(Beamtenverhältnis auf Probe)'로 임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헤센주에서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세 개 주 모두 4번째 성적등급인 "충분한(ausreichend)" 이상의 종합성적을 받은 사법경위후보자를 합격 판정한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성적을 받은 사법경위후보자는 예비직으로서 직업교육을 최대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추가로 받고,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직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성적을 받거나 신체적 · 정신적 · 인성적으로 부적합한 판정을 받는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될 수 있다.

2. 물적 자원 활용 실무

가. 출입통제 및 위험한 물건 수색 등을 위한 장비

1) 기술적 보조수단

「베를린주 사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술적 보조수단'에는 금속탐지기, 폭발물탐지기, 수하물스캐너/수하물 X-ray, 에어락 문이 포함된다. 아래에서는 현재 독일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물적 자원 위주로 설명한다.

가) 금속탐지기(Metalldetektor)

통상 워크스루(Walkthrough) 금속탐지기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병행 사용한다.



◀ 헤센주 디부르크(Dieburg) 구법원에서 사법경위의 금속탐지기 출입통제 장면[451]

나) 수하물스캐너(Gepäckscanner) / 수하물 X-ray(Gepäckröntgen)



◀ 니더작센주 오스나브뤼크(Osnabrück) 구법원에서 사법경위의 수하물스캐너 출입통제 장면[452]

다) 에어락 문(Schleuse)

운하에서 '외측 갑문-독(Dock)-내측 갑문'을 통해 선박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독일 법원의 출입구에는 최대 1명 또는 2명만 동시에 들어가서 신체수색 등을 받는 공간인 보안게이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어락 문이다.



▲ 베를린 고등법원 출입구에 설치된 에어락 문



▲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 출입구에 설치된 에어락 문

451) 사진출처: op-online.de website, https://www.op-online.de/hessen/amtsgericht-check-flughafen-besucher-kontrolle-metalldetektor-1570170.html (2025. 7. 10. 확인).

452) 사진출처: Amtsgericht Osnabrück website, https://amtsgericht-osnabrueck.niedersachsen.de/startseite/aktuelles/presseinformationen/amtsgericht-osnabruck-erhalt-neue-sicherheitstechnik-zur-einlasskontrolle-198571.html (2025. 7. 10. 확인).

2) 광학전자 장치[Optischelektronischen Einrichtungen beobachten, 영상감시(Videoüberwa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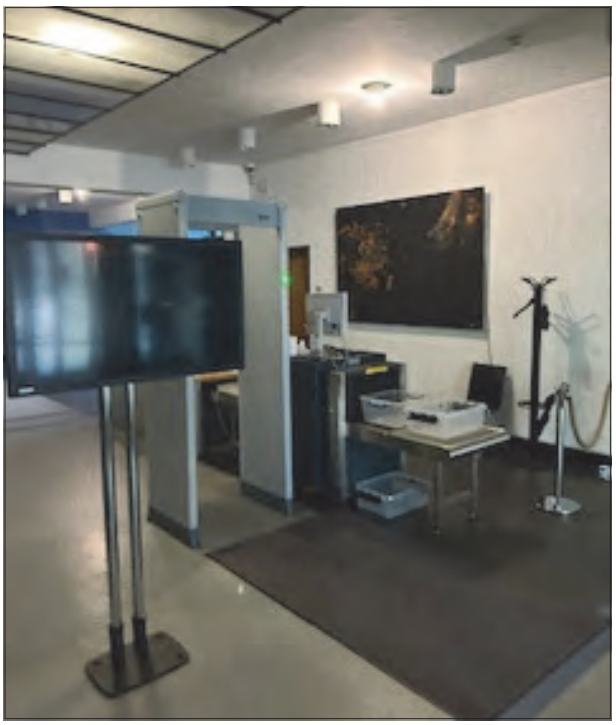

◀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 출입구에 설치된 광학전자 장치 (CCTV, 가운데 상단 맨 뒤쪽)

나. 사법경위의 직접강제력 행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1) 물리적 폭력의 보조수단(Hilfsmittel der körperlichen Gewalt)

연방법인 「직접강제력-법률」 제2조 제3항은 직접강제력 중 '물리적 폭력의 보조수단'으로, 사슬, 물대포, 기술적 차단장치, 공무수행견, 공무수행마 및 공무수행차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7호에 따라 사법경위 역시 위 열거된 물리적 폭력의 보조수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 실무에서 이를 모두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를린주 집행공무원-강제력사용법」 제2조 제3항은 마취제와 폭발성물질(Sprengmittel), 「니더작센주 형집행법」 제88조 제3항은 마취제와 최루제를 각 '물리적 폭력의 보조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강제력-법률」 제2조 제4항이 최루제와 폭발물(Explosivmittel)을 '물리적 폭력의 보조수단'이 아닌 '무기'로 열거하고 있는바,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루제, 마취제, 폭발물/폭발성물질을 '무기'로 분류하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현재 독일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물적 자원 위주로 설명한다.

가) 사슬(Fesseln)

신체의 결박 수단으로서, 손을 결박할 경우 수갑(Handfesseln)이고 발을 결박할 경우 족쇄(Fußfesseln)이다.

「니더작센주 형집행법」 제83조에 따르면, 결박은 원칙적으로 손 또는 발에 한정되지만, 피구금자의 이익을 고려해 다른 방식의 결박이 명령 될 수도 있다.



◀ 헤센주 기센(Gießen) 지방법원에서 사법경위들이 수갑으로 피구금자의 손을 결박한 장면[453]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보훔(Bochum) 지방법원에서 족쇄로 결박된 피구금자의 보행 장면[454]

453) 사진출처: Gießener Allgemeine website, https://www.giessener-allgemeine.de/giessen/kugelsicheren-westen-12588595.html (2025. 7. 11. 확인).

454) 사진출처: WAZ website, https://www.waz.de/staedte/bochum/article11550139/nach-flucht-aus-dem-gericht-verteidiger-geisseln-fussfesseln.html (2025. 7. 11. 확인).

나) 기술적 차단장치(technische Sperren)

청사 출입구로 연결된 외부 공간을 봉쇄하는 데 사용하는 장벽, 바리케이드, 로프, 철조망 등을 의미한다.



◀ 독일의 임시 이동식차량 차단장치(mobile Fahrzeugsperren)가 설치된 장면[455]

2) 무기(Waffen)

가) 타격무기(Hiebwaffen)

(1) 곤봉(Schlagstöcke)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구법원의 사법경위가 곤봉을 들고 있는 장면[456]

455) 사진출처: Polizeiliche Kriminalprävention website, https://www.polizei-beratung.de/themen-und-tipps/staedtebau/schutz-vor-ueberfahrtaten (2025. 7. 13. 확인).

456) 사진출처: Stuttgarter Zeitung website, https://www.stuttgarter-zeitung.de/inhalt.amtsgericht-stuttgart-elias-schlaegt-sich-wacker-als-zeuge.3dc7e7b0-c927-4d7e-a3ca-22c3bd0773a3.html (2025. 7. 13. 확인).

(2) 접이식곤봉(Teleskopschlagsöcke)

니더작센주에서는 직접강제력의 무기로서 접이식곤봉만을 승인하고 있다(「니더작센주 사법법」 제13조 제1호). 일반 곤봉보다 휴대가 편할 뿐만 아니라, 최대 길이를 더욱 늘일 수 있어서 공격력이 더 높다.



◀ 니더작센주 하노버(Hannover)의 한 구법원의 사법경위가 들고 있는 접이식곤봉[457]

나) 총기(Schußwaffen)

사법경위가 직접강제력의 무기로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연방주마다 다르다. 피구금자의 구인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위의 총기 사용을 실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연방주(바이에른주)가 있는 반면에, 사법경위의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은 연방주(베를린주,[45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있고, 아예 사법경위의 총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법규정을 두고 있는 연방주(헤센주, 작센주, 니더작센주)도 있다. 사법경위의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연방주는 그 훈련 및 사용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점점 법원청사 내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법경위의 총기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457) 사진출처: Lausitzer Rundschau website, https://www.lr-online.de/lausitz/senftenberg/amtsgericht-senftenberg-ueberraschung-im-schlagstock-prozess-62159783.html (2025. 8. 17. 확인).

458) 「베를린주 집행공무원-강제력사용법」 제2조 제4항.



◀ 바이에른주의 사법경위가 착용하는 근무용 벨트에 장착된 자동권총(Pistole)[459]

다) 후추스프레이(Pfefferspray)

독일 법원의 사법경위가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 수단이다.



◀ 라인란트-팔츠주 마인츠(Mainz) 지방법원에서 사법경위가 후추스프레이 사용을 시연하는 장면[460]

3. 경찰과의 협력관계

법원청사 내에서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또는 법원장의 주거권에 기한 명령이 불이행된

459) 사진출처: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website, https://www.mach-gerechtigkeit.de/justizberufe/justizwachmeisterin/story-isabelle-justizwachtmeisterin.php (2025. 7. 14. 확인).

460) 사진출처: Rheinland-Pfalz Ministerium der Justiz website, https://jm.rlp.de/service/presse/detail/respekt-bitte-austausch-von-justizminister-herbert-mertin-mit-gerichtsvollzieherinnen-und-gerichtsvollziehern-ueber-gefahren-im-berufsalltag (2025. 7. 15. 확인).

경우, 그 집행이 요구된다. 만일 명령의 집행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물리적 폭력이 가해져야 하는 경우, 그 물리적 폭력의 행사는 사법경위 외에 '행정협조(Amtshilfe, 행정절차법 제4조[461])'에 의해 법원청사에 출동한 경찰관 또는 경찰특공대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주로 사법경위는 위급 상황에 인근 경찰관서와 직통으로 연결된 비상벨을 눌러 경찰관 또는 경찰특공대를 호출한다.

이때 법원청사에 배치된 경찰관 또는 경찰특공대는 경찰법에 근거하여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요청행정청(ersuchende Behörde)의 요청에 따른 행정협조의 수행에 있어서는 피요청행정청(ersuchte Behörde)에 적용되는 법령을 따르기 때문이다(행정절차법 제7조[462] 제1항).

Ⅳ. 결론 및 시사점

1. 법원청사 및 구성원의 보호 필요성 증가

21세기에 들어 각기 진행속도와 정도만 다를 뿐, 전 세계 곳곳에서 전반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후퇴하고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정치의 사법화 및 사법의 정치화 흐름과 이에 따른 사법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아가 그 결과로서 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양상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그 갈등의 표출 양상도 임계점을 넘어설 정도로 과격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법원 그리고 사법부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법원청사 또는 법원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강도 역시 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461) 행정절차법 제4조 행정협조 의무
① 모든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요청에 의하여 보충적인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는 행정협조가 아니다.
1. 관청들이 기존의 명령관계 내에서 서로 협조를 하는 경우;
2. 협조의 대상이 요청을 받은 관청이 원래의 과업으로 해야 하는 행위일 경우.

462) 행정절차법 제7조 행정협조의 수행
① 행정협조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조치의 허용성은 요청행정청(ersuchende Behörde)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판단되고, 행정협조의 수행은 피요청행정청(ersuchte Behörde)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요청행정청은 취해질 조치의 허용성에 대하여 피요청행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요청행정청은 행정협조의 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있는 것도 사실이고, 독일의 상황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독일의 법원청사 및 구성원 보호 방안

가. 재판장의 법정경찰권과 법원장의 주거권

독일의 법원청사 및 구성원 보호 방안에 관하여, 우리는 앞에서 독일 법원의 보안 및 질서유지 체계의 이원적 구조 즉, 공적 사법작용으로서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이 연방법에 근거하여 법정과 그 인접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한편, 사적 재산권에 기반한 행정작용으로서 법원장의 주거권이 주로 관습법 또는 주법에 근거하여 청사 전체와 그 인접 범위 내에서 작동하고, 양자 서로 간에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법정경찰권이 주거권에 우선하나 상호 병렬 · 보완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 인적 · 물적 자원의 활용 및 경찰과의 협력

나아가 우리는 독일 법원청사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 또는 법원장의 구체적인 조치들 즉, 법정경찰권 또는 주거권에 기한 보안 및 질서유지 조치들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 사법경위제도, 물적 자원 측면에서 출입통제 및 위험한 물건 수색 등에 활용되는 장비와 사법경위의 직접강제력 행사 시 활용되는 장비를 수단으로 실행된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사법부 또는 법원이 청사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행정협조의 방식으로 경찰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 시사점

가. 전제 – 독일의 특수성 고려 필요

필자가 독일 법원의 청사 보안 및 질서유지 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받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법원 내 보안 및 질서유지 임무를 담당하는 단일조직인 사법경위직의 권한과 임무가 우리나라의 법원보안관리대의 권한과 임무에 비해 상당히 광범위한 동시에 심도 있다는 점과 공항 검색시설 수준의 고강도 출입통제 장비 및 직접강제력 수단 장비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비교법적 연구를 함에 있어서, 독일에서의 강력한 법원청사 보안 및 질서유지 제도의 운용이 외부 방문자 수가 상당히 적은 독일 법원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이는 독일이 기본적으로 사전 일정(Termin) 예약자만 관청을 비롯한 서비스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점, 인구수 대비 일반법원과 전문법원(노동법원, 재정법원, 행정법원, 사회법원)을 포함한 전체 독일 법원의 숫자 및 판사의 인원수가 많은 점, 재판부당 한 기일에 진행하는 사건수가 적은 점, 독일 법원의 비쟁송 행정업무 또는 사법서비스업무가 한국 법원에 비해 훨씬 적은 점[463] 등의 업무 환경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 법원의 업무 환경 특수성을 감안하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의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시사점

그럼에도 우리나라 법원이 독일 법원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다.

1) 입법화

가) 독일 – 입법화를 통한 명확성 · 비례의 원칙 준수 노력

먼저 독일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법원장의 주거권, 사법경위직의 임무와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 또는 행정명령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나) 우리나라 – 법률적 규율 부족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장의 법정경찰권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법정경찰권에 기한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규율이 부족하고, 법원장 등의 청사관리권은 내규[464] 수준의 규율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463) 단적인 예로 독일의 가사사건에서 비양육친과 미성년자녀 간 면접교섭을 관리 · 통제하는 비쟁송적 행정업무 또는 사법서비스업무는 가정법원(Familiengericht)이 아니라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하고 있고, 독일의 성년후견사건에서 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비쟁송적 행정업무 또는 사법서비스업무는 성년후견법원(Betreuungsgericht)이 아니라 성년후견청(Betreuungsbehörde)이 담당하고 있다.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반작용으로 법정경찰권 또는 청사관리권에 기한 조치에 대한 법률적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이 법원 내 보안 및 질서 방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임무와 권한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의 규정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하위 대법원규칙[465]의 내용 중에서 임무와 권한의 부분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인적 조직 개선

가) 독일 – 일원적 조직

다음으로 독일은 법원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실행을 사법경위직(Justizwachtmeisterdienst)이라는 단일조직에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사법경위는 우리나라의 교도관(교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법원으로의 피구금자 호송 · 구인 업무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법원보안관리대원, 법원경위, 방호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이 나누어서 수행하는 청사 보안업무 및 우리나라의 법원경위가 담당하는 문서 송달업무까지 포괄하여 수행한다는 점이다.

나) 우리나라 – 다원적 조직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2005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구 법원경비관리대(현 법원보안관리대의 전신)를 창설하면서 여러 직렬들의 통합을 꾀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기존 법원경위, 방호원, 청원경찰 직렬의 유기적이고 인위적인 통합을 시도하는 대신에, 이들 직렬의 새로운 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직원들의 정년퇴직 등 자연적 감소 · 소멸만을 기다리는 등 소극적인 직렬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법원 보안 및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다원적 직렬 운용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다원적 직렬 운용에 따른 비합리적인 법령을 재정비하고 법정경찰권과 청사관리권에 기한 조치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컨대 '사법경위'라는 명칭의 단일통합직렬을 창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

464) 법원청사 관리내규.
465)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3) 물적 여건 개선

가) 독일 – 고강도 장비 · 사설 활용

마지막으로 독일은 법원청사의 출입통제 및 직접강제력 행사를 위한 고강도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독일 법원이 출입구에서 모든 방문자들을 상대로 X-ray 스캐너, 휴대용 스캐너 및 에어락 문 등을 활용하여 방문자들 한명 한명의 신체와 소지품을 철저하게 검색할 수 있는 원동력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근본적으로 독일 법원의 외부 방문자 수가 적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나) 우리나라 – 장비 · 시설 확충 필요

이를 위해 우리나라 법원은 단기적으로는 법원보안관리대원 등 보안직렬 공무원의 인원수 확충 및 물적 보안 장비 · 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법원의 수와 판사의 인원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비쟁송적 행정업무 또는 사법서비스업무를 타기관과 협업하는 방법 등으로 감축하거나 전산 업무의 고도화 등을 통하여 법원에 물리적으로 직접 출입하는 방문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률 개정을 통해 법원보안관리대원 등 보안직렬 공무원이 원거리 전기충격기(일명 스턴건), 가스총 혹은 권총 등 지금보다 강력한 무기를 소지 · 활용할 필요성이 크고 법적 근거 마련과 별도로 실제로도 현장에 빠짐없이 배치해야 할 것이다.

4. 마치며

서론에서 본 것처럼, 최근 발생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 없는 다중에 의한 법원청사 테러 사건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법정을 비롯한 법원청사 내 흉기 난동 사건들로 인해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나라 법원이 다각도로 법정 보안 및 청사 보안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이때, 독일의 관련 법제와 실무를 설명하고 있는 본 보고서가 사법정책 결정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단행본〉

전문식,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성낙인, 헌법학(제22판), 법문사(2022).

〈논문〉

최정명 · 장인호, “현행 법원보안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원보안국의 설치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2권 4호(2021. 12.).

[외국문헌]

〈단행본〉

Rauscher/Krüger, Münchener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mit Gerichtsverfassungsgesetz und Nebengesetzen(6. Aufl.), C.H.BECK München(2022).

Graf, BeckOK GVG(26. Edition), C.H.BECK.München(2024).

〈논문〉

Ramm, Die Polizeigewalt des Bundestagspräsidenten Die Polizei beim Deutschen Bundestag und ihre Ermächtigungsgrundlage, NVwZ(2010, Heft 13).

Peters/Lux, Öffentliche Gebäude und Hausrecht: Inhalt und Rechtsgrundlagen, LKV(2018, Heft 01).

Kees, Sicherheit in der Justiz: Der normative Rahmen und die Aufgaben des Gesetzgebers, NJW(2013).

〈보고서, 회의록 등〉

Entwurf der Staatsregierung zum Gesetz zur Änderung des Sächsischen Justizgesetzes und des Richtergesetzes des Freistaates Sachsen vom 13.6.2016.

[웹사이트]

Berliner Morgenpost Website,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12624811/Berlins–Gerichte–ruesten–auf.html(2025. 7. 17. 확인).

op-online.de website, https://www.op-online.de/hessen/amtsgericht-check-flughafen-besucher-kontrolle-metalldetektor-1570170.html(2025. 7. 10. 확인).

Luftfahrtmagazin.de website, https://www.luftfahrtmagazin.de/wirtschaft/bundespolizei-mit-neuen-sprengstoffdetektoren-193247.html(2025. 7. 10. 확인).

Amtsgericht Osnabrück website, https://amtsgericht-osnabrueck.niedersachsen.de/startseite/aktuelles/presseinformationen/amtsgericht-osnabruck-erhalt-neue-sicherheitstechnik-zur-einlasskontrolle-198571.html(2025. 7. 10. 확인).

Gießener Allgemeine website, https://www.giessener-allgemeine.de/giessen/kugelsicheren-westen-12588595.html(2025. 7. 11. 확인).

WAZ website, https://www.waz.de/staedte/bochum/article11550139/nach-flucht-aus-dem-gericht-verteidiger-geisseln-fussfesseln.html(2025. 7. 11. 확인).

Tagesspiegel website, https://www.tagesspiegel.de/berlin/in-der-berliner-polizei-gibt-es-zweifel-am-wasserwerfer-einsatz-5974201.html(2025. 7. 13. 확인).

Polizeiliche Kriminalprävention website, https://www.polizei-beratung.de/themen-und-tipps/staedtebau/schutz-vor-ueberfahrtaten(2025. 7. 13. 확인).

Schleswig-Holstein website, https://www.schleswig-holstein.de/DE/landesregierung/ministerien-behoerden/II/_startseite/Artikel2022/November/221114_justizhunde(2025. 7. 13. 확인).

Legal Tribune Online website, https://www.lto.de/recht/feuilleton/f/berittene-polizei-reiterstaffel-eigentum-haftung-pferd-reiter(2025. 7. 13. 확인).

Bos-Fahrzeuge.Info website, https://bos-fahrzeuge.info/einsatzfahrzeuge/157084/B5-12_-_VW_T6_-_GefKW_Justiz/photo/479118(2025. 7. 13. 확인).

Stuttgarter Zeitung website, https://www.stuttgarter-zeitung.de/inhalt.amtsgericht-stuttgart-elias-schlaegt-sich-wacker-als-zeuge.3dc7e7b0-c927-4d7e-a3ca-22c3bd0773a3.html(2025. 7. 13. 확인).

Cellesche Zeitung website, https://www.cz.de/lokales/celle-lk/winsen/schlagstock-angriff-in-winsen-amtsgericht-celle-verurteilt-56-jaehrigen-GJU4S6NB7BFKTDRJOQSNTOEQFM.html(2025. 7. 14. 확인).

Rhein-Zeitung website, https://www.rhein-zeitung.de/rheinland-pfalz/so-schuetzen-sich-justizbeamte-besser-neuer-einsatzstock-ermoeglicht-die-abwehr-von-angriffen_arid-2027363.html(2025. 7. 13. 확인).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website, https://www.mach-gerechtigkeit.de/justizberufe/justizwachmeisterin/story-isabelle-justizwachtmeisterin.php(2025. 7. 14. 확인).

Imago. website, https://www.imago-images.de/st/0102717317(2025. 7. 14. 확인).

SEK-Einsatz website, https://sek-einsatz.de/polizei-themen/polizei-intern/start-des-probelaufs-fuer-taser-bei-der-polizei-berlin-begonnen/18592(2025. 7. 15. 확인).

Rheinland-Pfalz Ministerium der Justiz website, https://jm.rlp.de/service/presse/detail/respekt-bitte-austausch-von-justizminister-herbert-mertin-mit-gerichtsvollzieherinnen-und-gerichtsvollziehern-ueber-gefahren-im-berufsalltag(2025. 7. 15. 확인).

프랑스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필진_ 프랑스 사법제도연구반
책임필자_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박세영

Ⅰ. 서론 352

Ⅱ. 프랑스 사법부의 보안 실태 352
1. 개요 352
2. 판사에 대한 공격 사례 353
3. 판사에 대한 공격 양상의 다변화 354
4. 각종 기관의 대응 355

Ⅲ. 프랑스 사법부의 보안에 관한 각종 논의 356
1. Ingall-Montagnier의 〈법원 안전에 관한 보고서〉 356
2. Unité-Magistrats SNM FO의 성명 358
3. 유럽사법효율성위원회(CEPEJ)의 〈법원 건물의 조직 및 접근성 관련 지침〉 359
4. 최근의 논의 360

Ⅳ. 프랑스 사법부의 보안 담당 주체 360
1. 관리자 360
2. 지역 간 보안 전문가(Expert sûreté interrégional, ESIR) 361
3. 지역 보안 담당관(Correspondant sûreté régional, CSR) 361
4. 현장 실무자 362
가. 보안 대응 책임자 362
나. 보안 전담 인력 362

Ⅴ. 프랑스 사법부의 상시적 보안 관리 365
1. 개요 365
2. 사건 기록지(Fiche incident) 365
가. 의의 365
나. 보고 대상 사건 365
다. 작성 방법 365
라. 제출 방법 366
3. 보안 문서(Dossier sûreté) 366
가. 의의 366
나. 보안장치 체크리스트 366
4. 보안 계획(Projet sûreté) 367
가. 의의 367
나. 보안 진단(Étude sûreté) 367

Ⅵ. 프랑스 사법부의 보안을 위한 보편적 · 일반적 조치 368
1. 청사 보안 일반론 368
2. 청사 보호 계획의 유형 369
3. 청사 내 보안구역의 구분 370
가. 구분 목적 370
나. 구역의 유형 370
다. 구역별 출입통제 및 구역간 이동의 규칙 380
4. 청사 내 보안 장비 380
가. CCTV 380
나. 금속 탐지기 381
다. 경보시스템 381
라. 물리적 출입 통제 장치 382
마. 침입 방지 장치 382
5. 청사 출입 통제 382
가. 출입의 유형별 지침 382
나. 법원의 출입 관리 방법 384
6. 청사 외부의 보안 385

Ⅶ. 프랑스 사법부의 보안을 위한 개별적 · 구체적 조치 386
1. 비지피라트(Vigilance et protection des installations contre les risques d'attentats terroristes à l'explosif, VIGIPIRATE) 386
가. 의의 386
나. 사법부 보안 정책과의 연계 386
2. 직무상 보호(Protection fonctionnelle) 387
가. 의의 387
나. 대상 387
다. 발동 요건 388
라. 보호 요청 절차 388
마. 보호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 389
바. 보호의 내용 389
3. 개별적 보호 조치의 한계 389
가. 부처 간의 협력 부족 389
나. 법무부의 소극적 태도 390

Ⅷ. 프랑스 사법부의 보안 위협에 대한 사후 조치 391
1. 가해자 처벌 391
2. 피해자 지원 392
가. 심리적 지원 392
나. 법률 지원 392

Ⅸ. 결론 392

[첨부1 법무부 사법서비스국(DSJ) 인트라넷의 보안 관련 페이지] 394
[첨부2 국방 · 안전 구역(Zon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지도] 395
[첨부3 사건 기록지(Fiche incident) 양식] 396
[첨부4 직무상 보호(Protection fonctionnelle) 신청서 양식] 398

I. 서론

법원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공적 권위와 신뢰를 유지하는 기관으로서 존중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법원 구성원들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안전한 일터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 보안 역량이 요구된다.

프랑스의 경우, 법원이 독립적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무부 소속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제도적 특수성 때문에 법원의 보안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하기 어렵거나, 법원 청사가 오래된 건물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현대적 보안체계 도입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대처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총기 사용이나 고위험 테러 등 공격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점에서, 프랑스가 법원 청사와 구성원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II. 프랑스 사법부의 보안 실태

1. 개요

프랑스에서도 법원 청사의 잠입 및 탈출 시도, 기물 파손 등의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판사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다.[1] 파리의 Palais de justice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의 위험이 심각한 곳에서는 경찰과 헌병이 주둔하며 청사를 방호하지만,[2] 판사의 주거 등 개인적 공간에서는 보호 조치가 실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알려진 사건들 중에는 업무시간 이후에 청사 밖에서 판사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한 피습 사례가 더 많을 정도이다.

1) 판사가 아닌 법원 직원에 대한 공격 사례들은 따로 집계되지 않은 데다가 법원 청사에 대한 대물적 보안 위협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사'에 대한 공격으로 논의를 한정하였다.

2) 예컨대 2015. 11.경 Bataclan 극장 등에서 대규모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 단체 회원들에 대하여 2021년 파리의 Palais de justice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몇 개월간 위 법원 청사가 있는 시테 섬(Île de la Cité) 전체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기도 하였다.

판사에 대한 공격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불만을 품은 재판 당사자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재판과 무관한 제3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3자에 의한 공격의 대표적인 예로는 무슬림에 대한 재판에서 인종 갈등이 촉발되어 판사에게 테러를 자행하는 경우, 마약밀매조직이 조직범죄의 일환으로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어, 오늘날 프랑스의 불안한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격의 방법 면에서도, 프랑스에서는 총기 등의 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과격한 양상을 보인다.

2. 판사에 대한 공격 사례

○ 1975년 Lyon에서 François Renaud 판사가 저녁 식사 후 귀가 도중 피살된 사례

○ 1981년 Marseille에서 Pierre Michel 판사가 귀가 중 마약 밀매업자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례

○ 2013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부정청탁 및 영향력 행사 혐의로 기소되자, 사건을 담당한 Gentil 판사에게 공포탄이 동봉된 살해 위협 편지가 온 사례. 이 사건은 파리의 테러 수사 부서에 인수되어 중앙경찰수사국(Direction centrale de la police judiciaire, DCPJ)과 범죄진압여단(Brigade de répression de la délinquance aux personnes, BRDP)에 맡겨졌다.

○ 2019년 Yvelines의 한 판사가 자택에서 방어용 탄환 발사기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사례. 그 후 해당 판사는 보안 요원의 호위를 받고 사무실을 개조하고 자택 앞 헌병을 배치받고 감시카메라 설치를 제공받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

○ 2019년 Nante 마약 밀매조직 간의 총격전과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판사가 용의자 심문 과정에서 성적 욕설과 위협적 발언을 들었는데, 용의자들이 절차상 문제로 석방되어 버린 사례. 해당 판사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판사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진다.

○ 2024년 Douai의 검찰총장 Frédéric Fèvre 자택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들이 발견되어 경찰이 네 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사례. 공격은 미수에 그쳤으나 용의자들은 범죄 모의 및 무기와 탄약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국가 조직범죄 대응국(JUNALCO)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 2025. 2. Melun 행정법원에서 알제리 출신 인플루언서 Doualemn에 대한 추방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자, 극우 성향의 매체 Frontières가 특정 판사들과 변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의 직무상 활동을 모욕하는 기사를 냈고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판사를 참수할 것이라는 등의 글이 게시된 사례. 이 사안에 대한 수사는 당초 Melun 검찰이 진행했으나, 현재는 파리 검찰과 온라인혐오범죄특별대응팀(Pôle national de lutte contre la haine en ligne, PNLH)이 맡고 있다.

○ 2025년 초 Nanterre(Hauts-de-Seine) 소년법원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사건에 관여된 판사들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3개월간 괴롭히고 위협한 사례. 용의자는 체포되었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2025. 3. 파리 형사법원이 극우 정치인인 국민연합(RN) 소속 Marine Le Pen에 대해 유럽의회 보좌관 보조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가택연금 2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유로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선고하여 그녀의 2027년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담당 판사 Bénédicte de Perthuis에 대하여 살해 위협이 가해지고 극단주의 사이트 Riposte laïque에도 그러한 내용의 댓글들이 달린 사례. 위 판사는 내무부의 특별 감시 대상이 되어 자택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었고, 범죄진압여단(Brigade de répression de la délinquance aux personnes, BRDP)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3. 판사에 대한 공격 양상의 다변화

프랑스의 사법부 구성원들 중 물리적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부류는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임명되고 신원이 공개되며 사건 관계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검사(Magistrat du parquet)에 비해 공격의 표적이 되기 더 쉽기 때문이다.[3)]

또한, 아동보호 사건들을 관장하면서 성난 부모들을 직면해야 하는 소년판사(Juge des enfants) 역시 물리적 위협에 특히 취약하다고 평가되며,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사판사(Juge aux affaires familiales), 후견 판사(Juge des tutelles) 등에 대한 위협도 뒤를 잇는다.

3) 수사판사와 검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익명성을 이용한 온라인 위협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격이 확산되는 추세인 것은 물론, 판사들의 신원이 노출되어 그들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실행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정보가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거의 모든 판사들이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각종 기관의 대응

법관의 신분과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SM)는, 법관에 대한 공격이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될 때마다 그 사태를 우려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왔다.[4] 그러나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위와 같은 추상적 입장 표명에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보안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실행한 바는 없다.

그밖에 지방행정법원 · 항소행정법원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d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CSTA), 검찰총장협회(Conférence nationale des procureurs généraux) 등의 회의체에서도 판사를 향한 물리적 공격 사례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형사조치 이행 등 국가의 가장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고, 수사판사협의회(Association française des magistrats instructeurs, AFMI)는 민감한 사건의 경우 복수의 판사가 공동으로 관할하고 위협을 받는 판사들의 인사이동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	검사(Magistrat du parquet)
신분	판사(Magistrat du siège) 법원 소속	검사 검찰부 소속
역할	중립적 지위에서 수사 지휘	당사자적 지위에서 형사소추
임무	– 공식적 사법수사 개시 – 피의자 소환, 구금 여부 결정 –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 조치 승인 – 증거 수집, 참고인 및 피의자 심문	– 범죄 수사 개시 요청 – 기소 여부 결정 – 법정에서 국가를 대표 – 형 집행 감독
독립성	법무부로부터 독립적	법무부의 지휘를 받음

4) 예컨대 2024년 Frédéric Fèvre 검찰총장에 대한 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판사들의 사법적 업무 수행에서 독립성은 법치국가의 필수 조건이고, 판사들이 보복이나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판사들이 받은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적으로 표명하였고, 2025년 Marine Le Pen 의원 사건 담당 판사가 살해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하자 그러한 위협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한편,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인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테러 사례들에 대하여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5] 다만 전국 법원장 협의회(Conférence nationale des présidents de tribunaux judiciaires)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2025년 말까지 총리실에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III. 프랑스 사법부의 보안에 관한 각종 논의

1. Ingall-Montagnier의 〈법원 안전에 관한 보고서〉

2004년경 Rouen 항소법원의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Ingall-Montagnier는 '법원 안전에 관한 보고서(Rapport sur la sûreté des juridictions)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는 법원 구성원과 법원 방문 민원인들의 물리적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장의 실제 문제점들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법원의 안전에 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켰고, 그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제안함으로써 법원 안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그다음 해인 2005년도에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ENM)에서 관련 연수가 실시되고 법무부에 안전 관련 긴급 예산 250만 유로가 배정되기도 하여, 위 보고서는 법원의 물적 · 조직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위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조치들을 제안하였고, 대부분이 실행되었다.

○ 보안 기능 전담 조직 설치

- 법무부 사법서비스국(Direction des services judiciaires, DSJ) 내에 보안 담당 부서를 신설할 것: 행정인력으로 구성하되 보안 문제 전문 고급 기술자 1명(내부 선발 또는 외부 채용)을 포함
- 각 항소법원 관할 내의 지역행정서비스국(Service administratif régional, SAR)[6]

5) Antoine Léaument 상원 의원은 2025. 2. 내무부장관에게 판사들에 대한 보호 조치의 실현 방안을 서면질의하였으나, 2025. 10.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https://questions.assemblee-nationale.fr/q17/17-3704QE.htm

에 지역 보안 대표(Délégués régionaux à la sûreté, DRS)를 설치할 것
- 법원마다 현장 보안 담당관(Délégué local à la sûreté)을 지정할 것

○ 보안 관리 전담 시스템 구축
- 법원장 권한 하의 현장 감사를 통해 보안 필요도에 관한 실무 평가(안전진단)를 실시할 것
- 청사 보안 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 보안 관련 사건 보고 연락망을 구축할 것
- 진단 결과 및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할 것
- 중앙보안관리소(Poste central de sécurité)와 연계하여 경비인력을 운영할 것: 그 방식은 인원수, 근무 시간, 내부 인력 또는 외부 용역업체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차별화 가능
- 보안 기능에 특화된 비용의 회계를 구현하여 보안 관련 모든 예산과 지출을 추적할 것

○ 보안 교육
- 보안 기준의 지침을 마련하되, 장소별 필요 장비, 출입과 동선 조직, 민감한 파일 및 자료 보호에 관한 규칙, 건물 폐쇄 등의 기준을 표준화할 것
- 사법서비스국 보안 부서 내에 상시 운영 팀을 설치할 것
- 국립서기학교(École nationale des greffes)에 보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적 교육을 실시할 것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가이드라인, 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작 · 배포할 것
- 보안 사고에 노출된 직원들에 대하여 심리 지원을 실시할 것
- 지역 공동 기술 위원회(Comités techniques paritaires locaux, CTPL)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할 것
- 사법부 인트라넷에 보안 사이트를 구축하여 중앙 차원의 긴급 공지, 보안 현장관리자와의 질의응답 등을 가능하게 할 것

6) 각 항소법원 산하에 설치된 법무부 조직으로서, 사법부(법원, 검사실 모두 포함) 전체의 예산, 인사, 물적자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기관

○ 즉각적인 보안 조치
- 출입구를 축소하고, 내부 복도에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하며, 출입구 시설을 점검하고, 내부 보안설비를 점검할 것
- 민감 사건 재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할 것

2. Unité-Magistrats SNM FO의 성명

법관의 독립성 확보, 직업 환경 개선 등 사법관의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인 Unité-Magistrats SNM FO는 2015년경 판사 및 관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설립된 실무그룹의 주도로 주최된 것이었는데, 위 노조는 판사의 보호 문제를 단순히 보안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의 내용들을 주장하였다.

○ 판사와 법원 직원들의 위험 노출도를 ① 지속적이고 강화된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 ②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사건에 한해 보호가 필요한 일시적 위험군, ③ 직무나 지리적 위치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간접적 위험군으로 3분류 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
○ 신체뿐 아니라 재산에 대하여도, 필요시 직장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
○ 법원마다 Vigiparate 계획[7]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
○ 보건안전작업조건위원회(Comité d'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 CHSCT)와 협력하여 보안절차를 정비하고 직원을 훈련시킬 것
○ 민간 보안업체에 맡겨진 보안 및 경비 업무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나 헌병의 업무로 이관할 것
○ 법원 출입절차를 명확화할 것
○ 판사는 다른 공무원들보다 부당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므로,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인 직무상 보호(Protection fonctionnelle)[8]를 강화 적용하

7) 프랑스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차원의 테러 방지 및 보안 강화 계획(Ⅶ.1.항에서 후술)

여 위험에 처한 사법부의 모든 인력에게 무조건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할 것. 설령 일반 국민의 청원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 종료시까지 보호를 지속할 것

○ 판사가 부당한 공격을 받은 경우 판사노조가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할 것

○ 테러 및 조직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의 경우 신원을 비공개할 것

3. 유럽사법효율성위원회(CEPEJ)의 〈법원 건물의 조직 및 접근성 관련 지침〉

유럽사법효율성위원회(Conseil de l'Europe Commission européenne pour l'efficacité de la justice, CEPEJ)는 2014. 12.경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제24차 전체 회의에서 '법원 건물의 조직 및 접근성에 관한 지침{Lignes directrices sur l'organisation et l'accessibilité des tribunaux (bâtiments)}'을 재택하였다. 이는 법원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 이용자 편의 보장, 판사와 법원 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모범설계기준인데, 그중 보안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공공의 신뢰를 보장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들을 권고하였다.

○ 법원 청사 구역을 민원인용/직원 전용/보안용(구금공간 포함)으로 구획하여 차별적인 보안을 시행할 것

○ 소송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보안 수준을 구비할 것

○ 민원접수처에는 직원과 민원인을 분리하는 보안스크린 등 물리적 장치를 설치하되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기술적 장비를 구비할 것

○ 민원인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공간은 직원이 민원인과 반대편의 출구를 이용하도록 하여 위협 발생시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민원실이나 보안실(구금실)에 비상호출시스템을 구비할 것

○ 보안검색대 통과와 신분증 패용 등을 통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

8)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로 인해 공격을 받은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보호 및 법률지원 조치(Ⅶ.2.항에서 후술)

4. 최근의 논의

최근에는 판사들을 비롯한 많은 법원 직원들이 보안의 면에서 형사사건의 영상재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구속 피고인을 법원까지 호송하여 올 필요가 없어 보안 인력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판사는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변의 위협이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Vendin-le-Vieil (Pas-de-Calais) 교도소의 경우, 마약 밀매 혐의로 구속된 수감자들은 감방에서 나오지 않고 화상으로 판사의 심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9]

또한, 수사관들의 경우 수사기록에 번호로만 표기되고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것처럼, 판사 역시 익명화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0]

IV. 프랑스 사법부의 보안 담당 주체[11]

1. 관리자

법무부의 국방 및 보안 고위 공무원(Haut fonctionnair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HFDS)이 국방 및 보안 정책을 조정하고, 사법서비스 감사관(Inspection générale des services judiciaires)은 법원 감사 시 보건, 안전, 근로조건 등과 함께 보안에 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며, 사법서비스국(Direction des services judiciaires, DSJ)은 사법부의 보안 네트워크 운영을 책임진다.

보안 문제의 권한 당국인 사법서비스국은 보안 지침을 제시하고,[12] 법원장들(Chefs de cour)은 그러한 지침과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자신들의 관할 내에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설계하고 감독하며, 판사나 직원을 지역 보안 담당관(Correspondant sûreté régional, CSR)으로 지명하여 보안 문제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

9) 영상재판에서도 판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을 아예 막을 수는 없어, 화상 심문 중 판사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마약 밀매업자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10) 그러나 사법의 공개성을 핵심 원칙으로 강조하며 위 방안에 반대하는 판사들도 많다(최고사법관회의의 위원인 Pierre-Yves Couilleau 등).

11) Ministère de la justice, Politique ministériell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Secteur d'activités d'importance vitale des activités judiciaires (Arrêté du 18 août 2016 portant approbation de la politique ministériell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12) 첨부1 법무부 사법서비스국 인트라넷의 보안 관련 페이지 참조.

방법에 따라 국방 · 안전 구역(Zon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13] 소재 법원장들이 해당 구역의 도지사(Préfet)로부터 국방 · 안전에 관한 전문 기관으로 인정받아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지방법원장은 보안 관련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보안 대응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 문서 관리, 보안 절차의 정기적 검증과 훈련 실시를 감독한다.

2. 지역 간 보안 전문가(Expert sûreté interrégional, ESIR)

사법서비스국(DSJ)의 연락 담당자로서, 조직적으로 사법서비스 국장의 지휘 하에 있으면서 자신이 배치된 곳의 법원장 고용 권한 하에서 활동한다. 특별사법관할법원(Juridiction interrégionale spécialisée, JIRS) 관할 내의 7개 항소법원 중 한 곳에 배치되어 4~5개의 항소법원에서 활동하는데, 법원장이나 지역보안위원회 또는 사법서비스국 보안부서를 통해 임무를 부여받는다. 다만 프랑스 본토 외의 법원들은 지역 간 보안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중앙 행정부에서 직접 보안을 관리한다.

국가경찰 예비군 출신이거나 5년 계약으로 임용된 퇴직 경찰 지휘관들로서, 경찰청이 제공하는 보안 참조관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다.

보안 조사(Études sûreté)를 수행하고, 지역 간 차원에서 보안 담당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타 부처(경찰, 헌병, 도청 등) 소송 보안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활동 내용을 연례 활동보고서에 기록한다. 모든 사법기관이 지역 간 보안 전문가의 보안 조사 혜택을 받도록 권장되고, 그 조사 내역은 해당 법원의 보안 문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사법서비스국의 보안 부서는 법원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간 보안 전문가의 활동 일정을 조정한다.

3. 지역 보안 담당관(Correspondant sûreté régional, CSR)

법원장은 사법관이나 공무원들 중 보안 문제를 지원하는 담당관을 임명한다. 이들은 항소법원 관할 내 사법기관들의 보안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할 내 발생한 사건

13) 프랑스의 국가 차원 안보 · 방위 관할 구역으로, 프랑스 전역을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고위 행정관(Préfet)이 위기 관리, 테러 대응, 민방위, 대규모 재난 대응을 총괄한다(첨부2 국방 · 안전 구역 지도 참조).

들을 모니터링하여 중앙행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데, 이러한 보고는 중앙행정부가 보안 자원 관련 수요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 자료가 된다. 또한 이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도 보안 문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제공한다. 지역 간 보안 전문가(ESIR)의 개입 우선순위를 정하며, 특별사법관할법원(Juridiction interrégionale spécialisée, JIRS)이 소재한 항소법원의 ESIR와 협력한다.

4. 현장 실무자

가. 보안 대응 책임자

관할 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일상적인 보안 업무를 지원한다. 보안 문서를 작성하고, 보안 관련 문서(보안조직도, 열쇠 · 출입증 · 접근 권한 목록, 일반 및 개별 지침서 등)를 관리하며, 보안 장비의 작동 여부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보안 체계의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또한 보안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사무국장에게 전달되게 하는데,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개별 사건 분석뿐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 운영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나. 보안 전담 인력

법원의 보안 강화에 관한 2011년 1월 6일 자 국가의정서(Protocole national d'accord relatif au dispositif de sécurisation renforcée des juridictions judiciaires du 6 janvier 2011)에서는 경찰 외에 민간 보안업체 또는 교도소 예비군에게 법원 건물 보안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법원은 가용 인력(예비군 및 퇴직자 인력풀)을 고려하여 예산적 제약 속에서 보안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1) 경찰 및 헌병(Forces de l'ordre)

법무부와 내부부의 2011년 1월 6일 자 협정에 따라, 이들은 즉결재판(Comparution immédiate),[14] 중죄 재판(Cour d'assies), 공공질서 상 민감한 사건의 보안을 담당한다.

14) 경범죄(contraventions)보다 무거운 범죄(délits)에 관하여 피의자를 체포 직후 곧장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절차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은 지자체장의 감독 하에 외부 보호 계획(Plans de protection externe, PPE)에 개입할 수 있다.

(2) 퇴직 인력

(가) 교정행정 퇴직자(Retraité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교정 행정 내에서 경비원, 교도관, 교정 서비스 국장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되어 연간 최대 720시간(주당 18시간씩 10개월) 근무할 수 있다. 주요 임무는 청사의 출입 및 접근 통제, 현장 보안 활동 지원 등이다.

(나) 교정 민간 예비군(Réserve civile pénitentiaire)

교정행정직에서 퇴직한 후 5년 내에 민간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예비군으로 입대하여 연간 최대 150회, 회당 7시간의 교대 근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법원 사무국장이 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보안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무국장의 책임하에 출입 통제 및 법원 시설의 전반적 감시를 담당한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정서비스 지역 본부에 소속된다.

(다) 경찰 및 헌병 예비군(Réserviste de la police et de la gendarmerie nationale)

경찰 예비군은 연간 최대 150회, 회당 7시간의 교대 근무, 헌병 예비군은 연간 30회의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다.

순찰을 통해 법원 출입 통제 · 검색 임무를 수행하고, 법정 내 치안 유지를 담당한다. 조직적으로는 경찰청장(DDPS) 또는 헌병대 사령관의 휘하에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법원장 등 관할 사법구역 내 최고 책임자의 권한에도 종속된다.

(3) 민간 보안업체 직원

공공조달 계약에 따라 선정된 회사와 민간계약을 체결하여, 그 회사 소속으로서 근무한다. 주로 보안 요원이 부족할 경우에만 계약상 제한된 시간 내에서 활동한다.

이들의 업무는 출입 통제 및 검색, 안전 관리 임무에만 국한되는데, 공공시설(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RP) 보안 규정에 따라 화재 안전 및 인명구조 서비스

(Service de sécurité incendie et d'assistance à personnes, SSIAP)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 요원의 상주가 필수인 대규모 청사의 경우에도 공공 개방시간에만 상주한다.

업무 영역	주요 담당 주체	비고
보안 정책 · 예산 총괄 장비 투자 민간 경비 계약	법무부 국방 및 보안 고위 공무원 (Haut fonctionnair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HFDS)	법무부 장관 명의 '국가 사법 활동 보안 지침', '방위 · 보안 정책' 등 수립
청사 출입 통제 · 검색 감시카메라 관리 화재 · 비상 대응 훈련 등 물리적 보안관리 경찰 · 헌병과의 합동 보안계획	법무부 소속 보안 직렬(Filière sécurité)이 각 법원의 보안 부서 (Pôles de sécurité des juridictions, PSJ)로 배치되어 활동	인력 부족 시 민간 경비가 금속탐지, 가방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 수행 예방 · 관리적 보안을 맡으며 치안권이 없어 신체 구속 불가
법정 내 질서 유지 구치실(geôles) 관리 피고인 · 피의자 호송	경찰국(Police nationale), 헌병(Gendarmerie)	사법경찰권이 있으므로 체포, 신체 수색, 제압 가능. 권총 등 무장 가능
수형자 · 미결수 및 고위험 수감자 대응	행형청(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내 특수보안팀(ELSP) 또는 사법 호송 전문팀(PREJ)	종전에는 경찰 · 헌병이 맡다가 2019년 이관 완료
대규모 · 특별 위험 발생 시	내무부 산하 경찰 기동대 (Compagnies républicaines de sécurité, CRS), 헌병 특수부대(Groupe d'intervention de la gendarmerie nationale, GIGN), 경찰 특수부대(Recherche, assistance, intervention, dissuasion, RAID) 등 투입 가능	내무부 · 법무부 간 협정에 근거

V. 프랑스 사법부의 상시적 보안 관리

1. 개요

2008년 6월 23일 자 법원 보안 강화 계획에 관한 공문[15]으로 도입된 보안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 기록지(Fiche incident), 보안 문서(Dossier sûreté), 보안 계획(Projet sûreté)을 통해 잠재적인 보안 결함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다.

2. 사건 기록지(Fiche incident)

가. 의의

사건 기록지는 법원의 보안에 영향을 미친 사건(재산 또는 인명 피해) 발생 시 작성되는 2페이지짜리 요약 문서이다. 사법서비스국(DSJ)은 사건 기록지를 전송받음으로써 각 법원 내에서 발생하는 악의적 사건의 실태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기록지 분석 후 법원의 보안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나. 보고 대상 사건

시설 파손,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쟁, 언어 폭력, 절도, 불법 또는 위험 물품 반입 등 법원 내 모든 악의적 사건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기록지에는 사건 요약표가 포함된다.

다. 작성 방법[16]

첫 번째 부분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판사, 공무원, 보안 요원 등)이 작성하며, 필요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추가 작성한다. 기존 보안 장치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고자가 EMMA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고, 심각

15) Direction des services judiciaires, Plan de renforcement de la sûreté des juridictions, Circulaire SJ-08-004-SDOJP du 23 juin 2008.
16) 첨부3 사건 기록지 양식 참조

도 등급은 사건 대상자의 주관적 느낌과 현지 상황을 반영하여 기재한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부분은 현지 보안 담당자(Correspondant sûreté local, CSL)가 작성하며, 사건 발생 이후 적용될 특별 보안 조치 여부, 법적 절차, 수리, 설치 등 후속 조치를 기록한다.

마지막 항목에는 지역 보안 담당자가 서명하고 필요한 모든 관찰 사항을 기재한다.

라. 제출 방법

작성자는 상급자를 통해 현지 보안 딤당자(CSL)에 보고하고, 이후 CSR을 통해 OFJ2 사무국에 전자 방식으로 전달한다. 인명 또는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지체 없이 OFJ2에 보고해야 한다.

3. 보안 문서(Dossier sûreté)

가. 의의

보안 문서는 각 법원 내 보안 관련 모든 문서를 집대성하여, 사실상 법원의 기억 역할을 한다. 보안장치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포함하며, 그 밖에 보안 문서에 기재될 사항의 예로는 보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의 목록, 예산 요청, 보안 관련 계약서 및 견적서, 관련 업체 정보(자물쇠 업체 등), 보안 관련 담당자 연락처, 위기 발생 시 개입 및 업무 지속 계획, 필요 시 수행된 보안 관련 연구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나. 보안장치 체크리스트

관할 구역의 보안 조치에 관한 요약 보고서로서, 해당 지역의 보안 담당자(Correspondant sûreté local, CSL)나 지역 간 보안 전문가(Expert sûreté interrégional, ESIR)에 의하여 작성된다.

기존 보안 장치의 포괄적 목록을 확보하여 법원의 보안 현황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작성되며, 지역 보안 담당관(Correspondant sûreté régional, CSR)에 의해 법무부 법원보안과(Section sûreté des juridictions)로 제출된다.

체크 대상 항목으로는 법원 출입 보안, 전자 장치 및 보호 장치, 영상 감시 장치, 원격

감시 장치, 침입 방지 장치, 출입 배지 및 코드, 구금실 및 구금 대기실, 피구금인의 이동 경로, 법정, 법정 내 보안 박스, 경보/알림 장치, 증거물 보관소, 기록 보관소 등이 있다. ESIR 또는 CSL은 사건 기록지 전달 경로와 법원 보안 문서의 존재 및 활용 여부도 확인한다.

4. 보안 계획(Projet sûreté)

가. 의의

법원은 경찰, 헌병(Gendarmerie), 소방청, 도청(Préfecture), 지방자치단체(Commune), 민방위(Sécurité civile)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개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안 진단(Étude sûreté)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보안 진단(Étude sûreté)

보안 진단은 어떠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보안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된다. 법원장의 책임과 감독 하에 수행되는데, 지역 간 보안 전문가(Expert sûreté interrégional, ESIR)의 상주가 불가능한 프랑스령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경찰국에 요청하여 국가 경찰 보안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17]

17) 점검 사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 주변 환경(법원 인근)을 검토
- ○ 외곽 공간(담장 포함 구역부터 건물 외벽까지, 문과 창 포함)을 점검
  - – 사무실이나 부서가 공개되어 있는가? (투척물 위험, 총기 사용 등)
  - – 창살, 방범 유리, 방탄 유리 설치가 필요한가?
  - – 창문과 외벽이 침입 시도를 막을 만큼 밀폐되어 있는가?
- ○ 출입 경로 검토
  - – 출입 경로가 공공도로로부터 높은 위치에 있고 계단, 볼라드 등으로 보호되는가?
  - – 구금차 접근 경로가 좁은 일방통행로인가? (매복 위험 가능)
  - – 출입구 수와 견고성은 충분한가?
  - – 출입 잠금 방식은? (열쇠, 키패드, 배지 등)
- ○ 출입문 및 잠금 장치의 견고성 확인
  - – 문 견고성, 자물쇠 품질, 외벽 내구성, 창문 보호 수준
- ○ 내부 부피(건물 내부 공간) 검토
  - – 법원 구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공공구역, 보안 공공구역, 행정구역, 제한구역, 구금구역)
  - – 민감 공간 및 사적 공간 보호 상태: 침입 방지 장치, 출입 통제, 금고 존재 여부 등
- ○ 대중 안내

ESIR는 사법서비스국(DSJ)과 직접 협력하여 법원의 보안을 심층 평가한다. 지역 보안 담당자는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매일 점검한다.

VI. 프랑스 사법부의 보안을 위한 보편적 · 일반적 조치

1. 청사 보안 일반론

프랑스 도시계획법(Code de l'urbanisme) 제L114-1조 내지 제L114-4조는 특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계획, 건축 프로젝트 등에 관해 공공안전 · 보안 평가(Étude de sécurité publique, ESP 또는 ESSP)를 사전에 수행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명문화하였다. 위 법 제R114-2조에서는 보안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서 ① 주변 환경과 맥락에 대한 진단, ②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분석, ③ 거리 · 건물 배치 · 구조 · 디자인 · 주변 정비 등을 통한 위험 예방 및 완화 조치 제안, ④ 경찰 · 구급의 접근 용이성, ⑤ 필요시 비디오감시 설치 평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원 청사는 공공시설이면서도 보안 위협에 민감한 건물이므로 위 도시계획법 규정이

- 중앙 안내가 존재하는가? (방문객 안내, 서비스 안내 제공 가능 여부)
- 방문객이 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요청 처리가 가능한가?

○ 법정
- 민감 사건 시 입구에서 필터링 장치 설치 가능 여부
- 피고인 보안박스 구성 상태 (탈출, 폭력 방지)
- 피고인과 변호사 상담용 안전 공간 설치 여부

○ 사무실
- 직원이 근무 공간을 잠글 수 있는가? (키패드, 열쇠)
- 사물함, 금고 등 잠금 가능한 보관 시설 존재 여부
- 사무용 가구 보안(서랍, 잠금 캐비닛 등)

○ 구금실
- 보호 장치 및 감시 장치 상태
- 상주 인력 존재 여부
- 피고인 이동 경로 차단 여부 및 개선 가능성
- 구치소 및 이동 경로의 특수 잠금 장치 존재 여부

○ 일반 감시
- 보안 관제실 존재 여부 및 설치 가능성 확인

○ 늦은 시간, 주말 법정 운영 시 특수 조치
- 출입, 폐쇄, 감시 장치 존재 여부

적용되어, 법원 설계시에는 보안 위험을 분석하여 대응 플랜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안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법원 건축 계획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즉. 청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상의 취약점과 운영상의 제약을 식별해 내어 그 문제점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국방법(Code de la défense)은 국가의 공공 안전에 필수적이며 국가 기능 유지 · 경제 및 사회적 안정 ·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부문을 12개의 SAIV(Secteur d'activités d'importance vitale)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 사법제도의 핵심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와 시스템은 SAIV-AJ(Activités judiciaires)로 다루어진다.

법무부장관은 SAIV-AJ의 보안 체계를 설정하고 법적 기반을 다지는 '국방 및 보안 정책(Politique ministériell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PMDS-V9)'을 행정명령으로 승인하였는데,[18]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식 보안 정책이 제도적으로 확정되었다.

2. 청사 보호 계획의 유형

법원 청사에 대한 보호 계획은 작성 주체와 적용 범위의 면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마련된다.[19]

법무부는 모든 법원에 공통 적용되는 정책으로서 보호 계획(Plans de protection, PP)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최소한의 출입 통제 기준, 경찰 경비의 배치 기준, IT 네트워크 보안 표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별 법원에서는 해당 청사의 운영 책임자가 특별 보호 계획(Plans particuliers de protection, PPP)을 통해 그 건물의 물리적 보안 체계(출입 통제, 검색대, 감시카메라, 경비 동선)와 사이버 보안(전산망, 사건 기록 관리시스템), 내부 위기 대응 절차(대피경로, 피난구, 내부 비상연락망 등) 등을 수립한다.

한편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법원 보호를 위해 법원 소재지의 도지사(Préfet), 군 · 경찰, 소방청 등은 외부 보호 계획(Plans de protection externe, PPE)을 수립하여, 청사

18) Arrêté du 18 août 2016 portant approbation de la politique ministériell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19) Ministère de la justice, Politique ministériell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Secteur d'activités d'importance vitale des activités judiciaires (Arrêté du 18 août 2016 portant approbation de la politique ministériell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주변의 치안부대 배치, 교통 통제와 대피 관리 등을 실시한다. 대규모 테러 위협시 파리 경찰청과 군경이 Palais de justice 주변을 전면 통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3. 청사 내 보안구역의 구분

가. 구분 목적

법원 내 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안 수준을 차등화하여 업무 및 보안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사 내부를 ① 공공구역, ② 보안 공공구역, ③ 행정구역, ④ 제한구역, ⑤ 구금구역의 다섯 가지 구역으로 구분한다.[20]

나. 구역의 유형

(1) 공공구역(Zone publique)

(가) 개요

일반 대중(당사자, 방문객, 변호사 등)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데스크, 로비, 과사무실의 통합 접수대, 대기실, 법정 등이 포함된다. 건물 입구의 공공통제소를 통과하여야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개방 및 폐쇄 시간, 늦은 심리나 주말 심리 시의 운영 방식이 지정되어야 한다.

(나) 목표

재판 공개 원칙 및 사법 접근권 보장과 대중의 안전 확보 요구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법원 직원들의 안전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 보안 조치

ㅇ 공용 출입구

보안점검은 법무부 소속 보안요원이나 민간 경비 인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공용구역에서 보안구역 출입을 요청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안내데스크에서 사전 확인절차 진

20) Direction des services judiciaires sous-direction des finances de l'immobilier et de la performance, Guide pratique sûreté.

행 후 필요시 신분증과 교환하여 임시 출입배지를 발급하여 준다.

ㅇ 공용 화장실

시설 훼손, 무기 및 금지 물품 은닉, 유통 위험을 경계해야 하며, 불시 순찰을 통해 내부 감시를 강화한다. 내구성이 강한 변기 물탱크를 설치하고 가짜 천장을 제거하도록 권고된다.

ㅇ 법원 중앙 홀 내지 대기실(Salle des pas perdus)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거나 순환경비 순찰을 실시하며, 인력은 영상 감시 장치로써 보완할 수 있는데 가급적 보안통제소(Poste de contrôle et de sécurité, PCS)와 연동해야 한다. 잠재적 은폐공간으로 악용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쓰레기통은 투명 재질의 벽 매립형으로 설치하고, 구조 설계 시 불필요한 구석이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ㅇ 접수 창구(Accueil et l'accueil unique)

출입 차단장치는 파손에 강한 규격(EN356)이어야 하고, 특히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지역의 법원에서는 방탄 기능을 갖추도록 권장된다. 유리 역시 반 파손기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위생 인터폰과 문서 전달구를 통해 직원과 민원인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소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접수 담당자가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중 비접근 전용 출입구를 마련해야 한다.

ㅇ 법정(Salle d'audience)

- 공적 접근성과 보안적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구금된 피고인의 도주가능성과 법정 내 질서 교란행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출입 통제: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하고, 방청객과 판검사 및 법원 직원, 구속 피고인이 서로 분리된 전용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 물리적 보호 장치: 법정의 벽체와 출입문은 침입 저항 기능(Anti-effraction)을 갖추어야 하고, 법정 내에 창문 설치를 최소화하여 건물 외부에서 내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비상 대응 장치로서 EMMA 시스템이나 비상 호출 버튼을 설치하여, 즉시 보안통제소(PCS)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상 재판의 중계나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법정 내부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피고

인 전용 보안박스(Box sécurisé)를 설치한다.

- 법정 질서 유지권: 심리 질서 유지(Police de l'audience)는 법정의 주재자인 재판장이 담당한다. 재판장은 법정 전체를 시야에 둘 수 있어야 한다.
- 법정 경비: 중대한 형사재판(즉결 재판, 중죄 재판)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상주하여 지속적으로 보안을 담당하며, 그 외 형사재판의 경우 지역 경찰청과 체결된 보안 협약(Protocole)에 따라 예비경찰관이나 헌병 예비군이 순환 경비를 담당할 수 있다.

(2) 보안 공공구역(Zone publique sécurisée)

(가) 개요

보안 공공구역은 법원 내의 공용 공간이지만, 소환장이나 출입 권한을 가진 자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 구역이다. 일반인을 접견하기 위한 판사 및 공무원 사무실을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공간은 민원인을 맞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안 조치가 요구된다.

(나) 목표

출입 가능 주체는 법원 직원, 소환장을 가진 당사자, 업무 수행 목적으로 출입이 요구되는 출입증 소지인, 직원의 동행하에 방문하는 일반인 등이다. 특히, 보안통제소(PCS)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고립된 상황에서 법원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보안 조치

ⅰ) 출입 통제: 모든 출입구 및 층별 서비스 구역에서 출입 통제를 실시하며, 특히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을 통한 비인가 이동을 차단하여 공공구역과 보안 공공구역이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ⅱ) 대기 공간 운영: 피해자 대기실과 피고인 대기실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동선 및 감시 체계 관리: CCTV를 보안통제소(PCS)와 연동하여 설치함으로써 피고인과 당사자가 대기하는 공간, 사무실 접근 동선 등 취약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순찰 인력을 통한 불규칙적 감시를 병행한다. 개방 시간 외에는 침입 감지 장치를

복도에 가동시켜 무단 접근을 차단한다.

(3) 행정구역(Zone administrative)

(가) 개요

판사 및 법원 직원들의 전용 공간으로, 일반 대중의 출입은 철저히 금지된다. 판사실, 민원 접견용이 아닌 사무실, 직원 전용 카페테리아, 휴게실, 도서관, 주차장, 우편물실 등이 있다.

공공구역이나 보안 공공구역을 통해서 출입하게 할 수도 있고, 법원 외부에서 직접 출입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나) 목표

법원 직원, 동반된 방문객, 직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외부 용역 인력과 같이 오직 업무 수행 주체와 통제된 방문객만이 출입한다는 점에서, 공공구역이나 보안 공공구역과 달리 사실상 내부 전용 공간으로 기능한다. 직원 출입의 효율성과 보안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입 주체에 따라 다층적 인증절차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 보안 조치

ⅰ) 출입 방식의 세분화

직원의 경우, 도보 출입구를 이용해 직접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전용 주차장을 통해 직원 전용 출입구로 진입하게 하고, 청사 진입시에는 열쇠나 배지, 키패드 등을 이용하게 한다.

방문객의 경우, 공용 출입구에서 안내 데스크를 통해 접수한 후 반드시 직원의 인솔하에 출입하게 한다.

배달원의 경우, 배송 차량 전용 출입구로 접근하여 비디오폰 등의 통신 장비를 통해 사전 통제를 거치게 하고, 출입 요청서, 차량 내용물, 배송 사유를 확인한 후 직원이 인솔한다.

ⅱ) 내부 동선 관리

명확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직원 이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4) 제한구역(Zone restreinte)

(가) 개요

직무 수행을 위해 허가된 일부 직원과 특정 관계자들만 출입 가능한 공간으로, 보안통제소, 증거물 보관실,[21] IT서버실, 기록 보관실 등이 있다. 행정구역의 것과 동일한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되, 일부 직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변경해 둔다.

(나) 목표

물적 자산을 보호하고, 법적 가치가 있는 문서와 기록물을 보호하여 손실과 변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보안 조치

ⅰ) **출입 권한 관리:** 반드시 인가받은 자에게만 출입이 허용되고, 그 인가는 책임 수준과 업무 필요성에 따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부여된다. 그 외의 인원은 특별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인가된 사람의 동반하에 출입할 수 있다.

ⅱ) **상시 감시 체계:** 보안통제소(PCS)와 연계된 CCTV를 통해 지속적으로 출입문과 내부 공간을 모니터링하고, 불시 순찰을 병행한다.

ⅲ) **침입 탐지 시스템:** 복도 및 내부 공간에 침입 탐지 센서를 설치하여 24시간 가동되게 한다. 이는 출입 통제 장치와 연동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ⅳ) **물리적 방호:** 벽체 및 출입문의 구조는 강제 침입 저항 등급(Anti-effraction)에 상응하는 물리적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증거물 보관실(Pièce à conviction)〉

A. 개요

압수물 · 증거품을 봉인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으로, 법원 내 제한구역(Zone restreinte)에 위치한다. 증거물 관리 업무는 높은 수준의 주의와 엄격한 통제가 요구되므로, 출입 권한 및 열쇠 관리 권한은 해당 서비스에 배속된 직원과 사무국장(Chef de greffe)에게만 부여된다.

21) 봉인된 물품이 보관되는 곳으로, 해당 업무 담당 직원과 부서장만 출입할 수 있다.

B. 목표

압수물 · 증거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적재 및 과밀화를 방지하되, 안전 요건에 부합하는 물품만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 보안 규칙

1) 운송 · 보관 절차

- 밀폐된 안전 운송 경로(Circuit d'acheminement sécurisé et étanche) 마련
- 증거물은 반드시 매일 지정된 보관소에 인치
- 경찰 · 헌병 등 사법경찰기관이 물품을 법원에 인계하기 전 사전 안전조치(예: 총기 비활성화, 위험물 중화) 의무

2) 보관실의 물리적 조건

- 창문이 없는 밀폐형 공간
- 가능하면 지하 공간에 설치
- 침입 방지 장치와 화재 감지기 설치
- 영상감시 장치(보안통제소와 연동) → 단순 근무자가 아닌 보관 공간 전체 감시 및 탐지 시 자동 녹화

3) 민감 증거물의 특수 보관

- 총기류: 총기 전용 거치대에 보관, 개별 잠금 조치 병행
- 탄약류: 총기와 별도 공간에 분리 보관
- 마약 및 고가품: 금고 또는 강력한 금고실(Chambre forte) 사용
- 위험물(폭발물, 인화물) · 생물학적 시료: 보관 불가

4) 인적 관리 체계

- 보관실 출입 인가 인원은 명확히 지정할 것
- 임시직에게 관리 업무를 맡기지 말 것
- 경비원, 청소 · 시설관리 직원에게 열쇠 · 출입권한을 부여하지 말 것
- 열쇠 · 출입 배지의 발급 · 반납 · 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

5) 보건 · 안전 조건

- 증거물은 보관 과정에서 취급 인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함
- 따라서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안전하게 포장한 뒤 접수 · 보관

(5) 구금구역(Zone détenus)

(가) 개요

구금된 피의자 ·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기 전 대기하는 공간으로, 보안상 특별한 관리와 설비가 요구된다. 구금 대기실(Attente gardée) 및 법원 내부 이동 공간, 호송차량 전용 출입구(Sas fourgon), 구금실(Cellule), 피구금자 전용 이동 통로(Couloir de circulation) 등이 있다. 이 구역은 구조적으로 외부와 차단된 이동 동선을 갖추고 있으며, 전용 보안 근무 인력과 기술적 장치가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나) 목표

피구금자가 시설 내부나 외부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구금자의 자살 시도, 타 구금자에 대한 폭행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법원 직원 및 사법절차 수행 공간의 전반적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보안 조치

ⅰ) 피구금자 이동 관리

- 피구금자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공격, 도주 시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호송 시부터 법정 출석에 이르기까지 법원 직원과 일반인, 심지어 다른 피구금자와도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이 관리되어야 한다.
- 호송 절차 확립: 호송 차량의 도착 및 관리 방식, 호송 인력의 배치 및 임무, 피구금자의 하차 후 구금실 등으로의 이동 절차 등을 경찰 · 헌병과 협의하여 호송절차를 문서화
- 출입 통제: 출입문 개폐 전 비디오폰을 통한 신원 확인
- 감시 체계 구축: 호송 차량 도착시 CCTV를 통해 보안통제소와 연동하고, 구금실(Cellule) 및 위생시설(Sanitaire) 내부를 제외한 이동경로 전 구간을 영상 감시
- 비상 대응: 사건 · 사고 발생시 즉시 치안 당국에 경보 발령
- 시설 보강: 호송 통로는 외부에서 관찰 불가능하게 하여야 하고, 구금실과 대기실에 방범용 강화시설 설치, 출입문에는 침입 방지 장치 설치
- 동선 관리 원칙: 피구금자의 공공도로 노출을 최소화하고 공중과의 동선 교차를 철저히 차단

ii) 접근 제한

- 구역 내 진입이 허용되는 인원(변호사, 사회조사관, 의사 등)은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변호인 접견실은 구금실과 동일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피구금자와 변호인 간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 호송 차량 전용 출입구(Sas fourgon)

- 호송차가 법원 구역 안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보안 출입구로, 법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복 · 공격 위험, 도주 위험 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중 차단 구조로 되어 있어 한쪽 문을 열기 전 반드시 다른 쪽이 닫혀 있어야 한다. 차량이 진입하면, 피구금자는 경찰 · 교정 인력의 호송 하에 차량에서 내려 구금실 등으로 인치된 후 전용 동선을 따라 법정 출석을 준비한다.
- 시각적 차폐: 외부에서 통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측면에 그릴을 설치해야 할 경우 돌 · 병 등의 투척물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조밀한 망을 사용한다.
- 영상 감시: 입구를 CCTV로 감시하고, 영상은 보안통제소(PCS)로 전송하여 출입문 개폐 제어와 연동되도록 한다.
- 기계 장치: 차량 출입구는 자동 개폐가 가능해야 하며, 호송차 이동 및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출입 제어: 비디오폰을 설치해 진입 차량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고, 복수의 호송차량에 대하여는 진입 간격을 조율하여야 한다.
- 특수 상황 대응: 테러위험 · 조직범죄 재판 등 민감한 사건 시에는 인근 도로 통행 제한, 호송 인력 보강, 기타 특수 보안조치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구금실(Cellule)

- 재판 전까지 피구금자를 격리 · 보관하는 공간으로, 영상 감시 장치와 보안 인력이 배치된다.
- 감시 체계: 가능하다면 직접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직경 2cm의 강철 봉을 간격

최대 11cm, 최소 4cm 이상 깊이로 고정한다.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5㎝ 이하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관찰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물리적 보안: 문과 벽면에는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방범 수준의 기계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이나 환기 덕트, 전기 케이블, 조명은 겉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창문이 외부로 연결될 경우에는 철창과 반투명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수갑 고정을 위해 봉이나 고정 고리를 설치할 수 있다.
- 시설 관리: 가구는 벽 · 바닥에 고정하되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생 시설(화장실 · 세면대)을 설치하여야 한다. CCTV는 구금실 자체가 아닌 복도 · 출입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피구금자의 사생활과 인격이 존중되도록 설치 각도를 조정한다. 민감 사건의 경우 개별 대기실을 제공할 수 있다.

ㅇ 구금 대기실(Attente gardée)

법정이나 판사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단기 대기 공간(방, 복도 등)으로, 피구금자가 곧바로 출석할 때 잠시 머무르는 용도이다.

경찰, 헌병, 또는 퇴직 교정공무원을 보안 인력으로 활용하고, CCTV를 인적 경비와 병행하여 운용한다. 구금실 내부 및 인접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한다.

〈법정 내 보안 박스(Box sécurisé des salles d'audience)〉

A. 개요

구금 상태의 피고인을 법정 내에서 호송 인력의 관리하에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폐쇄형 공간이다. 피구금자가 타인을 공격을 하거나 방청객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험, 도주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구조물이다. 법무부장관의 2016년 8월 18일 자 명령(Arrêté)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B. 유형

박스 전면을 유리로 막는 유형, 박스 앞쪽을 철창으로 막고 방청석과 판사석 쪽은 유리로 막는 유형이 있다, 어느 방식이든 박스 전체의 높이는 약 2.9m로, 천장 쪽으로는 수평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바닥에 매우 견고하게 고정된다.

박스 전면을 유리로 막는 유형의 경우, P2A~P5A 규격의 강화유리(보안이 중요한 사건은 BR2 이상의 방탄유리)를 사용하고, 변호사와 피구금자가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에서

문서나 대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15㎝의 개구부 두 개를 설치한다. 개구부가 법원 서기 쪽으로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박스로 들어가는 문도 유리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수감자가 기어오를 수 없도록 박스 내부에는 선반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앞쪽을 철창으로 막는 유형의 경우, 지름 8㎜~1㎝인 강철 케이블이나 튜브를 박스 벽 위 최소 1.5m 높이에 이르도록 12㎝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고, 측면 유리는 전면이 유리박스인 유형에서와 같은 규격의 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박스의 상부도 케이블이나 튜브로 차단하여, 전면 철창이 탈출용 사다리처럼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C. 보안 규칙

박스는 법정 내부 공간으로 직접 통하지 않으며, 오직 보안 회로로만 연결된다. 박스는 완전히 밀폐되어야 하되, 판사와 피고인 사이,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D. 문제점

법정 내 보안 박스에 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예컨대, 보안 박스 안에 있는 피구금자의 수가 개구부의 수보다 많을 경우, 개구부 근처에 앉은 피구금자는 허리를 구부려 어느 정도 쉽게 변호인과 소통할 수 있지만, 개구부에서 먼 곳에 앉은 피구금자는 호송 담당 경찰관의 허가를 받아 개구부 쪽으로 이동해야만 변호인과 소통할 수 있다. 또한 개구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려면 목소리를 높여야만 해서 변호인 외의 제3자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피고인을 유리케이스에 감금하는 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2]

이러한 점에서 인권옹호관은 2018년경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1) 박스는 이동 가능해야 하고, 2) 보안 박스 안팎에서 재판부, 변호인, 피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인체공학적인 개방 구조 및 음향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3) 박스 내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대화가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고, 4) 필요시 통역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음향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5) 영상 자료가 방청객에게 송출되는 경우 박스 내에서의 시야 확보가 보장되어야 하고, 6) 재판장 요청에 따라 법정 서기, 검찰, 변호인, 기타 당사자들이 전달하는 서류가 박스 안으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7)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박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8) 장애를 가진 변호인도 피고인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9) 재판정 내에서 박스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선 사항을

22) CEDH, Yaroslav belousov c. Russie, 4 octobre 2016, req. n° 2653/13 et 60980/14.

권고하였다.[23] 그럼에도 지금까지 보안 박스는 과거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유지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 구역별 출입통제 및 구역간 이동의 규칙

비행정구역에서 다른 비행정구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구역을 거쳐야 하고, 오래된 건물이어서 위 규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대체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이나 제한구역에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부터 지정된 방문이 끝나고 퇴청할 때까지, 방문 대상자의 책임하에 인솔되고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해당 구역의 모든 직원은 직원 및 자산의 안전 확보, 정보 자산 보호(컴퓨터 등 전자 매체뿐 아니라 종이 문서 등의 물리적 자료 포함)에 관해 방문자의 이동 경로와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의무를 진다.

4. 청사 내 보안 장비

청사를 공간적으로 차단하는 물리적(기계적) 장치, 청사 내의 감시와 안전을 보장하는 전자적 보호 장치,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술적 장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24]

가. CCTV

침입 및 도난 예방, 유사시 가해자 식별 가능성 확보, 야간 비상 상황 대비 목적으로 청사 내부에 CCTV를 설치하되, 법정 내와 법원 내 비공개 구역의 사무 공간은 촬영이 금지된다.

침입 경보 감지기가 있는 경우에는 정문 및 기타 출입구, 봉인된 시설, 구금차량 통행로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침입 경보 감지기 없이 CCTV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23) Jacques Toubon, Recommandations générales au titre de l'article 25 de la 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Décision du Défenseur des droits n° 2018-128.

24) Direction des services judiciaires sous-direction des finances de l'immobilier et de la performance, Guide pratique sûreté.

주변 주차장, 대기실, 교정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부서로 이어지는 통로, 건물 외벽, 주요 복도, 민감 부서 및 봉인실로 이어지는 통로 등에도 설치한다. 설치 시에는 법무부의 정보시스템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출입구, 압수물 보관실(Salle des scellés), 호송차량 출입구(Sas fourgon)에서 침입 방지 장치(Anti-intrusion)와 연동하여 설치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며, 주차장이나 복도, 건물 외벽 등에는 CCTV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출입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록 저장(사후 분석용) 용도로 전송되며, 상시 기록 및 자동저장 되었다가 약 5일 후 삭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구역에서는 안내판 등을 통해 영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나. 금속 탐지기

청사에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직원 1인 이상을 배치한 보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보안게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금속 탐지 막대를 사용할 수 있다. 세라믹 무기와 같이 기존 금속탐지 장비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물품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전신 스캐너 및 밀리미터파 보안게이트를 함께 활용하기도 한다.

국참사원은, 법률보조인을 포함하여 신뢰 범위 내외를 불문한 모든 사람에게 법원 출입시 금속탐지기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한 것은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25)]

다. 경보시스템

EMMA(Emission de message d'alerte)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위기 발생 시 판사나 법원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할 수 있는 무음의 경보로, 보안게이트나 CCTV 등의 보안 장치를 보완 또는 대체(특히 하급법원)하는 역할을 한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각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입력한 뒤 컴퓨터를 재시작하면 EMMA가 활성화된다. 화면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단축키를 눌러서 경보를 발신할 수 있고, 경보가 발신되면 같은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메시지가 표시된다. 경

25) Conseil d'Etat, 10/7 SSR, du 21 octobre 1988, 70066, publié au recueil Lebon.

찰 예비군(Réserviste de la police nationale)이나 민간 보안요원들도 경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라. 물리적 출입 통제 장치

ANSSI(프랑스 국가정보보안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마. 침입 방지 장치

접촉식 개폐 탐지기, 움직임 감지기, 적외선 장벽 등을 통해 건물을 보호하고, CCTV와 연동시키기도 한다.

접촉식 개폐탐지기는 문과 창문이 열리면 경보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층의 출입구와 창문, 건물 내에서 보안 취약 지점으로 분류되는 구역에 설치한다.

움직임 감지기는 내부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탐지하는데, 외부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 건물 내부 복도로 연결되는 출입문, 기록보관소, 전산실, 전화교환실, 압수물 보관실 등에 설치되며, 법원장실, 검사장실, 사무국장실 등 민감한 곳에도 설치가 권장된다.

적외선 장벽은 특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침입을 탐지한다.

5. 청사 출입 통제

가. 출입의 유형별 지침

법원 청사 출입은 주체와 목적 등에 따라 일반 공공 출입, 직원 도보 출입, 호송 차량 출입, 직원 차량 출입, 배달 차량 출입 등으로 유형을 나누어 따로 지침을 두고 있다.[26] 신분(직원, 일반인, 법률보조원, 수감자 등)에 따라 차별화된 출입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출입의 원활함과 안전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출입자들 사이의 교차 통행을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근로에는 고압 나트륨 램프 또는 금속 요오드 램프를 설치하되 영상감시 최적화를 위해 백색광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26) Ministère de la justice, Politique ministériell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Secteur d'activités d'importance vitale des activités judiciaires.

(1) 일반 공공 출입

개방 및 폐쇄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게시하고, 가급적 하나의 공공 출입구만 운영하여야 하며, 주말에 이루어지는 공개 재판에 관한 운영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출입시 검문을 하고 출입 시간을 표시하며, 보안통제소(PCS)에 연결된 영상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공공 출입구 및 인근 구역을 지속적으로 또는 무작위로 감시한다.

(2) 직원 도보 출입

행정구역 출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직원은 도보 출입구를 통해 부서로 바로 이동하거나 전용 주차장에서 열쇠, 배지, 비밀번호 등을 통해 출입하는데, 직원의 군에 따라 적절한 출입 방식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한다.

(3) 호송 차량 출입

영상 감시장비를 통해 보안통제소(PCS)와 연결하여 도착 상황을 감시하며, 치안 병력 경비를 강화한다. 민감한 재판 시에는 법원 주변 도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도 한다.

(4) 직원 차량 출입

배지 등으로 제어되는 자동 출입문을 통해 선별된 출입만 허용한다.

(5) 배달 차량 출입

물품을 주문한 사람이 배달차량의 번호, 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요청하여 배송 수령 부서에 제출하고, 해당 부서는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배달 일정을 사전에 계획하여야 한다. 야간 재판 또는 주말 재판 시, 출입 방식별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접근 통로 및 출입문은 방범 등급에 부합하는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외부 협력업체의 출입

구내식당의 식자재 배송용 별도 출입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주문한 사람이 업체 차량의 번호, 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요청하여 업체 요청 부서에 제출하고, 해당

부서는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출입 조건이 변경되면 주문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체 인력이 법원 내부로 들어와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요원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Vigipirate 시행시 또는 민감한 시설 출입시에는 차량 하부를 거울로 검사한다.

출입 업체는 출입자의 명단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되, 일시 협력업체의 경우 작업 기간 및 담당 구역을 명시한 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체인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48시간 전에 명단을 제출한다.

나. 법원의 출입 관리 방법

(1) 일상적 관리

보안담당자는 출입한 업체들의 명단을 매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출입카드나 배지, 출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인사 이동시마다 출입 수단을 갱신하고, 열쇠나 출입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열쇠 관리 조직도를 작성한다. 이때 열쇠나 출입증 보유자는 보안통제소 직원이나 유지보수 담당자 등 한정된 인원으로 그 수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고, 열쇠 반환 현황을 추적하여야 한다. 상시 출입업체(경비, 청소, 유지보수 업체 등)의 작업자들로부터는 범죄경력증명서(B3)를 제출받고 필요시 해당 작업자의 예비 도덕조사를 실시한다.

(2) 신분증 제시 요구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8-1조 내지 제78-6조는 범죄나 범죄의 시도가 의심되는 경우, 수배 대상자나 조사에 유용한 정보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법경찰관(Officier de police judiciaire)이나 일정 조건하의 사법경찰요원(Agent de police judiciaire) 및 그 보조요원이 신원 확인(Control d'identit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불응하거나 신원을 입증할 수 없으면 구금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청사 출입 시에 요구되는 신원 확인 절차는 형사소송법상의 신분 확인 및 기록 절차와 무관하며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장의 권한 하에 취해지는 내부 방침에 불과하므로, 신분 증명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더라도 그에 대해 건물 접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넘는 조치는 불가능하다.

(3) 출입검사

교정 시설, 국가 중요 시설, 주요 공공시설은 모든 출입구에 폭발물, 인화성 물질, 무기, 위험 물건 등의 반입 여부를 물리적으로 검사하는 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국가 중요 시설 내에서는 외부 방문자가 제한 구역에 출입할 때 그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해당 기록은 정보 ·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에 따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교정 시설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 규약에 서명하였으며 신뢰 그룹에 등록된 자가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출입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 신뢰 그룹 포함자들 역시 보안 규칙 위반시에는 신뢰 그룹에서 제명될 수 있고, 권한 당국의 무작위 출입 통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Vigipirate 계획에 따른 지침에 복종하여야 한다.

(4) 휴대 수하물, 개인 소지품, 배달물 검사

신체검사, 휴대 수하물에 대한 강제 수색은 임의로 시행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건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제 수색이 아닌 X선 탐지를 통한 육안 검사, 보안 검색 담당자가 방문객에게 가방을 열어 내용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의 검사는 널리 가능하다. 방문객이 검사 요구에 불응하면 시설 출입이 거부될 수 있다.

날카롭거나 특이한 물건은 보안 검색 담당자가 검사 기록부에 기재하며 임시 보관하였다가 방문객이 떠날 때 반환한다.

불법 무기류와 같이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 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하고 그의 재량으로 해당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시간적 · 장소적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인정되는 물품들은 법원 출입을 조건부로 제한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하에 일시적으로 압수될 수 있는데, 그 반환 여부는 법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6. 청사 외부의 보안

울타리는 건물로부터 5~10m 거리를 두고 최소 2.5m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 외부 창문과 벽체에는 방범 등급 P6B(EN 356)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고, 외부

출입문에도 규격을 갖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창문 개방 폭은 최대 11㎝로 제한된다.

건물에 차량이 돌진하거나 폭발물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공간 역할을 하도록 광장을 확보하여야 하고, 지하 주차장은 반드시 법원 직원 전용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고정형 또는 수납형 블록을 설치하여 차량의 돌진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VII. 프랑스 사법부의 보안을 위한 개별적 · 구체적 조치

1. 비지피라트(Vigilance et protection des installations contre les risques d'attentats terroristes à l'explosif, VIGIPIRATE)

가. 의의

프랑스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차원의 테러 방지 및 보안 강화 계획으로, 1978년 '테러 폭발 위험으로부터 시설을 감시 ·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며, 테러의 유형 확대에 대응하여 확장 · 정비되어 왔다. 경계(Vigilance) → 예방(Prévention) → 보호(Protection)라는 단계적 원칙에 따라 교통 허브, 공공기관, 법원 등을 포함한 공공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6년 이후로는 위협의 경계 수위를 Vigilance(일상적 경계), Sécurité renforcée - Risque attentat (보안 강화/테러 위험 시), Urgence attentat (테러 비상 시, 최고 경계 상태)로 3분류하고 있다.

나. 사법부 보안 정책과의 연계

국방 및 보안 고위 공무원(Haut fonctionnair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HFDS)은 Vigipirate 태세 요소들을 담당 집행 당국 전원(중앙 수준의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지방의 국방 · 안전구역 항소법원장, 교정서비스 국장, 청소년 사법보호 국장 등도 모두 포함)에게 직접 전달한다. 국방 · 안전구역의 항소법원장들은 해당 지역 내 Vigipirate 태

세 시행을 조정한다. 법무부의 총무국, 사법서비스국, 행정총국, 청소년사법보호국 등의 부서별로 Vigipirate 조치표가 마련되어 있다.

Vigipirate가 발령되면 청사 보안, 재판 진행 보호, 판사 신변 보호의 점에서 차등적인 조치가 실시될 수 있다. 예컨대, 법원 근처에 군 · 경 병력이 배치되고, 고위험 사건의 재판(테러 · 범죄 조직 대상 재판)에서는 법정 출입자 검색, 금속탐지기, 접근권 제한 등을 보다 엄격히 시행하여 출입 통제를 강화하며, 위협 수준이 높아질 경우에는 공무 집행자(특히 테러 · 조직범죄 수사 중인 법관)의 주거지에 경호 인력이 투입될 수도 있다.[27]

2. 직무상 보호(Protection fonctionnelle)

가. 의의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로 인해 공격을 받은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보호 및 법률지원 조치이다. 판사나 법원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무부에서 편찬한 별도의 직무상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다.[28]

나. 대상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률(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27) Vigipirate 상황에서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 시나리오(예시)

단계	평시 (Vigilance)	위기 전조 (Sécurité renforcée)	긴급 대응 (Urgence attentat)
출입 통제	일반적 출입증 확인 · 검색	금속 탐지기와 가방 검색 의무화, PSJ 경비 증가	법원 임시 폐쇄 또는 제한적 운영
경찰/ 헌병 배치	일반 PSJ 담당, 외부는 최소	외부 순찰 강화, Sentinelle 군대 배치 가능	사이렌, 기동대, RAID/GIGN 등 특수부대 투입 가능
재판	평상시 절차	고위험 재판시 호송 엄격화 및 CCTV 강화	영상재판 적극 활용, 재판 일정 및 인원 통제
판사 보호	일반 보안 조치	위협 받는 판사 경호 강화, 비공개 출석 조치	개인 보호조치 강화(경호원 배치, 이동 경로 보안)
비상 관리	비상계획 없음	위기 대응팀 대기, 비상 연락망 활성화	위기 관리 즉시 가동

28) Direction de services judiciaires, Guide de la protection fonctionnelle, Ministère de la justice (Mars 2021).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사법관(정규직/임시직 판사,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직무를 수행하는 명예판사, 퇴직 판사 등), 사법부 직원, 상업법원 판사, 사법서비스 담당자(노동법원 상담관, 중재인, 법의학자 등)가 모두 포함된다.

사법관 및 사법부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상속인, 관계가 입증된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 발동 요건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피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는 공무원이 입증하여야 한다. 신체적 폭행과 위협, 테러, 협박, 재산 피해 등 물리적 피해를 입은 경우뿐 아니라, 직무 수행을 이유로 피소되거나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도 직무상 보호가 발동된다.

사적 분쟁, 공무원의 고의 · 중과실에 의한 행위, 직무 관련 규정의 해석이나 평가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보호를 거부할 수 있다.

라. 보호 요청 절차[29)]

공무원은 상급자 의견을 첨부한 서면을 작성하여 법무부 사법서비스국(DSJ)과 윤리담당부서(RHM3)[30)]에 송부한다(이메일로도 가능). 이때 사건 경위, 피해 내용,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원, 증빙 자료, 요청하려는 지원의 내용(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 등을 기재하는데, 폭력, 절도, 침입, 위험물건 반입 시도, 방화, 탈주, 자살 등 악의적 행위의 경우에는 현지 보안 담당자(CSL)에게 보안사고 신고를 하고 지역 보안 담당관(CSR)을 통해 5일 내 법무부 사법서비스국(DSJ)에 전달한다.

법원장은 직원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사법서비스국장실에 직원의 신변보호를 요청한다.

보호신청의 기한은 따로 없다.

---

29) 첨부4 직무상 보호 신청서 양식 참조

30) 사법공무원의 보호기능 시행을 담당하는 지정 연락창구

마. 보호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하여 법원장에 대한 서면 공문 형태로 답변을 하는데, 요청 접수 후 2개월 내 무응답인 경우에는 묵시적 거부 결정으로 간주된다. 답변의 내용으로는 보호 승인 여부, 보호 방식(절차, 기간, 변호사비용 부담 등)이 포함된다.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복절차와 불복기간(거부 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 행정법원에 불복 가능. 온라인 접수 가능)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호 승인은 권리를 창출하는 개별 행정행위로, 승인 결정 후 4개월이 경과하면 부정행위, 개인적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다.

바. 보호의 내용

법무부와 내부부가 경찰 · 헌병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고, 자택 감시, 인근 경찰서 내 전용 번호 제공, 긴급전화(17번) 호출 시 해당 직원 번호 우선 처리, 담당 수사관의 수시 연락 등의 맞춤형 대책을 제공한다.

문제된 소송에서 국가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급자는 고소장 없이 형사조사를 개시하거나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통보할 수 있고,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에 착수하거나 행정기관에 소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개별적 보호 조치의 한계

가. 부처 간의 협력 부족

프랑스의 사법부는 조직적으로 법무부에 소속되어 운영되지만, 판사들의 보호는 법무부가 아닌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의 소관이다. 즉 내무보안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DGSI)이 위협을 분석한 후 경찰청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재량행위여서 보호조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적시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내무부는 보호 요청이 거부되는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도 곤란하다. 사법

관 노동조합의 하나인 Union syndicale des magistrats(USM)에서는 이러한 보호 요청의 거부 원인을 예산 문제로 꼽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보호 기준이 달라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는 내무부와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부서를 신설하였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는 않는다.

나. 법무부의 소극적 태도

법무부는 2024년도 기준 약 150건의 위협 사례를 공식적으로 파악했고, 현재 약 20명의 판사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31] 대부분 테러 또는 마약 조직범죄와 관련된 위협을 받는 경우들이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판사가 직무상 보호(Protection fonctionnelle)를 요청한 경우에만 기록을 하는데, 어차피 보호 조치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위협을 직업상 감수해야 하는 위험으로 여기고 신고하지 않는 판사들이 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법무부는 사법행정 외에 교정행정, 청소년 보호 등 여러 법무 분야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입장에서, 법원의 보안보다 교정시설의 보안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2] 예컨대 2024년 Incarville의 교도소 호송 차량을 괴한들이 공격한 사건으로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법무부의 교정행정 위기대응 본부는 호송차량 보안 강화, 교정시설 내 휴대전화 차단장치 설치, 드론 방어 시스템 배치, 교정직원 교대근무 체계 재정비, 경찰 및 헌병 순찰 강화, 보호 대상 시설 목록 공유, 소셜미디어 감시 및 위험 보고체계 강화, 시설 내 보안장비 정기점검 등의 대응책을 매우 신속하게 발표하였다.

31) 2023년도 기준 프랑스의 전체 판사 수는 약 9,000명이다.

32) 예산의 면에서도 법원의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쉽지 않다. 즉, 법무부 사무국은 법원의 예산뿐 아니라 교정행정, 청소년 사법보호, 사법접근 등 여러 분야의 예산을 함께 두고 재정경제부 예산국(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direction du budget)과 소통하는데, 법무부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은 통상 교정행정이므로 교정시설의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는 경향이 있다.

VIII. 프랑스 사법부의 보안 위협에 대한 사후 조치

1. 가해자 처벌

판사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을 가한 경우 형법 제2장의 제433-3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형법 제433-3조(2021년 11월 25일 법률 제2021-1520호 제55조에 의해 개정됨)〉

공직 선출직을 가진 사람, 판사, 배심원, 변호사, 공증인이나 법무관, 국가헌병대 군인, 국가경찰, 세관, 노동감독관, 교정행정 직원 또는 기타 공권력을 가진 사람, 소방관 또는 해양소방관, 공인 건물 경비원 또는 「프랑스 국내 보안법」 제L.271-1조에 따라 임대인을 위해 주거용 건물의 경비나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직무 수행 중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직무상 지위가 명백하거나 알려진 상황에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경우에는 3년의 징역형과 4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같은 형벌은 대중교통 운송 사업체의 직원, 교사 또는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기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건의료 전문직 종사자에게, 직무 수행 중이며 그 직무상 지위가 명백하거나 알려진 상황에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같은 형벌은 「프랑스 국내 보안법」 제L.611-1조 또는 L.621-1조에 명시된 민간 보안업 종사자에게, 직무 수행 중이며 그 지위가 명백하거나 알려진 상황에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앞의 세 단락에 열거된 사람들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혹은 이들과 통상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직무로 인해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경우에도 같은 형벌을 적용한다.

살해 협박이거나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해하겠다는 위협일 경우에는 5년의 징역형과 75,000유로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앞의 세 단락에 열거된 사람에게 위협, 폭력 또는 그 밖의 협박 행위를 가해, 그 직무·임무·공적 지위 또는 그것을 이용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거나, 공적 지위를 악용해 당국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일자리, 계약, 기타 유리한 결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는 10년의 징역형과 15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단락은 제433-3-1조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무부 장관이었다가 2024년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Gérald Darmanin은 판사들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공언한 바 있다.

2. 피해자 지원

가. 심리적 지원

직무상 보호(Protection fonctionnelle) 가이드라인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법부 직원에게 사법부 직원 전용 임상 심리사를 배치하여 주고 필요시 외부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주도록 정한다.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되, 필요시에는 법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예방의사 및 인사 · 사회복지부에 상황 보고를 할 수 있다.

나. 법률 지원

직무상 보호(Protection fonctionnelle)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국가법률대리인 목록에 있는 변호사 선임을 제안하고 절차비용 보장 조건에 관하여 안내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변호사에 연락하여 수임료를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비용 지급은 국가가 한다. 해당 공무원은 재판에 참석하고 변호인을 면담하기 위해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3자로부터 피소당한 경우, 행정기관은 개인적 과실을 제외한 부분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행정기관은 공무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가해자에게서 구상할 수 있다.

IX. 결론

프랑스에서는 법무부의 사법서비스국, 법원장들 및 그 임명을 받은 보안 담당관과 보안 전문가 등을 통해 법원의 보안 네트워크가 운영된다. 법무부와 내무부 사이의 협정에 따라 경찰 및 헌병이 법원의 보안을 맡으며, 민간 보안업체에서도 공공조달 계약에 따라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원은 보안 사건 기록지, 장치 체크리스트, 보안 진단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보안을 관리하고, 청사를 공공구역, 보안 공공구역, 행정구역, 제한구역, 구금구역으로 나누어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며, 청사 내 보안 장비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국가적 Vigipirate 발령시 그 단계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도 특별한 보안 조치가 실시된다. 판사 등 법원 공무원이 직무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면 내무부의 재량에 따라 보호가 발동될 수도 있으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평가이다. 위협에 따른 사후적 조치로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법률적 지원 등은 보장되어 있다.

[첨부1 법무부 사법서비스국(DSJ) 인트라넷의 보안 관련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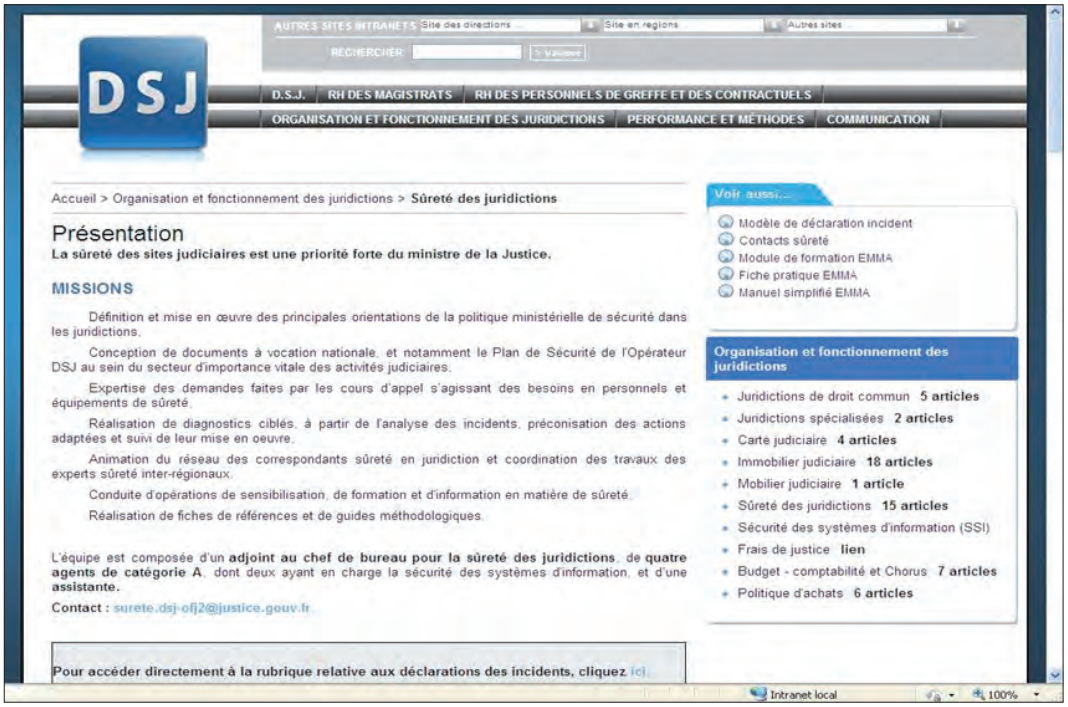

[첨부2 국방 · 안전 구역(Zon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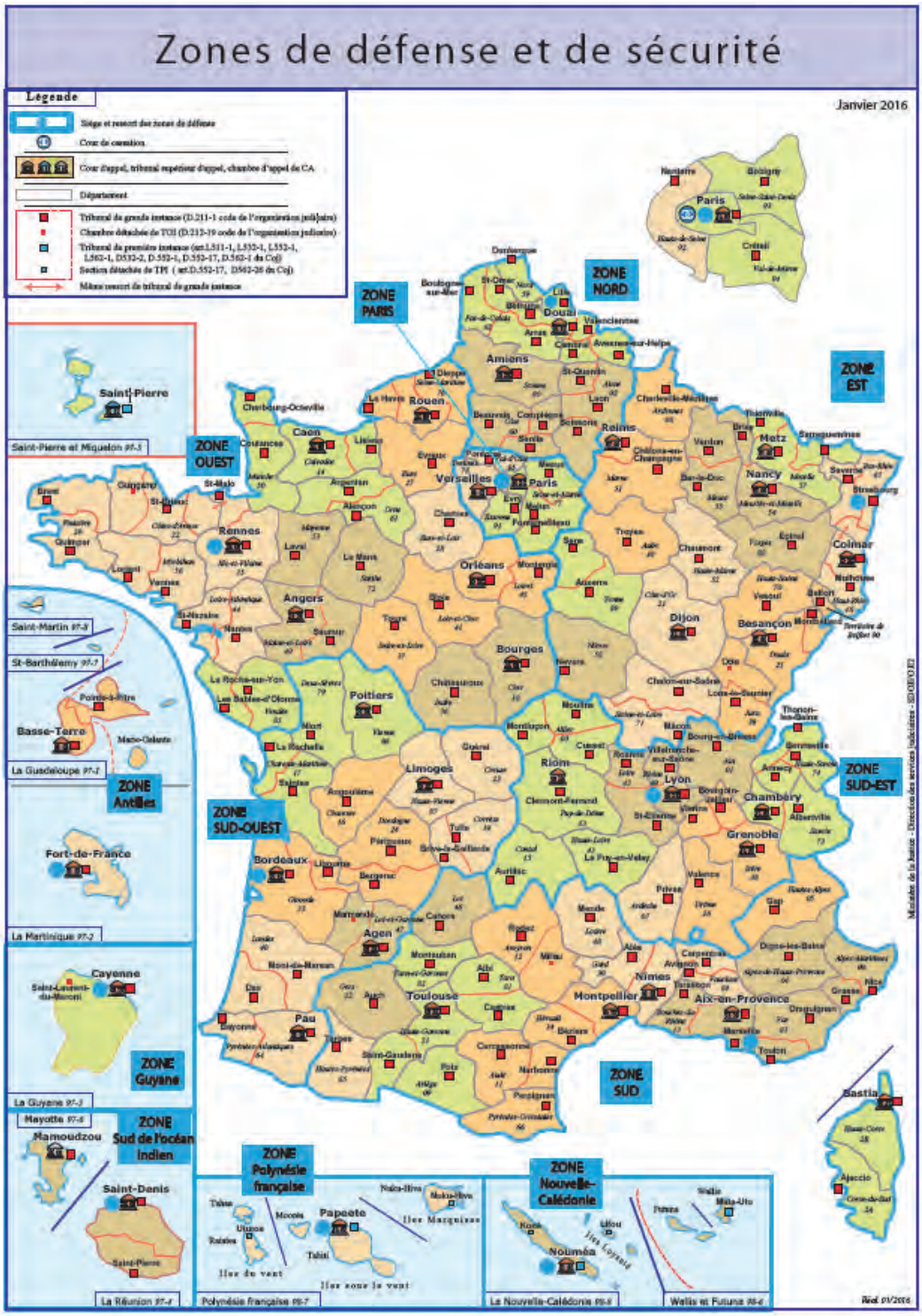

[첨부3 사건 기록지(Fiche incident) 양식]

COUR D'APPEL DE :

JURIDICTION : DATE DE L'INCIDENT :

	Altercations, insultes, menaces *(verbales, téléphoniques, écrites)*	Violences volontaires sans incapacité de travail	Violences volontaires avec incapacité de travail	Vols de biens publics *(hors informatique)*	Vols d'objets de particuliers	Intrusions et tentatives et introductions d'objets illicites	Destruction Détériorations Dégradations Incendie	Evasions et tentatives	Suicides et tentatives
Accueil *(portique, GUG, standard, services d'accueil)*									
Salles d'audience									
Parquet *(Permanence, bureaux des délégués, Bax..)*									
JE et TPE									
JI / JLD									
Application des peines									
Affaires familiales									
Nationalités									
Tutelles									
Dépôt *(Geôles, attentes gardées, parloir, sas…)*									
Extérieur *(parvis, cours, parkings…)*									
Annexes, MJD, Autres									
Parties communes *(salle des pas perdus, toilettes, couloirs…)*									

Merci de cocher la case correspondante

Pour télécharger la fiche incident, se rendre sur :
http://intranet.justice.gouv.fr/site/dsj/organisation-et-fonctionnement-des-juridictions-10173/surete-des-juridictions-10179/

Puis cliquer sur modèle de déclaration incident et télécharger la fi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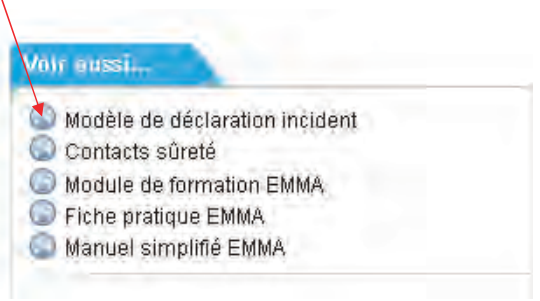

COUR D'APPEL DE :

JURIDICTION :

FICHE DESCRIPTIVE D'INCIDENT

Une fiche descriptive par incident, accompagnée de la fiche d'identification de l'incident est à remplir par la juridiction concernée et à adresser à la Chancellerie : surete.dsj-ofj2@justice.gouv.fr, qui sera remplacée par l'adresse surete.dsj-fip2@justice.gouv.fr à partir du 1er février 2015

La fiche sûreté ne doit pas être confondue avec la fiche de signalement mise en place par les bureaux RHM3 et RHG3 (note SJ-13-212-RHM3-RHG3 du 26/07/2013) qui vise à mettre en œuvre la protection statutaire des agents. Cette fiche "RH" doit faire l'objet d'une déclaration distincte.

Tout incident pouvant avoir des conséquences sur les personnes ou des conséquences médiatiques doit être signalé à la section sûreté sans délai.

Date et heure de l'incident: 사건 발생 일시

Lieu précis dans le bâtiment: 건물 내 정확한 위치

1- Description précise des faits *(à remplir par la personne concernée par l'incident et/ou les témoins de l'incident)*

1. 사건에 관한 정확한 설명*(사건 당사자 / 목격자가 작성)*

Le logiciel EMMA a-t-il été utilisé lors de cet incident ? **OUI – NON**
EMMA 사용 여부(예 / 아니오)

Si oui, merci de préciser en quoi EMMA a aidé à la résolution de cet incident.
사용됐다면, 사건 해결에 어떻게 도움 됐는지

Si non, merci de préciser le motif.
사용 안 됐다면, 그 사유

Gravité de l'incident sur une échelle de 1 (incident sans gravité) à 5 (incident majeur) :
사건의 심각도(1경미~5중대)

2-Mesures de sûreté envisagées *(à remplir par le correspondant sûreté local*

2. 고려 중인 보안 조치*(현지 보안 담당자가 작성)*

3-Éventuelles suites judiciaires données à l'incident, le cas échéant *(à remplir par le correspondant sûreté local*

3.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현지 보안 담당자가 작성)*

4-Visa et observations éventuelles du correspondant sûreté régional

4. 지역 보안 담당관의 승인 및 의견

Date :

[첨부4 직무상 보호(Protection fonctionnelle) 신청서 양식]

DEMANDE DE PROTECTION FONCTIONNELLE
직무상 보호 신청서

Nom : 성 :

……

Prénom : 이름 :

……

Fonction : 직위 :

……

Service : 소속 부서 :

……

Adresse professionnelle : 직장 주소 :

……

En raison d'atteintes volontaires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de violences, d'agissements constitutifs de harcèlement, de menaces, d'injures, de diffamations ou d'outrages
고의적인 인격 모독, 폭력,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위협, 모욕, 명예훼손 또는 모독으로 인한 경우

Dans le cadre de l'exercice de mes fonctions ou à raison de ma qualité d'agent de l'Etat, j'ai été victime de
직무 수행 과정이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저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Description des faits : 사실 관계 설명 :

……

……

……

En qualité d'agent pénalement mis en cause à raison de faits qui n'ont pas le caractère d'une faute personnelle détachable de l'exercice de mes fonctions
직무 수행과 분리될 수 없는 개인적 과실이 아닌 사실로 인해 형사고발된 경우

Dans le cadre de l'exercice de mes fonctions ou à raison de ma qualité d'agent de l'Etat, je suis mis en cause
직무 수행 과정에서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고발되었습니다.

Types de poursuites :	plainte nominative - plainte contre X -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 citation directe - instruction
소추의 유형 :	실명 고소 - 익명 고소 - 민사소송을 동반한 고소 - 직접 소환 - 수사
Statut pénal :	témoin assisté - gardé à vue - mis en examen - aucun
형사상 지위 :	참고인 - 구금 상태 - 피의자/피고인 신분 - 해당 없음

Juridiction auprès de laquelle la procédure est suivie : 절차 진행 중인 관할 법원 :

……

Auteur de la plainte : 고소인 :

……

Description des faits à l'origine des poursuites et du lien de causalité avec l'exercice des fonctions ou de la qualité d'agent de l'Etat

소추의 원인이 된 사실의 개요 및 그 사실과 직무 수행 또는 국가공무원 신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

……

……

……

Je demande à bénéficier de la protection fonctionnelle prévue à

저는 다음에 규정된 직무상 보호를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 ) l'article 11 de l'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률 제11조,

( ) l'article 11 de la loi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제11조,

( ) l'article L. 722-19 du code du commerce,

상법 제L.722-19조,

( ) en qualité de collaborateur du service public de la justice,

사법 공공 서비스의 협력자로서,

et de l'assistance d'un conseil.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 ) Je sollicite la désignation par la direction des services judiciaires d'un avocat choisi par ceux agréés par l'Agent judiciaire de l'Etat.

저는 국가소송대리인이 승인한 변호인들 중에 사법서비스국(DSJ)이 지정하는 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합니다.

( ) Je vous informe que j'ai choisi Maître ……., avocat au barreau de ……., pour m'assister et me représenter.

저는 ..... 변호사 협회 소속 ..... 변호사를 제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Une fiche incident sûreté a été transmise au correspondant local de sûreté de ma juridiction.

관할 현지 보안 담당자(CSL)에게 보안 사건기록지가 전달되었습니다.

Je reconnais avoir été informé(e) qu'il m'appartient de rapporter la preuve d'un lien de causalité entre les faits dénoncés et l'exercice des fonctions.

저는 신고된 사실과 직무 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제게 있음을 통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Date :
날짜 :

Signature de l'agent
공무원 서명

Formulaire à retourner complété, daté et signé, accompagné du rapport circonstancié et de l'avis du supérieur hiérarchique au

작성, 날짜 기입 및 서명한 양식에 상황 보고서와 상급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주소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Ministère de la Justice – Direction des services judiciaires – SDRHM – Bureau RHM3, 13 place Vendôme – 75001
ou sur la boite structurelle **protection-statutaire.dsj@justice.gouv.fr**

또는 다음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필진_ 스페인 사법제도연구반
책임필자_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경태

Ⅰ. 서론 – 스페인에 대한 연구의 적절성 402

Ⅱ. 법원 청사 방호조직과 청사 보호 방안 402
1. 법원청사 방호조직의 이원화 402
2. 법원 방호조직의 법적 근거 403
가. 경찰 및 치안조직의 법원청사 보안의 법적 근거 403
나. 자치 경찰의 법원청사 보안의 법적 근거 404
다. 민간보안업체의 청사보안의 법적 근거 405
3. 민간보안업체와의 계약 주체 및 민간보안업체의 역할 406
가. 법원측 계약 당사자 406
나. 민간보안요원의 권한과 역할 407
다. 청사 출입절차 및 검색대 운영 408
라. 법원청사 외부의 임대청사 등을 이용하는 법원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409
4. 청사보안과 청사외곽경비 411
가. 국가 경찰 내 법원방호조직팀의 구성 411
나. 국가 경찰 내 법원방호부대의 역할 411
다.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 경찰의 대응방안 412
라. 법관 등에 대한 신변보호 413
5. 스페인 법원 청사에 대한 공격 사례 413
가. 까딸루냐 독립투표 관련 재판에 대한 소요사태 413
나. 이비자 법원(Juzgado de Instrucción de Ibiza)에 대한 방화 사건 413
다. 2025년에도 반복되고 있는 법원에 대한 공격 415

Ⅲ. 법정 내부 질서유지와 질서유지위반에 대한 제재 416
1. 법정 내부 질서유지와 법적 근거 416
2. 법정 내부 질서유지 위반시 제재 416
가. 제재 수단 417
나. 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418
3. 법정 내부 질서유지 위반 및 법관에 대한 공격시의 형사책임 418
4. 법정 질서유지 위반 사례 420
가. 알시라 법원 집단 난투극 사건 420
나. 바야돌리드 법원 법정 소란 사건 421
5. 법정 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스페인 법원의 다양한 노력 421
가. 고정되어 설치된 차폐시설 421
나. 법정 내 폭력사태 대처에 관한 스페인 사법연수원의 시뮬레이션 교육 423
다. 법정 내 영상촬영을 통한 폭력사태 예방 423

Ⅳ.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사법부총평의회의 역할 424
1. 사법부총평의회(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의 구성과 목적 424
가. 구성 424
나. 목적 424
2. 재판 독립 침해사태에 대한 사법총평의회의 역할과 기능 425
3. 구체적인 사법권 독립 침해 사례 426
가. 독립 보호 요청 사건 현황 426
나. 독립 보호 요청 인용 사건 426
다. 사법부총평의회 상임위원회의 직권 의결 427

Ⅴ. 결론 429

참고문헌 430

I. 서론 – 스페인에 대한 연구의 적절성

스페인 까딸루냐 주정부는 2017. 10. 1. 까딸루냐 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독립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독립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였다. 중앙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까딸루냐 주민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결국 까딸루냐 주의 독립은 무산되고 2019. 10. 14. 까딸루냐 주 독립투표를 주도했던 까딸루냐 주 정치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판결이 선고[1]되자 독립을 찬성하는 시위대들이 공항과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진행된 대규모 시위였으나, 그 당시에도 까딸루냐 주에 소재한 법원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사례가 보고된 바 없었다. 시민들의 거의 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겪던 중이라는 점에서 202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력 점거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법원 청사에 대한 특별한 공격이 없이 결국 시위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스페인 법원의 청사 방호대책 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스페인의 법원 청사 방호의 주체와 법적근거, 특징 등을 먼저 살펴보고, 법정 내에서 발생하는 질서유지위반 행위에 대한 스페인 법원의 처리 절차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법원의 재판의 독립과 구성원의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스페인 사법부총평의회에 대한 보호요청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법원 청사 방호조직과 청사 보호 방안

1. 법원청사 방호조직의 이원화

스페인 법원은 법원 자체인력으로 청사 보호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 방호조직을 이원

1) 까딸루냐 자치정부 부수반(부주지사)이었던 오리올 준케라스(Oriol Junqueras)는 선동죄와 공금횡령죄로 징역 13년을, 까딸루냐 자치정부 각료였던 조르디 투룰(Jordi Turull)등은 징역 12년을, 조르디 산체스(Jordi Sànchez) 등 까딸루냐 주 시민단체 지도자들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스페인에서는 'El Procés' 재판으로 불린다.

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사출입에 대한 신분확인과 보안검색 등의 역할은 민간보안업체를 통하여 진행하고, 청사출입절차 외의 청사보안(외곽경비 등)과 범법행위자에 대한 체포 및 수사 등은 경찰이 진행하는데, 법원 소재지의 도시 규모에 따라 국가 경찰(Policía Nacional)과 시민경비대(Guardia Civil)가 청사 보안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까딸루냐 주와 바스크 주에서는 각 주의 자치 경찰이 국가 경찰의 업무를 대신하여 법원 청사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2. 법원 방호조직의 법적 근거

가. 경찰 및 치안조직의 법원청사 보안의 법적 근거

스페인 헌법(Constitución Española) 제104조 제1항은 경찰 및 치안조직이 행정부에 속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의 보호 및 국민의 안전보장을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2]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경찰 및 치안조직의 직무, 행동, 기본원칙 및 규정 등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하고 있다.[3]

그에 따라 입법된 스페인 경찰 및 치안조직법(Ley Orgánica 2/1986, de 13 de marzo, de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제11조 제1항 제c호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공공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경찰과 치안조직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4]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기능의 관할을 지역에 따라 국가 경찰과 시민경비

2) 스페인 헌법 제104조 제1항 "Las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bajo la dependencia del Gobierno, tendrán como misión proteger el libre ejercicio de los derechos y libertades y garantizar la seguridad ciudadana."
"경찰 및 치안조직은 내각에 속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의 보호 및 국민의 안전보장을 그 임무로 한다."

3) 스페인 헌법 제104조 제2항 "Una ley orgánica determinará las funciones, principios básicos de actuación y estatutos de las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조직법은 경찰 및 치안조직의 직무, 행동 기본원칙 및 규정을 정한다."

4) 스페인 경찰 및 치안조직법 제11조 제1항 제c호 "1. Las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del Estado tienen como misión proteger el libre ejercicio de los derechos y libertades y garantizar la seguridad ciudadana mediante el desempeño de las siguientes funciones:
c) Vigilar y proteger los edificios e instalaciones públicos que lo requieran."
"경찰 및 치안조직의 임무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c) 보호가 필요한 공공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감시와 보호"

대에 분배하고 있다. 즉, 자치주의 주도, 정부가 정한 도시 및 도심에서 행사하는 것은 국가 경찰(Policía Nacional)[5]의 관할이고, 그 외의 지역은 시민경비대(Guardia Civil)[6]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7]

정부가 정한 도시 및 도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상 근거 또한 찾기 어려우나, 스페인 대법원의 청사방호를 책임지고 있는 Fernando de la Fuente Aragón 수석경정에 의하면,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에 소재하는 법원은 국가 경찰이, 5만 명 이하의 도시에 소재하는 법원은 시민경비대가 청사보안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8]

나. 자치 경찰의 법원청사 보안의 법적 근거

스페인 헌법 제148조 제1항 제22호에는 공공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감시와 지역경찰에 관한 권한 조정 등을 자치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9] 경찰 및 치안

---

5) 스페인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 산하의 국가 경찰조직으로, 자치 경찰총국(DIRECCIÓN GENERAL DE LA POLÍCIA)의 지휘하에 치안총국[Comisaría General de Seguridad Ciudadana, 공공 질서 유지, 시민 안전, 폭동 진압 부대(Unidades de Intervención Policial, UIP) 등을 담당], 사법경찰총국[Comisaría General de Policía Judicial, 형사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조직 범죄, 마약, 경제 범죄 등을 담당하는 여러 하위 부서(Brigadas)를 총괄], 정보총국[Comisaría General de Información,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한 첩보 및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 외국인 · 국경총국[Comisaría General de Extranjería y Fronteras, 외국인 관리, 출입국 통제,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을 담당], 과학경찰총국[Comisaría General de Policía Científica, 과학 수사 및 범죄 분석을 전문으로 하며, 지문, DNA 등 증거물을 분석] 등의 하위 조직을 갖추고 있다.

6) 11세기에 스페인에서 탄생한 'Santa Hermandad(성스러운 형제단)'이라는 시민경찰에서 기원한 조직으로, 당시 스페인 전역을 노략질하고 다니던 도적단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15, 16세기경부터 스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1931년 시민경비대의 임무가 확대되어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면서 스페인 내무부 산하의 기관이 되었다. 내무부 산하 시민경비대 총국(DIRECCIÓN GENERAL DE LA GUARDIA CIVIL)의 지휘를 받고 있다(김영철, 스페인의 사법경찰제도, 법무자료; 각국의 사법경찰제도Ⅱ, 139쪽 참조).

7) 스페인 경찰 및 치안조직법 제11조 제2항 "2. Las funciones señaladas en el párrafo anterior serán ejercidas con arreglo a la siguiente distribución territorial de competencias:
a) Corresponde al Cuerpo Nacional de Policía ejercitar dichas funciones en las capitales de provincia y en los términos municipales y núcleos urbanos que el Gobierno determine.
b) La Guardia Civil las ejercerá en el resto del territorio nacional y su mar territorial."
"전항에 규정된 기능은 아래와 같은 토지관할에 따라 행사된다.
a) 자치주의 주도와 도시 및 정부가 지정하는 도심지역은 국가 경찰
b) 그 외의 영토와 영해지역은 시민경비대"

8)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18쪽.

9) 스페인 헌법 제148조 제1항 제22호 "1. Las Comunidades Autónomas podrán asumir competencias en las siguientes materias:
22.ª La vigilancia y protección de sus edificios e instalaciones. La coordinación y demás

조직법 서문에도 1986. 3. 법 시행 전 자치 경찰 조직이 이미 갖추어져 있던 까딸루냐 주와 바스크 주 등에는 기존의 자치 경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및 치안조직법 제38조 제1항 제b호에서도 자치주의 사람과 조직, 건물 등을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 경찰에게 두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서 경찰 및 치안조직들과 협력하여 공공 건물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10] 그에 따라 까딸루냐 주와 바스크 주에서는 자치 경찰인 Mossos d'Esquadra(모쏘스 데스꽈르다, 까딸루냐 주), Ertzaintza(에르차인차, 바스크 주)이 국가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다. 민간보안업체의 청사보안의 법적 근거

2014년 개정된 스페인 민간보안법(Ley 5/2014, de 4 de abril, de Seguridad Privada)은 서문에서 그동안 통용되던 공적 영역에서 민간보안이 배제되던 원칙을 수정 · 완화하여, 공적 영역에도 민간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 민간보안 서비스를 공권력에 의한 보완적, 종속적, 협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그에 따라 민간보안법 제1조(목적)에서 공공기관의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민간보안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함을 설명[11]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민간보안을 '개인 또는 법인(공공 · 민간)이 자

---

facultades en relación con las policías locales en los términos que establezca una ley orgánica."

"1. 자치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인수할 수 있다.

22. 건물 및 설비의 감시.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경찰에 관한 조정 및 기타 권한"

10) 스페인 경찰 및 치안조직법 제38조 제1항 제b호, 제2항 제c호 "Las Comunidades Autónomas, a que se refiere el número 1 del artículo anterior, podrán ejercer, a través de sus Cuerpos de Policía, las siguientes funciones:

1. Con carácter de propias:

b) La vigilancia y protección de personas, órganos, edificios, establecimientos y dependencias de la Comunidad Autónoma y de sus entes instrumentales, garantizando el normal funcionamiento de las instalaciones y la seguridad de los usuarios de sus servicios.

2. En colaboración con las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del Estado:

c) Vigilar los espacios públicos, proteger las manifestaciones y mantener el orden en grandes concentraciones humanas."

"전 조 제1항에 언급된 자치주는 자치주의 경찰병력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1. 자치주 스스로:

b) 자치주와 그 기관 산하의 사람, 단체, 건물, 시실 및 부서에 대한 감시 및 보호,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과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 보장.

2. 국가 경찰 및 치안조직과 협력하여:

c) 공공 시설을 감시하고, 시위를 보호하고,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곳에 대한 질서 유지."

11) 스페인 민간보안법 제1조 "Esta ley tiene por objeto regular la realización y la prestación por

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보안 활동, 서비스, 기능 및 조치 일체'로 정의[12]하였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공공안전에 대한 민 보안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의 민간보안계약은 보안업체의 근로의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13] 근로시간 등을 공공기관의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3. 민간보안업체와의 계약 주체 및 민간보안업체의 역할

가. 법원측 계약 당사자

위 2.의 다.항에서 본 법령을 근거로 법원은 민간보안업체와 청사보안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 당사자는 해당 법원이 대법원, 국가법원, 특별법원 등 스페인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법원들[국가법원(Audiencia Nacional)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 계약위원회(Junta de Contratación del Ministerio de Justicia)가 민간보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치주가 관리하는 자치주 내의 일반 법원[각 자치주 최고법원(Tribunales Superiores

---

personas privadas, físicas o jurídicas, de actividades y servicios de seguridad privada que, desarrollados por éstos, son contratados, voluntaria u obligatoriamente, por personas físicas o jurídicas, públicas o privadas, para la protección de personas y bienes."
"이 법은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공공 · 민간)과 자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계약하여 사람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민간 보안 활동 및 서비스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스페인 민간보안법 제2조 "1. Seguridad privada: el conjunto de actividades, servicios, funciones y medidas de seguridad adoptadas, de forma voluntaria u obligatoria, por personas físicas o jurídicas, públicas o privadas, realizadas o prestados por empresas de seguridad, (이하 생략)"
"민간보안: 개인 또는 법인(공공 · 민간)이 자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보안 활동, 서비스, 기능 및 조치 일체"

13) 스페인 민간보안법 부칙 제2조 "1. En consideración a la relevancia para la seguridad pública de los servicios de seguridad privada, de conformidad con el artículo 118 d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Contratos del Sector Público, aprobado por el Real Decreto Legislativo 3/2011, de 14 de noviembre, los órganos de contratació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podrán establecer condiciones especiales de ejecución de los contratos de servicios de seguridad relacionadas con el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laborales por parte de las empresas de seguridad privada contratistas."
"공공안전에 대한 민간보안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스페인 공공부문계약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계약부서는 민간보안업체와의 보안서비스 계약중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에 대한 특별 조건을 정할 수 있다."

de Justicia), 지방법원(Audiencias Provinciales), 1심 단독법원과 예심법원(Juzgados de Primera Instancia e Instrucción)]은 자치주 정부의 법무부(Consejería de Justicia de la Comunidad)가 자치주 정부 내 법원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청사보안계약을 진행한다.

가장 최근의 예로, 스페인 법무부 산하 계약위원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스페인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법원청사와 행정청사[14]를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대규모 보안회사인 VASBE S. L.,[15] TRANSPORTES BLINDADOS S.A.(TABLISA),[16] Prosegur Soluciones Integrales de Seguridad, S.L.[17] 등과 2년 동안 총액 2,100만 유로 상당(세전)의 '법원청사 및 행정청사에 대한 보안 및 출입 통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마드리드 자치정부 법무부(Consejería de Justicia de la Comunidad de Madrid)는 입찰 방식으로 마드리드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마드리드 시내 법원 청사에 대하여는 SEGURIDAD INTEGRAL SECOEX(총 보안인력 174명 필요)와 마드리드 자치주 내 나머지 20개 관할구역의 청사 전체에 대하여는 CIA DE SEGURIDAD OMEGA S.A.(총 보안인력 160명 필요)와 3년 동안 총액 4,300만 유로 상당의 '법원청사 보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18]

나. 민간보안요원의 권한과 역할

법원과의 계약을 통해 법원에 근무하는 보안업체 직원(민간보안요원)은 공공시설의 입구 또는 내부에서 출입 관련 신원 확인, 소지품 검사, 범죄 예방 활동, 범죄자에 대한 체포 및 경찰에 대한 인계와 신고, 순찰, 보안시스템 관리(영상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19] 법원 청사 출입 과정에서 또는 법원 청사에 대한 공격을 한 범죄자에 대한

14) 스페인은 대법원이 법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되어 있어, 법원청사 외에 법무부가 운영하는 다수의 행정청사도 같이 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15) 주요 계약지역은 까스띠야 이 레온주, 까스티야 라만챠 주, 무르시아 주, 엑스트레마두라 주
16) 주요 계약지역은 발레아레스 제도
17) 주요 계약지역은 테네리페, 안달루시아, 세우타, 멜리야
18) 스페인 공공계약포털(https://contratos-publicos.comunidad.madrid/)에서 자세한 계약 내용과 필요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9) 스페인 민간보안법 제32조 제1항 "1. Los vigilantes de seguridad desempeñarán las siguientes funciones:
a) Ejercer la vigilancia y protección de bienes, establecimientos, lugares y eventos, tanto privados como públicos,……
b) Efectuar controles de identidad, de objetos personales, paquetería, mercancías o vehículos, incluido el interior de éstos, en el acceso o en el interior de inmuebles o propie-

체포, 범죄도구의 압수 등은 가능하나, 체포 및 압수 즉시 국가 경찰이나 자치 경찰에게 범죄자 및 압수물 등을 인계하여야 하고, 인적사항 확인 외에 추가적인 심문이나 수사는 진행하지 못한다.[20]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요원은 스페인 민간보안법 제30조 제1항 제h호에 의하여 경찰 및 치안조직과 협력하며 그들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21]

검색대나 전기 스캐너 등은 민간경비업체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예산으로 구입한다.[22]

다. 청사 출입절차 및 검색대 운영

스페인 법원의 청사출입 절차는 법관 및 법원직원들, 변호사들, 일반 민원인 등 그 신분에 따라 3원화 되어 있는데,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은 신분증 태그 등을 통해 스마트 패스 형태로 법원에 출입하고, 변호사는 변호사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소지품 검색 등이 일부 완화되어 진행된다.[23] 스페인 법원은 해당 지역 변호사협회(Colegio

---

dades donde presten servicio,……

c) Evitar la comisión de actos delictivos o infracciones administrativas en relación con el objeto de su protección, ……"

"민간보안요원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한다.

a) 재산, 시설, 장소 및 행사에 대한 감시 및 보호(공공건물과 사유재산 불문)

b) 경비를 실시하는 장소의 출입구 또는 내부에서 신원 확인, 개인 소지품, 소포, 상품 또는 차량(내부 포함)에 대한 검사 실시

c) 보호 대상과 관련된 범죄,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20) 스페인 민간보안법 제32조 제1항 제d호 "d) En relación con el objeto de su protección o de su actuación, detener y poner inmediatamente a disposición de las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competentes a los delincuentes y los instrumentos, efectos y pruebas de los delitos, así como denunciar a quienes cometan infracciones administrativas. No podrán proceder al interrogatorio de aquéllos, si bien no se considerará como tal la anotación de sus datos personales para su comunicación a las autoridades."
"d) 보호대상 또는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자를 체포하여 즉시 관할권을 가진 경찰 또는 치안조직에게 인도하고, 범죄의 증거와 도구 등도 압수하여 함께 인계하며, 행정법규 위반행위자들을 신고한다. 경찰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행위 외에는 범죄자 등을 심문할 수는 없다."

21) 스페인 민간보안법 제30조 제1항 제h호 "Colaboración con las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El personal de seguridad privada estará obligado a auxiliar y colaborar especialmente con las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a facilitarles la información que resulte necesaria para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y a seguir sus instrucciones en relación con el servicio de seguridad privada que estuvieren prestando."
"경찰 및 치안조직과의 협력. 민간보안요원은 특히 경찰 및 치안조직을 도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행중인 보안업무와 관련된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18쪽.

23) 청사 입구에서부터 보안검색과 신원확인을 진행하면서, 법관과 직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분증 스

de Abogados)등과의 소통을 통해 청사의 방호 및 출입절차를 원만히 협의하며 조정하고 있다.[24]



▲ 마드리드 1심단독법원 입구 검색대



▲ 마드리드 1심단독법원 출입구

라. 법원청사 외부의 임대청사 등을 이용하는 법원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2025. 4. 3.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스페인 민사소송법(Ley Orgánica 1/2025 de Enjuiciamiento Civil) 제264조 제4항[25]에 의하여 민사소송 제기 전에 MASC(Medios

캔 출입구를 두고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의 출입절차와 유사하다.

24) 바르셀로나는 자전거나 킥보드,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종래 자전거나 오토바이 탑승에 필수적으로 지참하여야 하는 헬멧 등이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변호사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다. 결국 바르셀로나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바르셀로나 지방법원에 공식 요청하여, 현재는 헬멧 등을 법원 내부에 반입은 하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Paz Vallés 변호사는 이 사례를 설명하면서 법원과 변호사협회가 청사의 방호 및 출입절차를 위해 원만하게 협의하고 있는 예시로 설명하였다(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8쪽).

Adecuados de Solución de Controversias)라고 불리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26]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었다. 주로 15,000유로 이하의 금전 청구(스페인 민사소송제도상 구두변론 절차에 의함),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분쟁, 공동주택 분쟁 등이 주요 대상이고, 노동 사건에서 별도의 화해 절차를 두고 있거나, 긴급한 가처분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 바르셀로나 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중재센터(Centro ADR - ICAB)가 우리의 서울법원 조정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27] 바르셀로나 변호사협회 중재센터도 민간보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보안요원들이 청사방호 및 출입 검색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28]

중재센터에서도 법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보안검색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중재센터가 가지고 있는 회복적 사법기능의 실현이나 당사자들의 원활한 화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운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민간보안요원들이 진압봉과 수갑을 휴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직접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한다.[29]

2025년 하반기 서울법원 조정센터가 법원청사 외부의 임대청사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향후 다양한 특수법원 들도 임대청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기관의 특징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호대책이 우리에게도 필요해 보인다.

---

25) 스페인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4호 "Documentos procesales.
Con la demanda o la contestación habrán de presentarse:
4.º El documento que acredite haberse intentado la actividad negociadora previa a la vía judicial cuando la Ley exija dicho intento como requisito de procedibilidad."
"264조(소송 문서)
소장 또는 답변서와 함께 아래의 문서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법률에서 소송제기의 요건으로 사전 협상 시도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협상이 시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26) 우리 법제에서 'ADR'이라 부르는 개념과 동일한 스페인어 개념으로, 바르셀로나 변호사 협회에서는 ADR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7) 법원의 부속기관이 아닌 변호사 협회의 부속기관이므로 그 법적인 지위는 명확하게 다르다.

28)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12쪽.

29)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13쪽.



▲ 바르셀로나 중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검색대



▲ 중재센터 보안요원의 장구류

4. 청사보안과 청사외곽경비

가. 국가 경찰 내 법원방호조직팀의 구성

위 2.의 가.항에서 본 법적 근거에 따라 스페인 국가 경찰은 치안총국(Comisaría General de Seguridad Ciudadana)산하 중앙 경호 부대(Unidad Central de Protección)에 왕궁, 총리실, 상원과 하원, 헌법재판소(Tribunal Constitucional), 대법원(Trinunal Supremo), 국가법원(Audiencia Nacional) 등을 방호하는 조직을 따로 두고 있다. 현재 스페인 대법원 등을 보호하는 국가 경찰부대는 스페인 대법원, 사법부총평의회, 국가법원을 함께 보호하고 있으며,[30] 총 300명의 국가 경찰이 세 청사를 보호하고 있다. 국가 찰에서는 지원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중앙 경호 부대원을 뽑고, 법원예산으로 해당 경찰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나. 국가 경찰 내 법원방호부대의 역할

앞서 3항에서 본 민간업체의 출입관리업무, 소지품 검색업무 외의 나머지 청사방호는

30) 세 기관은 모두 100m 이내에 도보 3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다.

모두 국가 경찰이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사외곽경비, 청사 CCTV 감시 등을 진행하고 있고, 유사시 범죄자에 대한 체포와 수사 등의 사법경찰권 또한 가지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 등을 보호하는 국가 경찰들은 총기를 휴대한 채 청사를 보호하고 있었고, 별도의 통제구역에서 약 30~50개에 해당하는 CCTV를 24시간 감시하는 경찰관 2~3인이 각 법원마다 상주하고 있었다. 민간보안업체와 마찬가지로 스캐너나 검색대 등의 장비는 국가 경찰의 의견을 들어 법원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다.[31]

다.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 경찰의 대응방안

국가 경찰은 각 위기별,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매뉴얼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 경찰 내의 emergency 센터에서 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한다.[32]

평시에는 300명의 국가 경찰 내 방호팀으로 스페인 대법원을 비롯한 세 기관의 청사 보호가 가능하나,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것이 염려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드리드 경찰에게 연락하여 추가적으로 증원을 받는다. 증원 시에는 특수부대나 군대 등 다른 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만 증원을 받는데, 국가 경찰 내의 헬기부대나 드론부대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33]

가장 최근의 사례로 2025. 2. 20.경 여자축구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 축구협회장 루이스 루비알레스(Luis Rubiales)가 우승 세리머니 당시 스페인 여자축구대표팀의 주장 에르모소(Jenni Hermoso)에게 입맞춤을 한 강제추행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국가법원에서 열렸는데, 선고기일에 다수의 시민들이 국가법원 인근에 운집하여 300명의 경찰 외에 추가적으로 일반 경찰들의 증원을 받았다고 한다.[34]

국가 경찰이 직접 청사방호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유사시 경찰병력에 대한 증원요청이 매우 용이하고, 구체적인 작전 전개 등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보였다.

---

31)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19쪽.
32) 출장 당시 면담을 진행한 Jorge Andino Zamanillo 총경은 해당 매뉴얼(프로토콜)은 대외비여서 제공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하였다.
33) 스페인 대법원, 사법총평의회, 국가법원의 청사보안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Jorge Andino Zamanillo 치안감과 Fernando de la Fuente Aragón 수석경정의 진술로, 자세한 내용은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18~19쪽.
34)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19쪽.

라. 법관 등에 대한 신변보호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도 국가 경찰의 업무이다. 과거 바스크지역의 무장독립운동 단체 ETA의 반복되는 테러시도에 따라 상당수의 판검사들이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법원장, 국가법원장 등 주요직위자들에게만 신변보호가 진행 중이다.

신변보호를 받는 법관들은 출퇴근시에도 경찰차를 통해 통근을 하고, 공식석상에 항상 경찰이 대동하며, 심지어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경찰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35]

5. 스페인 법원 청사에 대한 공격 사례

가. 까딸루냐 독립투표 관련 재판에 대한 소요사태

까딸루냐 주의 독립투표일이었던 2017. 10. 1. 무렵과 독립투표를 주도했던 정치지도자 오리올 준케라스(Oriol Junqueras), 조르디 투룰(Jordi Turull) 등에 대한 스페인 대법원의 선동적 폭동죄 등의 판결(El “Procés”)이 내려진 2019. 10. 14.에 까딸루냐 전역에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시위대는 바르셀로나 엘 프랏 국제공항을 점거하고 도로와 철도를 봉쇄하였으며, 도시 곳곳에서 방화와 기물파손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사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유발된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자체에 대한 공격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바르셀로나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Paz Vallés 변호사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 10. 당시 시위 중인 시민들이 법원 출입문이나 외부 벽에 ‘INDEPENDÈNCIA’[36]라고 낙서하거나 스크래치를 내는 등의 행동은 있었다고 하나,[37] 그와 같은 사례가 언론에 보고되거나, 당사자들이 처벌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나. 이비자 법원(Juzgado de Instrucción de Ibiza)에 대한 방화 사건

피고인 Esteban[38]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진행되던 형사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 친구인

35)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20쪽.
36) 독립을 의미하는 까딸루냐어
37)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8쪽.
38) 언론기사에 의하면 이 피고인의 실명은 ‘José Cazorla’로 확인되나, 이하에서는 판결문에 인용된 가명

Evelio[39]에게 법원에 대한 방화를 교사하였고, 이에 Evelio가 2019. 1. 21. 새벽 이비자 법원청사 2층과 3층(이비자 제1예심법원과 제2예심법원이 소재)의 창문을 손괴한 후 진입하여 각 층의 사무실과 법정에 20리터 상당의 가솔린 통과 천 조각으로 만든 도화선을 설치하여 점화하였다. 그 결과 법원 청사 2층과 3층이 심각하게 전소되어 법정, 사무실, 기록 보관소, 문서나 가구 등이 전소되었고, 폭발로 인해 창문과 문이 파괴되었다.

이비자 제1형사법원(Juzgado de lo Penal)은 2023. 2. 3. 스페인 형법(Ley Orgánica 10/1995, de 23 de noviembre, del Código Penal) 제266조 제2항,[40] 제1항,[41] 제263조 제2항 제4호[42]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4년 1일, 각 벌금 3,246유로(18개월형, 1일 동안 일일 6유로), 스페인 법무부(MINISTERIO DE JUSTICIA DEL GOBIERNO DE ESPAÑA)에 대한 청사복구를 위한 손해배상금 409,555.35유로 등[43]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44]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

인 Esteban으로 지칭한다.

39) 언론기사에 의하면 이 피고인의 실명은 'Francisco Fonseca'로 확인되나, 이하에서는 판결문에 인용된 가명인 Evelio로 지칭한다.

40) 스페인 형법 제266조 제2항 "Será castigado con la pena de prisión de tres a cinco años y multa de doce a veinticuatro meses el que cometiere los daños previstos en el apartado 2 del artículo 263, en cualquiera de las circunstancias mencionadas en el apartado anterior."
"전항에 언급된 방식으로 제263조 제2항에 대한 손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12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41) 스페인 형법 제266조 제1항 "Será castigado con la pena de prisión de uno a tres años el que cometiere los daños previstos en el apartado 1 del artículo 263 mediante incendio, o provocando explosiones, o utilizando cualquier otro medio de similar potencia destructiva o que genere un riesgo relevante de explosión o de causación de otros daños de especial gravedad, o poniendo en peligro la vida o la integridad de las personas."
"방화, 폭발 또는 이와 동등한 파괴력을 가진 수단을 사용하여 손괴가 이루어지거나, 손괴 행위로 인해 폭발 위험이나 다른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2) 스페인 형법 제263조 제2항 제4호 "2. Será castigado con la pena de prisión de uno a tres años y multa de doce a veinticuatro meses el que causare daños expresados en el apartado anterior, si concurriere alguno de los supuestos siguientes:
4.º Que afecten a bienes de dominio o uso público o comunal."
"전항의 손괴를 한 자가 다음 각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4. 공공재산, 공용재산, 공동재산을 파괴한 경우"

43) 이비자 섬 의회(CONSELL INSULAR DE IBIZA)에 소방관 출동 비용 3,511유로 상당, 전자레인지와 커피머신, 냉장고와 주전자가 망가져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도 40~75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주문이 함께 선고되었다.

44) 스페인 Eivissa 형사법원 제1호, 판결 제35/2023호 (2023년 2월 3일), ECLI:ES:JP:2023:5. [Juzgado de lo Penal nº 1 de Eivissa. (2023, 3 de febrero). Sentencia nº 35/2023. Procedimiento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방화를 교사하고 실행하여 실제로 법원청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는 언론의 분석이 있다.[45]

다. 2025년에도 반복되고 있는 법원에 대한 공격

2025. 4. 28.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반도 전역에 정전이 발생하였다. 도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완전 복구까지 만 하루가 걸린 대규모 정전이었고, 그에 따라 법원 청사를 비추는 CCTV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날 저녁 67세의 퇴직 경찰관이 마드리드 고등법원(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de Madrid) 건물 앞에서 가연성 액체를 뿌린 뒤 성냥을 던져 점화하려다가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를 마치고 다시 사법부총평의회로 복귀하던 국가 경찰들에게 목격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피의자는 오랫동안 마드리드 고등법원에 근무하던 판사와의 갈등이 있었고, 이전에도 법원 건물에 대한 방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2024. 1.부터 해당 법원 건물에 대한 접근금지명령(orden de alejamiento)을 받은 상태였다. 피의자는 국가 경찰에 체포된 후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46]

한편, 2025. 5. 25. 새벽 이비자 법원(Juzgados de Ibiza) 청사의 외벽에도 낙서와 함께 방화가 시도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낙서는 사법제도, 경찰, 사업가 아벨 마투테스(Abel Matutes)를 반대하는 메시지였고, 법원 정문 앞 쓰레기봉투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국가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일부 카메라가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았고, 당시 이비자 법원은 경비요원이 24시간 상주하지 않았으며, 주말에도 대기하지 않던 터라 현재까지도 여전히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직후 법원과 국가 경찰은 경비요원을 24시간 배치하여 보안을 강화하였다.[47]

---

abreviado 75/2021. ECLI:ES:JP:2023:5.]
https://www.poderjudicial.es/search/AN/openCDocument/c0adb998dc5ec9bce84951f99bd04da105bac14c52dc1cd4

45) 판결선고 후 이비자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로 링크는 아래 기재와 같다(2025. 8. 20. 최종 확인).
https://www.periodicodeibiza.es/pitiusas/ibiza/2023/02/06/1877023/tribunales-condenados-por-incendio-arraso-juzgados-ibiza.html

46)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관련 기사에 대한 링크는 아래와 같다(2025. 8. 20. 최종확인).
https://www.larazon.es/espana/policia-jubilado-intento-quemar-organo-judicial-apagon_202505266833bd207b27927d3db15719.html

47) 법원 외에 언론사와 대학 등에도 같은 날 비슷한 낙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2025. 8. 20. 확인).

III. 법정 내부 질서유지와 질서유지위반에 대한 제재

1. 법정 내부 질서유지와 법적 근거

구 스페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48]에서 법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0년 민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이 삭제되고 스페인 사법부 조직법이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사법부조직법(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제190조는 법정 내부의 질서유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재판장(Presidente del Tribunal o al Juez, 우리나라의 사법보좌관과 유사한 '법원서기'가 진행하는 절차에서는 '법원서기')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49] 스페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법정 내에 별도로 법정경위를 두

---

https://www.periodicodeibiza.es/pitiusas/ibiza/2025/05/27/2395397/estudian-implantar-vigilancia-horas-juzgados-ibiza-tras-acto-vandalico.html

48) 스페인 형사소송법(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은 제684조에서 여전히 법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사법부 조직법 제190조~195조의 내용과 같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2002년 유로 화폐 개혁전의 스페인 통화인 페세타(Peseta)로 설정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스페인 형사소송법 제684조 "El Presidente tendrá todas las facultades necesarias para conservar o restablecer el orden en las sesiones y mantener el respeto debido al Tribunal y a los demás poderes públicos, pudiendo corregir en el acto con multa de 5.000 a 25.000 pesetas las infracciones que no constituyan delito, o que no tengan señalada en la Ley una corrección especial. El Presidente llamará al orden a todas las personas que lo alteren, y podrá hacerlas salir del local si lo considerase oportuno, sin perjuicio de la multa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anterior. Podrá también acordar que se detenga en el acto a cualquiera que delinquiere durante la sesión, poniéndole a disposición del Juzgado competente."
"판사 또는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법원 및 다른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범죄로 구성되지 않거나 법률에서 별도로 정해진 제재가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5,000에서 25,000페세타의 벌금을 부과하여 시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질서 회복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된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벌금 부과 권한과 별개로 질서위반자를 법정에서 퇴정시킬 수 있다. 재판 도중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체포를 명하고, 관할 법원에 그를 인계할 수 있다."

49) 스페인 사법부조직법 제190조 "1. Corresponde al Presidente del Tribunal o al juez mantener el orden en la Sala, a cuyo efecto acordará lo que proceda.
3. Estas mismas obligaciones recaerán sobre el Secretario en todas aquellas actuaciones que se celebren únicamente ante él en las dependencias de la Oficina judicial."
"1. 법정 내의 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재판장(또는 판사)에게 있다.
3. 법정 외의 법원 사무실에서 법원서기가 진행하는 절차의 경우에는 그 법원서기에게 동일한 의무가 부여된다."

지 않고,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참여관(주무관)이 당사자 호명, 입정, 착석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법정 내 소란행위나 질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판장은 법원 청사를 방호하고 있는 국가 경찰(시민경비대)의 배치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정 내부 질서유지 위반시 제재

가. 제재 수단

재판 절차 등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판장이나 판사가 먼저 경고(amonestado)를 할 수 있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를 계속 방해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정(expulsado)할 것을 명할 수 있다.[50] 퇴정명령에 불응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51] 퇴정명령으로 인해 아래 3항에서 보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즉시 체포되어 관할 판사에게 인계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52]

---

50) 스페인 사법부 조직법 제191조 "A los efectos de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anterior, los que perturbaren la vista de algún proceso, causa u otro acto judicial, dando señales ostensibles de aprobación o desaprobación, faltando al respeto y consideraciones debidas a los jueces, tribunales, Ministerio Fiscal, abogados, procuradores, letrados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médicos forenses o resto del personal al servici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serán amonestados en el acto por quien presida y expulsados de la sala o de las dependencias de la Oficina judicial, si no obedecieren a la primera advertencia, sin perjuicio de la responsabilidad penal en que incurran."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판사, 법원, 검찰, 변호사, 대무사, 법원서기 또는 법원 직원 등에 대한 존중과 예유를 결여하면서 재판 중에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를 명백히 드러내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재판 절차나 법적 행위를 방해한 자는 재판장 또는 판사에 의해 즉시 경고를 받고, 경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정이나 법원 사무실에서 퇴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퇴정명령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51) 스페인 사법부 조직법 제192조 "Los que se resistieren a cumplir la orden de expulsión serán, además, sancionados con multa, cuyo máximo será la cuantía de la multa más elevada prevista en el Código Penal como pena correspondiente a las faltas."
"퇴정 명령에 불응하는 자에게는 추가로 형법의 '경범죄(falta)'에서 처벌하는 상한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스페인 형법 제33조 제4항 제g호에 의하면 경미 범죄(delitos leves)의 벌금(과태료)형은 3개월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52) 스페인 사법부 조직법 제195조 "Cuando los hechos de que tratan los artículos anteriores llegaren a constituir delito, sus autores serán detenidos en el acto y puestos a disposición del Juez competente."

나. 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3일 이내에 과태료 결정을 내린 판사 또는 재판장에게 의견 진술 청취 요청(recurso de audiencia en justicia, 우리나라의 '이의신청'과 유사)을 할 수 있고, 판사 또는 재판장은 그 다음날 이를 처리한다.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거나 진술청취 요청을 거치지 않은 당사자는 5일 이내에 사법부 관리 회의(Sala de Gobierno[53])에 항고(recurso de alzada, 우리나라의 '항고'와 유사)할 수 있고, 사건을 접수한 사법부 관리 회의는 해당 과태료 결정을 한 판사 또는 재판장의 의견서를 받은 후 첫 번째 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54]

3. 법정 내부 질서유지 위반 및 법관에 대한 공격시의 형사책임

스페인 형법 제24조는 단독으로 또는 법원이나 특정한 단체의 일원으로서 지휘권을 가지거나 고유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를 권위자(autoridad)[55]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공격 등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공격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스페인 형법 제550조 제1항은 권위자에 대한 폭행 · 협박 등의 방법으로 공권력에 심각하게 저항한 자는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과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벌금형[56]을 병과하여

"전항에서 언급된 행위들이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그 행위의 가재하는 즉시 체포되어 관할 판사에게 인계된다."

53) 이를 총무부로 번역한 문헌으로는 김민철, 스페인 사법제도, 각국의 사법제도, 외국사법제도연구(27), 429쪽.

54) 스페인 사법부 조직법 제194조 제2항 "Contra el acuerdo de imposición de sanción podrá interponerse en el plazo de tres días recurso de audiencia en justicia ante el propio juez, Presidente o 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que lo resolverá en el siguiente día. Contra el acuerdo resolviendo la audiencia en justicia o contra el de imposición de la sanción, si no se hubiese utilizado aquel recurso, cabrá recurso de alzada, en el plazo de cinco días, ante la Sala de Gobierno, que lo resolverá, previo informe del juez, Presidente o 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que impuso la sanción, en la primera reunión que se celebre."
"제재 부과 결정에 대한 의견진술청취요청은 그 결정을 한 판사, 재판장 또는 법원 서기에게 3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판사 또는 재판장 등은 그 다음날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그 결정에 대해 또다시 불복하거나, 의견진술청취요청을 거치지 않은 당사자는 5일 이내에 사법부 관리 회의에 항고할 수 있으며, 사법부 관리 위원회는 해당 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의견서를 받은 후 첫 번째 회의에서 이에 대해 결정한다."

55) 일반적으로 판사, 검사, 장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경찰 지휘관 등 결정권과 지휘권을 갖춘 고위 공직자가 이에 포함된다.

56) 스페인 형법은 제50조 제2항에서 일당 벌금제(Sistema de días-multa)를 도입하고 있어 법원이 범

처벌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판사, 검사, 의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과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57]

전조의 규정에 해당할 정도의 공격은 아니나, 권위자(법관 포함)나 그 대리인 또는 국가 경찰, 자치 경찰 등의 지휘를 받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수행에 중대하게 불복종한 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58] 공무를 수행하는 권위자에게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59]

죄의 심각성과 결과에 따라 벌금형을 일수로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수입, 재산, 가족 부양 의무 등)을 고려하여 하루에 납부해야 할 벌금액(최소 2유로~최대 400유로)을 정한다. 환형유치(responsabilidad personal subsidiaria) 비율은 스페인 형법 제53조 제1항에 벌금형 2일 당 노역장 유치 1일로 정해져 있다.

57) 스페인 형법 제550조 "1. Son reos de atentado los que agredieren o, con intimidación grave o violencia, opusieren resistencia grave a la autoridad, a sus agentes o funcionarios públicos, o los acometieren, cuando se hallen en el ejercicio de las funciones de sus cargos o con ocasión de ellas.
2. Los atentados serán castigados con las penas de prisión de uno a cuatro años y multa de tres a seis meses si el atentado fuera contra autoridad y de prisión de seis meses a tres años en los demás casos.
3. No obstante lo previsto en el apartado anterior, si la autoridad contra la que se atentare fuera miembro ····· d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Magistrado del Tribunal Constitucional, juez, magistrado o miembro del Ministerio Fiscal, se impondrá la pena de prisión de uno a seis años y multa de seis a doce meses. "
"1. 권위자나 그 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일 때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심각한 협박 등으로 중대한 저항을 하거나 공격한 자는 공권력 공격죄로 처벌한다.
2. 공권력 공격죄는 권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및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격 대상이 (중략) 사법부총평의회 위원, 재판관, 판사, 검사인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및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8) 스페인 형법 제556조 제1항 "1. Serán castigados con la pena de prisión de tres meses a un año o multa de seis a dieciocho meses, los que, sin estar comprendidos en el artículo 550, resistieren o desobedecieren gravemente a la autoridad o sus agentes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o al personal de seguridad privada, debidamente identificado, que desarrolle actividades de seguridad privada en cooperación y bajo el mando de las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1. 형법 제550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권위자나 그 대리인 또는 국가 경찰, 자치 경찰등과 협력하고 그 지휘하에 민간 보안활동을 하는 민간보안요원의 직무수행에 중대하게 불복종한 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9) 스페인 형법 제556조 제2항 "2. Los que faltaren al respeto y consideración debida a la autoridad,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serán castigados con la pena de multa de uno a tres meses."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위자에 대한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앞서 본 권위자나 공무원에 대한 공격행위 외에 공공질서를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스페인 형법 제557조와 제558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의 평화를 해칠 목적으로 집단으로 시설이나 건물에 침입하여 그 장소의 필수적인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 폭력 또는 협박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60] 법정 또는 법원의 심리에 있어 심각하게 그 질서를 방해하는 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61]

4. 법정 질서유지 위반 사례

가. 알시라 법원 집단 난투극 사건

2019. 10. 16. 발렌시아 주 알시라(Alzira) 여성폭력특별법원(Juzgado de Violencia sobre la Mujer)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들이 뒤엉켜 싸우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법정 내부가 아닌 법원 복도에서 약 50명이 충돌하여 난투극을 벌였고, 1명이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당시 당사자들이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언론에서는 법원 보안 요원들의 부족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출입시키는 구조 등이 부족한 것(특히 최근에 건설된 신청사와 달리 구청사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을 폭력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62]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60) 스페인 형법 제557조 제1항 제3호 "1. Serán castigados con la pena de prisión de seis meses a tres años los que, actuando en grupo y con el fin de atentar contra la paz pública, ejecuten actos de violencia o intimidación:
c) invadiendo instalaciones o edificios alterando gravemente el funcionamiento efectivo de servicios esenciales en esos lugares."
"공공의 평화를 해칠 목적으로 집단으로 폭력 또는 협박행위를 하는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c) 그러한 폭력 또는 협박행위의 일환으로 시설이나 건물을 침입하여 그 장소에서의 필수적인 서비스의 실질적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61) 스페인 형법 제558조 "Serán castigados con la pena de prisión de tres a seis meses o multa de seis a 12 meses, los que perturben gravemente el orden en la audiencia de un tribunal o juzgado, ……"
"법원의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방해한 사람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하생략)"

62) https://elpais.com/politica/2019/12/11/actualidad/1576089962_587059.html(2025. 8. 22. 최종확인).

나. 바야돌리드 법원 법정 소란 사건

2024. 12.경 바야돌리드 형사합의법원(Audiencia de Valladolid)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그 딸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한 3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의 가족 3명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향해 "아동 살인마", "사탄"이라고 폭언을 하였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정에 대기하고 있던 국가 경찰과 시민경비대가 개입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격을 제지하였으며, 재판장은 질서유지 위반자들에 대한 퇴정을 명한 후 15분간 재판을 휴정하였다.[63]

2025. 4.경 바야돌리드 형사단독법원(Juzgado de lo Penal)에서는 특수절도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밀고자"라고 소리치며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국가 경찰과 시민경비대에 이어 민간보안요원까지 투입되어 질서유지 위반자들을 제지하였고, 다행히 추가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64]

위 사건들의 질서유지 위반자들이 퇴정 외에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국가 경찰과 시민경비대 등이 조기에 투입되어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법정 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스페인 법원의 다양한 노력

가. 고정되어 설치된 차폐시설

앞서 본 알시라 여성폭력특별법원보다 비교적 최신청사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성폭력특별법원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정 바로 옆에 증인대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증인대기실에 출입한다. 피해자가 출석하는 사건을 대비해 법정 내부에는 증인대기실 입구 바로 옆에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은 부스 형태의 차폐시설이 고정되어 있어,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법정 내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65] 알시라 여성폭력특별법원에도 이와 같

63) 해당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에 관한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 8. 22. 최종확인). https://www.huffingtonpost.es/sociedad/se-abalanzan-pleno-juicio-acusado-matar-pareja-e-hija-asesino.html

64) 명확하지는 않으나, 재판 종료 후 법원 복도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2025. 8. 22. 최종확인). https://www.diariodevalladolid.es/valladolid/250604/271590/trifulca-juzgados-valladolid-familiares-dos-condenados-robo-tratan-agredir-denunciante.html

은 시설과 구조가 갖추어져 있었다면 앞서 본 난투극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법정 복도에서 바라본 증인대기실



▲ 증인대기실 내부모습



▲ 법정에 상시 설치되어 있는 차폐시설. 증인대기실과 연결되어 있다.

65) 전경태, 스페인 여성폭력특별법원의 특성 및 피해자보호조치, 가족법연구 제32권 제3호, 271쪽(2018. 11.).

나. 법정 내 폭력사태 대처에 관한 스페인 사법연수원의 시뮬레이션 교육

스페인 사법연수원(Escuela de Judicial)은 신임법관교육 중 여성폭력사건에 관하여는 일반강의, 특별강의, 시뮬레이션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 교육에서는 배우로 구성된 당사자들이 실제 여성폭력특별법원의 재판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연기하고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생들이 해당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사법연수원 교수가 영상을 통해 이를 시청하며 평가하는 모의재판(이를 'Declaraciones Críticas'라고 불렀다)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돌발 상황에서의 절차진행 능력, 당사자들에게 공감하는 능력, 2차 피해 예방능력 등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상황에서는 피해자 심문을 마친 뒤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른 출입문을 이용하게 하라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출입문을 이용하게 하다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위협하는 상황, 포승줄에 묶여 있는 가해자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자신의 포승줄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등을 부여하였고, 그에 대한 사법연수원생의 대처 후에 지도 교수의 피드백 강의가 진행되었다.

다. 법정 내 영상촬영을 통한 폭력사태 예방

스페인 민사소송법[66]과 형사소송법[67]에서는 구두변론으로 진행되는 공판기일과 심문은 영상 또는 음성 기록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정 천장에도 카메라를 설치하여 당사자까지도 촬영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영상이 상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법관 및 법원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증거수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국가법원 사건 등의 주요 사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재판을 중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한다.[68]

66) 스페인 민사소송법 제147조 "Las actuaciones orales en vistas, audiencias y comparecencias celebradas ante los jueces o magistrados o, en su caso, ante los letrados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se registrarán en soporte apto para la grabación y reproducción del sonido y la imagen."
"판사나 법원서기(사법보좌관) 앞에서 이루어지는 구두 변론, 심문, 심리 등의 절차는 영상 또는 음성으로 녹화·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기록되어야 한다."

67) 스페인 형사소송법 제743조 "El desarrollo de las sesiones del juicio oral y resto de actuaciones orales se documentarán conforme a lo preceptuado en los artículos 146 y 147 de la Ley de Enjuiciamiento Civil."
"구두 변론과 구두로 진행되는 다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IV.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사법부총평의회의 역할

1. 사법부총평의회(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의 구성과 목적

가. 구성

사법부총평의회는 사법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법원장의 제청, 법관의 임명 · 승진 · 교육 · 징계 등 전반적인 사법행정기능을 수행한다.[69] 사법부총평의회는 의장 1명 및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대법원장이 겸임한다. 위원은 상 · 하원이 3/5 이상의 의결로 각 10명의 위원을 제청하면 국왕이 임명한다. 위 위원 중 12명은 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8인은 15년 이상의 법률가(변호사, 교수 등) 중에서 임명된다. 법관후보와 관련하여 법원 내부에서 선정한 후 이를 상 · 하원에 제시하면, 상 · 하원은 그 중에서 각 6명을 법관후보로 제청한다. 법률가후보는 상 · 하원이 각 4명을 후보자로 제청한다.

사법부총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은 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명을 제청한 사법부총평의회와 운명을 같이 하므로, 그 임기도 5년이다. 다만 대법원장은 새로운 사법부총평의회에서 다시 임명이 제청되면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70]

사법부총평의회 총회는 매년 상임위원회(COMISIÓN PERMANENTE)를 구성하는데, 상임위원회는 의장 및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이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주재한다. 7명의 위원 중 4명은 법관 중에서, 나머지 3명은 법조인 중에서 선정된다.

나. 목적

사법부총평의회는 사법기능의 행사과정에서 스페인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71]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행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상 독립된 합의체 기관이다.

---

68)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10쪽.

69) 그 법적인 근거는 스페인 헌법 제122조 제2항과 헌법이 위임한 사법부 조직법에 있다.
스페인 헌법 제122조 제2항 "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es el órgano de gobierno del mismo. La ley orgánica establecerá su estatuto y el régimen de incompatibilidades de sus miembros y sus funciones, en particular en materia de nombramientos, ascensos, inspección y régimen disciplinario."
"사법부의 관리기관은 사법부총평의회이다. 사법부 조직법은 총평의회의 지위와 그 구성원의 겸직금지제도, 직무 특히 임명, 승진, 감사 및 연수제도에 관하여 규정한다."

70) 김민철, 스페인 사법제도, 각국의 사법제도, 외국사법제도연구(27), 428쪽.

사법부총평의회는 법관의 임명 · 승진 · 인사이동, 법원 감사, 법관에 대한 징계요구 등 권한이 있고, 위와 같은 권한을 사법부총평의회에 기속함으로써 다른 국가권력, 특히 행정부가 법원독립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스페인 사법부 조직법 제14조 판사 또는 재판관이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신의 독립성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사법부총평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72]

2. 재판 독립 침해사태에 대한 사법총평의회의 역할과 기능

스페인 사법부 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당한 판사는 사법부총평의회에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판사의 독립 보호 요청(petición de amparo)을 보고받은 사법부총평의회는 먼저 7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COMISIÓN PERMANENTE)에 이를 회부하여 사안의 경중을 예비심사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위원회는 이를 정식 접수(admitido a trámite)한 후, 피신고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양쪽의 의견을 종합하여 20인으로 구성된 사법부총평의회 총회(El pleno)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73]

총회에서 판사에 대한 공격의 강도, 내용, 그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해당 판사가 외부의 압력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진 경우에는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보호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방송을 통해 사법부총평의회 명의로 공식 설명을 발표하고, 정부 · 의회 등 관련 기관에 해당 결정을 통보하며, 필요시 판사 보호 조치나 보안 강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행위가 형사책임이나 민사

71) 스페인 헌법 제117조 제1항 "La justicia emana del pueblo y se administra en nombre del Rey por Jueces y Magistrados integrantes del poder judicial, independientes, inamovibles, es-ponsables y sometidos únicamente al imperio de la ley."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사법부를 구성하는 재판관(Jueces y Magistrados)이 국왕의 이름으로 이를 행한다. 재판관은 독립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며, 법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이에 복종한다."

72) 스페인 사법부 조직법 제14조 제1항 " Los Jueces y Magistrados que se consideren inquietados o perturbados en su independencia lo pondrán en conocimiento d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판사는 자신의 독립성이 불안해지거나 침해당한 경우에 사법부총평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이하 생략)"

73) 구체적인 절차는 스페인 사법부총평의회규정 법원 활동에 관한 불만 및 신고 처리규정("Reglamento número 1/1998, de 2 de diciembre D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DE TRAMITACION DE QUEJAS Y DENUNCIAS RELATIVAS AL FUNCIONAMIENTO DE LOS JUZGADOS Y TRIBUNALES")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책임을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독립 보호 요청에 대한 절차는 마무리된다.[74]

3. 구체적인 사법권 독립 침해 사례

가. 독립 보호 요청 사건 현황

사법부총평의회 국제관계국장인 Luis de Arcos Pérez 판사는 2025. 5. 기준 사법부총평의회에 계류 중인 독립 보호 요청 사건은 총 10건가량이며, 현재 계류중인 관심사건으로는 ① 후아나 리바스(Juana rivas)가 이탈리아인 전남편 프란세스꼬 아르꾸리(Francesco Arcuri)에게 자신이 키우던 두 아들을 돌려보내라는 법원의 인도명령에 대해 자신이 전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진행된 재판인데, 후아나 리바스에게 자녀들을 돌려보내라는 재판을 한 판사들에 대해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이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재판부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하자, 사건 담당 판사가 자신의 독립성을 침해당했다며 사법부총평의회에 보호 요청을 제기한 사건과 ② 마드리드에서 정치인 이니고 에레혼(Íñigo Errejón)의 배우(겸 언론계 종사자) 엘리사 몰리아(Elisa Mouliaá)에 대한 성범죄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과 질문 내용에 대해 여성계 등으로부터 900건에 달하는 징계요청 민원이 사법부총평의회에 제기되자, 담당 재판장이 사법부총평의회에 보호 요청[75]을 제기한 사건 등이 있다고 밝혔다.[76]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 협박 등이 주로 사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독립 보호 요청 인용 사건

팔마 제12예심법원 판사 마누엘 페날바 올리버(Manuel Penalva Oliver)는 자신이 담당하던 대형 부패사건(지방 경찰 사건[77] 및 쿠르사크 사건[78]) 관련하여 피고인측 인사

74)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17쪽.
75) 보호 요청과 함께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증언 영상이 유출된 경위 또한 밝혀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에 대한 링크는 아래와 같다(2025. 8. 26. 최종확인).
https://www.libertaddigital.com/espana/2025-01-23/el-juez-del-caso-errejon-pedira-amparo-al-cgpj-tras-las-900-denuncias-por-su-interrogatorio-a-mouliaa-7210864/
76)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16쪽.

들로부터 지속적인 미행, 자택 근처 및 현관에 남겨진 협박성 · 모욕성 낙서, 차고에서 발생한 차량 방화사건, 공판기일에 맞춰 법원 앞에서 조직된 공개 시위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총평의회에 보호요청을 제기하였고, 사법부총평의회가 2017. 12. 21. 이를 받아들이면서, 발레아레스 정부와 변호사협회에 이를 통보하며, 필요시 적절한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79] 특히 그 성명에서는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장이 편파적이고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을 계속 확산함으로써 피고인측 인사들의 지속적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80]

다. 사법부총평의회 상임위원회의 직권 의결

판사의 독립 보호 요청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법총평의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식 의결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앞서 본 2019년 이비자 법원 방화 사건 발생 후 이비자 법원을 관할하는 발레아레스 고등법원(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de las Illes Balears)은 운영회의를 통해 2019. 1. 21.부터 불가항력적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입증될 때까지 방화 피해를 입은 예심법원, 여성폭력특별법원, 형사법원 등의 절차기한과 소송기간을 중단(suspensión de plazos procesales)[81]하고, 해당 법원에서 재판을 비롯한 사법활동을 정지(suspensión de actuaciones)[82]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사법부총평의회 상임위원회는 2019. 1. 24. 열린 회

77) 팔마 시 경찰 내부의 일부 간부와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기업인과 범죄조직의 이해관계에 협력했다는 사건. 팔마 지역에서 카지노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바르톨로메 쿠르사크로부터 경쟁업체를 단속하거나 괴롭히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문제가 됐다.

78) 앞서 본 팔마 지방경찰 사건의 사업가 바르톨로메 쿠르사크(Bartolomé Cursach)의 이름을 딴 사건으로 정치인 · 경찰 · 기업인 등 지역 권력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대형 부패사건이었다.

79) 성명은 사법부총평의회 인터넷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래 링크 참조, 2025. 8. 23. 최종확인). https://www.poderjudicial.es/cgpj/es/Poder-Judicial/Consejo-General-del-Poder-Judicial/Oficina-de-Comunicacion/Notas-de-prensa/El-CGPJ-admite-a-tramite-la-peticion-de-amparo-formulada-por-el-titular-del-Juzgado-de-Instruccion-numero-12-de-Palma

80) 그러나 2023. 11. Manuel Penalva 판사는 발레아레스 고등법원에 의하여 쿠르사흐 사건 수사(예심재판)과정에서 형사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협박, 권력남용 등의 죄목으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스페인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속 중이다.

81) 문서 제출 기한, 항소 기한, 소송행위 기한 등이 모두 일시 정지.

82) 기일, 심문, 증인신문 등 모든 절차적 행위 일시 중단. 그러나 발레아레스 고등법원은 당직법원 사건과 여성폭력특별법원에서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은 예외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비자 법원의 인근 법원에서 해당 사건들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의를 통해 발레아레스 고등법원의 결정을 승인하고, 발레아레스 고등법원 산하의 법원과 관련 기관, 변호사 협회에게 발레아레스 고등법원의 결정을 양해하고 지지해 달라고 공식 의결(Acuerdos adoptados)하였다.[83]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20. 5. 22.경에야 사법부총평의회 상임위원회는 소송절차 정지 해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84]

2024. 6.경에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Pedro Sánchez)가 자신의 배우자 베고냐 고메스(Begoña Gómez)에 대한 예심법원 사건[85]을 언급하면서, 그 재판(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발언하자, 같은 달 10. 사법부총평의회 상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다.[86]

"재판의 결과가 절제되고 합리적인 비판에 얼마든지 열려 있고, 적법한 불복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특히 국가의 주요기관의 수장들에게는 예외 없이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제를 촉구하며, 재판 절차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추측도 삼갈 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행위는 사법권의 독립으로 대표 되는 입헌민주주의의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판사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온전히 그들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사법부총평의회가 이를 보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스페인 국민들은,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것이다."

---

83) 당시 합의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부총평의회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래링크 참조, 2025. 8. 23. 최종확인).
https://www.poderjudicial.es/cgpj/es/Poder-Judicial/Consejo-General-del-Poder-Judicial/Actividad-del-CGPJ/Acuerdos/Historico-Acuerdos-de-la-Comision-Permanente/Acuerdos-de-la-Comision-Permanente-del-CGPJ-de-24-de-enero-de-2019

84) 발레아레스 변호사협회의 공지사항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링크 참조, 2025. 8. 23. 최종확인). 한편 해당 공지에는 위 해제결정에도 불구하고 COVID-19로 인해 2020. 6. 4.까지 결정되었던 기한 및 절차 행위 중단은 여전히 유지된다고도 공지하였다.
https://www.icaib.org/ibiza-levantamiento-de-la-suspension-de-plazos-y-actos-procesales-decretada-a-causa-del-incendio-en-los-juzgados

85) 2024. 4.경 페드로 산체스의 배우자 베고냐 고메스가 권력남용과 부패 등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다. 현재 수사가 계속되어 2025. 8. 베고냐 고메스의 보좌관이 기소되었고, 베고냐 고메스는 마드리드 고등법원(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de Madrid)으로부터 예심 절차(instrucción) 진행을 위해 2025. 9. 11. 출석할 것을 소환받았다.

86) 사법부총평의회 인터넷 게시판에서 해당 성명에 대한 요약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아래 링크 참조, 2025. 8. 23. 최종확인).
https://www.poderjudicial.es/cgpj/es/Poder-Judicial/En-Portada/Comunicado-de-la-Comision-Permanente-de-10-de-junio-de-2024

V. 결론

2023년 스페인 사법부총평의가 여론조사 기관 메트로스코피아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 사법제도를 경험한 스페인 국민들의 87%가 정치인들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스페인 국민들의 58%는 스페인 판사들이 어떠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페인 국민들의 약 80%의 국민들은 판사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유능하며,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스페인 판사와 사법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었다.[87]

오늘 살펴본 스페인 법원의 방호조직의 이원화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시설과 제도, 사법부총평의회의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에 관한 연구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대한민국 사법권의 독립, 법원 구성원의 보호 및 법관과 법원의 대국민 신뢰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87) 여론조사 관련 출처(아래 링크 참조, 2025. 8. 24. 최종확인).
https://www.poderjudicial.es/cgpj/es/Poder-Judicial/En-Portada/Los-espanoles--satisfechos-con-el-trato-correcto-e-imparcial-recibido-de-la-Justicia--a-la-que-consideran-independiente-y-competente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민철, 스페인 사법제도, 각국의 사법제도, 외국사법제도연구(27), 2020.
- 김영철, 스페인의 사법경찰제도, 법무자료: 각국의 사법경찰제도Ⅱ, 1990.
- 전경태, 2025 외국사법제도연구반 스페인 상반기 출장 결과보고서, 2025.
- 전경태, 스페인 여성폭력특별법원의 특성 및 피해자보호조치, 가족법연구 제32권 제3호, 2018.

【스페인 언론】

- Paco S. Pérez, "Cuatro años y un día de prisión para los autores del incendio intencionado de los juzgados de Ibiza", Perioódico de ibiza, 2023. 2. 6.
  (https://www.periodicodeibiza.es/pitiusas/ibiza/2023/02/06/1877023/tribunales-condenados-por-incendio-arraso-juzgados-ibiza.html)
- Borja Méndez, "Un policía jubilado intentó quemar un órgano judicial en el apagón", La razón, 2025. 5. 26.
  (https://www.larazon.es/espana/policia-jubilado-intento-quemar-organo-judicial-apagon_202505266833bd207b27927d3db15719.html)
- Vanessa Hernández, "Continúa la investigación sobre el acto vandálico y las pintadas en los Juzgados", Perioódico de ibiza, 2025. 5. 27.
  (https://www.periodicodeibiza.es/pitiusas/ibiza/2025/05/27/2395397/estudian-implantar-vigilancia-horas-juzgados-ibiza-tras-acto-vandalico.html)
- Ignacio Zafra, "A golpes en el juzgado", El país, 2019. 12. 12.
  (https://elpais.com/politica/2019/12/11/actualidad/1576089962_587059.html)
- Redacción HuffPost(허핑턴포스트 스페인 편집국), "Se abalanzan en pleno juicio contra el acusado de matar a su pareja e hija: "¡Asesino de niñas!"", huffingtonpost, 2024. 12. 13.
  (https://www.huffingtonpost.es/sociedad/se-abalanzan-pleno-juicio-acusado-matar-pareja-e-hija-asesino.html)

【인터넷 자료】

- 스페인 법령검색(https://www.boe.es/buscar/)
- 스페인 공공계약포털(https://contratos-publicos.comunidad.madrid/)
- 스페인 사법부 판례검색사이트(https://www.poderjudicial.es/search/)
- 스페인 사법부총평의회 성명, 의결, 여론조사 검색
  (https://www.poderjudicial.es/cgpj/es/Poder-Judicial/Consejo-General-del-Poder-Judicial)
- 스페인 발레아레스 변호사협회(https://www.icaib.org/)

일본의 재판소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필진_ 일본 사법제도연구반
책임필자_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백광균

Ⅰ. 서론 432

Ⅱ. 법정 경찰권 432
1. 주체 432
가. 재판체 432
나. 법정 경비원 433
다. 일반직, 경찰관 435
2. 범위 435
가. 시간 435
나. 장소 436
다. 조치 437
3. 실무 443
가. 법정 안 443
나. 법정 밖 445
다. 제재, 처벌 447

Ⅲ. 청사 경비 449
1. 주체 449
가. 관리자 449
나. 민간 경비원, 수위 449
다. 일반직, 경찰관 450
2. 범위 451
가. 시간 451
나. 장소 451
다. 조치 452
3. 실무 454
가. 총괄 454
나. 출입구 454
다. 외곽 455

Ⅳ. 예산 · 인사 · 조직 457
1. 예산 457
가. 주체 457
나. 업무 457
다. 동향 458
2. 인사 460
가. 주체 460
나. 업무 460
다. 동향 461
3. 조직 461
가. 주체 461
나. 업무 462
다. 동향 462

Ⅴ. 결론 463
1. 법정 경찰권 463
2. 청사 경비 464
3. 예산 · 인사 · 조직 464

Ⅵ. 관계 법령 465
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465
2. 재판소법 465
3. 법정 등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 466
4. 법정 등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469
5. 법정 질서 유지 등에 투입하는 재판소 직원에 관한 규칙 474
6. 재판소 방청 규칙 475
7. 재판소 청사 등 관리에 관한 규정 475
8. 재판소 청사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479

참고문헌 485

* 이하 ① 일본 법령과 실무를 다루고, ② 일본 참고문헌은 法律編集者懇話会『法律文献等の出典の表示方法』[2014年版]에 따라 인용하며, ③ 일본「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법정 등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법정 등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재판소 청사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은「법」,「규칙」,「법정질서법」,「법정질서규칙」,「청사관리규정」으로 각각 약칭하고, ④ 인용한 판례 중 밑줄 및 [ ]는 이해를 도우려고 덧붙인 것이다.

I. 서론

「사법의 독립」이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 업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일컬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까닭에 유무형으로 숱하게 위협받아왔으며, 근대 사법제도를 수립해온 여러 나라에서도 여전히 더 나은 재판을 위한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 사법 작용을 전담하는 사법부 구성원이 물리적, 심리적으로 바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필수불가결하다.

일본에서는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거쳐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 사법제도를 도입, 발전시켜왔으니, 그 경험은 참고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에 2025년 6월 수도 도쿄(東京) 최고 · 고등 · 지방재판소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 경찰권(II), 청사 경비(III), 예산 · 인사 · 조직(IV) 순서로 살펴보고, 항목별 요약으로 결론(V)을 갈음하며, 마지막에 관계 법령(VI)을 덧붙인다.

II. 법정 경찰권

1. 주체

가. 재판체

(1) 법정 경찰권(法廷警察権)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 심판 방해를 제지, 배제하려고 재판체(裁判体), 즉 합의체 또는 단독 재판관이 행사하는 권한이며, 재판권에 속한 소송지휘권 중 일부가 아니라, 재판권에 부수하는 사법 행정권 중 일부로 봄이 통설이다.[1)]

(2) 소송지휘권은 사건 심리와 실질적으로 관련하니, 사안 해명과도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으나, 법정 경찰권은 오로지 소송진행상 장애를 배제할 목적이기에 사건 심리 내용이나 소송의 실질과는 관계가 없다.[2)] 다만, 소송관계인에 대한 발언 금지(법 제295조),

1) 中山善房[ほか] 編『大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第6巻』(青林書院, 第3版, 2022) 43頁; 伊丹俊彦[ほか] 編『逐条実務刑事訴訟法』(立花書房, 2018) 615頁; 河上和雄[ほか] 編『注釈刑事訴訟法 第4巻』(立花書房, 第3版, 2012) 146頁. 이하 위 각 문헌은 「中山善房」, 「伊丹俊彦」, 「河上和雄」로 각각 약칭한다.

2) 中山善房 43頁; 伊丹俊彦 615頁.

피고인 재정명령(법 제288조 제2항) 등 성질이 겹칠 경우도 있다.[3]

(3) 법정 경찰권은 소송지휘권과 마찬가지로 합의체 또는 단독 재판관의 권능인데, 임기응변과 시의적절성이 필요한 만큼 합의체에서는 개개인의 결정에 의함이 부적절하고,[4] 재판장이 행사함이 원칙이다(법 제288조 제2항, 재판소법 제71조). 다만, ① 제재(감치, 과태료) 부과(법정질서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② 촬영, 녹음, 방송 허가(규칙 제215조), ③ 법정 경찰권 행사에 대한 이의에 대한 결정(법 제309조 제2, 3항), ④ 제재 대상자에 대한 구속(법정질서법 제3조 제2항)은 중대한 사안이고 꼭 긴급한 것도 아니니, 합의체의 권한으로 남겨두되,[5] ⑤ 구속만은 긴급하면 재판장이 수행할 수 있다(법정질서규칙 제2조 제1항).[6]

나. 법정 경비원

(1) 법정 경비원(法廷警備員)은 재판소의 명을 받아 법정 안팎 질서 유지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다(법정 질서 유지 등에 투입하는 재판소 직원에 관한 규칙 제1조). 과거 법정 사무를 위한 정리(廷吏)를 따로 두었으나(재판소법 제63조), 현재는 운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법정 경찰권은 재판체의 권한이므로 위임하지 못하나, ① 법정 경비원 등 보조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명령을 전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② 소란 행위가 일어나면 바로 퇴정시키라는 취지로 법정 경비원에게 명해두는 것은 위임이 아니라 조건부 퇴정명령이므로 적법하다.[7] 또한, ③ 재판소 방청 규칙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한 사항, 예컨대 소란, 꼴사나운 몸가짐, 멋대로 자리 옮김(제3조 제1-3호)은 당연히 방청인이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재판관 입정 전이라도 법정 경비원이 보조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주의를 주어 억제할 수 있다.[8]

3) 河上和雄 147頁.
4) 中山善房 43頁; 伊丹俊彦 615頁; 河上和雄 152-153頁.
5) 中山善房 43頁; 河上和雄 153頁.
6) 관계 법령에 관한 입법 경위와 비판적 검토는 村井敏邦「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の制定の歴史」法律時報 52巻 10号(1980 · 10) 25-34頁 참조. 이하 위 문헌은「村井敏邦」로 약칭한다.
7) 中山善房 44頁; 伊丹俊彦 615頁; 河上和雄 153頁;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総務局 編『裁判所法逐条解説 下巻』(法曹会, 1969) 32-33頁. 이하 마지막 문헌은「裁判所法逐条解説 下巻」으로 약칭한다.
8) 中山善房 44頁.

東京高等裁判所 決定 昭和 28年(1953) 12月 4日 判特 39号 211頁

법정 경찰권은 재판장이 행사함이 분명한 이상, 법정에서 재판소의 직무 집행을 막거나 부당한 몸가짐을 보인 이가 있으면, 재판장이 스스로 그를 확인, 지시하여 퇴정명령을 내리거나, 그 집행을 명함이 원칙인데, 피고인이나 방청인이 여럿 존재하는 법정에서 재판소의 직무 집행을 막거나 부당한 몸가짐을 보이는 이가 속출해서 법정이 혼란하고, 재판장이 일일이 위와 같이 사후 퇴정명령 등을 내리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움이 예상될 경우, 「장래 손뼉, 폭행 등 소란에 이른 이가 있을 경우」처럼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며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 삼아 미리 일괄 퇴정명령을 내리고, 그 집행을 법정 경비원에게 명령, 수행하도록 함은 결코 절차를 애매하거나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실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조치이니, 관련 조치는 법에서 방임(放任)하는 바이고, 따라서 굳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하여야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의 기피 원인 진술 종료 시부터 피고인, 방청인 여럿이 손뼉을 치기 시작하였기에, 이를 재판장 B는 제지하였으나, 그래도 손뼉이 이어졌으므로 「앞으로 손뼉 치는 방청인은 퇴정시킨다, 경비원은 앞으로 손뼉 치는 방청인은 재판장 명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실력을 행사해서 법정에서 쫓아내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점 및 피고인 중 몇 명이 피고인 C를 퇴정시키려는 경비원의 실력 행사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므로, 재판장은 다시금 경비원에게 「피고인 C의 퇴정명령 집행을 막는 이는 바로 실력으로 퇴정시키도록」 명령한 점은 위 공판조서에서 분명하고, 앞엣것은 「앞으로 방청인으로 손뼉 치는 이가 있다면, 그 손뼉 친 방청인에게 퇴정을 명한다」라는 조건부 퇴정명령과 경비원에 대한 집행명령이고, 뒤엣것은 「경비원에게」라고는 하나, 역시나 실질은 「퇴정을 명받은 피고인 C를 경비원이 퇴정시킬 때, 그 경비원의 집행을 막는 이가 있으면, 그에게 퇴정을 명한다」라고 조건부 퇴정명령과 경비원에 대한 집행명령이라고 풀이할 수 있으니, 위 둘은 모두 재판장이 퇴정명령을 내리도록 경비원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조건인 손뼉 혹은 피고인 A를 퇴정시키려는 경비원의 집행조치에 대한 방해는 모두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이어서 경비원으로서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없는 사항이니, 이를 조건 삼은 재판장의 위 각 명령은 모두 정당하고 어느 모로 보나 위법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 A, D, E가 경비원에 의하여 퇴정당한 것은 위 피고인 C의 퇴정명령 집행을 막은 탓에 재판장의 위 적법한 조건부 퇴정명령을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고, 이 점에서도 위법한 흠이 없다.

(3) 법정 경비원은 어디까지나 재판체에 의한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기관일 뿐, 독립 관직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판단, 행동할 권한이 없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법정을 운용하는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일반직이 경무과장(警務課長)으로서 법정 경비

원 관리 업무를 전담, 총괄하고, 다른 재판소에서는 총무과장이 다른 업무와 겸임한다.[9]

다. 일반직, 경찰관

(1) 일반직은 원칙적으로 법정 질서 유지에 관여하지 아니하나, 법정에서 소란, 퇴거 불응 등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총무과나 송정사무실(訟廷事務室)[10] 직원이 주변인 대피 등을 도와주기도 한다.[11]

(2) 경찰관은 재판장이나 재판관의 요청에 따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파출(派出)되어 재판장이나 재판관의 지휘에 따라 근무할 수 있다(재판소법 제71조의2). 도쿄고등·지방재판소 합동청사에는 ① 상주 경찰관 없이 필요에 따라 근처 경찰서에 요구할 경우에만 경찰관이 출동해오며, ② 법정 안팎에서는 법정 경비원과 경찰관, ③ 나머지 구역에서는 경찰관과 일반직이 사전 훈련대로 합동 대응한다.[12]

(3) 도쿄고등·지방재판소 합동청사에는 민간 경비원(외주 업체 소속), 수위(재판소 소속)도 일정 인원 근무하나, 오로지 청사 경비를 위한 인원이므로 법정 경찰권 행사를 보조, 지원하지는 아니한다.[13]

2. 범위

가. 시간

(1) 강제조치, 예컨대 퇴정명령은 심리 중이나 심리와 접착한 전후에 내릴 수 있고, 합의를 위한 일시 퇴정이나 판결 선고 후에도 마찬가지이나, 휴정 중이거나 폐정한 경우라면 행사할 여지가 없다.[14]

最高裁判所 判決 昭和 31年(1956) 7月 17日 刑集 10巻 7号 1127頁

재판소법 제71조의 법정 질서 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시작과 종료 시점)는

9) 백광균, 일본 사법제도 연구반 출장 결과 보고서(2025. 6)[내부보고서], 2. 이하 위 문헌은 「백광균」으로 약칭한다.
10) 우리 「종합민원실」에 상응한다.
11) 백광균, 7.
12) 백광균, 7-8.
13) 백광균, 2-3.
14) 中山善房 44-45頁; 伊丹俊彦 616頁; 河上和雄 154頁.

법정 개정 중 및 이에 접착한 전후 시간을 포함한다고 풀이하여야 마땅하니, 예컨대 소론(所論)처럼 판결 선고 후에도 행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2) 임의조치, 예컨대 방청권 발행, 소지품 검사, 촬영 · 녹음 · 방송 허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일종의 예방 작용이므로, 그 대상 행위든 권한 발동 자체든 시간이나 장소에 따로 제약받지 아니한다.[15]

(3) 제재로서 감치, 과태료 부과 절차는 대상 행위와 권한 발동의 시간상 한계가 서로 다르다.[16] 즉, 대상 행위는 「법정이나 법정 밖에서 사건을 심판하거나, 그 밖에 절차를 밟을 때」가 한계이고(법정질서법 제2조 제1항), 권한 발동은 「행위가 끝난 때부터 1개월」이 한계이다(법정질서법 제4조 제2항).

나. 장소

(1) 강제조치는 심리가 이루어지는 법정 안에 그침이 원칙이나, 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는 법정 안으로 국한될 필요가 없고, 예컨대 법정 밖 복도에서도 법정 심리에 악영향을 줄 행위가 있으면, 그 범위까지도, 심지어 청사 밖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17]

最高裁判所 判決 昭和 31年(1956) 7月 17日 刑集 10巻 7号 1127頁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에서 인정, 설시한 경과와 사정을 보면, 방청인 전원에게 퇴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즉 방청인은 여럿이고, 위 퇴정명령 발령 전에 이미 위 각 방청인은 정숙하게 퇴정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소란(喧騒)이 극심한 일부는 경비원에게 반항적 태도조차 내보였다. 위 경우, 이 사건 건물 내부 구조, 특히 이 사건 법정 위치 및 그 부근 상황(이 점은 당 재판소에 현저하다)에 비추어 소론처럼 퇴정명령을 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퇴정명령에 바탕을 둔 집행으로서, 재판관의 지휘에 따라 법정이 있는 건물 밖까지, 즉 위 소란을 듣거나 알지(聞知) 못할 장소까지 퇴거시킬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마땅하다.

(2) 임의조치는 앞서 본 대로 예방 작용의 속성상 대상 행위든 권한 발동 자체든 장소

15) 河上和雄 150-151頁.
16) 河上和雄 154頁.
17) 中山善房 45-46頁; 河上和雄 154-155頁.

에 따로 제약받지 아니한다.

(3) 제재의 대상행위는 「바로 앞이나 그 밖에 직접 알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법정질서법 제2조 제1항), 청사 밖이더라도 여럿이 확성기를 동원해가면서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적법하게 제재할 수 있다.[18]

東京高等裁判所 決定 昭和 57年(1982) 5月 1日 刑月 14巻 5·6号 366頁

이 법[법정질서법] 제2조에서 정한 방해행위는 이 사건처럼 청사 밖 공공도로(公道)에서 확성기를 통한 음성에 의한 것으로서, 법정에 있는 재판소나 재판관이 오관(五官)[19]의 활동으로 직접 알 수 있는 행위도 포함하고, 원심결정이 인정한 법정 안에 들린 음량 정도 및 집단구호(sprech-call) 내용을 참작해보면, 이 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결정은 헌법 제31조[생명 및 자유의 보장과 과형의 제약], 제37조 제1항[형사피고인의 권리]을 어긴 위법이 없다(아울러, 심리방해행위가 몇 명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하는 점까지도 해당 심리를 수행하는 재판소나 재판관이 직접 알 수 있을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항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법정이 열린 점을 잘 알면서도, 확성기를 써서 특정 재판관 이름을 들어 원심 판시 내용의 집단 구호를 되풀이하였는데, 항고인의 위 행위는 이 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소란에 해당하는 불온한 언동으로 재판소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더불어 재판 위신을 현저히 해친 취지로 인정한 조치에 법령 위반은 없고, (...) 항고인의 원심 판시 심리방해행위의 수단, 태양, 집단 구호의 구체적 내용을 참작해보면, 원심 재판소에서 항고인에게 감치 5일로 재판을 내린 조치에 제재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다. 조치

(1) 강제조치는 「법정에서 재판소 직무 집행을 막거나, 부당한 몸가짐을 보인 이에게 퇴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재판관, 검찰관, 변호인, 피고인 등에 대한 폭행, 폭언, 소란 행위가 대표적이고, 소송지휘권에 기초한 재판이나 처분에 이의할 수 있는데도 이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가 배척되었는데도 소송지휘를 거부한 경우, 법정에서 머리띠, 번호표, 완장 등을 착용해서 법정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도 마찬가지이다.[20]

18) 河上和雄 155頁.
19)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눈(시각), 귀(청각), 코(후각), 입(미각), 손(촉각)을 말한다.
20) 裁判所法逐条解説 下巻 31, 33頁.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은 퇴정, 입정, 입정 금지, 재정, 기립, 착석, 발언 금지, 법정 품위를 해치는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데, 퇴정명령은 대상자가 소송관계인이면 성명, 방청인이면 착석 위치, 복장 등으로 특정하고, 자발적으로 퇴정하지 아니하면 법정 경비원에게 집행을 명한다.[21] 통상 재판장이나 재판관이 미리 법정 경비원에게 퇴정명령과 동시에 집행하도록 지시해두므로, 새로이 집행명령만 내릴 경우는 거의 없고, 소란행위를 조건 삼아 퇴정명령을 내려두기도 한다.[22]

(2) 임의조치로는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 처치를 집행」할 수 있는데(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이것은 법정 질서를 회복하려고 명령이 아닌 사실행위로서 대처한다는 의미이고, 예컨대 질서를 어지럽힌 이에게 재발하면 퇴정명령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든지, 법정 경비원에게 법정 안팎을 경비시킨다든지 간접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다.[23]

또한, 공판정에서 사진 촬영, 녹음, 방송은 합의체나 단독 재판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규칙 제215조). 이것도 법정 경찰권 중 임의조치의 일환으로 법정 질서를 어지럽혀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24]

最高裁判所 大法廷 決定 昭和 33年(1958) 2月 17日 刑集 12巻 2号 253頁

신문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인정하는 표현할 자유에 속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취재 활동도 인정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라도, 이를 국민은 남용하지 못하고, 늘 공공복지를 위하여 이용할 책임을 지는 이상(헌법 제12조), 그 자유도 무제한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이 재판의 대심(対審) 및 판결을 공개 법정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절차를 일반에 공개하여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취지가 틀림없으니, 예컨대 공판정 상황을 일반에 보도하기 위한 취재 활동이라도, 그 활동이 공판정에서 심판 질서를 어지럽혀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듯한 것은 응당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공판정에서 사진 촬영 등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와 장소 등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21) 中山善房 48-49頁; 河上和雄 151頁; 裁判所法逐条解説 下巻 32頁.
22) 中山善房 49頁; 伊丹俊彦 615-616頁.
23) 裁判所法逐条解説 下巻 35頁. 다만, 입법 당시 담당자(민사국장)는 「필요한 처치」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필요할 경우,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실력을 쓸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村井敏邦 27頁).
24) 中山善房 49頁.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15조는 사진 촬영 허가 등을 재판소 재량에 맡기고, 그 허가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행위를 못 함을 밝힌 것으로, 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더불어 합의체 재판장이나 단독 재판관은 ① 방청석만큼 방청권을 발행해서 소지인만 방청하도록 허용하고, ② 법정 경비원에게 소지품을 검사 시켜 위험물 등 반입을 금지하며, ③ 위 각 처치에 불응하거나, 부적절한 옷을 입었거나, 직무 집행을 막거나 부당한 몸가짐을 보이리라고 현저히 의심되는 이 등의 입정을 금지할 수 있다(재판소 방청 규칙 제1조). ①, ②는 임의조치, ③은 강제조치에 해당한다.

東京高等裁判所 判決 昭和 57年(1982) 8月 5日 刑月 14巻 7·8号 565頁

소론은 요컨대 원심 재판소에서는 제1회 공판기일부터 판결선고기일까지 다음 방청 제한, 즉 (1) 개정 중 어떠한 이유로도 퇴정한 경우 재입정(再入廷)을 불허하고, (2) 개정 중 방청석에 빈자리가 나더라도, 일단 방청권 배부가 이미 마쳐진 경우 방청 희망자가 있더라도 입정을 불허하며, (3) 개정 중 법정 밖 복도에 방청 희망자가 있어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방청을 제한하였는데, 위 방청 제한은 헌법 제37조[형사피고인의 권리], 제82조[대심 및 판결의 공개]를 어김과 더불어 재판소 방청 규칙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소송지휘이어서 원심 심리는 심판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조사해보건대 원심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방청에 관해서 소론 주장 (1), (2)처럼 조치한 점이 엿보임은 물론 위 조치에 원심 변호인이 원심 제16, 17회 공판기일을 빼고는 제2회 공판기일부터 제25회 판결선고기일까지 매번 이의나 항의성 발언을 되풀이한 점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함부로 발언한 방청인 1명에게 퇴정명령이 내려짐을 필두로 제4, 6, 8, 11 - 13, 15, 19, 22회 공판기일에 모두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방청인에게 퇴정명령이 내려졌을 뿐 아니라, 퇴정명령이 내려지지 아니한 공판기일에도 함부로 발언하는 등 질서를 어지럽힌 방청인에게 원심 재판장의 제지와 경고 등이 내려진 점, 이상 사실이 인정되나, 소론이 (3)으로서 주장한 사실, 즉 개정 중 법정 밖 복도에 방청 희망자가 있음을 불허한 점은 원심 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위 사실에 따르면, 원심 재판장은 제1회 공판기일을 열 때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보아 방청석 숫자만큼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만 방청을 허락하였으며, 이른바 방청인 교체 제한 등 조치도 내렸는데, 위 공판기일 법정 상황을 참작하여 이후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치를 계속하였다고 여겨지는데,

원심 재판장의 방청에 관한 위 조치가 재판 공개를 규정한 헌법 제82조에 어긋난 것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각 공판기일에서 방청인의 행태를 참작하면, 원심 재판장에게 주어진 법정 경찰권 행사 관점에서 보더라도, 합리적 재량 범위 안으로 적법하고 상당한 조치였다고 이를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의 경우, 재판소 방청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원심 재판장이 위와 같이 방청을 제한한 것은 위 규칙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소 방청 규칙 제1조에서 재판장은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면, 방청석 숫자만큼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만 방청을 허락할 수 있는 등 위 조 각호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는데, 이는 재판소법 제71조에 따라 법정 경찰권을 부여받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방청에 관하여 법정 경찰권 행사로서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틀림없으니, 재판장이 방청에 관하여 법정경찰관 행사로서 택할 수 있는 조치는 위 규칙 제1조 각호에서 장한 것으로 국한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따라서 소론에서 말한 방청인 교체(방청권을 소지한 방청인이 개정 중 임의로 퇴정하여 법정 밖 복도 등에 대기하는 방청 희망자와 교체함을 가리킨다고 여겨진다)를 제한하는 것, 개정 중 임의로 퇴정한 방청인의 재입정을 불허하는 것, 혹은 개정 중 방청인 퇴정으로 방청석에 빈자리가 나더라도 새로이 방청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 등 조치가 재판소 방청 규칙 제1조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은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면, 재판소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밖에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 처치」로서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으니, (….)

법정 안에서는 과거 보도용으로만 메모를 허용해왔으나, 현재는 재판 공개 원칙에 걸맞도록 목적과 관계없이 메모를 허용해줌이 원칙이다.[25]

最高裁判所 大法廷 判決 平成 元年(1989) 3月 8日 民集 43巻 2号 89頁

재판 공개가 제도로서 보장되는 까닭에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누구나 재판소에 방청하도록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음까지 인정한 바가 아님은 물론, 방청인에게 법정에서 메모를 적도록 권리로서 보장한 바가 아님도 더 말할 나위 없는 점이다. (…) 메모를 적는 행위가 뜻이 맞은 방청인에 의하여 일제히 이루어지는 등 그것이 시위(demonstration) 양상을 띨 경우 등은 논외로 치더라도, 해당 사건의 내용, 증인,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방청인

25) 河上和雄 158頁.

과 사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따라서는 메모를 적는 행위 그 자체가 심리, 재판의 장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든지, 증인, 피고인에게 부당한 심리적 압박 등 영향을 미친다든지 할 적이 있고, 나아가 공정하고 원활한 소송 운영을 막을 우려가 생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방청인의 메모 행위가 공정하고 원활한 소송 운영을 막는 데에 이르는 사태는 통상 없을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방청인 자유에 맡길 것이며, 그것이 헌법 제21조 제1항의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재판체에서는 법정 안팎에서 심리할 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불온한 언동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해친 이를 감치 20일 이하 또는 과태료 3만 엔[26] 이하에 처하거나, 위 각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법정질서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또한, 즉시 법정 경비원이나 경찰관에게 행위자 구속을 명할 수 있으나, 24시간 안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내리지 아니하면, 구속을 풀어주어야 한다(법정질서법 제3조 제2항).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은 해당 행위가 끝나고서 1개월 안에 「결정」 형식으로 내려야 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전부나 일부를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법정질서법 제4조).

행위자는 ① 지방 · 가정 · 간이재판소에서 제재받았으면, 5일 안에 고등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고, ② 고등재판소에서 제재받았으면, 5일 안에 고등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③ 항고나 이의제기에 대한 고등재판소 재판에 위헌, 판례 위반만을 이유삼아 5일 안에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 할 수 있다(법정질서법 제5, 6조).

법정질서법에 따른 제재는 검찰관에 의한 기소나 다른 청구를 기다릴 필요 없이, 형사소송에 의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그 절차는 사법의 본질에서 유래할 뿐 아니라, 간이 · 신속 · 긴급성에 비추어 헌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동일한 행위로 심판방해죄(재판소법 제73조) 등 다른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27]

26) 2025. 10. 27. 기준 100엔은 937.77원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s://ecos.bok.or.kr).
27) 中山善房 51頁.

最高裁判所 大法廷 決定 昭和 33年(1958) 10月 15日 刑集 12巻 14号 3291頁

당초 이 법[법정질서법]에서 목적으로 삼은 바가 법정 등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의 위신을 확보, 유지(保持)하는 데에 있고, 이 점이 민주 사회에서 법의 권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점은 이 법 제1조에 의하여 분명한 점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이념으로 삼은 민주주의는 자의(恣意)와 폭력을 배척하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비로소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법의 지배야말로 민주주의 정도를 점칠 수 있는 가늠자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까닭에 민주주의가 발달한 어떠한 사회에서도 법의 권위가 크게 존중받고, 법을 실현하는 재판의 위신이 주도면밀하게 옹호되며, 특히 일부 나라에서는 오래도록 전통으로서 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사법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이른바「재판 모독」행위에 엄중한 제재를 부과해왔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도 요컨대 위에서 서술한 바로 귀착한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재판소 구성법 제109조 참조), 종전 제도와 견주어 사법의 지위를 현저히 높인 일본국 헌법에서 이 법 제정을 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 법으로 재판소에 속하는 권한은 직접 헌법 정신, 즉 사법의 사명과 정상적이고 적정한 운영의 필요에서 유래한다. 이는 이를테면 사법의 자기 보존, 정당방위를 위하여 사법에 내재한 권한, 사법의 개념에서 당연히 연역(演繹) 되는 권한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엄격, 적정하게 행사함은 재판관의 권한임과 동시에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이 권한은 위에서 보았듯이 직접 헌법 정신에 기초한 것이고, 특정 법조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정 등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의 권위를 확보, 유지하며, 이로써 민주 사회에서 법의 권위를 확보함이 제일 중요한 공공복지 요청의 하나라는 데에서 유래한다.

이 법에 의한 제재는 종래 형사적, 행정적 처벌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아니한 것인데, 이 법으로 설정된 특수한 처벌이다. 그리고 이 법은 재판소 또는 재판관 바로 앞, 그 밖에 직접 알 수 있는 장소에서 언동, 즉 현행범적 행위에 재판소 또는 재판관 자체에 의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영장 발부, 구류(勾留)[28] 이유 개시(開示), 소추, 변호인 의뢰권 등 헌법에서 형사재판에 요구하는 여러 절차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늘 증거조사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한 처벌은 사실과 법률의 문제가 간단명료하기에 처벌받는 사람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이 침해될 염려가 없다. 아울러, 손상된 재판의 위신 회복은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충분히 실효를 거둘 수 있으니, 이러한 절차는 신속성의 요구에도 들어맞는다.

28)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구금」에 상응한다.

위 이유에서 보건대 이 법 제2조에 의한 감치 결정이 헌법 제32, 33, 34, 37조에 어긋난 것이라는 항고인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또한, 이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위자 구속도 감치에 필요한 보전 처치이고, 헌법의 위 각 법조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항고인은 감치와 구속의 위헌을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위 각 처치가 바탕을 둔 「법정 등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 자체의 헌법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最高裁判所 決定 昭和 35年(1960) 9月 21日 刑集 14巻 11号 1498頁

제재 대상자는 적어도 재판소나 재판관 바로 앞 등에서 이 법(법정질서법) 제2조에서 정한 언동을 보인 한, 피고인이든 변호인이든 또는 일반 방청인이든 불문하고, 또한,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 절차는 꼭 공개 법정에서 할 필요가 없음은 위 판례[29] 취지와 같다.

最高裁判所 判決 昭和 34年(1959) 4月 9日 刑集 13巻 4号 442頁

피고인이 형사적 또는 행정적 처벌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법정 등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치 제재를 받은 다음, 다시금 동일한 사실을 바탕으로 형사 소추를 받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헌법 제39조에서 말하는 동일한 범죄에 거듭 형사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위 대법정 두 판례[30]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

3. 실무

가. 법정 안

(1) 법정 경비원은 법정마다 1명이 문가에서 불온한 몸짓을 보이는 이를 확인, 대처함이 원칙이나, ① 재판관, 당사자 등 특정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협이 우려되면, 근처로 미리 이동, 대처하고, ② 방청석에서 특정 당사자를 응원하는 무리가 소리를 치거나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으면, 여럿이서 재판관과 당사자를 등지고 방청석 쪽으로 인간 벽을 쌓아서 감시하며, ③ 입회한 법정 경비원을 보고 오히려 흥분한 당사자가 있으면, 일부러 밖에 나갔다가 진정되면 들어오기도 한다.[31]

법정 경비원은 따로 무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합의체 재판장이나 단독 재판관이 특

29) 最高裁判所 大法廷 決定 昭和 33年(1958) 10月 15日 刑集 12巻 14号 3291頁.
30) 最高裁判所 大法廷 判決 昭和 25年(1950) 9月 27日 刑集 4巻 9号 1805頁; 最高裁判所 大法廷 決定 昭和 33年(1958) 10月 15日 刑集 12巻 14号 3291頁.
31) 백광균, 3, 11.

정인에게 퇴정을 명하면, 일단 말로 퇴정을 안내하며, 거부당하면 팔짱을 끼고 법정 밖(복도에 철책을 둘렀을 경우, 철책 밖)으로 내보낸다.[32]

(2) 법정에서 ① 문가와 제일 가까운 몇 자리는 흰 가죽 덮개를 씌워두어 기자석으로 표시해두고, ② 원고와 피고, 검찰관과 피고인 자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며, ③ 특정 당사자에 대한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대피하기 쉽고 법정 경비원도 가까운 문가와 가까운 곳에 앉도록 조치한다.[33]

법대에는 버저(Buzzer)가 있어 누르면 법정 경비원 여럿이 출동해오고, 폭력단 등 집단 폭력이 우려되는 사건에서는 방청석 맨 앞에 투명한 방탄막(높이 2m 정도)을 설치해두어 위험한 행동을 원천봉쇄하는데, 고가품이라서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2곳에만 갖추어두고, 다른 곳에서는 필요에 따라 빌려서 쓴다.[34][35]

(3) 법정 안 사진에 의한 취재는 재판소와 기자단의 협의에 따라 ①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체 재판장이나 단독 재판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개정 전에만 허가하고, ② 재판관 전원 입정 개시부터 착석 후 개정 선언까지 2분 안에, 형사에서는 피고인이 재정(在廷)하지 아니한 채로만 촬영할 수 있으며, ③ 기자단 대표에 의한 취재로서 스틸 카메라 1명, 비디오 카메라 1명만 보조 요원으로 입정할 수 있고, ④ 방청석 뒷부분 지정해둔 구역 안에서 촬영하며, ⑤ 혼자서 조작할 수 있는 소형 스틸 카메라 1대, 예비용 스틸 카메라 1대, 비디오 카메라 1대만 허용하고, 조명 · 녹음 · 중계기기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36] 또한, ⑥ 방청인 등 피고인 아닌 이는 촬영할 수 있으나,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만 사진을 보도에 쓸 수 있다.[37]

방청인이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경우, 법정 경찰권을 바탕으로 촬영 · 녹음 중지나 퇴정을 명할 수 있으나, 촬영한 필름, 녹음한 테이프 등 매체가 여전히 방청인 수중에 남아 공표, 악용될 위험이 있는데, 공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임의로 제출받아 폐해가 생길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재판소에서 보관한다든지 적정한 방법으로 공표, 악용을 막는다.[38]

---

32) 백광균, 11.
33) 백광균, 10-11.
34) 백광균, 11.
35) 우리와 달리 피고인이 방청석 바로 앞, 법대와 마주 보는 긴 소파에 앉고, 구속 피고인이면 구치소 직원이 양옆에 배석하므로, 방청석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36) 中山善房 49-50頁.
37) 백광균, 11.

나. 법정 밖

(1) 무단 촬영 · 녹음, 폭력 등이 우려되는 사건(위험 사건)에서는 법정 바로 밖 복도에다가 출입금지(立入禁止)를 표시한 철책을 쳐두고서, 원형 금속탐지기를 활용해서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대규모 청사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다.[39]

소지품 검사는 법정 안에서 재판관이 직접 명하기도 하는데, 위험 사건에서는 필기구, 노트, 지갑, 귀중품만 반입을 허용하고, 촬영 · 녹음 기능을 지닌 휴대전화,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은 반입을 금지하며, 해당 물품은 법정 경비원이 맡아두었다가 소지인이 법정 밖으로 나오면 철책 밖에서 돌려준다.[40]

과거 금속탐지기가 보급, 활용되지 아니한 시절에는 피고가 가져온 날붙이에 법정 경비원이 찔려 사망한 사건도 있었으나, 현재는 1차로 청사 출입 단계에서, 2차로 법정 출입 단계에서 이중으로 검색, 차단할 수 있는 셈이다.[41]

[第126回 国会 参議院 法務委員会 第7号 平成 5年(1993) 5月 25日][42]

最高裁判所 長官 代理者(泉徳治)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4월 27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A 법정 경비원이 민사 사건 당사자에게 등산용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민사 사건은 24세 여성 원고가 44세 남성 피고에게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한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자면, 둘은 1988년 동거를 시작해서 1991년에 동거를 해소하였는데도, 1992년 남성 피고가 마음대로 혼인을 신고하였기에 무효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도쿄지방재판소 6층 615호 법정에서 제1회 구술변론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9시 46분쯤 원고 여성과 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하였고, 법정 안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시 50분쯤 피고 남성이 출석하였고, 법정 안에서 원고 여성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그 자리에서 넘어뜨리고, 왼 손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우고, 점퍼 안에 숨겨둔 길이 16cm 등산용 칼을 꺼내서 도망치지 마라,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등을 외치면서 칼을 여성의 등에 눌러대고서 법정에서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지하려던 정리(廷吏)에게도 가까이 오면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38) 中山善房 50頁.
39) 백광균, 10.
40) 백광균, 5.
41) 백광균, 8-9.
42)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s://kokkai.ndl.go.jp/simple/txt/112615206X00719930525/63.

9시 55분쯤 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옆 법정 정리가 법대에 마련된 긴급연락용 버튼을 눌러 경무과에 연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무과장과 법정 경비원 8명이 615호 법정에 급히 갔는데, 마침 남성이 여성을 법정에서 데려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이때 정리는 법정 경비원에게 남성이 나이프를 들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안듯이 해서 복도로 걸어 나갔고, 그 주변을 법정 경비원이 둘러싸게 되어 한 무리가 되어 이동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경무과장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냐, 멈춰라, 놔라 등 이야기하는 중에 여성이 남성을 뿌리치고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를 남성이 나이프를 들고 쫓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A 법정 경비원이 이 남성의 뒤에서 달려들어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A 법정 경비원은 남성에게 나이프로 찔렸던 것입니다.

남성은 나중에 기소되었습니다만, 기소장(起訴狀)에 따르자면, 남성은 붙잡힐 듯하였기에 나이프로 A 법정 경비원의 오른 어깨를 힘껏 찔렀다고 합니다.

A 법정 경비원은 구급차로 B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오전 11시 27분 과다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향년 59세이셨습니다.

아울러, 여성은 정리의 유도로 법정 전용 승강기에 의해서 10층으로 도망쳐 재판소 의사, 간호사가 따라붙어 경찰병원으로 수용되었습니다만, 이쪽은 폭 1cm, 깊이 0.5cm 경상으로 처치를 받은 다음 그대로 귀가하셨습니다.

또한, 남성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만, 다음 날 체포되어 5월 19일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판소 직원이 직무 수행 중에 살해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정말로 안타깝고,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방지하지 못한 점, 관계자 일동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 철책은 법정 경찰권이 미치는 범위를 구별 지어주고, 퇴정명령을 받은 이 또한 법정 경비원이 철책 밖까지 안내해주며, 철책을 넘어서면 법정 경찰권이 아니라 청사 관리권의 미치는 영역이다.[43] 따라서 청사 관리자가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거부하면 경찰관 출동을 요청해서 퇴거불응죄(형법 제130조)로 체포될 수 있음을 알려주

43) 백광균, 10.

어 내보내나, 끝까지 불응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44]

(3) 복도 군데군데는 촬영 · 녹음 · 방송 · 배신(配信) 금지 문구와 그림을 붙여두고, 법정마다 출입구에도 주의사항을 자세히 적어두어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행위를 미리 경고, 예방, 차단한다.[45]

다. 제재, 처벌

(1) 법정질서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1969-1971년 매년 100건을 넘을 만큼 폭주한 때도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매년 10건 안쪽으로 줄어들었다.[46] 최근 6년간 다음과 같이 매년 1건 남짓에 그쳤고, 대부분 피고인 본인에 대한 감치 사안이다.[47]

	감치					과태료				
	피고인	변호인	방청인	나머지	합계	피고인	변호인	방청인	나머지	합계
2019	1	–	–	–	1	–	–	–	–	0
2020	1	–	–	–	1	–	–	–	–	0
2021	2	–	–	–	2	–	–	–	–	0
2022	–	–	–	–	0	–	–	–	–	0
2023	1	–	–	–	1	–	1	–	–	1
2024	1	–	–	–	1	–	–	–	–	0
합계	**6**	**0**	**0**	**0**	**6**	**0**	**1**	**0**	**0**	**1**

다소 이례적이나, 2023년 변호인이 법정에서 녹음을 시도하다가 퇴정을 명받고도 불응하는 바람에 과태료 3만 엔이 부과, 확정된 사례도 있다.

44) 백광균, 8.
45) 백광균, 10.
46) 吉井匡 「我が国における裁判所侮辱(特に直接侮辱)への対応法制とその適用の現状:「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の検討を中心に」 自由と安全の刑事法学: 生田勝義先生古稀祝賀論文集(法律文化社, 2015) 655-656頁. 위 문헌에서는 2003-2015년 법정질서법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서 총 42건을 입수해서 유형별로 분석해두기도 하였다(657-661頁).
47) 백광균, 16.

법정녹음, 변호사의 과태료 확정: 퇴정명령에 저항, 제재 재판 [2023. 7. 12. 産経新聞][48]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宇賀克也)은 오사카지방재판소 법정 안에서 녹음하려다가 재판관에게 퇴정명령을 받은 때 격하게 저항하다가 구속된 변호사 中道一政(오사카변호사회)의 특별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10일 자. 과태료 3만 엔을 내린 오사카지방재판소, 오사카고등재판소의 결정은 확정되었다. 재판소 직무를 막은 경우 등에 열리는 「제재 재판」 절차로 부과되었고, 앞으로 다시금 불복할 수단은 없다.

(2) 합의체 재판장이나 단독 재판관의 퇴정명령 등 법정 안팎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면, 구금형 1년 이하 또는 벌금 2만 엔 이하에 처할 수 있다(재판소법 제73조). 법정 경찰권에 기초한 제재 대상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심판방해죄」로 규정, 처벌하는 셈인데, 재판소 차원에서 공식 통계를 잡지 아니하고, 비공식적으로도 해당 범죄로 입건, 기소, 처벌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49]

(3) 합의체 재판장이나 단독 재판관이 방청인에게 행동 지침을 내릴 경우가 많은데, 방청인으로서도 거부할 경우의 제재, 처벌을 의식하면서 대체로 따르나, 그 위법을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도 가끔 있다.[50]

법정에서 블루 리본 배지 착용 금지는 부당하다는 소, 패소 확정: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 [2025. 4. 14. 産経新聞][51]

재판관이 법정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구출을 바라는 「블루 리본 배지」 착용을 금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오사카부(大阪府)의 남성 3명이 국가에 합계 390만 엔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재판장 岡正晶)은 상고를 물리치는 결정을 하였다. 10일 자.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 등이라고 본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재일 한국인 여성이 민족차별표현을 포함하는 문서를 직장에서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フジ 주택」(大阪府 岸和田市)에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

고등재판소판결에 따르면, 이 소송에서 다른 둥근 배지 착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고, 「쌍방 주의 · 주장의 대립이 배지 착용이라는 모습으로 현재화하였다」 등으로 지적. 메시지 성격을 띠는 배지를 착용하면, 「법정 질서를 유지하지 할 수 없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배지 착용을 일률적으로 금한 것은 적정한 법정 경찰권 행사였다고 보았다.

48) 産経新聞社,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712-KYWETPVJYZNIBHVEGWDFRZ73FA.
49) 백광균, 17.
50) 백광균, 17.
51) 産経新聞社, https://www.sankei.com/article/20250414-ECL2RIYTUBM7VPU3M3XIZBNCYA.

III. 청사 경비

1. 주체

가. 관리자

(1) 각 재판소 청사는 행정재산으로서 최고재판소 장관(最高裁判所長官)이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 사무 일부를 소속 부서장에게 분장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 5, 9조). 이에 따라 최고재판소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재판소 청사 등 관리에 관한 규정」(청사관리규정)을 두고, 전국에 공통으로 시행해오는데, ① 최고재판소는 사무총국 경리국장, ② 고등재판소는 사무국장, ③ 지방재판소(관내 간이재판소 포함)와 가정재판소는 각 소장이 관리자이다(청사관리규정 제2조 제1항).[52]

(2) 동일한 청사에 관리자가 2명 이상이면, 관리자끼리 협의해서 관리를 구분하여야 하는데(청사관리규정 제2조 제2항), 도쿄고등·지방재판소 합동청사는 1983년 11월 신축 당시 쌍방이 협의한 내용을 협의서로 남겨 현재까지 따르고 있고, 개별 부분은 각각 관리하되, 공용 부분은 도쿄고등재판소에서 통합 관리한다.[53]

(3)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장애가 생기면, ① 최고재판소는 사무총국 경리국 총무과장, ② 고등재판소는 사무차장, ③ 지방재판소(관내 간이재판소 포함)와 가정재판소는 소장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관리자는 직원에게 사무 일부를 위임하거나 대리시킬 수도 있다(청사관리규정 제2조 제3, 4항).

나. 민간 경비원, 수위

(1) 민간 경비원(民間カードマン)은 재판소 직원이 아닌 외주 업체에서 고용, 파견한 인력으로 청사 입구에서 출입 통제를 전담하는데, ① 도쿄고등·지방재판소 합동청사에는 총 20명 정도가 파견 근무하고, ② 입구는 공용 부분이므로 도쿄고등재판소 관리과에

52) 고등재판소 사무국장은 재판관, 지방재판소 사무국장은 일반직으로 보임하는데, 고등재판소 사무국장은 재판 업무 없이 관내 재판관 인사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고, 업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인사국장에 이은 차장 격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중요한 보직이다[政策研究大学院大学C.O.E. オーラル・政策研究プロジェクト『矢口洪一(元 最高裁判所 長官) オーラル・ヒストリー』(政策研究院, 2004) 209頁].

53) 백광균, 4.

서 청사 관리권을 바탕으로 관리하며, ③ 외주 업체는 매년 재판소별로 선정, 계약, 발주하기는 하나,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된다.[54]

민간 경비원은 재판소별로 청사 사정에 맞추어 수립해둔 상세한 업무 지침(Manual)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 지침은 재판소별로 미리 정해서 외주 업체에 통보하고, 도쿄고등 · 지방재판소 합동청사처럼 대규모 청사에서는 수백 쪽 단위에 이르며, 그 내용은 보안 관계상 엄격히 대외비로 취급한다.[55]

(2) 수위(守衛)는 재판소 직원으로서 입구를 통과한 방문자(来庁者)에 대한 안내 업무와 순찰을 담당하는데, 혹시 문제를 일으킬 인원이 없는지도 감시하고, 30분마다 여러 자리를 번갈아 근무한다.[56] 과거 청사 입구에서 출입 통제 또한 수위가 담당해왔으나, 인원이 줄어든 끝에 외주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57]

(3) 민간 경비원과 수위는 어디까지나 청사 관리자로부터 경비, 안내, 순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청사 관리권은 안전과 정숙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규제, 퇴거요청 권한을 포함하나,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확보하는 데에 최종 목적이 있는 이상, 법정 경찰권을 보완해주도록 행사하여야 한다.[58] 민간 경비원과 수위 또한 원만한 법정 경찰권 행사를 도와주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일반직, 경찰관

(1) 일반직은 청사 입구에서 수위와 함께 방문자 중 문제 인원이 없는지 감시하는데, 주로 관리과, 총무과, 송정사무실 직원이 담당하고, 특히 관리과에서는 경비 업무뿐 아니라, 시설 청소, 설비 점검 등으로 방문자가 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59]

(2) 경찰관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요청에 따라 출동하는데, ① 긴급 사태를 인지한 직원이 내선, 무전기 등으로 송정사무실 서무에 연락하고, ② 송정사무실에서 총무과에 연락을 전하며, ③ 총무과에서 경찰에 출동을 요청함이 원칙이다.[60]

---

54) 백광균, 2.
55) 백광균, 4.
56) 백광균, 3.
57) 백광균, 3.
58) 中山善房 52頁; 河上和雄 161頁.
59) 백광균, 3.

(3) 연락 체계를 따르지 못할 만큼 다급할 경우, ① 현장 직원이 직접 경찰(110번), 구급(119번)에 연락하고, ② 지령실에서 근처 경찰관을 파견해주거나, 구급차를 수배해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주며, ③ 관리과, 총무과, 송정사무실에서는 주변인을 대피시키거나, 환자 후송 경로를 확보하면서 주변에서 못 보도록 차단해준다.[61]

2. 범위

가. 시간

(1) 일반 방문자에 대한 출입 통제, 안내, 순찰 업무는 평일 일과 시간 즉, 08:30-17:00, 총 8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지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원, 수위, 일반직의 근무 시간 또한 동일하며, 그중 점심시간(30분)은 2개 조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식사를 마치는 방식으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한다.[62]

(2) 도쿄고등 · 지방재판소 합동청사에는 일반 방문자가 출입할 수 있는 정문과 후문 말고도, 직원 등 관계자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다닐 수 있는 전용 통로가 지상과 지하에 몇 군데 더 있는데, 해당 통로 또한 평일 일과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특정 통로로만 출입할 수 있다.[63] 당연히 해당 통로에서도 민간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특정 통로에서는 평일 일과 시간을 벗어난 시간에도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청사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3) 매일 24시간 관제, 관리, 경비가 필요한 시설, 예컨대 전기, 기계, 수도 등이 있기 마련인데, 민간 경비원에 대한 업무 지침을 통해서 담당 시간, 장소, 방식을 특정해둔다.[64] 이 또한 청사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니, 결국 청사 경비에는 시간 제약이 없는 셈이다.

나. 장소

(1) 청사 경비의 대상 장소는 청사 건물과 대지 일체를 포함하나, 건물 안에서도 법정

60) 백광균, 7.
61) 백광균, 7-8.
62) 백광균, 3.
63) 2015년 실무수습 당시 직접 경험, 확인하였다.
64) 백광균, 4.

안팎은 앞서 본 대로 재판관이 직간접으로 법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고, 청사 관리권은 보완해주는 역할에 그친다.

다만, 법정 경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특히 법정 주변의 안전, 정숙을 위해서 청사 관리권을 행사해줄 필요도 있는데, 예컨대 ① 방청인 여럿이 몰려든다든지, ② 퇴정명령이 예상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청사 경비로 보완해줄 수 있고, 재판체의 의향을 최대한 존중해서 청사를 경비하되, ③ 필요하다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청사 안팎에 대한 경비를 요청해둘 수 있다.[65]

(2) 건물에 대한 경비는 일반 방문자가 주로 출입하는 정문과 후문에 집중되나, 법정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현관, 복도, 승강기 등 통로 또한 대상이다. 통로 곳곳에는 방범(防犯) 카메라를 설치, 감시한다.[66]

(3) 대지에 대한 경비는 대문 앞에 민간 경비원이 소수 입회하고, 침입을 대비해서 울타리 안팎에 보안 센서를 설치해두는 방식으로 수행한다.[67]

다. 조치

(1) 청사 관리권은 법정 경찰권과 달리 대상자를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 예컨대 법정 경찰권에 근거한 재판관의 퇴정명령에는 대상자가 불응할 경우 법정경비원을 통해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제재나 처벌도 내릴 수 있다(재판소법 제71-73조, 법정질서법 제2조 제1항). 그러나 청사 관리권에 기초해서는 대상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실력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68] 앞서 본 대로 경찰관을 통해서만 퇴거불응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을 뿐이다.

(2) 청사 관리자는 ① 청사 관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이(제1-11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고, ② 문서, 도화, 전단 등을 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도 있는데, ③ 일정한 경우(제9, 10호), 청사 등 관리에 지장이 없으면 조건을 붙여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청사관리규정 제12조, 제9조).

---

65) 中山善房 52-53頁.
66) 백광균, 4.
67) 백광균, 4.
68) 河上和雄 161頁.

1. 총기, 흉기, 폭발물, 그 밖의 위험물을 가져오거나 가져오려는 사람
2. 직원에게 면회를 강요하는 사람
3. 출입을 금지한 구역에 출입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
4. 크게 노래 부르거나, 열을 지어 걷거나, 이들 행위를 하려는 사람
5. 선전차를 가져오거나 가져오려는 사람
6. 눌러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
7. 기부를 강요하거나 강매하는 사람
8. 재판소의 금지에 어긋나게 사진기, 녹음기,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가져오려는 사람
9. 깃발, 깃대, 플래카드, 확성기,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가져오려는 사람
10. 머리띠, 번호판, 완장,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을 착용하는 사람
11. 위 각호에서 정한 사람 말고도 청사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

(3) 청사 관리자는 ① 청사 관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 물건(제1-6호), 문서, 도화, 전단 등 철거, 반출을 명할 수 있고, ② 소유자나 소지자가 거부하거나, 불분명하거나, 긴급하면 직접 철거, 반출할 수도 있는데, ③ 일정한 경우(제4, 5호), 청사 등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소지, 착용을 용인할 수 있다(청사관리규정 제13조, 제12조 제2항).

1. 총기, 흉기, 폭발물, 그 밖의 위험물
2. 선전차
3. 재판소에서 소지를 금지한 사진기, 녹음기,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
4. 깃발, 깃대, 플래카드, 확성기,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
5. 머리띠, 번호판, 완장,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
6. 위 각호에서 정한 물건 말고도 청사 등 관리에 지장을 일으키거나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

3. 실무

가. 총괄

(1) 도쿄고등 · 지방재판소 합동청사에서는 앞서 본 대로 쌍방 협의를 바탕으로 도쿄고등재판소에서 공용 부분을 관리한다. 청사 경비 또한 출입구, 복도, 승강기 등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의 일부이니,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업무를 총괄한다.[69]

(2) 다른 고등 · 지방재판소 합동청사에서도 공용 부분은 협의를 기초로 고등재판소에서 통합 관리하는데, ①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에서는 관리과, ② 나머지에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한다.[70]

(3) 청사 안팎에는 방범 카메라(출입구, 승강기, 복도 등), 보안 센서(울타리 안팎)를 여럿 설치해두는데, ① 방범 카메라는 실시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고, ② 보안 센서는 이상(異常)을 감지하면 경고해주며, ③ 서로 작동 계통이 달라 따로따로 담당 직원이 각 방에서 지켜보는 방식으로 관제한다.[71]

나. 출입구

(1) 도쿄고등 · 지방재판소 합동청사에는 일반 방문자가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정문과 후문, 2개로 나뉘는데, 정문에서만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후문에서는 필기구, 메모장 등 간단한 소지품을 지닌 이만 드나들 수 있다.[72]

재판소 직원과 더불어 변호사, 기자 등 일정 직군은 신분증을 확인하면 소지품을 검사하지 아니하나, 어차피 청사 안에서는 허가 없이 촬영을 금지하므로, 혹여 촬영 장비를 들고 들어오더라도 못 쓰도록 가방 안에 넣어서 기자실에 넣어둔다.[73]

(2) 정문에서는 ① 전신 검색대(네모 형태), ② X-ray 소지품 검사기, ③ 일자형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금속성 위험물을 걸러내고,[74] 때로는 손으로도 직접 위험물을 감지하는데(세라믹 칼 등), 위험물 목록은 재판소 홈페이지, 대문, 복도, 법정 등 곳곳에 게시해둔다.[75]

---

69) 백광균, 2.
70) 백광균, 4. 후쿠오카에서는 2024년 관리과가 신설되었다.
71) 백광균, 4.
72) 백광균, 10.
73) 백광균, 6.
74) 위 각 기기는 외형과 기능이 모두 우리 법원의 그것과 동일하다.

검색 결과, ① 나이프(Knife), 커터(Cutter), 식칼, 면도날 등 날붙이가 나오면, 곧바로 맡아두었다가, 퇴청할 때에 청사 밖에서 돌려주고(청사 안에서 돌려주면 소지품 검사 없이 그대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무허가 총포, 도검류가 발각되면, 즉시 경찰에 연락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76]

(3) 방문자는 특별 경계 태세가 아닌 한, 출입금지구역을 제외한 청사 안 어디든 드나들 수 있는데, 도쿄고등 · 지방재판소 합동청사의 하루 출입 인원은 직원 1,600명 남짓, 일반인 3,300명 남짓, 총 5,000명 전후이다.[77]

다. 외곽

(1) 울타리에는 앞서 본 대로 곳곳에 보안 센서를 설치, 감시하는 방식으로 24시간 감시함으로써 외곽을 경비한다.

(2) 부당 판결이라고 여럿이 모여 항의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미리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서 외곽 경비를 강화하는데, 이것 또한 청사 관리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관리자 명의로 공문을 보낸다.[78]

(3) 대문 근처에는 재판소 구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관리자 명의로 다음과 같이 적은 팻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주의를 준다.[79]

75) 백광균, 5.
76) 백광균, 10.
77) 백광균, 6-7.
78) 백광균, 19.
79) 재판소 구내에서는 허가 없이 촬영을 금지하므로, 관계자 입회하에 대문 밖에서 사진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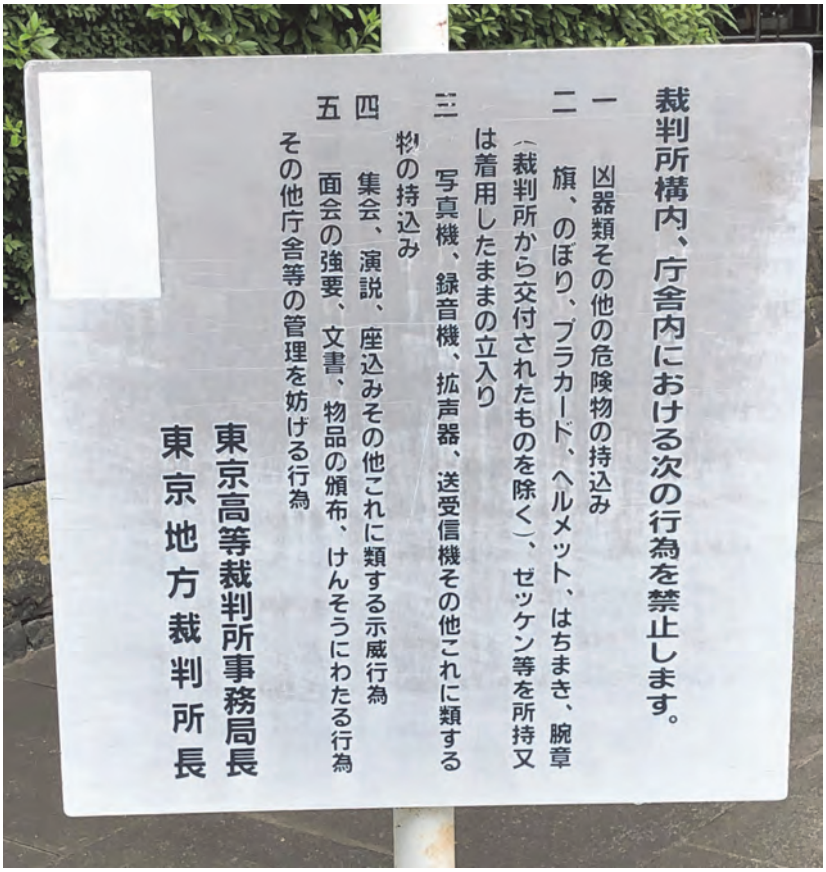

재판소 구내, 청사 안에서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1. 흉기류, 그 밖의 위험물 반입
2. 깃발, 깃대, 플래카드, 헬멧, 머리띠, 완장(재판소에서 교부된 것 제외), 번호판 등을 소지하거나 착용한 채 출입
3. 사진기, 녹음기, 확성기, 송수신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건 반입
4. 집회, 연설, 눌러앉기, 그 밖에 비슷한 시위 행위
5. 면회 강요, 문서 · 물품의 반포, 소란에 이르는 행위, 그 밖에 청사 등 관리를 막는 행위

도쿄고등재판소 사무국장
도 쿄 지 방 재 판 소 장

Ⅳ. 예산 · 인사 · 조직

1. 예산

가. 주체

(1) 재판소 전체 예산은 ① 최고재판소 장관이 회계연도별로 세입, 세출, 계속비 등 견적을 내각에 제출하면, ② 재무대신(財務大臣)이 다른 기관 견적까지 종합, 검토, 조정한 예산안을 작성해서 내각회의(閣議) 결정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고, ③ 국회에서는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参議院) 심의, 의결을 차례로 거쳐 성립한다(재정법 제16-30조, 일본국 헌법[80] 제60조).[81]

(2) 최고재판소 사법행정사무는 재판관(장관 1명 + 판사 14명) 회의 의결에 따라 장관이 집행하는데(재판소법 제12조), 예산 업무 또한 사법행정사무 중 일부로서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경리국(経理局)에서는 위 의결을 바탕으로 전국 재판소 예산과 청사관리 업무를 총괄한다.[82]

(3)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경리국에는 재판관도 과장 등으로 소속, 근무한다. 2017년 출장 당시 확인한 바로는 사무총국 총 746명 중 경리국이 250명(재판관 3명 포함), 1/3을 차지하리만치 인원이 많았을 뿐 아니라, 일반직 비율도 압도적이었는데, 이것은 예산과 청사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의 속성에서 비롯한다.[83]

나. 업무

(1)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경리국에서는 앞서 본 대로 재판관 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전국 재판소의 항목별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경비 예산 업무 또한 당연히 포함한다.

(2) 예산 항목 중 경비에 관한 것은 ① 물품 예산: 전신 검색대, X-ray 소지품 검사기,

80) 국호를 「일본국」(日本国)으로 정하나(제1조), 통상 「일본」으로만 부른다.
81) 상세는 차기현, "일본의 사법부 예산 결정 및 운용 실무", 외국사법제도연구(34), 사법정책연구원(2025), 366-375 참조.
82) 백광균, 15.
83) 문성호 · 백광균, 일본 사법제도 연구반 출장 결과 보고서(2017 · 7)[내부보고서], 5.

금속탐지기, 방탄막 등 경계 · 경비 도구 구매 · 유지비, ② 기계 경비(機械警備) 예산: 보안 센서 등 기계 시설 설치 · 유지비, ③ 인적 경비(人的警備) 예산: 외주 비용(법정 경비원, 수위 등 내부 직원 인건비는 별도)으로 특정할 수 있다.[84]

(3) 경비에 관한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국 법정 경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따로 없으나, 전국 고등재판소 총무과장 협의회에서 각 재판소의 청사관리나 예산 전반에 관한 이야기는 나눌 수 있다.[85]

다. 동향

(1) 최근 5년간 전국 재판소의 예산 총액 중 경비 부문은 다음과 같이 액수와 비율 모두 완만한 증가세이다.[86]

	총액 (억 엔)	경비(천 엔)			
		물품	기계	인적	합계
2021	3,254	16,647	107,734	1,416,584	1,540,965
	100%	0.01%	0.03%	0.44%	0.47%
2022	3,228	13,902	108,239	1,423,871	1,546,012
	100%	0.00%	0.03%	0.44%	0.48%
2023	3,222	171,768	106,709	1,461,764	1,740,241
	100%	0.05%	0.03%	0.45%	0.54%
2024	3,310	164,440	114,702	1,460,729	1,739,871
	100%	0.05%	0.03%	0.44%	0.53%
2025	3,352	249,322	111,071	1,423,690	1,784,083
	100%	0.07%	0.03%	0.42%	0.53%

(2) 물품 예산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5배로 늘어난 점은 특기할 만한데, 이

84) 백광균, 14. 법정 경비원, 수위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직 인건비와 혼융되어 따로 특정할 수 없다.
85) 백광균, 15-16.
86) 백광균, 13.

것은 2017년 금속탐지기가 없는 재판소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날붙이를 들고 들어와 휘두르는 사고가 되풀이되어 경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87]

재판관에게 식칼을 던지려고 생각했었다 - 법정에 흉기 반입, 오사카지방재판소에도 있었다 … 나중에 발각, 방청한 기자는「섬찟」[2017. 7. 28. 産経新聞][88]

센다이지방재판소(仙台地方裁判所)에서 6월 보석 중 피고인이 법정에 날붙이를 가져와 방청석의 경찰관 2명에게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나, 사실 오사카지방재판소(大阪地方裁判所)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

2월에 열린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원재판. 당시 보석 중이던 여성 피고인이 지참한 배낭 안에 식칼을 숨기고 있었다. 결국, 식칼을 꺼내 드는 일은 없었고, 상처 입은 사람도 없었으나, 당일 방청한 몸으로서는 설마 흉기를 지녔다고는 상상도 못 하였고, 판결선고 후 구치소에 수용될 때 소지가 발각되었다고 들어 섬찟했다.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 위반죄로 기소된 여성은 6월 공판에서「(재판관에게) 식칼을 던지려고 생각했었다, 재판원에게 맞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장래가 불안해서 자포자기했다고 한다.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출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모든 방문객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는 곳은 삿포로(札幌), 도쿄(東京), 후쿠오카(福岡)의 지방・고등재판소와 도쿄가정재판소(東京家庭裁判所) 총 4개 청사뿐. 오사카지방・고등재판소는 사건에 따라 법정 앞 등에서 소지품 확인하기도 하나,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위치에 머무른다. 이번 사건을 당하고서 오사카에서도 보석 중 피고인 소지품 검사가 엄격해졌다고는 하나, 청사 출입구에서 상시 탐지기를 둘 예정은 앞으로도 없다고 한다.

매일 청사에 출입하는 기자에게 매번 소지품 검사는 분명 번거로우나, 지금 경비 체제로는 불안해지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포자기밖에 찾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말 또한 무겁다. 재판은 누구를 위한 건인지, 그저 위험물 소지보다도 큰 문제를 품고 있는 듯도 여겨진다.

(3) 재판소에서도 위 각 사건과 관련 예산 증액을 계기 삼아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경비 환경을 정비해나가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89]

87) 백광균, 14.
88) 産経新聞社, https://www.sankei.com/article/20170728-7U2J2C6KXBPGTFM5YSTSLGDIEA.
89) 백광균, 15.

2. 인사

가. 주체

(1) 최고재판소 사법행정사무는 앞서 본 대로 재판관 회의 의결에 따라 장관이 집행하는데, 인사 업무 또한 사법행정사무 중 일부로서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인사국(人事局)에서는 위 의결을 바탕으로 전국 재판소의 재판관, 일반직 등 모든 직원의 인사(감사 포함) 업무를 총괄한다.[90]

(2) 인사국은 2025년 6월 기준 ① 재판관 총 5명[국장 1명, 과장 2명, 참사관 1명, 국원(局付) 1명], ② 일반직 총 110명[과장 1명, 참사관 2명, 직원 관리관(노조 대응) 1명 포함]이 소속, 근무한다.[91]

(3) 재판소에서 채용하는 경비 직원은 법정 경비원과 수위 정도인데, ① 채용은 재판소별로 수행하고, ②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각 재판관 회의(재판소법 제12, 20, 29조)에서 장관(최고 · 고등), 소장(지방 · 가정)에게 채용 권한을 위임하며, ③ 장관, 소장이 개별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92]

나. 업무

(1) 법정 경비원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일반직처럼 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발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인원 자체도 적은 편이라 때때로 정보통신망 공모(재판소 홈페이지, 직업 소개 사이트 등), 시험, 면접을 거쳐 하나하나 평가, 채용한다.[93]

(2) 채용시험은 앞서 본 대로 최고재판소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별로 수요에 맞추어 시행하고, 채용 지령(指令) 또한 각 장관, 소장이 내리며,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인사국에서는 공통시험, 면접 절차의 얼개 정도에만 관여한다.[94]

(3) 공통 연수 과정은 따로 없어 ① 실제 업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OJT; On the Job Training)으로 직무를 익혀가고, ② 재판소별로는 실정에 맞추어 업무 지침

90) 백광균, 15.
91) 백광균, 15.
92) 백광균, 15.
93) 백광균, 18.
94) 백광균, 19.

등을 설정해두기도 하며, ③ 때때로 관내 경찰관을 통해서 연수를 시행하는데, 승급은 일반직과 동일하게 직전 2년 인사 평가를 바탕으로 시행한다.[95]

다. 동향

(1) 최근 5년간 전국 고등재판소 소재지 지방재판소 본청 기준 법정 경비원 정원(2024. 4. 1. 기준)과 현원(2024. 7. 1. 기준)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96]

	東京	大阪	名古屋	福岡	広島	仙台	札幌	高松
정원	31	12	6	6	4	3	3	3
현원	29	12	5	5	4	3	3	3

(2) 법정 경비원을 포함한 재판소 직원 인원 문제는 업무량과 업무 체제, 실정을 바탕으로 검토하기 마련인데, 최근 특별한 움직임이 눈에 뜨이지 아니한 이상, 종전 그대로 시행해오는 추세이다.[97]

(3) 간혹 법정 경비원 아닌 이(일반직, 경찰관)가 재판소나 재판관의 명에 따라 임시로 법정 경찰권 업무를 담당할 경우도 있으나, 상시 담당할 경우는 없다.[98]

3. 조직

가. 주체

(1) 최고재판소 사법행정사무는 앞서 본 대로 재판관 회의 의결에 따라 장관이 집행하는데, 조직 업무 또한 사법행정사무 중 일부로서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총무국(総務局)에서는 위 의결을 바탕으로 전국 재판소의 조직 업무를 총괄한다.[99]

95) 백광균, 19.
96) 백광균, 18.
97) 백광균, 18.
98) 백광균, 18.
99) 백광균, 15.

(2) 총무국에도 재판관이 국장, 과장 등 주요 보직으로 소속, 근무하는데, 2017년 출장 당시 확인한 바로는 사무총국 총 746명 중 총무국이 65명(재판관 10명 + 일반직 55명)으로 경리국, 인사국, 비서과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보유한다.[100]

(3) 총무국에서는 전국 재판소의 조직 업무만 총괄하고, 앞서 본 대로 재판소별로 ① 법정 경찰권은 재판체(합의체, 단독 재판관), ② 청사 경비는 관리자(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경리국장, 고등재판소 사무국장, 지방 · 가정재판소장)가 총괄한다. 전체적으로 경비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없는 셈이나, 어떠한 방식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할지를 검토하면서 사법행정에 자문(諮問)할 경우가 있고, 그 한도에서는 총무국이 경비 업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셈이다.[101]

나. 업무

(1)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서는 전체 재판소를 감독, 후견하는 입장에서 재판소별 관리자에게 경비 업무를 조언해줄 경우가 있는데, 주로 총무국에서 담당하나, 개별 사건에 관한 조언은 민사국, 형사국, 행정국, 가정국에서도 관여한다.[102]

(2) 재판소별 청사 경비 업무는 총무과, 관리과, 회계과에서 분담하고, 자연스레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총무국(총무과), 경리국(관리과, 회계과)과 연계된다.[103] 그 과정에서 업무에 정보와 조언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 총무국과 경리국이 조직 차원에서도 경비 업무에 관여하는 셈이다.

(3) 전국 고등재판소 총무과장 협의회에서도 앞서 본 대로 각 재판소의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드물겠지만, 조직 차원 논의까지 있을 수 있다.

다. 동향

(1) 법정 경찰권과 청사 경비 조직은 앞서 본 대로 주체, 범위, 실무에서 오래도록 사실상 분리되었고, 특히 청사 경비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출입 통제를 외주 업체에 맡

100) 문성호 · 백광균, 일본 사법제도 연구반 출장 결과 보고서(2017 · 7)[내부보고서], 5.
101) 백광균, 15.
102) 백광균, 16.
103) 백광균, 16.

긴 관행은 안착한 상태이며, 당분간 변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2) 법정 경비원 등 관련 인력의 규모 또한 앞서 본 대로 최근 별다른 논의가 없는 관계로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2025년 10월 기준 ① 비서과, 홍보과, 총무국, 인사국, 경리국, ② 민사국, 형사국, 행정국, 가정국, 디지털 심의관(2024년 4월 신설) 총 10개 부서로 조직, 구성된다.[104] ①은 순수 행정을 담당하므로 관방계(官房系), ②는 재판 행정을 담당하므로 사건계(事件系)로도 일컫는다.

V. 결론

1. 법정 경찰권

(1) 법정 경찰권은 재판체가 행사하되, 법정 경비원이 주요 보조기관으로서 재판체의 명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일반직과 경찰관은 위험 사건에서 필요할 때만 수요에 맞추어 보조, 대응한다. 법정 경비원 관리 업무는 각 재판소의 총무과에서 겸무하나, 전국 최대 규모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경무과를 따로 두어 전담시킨다.

(2) 강제조치는 개정 전후, 법정 안팎으로 국한됨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서 확장할 수 있고, 임의조치는 예방 작용이라는 속성상 별다른 제약이 없다. 위 각 조치를 거부하면, 감치나 과태료로 제재할 수도 있으나, 실제 사례는 매년 1건 남짓에 그칠 만큼 드물다.

(3) 위험 사건에서는 법정 밖 복도에서 소지품을 재검사해서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폭력을 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는 법정 경비원과 가까운 위치에 앉도록 조치한다. 집단 폭력마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방탄막까지 설치해서 불상사를 원천봉쇄한다. 사안에 걸맞게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빠짐없이 안전을 담보하는 셈이다.

104) 裁判所, https://www.courts.go.jp/about/sosiki/saikosaibansyo/index.html.

2. 청사 경비

(1) 청사 경비는 청사 관리자가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수행하되, 민간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수위가 청사 안내와 순찰을 분담하며, 일반직과 경찰관은 수요에 맞추어 보조, 대응한다. 고등 · 지방재판소 합동청사는 고등재판소에서 공용 부분을 통합 관리한다.

(2) 일반 방문자가 드나들 수 있는 평일 일과 시간에 경비 업무가 집중되기는 하나, 재판소 직원은 특정 통로로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데다가, 전기, 기계, 수도 등 매일 24시간 관리하는 분야도 있으니, 결국 청사 경비는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해서 상시 이루어지는 셈이다.

(3) 출입 통제는 매년 외주 업체와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민간 경비원에 맡기되, 재판소별로 방대한 경비 업무 지침을 설정, 보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인다. 대문에는 팻말로 위험 행위 금지를 경고하고, 출입구에서는 소지품 검사를 통해서 위험물을 걸러내며, 방범 카메라, 보안 센서로도 위험 요인을 감지한다.

3. 예산 · 인사 · 조직

(1) 예산 업무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경리국에서 재판관 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총괄한다. 경비 예산 항목은 물품, 기계 경비, 인적 경비로 나눌 수 있는데, 완만한 증가세이다. 몇 년 전 금속탐지기가 없어 날붙이가 법정에 들어온 사건이 되풀이되자, 이에 대응하려고 물품 예산은 최근 5년간 15배나 늘었다.

(2) 인사 업무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인사국에서 재판관 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총괄한다. 재판소 소속 경비 직원은 법정 경비원과 수위인데, 채용은 재판소별로 실정에 맞도록 개별 수행하고, 최고재판소 차원에서는 절차의 얼개에만 관여한다. 최근 인력 과부족 문제는 지적된 바 없어 인원은 최근 5년간 보합세이다.

(3) 조직 업무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총무국에서 재판관 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총괄한다. 총무국에서는 전체 재판소를 감독, 후견하는 입장에서 경비 업무에 조언해줄 경우가 있고, 민사국, 형사국, 행정국, 가정국에서도 개별 사건을 조언해줄 경우가 있다. 법정 경찰권과 청사 경비의 이원 조직 구조는 확고하게 정착하였다.

Ⅵ. 관계 법령

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105]

법 제288조

①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허가받아야만 퇴정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을 재정(在廷)시키거나,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규칙 제215조(공판정에서 사진 촬영 등의 제한)

공판정에서 사진 촬영, 녹음, 방송은 재판소에서 허가받아야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판소법[106]

제71조(법정의 질서 유지)

① 법정에서 질서 유지는 재판장이나 개정한 재판관 1명이 수행한다.

② 재판장이나 개정한 재판관 1명은 법정에서 재판소 직무 집행을 막거나, 부당한 몸가짐(行狀)을 보인 이에게 퇴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처치를 집행할 수 있다.

제71조의2(경찰관의 파출요구)

① 재판장이나 개정한 재판관 1명은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시총감(警視総監)[107]이나 도부현(道府県)[108] 경찰본부장(警察本部長)에게 경찰관 파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정 전에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요구에 따라 파출된 경찰관은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할 때 재판장이나 개정한 재판

105) 刑事訴訟法, 刑事訴訟規則. 우리와 달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조문별 제목이 없다.
106) 裁判所法.
107) 수도 도쿄도(東京都)를 관장하는 경시청(警視庁)의 우두머리이다.
108)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방자치단체 총 46개를 통칭한다.

관 1명에게 지휘받는다.

제72조(법정 밖 처분)

① 재판소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밖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재판장이나 개정한 재판관 1명은 재판소 직무 집행을 막는 이에게 퇴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처치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71조의2는 제1항에 준용한다.

③ 재판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밖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제1, 2항에서 정한 재판장 권한을 지닌다.

제73조(심판방해죄)

제71, 72조 명령을 위반하여 재판소나 재판관의 직무 집행을 막은 이는 구금형 1년 이하 또는 벌금 2만 엔 이하에 처한다.

3. 법정 등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109]

제1조(이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민주 사회에서 법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 등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의 위신을 확보, 유지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제재)

① 재판소나 재판관(이하 「재판소」로 통칭한다)이 법정이나 법정 밖에서 사건을 심판하거나, 그 밖에 절차를 밟을 때 바로 앞이나 그 밖에 직접 알 수 있을 장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명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취한 조치를 좇지 아니하거나, 폭언, 폭행, 소란, 그 밖에 불온한 언동으로 재판소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해친 이는 감치(監置) 20일 이하나 과태료(過料) 3만 엔 이하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② 감치는 감치장에 유치한다.

제3조(사건의 심판)

① 제2조 제1항 제재는 재판소가 부과한다.

109)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② 제2조 제1항에 들어맞는 행위가 있었으면, 재판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재판소 직원이나 경찰관에게 행위자를 구속하도록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재판소는 바로 구속을 풀어야 한다.

제4조(재판)

①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내린다.

② 제1항 재판은 제2조 제1항에 들어맞는 행위가 끝난 때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못 한다.

③ 재판소는 재판을 내리는 데에 필요하면, 증인신문, 그 밖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거조사의 예에 따른다.

④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을 내리면, 절차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항고 및 이의제기)

①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나 그 재판관이 내린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에는 본인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그 재판이 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 삼아 고등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고할 때는 항고장을 원심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심 재판소는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원심 재판을 경정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판을 취소하거나 본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항고는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항고심 재판소 및 원심 재판소는 항고에 대한 재판을 내릴 때까지 재판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고등재판소나 그 재판관이 내린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에는 본인이 그 고등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에는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특별항고)

① 항고나 이의제기에 대한 고등재판소 재판에는 본인이 다음 사유가 있음을 이유 삼을 경우, 최고재판소에 특별히 항고할 수 있다.

1.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것
2. 최고재판소 판례에 어긋나게 판단한 것
3. 최고재판소 판례가 없을 경우, 제5조에서 정한 항고나 이의제기를 받은 고등재판소 판례와 어긋나게 판단한 것.

② 제1항 항고 제기 기간은 5일이다.

③ 제5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은 제1항 항고에 준용한다.

제7조(집행)

①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은 재판관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감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판관은 수용장(收容狀)을 내어줄 수 있다. 수용장은 구인장(勾引狀)과 같은 효력이 있고, 재판관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③ 수용장 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중 구인장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명령으로 과태료에 관한 것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債務名義)[110]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 과태료 재판 집행은 민사집행법, 그 밖에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법령을 좇는다. 다만, 집행 전에 재판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⑥ 제1, 4, 5항은 제4조 제4항 재판 집행에 준용한다.

⑦ 감치 재판 집행은 해당 재판이 내려진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개시하지 못한다.

⑧ 감치 재판을 받은 이가 해당 재판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소는 본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해당 재판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보상)

①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에 제5, 6조에 따라 취소 재판을 받은 이가 이미 해당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을 집행당한 경우, 국가에 해당 제재를 부과한 재판 집행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항 수용장에 따른 유치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감치 재판 집행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 보상은 무죄 재판을 받은 이의 보상에 관한 형사보상법을 준용한다. 보상 결정 공시도 마찬가지이다.

제9조(규칙)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에서 정한다.

110) 우리의 집행권원에 상응한다.

4. 법정 등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111]

제1조(이 규칙의 취지)

법정 등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절차는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구속 절차 · 법 제3조 제2항)

① 법 제3조 제2항 행위자 구속은 급속할 필요가 있으면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② 재판소 직원이나 경찰관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행위자 구속을 명받은 경우, 그 사람을 재판소나 재판장 또는 재판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③ 재판소나 재판관은 구속을 풀 경우, 피구속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④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이 내려졌으면, 그 재판을 받은 이를 감치장에 유치할 때까지 24시간을 넘어 구속할 수 있다.

제3조(신속한 재판)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은 가능한 한 그날 중에 내려야 한다.

제4조(본인을 특정하기 위한 조치)

재판소나 재판관은 본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구속자 사진을 촬영하거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제5조(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소 · 법 제3조 제1항)

① 법 제2조 제1항에 들어맞는 행위를 직접 알아챈 재판소나 재판관은 스스로 재판할 경우가 아니면, 해당 재판소[112]를 구성하는 재판관 소속 재판소나 해당 재판관[113] 소속 재판소에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청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내어야 한다.

1. 본인 성명, 주소, 그 밖에 본인을 특정할 만한 사항
2. 법 제2조 제1항에 들어맞는 사실
3. 청구된 재판소나 재판관의 의견

111)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112) 합의체를 의미한다.
113) 단독 재판관을 의미한다.

4.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 구속되었으면, 구속 연월일 및 장소

③ 제1항에 따라 청구할 경우, 제2항 제2호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있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청구가 있었으면, 청구된 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나 청구된 재판관 아닌 재판관으로 구성하는 재판소가 재판을 내린다.[114]

제6조(변호인의 보좌)

① 재판소나 재판관은 재판이 미루어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본인에게 사건에 관해서 변호사에게 보좌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4항에 따라 재판을 내릴 경우, 본인은 사건에 관해서 변호사에게 보좌받을 수 있다.

③ 제1, 2항에서 보좌하는 인원은 1명이다.

제7조(본인 재석)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 절차는 본인이 재석(在席)하여야만 밟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본인이 허가 없이 퇴석하거나, 질서 유지에 관한 퇴정을 명받았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실조사)

재판소나 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본인 신문, 그 밖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조서)

①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 절차에서는 재판소 서기관이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1항 조서에는 다음 사항, 그 밖에 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소 서기관이 연월일을 기재해서 서명날인하며, 재판장이나 재판관이 인증 날인(認印)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소 서기관은 서명날인을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1. 본인을 구속하거나, 그 구속을 푼 것 및 그 연월일시
2. 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 결과
3. 재판을 선고한 것 및 그 연월일시

③ 재판장이나 재판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조 제1항에 들어맞는 행위가 이루어진

114) 재판체 아닌 재판관으로 구성한 합의체에서 재판한다는 의미이다.

때에 이루어진 심판, 그 밖의 절차에 관해서 만들어진 조서에 제2항 사항을 기재하여 제1항 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재를 부과하는 재판 · 법 제4조 제1항)

① 재판소나 재판관이 법 제2조 제1항에 들어맞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 제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재판에는 사실 요지 및 적용한 법조를 드러내야 한다.

제11조(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의 고지 · 법 제4조 제1항)

①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② 본인이 결석한 채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을 선고하였으면, 신속히 재판서나 재판 내용을 기재한 조서 등본을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항고 제기 기간은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재판서 · 법 제4조 제1항)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은 재판한 재판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 내용을 제9조 제1항 조서나 제3항 갈음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항고 대리인 · 법 제5조 제1항)

① 항고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 선임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피구금자의 항고 · 법 제5조 제1항)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을 받은 이가 감치장, 형사 시설, 그 밖의 시설에 구금된 경우, 항고 제기 기간 안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이나 대리인에게 제출하면, 항고 제기 기간 안에 항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항고권 회복청구 · 법 제5조 제1항)

①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을 받은 이는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못할 사유로 항고 제기 기간 안에 항고하지 못하였으면, 원심 재판소에 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항고권 회복청구는 사유가 멈춘 날부터 5일 안에 항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4조는 감치장, 형사 시설, 그 밖의 시설에 구금된 이가 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항고장의 방식 · 법 제5조 제2항)

항고장에는 항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항고 사건의 송부 · 법 제5조 제2항)

① 항고가 있은 경우, 원심 재판소는 법 제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원심 재판을 경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취지로 재판을 내려야 한다.

② 제1항이 아니면, 원심 재판소는 신속히 의견을 붙여 사건을 항고심 재판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항고심 재판 · 법 제5조 제1항)

① 항고심 재판소는 항고 절차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항고가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가 이유 있으면, 결정으로 원심 재판을 취소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금 재판을 내려야 한다.

제19조(이의 및 특별항고에 관한 준용 규정 · 법 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

이의 및 특별항고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재를 부과하는 재판 등의 집행명령 · 법 제7조 제1, 6항)

① 제재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명령은 재판서나 재판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집행을 명하는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 재판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등본이나 초본은 급속할 필요가 있으면 제재를 받은 이의 성명, 주거, 그 밖에 그 사람을 특정할 만한 사항, 재판 주문, 선고 연월일 및 재판소나 재판관의 성명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은 법 제4조 제4항 재판의 집행명령에 준용한다.

제21조(수용장의 기재사항 · 법 제7조 제2항)

수용장에는 제재를 받은 이의 성명, 주거, 나이, 감치 기간,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수용자 집행에 관한 준용 규정 · 법 제7조 제2항)

수용장 집행에는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장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구류의 집행정지)

구류(勾留)된 이에 대한 감치 재판을 집행할 때는 그동안 구류 집행이 정지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81조[115]에 따라 내려진 재판은 효력을 잃는다.

제24조(감치 기간 계산)

① 감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 선고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판 선고 후에도 법이나 이 규칙에 따라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감치 기간에서 첫날은 시간을 불문하고 하루로 계산한다.

③ 석방은 감치 기간 만료 다음 날 오전 중에 시행한다.

제25조(재판의 집행정지 · 법 제5조 제3, 4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8항)

① 법 제5조 제3항 단서(법 제5조 제4항 및 법 제6조 제3항에서 준용할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7조 제8항 재판의 집행정지는 결정으로 내린다.

② 감치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면, 주거 제한,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6조(보상에 관한 준용 규정 · 법 제8조 제1항)

법 제8조 제1항 보상에는 형사보상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결정의 고지)

결정은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할 경우가 아니면, 송달,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8조(송달)

송달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115) 재판소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리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찰관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구류된 피고인과 제39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와 접견을 금지하거나, 그와 주고받을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열하고, 그 수수를 금지하며, 이를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식량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이를 압수하지는 못한다.

5. 법정 질서 유지 등에 투입하는 재판소 직원에 관한 규칙[116]

제1조

① 재판소[간이재판소에서는 사법행정사무를 장악, 관리(掌理)하는 재판관]나 그 위임을 받은 재판관은 그 재판소 재판관 아닌 직원에게 재판장이나 재판관 1명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하여 명하는 사무를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재판소(간이재판소에서는 사법행정사무를 장악, 관리하는 재판관)나 그 위임을 받은 재판관은 그 재판소 재판관 아닌 직원에게 재판장이나 재판관 1명이 법정 밖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재판장이나 재판관이 직무 집행에 대한 방해를 막기 위하여 명하는 사무를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조

① 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및 가정재판소의 장 및 간이재판소의 사법행정사무를 장악, 관리하는 재판관은 그 재판소 직원이나 청사, 그 밖의 시설 안전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판소의 재판관 아닌 직원에게 경비를 명할 수 있다.

②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및 가정재판소의 장은 그 지부(支部)[117]에서 제1항 경비에 관한 사무를 해당 지부장에게 취급시킬 수 있다.

제3조

① 고등재판소 및 그 관할 구역 안의 재판소(간이재판소에서는 사법행정사무를 장악, 관리하는 재판관)는 그 재판소의 재판관 아닌 직원에게 서로 다른 재판소에서 제1항 사무를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등재판소 및 그 관할 구역 안의 재판소(간이재판소에서는 사법행정사무를 장악, 관리하는 재판관)는 그 재판소의 재판관 아닌 직원에게 서로 다른 재판소에서 제2조 따라 경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 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직원은 제1, 2조를 적용할 때 그 재판소 직원으로 간주한다.

116) 法廷の秩序維持等にあたる裁判所職員に関する規則.
117) 우리 「지원」에 해당한다.

6. 재판소 방청 규칙[118]

제1조

재판장이나 재판관 1명(이하 「재판장」으로 통칭한다)은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청에 관한 다음 처치를 할 수 있다.

1. 방청석에 상응하는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만 방청하도록 허용할 것
2. 재판소 직원에게 방청인의 피복이나 소지품을 검사시키고, 위험물, 그 밖에 법정에서 소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는 물건 반입을 금지할 것
3. 제1, 2호 처치에 불응하는 이, 어린이, 상당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이 및 법정에서 재판소나 재판관의 직무 집행을 막거나, 부당한 몸가짐을 하리라고 의심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의 입정을 금할 것

제2조

방청인은 입정하거나 퇴정할 때 재판장 명령 및 재판장에게 명받은 재판소 직원의 지시를 좇아야 한다.

제3조

방청인은 법정에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정숙을 원칙 삼아 소란을 부리지 말 것
2. 꼴사나운 몸가짐을 삼갈 것
3. 멋대로 자리를 옮기지 말 것
4. 재판장이 명한 것 및 재판장에게 명받은 재판소 직원의 지시를 좇을 것

7. 재판소 청사 등 관리에 관한 규정[119]

제1조(취지 및 운용)

이 규정은 재판소 용도에 이바지하는 건물 및 토지, 이들에 딸린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청사 등」이라고 한다)에서 질서 유지 및 재해 방지 등(이하 「관리」라고 한다)에 필요한

118) 裁判所傍聴規則.
119) 裁判所の庁舎等の管理に関する規程. 최고재판소 내규로서 이번 출장에서 입수한 것이다. 내규(規程)는 일반 규정(規定)과도 발음이 같으니(きてい), 일부러 달리(きほど) 읽어 구별해주기도 한다.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삼고, 질서 유지는 특히 재판의 공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재판소 위신과 품위를 확보, 유지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자)

① 청사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고 한다)은 최고재판소에서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경리국장, 고등재판소에서는 고등재판소 사무국장, 지방재판소(관할 구역 안의 간이재판소를 포함한다)에서는 지방재판소장, 가정재판소에서는 가정재판소장이다.

② 같은 청사 등에 관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관리 구분은 해당 관리자가 협의해서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에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장애(差し支え)가 있으면, 최고재판소에서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경리국 총무과장이, 고등재판소에서는 고등재판소 사무차장이, 지방재판소(관할 구역 안의 간이재판소를 포함한다)나 가정재판소에서는 사법행정사무에서 지방재판소장이나 가정재판소장을 대리하는 직원이 관리자 직무를 대리한다.

④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판소(지방재판소에서는 관할 구역 안의 간이재판소를 포함한다) 직원에게 사무 일부를 위임하거나 대리시킬 수 있다.

제3조(직원의 의무)

직원은 관리자가 청사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내렸으면, 이를 좇아야 한다.

제4조(대문 개폐, 잠금 등)

관리자는 대문 개폐, 잠금, 열쇠 보관, 수위 배치 및 순시(巡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변전실 등 출입금지)

관리자는 변전실, 기관실, 전화교환실, 수위실, 숙직실, 차고, 창고,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해당 관계 직원 아닌 사람을 함부로 들어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량 통행 제한 등)

관리자는 청사 등에서 자동차, 그 밖의 차량을 통행하거나 주차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통행이나 주차를 허가할 수 있다.

제7조(물품 판매 등)

관리자는 청사 등에서 물품 판매, 선전,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

관리자는 제6, 7조에서 정하는 경우 말고는 청사 등을 본래 목적 아닌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허가 조건)

관리자는 제6-8조에 따라 허가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게시)

① 관리자는 청사 등에서 광고물, 전단, 포스터, 선간판,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을 게시(전시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게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허가는 관리자가 게시 장소 및 기간을 지정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물건이 허가받지 아니한 채 게시되었거나, 제2항 지정을 위반, 게시되었으면, 게시한 사람에게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1항 물건을 게시한 이가 제3항 명령을 좇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 혹은 그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제3항 명령을 내리지 못하거나,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 제한 등)

관리자는 청사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사 등 또는 그 내부 방에 들어가려는 이에게 인원, 시간, 장소를 제한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퇴거명령 등)

① 관리자는 청사 등에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나 청사 등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제9, 10호 해당인에게 청사 등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그 행위를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기, 흉기, 폭발물, 그 밖의 위험물을 가져오거나 가져오려는 사람
2. 직원에게 면회를 강요하는 사람
3. 출입을 금지한 구역에 출입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

4. 크게 노래 부르거나, 열을 지어 걷거나, 이들 행위를 하려는 사람
5. 선전차를 가져오거나 가져오려는 사람
6. 눌러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
7. 기부를 강요하거나 강매하는 사람
8. 재판소의 금지에 어긋나게 사진기, 녹음기,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가져오려는 사람
9. 깃발, 깃대, 플래카드, 확성기,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가져오려는 사람
10. 머리띠, 번호판, 완장,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을 착용하는 사람
11. 위 각호 사람 말고도 청사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

② 관리자는 청사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사 등에서 문서, 도화, 전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건을 반포하거나 반포하려는 사람에게, 그 행위나 청사 등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9조는 제1항 단서 허가에 준용한다.

제13조(철거명령 등)

① 관리자는 청사 등에 있는 다음 각호 물건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철거나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 5호 물건은 관리자가 청사 등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기, 흉기, 폭발물, 그 밖의 위험물
2. 선전차
3. 재판소에서 소지를 금지한 사진기, 녹음기,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
4. 깃발, 깃대, 플래카드, 확성기,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
5. 머리띠, 번호판, 완장,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물건
6. 위 각호 물건 말고도 청사 등 관리에 지장을 일으키거나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

② 관리자는 청사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사 등에 있는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물건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철거나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물건 소유자나 소지자가 제1, 2항 명령을 좇지 아니하거나, 이들 사람 혹은 그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제1, 2항 명령을 내리

지 못하거나,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철거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화기 사용 등)

① 관리자는 청사 등에서 관리자가 정하는 장소 아닌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9조는 제1항 단서 허가에 준용한다.

제15조(설비 보안 조치)

관리자는 전기설비, 가스설비, 기관설비, 승강기 설비 등에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설비 등 정비)

관리자는 청사 등에 적응하는 소화기, 소화전, 그 밖에 소방용으로 이바지하는 기계, 기구, 피난 기구 및 구명 기구의 정비에 힘쓰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 등 통보)

관리자는 화재, 도난, 그 밖의 재해 및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 등)

관리자는 청사 등 청소 및 청결 확보, 유지에 힘써야 한다.

제19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

관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말고도 청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8. 재판소 청사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120]

1. 제1조 관계

「청사 등」은 숙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2조 관계

(1) 제2항 협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용 구분을 전제로 삼은 것이나, 공용 부분 등은

120) 裁判所の庁舎等の管理に関する規程の運用について. 고등재판소 사무국장, 지방·가정재판소장에 대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경리국장 명의 통달(通達)로서 이번 출장에서 입수한 것이다.

협의로 공동 관리할 수 있다.

(2) 지부(支部) 등에서 위 (1) 협의는 제4항 대리자도 할 수 있다.

(3) 제4항 위임은 원칙적으로 고등재판소 지부에서만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같은 항에 따라 대리로 처리한다.

3. 제4조 관계

「필요한 사항」이란 예컨대 다음과 같다.

대문의 개폐 시각, 잠금 설비 정비, 잠금 상황 감시, 각 실 열쇠 수수 확인 방법, 열쇠 보관 장소, 수위 조 편성 및 근무 시간 및 순시 시간, 장소, 방법

4. 제5조 관계

(1)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란 예컨대 다음 장소를 말한다.
옥상, 진료소 및 기름 창고(貯油場)

(2) 관리자는 출입금지 장소를 밝히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그 취지를 표시한다.

5. 제6조 관계

부지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도 재판소에 용무가 없는 사람의 주차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6. 제7조 관계

(1)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행위」는 권유, 기부 모집 및 계약 중개를 포함한다.

(2) 청사 등 일부에 시설을 두어 물품 판매 등을 할 경우의 허가는 단기간일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다.

(3) 허가 절차는 허가신청자가 별지 양식 제1 판매 등 허가신청서 2부를 제출하게 하고, 그 허가 여부는 신청서 1부에 관리자가 그 취지를 기재해서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아울러, 제9조에 따라 조건을 붙일 경우,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위 허가서에 조건을 기재한다.

7. 제8조 관계

허가 절차는 별지 양식 제2 사용허가신청서를 쓰되, 6-(3)에 준한다. 다만, 위 신청서 제출 기한은 사용 개시 72시간 전까지이다.

8. 제10조 관계

게시판은 국비로 설치한다. 이 경우, 기존의 칸막이 등을 게시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를 이용한다.

9. 제12조 관계

(1) 제1항 제8호 「재판소」는 관리자도 포함한다.

(2)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때 사전에 보도 관계자와 충분히 연락, 조정을 꾀한다.

(3) 제1항 제11호 「청사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이란 예컨대 다음 사람을 말한다.

① 직원 사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

② 천막, 경계선, 말뚝, 그 밖에 이들과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

③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서 하거나 하려는 사람

④ 허가에 딸린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 제13조 관계

제1항 제6호 「청사 등 관리에 지장을 일으키거나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이란 예컨대 다음 물건을 말한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천막, 경계선 및 말뚝

11. 제14조 관계

허가 절차는 별지 양식 제3 화기사용허가신청서를 쓰되, 6-(3)에 준한다.

12. 제16조 관계

소방법 제8조 방화관리자는 이 규정을 운용할 때 청사 관리자의 보조자이다.

13. 제17조 관계

「필요한 사항」이란 예컨대 다음과 같다.

통보하여야 하는 관공서, 통보 수단 및 통보 담당 직원

(별지 양식 제1)

판매 등 허가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전화)
(성명) (인)

재판소 청사 등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1. 신청하는 행위
2. 장소
3. 일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4. 신청하는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
   (성명) (나이) 세 (성별) 남, 여
5. 나머지

이 신청은 다음 조건을 붙여 허가한다.
이 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관리자) (인)

(별지 양식 제2)

사용허가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국과명 또는 주소)
(전화)
(성명) (인)

재판소 청사 등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1. 사용 장소
2. 사용 목적
3.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4. 인원
5. 사용책임자
6. 나머지

이 신청은 다음 조건을 붙여 허가한다.
이 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관리자) (인)

(별지 양식 제3)

화기사용허가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국과명 또는 주소)
(전화)
(성명) (인)

재판소 청사 등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단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1. 화기 사용 장소
2. 사용하는 화기
3. 화기 사용 목적
4.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5. 사용책임자
6. 나머지

이 신청은 다음 조건을 붙여 허가한다.
이 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관리자) (인)

참 고 문 헌

【논문】

吉井匡「我が国における裁判所侮辱(特に直接侮辱)への対応法制とその適用の現状:「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の検討を中心に」自由と安全の刑事法学: 生田勝義先生古稀祝賀論文集(法律文化社, 2015) 646-668頁.

村井敏邦「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の制定の歴史」法律時報 52巻 10号(1980 · 10) 25-34頁.

문성호 · 백광균, 일본 사법제도 연구반 출장 결과 보고서(2017 · 7)[내부보고서].

백광균, 일본 사법제도 연구반 출장 결과 보고서(2025 · 6)[내부보고서].

차기현, "일본의 사법부 예산 결정 및 운용 실무", 외국사법제도연구(34), 사법정책연구원(2025), 359-382.

【단행본】

法律編集者懇話会『法律文献等の出典の表示方法』[2014年版].

伊丹俊彦[ほか] 編『逐条実務刑事訴訟法』(立花書房, 2018).

政策研究大学院大学C.O.E.オーラル · 政策研究プロジェクト『矢口洪一(元 最高裁判所 長官) オーラル · ヒストリー』(政策研究院, 2004).

中山善房[ほか] 編『大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第6巻』(青林書院, 第3版, 2022).

最高裁判所 事務総局 総務局 編『裁判所法逐条解説 下巻』(法曹会, 1969).

河上和雄[ほか] 編『注釈刑事訴訟法 第4巻』(立花書房, 第3版, 2012).

전문식, 법정 내 질서 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웹 사이트 (2025. 10. 27. 확인)】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s://kokkai.ndl.go.jp.

産経新聞社, https://www.sankei.jp.

裁判所, https://www.courts.go.jp.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s://ecos.bok.or.kr.

각국의 법원 청사 및 구성원 보호방안:
외국사법제도연구(36)

2025년 12월 인쇄, 발행

발행 법원행정처 (02-3480-1262)

인쇄 (주)홍디자인 (02-464-5167)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